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012-10

法務年鑑

2014

MINISTRY OF JUSTICE • REPUBLIC OF KOREA

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 REPUBLIC OF KOREA
법무부

法務年鑑

(2013. 1. 1.
2013. 12. 31.)

法務部

국 정 비 전

- 희 망 의　새 시 대

국 정 기 조

-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법무행정비전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법무부 전경

법무부 기

법무부장관 근영

사진으로 보는
2013년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2013 January

시무식
2013.1.2

제1회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2013.1.22

박달시장 방문
2013.1.29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2013.1.30

제1회
전국 수형자 합창 콘테스트
2013.1.30

유리 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 접견
2013.1.31

2013 February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만남
2013.2.5

5동 방호원 · 미화원 오찬 간담회
2013.2.6

압둘라 망고타라
필리핀 이민청 부청장 접견
2013.2.15

해피법스데이
2013.2.15

법무부정책위원회
2013.2.21

신임검사 임관식
2013.2.27

2013 March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식
2013.3.11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식
2013.3.11

제54대
길태기 법무부 차관 이임식
2013.3.14

제55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식
2013.3.15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2013.3.15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출범식 및 전체회의
2013.3.28

2013 April

신임검사 임관
2013.4.1

안산비행예방센터 방문
학교폭력 예방 특강
2013.4.1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기념식
2013.4.5

제56대 국민수 법무부 차관 취임식
2013.4.10

전국교정기관장회의
2013.4.12

제50회 법의 날
2013.4.25

2013 May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정책현장 방문
2013.5.2

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2013.5.2

신임검사 임관
2013.5.6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
2013.5.10

제6회 세계인의 날
2013.5.20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2013.5.30

2013 June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 체결 및 위촉식
2013.6.5

한-키르기즈 법무부 간 법무협력협정 체결식
2013.6.5

제1기 교정정책 자문단 위촉식
2013.6.12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2013.6.14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초청 인사 접견
2013.6.25

2013 상반기(모범 · 장관표창) 포상식
2013.6.27

2013 July

성폭력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2013.7.5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무료법률상담
2013.7.10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신청사 준공기념
2013.7.10

법무부 1동 이전 현판식
2013.7.15

서울 봉래초등학교 모교 방문 강의
2013.7.15

제1회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회의
2013.7.23

2013 August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포상
2013.8.6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증서 수여
2013.8.13

2013 을지연습 실제훈련
2013.8.21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2013.8.28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2013.8.29

전국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장 워크숍
2013.8.29

2013 September

사랑의 도서기증
2013.9.2

라마다노브스키 콘스탄틴 러시아 이민청장 접견
2013.9.9

2013 전국다문화가족합창대회
2013.9.10

대구소년원 직업훈련관 개관
2013.9.11

밀양희망센터 개관식
2013.9.11

안양보육원 방문
2013.9.12

2013 October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2013.10.11

2013년 국정감사 수감
2013.10.1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기념식
2013.10.18

제42회 교정작품전시회
2013.10.28

제68주년 교정의 날
2013.10.28

2013 출소자 HUG 후원의 날
2013.10.31

2013 November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브리핑
2013.11.5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13.11.6

제9회 법무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2013.11.9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2013.11.13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2013.11.20

인천스마일센터개소식
2013.11.22

2013 December

2013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2013.12.9

행복민원센터 현판식
2013.12.11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포상 및 위촉식
2013.12.20

제57대 김현웅 법무부 차관 취임식
2013.12.24

KBS1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 출연
2013.12.24

법질서 유공 포상 ·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2013.12.26

2013 법무행정일지

2013 1월

1.11. 김효니 작가 접견
1.16.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 서명
1.21. 제42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1.22. 자체평가위원회
1.25. 드라마 작가들과의 만남
1.29.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1.30. 포항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식, 제1회 전국 수형자 합창콘테스트
1.31. 유리 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 접견

2013 2월

2. 4. 웹툰작가와의 만남
2. 5.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만남
2. 6. 5동 방호원, 미화원 오찬간담회
2.15. 해피법스데이
2.15. 필리핀 법집행기관 고위간부 접견
2.27. 신임검사 임관식

2013 3월

3.11.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식
3.11.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식
3.12. 국립현충원 참배
3.15.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
3.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 심포지엄
3.28.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출범식
3.29.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2013 4월

4. 1.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4. 1. 신임검사 임관식
4. 3. 로저 기포드 런던 금융특구시장 접견
4. 5.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 기념식
4.10. 인터넷 화상접견 시연
4.12.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4.18.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개회식
4.24.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출범식
4.25. 제 50회 법의 날 기념식

2013 5월

5. 1.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등 공유를 위한 전입검사 간담회
5. 2.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정책현장 방문
5. 2.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5. 3. 여성 · 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5. 6.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임관식
5. 8.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10.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
5.13. 법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전수식
5.20.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
5.21. 해피법스데이 행사
5.23. 멘토와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5.24. 벳쇼 주한 일본 대사 접견
5.27. 법무부-한국교총 업무협약
5.27.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식
5.29. 법무부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5.30.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5.31. 법무부 정책위원회

2013 6월

6. 3. 광주 정책현장 탐방
6. 5.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
6. 5. 한-키르기즈 법무부간 법무협력협정 체결식
6.12. 제1기 교정정책 자문단 위촉식
6.12. 주한 몽골대사 접견
6.14.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6.24. 6월 호국보훈의 달 직원 간담회
6.25. 한-중미 교정분야 치안협력 초청 인사 접견
6.27. 2013 상반기(모범, 장관표창) 포상식

2013 7월

7. 4. 법무부-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7. 8. 로스쿨 원장단 오찬 간담회
7.10.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무료법률상담
7.1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신청사 준공기념
7.11. 아태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대표단 접견
7.15. 모교방문 및 헌법강의
7.15.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현판식
7.19.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7.22.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단 접견
7.25. 제1회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회의
7.25. 2013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7.29. 실 · 국 · 본부별 간담회

2013 8월

8. 5. 상반기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시상식
8.13.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8.14. 태국 법무부 장관 예방
8.21. 2013 을지연습 유관기관 합동 방호훈련
8.23. 서울남부지검 방문
8.23.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
8.26. 변호사대회 개회식
8.27. 해피법스데이
8.28. 법무부-한국무역협회,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MOU 체결
8.29. 전국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장 워크숍

2013 9월

9. 2. 사랑의 도서기증 행사
9. 4. 법무부, 2013 을지훈련 자체 강평 보고 회의
9. 5. 박민식 의원 감사패 증정
9. 9. 법무부 직원조회
9. 9. 라마다노브스키 콘스탄틴 러시아 이민청장 접견
9.10.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개최
9.11. 창원KBS 9시뉴스 – 교도소 밖 '사회적응센터'
9.11. 뉴스와이 – 교도소 밖 모범수 생활시설 국내 첫 개소
9.11. 대구소년원 방문 및 밀양희망센터 개소식
9.12. 안양 박달시장 및 안양보육원 방문
9.27. 세계한인변호사 제21차 정기총회

2013 10월

10. 4.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에 대한 법무부장관 입장
10. 7.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법무부장관 입장
10.10. 제2기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10.11.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10.16. 사회봉사 농촌지원 정책현장 방문
10.17. 국정감사
10.18.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창립 기념식
10.23. 국제법률포럼 심포지엄
10.28. 제68주년 교정의 날
10.30. APEC 계약분쟁해결절차 국제컨퍼런스
10.31. 허그후원의 날

2013 11월

11. 6.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1. 9.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11.11. 국제중재 컨퍼런스
11.13.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11.20.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11.22. 인천스마일센터 개소식
11.22. 정책현장방문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2013 12월

12. 9. 우수 인권공무원 직원 포상식
12.11. 행복민원센터 현판식
12.11. 교화방송센터 이전준공 기념행사 장관님 일일 DJ
12.12. 인권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12.12. 법무정보화 발전전략 보고회
12.17. 장관과의 대화 · 국민신문고 우수답변 및 SNS 홍보 관련 포상
12.20. 정책블로그 기자단 포상식 및 위촉식
12.24. KBS1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 출연
12.24. 정부과천청사 경비대 위문
12.26.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및 법질서 유공 포상식
12.27. 검찰업무수행 및 연말 포상식

발 간 사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2013년은 국정비전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제시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부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법무행정의 비전으로 삼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면 배제 및 가석방 심사 강화 등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전 · 보조금 비리 등 고질적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였으며,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였고, 반부패부 신설 등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재설계하였으며, 5개 고검에 시민위원회 신설 등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수사력을 집중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였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유해식품 제조 · 판매 등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주민들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화 ·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절차를 안내해 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대상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인 '스마일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 설치하였고, 구조금 지급 및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률홈닥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 · 형사상 법률지원을 확대 · 시행하였습니다.

재소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 · 교화를 위해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출소자 취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소자의 재범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과 우수 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를 지방공항으로 확대하였으며, 한 · 홍콩 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지식 재산권 · 투자 · 무역 관련 분쟁방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였고,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국제중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법무한류(K-Law) 사업의 성과로 '라오스 증권법'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해외투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펼쳐 「희망의 새시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 7.
법무부장관 황교안

목 차

◆ 법무부 전경
◆ 법무부 기
◆ 법무부장관 근영
◆ 각종 행사(화보)
◆ 2013년도 법무행정일지
◆ 발간사

제 1 장 총 설 / 1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3
제1항 국정 방향 3
1. 국정기조 : 경제부흥 3
2. 국정기조 : 국민행복 3
3. 국정기조 : 문화융성 3
4. 국정기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 4
5.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4
제2항 법무행정의 지표 4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5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7
3.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8
4. 창조경제 기반 지원 8
5.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9
6.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11

제2절 기구 · 인원 13
제1항 본 부 13
1. 기 구 13
2. 인 원 16
제2항 산하기관 17
1. 검찰청 17
2. 보호기관 19
3. 교정기관 23
4. 출입국관리기관 25
5. 법무연수원 26

제3절 예산과 시설 27
제1항 예 산 27
1. 개 요 27
2. 일반회계 28
3. 교도작업특별회계 32
4.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33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3
제2항 시 설 34
1. 개 요 34
2. 국민 편의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34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34

제 2 장 업무실적 / 37

제1절 기획조정업무 39
제1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39
제2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40
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40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40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41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41
제3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42
1. 정부업무평가 42
2.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45

제4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46
1. 개 요 46
2. 완료 사항(7건) 46
3. 정상추진 지시사항(12건) 46
제5항 비상대비업무 47
1. 정부 연습 47
2. 비상대비 계획 보완 47
3. 법무 시설 방호 실태 및 재난 관리 실태 점검 47
4. 재난 대응 훈련 실시 47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47
제6항 정보화업무 47
1.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수립 47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48
3. 온라인민원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한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49
4. 사이버안전체계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정보 이용 환경 조성 50
5.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활성화 50
6.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효율적 추진 51
7. 고품질 우수지식 공유·활용 활성화 51
8.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예방 정보화 수준 획기적 향상 52
9.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 승객의 편의성 향상 52
제7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53
1. 개 요 53
2. 교육훈련 54
3. 연구활동의 활성화 63
4. 국제교류의 활성화 64
제8항 홍보업무 64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64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65
3. 기관장의 언론 소통 활동 강화 65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65
5. 주요 홍보활동 실적 66

제2절 법무업무 83

제1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83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83
2.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83
3.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84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84
5.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84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85
7. 남북교류협력 법적 지원 및 통일 대비 법무업무 실질화 85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86
9. 법조인력 양성제도 연구 및 발전도모 86
제2항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87
1. 개 요 87
2.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주요 법령 정비 87
제3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88
1. 개 요 88
2.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89
3. 주요법률문제 검토 89
4. 법무자료 발간 89
5.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90
제4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91
1. 개 요 91
2.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령정비 91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92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92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94
제5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94
1. 국제법무교류 지원 94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100
제6항 송무수행의 효율성 향상 101
1. 개 요 101
2. 소송 수행역량 제고 102
3. 송무업무 실적 103
제7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103
1. 개 요 103
2. 헌법재판 수행 104
3. 위헌법률심판 104
4. 헌법소원심판 104
제8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105
1. 개 요 105
2. 주요 업무 105
3. 소송수행 실적 105
제9항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105
1. 개 요 105
2. 추진 실적 106
3. 향후 계획 106
제10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106
1. 개 요 106
2. 추진 내용 106
3. 기대효과 107
제11항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및 통일을 대비한 법적 준비 107
1. 개 요 107
2. 개성공단의 정상화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108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08
4.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법적 준비 109
5. 통일법무DB 홈페이지, 「통일과 법률아카데미」 개설 등 통일 대비 법무인프라 확충 109
제12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개선 110
1. 개요 110
2. 상사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110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110
4. 상업등기법 개정 111
5. 공익신탁법 제정 111
제13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112
1. 사법시험 실시 112
2.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 113

제3절 검찰업무 114

제1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114
1. 국가·사회기강 확립 114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115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116
제2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17
1. 개 요 117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118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118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119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119
제3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20
1. 개 요 120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21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24
4. 국제형사협력강화 129
5. 형집행 지휘·감독 132
제4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33
1. 개 요 133
2.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법안 개정 134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135

제5항 검찰역량의 강화 139
1. 직제 개편 139
2. 검찰인력의 변동 139
3.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140
4.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142
5.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142
6.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143
7. 검찰시설의 개선 145
제6항 국민의 권익 보호 146
1. 개 요 146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146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147
제7항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148
1. 기본방향 148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148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150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151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152
6. 과학수사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53
7. 검찰업무 정보화 155
8. 화재수사팀 신설 및 정착 159
9.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160
10.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161

제4절 범죄예방업무 163

제1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163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163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63
3. 감호제도의 개선 164
4.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164
5. 내실 있고 체계적인 보호관찰활동 전개 165
6. 갱생보호사업의 효과성 제고 165
7. 청소년비행예방 역량 강화 166
제2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167
1. 개 요 167
2. 범죄예방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167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168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168
5.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169
6.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주요활동 169
제3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70
1. 개 요 170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170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171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172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74
6. 사이버 법교육 시스템 활성화 177
7.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177
8. 민간 법교육 지원 178
9. 법체험기관 솔로몬 로파크 설립·운영 178
10.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79
제4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179
1. 개 요 179
2. 민간중심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179
3. 국민과 함께하는 법질서 운동 전개 180
4.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182
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홍보 183
제5항 감호제도의 개선 184
1. 개 요 184
2. 감호의 엄정 집행 184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186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187
제6항 보호관찰 내실화·선진화 추진 189
1. 개 요 189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189
3.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193
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195
5.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197
6.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199
7.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201
제7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203
1. 개 요 203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204
3. 지원프로그램 내실화 및 다양화 205
4. 선진 갱생보호 프로그램 도입 207
5.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208
제8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208
1. 개 요 208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210
3. 개방적 인성교육 213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214
5. 주요 교육성과 216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218

제5절 감찰·감사업무 223
제1항 감찰업무 223
1. 개 요 223
2. 추진상황 223
제2항 감사업무 223
1. 개 요 223
2. 주요 감사실적 224

제6절 인권업무 226
제1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226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226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26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27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227
제2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227
1. 개 요 227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28
3. 차별방지 대책 추진 229
4. 법령,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29
5. 국제 인권 활동 강화 230
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조성 230
7. 법의 날 기념식 개최 231
제3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31
1. 개 요 231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32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235
제4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38
1. 개 요 238
2.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239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239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40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240
제5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총괄·조정 241
1. 개 요 241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241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243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243

제7절 교정업무 244

제1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44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244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45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245

제2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245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245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246

제3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247
1. 수용자 지향 수용자 처우 247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252

제4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254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254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55
3.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255

제5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256
1. 개 요 256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256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259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261

제6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263
1. 개 요 263
2. 교도작업 운영실적 264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265
4. 작업장려금 및 조·위로금 265
5. 자립형 교도작업 266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266
7. 내실있는 작업훈련 실시 267

제7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269
1. 개 요 269
2. 추진배경 269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269
4. 예산 및 인력절감 효과 270

제8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운영 271
1. 개 요 271
2. 추진배경 271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271
4. 예상 효과 272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273

제1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273
1.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274
2. 재한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275

제2항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제공 276
1. 환승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본격 시행 276
2.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안내도우미 사업 지속 운영 276
3. 한-홍콩 양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프로그램 시행 277
4.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 278
5.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서비스 8년 연속 세계 1위 279
6. 사회공헌기업 종사자 등 출입국우대 서비스 시행 279
7. MICE 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공 280
8.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280
9. 출입국자 및 위변조여권 적발 현황 281

제3항 해외 우수 인재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사증 체류제도 선진화 283
1.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283
2. 사증·체류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 활성화 285
3. 정부 3.0 시대 고객중심형 체류관리 방식으로 최적의 체류환경 조성 287

제4항 법과 원칙에 따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288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288
2. 불법고용 방지 계도활동 강화 289
3. 불법 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290
4.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290
5.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강화 291
6.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292
제5항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293
1.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293
2. 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295
3.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297
4.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 결혼가정 형성 지원 299
제6항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301
1.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현황 301
2. 방문취업(H-2) 제도의 안정적 관리 302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303
제7항 국적 및 난민업무 개선 304
1. 복수국적자의 증가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국적법 효과 가시화 304
2. 국적업무 제도개선 304
3. 국적업무 처리현황 305
4. 난민법 제정에 따른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307
제8항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312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312
2. 외국인등록증 직접 배송체계 시범 운영 313
3.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14
제9항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315
1.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315
2. 국제협력강화 316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 321

제1절 개 관 323

제2절 법 률 324
제1항 제정 법률 324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324
제2항 개정 법률 325
1. 가사소송법 325
2. 가사소송법 327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28
4. 공증인법 329
5. 부동산등기법 330
6. 비송사건절차법 331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331
8. 주택임대차보호법 331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32
1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3
11. 형법 334
12. 치료감호법 334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335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5

제3절 대통령령 337
제1항 제정령 337
1. 난민법 시행령 337
제2항 개정령 337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7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8
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338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338
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9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0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41
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41
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 관한규정('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342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43
1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44
12. 공증인법 시행령 344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45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45
제3항 폐지령 346
1. 사면법 시행령(폐지) 346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347

제1항 제정 규칙 347
1. 난민법 시행규칙 347
제2항 개정 규칙 347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47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8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48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9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349
6.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349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349
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350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0
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51
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51
13.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352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2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3
1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353
17. 외국인보호규칙 353
1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4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54
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5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5
22.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356
23.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356
24. 검찰보존사무규칙 357
25.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357
2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57
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8
2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359

제 4 장 국회업무 / 361

제 5 장 법무연표 / 371

제 6 장 통 계 / 383

제1절 법무업무 통계 385
1. 법무업무 385
2. 국제법무활동 387
3. 변호사·공증 388
4. 국가소송 389
5. 행정소송 391
6. 국가배상 392
7. 헌법재판 현황 395

8. 제55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396

제2절 검찰업무 통계 400
1. 검사 수사 사건 400
2. 구속영장 발부 등 409
3. 구속적부심사 410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10
5. 형의 집행 412
6. 사 면 413
7. 형사보상금 지급 415
8. 마약보상금 지급 415
9. 해외연수 415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417
1. 비행소년 선도 417
2. 감호처분 419
3. 보호관찰 429
4. 갱생보호 440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441

제4절 인권업무 통계 452

제5절 교정업무 통계 454
1. 수용자 수용 현황 454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466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470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474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474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475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477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479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481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482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483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484
9.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485
10.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486
11.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487
1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488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488
14.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489
15.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현황 490

자 료 / 491

Ⅰ. 직 제 495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528
Ⅲ. 장관 연설문 551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598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611
Ⅵ. 인 사 654
Ⅶ. 국외훈련·출장 655
Ⅷ. 국제교류 현황 656
Ⅸ. 상 훈 668
Ⅹ. 위원회 현황 677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683

부 록 / 685

◈ 법무부 본부 기구변천표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제 1 장

총 설

제 1 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 2 절 기 구 · 인 원
제 3 절 예 산 과 시 설

제 1 장 총 설

제 1 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 1 항 국정 방향

2013년도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가 힘차게 출범한 첫 해였다.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국민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월 25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국정비전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및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국가발전에 매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국정기조와 추진기반별로 총 1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140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우리 부에서 주관 및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정기조 : 경제부흥

1-1-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
1-1-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1-1-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1-1-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
1-2-22 소비자 권익보호
1-2-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1-2-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1-2-25 기업지배구조 개선
1-3-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2. 국정기조 : 국민행복

2-4-51 다문화 가정 적응지원 강화
2-6-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2-6-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2-6-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6-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2-6-78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2-6-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2-6-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2-7-101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3. 국정기조 : 문화융성

3-10-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4. 국정기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

4-12-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5.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추-14-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추-14-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추-14-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제 2 항 법무행정의 지표

법무부는 국정목표를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비전 아래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의 기본 임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 6대 전략목표와 '4대악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 25개의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위기를 넘어 「희망의 새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6대 전략목표와 25개 성과목표의 세부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도 법무부 임무, 비전과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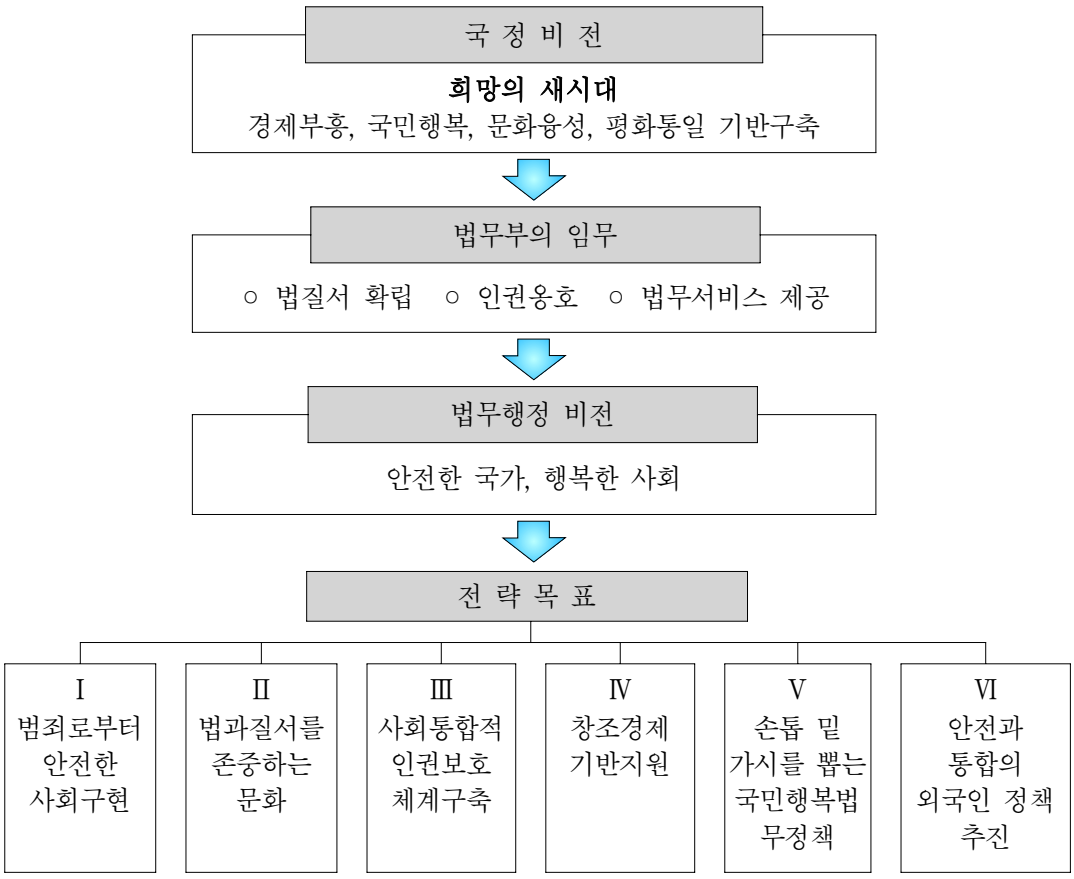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가. 4대악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1) 성폭력 가해자,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범 등 처벌 강화로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2)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합동 단속 추진
4)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으로 반부패,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국제형사협력 증진

나. 형사사법체계의 지속적 발전

1) 전체 형사법 체계와 조화되도록 형사 특별법의 법정형을 정비함과 아울러, 형법 총칙의 형벌체계에 대해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2) 소액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및 집행유예제도 도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1) 선진 디지털수사체계 구축 및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강화와 사이버범죄 수사인프라 구축
2) 디지털 전문수사 인력의 육성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3)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과 프로그램의 도입 및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 추진
4) 지검 단위의「디지털수사팀」설치 확대
5) 영상녹화조사는 수사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장비로 녹음·녹화하는 방식으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조사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에 기여

라. 성폭력 사범 등 범죄자 관리망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1)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 도구 개발로 효율적 재범방지정책 추진
2) Wi-Fi 등 최신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 위치 정밀도 향상, 훼손이 어려운 전자발찌 보급, '현장 밀착형' 지도감독 실현을 위한 최신 스마트폰 보급 등 기술적 통제력 강화
3) 정신질환자, 마약·약물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수용,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방위 도모
4) 보호기관 역량을 강화하여 질 높은 범죄예방 서비스를 보호관찰 대상자와 비행청소년에게 제공, 안정적인 사회 안착 유도 및 재범억제를 통하여 국민 생활 안전 도모

마.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행복한 가정 실현

1)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법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상담조사·분류심사 등 비행원인 진단, 분류심사관 전문성 제고,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 확충, 직원교수역량 향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등 비행예방기능 강화

2) 학생자치법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교육 전문강사 파견 및 연차적 확대 실시
3) 소년원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정착 기반마련을 위한 직업훈련 역량 제고,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 가정기능회복 지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및 외부자원 연계, 자발적인 개선동기 부여 등 소년원 교육 내실화 및 재범 억제력 증진
4) 가정폭력치료 분야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내실화·활성화하여 전문 집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의 전문적 집행을 통한 교육효과성 제고

바. 따뜻하고 희망 주는 교정교화

1) 수형자 학습능력에 따라 학과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 교육, 학위취득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2) 수형자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내실화·전문화를 통해 사회와의 격리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 회복
3) 성관념 인지치료, 피해자 아픔 공감하기 등 성폭력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화프로그램 실시
4) 수형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귀휴 등 사회적 처우 실시, 출소 전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중간처우제도 운영
5) 고용현장 수요를 고려한 실무형 기술훈련 위주의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취업이 용이한 3D 직종 단기훈련 운영
6)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유지함으로써 평온한 수용생활을 하는 다수의 수용자를 보호하고, 교정·교화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
7) 수형자의 개선가능성 평가, 재심사와 가석방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객관화·정형화된 평가예측지표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활용
8) 전국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직종을 출소 후 취업과 연계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비
9) 각종 교정사고, 부조리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복무기강 점검체계 구축

사. 맞춤형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1) 갱생보호 보호위원 등과 연계하여 출소자를 고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간기업 발굴 및 연계 강화
2)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출소자 취업지원프로그램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출소자를 일정기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해 1인당 최대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기업 참여를 제고하여 출소자의 취업률 확대

3)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06년부터 시행한 주거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 기능 복원과 조속한 자립 유도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가. 헌법수호와 법질서 확립

1) 폭력행위 부추기는 전문 시위꾼·외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로 불법 집회·시위 관행 근절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엄정 대응을 통해 복수노조·타임오프 등 성공적 정착 지원
3)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 제고
4)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 및 각종 이적행위 엄단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범죄 엄정 대처
5)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반부패 수사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6) 수사 과정 및 단속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 부패 유발 요소 차단
7) 부패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

나.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1)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검사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과 등을 신설하고 감찰본부 인력을 증원하여 깨끗한 검찰 구현
2)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3)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을 설계하여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다. 준법과 사회기여를 우대하는 법무행정

1) 교정시설 입소 전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기여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
2) 공익단체 설립과정 간소화, 보호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법령 마련, '법률 홈닥터'를 통한 법교육 활성화, 법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범죄예방위원 및 교정위원 심화 교육 확대 등

라. 민주시민 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

1) 16개 광역 지자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전개 및 농협,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 특성에 맞는 법질서 캠페인 전개

2) ‘우리헌법 만들기 운동’ 활성화를 통한 준법문화 확산과 법사랑 서포터즈를 활용한 법질서 캠페인 저변 확대
3) TV・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법질서 확립 공익광고 캠페인 전개
4)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강화를 위해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가. 인권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및 여성 아동 인권 강화

1) 국가의 인권정책 총괄부서로서 국가인권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인권활동을 강화하며, 법무부 내부의 인권침해를 예방 및 조사・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
2)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구현
3) 수사과정에서의 여성・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의 인권 강화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5) 쾌적한 수용환경 조성과 의료지원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하여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증진 도모
6)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강화 대책 및 가해자 엄정처벌을 위한 지침 마련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 및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단계적 확대 추진
3) 범죄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4)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법률홈닥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형사상 법률지원 확대

4. 창조경제 기반 지원

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 증권범죄 조사 관계기관과 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죄에 적극 대응
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사금융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을 중점단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죄동기 차단

3) 대형 경제비리 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
4) 지식재산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지식재산의 건전 유통질서 확립 및 지식재산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확산

나. 법제선진화를 통한 국민생활과 기업환경 개선

1) 중소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강연·현장 법률상담 정례화,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며 변호사 비용 지원
2) 소수주주의 보호·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특례규정 정비 등을 위한 상법 회사편 등 개정으로 기업 법제 선진화

다. 미래 지향의 법률서비스 기능 강화

1)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법무 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거래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협력 강화와 통상협상 및 국내대응 강화
2) 개발도상국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여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 및 국격 제고
3)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법률통합을 위한 법령안 마련 및 통일 법무자료 DB 및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 지원, 중요사항 자문, 북한 및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등을 통한 법적 지원 강화

5.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가.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1)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효율적·체계적 수행과 지휘를 위한 국가송무정부통합전산정보망 중앙행정기관 확대사업의 지속적 추진
2) 국가송무의 패소원인 분석을 통한 패소율 감소, 소송행위 승인 등 기본업무의 충실한 수행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 업무개선
3) 등기부동산의 유치권을 폐지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는 합리적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 제도 개선 추진
4)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1회 매각기일 낙찰률(전국평균 15%) 제고 등 부동산경매의 효율성 강화 및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매제도 개선 추진

나.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1)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2) 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불법 사금융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지자체),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 토양 제거
3) 검찰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형사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히 처리

다. 국민중심의 선진법무기반 조성

1) 보증금반환채권 현금화·신용화, 법인명의 임차 주택 우선변제권 보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을 통해 임차인 등 주거안정에 기여
2)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주치의 같은 친근한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
3) 변호사 징계 및 절차 강화, 변호사 금품보관 사고 방지, 변호사 공익활동 촉진, 국민의 변호사 정보 접근성 및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4) 국제화, 전문화 시대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는 법조인 선발을 위한 새로운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라. 형집행 과정에서 국민배려

1)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 설치된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접견의 편의성 증진 도모
2)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수형자의 수용생활안정 도모로 교정사고 예방
3) 저소득 농가 지원 및 마을환경개선 등 농촌지원 강화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실시, 재난피해 복구 등 긴급투입체제 구축 등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마. 국민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1)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등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내・외부 법무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화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고품질 법무행정 서비스 실현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정책을 선별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따뜻한 법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 참여와 만족도 제고
3) 정보공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의식변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 및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바. 미래 법무행정 지원 기반 마련

1) 현 정부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과 사용자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법무시설 조성

2) 충무계획의 보완·발전과 적극적인 정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 확립
3) 체계적인 재난관리활동을 통해 인적·물적피해 최소화
4) 예산편성에 대한 부처의 자율권 확대에 상응한 재정사업 추진결과의 성과평가 강화 및 책임성 제고
5) 교육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한 법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국민의 신뢰 제고 위한 인성·소양교육 강화
6)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으로 정보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정보화 인력 충원(지속추진)
7)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 공통 서비스 운영·관리('13.~'17.)

사. 깨끗하고 신뢰받는 법무·검찰 구현

1) 사전적·예방적 감찰·감사활동 강화로 법무·검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깨끗한 법무·검찰문화 정립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획득
2)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정팀 확대, 금품수수·사건소개 등 고질적 비위첩보 수집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 사정활동 전개
3) 자체 감찰·감사강화로 법무·검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원칙과 정도에 따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 획득
4) 금품·향응·편의 제공,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불공정 업무지시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 관리
5) 청렴도 개선방안 추진성과를 BSC 성과관리시스템 공통지표 평가 '청렴 마일리지'에 반영

6.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가.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1) 한국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외국정부와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상호 이용 확대,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출입국자 편의 제공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한 전자사증 제도 도입 및 성실납세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상 혜택 부여 추진
3) 간행물·동영상·인터넷·정책 현장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4)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및 광역별 단속방식 전환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계 개편으로 출입국사범 집중관리, 신분세탁·밀입국·위장결혼 등 이민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체류관리 안전 확보

5) 출입국관리고위급회담 등 양자 간 국제이민협력사업 및 출입국분야 국제회의 기획·참가 등 다자간 국제협력사업 추진, 주한외국공관원과의 협력공조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이민협력 기반 마련

나.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1)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마련, 사회통합프로그램·해피스타트프로그램 등 사회통합교육 활성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성 제고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사회정착 지원

2) 복수국적 허용 대상인 우수인재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 등 규정 정비,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확대 및 관계기관 홍보 강화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3) 난민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마련, 난민정착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로 난민 등의 기초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난민에 대한 주거·사회적응 등 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센터 개청으로 난민 권익을 증진하고 난민인권국가로서 위상 제고

4) 사회기여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이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기존 택배 배송을 우체국 등기우편 방식으로 변경한 외국인등록증 배송체계 개선

5)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국가성장 동력 확보 필요 및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의 중요성 대두 등 변화하는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 마련

제 2 절 기 구·인 원

제 1 항 본 부

1. 기 구

본부 기구는 2013.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9관 1단 44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검사,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법조윤리시험 관장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 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선진화과, 보호법제과, 소년과, 보호관찰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행정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및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보호소년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학과교육, 성격 교정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결정을 하며,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출소자 및 퇴원생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숙식제공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업무와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지원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에는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인권옹호와 관련한 각 부처간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 국가인권정책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내 여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의 개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를 두고 있으며, 교정행정 종합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도작업 기획 및 운영 업무, 취업, 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교화 기획 업무,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교육·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교정관련 법령 정비,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통합정책단, 출입국정책단,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를 두고 있으며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정책의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본 부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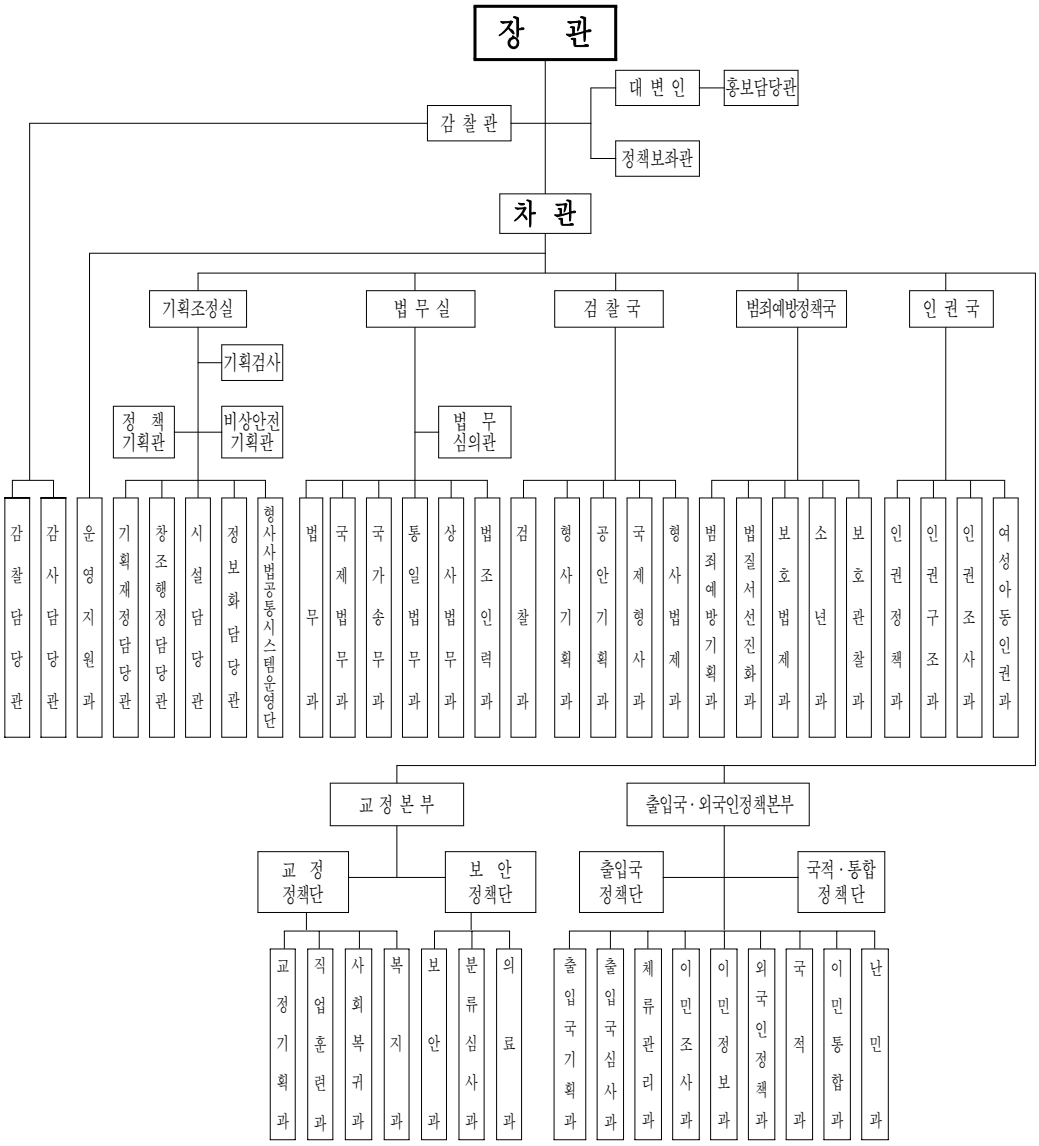

2. 인 원

정부3.0 추진, 협업과제 수행 인력, 성폭력 예방・재범방지 내실화를 위한 필요 인력, 「난민법」 시행에 필요 인력 등 26명을 증원하고, 통합정원제도 운영 및 기타 법무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9명을 감축하여 2013. 12. 31. 현재 본부 정원 647명 및 현원 644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2>와 같다.

〈표 2〉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정원	647	2	64	581
현원	644	2	70	572

제 2 항 산하기관

1. 검찰청

가. 기 구

검찰기구는 2013.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0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청 조직은 <표 3>과 같다.

〈표 3〉 검 찰 청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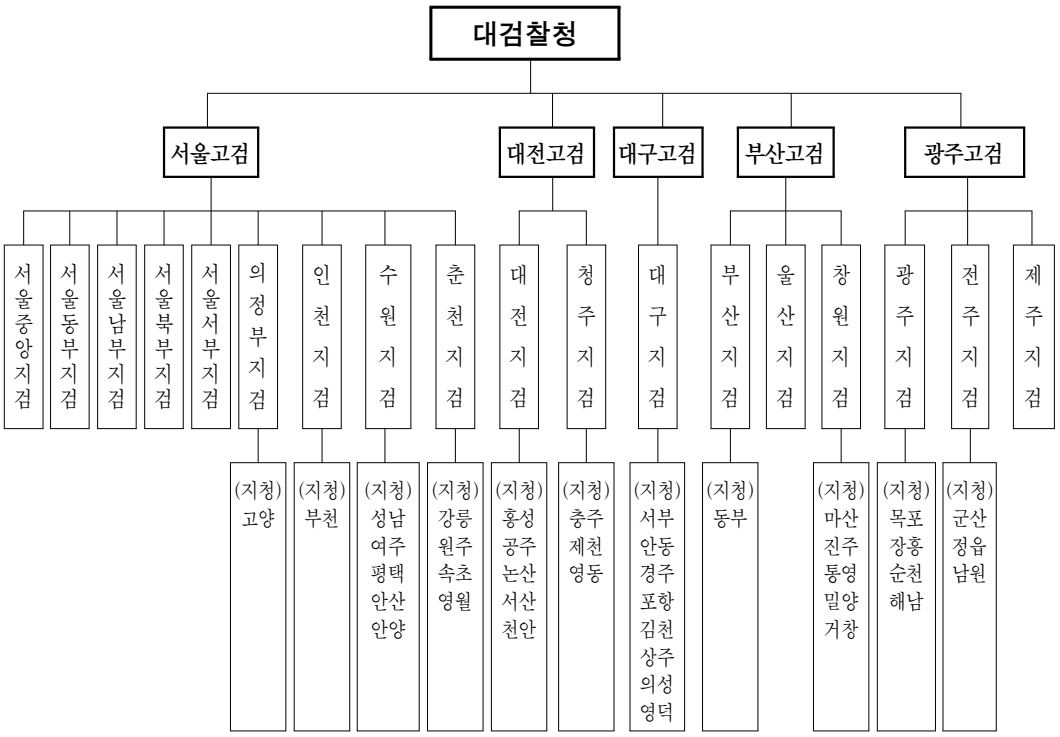

나. 인 원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2013. 4. 18. 개정)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등 4개 직위를 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보하였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2013. 11. 29. 개정)에 따라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장, 수사기획관, 중앙수사제1과장, 중앙수사제2과장, 첨단과장 등 5개 직위를 폐지하고, 반부패부장,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등 3개 직위를 신설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 업무 보강을 위하여 특별수사제4과장 등 1개 직위를 신설하였다.

2013. 12. 31. 현재 검찰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표 4> 내지 <표 6>과 같다.

〈표 4〉 검찰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별정직
인 원	9,812	1,942	7,869	1

〈표 5〉 검사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1,942	1,807
검 찰 총 장	1	1
고 등 검 사 장 급	7	7
대 검 검 사 급	33	31
검 사	1,901	1,768

〈표 6〉 검사 외의 검찰청 공무원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7,870	7,943
고위공무원단	25	23
검찰부이사관	15	14
검찰수사서기관	177	158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334	335
검찰주사	1,351	1,359
검찰주사보	1,531	1,521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6
검찰서기	975	989
검찰서기보	887	962
마약수사직	256	270
전산직등	245	241
운전직	273	273
방호직	157	157
위생직	3	3
관리운영직	1,571	1,571
연구직	37	37
전문경력관	4	3
별정직	1	1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13.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8>에서 <표 10>과 같다.

〈표 7〉 보호관찰 · 소년보호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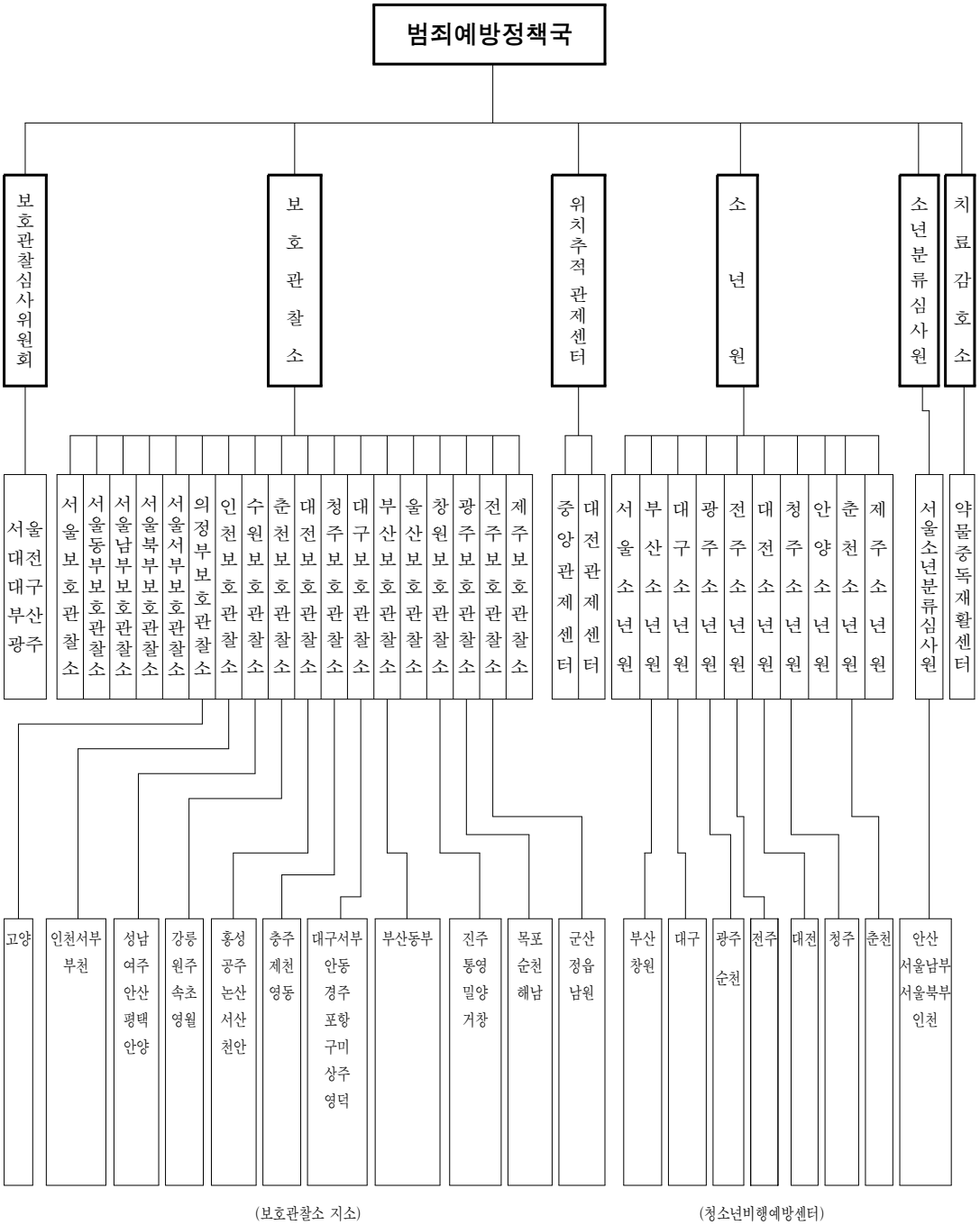

〈표 8〉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534	1,407
고위공무원단	1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4
서기관	28	26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5	5
보호사무관	185	178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244	240
전산주사	1	1
보호주사보	323	313
보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3
보호서기	339	339
보호서기보	304	203
운전서기보	63	62
방호서기보	17	15
전기운영서기보	1	1
기계운영서기보	6	6
열관리운영서기보	3	3
사무운영서기보	1	1
별정직	5	5

〈표 9〉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790	757
고위공무원	2	2
서기관	15	15
기술서기관	9	9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9
보호사무관	40	36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	2
의무사무관	6	6
보호주사	78	80
간호주사	3	3
시설주사	1	1
전산주사	1	1
보호주사보	144	144
간호주사보	12	11
전산주사보	1	1
의료기술주사보	1	1
보호서기	146	146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보	144	110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
식품위생서기보	4	4
관리운영직군	139	145
전문경력관	20	20

〈표 10〉 치료감호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356	339
고위공무원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3	10
보호사무관	1	1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의무사무관	2	1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1	1
보호주사	1	1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4
약무주사	1	1
간호주사	18	18
보건주사	4	4
의료기술주사	2	2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5	5
약무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35	33
보건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보호서기	5	5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1	1
간호서기	35	31
간호조무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3	3
식품위생서기	-	1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1
식품위생서기보	1	1
운전서기보	3	3
간호조무서기보	126	124
조리서기보	18	17
방호서기보	14	14
관리운영직군	15	16
전문경력관	17	14

3. 교정기관

2013.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하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5,973명이며, 2013. 12. 31. 현재 15,476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산하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1〉 교정기관 조직도

〈표 12〉 산하기관 교정공무원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5,973	15,476
고 위 공 무 원	19	17
부 이 사 관(교정)	6	6
서 기 관(교정)	89	86
교 정 관	312	291
교 감	1,427	1,399
교 위	1,793	1,674
교 사	5,389	5,142
교 도	5,850	5,830
의 료 직	248	225
식 품 위 생 직	54	52
기 술 직 · 기 타	113	103
운 전 직	263	254
전 문 경 력 관	119	119
관 리 운 영 직	289	278
기 록 연 구 사	2	-

4. 출입국관리기관

2013.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기관은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2개 외국인보호소, 1센터 및 21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1,800명이며, 현원은 1,821명이고, 세부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3〉 출입국관리기관 조직도

(19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센터, 21개 출장소)

〈표 14〉 출입국관리공무원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800	1,821
고위공무원	3	2
부이사관	2	2
서기관	24	22
출입국관리사무관	70	81
출입국관리주사	275	255
출입국관리주사보	467	463
출입국관리서기	523	523
출입국관리서기보	325	366
전산직	30	29
의무직	3	3
간호직	2	2
관리운영직군 등	76	73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로스쿨 지원·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대외협력단,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2013.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법무연수원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05	143
검사	11	19
고위공무원	1	1
서기관·교정감 등	5	5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18	22
행정주사·교감 등	16	24
행정주사보·교위 등	18	30
검찰서기·교사 등	25	35
행정서기보·검찰서기보	11	6
별정직	-	1

제 3 절 예산과 시설

제 1 항 예 산

1. 개 요

2013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인권 보호 강화, 성폭력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 범죄피해자보호시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및 혁신도시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7.2% 증액된 2조 268억 2,400만원, 세출이 4.0% 증액된 2조 6,906억 9,40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684억 1,7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3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예산	세 입	1,890,919	2,026,824	135,905	7.2
	세 출	2,586,375	2,690,694	104,319	4.0
기금	수 입	63,274	68,417	5,143	8.1
	지 출	63,274	68,417	5,143	8.1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세 입	1,848,959	1,903,693	54,734	3.0
세 출	2,451,692	2,590,981	139,289	5.7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세 입	41,960	43,513	1,553	3.7
세 출	41,960	43,513	1,553	3.7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세 입	-	79,618	79,618	순증
세 출	92,723	56,200	△36,523	△39.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세 입	63,274	68,417	5,143	8.1
세 출	63,274	68,417	5,143	8.1

2. 일반회계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3.0% 증액된 1조 9,036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5.7% 증액된 2조 5,909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236조 2,252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8%, 세출이 1.1%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5,909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행정지원이 74.1%인 1조 9,213억 원, 교정활동이 8.0%인 2,090억 원, 검찰활동이 7.6%인 1,969억 원이며, 기타 법무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법무시설조성 등 7개 프로그램이 10.2%인 2,636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계	2,451,692	2,590,981	139,289	5.7
인 건 비	1,654,174	1,751,152	96,978	5.9
기 본 경 비	127,452	129,854	2,402	1.9
사 업 비	614,127	657,411	43,284	7.0
기금전출금	55,939	52,564	△3,375	△6.0

〈표 3〉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계	614,127	657,411	43,284	7.0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1,801	2,927	1,126	62.5
○ 국가배상금지급	20,000	20,000	-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980	1,759	779	79.5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및기업환경개선(ODA)	483	600	117	24.2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3,960	3,960	순증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320	1,515	195	14.8
○ 민상사입법지원선진화(정보화)	518	542	24	4.6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	494	515	21	4.3
○ 사법시험관리	1,690	1,585	△105	△6.2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2,649	2,473	△176	△6.6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947	856	△91	△9.6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정보화)	303	342	39	12.9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241	426	185	76.8
○ 변호사시험합격자실무연수지원	500	475	△25	△5.0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1,305	384	△921	△70.6
○ 법률구조	34,233	36,665	2,432	7.1
○ 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닥터	502	956	454	90.4
○ 인권교육	152	240	88	57.9
○ 법무검찰조직문화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150	150	-	-
○ 이민정책개발지원	393	388	△5	△1.3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1,272	1,572	300	23.6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기획재정 예산계 수치)	20,768	22,571	1,803	8.7
○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2,526	4,753	2,227	88.2
○ 외국인보호관리	8,368	8,005	△363	△4.3
○ 외국인사회통합지원(기획재정 예산계 수치)	1,927	1,748	△179	△9.3
○ 체류외국인동향조사	5,602	6,165	563	10.0

사 업 명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2,463	3,040	577	23.4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5,290	5,252	△38	△0.7
○ 온라인비자추천심사시스템구축(정보화)	313	297	△16	△5.1
○ 검찰청시설운영	30,841	31,430	589	1.9
○ 검찰국외훈련및국제형사협력지원	5,800	6,028	228	3.9
○ 영상녹화등과학수사	7,057	6,546	△511	△7.2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633	659	26	4.1
○ DNA감식국산화및선진화(R&D)	2,000	2,000	-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7,144	27,825	681	2.5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15,449	14,869	△580	△3.8
○ 검찰수사지원	6,722	7,132	410	6.1
○ 수사일반	54,930	58,171	3,241	5.9
○ 공안수사	4,343	5,100	757	17.4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8,036	12,068	4,032	50.2
○ 마약수사	3,656	3,693	37	1.0
○ 공소유지	5,109	5,007	△102	△2.0
○ 형집행	5,151	5,070	△81	△1.6
○ 형사보상	7,972	11,000	3,028	38.0
○ 형사법정비	414	386	△28	△6.8
○ 교도소행정지원	14,132	15,117	985	7.0
○ 교정기관공공요금	49,659	51,149	1,490	3.0
○ 교도소시설및장비운영	31,126	31,828	702	2.3
○ 교정시설현대화	9,078	7,796	△1,282	△14.1
○ 경비교도대관리	705	-	△705	순감
○ 수용관리	91,631	95,232	3,601	3.9
○ 교정교화	6,741	7,962	1,221	18.1
○ 소년원및치료감호소시설운영	2,389	2,280	△109	△4.6
○ 보호관찰소시설운영	3,813	4,981	1,168	30.6
○ 소년원생수용	7,887	9,296	1,409	17.9
○ 청소년비행예방	1,000	4,695	3,695	369.5
○ 갱생보호활동	11,749	12,952	1,203	10.2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3,418	3,315	△103	△3.0

사 업 명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 성폭력범죄자치료재활활동	1,118	1,036	△82	△7.3
○ 보호관찰활동	7,309	8,475	1,166	16.0
○ 특정범죄자위치관리	5,640	6,743	1,103	19.6
○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약물치료	2,532	3,220	688	27.2
○ 법질서바로세우기및법교육활동	4,591	4,412	△179	△3.9
○ 부산솔로몬로파크신축	1,405	-	△1,405	순감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리모델링	3,054	-	△3,054	순감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	6,772	6,772	순증
○ 법무시설및장비관리	10,591	8,478	△2,113	△20.0
○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982	1,220	238	24.2
○ 법무, 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024	957	△67	△6.5
○ 로스쿨지원및국제협력	173	180	7	4.0
○ 법무연수원수입대체경비	395	375	△20	△5.1
○ 로스쿨출신신임검사 교육	1,165	1,036	△129	△11.1
○ 법무핵심리더양성교육(신규)	-	420	420	순증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859	816	△43	△5.0
○ 고객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신규)	-	150	150	순증
○ 정책연구개발사업(R&D)	126	113	△13	△10.3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29,693	31,121	1,428	4.8
○ 서민지원, 따뜻한법치확산	747	722	△25	△3.3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6,948	7,417	469	6.8

〈표 4〉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계	2,451,692	2,590,981	139,289	5.7
○ 법무 활동	33,231	38,359	5,128	15.4
○ 인권 활동	35,037	38,011	2,974	8.5
○ 출입국 관리	48,923	53,791	4,868	10.0
○ 검찰 활동	185,256	196,984	11,728	6.3
○ 교정 활동	203,072	209,084	6,012	3.0
○ 범죄 예방 활동	51,446	61,405	9,959	19.4
○ 법무시설 조성	15,050	15,250	200	1.3
○ 법무 교육 훈련	3,739	4,188	449	12.0
○ 행정 지원	1,819,999	1,921,345	101,346	5.6
○ 기금 전출금	55,939	52,564	△3,375	△6.0

3. 교도작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똑같이 435억 1,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345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6억 8,8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6억 7,000만 원, 교도작업 331억 3,300만 원, 직업훈련 34억 1,000만 원, 시설보완 43억 원, 예비비 20억 원으로 그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계	41,960	43,513	1,553	3.7
교도작업수입	32,200	34,525	2,325	7.2
전년도이월금	9,460	8,688	△772	△8.2
잡 수 입	300	300	-	-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내 역	
			증△감	%		
계	41,960	43,513	1,553	3.7		
기본사업비	650	670	20	3.1	‣ 운영비 등	670
교 도 작 업	30,425	33,133	2,708	8.9	‣ 작업재료비	17,500
					‣ 보상금	11,899
					‣ 수수료 등	3,734
직 업 훈 련	3,480	3,410	△70	△2.0	‣ 훈련재료비	1,740
					‣ 훈련강사료	479
					‣ 공공요금 등	1,191
시 설 보 완	3,100	4,300	1,200	38.7	‣ 공장 개·보수 등	3,100
					‣ 작업장비 구입비	1,200
예 비 비	4,305	2,000	△2,305	△53.5		

4.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은 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 2,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법무연수원 지방 이전 및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97억 원, 시설비 463억 4,1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5,900만 원이 해당된다.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3년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수입 및 지출은 똑같이 684억 1,700만 원이며, 수입은 구상금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23억 9,7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57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211억 1,700만 원,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440억 3,6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10억 6,700만 원, 운영비 4,400만 원, 여유자금 21억 5,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가.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증△감	%
계	63,274	68,417	5,143	8.1
구 상 금	602	300	△302	△5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902	15,720	8,818	127.8
전 입 금	55,770	52,397	△3,373	△6.0

나.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2012 대비		내 역
			증△감	%	
계	63,274	68,417	5,143	8.1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18,826	21,117	2,291	12.2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형사조정 활성화,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6개 사업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36,598	44,036	7,438	20.3	‣ 성폭력피해아동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등 5개 사업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1,067	1,067	-	-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운 영 비	60	44	△16	△26.7	
여 유 자 금	6,723	2,153	△4,570	△70.0	

제 2 항 시 설

1. 개 요

검찰·보호·교정·출입시설 등 각 시설별 사무환경의 특성에 맞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법무시설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재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협소시설 개선 및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법무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 하였다.

새롭게 조성한 청사 등 법무시설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업무수행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친화를 위한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법무시설 사용 및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 국민 편의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청사 전면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 및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기 적용 등 건물 에너지 1등급의 그린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준공사업은 검찰시설인 원주지청 및 공주지청 신축 등 4개 사업과 그 밖에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등 7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계속사업은 울산지검 등 검찰시설 2개 사업과 광주교도소 이전 신축 등 교정시설 4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규사업은 직원 비상대기숙소 확충을 위한 밀양(교) 비상대기소 증축 및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강릉(교) 후생동 이전 신축 등 교정시설 총 2개의 신규사업을 착수하였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634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43.4%, 보호시설에 1.8%, 교정시설에 52.6%, 출입국시설에 2.2%를 집행하였다.

2013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2013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공사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공 사 명		규모(㎡)		소요예산	공사기간
		부지	건물		
준공 (11)	원주지청 신축	19,448	9,750	292	'10.08.~'13.04.
	공주지청 신축	16,055	7,550	246	'11.07.~'13.11.
	부산고검 어린이집 신축	기존부지	945	21	'12.09.~'13.02.
	인천지검 어린이집 신축	기존부지	876	19	'12.09~'13.0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기존부지	992	23	'12.12.~'13.11.
	대구소년원 리모델링	기존부지	1,897	26	'12.11.~'13.08.
	청주소년원 교육관 증축	기존부지	848	11	'12.11.~'13.08.
	청주(교) 의료사동 증축	기존부지	964	14	'12.07.~'13.05.
	해남(교) 비상대기소 증축	기존부지	1,191	22	'12.11.~'13.11.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	31,143	6,625	126	'11.05.~'13.08.
	광주(출) 리모델링	기존부지	2,981	34	'12.09.~'13.09.
계속 (6)	울산지검 신축	38,272	34,123	646	'11.10.~'14.08.
	진주지청 신축	16,018	13,721	328	'11.08.~'14.06.
	상주교도소 신축	198,993	19,972	456	'10.06.~'14.01.
	장흥교도소 신축	162,879	19,861	405	'10.06.~'14.04.
	정읍교도소 신축	112,676	20,139	432	'09.08.~'14.05.
	광주교도소 신축	287,512	49,588	1,147	'10.06.~'14.11.
신규 (2)	밀양(교) 비상대기소 증축	기존부지	1,392	24	'13.09.~'14.07.
	강릉(교) 후생동 이전 신축	기존부지	652	19	'13.11.~'14.11.

제 2 장

업 무 실 적

제 1 절 기 획 조 정 업 무
제 2 절 법 무 업 무
제 3 절 검 찰 업 무
제 4 절 범 죄 예 방 업 무
제 5 절 감 찰 · 감 사 업 무
제 6 절 인 권 업 무
제 7 절 교 정 업 무
제 8 절 출입국 · 외국인정책업무

제 2 장 업 무 실 적

제 1 절 기획조정업무

제 1 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억제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폐지하며,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에서는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정과제를 규제개혁 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였다. 구체적 사례로는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마련,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개인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확대,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 과태료 감경 등을 들 수 있다.

그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회계 기준 마련으로 기존 일반회계 기준의 약 1/10분량으로 회계처리 방식이 단순화되고,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회계업무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의 제공에 의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펀드에 기준 금액을 예치)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으로 금융상품 및 채권에 외국자본 투자가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채무자의 주거안정 및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개인 파산사건의 파산재단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10만 6천여명이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되었고, 조손·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과태료 감경 확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 처한 조손가족에게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사회적 약자 감경 대상자와의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확대하는 등 관광객들의 입국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을 놓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 2 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2013년에는 「국민행복시대 실현 지원」이라는 새 트랜드에 맞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법치사회 창조를 목표로 '업무효율 극대화', '행정서비스 개선', '변화관리 역량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 분야 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소통과 공감의 열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1.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개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제안을 접수한 결과 2013년도 기준 816건의 제도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보호통합지원시스템 개선', '등록외국인 증명발급 절차 개선' 등 140건을 채택하였다.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속기관에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유인책을 시행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 구축, 마을변호사 시행' 등 각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9개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조직문화 향상을 교육 목표로 솔루션 역량강화과정, 소통문화 확산과정, 전화외국어과정, 재충전 감성여행과정 등 3개분야 9개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1,819명의 직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교육방식의 전환(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새로 신설한 교육프로그램(힐링캠프 스트레스 치유과정)의 개설 운영으로 변화관리 교육과정에 대한 법무부 직원들의 새로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러닝, 전화학습, 찾아가는 교육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자 비율이 94%로 나타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업무 및 생활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힐링캠프 스트레스 치유과정이 개발 운영되어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창의역량 제고를 위해 e-learning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영,

리더십, 직무전문, 금융, 정보기술, 외국어분야 등 691여개의 사이버 교육 컨텐츠를 개설하였다. 지난해보다 60여개의 교육 컨텐츠(과목)를 더 개설하여 직원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밖에 지식관리, 정보공개 등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학습동아리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 활동으로 바뀌기 어려운 오랜 관행과 조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신뢰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위와 같은 직장(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사소통 활성화', '비능률적 업무관행 개선', '권위적 조직문화 타파', '직원복지 강화'를 목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더욱 더 활력 넘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직장 내 상하·부서·직원간 소통강화를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봉사활동 강화를 통한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람 있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가.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공무원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시 다면평가 등 주관적 평가요소를 배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14명), 특별승급(5명), 성과급 지급 우대 등을 통해 공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나. 직원 교육훈련 강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신속하게 전파·확산하였으며 변화관리 교육과정, 소통문화확산 교육과정, 재충전 감성여행 교육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직원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3년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목표시간(일반직 1인당 90시간)을 초과달성(102시간)하는 등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가 정착되었다.

다. 적재적소 인사운영 구현

의사·약사 등 특정 직무분야 및 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에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경쟁채용(의사 16명)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제 3 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 정부업무평가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는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그 성과가 점검·평가되고 있다. 2013년도 법무부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국무조정실 특정평가는 국정과제평가, 국정과제 지원평가 부문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부문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자체평가 부문

(1) 주요정책 평가

우리 부 비전인「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 등 6개 전략목표와 '4대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 25개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92개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을변호사' 등 71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우수 2개(3%), 우수 12개(17%), 다소우수 10개(14%), 보통 19개(27%), 다소미흡 11개(15%), 미흡 13개(18%), 부진 4개(6%)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평균 목표 달성률은 147.15%로 지난해 120.73%보다 26.42%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454개 마을에 721명을 위촉, 크고 작은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 구축으로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발생건수와 위반사범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집단행동의 엄단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온라인 홍보 분야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사업 평가

2013 회계연도 일반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재정이 투입된 총 36개 관리과제 사업 중 '보호관찰', '소년보호', '갱생보호', '국제이민협력', '외국인체류관리'등 5개 자율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대상사업 추진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공공의 복지 증진 및 사회 보호, 보호소년들에 대한 교과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인성교육 등 체계적인 교정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지원 , 종합적·중장기적인 이민정책 방향제시 및 연구과제 수행으로 이민행정 개발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허가와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 강제 출국 등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로 실시되었으며,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 유동정원제, 정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지식정부 구현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비율 등 능력개발 활동, 4급 이상 및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북한이탈주민 채용 등 균형인사분야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연근무제 활성화,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 및 개방형 공모직위 운영 성과 등에 있어서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하였다.

정보화관리 부문에서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기반으로 공공정보 개방, 산하기관(공단)까지 법무정보기술아키텍처(EA) 확대 적용,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활동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행정의 비전을 실현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특정평가 부문

(1) 국정과제 평가

2013년도 우리 부 평가대상 국정과제는 ①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우수), ②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보통), ③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우수), ④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미흡), ⑤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보통) 총 5개 과제로 '우수' 2개, '보통' 2개, '미흡' 1개로 평가 되었다.

첫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과제의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행(6월), 검거활동 강화 등으로 성폭력 미검률·재범률을 대폭 감축하였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등록시스템 및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5개소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전담 배치 및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만, 성폭력 성과지표와 국민안전 체감도간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과제는 범죄피해자 전문 심리 치유기관인 스마일센터 2개소 추가설치, 신규예산 확충을 통한 심리치료, 간병비 의료지원 및 취업 등 생활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 지원을 강화하였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사건 진행내역 및 피해자 지원제도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기관과 상관없이 동일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네트워크 확대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과제는 원전비리, 보조금 비리,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CJ그룹 회장 횡령·배임 사건,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 강화 등 사회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고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적 대응을 통해 불법집단행동을 억제하였다. 또한 '헌법교육강화추진단' 구성 및 맞춤형·체험형 온·오프라인 법교육을 확대 보급하여 헌법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법질서 준수의식을 제고하였다. 다만, 불법집단행동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지원반의 실질적 소송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기초연금제도, 전세자금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정책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조성 후 입법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섯째,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과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반부패부 신설 등 특별 수사체계를 개편하였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및 검사장의 보직 및 대우 조정, 파견 검사 감축 등 검찰 인사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검·경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침해사범, 불량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였다. 다만, 검사적격심사의 강화·대검 감찰본부 기능 강화 방안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2) 국정과제지원 평가

국정과제지원 평가는 부처간 협업(우수), 규제 개선(보통), 일자리 창출(미흡), 특정시책 이행관리(우수), 정책홍보(미흡) 총 5개 분야로 '우수' 2개, '보통' 1개, '미흡' 2개로 평가 되었다

부처간 협업 분야에서는 우리부가 협업부처로 참여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과제가 우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유' 과제가 우수 협업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개선 분야는 추진일정 준수 등 규제개선과제 이행실적과 대국민 소통 관련 보도자료 및 성과사례집 등 홍보실적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규제영향분석서 충실성 관련 비용과 편익 분석 등 내용 충실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대표과제인 '출소자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노동부와 협력,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을 확대하였고 전체 취업자 중 단순노무 직종 취업 출소자 비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인당 초과근로시간 감소율',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등 공통지표 실적이 낮아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정책홍보 분야는 주요정책 외신대상 홍보실적 등 대내외 언론홍보 활동, 주요정책 기획홍보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슈대응 신속성·대응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정시책 이행관리 분야에서는 장애인 고용은 법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중소기업 제품 구매율도 법정 의무 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였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전년도 까지 법정구매비율에 미달하였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18.8%나 대폭 상승하여 '우수' 평가를 견인하였다.

다.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계획의 적절성, 운영의 내실성, 평가결과 및 환류의 적정성이며, 법무부는 2013년 평가에서 점검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3개 부(部) 단위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결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신문고 종합평가결과에서 2010~2012년 3년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2013년도에는 종합만족도 78.9점으로 전년도 70.7점보다 향상되었고, 순위도 전년도 34위(미흡)에서 15위 상승한 19위(보통)를 기록하였다. 주요 향상요인은 기관장 등 간부들의 관심과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역할,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처리자세 등으로 분석된다. 평가지표별 실적을 살펴 보면 불만족 민원 추가답변율,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국민신문고 통합운영 정도, 민원신청 접근 용이도는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나, 민원 만족률, 불만족 민원 개선 노력도, 민원·정책 Q&A 표출률, 민원신청 포기율은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법무부는 민원·정책 피드백 전담조직인 행복민원센터를 통해 민원 Q&A 활성화, 선제적 전화서비스(B/S Before Service) 및 추가서비스(A/S, After Service), 불만족 등 고충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지표 향상 및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가. 개 요

법무부는 조직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예산 등에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 12. 본부 및 1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 9.에는 법무부 전 소속기관까지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2차 구축사업을 완료함으로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2008. 7.부터 연차적으로 BSC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자료 저장(BackUp) 서버의 미구축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서버 및 메모리 용량 부족에 따른 사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였다.

나. 추진상황

1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법무부 전 소속기관(검찰청 제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동년 2월 확대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기간 중 성과관리 마인드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과관리 T/F를 구성·운영하고 교육 및 워크숍 6회, 사업보고회 2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업무분석을 통해 조직별 성과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동년 10월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2008년도의 시스템 안정화·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고(엑셀 구현 등 35건) ②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시스템 이중 BackUp 체계 구축 및 D/B·WAS서버용량 확충)한 것이다.

2009년에는 제도 개선 사항(상위조직 점수를 하위조직의 점수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고, 조직평가 시 표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조직평가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 내 각 직렬별(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출입국관리) 개인성과평가 결과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BSC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2011년도에는 법무샘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BSC 성과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였다.

2012년도에는 인사 e-사람 시스템상의 개인별 근무이력을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자동반영하는 등 17개 기능을 고도화하여 BSC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013년도에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833개 부서 약 2만 여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제 4 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1.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 추진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이다. 지시사항에 대한 전달체계 확립, 이행계획 수립, 효율적인 이행 및 실적 등록 등 체계적인 지시사항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 정부 출범이후 2013. 12. 31. 현재까지 총 19건의 지시사항이 시달되어, 7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2. 완료 지시사항(7건)

- ○ 세금포탈 엄벌 관련
- ○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예방 노력
- ○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종합검토
- ○ 주가조작 종합대책 마련
- ○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 독려
-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 ○ 고용률 70% 관련 액션플랜 마련

3. 정상추진 지시사항(12건)

- ○ 사회 4대악 척결

○ 사회복지 분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의 경우 민간부분과 협력방안 검토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원전비리 관련자 책임 소재 규명
○ 성폭력 방지대책 관련
○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개선 관련
○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
○ 공공기관의 국정철학 공유 관련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하반기 예산 집행 관련
○ 원전비리 근절 및 원전 관리, 감독체계 개선
○ 관광산업 육성방안 관련 후속조치 철저

제 5 항 비상대비업무

1. 정부 연습

2013년도 을지연습(8. 19.~22.)은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를 대비한 국가총력전 연습을 실시하였고, 훈련 중 법무부장관 주재 하에 '전시 체류외국인 출국 지원대책(중통단 토의과제)' 등 6개 실·국·본부의 전시 주요현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다.

2. 비상대비 계획 보완

전시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법무집행계획」과 「자체충무계획」을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3. 법무 시설 방호 실태 및 재난 관리 실태 점검

6개 교정시설의 방호 실태와 20개 소속기관에 대한 재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방호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용시설의 화재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 역량을 종합 점검하였다.

4. 재난 대응 훈련 실시

2013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5. 6.~8.)은 '풍·수해 대응 훈련', '화재 대응 훈련', '지진·해일 대응 훈련' 등 3개 분야에 걸쳐 본부 및 전 기관이 참가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고 기관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였다.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예비군 민방위대의 제대 편성과 동원 훈련, 향방 훈련 기본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제 6 항 정보화업무

1.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 수립

2013년은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등 국가 중장기 비전에 발맞추어 우리 부의 새로운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법무행정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새로운 법무정보화 비전인 「디지털 법무 3.0」은 정부3.0 기반 하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법무행정 목표를 보다 과학적이고 지능적으로 지원하는 법무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5대 전략과 68개의 추진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성범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통합 등 사회 안전과 화합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법무행정 지원 시스템 발전전략과 5개년 간의 추진 로드맵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법무 정보화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외 법률·판례 정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등 공개제한 요건이 없고, 민간 활용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여 개방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창조경제에 기여하고, 둘째, 범죄예방, 교정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사회안전 정책을 지원하고, 출입국 심사 등에 기적용 중인 바이오 인식 기술을 확대·발전시켜 법무행정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셋째, 행복민원센터에 신청·처리된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개별적 피드백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시켜 주는 등 국민 맞춤형 법무서비스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통해 중요한 법무행정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좀 더 능동적이고 예방중심적인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준(ISO20000)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조직 프로세스 체계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경직성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성 비용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법무 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은 향후 법무행정 관련 대국민 통합서비스 제공, 인권 사각지대 방지, 범죄예방 사전알림,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감축 등 국민과 현장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최근 국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바, 그 어느때보다 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부의 경우 수용자, 외국인 등의 신상자료와 더불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어 유출 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유·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부는 실국본부의 소관 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권한부여, 이력관리, 접속기록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 내부관리계획에 명시하여 관리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정보의 암호화조치, 보안서버 구축, 공공 I-PIN 도입, DB접근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술적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한편「형사사법공통시스템」,「범죄예방통합정보시스템」,「통합사증정보시스템」등 3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적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우리 부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악성코드에 따른 PC내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망분리, 인터넷 PC 자료저장방지시스템, 망간자료전송시스템, 보안USB시스템, 좀비PC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였다. 특히,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와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보안취약점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기관별로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최종점수 93.6점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온라인민원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한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온라인민원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처음 홈페이지를 방문한 민원인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주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3. 5월 그 간 어렵고 복잡하게 운영되었던 처리절차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안내사항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단행하였는 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을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신청 처리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신청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편, 최초 방문자와 재방문자의 로그인 절차를 분리하여 재방문자의 경우 대상자 재등록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민원시스템 개편은 법무행정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는 바, 2012. 1월부터 시스템 개편 전까지 불편민원(국민신문고, 장관과의 대화 등) 접수 건수가 92건에 달하였으나, 시스템 개선 후부터 현재(2014. 5월)까지 시스템 관련 불편민원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민원의 대폭 감소는 담당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이어져 행정효율성도 대폭 증가되는 등 2013년 법무부 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4. 사이버안전체계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정보 이용 환경 조성

2013년도는 3.20 전산대란 및 6.25 사이버테러로 인해 금융권 전산망이 마비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기능에 주요 위협이 된 최악의 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는 악성코드·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보안취약점을 진단·조치하고, PC, 통신회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출입국심사 업무 등 IT 서비스 이용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테러의 위협적인 DDoS 공격 등을 차단하기 위한 좀비PC 탐지 및 제거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본원인을 예방하였고, 인터넷PC의 주요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PC 자료저장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의 정보보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사례별로 수집하고 예방법에 대한 정보보호 영상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사이버침해 사례 및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일선 기관의 정보보호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법무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직원들의 해킹메일에 대한 경각을 제고하는 등 향후 사이버 공격 및 중요자료 유출 예방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 구축된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민간 주요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조직 운영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처리 등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활용하여 우리 부 '법무사이버안전센터'가 선제적으로 사이버 위협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보보안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매 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7위, 행정안전부의 '대민서비스 수준 진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5.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디지털화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3.0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부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기대효과를 사전분석하여 개방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대상 목록을 조회·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대상이 아닌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방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활한 시행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데이터 보유 부서에는 공공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민간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에도 힘쓰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법무정보, 국·내외 법령·판례정보 등 특정계층 제약 없이 국민·기업 모두가 활용 가능한 정보를 우선 개방하였으며 특히 법령, 판례, 민원, 법제동향 등 종합적인 법제정보를 개방하여 법률정보 포털 서비스업 진출을 유도하였다.

6.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효율적 추진

2013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보자원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정보화를 추진하고 개방·공유·협업·소통의 정부3.0 실현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EA 총괄책임자의 정보화 업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의 정보자원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화사업의 중복·연계·통합 검토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을 개정하여 EA포털시스템을 활용,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서부터 발주정보, 계약정보, 수행정보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정보들을 EA포털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A추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EA 전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EA 포털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및 교육, 홍보등에 전문성을 갖출수 있게 하였고, EA에 대한 개념정리와 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및 EA관리시스템의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EA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EA의 제도적 정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기관 자체 정보화사업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정보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3년도 성숙도 측정결과(4.17점, 중앙행정기관 평균 3.5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획적인 EA 품질 및 성과관리, 기관 업무 전반에 활동하므로써 EA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관리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7. 고품질 우수지식 공유·활용 활성화

2013년에는 지식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고품질의 우수지식을 확보하고, 학습동아리 및 SNS를 활용하여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실국본부별 업무 현실을 고려하여 지식마일리지 BSC 공통지표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장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실적만을 위해 업무와 관계없는 지식 Q&A의 답변 및 댓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무부 지식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형식적인 활동을 원천 차단하였고, 각 실국본부 주무사무관으로 구성된 지식평가 실무협의회의 적극적 활동과, 본부 및 소속기관 전문가 집단인 지식검증자들의 조기 검증을 통해 고품질의 우수지식을 확보하고 직원 간 공유·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활동실적이 저조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토록 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우수지식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인사우대토록 함으로써 지식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지식행정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기관별 우수지식인 및 지식검증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행정 리더역량 강화 교육(5월)을 실시하여 직원 간 소통과 공유를 통한 성과지향적 고품질 지식행정을 추진하였다.

8.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예방 정보화 수준 획기적 향상

2013년도는「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정책국 정보화 업무의 컨트롤타워인「범죄예방정보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정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소년원의 전산실을 통합한「범죄예방정보화센터」는 정보자산의 이중투자 및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범죄예방 정보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개방과 공유의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직원들간 범죄예방 정보의 신속한 통합 조회와 공유, 활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한「범죄예방 협업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 등으로 소년원에 입원하는 경우 보호관찰 담당자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 하였으나, 협업포털시스템에 범죄예방 기관 간 주요 변동정보(14종)에 대한 실시간 자동 알림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SMS(휴대폰 문자)나 쪽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생, 치료감호 대상자의 신상 변동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상자 정보를 조회·관리하기 위해 범죄예방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범죄예방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범운영(2개 기관) 중인 보호관찰키오스크시스템을 전국 1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생활보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출결관리 등 50여개 업무를 무인단말기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각종 종이문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보호관찰대상자 본인 확인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고 내실있는 보호관찰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9.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성 향상

통합국경관리시스템(출국승객사전심사제)은 승객정보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와 법무부가 공유하여 여권문제, 병역문제, 외국인의 체류기간도과 등 출국상의 문제가 되는 승객에게는 여권재발급, 병무청 국외여행신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한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 중인 다른 승객에게 좌석을 배정하여 항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무부 직원에게는 재심으로 인계되는 승객을 줄임으로써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결국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그 목적

이 있다. 이는 승객의 탑승권 발급 가능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 호주나 미국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승객의 탑승권 발급 가능여부 외에 당해 승객의 출국상 문제를 상세하게 응답한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여행에 문제가 있는 승객을 출국심사 이전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재심업무가 50% 정도 감소하여 직원업무가 현저히 경감(종전 1,200건에서 600여건으로 감소)되었으며, 승객의 체크인 정보(항공편명 등)를 사전에 출국심사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출국심사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위변조 여권 소지자 등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4만 6천명의 출국에 문제가 있는 승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출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향후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승객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항공사는 체크인과정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해결하고 정시 항공기 출항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함께 항공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하는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제 7 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1. 개 요

법무연수원은 2013년 교육의 목표를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할 법무·검찰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고, 법무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5단계 검사교육 로드맵을 새로이 수립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력에 따른 역량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각 수사분야별 검사 전문가 과정 및 심화과정을 신설·개편하여 전담업무나 관심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13년 신규 사업으로 '법무핵심리더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법무·검찰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핵심리더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제시형 리더십 함양에 노력하였다. 검사장·차장 등 간부급 검사, 검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교정직 5급 이상 간부 등 법무·검찰의 중견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2013년 총 16개 과정, 2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임검사 등 필수교육에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소명의식 등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과목을 대폭 편성하고 체험형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함과 더불어 국가관·공직관 확립에 기여하였다.

교정현장 근무방식의 팀제운영에 따라 교정현장 역량강화를 위해 「팀제운영전문화과정」, 「교정팀장현장역량강화과정」등을 신설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교육과정을 실무위주 현장교육 과정으로 재설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었으며, 국궁, 프로당구 시연 등 'Fun & Relaxing' 행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교육 집중도를 제고하였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학전문

대학원 출신 제2기 신임검사 37명을 대상으로 원내 교육과 일선청 실무실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직 검사 8명을 선발하여 전국 25개 로스쿨에 파견해 검찰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하였고,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2~3주 과정의 검찰일반실무실습, 검찰심화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검찰실무교재를 인쇄하여 전국 로스쿨에 배포하였다.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법조인 등 초청 연수 과정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후의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험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착, 경제발전을 지원함과 아울러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5월부터 미국 전·현직 검사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미국 형사사법제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검찰청 소속 존 박 검사가 위촉되어 「한국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미국 검사의 관점」을 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매년 정기적으로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하여 형사사법분야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 10월에는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이란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3년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3회에 걸쳐 개최한 세미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언론의 관심을 끌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2. 교육훈련

가. 기본방향

2013년 교육의 목표를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할 법무·검찰 인재 양성」으로, 중점추진 과제를 '법무공무원의 소양·직무전문성 강화, 법질서 가치의 전파와 공유, 국제교류와 협력의 증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나. 교육인원

2013년에는 총 977개 과정 9,229회 176,90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교육인원 165,455명 대비 6.9%(11,450명) 증가한 것으로, 국가송무 ·특사경 사이버 교육실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 세부 추진실적

일선기관 의견수렴,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대검 등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3~5년간의 교과목 편성자료 검토, 세부교육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교과목을 시의성 있게 개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검사장리더십」, 「디지털포렌직」, 「검찰5급승진자」 등 29개 과정을 신설하고, 「의료행정전문화」등 64개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교육 설문 및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26개 과정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 조정하였다.

강의를 전담하는 검사 교수 9명(파견 6명)은 부장검사급 위주로, 일반직렬(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교수 15명(파견 5명)은 5급으로 보임하여 실무 경력과 각 직종별 전문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수요원 역량개발 과정을 총 4회 실시하여 교육훈련 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제고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분기별 교육체제」로 설계하여 단계별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검찰핵심가치, 한국역사와 전통문화, 청렴교육, 동양고전 강독 등 인성·소양교육을 189시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아동·치매노인 보호시설,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등 봉사활동에 28시간을 할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과정 운영·평가·설문·과제 제출 등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교육생 정보포털」 사이트를 신설하여 교육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교육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등 총 43과목 269차시를 제작하였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사이버청렴교육」,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 4개 과정 청렴교육 콘텐츠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65,405명이 과정을 수강하는 등 사이버교육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법무검찰상 구현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법교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 교육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법률', 중소기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 지식 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인 법률소양',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동호인회 활성화에 기여한 맞춤형 '유도·체조교실' 등 5개 교육과정에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표 1〉

(단위 : 명)

구 분					실 적
총 계 (977개 과정)					176,905
기본교육	합 계 (13개 과정)				1,436
	승진자교육	소 계 (10개 과정)			1,096
		사무국장리더십			13
		검찰고공단승진후보자역량			18
		과장(4급)후보자역량			47
		검찰 5급 승진자			57
		검찰 7급 승진자			77
		검찰 8급 승진자			79
		출입국관리직 7급 승진자			24
		교정 6급 승진자(근속)			248
		교정 7급 승진자(일반)			90
		교정 7급 승진자(근속)			443
	신규자교육	소 계 (3개 과정)			340
		보호직특채신규자			117
		신규교정직 7급			29
		신규교정직 9급			194
전문교육	합 계 (32개 과정)				1,231
	검사전문연수	소 계 (13개 과정)			592
		필수교육	신임검사	신임검사오리엔테이션	50
				신임검사전반기	73
				신임검사후반기	73
				신임검사강의준비워크숍	6
				로스쿨출신신임검사	37
			공판기법		44
			진술분석		27
			디지털포렌식		79
			계좌추적·회계분석		76

구 분				실 적
			경력검사핵심	39
			신임부장검사리더십	55
			차장검사핵심	19
			검사장리더십	14
		소 계 (13개 과정)		286
		선택교육	특별수사전문가	21
			공안수사전문가	14
			금융수사전문가	33
			강력수사전문가	19
			첨단범죄수사전문가	21
			보건수사전문가	20
			마약조직범죄수사전문가	22
			환경수사전문가	23
			지식재산수사전문가	24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27
			교통화재등과실사범수사전문가	22
			법의학	21
			조세·관세	19
		소 계 (6개 과정)		353
		기타교육	교수요원역량개발	39
			국외훈련검사사전교육	62
			국가송무(송무검사)	52
			검사직무대리	35
			공익법무관(사연출신)	103
			공익법무관(로스쿨출신)	62
	합 계			6,589
	일반전문연수	소 계 (21개 과정)		776
		검찰직	사무과장직무리더십	14
			수사과장직무리더십	16
			민사법실무	44

구 분				실 적
		교육	사무국주무역량	52
			검찰인권감수성	37
			반부패청렴	56
			선진조사신문기법	57
			선진마약수사기법	23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29
			공안범죄수사실무	19
			공판실무	15
			공판전문화	17
			재산범죄수사실무	76
			지식재산권단속실무	25
			기업금융범죄수사실무	57
			환경보건사범수사실무	30
			사이버범죄수사역량향상	60
			수사기법	31
			재산형집행실무	50
			검찰실무관	48
			국가송무실무(검찰일반직)	20
		소 계 (31개 과정)		989
		보호직교육	보호직고위관리자	12
			보호관찰관리더십역량향상	28
			보호관찰조사핵심인력양성	27
			보호관찰변화촉진상담	29
			보호관찰재발방지기법	30
			전자감독대상자관리기법	32
			범죄심리검사초급	46
			범죄심리검사중급	46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강사향성(B/L)	27
			보호관찰조사실무(B/L)	64
			보호관찰전입특별교육(B/L)	58

구 분				실 적
			수강명령강사양성(B/L)	58
			보호관찰제재실무	30
			보호관찰사범별지도감독	33
			사회봉사명령집행실무	29
			수강명령집행실무	31
			보호관찰실무기본(B/L)	30
			소년보호리더십역량강화(B/L)	13
			소년보호전입특별교육	39
			심리검사일반	30
			분류심사(B/L)	21
			심리치료심화	20
			사회정착지원역량개발	20
			피해상담전문가(B/L)	44
			담임역량개발강화	19
			교수학습지도역량강화(B/L)	20
			생활지도실무(B/L)	21
			인성교육운영실무	18
			보호직인권감수성	45
			상담심리기본	25
			성폭력예방전문지도자양성	44
		소 계 (16개 과정)		445
		출입국관리직교육	출입국관리행정세미나	22
			출입국관리자역량강화	19
			이민자사회통합정책	20
			난민심사관양성과정(B/L)	20
			초급중국어실무(B/L)	19
			출입국인권감수성	40
			소송수행실무	40
			중견실무자역량강화	41
			출입국심사실무(B/L)	22

구 분				실 적
			사증체류실무(B/L)	20
			출입국사범보호실무(B/L)	19
			국적실무(B/L)	20
			외국인동향조사실무	39
			출입국사범수사실무	20
			위변조감식전문	30
			이민정책이해	54
		소 계 (53개 과정)		4,311
		교정직교육	가석방심사실무	55
			교정관리자리더십	119
			교정기관장후보자	10
			교정위원전문교육	73
			기능직실무	40
			기동순찰팀직무교육	60
			내부강사양성	29
			예산관리실무	81
			분류심사실무	49
			사회복귀실무	73
			상담심리실무	75
			성폭력사범교육강사양성	34
			소송실무전문화	92
			웃음치료	80
			인권감수성훈련	180
			인원감수성훈련내부강사양성	55
			전산실무(엑셀)	90
			전산실무(파워포인트)	87
			특별사법경찰전문화	79
			교도작업운영	80
			간호실무	49
			검도지도자	30

구 분				실 적
			유 도 지 도 자	30
			태 권 도 지 도 자	32
			교 정 민 원 실 무	92
			교 정 교 수 요 원 역 량 강 화	21
			교 정 현 장 역 량 강 화 (8 · 9 급)	354
			교 정 현 장 역 량 강 화 (7 급)	433
			보 안 팀 장 역 량 강 화	116
			보 안 팀 장 역 량 강 화 (통 합)	86
			교 정 식 품 영 양 관 리	48
			비 움 과 채 움	60
			팀 제 운 영 전 문 화	235
			의 료 실 무	50
			의 료 행 정 전 문 화	49
			취 업 창 업 전 문 요 원 양 성	80
			교 정 팀 장 리 더 십	36
			교 정 현 장 업 무 지 원 R & D	57
			도 서 관 리 프 로 그 램 운 영 실 무	61
			마 약 류 사 범 처 우 전 문 화	79
			수 용 관 리 자 리 더 십	244
			보 안 실 무 7 급 (통 합)	65
			기 록 물 관 리 실 무	38
			분 류 심 사 실 무 6 급 (통 합)	78
			분 류 심 사 실 무 7 급 (통 합)	53
			사 회 복 귀 실 무 6 급 (통 합)	79
			사 회 복 귀 실 무	50
			수 용 기 록 실 무	40
			전 자 경 비 보 안	51
			인 사 기 획 실 무	40
			응 급 구 조 실 무	48
			재 난 및 방 화 관 리 전 문 화	50

구 분				실 적
			직업훈련전문화	36
	소 계 (2개 과정)			68
		전직렬 공통	교수요원역량개발	39
			기능직	29
기타교육	합 계 (20개 과정)			2,244
	민간인		국가송무(소송수행자)	453
			특사경수사실무(기초)	716
			특사경수사실무(심화)	110
			기업인법률소양	70
			어린이법교실	54
			쉽고재미있는생활법률	32
			지역주민유도교실	59
			지역주민체조교실	39
			로스쿨일반실무실습	395
			로스쿨심화실무실습	179
	외국인	국제연수 10개 과정		137
사이버교육	합 계 (789개 과정)			165,405
	검 사	성폭력수사실무 등 195개 과정		1,921
	일반직	강력사건과 법의학 등 431개 과정		46,272
	교정직	교정관계 판례연구 등 161개 과정		56,780
	기 타	특사경 e-러닝과정		4,735
		국가송무과정		55,697

3. 연구활동의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부분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용역과제는「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로스쿨 신임검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등 법무·검찰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 11건을 엄선하여 추진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물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연구위원들의 자체연구 성과로서「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원정시위의 실태와 사회갈등의 평화적 해결」주제로 총 3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무·검찰 제도와 실무에 필요한 중점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희진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제 인신매매 처벌 관련 세미나는 개정된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신설을 계기로 성매매 또는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정상환 연구위원이 수행한 역외탈세 관련 세미나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선진 경제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역외탈세' 문제를 주제로 관련 각 부처와 학계,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민영선 연구위원이 수행한 원정시위 관련 세미나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사회 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다루어 정부 부처와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법무연수원은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범죄방지에 기여하고자 1984년 이래 해마다 범죄의 발생에서부터 범죄자의 처리 및 관리에 이르는 범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범죄백서」를 발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범죄백서(제30호)는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30년간의 전체 범죄와 최근 10년간의 중요범죄에 대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추이와 사건처리 경향, 범죄자 처리방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였으며, '12. 3. 15.자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지식재산권범죄의 최근 동향 및 대책」이라는 특집편을 마련하였다.

국외훈련검사에게 배정할 연구과제를 법무부·대검·검찰전문지식연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184건을 발굴, 그 중 법무·검찰에 필요한 연구과제 130건을 선정하여 국외훈련검사에게 73건을 배정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당해 연구과제에 적합한 지도관, 분임지도관,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고 국외훈련검사의 연구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981질(2,943부)을 발간·배포하였다.

4. 국제교류의 활성화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 현재까지 61개 과정, 84개국, 934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중남미(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졸업생 및 법조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현지컨퍼런스', '동창회'를 개최하여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외국 법무연수기관과 교류 협력에도 노력하여 2013년 9월에는 대만 사법관학원장이 내방하였으며, 같은 달 프랑스 파리지방법원 판사 1명을 대상으로 2주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2013년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연수과정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순번	과 정 명	연수기간	대 상 자
1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행정	3.14. ~ 3.29.	인도네시아 출입국 공무원 15명
2	SICA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4. 4. ~ 4.24.	중미연합 법조인 8국 16명
3	출입국관리행정	5. 2. ~ 5.17.	중남미 출입국 공무원 3국 12명
4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6. 2. ~ 6.22.	5개국 20명 법조인
5	몽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7.28. ~ 8.10.	몽골 검사 10명
6	필리핀 출입국관리행정	8.29. ~ 9.13.	필리핀 출입국 공무원 12명
7	몽골 과학수사 역량강화	10. 3. ~ 10.19.	몽골 검사 및 수사관 11명
8	콜롬비아 출입국관리행정	10.24. ~ 11. 9.	콜롬비아 출입국 공무원 15명
9	베트남 출입국관리행정	11.10. ~ 11.30.	베트남 출입국 공무원 16명
10	라오스 출입국관리행정	11.28. ~ 12.11.	라오스 출입국 공무원 10명

제 8 항 홍보업무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현대사회의 급격한 정보매체 환경 변화로 국민과 정부간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뉴미디어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홍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정책블로그를 운영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더욱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게이트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에 앞장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법무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대검·서울중앙지검 등의 공보 담당자들과 정보 공유를 정례화하고, 수동적 취재 협조보다 기자단과의 상시 접촉을 통해 관심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토론방, SNS, 팟캐스트 등 온라인상의 검색어 순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관련부서에 전파, 조기 대응하도록 하였다.

언론대응 절차를 정비하여 문제기사 보도 즉시 해당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사실 확인 후 해당부서와 대변인실이 협의하여 대응 수위 및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공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부서가 기자의 취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응대 전에 대변인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방침을 정해 응대하고 응대 후 내용은 대변인실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기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법률제도, 절차, 연혁 등에 관한 취재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적시에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보 및 왜곡보도를 방지, 업무 효율 제고, 법무부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기관장과 실·국·본부장이 주재하는 법조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입기자를 상대로 정책 설명회, 간담회, 현장 투어를 적극 실시하였다.

3. 기관장의 언론 소통 활동 강화

기관장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출연 및 언론 인터뷰,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언론 간담회 8회, 인터뷰 9회를 실시하였다.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가.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고, 뉴미디어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이 국민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되었고, 각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SNS는 국민여론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네이버 지식 iN「법, 법률」코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네티즌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등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Daum·Naver(행복해지는법), 정책 블로그와

함께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유튜브를 통해 국민, 특히 온라인 세대와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 정책 블로그인 「행복해지는 법」은 2010년 이후 연속으로 포털 Daum의 우수 블로그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앱을 통한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앱인 '로앤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앤톡'의 게시판 기능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며, 퀴즈게임, 동영상, 웹툰 등 정보와 재미를 겸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다.

나. 정책 블로그 기자단 및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운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법무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SNS을 통한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과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하였다. 초, 중, 고, 대학생, 직장인 및 주부로 구성된 74명의 정책 블로그 기자단과 41명의 법무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은 행사 및 기획취재, 인터뷰 등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과 UCC제작 등을 통해 560건에 이르는 콘텐츠를 생산하였다.

5. 주요 홍보활동 실적

대변인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2013년에는 기자 브리핑 19건, 인터뷰 19회, 보도자료 배포 283회, 홍보메일 발송 477건 등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에 적합한 사진·동영상·웹툰·인포그래픽·페이퍼웍스 등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블로그·SNS·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변화된 법무·검찰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3〉 2013년도 장관 인터뷰·대담 현황

연번	월 일	홍보매체	주 요 내 용
1	4. 5.	YTN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법무정책 추진방향
2	4. 9.	mbn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
3	4. 10.	KBS라디오	법질서 확립과 공정한 법집행 방안 등
4	4. 18.	중앙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등 법무정책 추진방향
5	4. 23.	문화일보	검찰 개혁 및 4대악 척결방안 등
6	4. 25.	jtbc	제 50회 법의 날 기념, 2013년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7	5. 20.	SBS	검찰 신뢰 회복 방안 및 법무정책에 '창조' 접목계획
8	6. 21.	한국경제	취임 100일 소감 및 법무부 현안 및 애로사항
9	8. 22.	조선일보	헌법의 정신과 가치의 의미 및 상설특검 관련

〈표 4〉 2013년도 보도자료 배포현황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	1. 3.	리우치앙 범죄인인도 관련
2	1. 4.	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 활짝 열려!
3	1. 7.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4	1. 10.	경기대 이백철 교수,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장 취임
5	1. 15.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및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공조강화를 위하여 출국
6	1. 16.	'임대 보증금 상한제', '소액임차보증금 예탁제도' 보도관련 해명
7	1. 18.	법사랑 사이버랜드 '법률신문' TOP 기사!
8	1. 23.	전자발찌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입장 및 향후 조치방안
9	1. 25.	보호직 공무원 인사
10	1. 29.	법무부, 포항교도소에서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식 및 제1회 전국 수형자 합동콘테스트 개최
11	1. 29.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실시
12	1. 2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을지대와 업무협약(MOU)체결 예정
13	1. 31.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공포"
14	1. 31.	법무부, 민법개정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법무부 민법총서」 시리즈 발간
15	1. 31.	범죄피해자의 희망을 굽는 「굽네치킨 스마일점」 개업식
16	2. 1.	교정공무원 인사
17	2. 6.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18	2. 7.	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퇴거 조치"
19	2. 7.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20	2. 7.	'교도소 담장 안의 따뜻한 설 풍경'
21	2. 13.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22	2. 13.	론스타 제기 중재재판 우리측 중재인 신청
23	2. 13.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탁월! 학생·교사들로부터 큰 호응
24	2. 13.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내정 소감
25	2. 14.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병역 및 석사 논문 관련 설명
26	2. 15.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용인 아파트 관련 설명
27	2. 18.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파트 전입 관련 설명
28	2. 19.	법무부-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희망 프로젝트' 사업 실시
29	2. 19.	'인천 월세 갈등 살인사건' 보도 관련 해명 자료
30	2. 22.	2013년 상반기 검사 인사
31	2. 27.	사법연수원 42기 45명, 경력변호사 5명 신임검사 임관
32	2. 2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33	3. 6.	인신매매범죄 더 이상 발붙일 공간이 없다!
34	3. 6.	한국 검사, IOC·UNODC 주최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에서 수사사례 발표
35	3. 11.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사
36	3. 11.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사
37	3. 15.	법무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로 첫 대외 업무 시작
38	3. 15.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 -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으로
39	3. 19.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40	3. 20.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41	3. 20.	법무부, 2012년 법무부 여성 통계(7호) 발간
42	3. 21.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시행
43	3. 27.	법무부장관, 언론사·대북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신속·철저 대응 지시
44	3. 27.	국가의 인권정책 이행상황, 국민이 직접 점검합니다.
45	3. 28.	법무부「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서 무료 공개
46	3. 28.	황교안 법무부장관, 전자발찌관제센터 방문을 통해 성폭력 근절의지 강력 표명
47	3. 29.	학교폭력 문제, 현장에서 민・관이 같이 해답을 찾다
48	4. 2.	법무부,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 추진
49	4. 3.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50	4. 5.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여는 법무행정'
51	4. 5.	검찰 고위 간부 인사
52	4. 8.	게임하GO! 공부하GO! 민주시민되GO! 헌법 게임으로 신나게 배우는 法
53	4. 9.	이태원 도심난동 사건 주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54	4. 9.	법무부장관, 피해자 배려 수사로 10년전 성폭행범을 밝혀낸 '인권검사' 특별격려
55	4. 10.	'교도소 면회, 이제는 집에서 한다!'
56	4. 11.	『내부고발 교도관, 동료들에겐 왕따 법무부선 해임』 보도에 대한 해명
57	4. 12.	국민행복, 희망을 여는 교정행정
58	4. 12.	"수용자 자살률이 높다고요?"
59	4. 15.	법무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대폭 낮춘다
60	4. 15.	법무부,「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손수제작물(UCC) 공모전」개최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61	4. 17.	'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62	4. 18.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63	4. 18.	2013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64	4. 19.	2013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65	4. 23.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성과, 국민이 함께 평가합니다.
66	4. 25.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67	4. 26.	법무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관광외국인에게 무사증입국 허용
68	4. 26.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69	4. 30.	이번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처벌법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님
70	5. 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71	5. 2.	법무부, 시민단체 대표자 초청 수용자 사회복귀지원정책 간담회 열어..
72	5. 2.	법무부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달려가다!!
73	5. 2.	젊음의 5월! 열정의 준법맨들이 모이다!
74	5. 2.	법무부, 투자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익사업투자자에게 영주권 부여
75	5. 3.	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6	5. 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77	5. 3.	법무부,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 활성화로 체류·국적 관련 민원 적극 해결한다
78	5. 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79	5. 7.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80	5.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81	5. 8.	법무부 장관의 농촌사랑 사회봉사 지원 활동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82	5. 10.	정책을 만드는 데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83	5. 13.	5월 13일부터 제주 입국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84	5. 13.	법무부,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
85	5. 13.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전국 첫 시행
86	5. 13.	법무부, 독일 前 연방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예정
87	5. 14.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88	5. 15.	소년원학생, 검정고시 합격으로 기쁨UP, 희망UP
89	5. 16.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해 4대악 근절에 헌신한 교도관 등 포상
90	5. 20.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대상 인질강도사범 국내 송환
91	5. 20.	"결혼이민자를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
92	5. 21.	'법무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업무 중복 우려' 보도에 대한 해명
93	5. 23.	멘토와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94	5. 23.	법무연수원에 울려 퍼진 희망의 하모니
95	5. 24.	'학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운다'
96	5. 24.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97	5. 27.	"학교폭력 stop! 학생위험 zero!"
98	5. 27.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한국의 국제중재 허브 시대를 열다!
99	5. 28.	법무부,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지원 위해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100	5.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1	5. 29.	청주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102	5. 29.	"법무부, 중소기업 지원 앞장선다"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03	5. 30.	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104	5. 30.	“우리헌법에서 행복 열쇠를 찾았어요!”
105	5. 31.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무행정 펼친다
106	6. 3.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7	6. 3.	교정공무원 인사
108	6. 3.	서민들의 지킴이,「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발간
109	6. 5.	무변촌 마을변호사 제도 출범
110	6. 5.	키르기즈 공화국과 법무협력협정 체결
111	6. 11.	인천지검 봉사단과 여주교도소 봉사회, 올해의 사회 봉사 우수단체로 선정
112	6. 11.	법무부,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공모전」시상식 개최
113	6. 12.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정교화프로그램 개발 추진
114	6. 12.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115	6. 13.	교도관 무술 대축제, 무술지존을 가리다!
116	6. 13.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117	6. 14.	법무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8	6. 14.	“이사회 감독기능과 소수주주권 강화한다”
119	6. 17.	2013. 6. 19.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 - 60여년 만에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폭력범죄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대폭 강화 -
120	6. 18.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21	6. 19.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의 코리안 드림 - 법무부, 보은차원에서 참전용사 후손들의 국내취업 등 국내체류 적극 지원 -
122	6. 20.	법무부, 방문취업 중국 동포 전산추첨으로 7만 명 선발
123	6. 21.	교도소에 울려 퍼진 “사랑의 리퀘스트”
124	6. 21.	전국 소년원학교 IT TOP을 가린다!! 『푸르미 ITeen TOP 경진대회 2013』 개최
125	6. 21.	내 형사사건?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 법무부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오픈 -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 가능
126	6. 24.	중미국가에 법무한류의 수출 토대 마련 - 한-중미 9개 국가 교정분야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
127	6. 26.	2013년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
128	6. 27.	『부동산 투자이민 모든 구역 확대』 보도에 대한 설명
129	6. 28.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제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적극 동참하다!
130	6. 28.	교정공무원 인사
131	6. 28.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132	7. 1.	「제2회 우수 인권검사·수사관」선정
133	7. 3.	담장 안에 스며든 “인문학의 향기” -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무부-서울대 업무협약(MOU) 체결
134	7. 3.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받는다 - 법무부·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
135	7. 4.	‘돈 없으면 귀화 NO···벽 높은 다문화 코리아’ 보도관련 설명
136	7. 5.	마을변호사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7	7. 5.	“수용자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수용자진료 지원업무협약 체결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38	7. 9.	한국어 실력도 쑥쑥! 한국 생활의 만족도 쭉쭉! - '1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조사 -
139	7. 9.	법무부장관, 「일일 법률홈닥터」가 되다.
140	7. 10.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 국민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
141	7. 10.	ASEAN 10개국 초청 『아·태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개최
142	7. 12.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뭐예요?" - 황교안 법무부장관, 제헌절을 앞두고 모교(봉래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의 -
143	7. 16.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144	7. 1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145	7. 17.	결혼이민자의 행복한 출발에 동행하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피드백을 위해 수원사무소 방문
146	7. 18.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147	7. 18.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시행
148	7. 19.	'물살에 휩쓸려간 다문화 신혼 단꿈' 보도관련 설명
149	7. 19.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지침,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에서 답을 찾다. -
150	7. 25.	검찰직 공무원 인사
151	7. 25.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152	7. 25.	법무부 행정직 인사
153	7.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시행 - 희망교정을 통한 국민행복! 교정동우회가 함께 합니다! -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54	7. 30.	『부동산 투자이민 지역 늘린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55	7. 30.	홍콩 입경사무처와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MOU 체결
156	8. 1.	7월 인천공항 이용 출·입국자 사상 최대... 331만 명 기록 - 인천공항 개항 이래 월평균 최대치 갱신 -
157	8. 2.	'차명부동산 실명전환때 과징금 감면'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58	8. 2.	통일대비 법제연구와 관련한 법무부 해명
159	8. 5.	"관광은 뒷전, 마사지하면 큰 돈 된다?" -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 관광객 고용 마사지 업소 대거 적발 -
160	8. 6.	'7번방, 화상으로 만나다' - 법무부 교정본부,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시행 3개월 -
161	8. 7.	보호직 공무원 인사
162	8. 8.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제6기 어린이 법교실 캠프」 개최
163	8. 9.	중국·동남아 해외 관광객, 한국 입국 쉬워진다 - 법무부, 9. 1. 부터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164	8. 9.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독립유공자 후손 17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
165	8. 12.	임차인보호 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166	8. 13.	8.15. 가석방,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 법무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 시행 -
167	8. 14.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168	8. 14.	법무부장관, 수용자 교화에 정성을 다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권교도관」 특별격려
169	8. 16.	통일법무 DB시스템 오픈 - 통일법무자료의 편리한 검색, 『정부 3.0』 시책에 따른 원천 데이터 개방 -
170	8. 19.	2013년 하반기 검사 인사
171	8. 20.	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 추징금 미납자 재산추적 강화 법안 입법예고 -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72	8. 20.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 “훈련도 실전처럼, 교도소 테러 대비 이상 무!” -
173	8. 21.	부실 공증인·공증사무소 정직 등 징계 강화 -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
174	8. 22.	법무부장관, 비행소년 지도에 정성을 다한 「인권 보호관찰관, 인권 소년보호교사」 특별격려
175	8. 22.	「통독 과정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 심포지엄 개최
176	8. 26.	법무부·한국무역협회,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7	8. 27.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178	8. 28.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질화 방안’시행 관련 워크숍 개최
179	8. 29.	법무부장관,「우수 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180	8. 29.	소년원학생 인문학 교육지원을 위한 사랑의 도서기증!!
181	8. 29.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실시
182	8. 30.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183	8. 30.	법무부 교정본부·UN스포츠닥터스, 수용자 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184	9. 2.	美 버지니아 州 상원의원 내한, 서울소년원 방문
185	9. 3.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 벌금 분납 대상 확대 및 납부 기한 횟수 연장
186	9. 4.	국회의원 박민식,「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 기부
187	9. 4.	「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 보도 관련 설명
188	9. 5.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189	9. 5.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 개최
190	9. 6.	「3개월 동안만 한국국적 포기 허용한 건 위헌」 보도 관련 설명
191	9. 9.	법무부와 농협,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개최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192	9. 10.	황교안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및 밀양희망센터 개소식 참석
193	9. 11.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 가능”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194	9. 12.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째 뽑는다. - 불법사금융, 9.12~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
195	9. 12.	부처협업을 통한 교육장·학교장 연수로 학교폭력 예방 나서 - 교육부, 법무부·대검, 여가부, 산림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응역량 강화 연수 실시 -
196	9. 13.	2013년 제4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197	9. 17.	전국 교정기관 추석맞이 교화행사 시행
198	9. 24.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상화
199	9. 24.	‘헌법가치 확산 및 법질서지키기 정착’을 위한 「헌법아! 놀자」 책자 발간
200	9. 24.	아시아 중재허브 도약을 위한 중재법 개정방향 모색 - 해외 각국의 중재법 개정현황 및 중재기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
201	9. 25.	『‘인권’마저 구금당한 재소자들』 보도에 대한 해명
202	9. 25.	이제 검찰조사방식이 인권친화적으로 달라집니다.
203	9. 26.	2013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4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
204	9. 27.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 -
205	9. 30.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206	10. 1.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심포지엄 개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조성 방안 모색 -
207	10. 7.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208	10. 8.	법무부,“국가유공자 등 출입국증명발급 수수료 면제”시행
209	10. 10.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210	10. 11.	“꿈과 희망의 나눔, 기쁘지 아니한가!” -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211	10. 11.	원주보호관찰소 관련 설명자료
212	10. 11.	변호사시험, 이제 지방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법무부,‘2014년도 변호사시험 대전지역 확대실시’ -
213	10. 11.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세계인이 함께 걷다’ - 제3회 한마음 걷기 축제 -
214	10. 11.	“법대로 하자고? 이젠 겁나지 않아요” 제12기 기업인 법률강좌 개최
215	10. 11.	이번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은 번역문 인증시 자격있는 실제 번역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역자격의 인정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한 것입니다
216	10. 1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17	10. 15.	법무부 장관, 수확의 현장에서 농촌일손돕기 참여 - 여주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고구마 수확 봉사활동 -
218	10. 15.	필리핀 한인 연쇄 납치사건 주요 피의자 최세용 송환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219	10. 17.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교정동우회의 힘찬 출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창립 기념식
220	10. 22.	중국인 입국자 처음으로 300만 명 넘어, 일본 제치고 1위 질주 - 전체 외국인도 작년 동기보다 4.7% 증가한 805만 명 입국 -
221	10. 23.	국정원 댓글 사건 사법공조 보도 관련 설명자료
222	10. 23.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포럼 개최
223	10. 24.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224	10. 25.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희망교정, 교정교화의 새길을 개척하다
225	10. 25.	『대전(교) 정명석(JMS교주)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
226	10. 25.	“10월의 어느 멋진 날, 교도소에 울려퍼진 사랑의 하모니”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227	10. 28.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들 소년원학교 강단에 서다
228	10. 29.	외교부·법무부·법원행정처 '해외 법제지원' 협업 - 베트남·브루나이·사우디아라비아 계약분쟁해결 국제컨퍼런스 -
229	10. 2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3 허그(HUG) 후원의 날』 개최 -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
230	10. 31.	전국 교정직원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231	11. 1.	법무부, 일자리창출 등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 본격 시행 - 12. 23.부터 사회공헌기업을 대상으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
232	11. 4.	"미국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영종국제 어린이로스쿨」 11. 5.(화) 16:00 영종도서관에서 제3차강의 예정 -
233	11. 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234	11. 5.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235	11. 6.	불법 결혼중개업체 근절을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236	11. 7.	법무부 장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237	11. 8.	세계최고의 중재전문가들, 아·태지역의 효과적 분쟁해결 방안 모색 - 법무부·UNCITRAL·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컨퍼런스 개최 -
238	11. 8.	교정협회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239	11. 8.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과징금 분할납부·자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 -
240	11. 12.	제36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241	11. 12.	'신뢰사회를 위한 행복 약속,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242	11. 13.	법무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입국 희망자 접수
243	11. 13.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44	11. 14.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45	11. 15.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다같이 어울려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한국어 말하기 및 다문화예술 발표 -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246	11. 15.	법무한류(K-Law)의 첫 번째 쾌거, 창조경제를 지원하다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지원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시행-
247	11. 18.	'원예치유 프로그램' 교도소를 웃게 하다 - 정부 3.0추진, 수형자들에게 전해진 맞춤형 녹색 치유력 -
248	11. 1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249	11. 19.	정신질환수용자 집중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개원
250	11. 20.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법은 우리들의 약속!'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헌법사랑 글짓기 대회』시상식 개최
251	11. 20.	청소년 비행예방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예스원 업무협약
252	11. 20.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신설 전주, 순천, 춘천 3개 지역 개청, 학교폭력 근절에 큰 역할 기대 ※ 개청일 : 전주·순천센터(11월 22일), 춘천센터(11월 26일)
253	11. 21.	'인천 스마일센터' 개소
254	11. 21.	법무부 장관, 민원해결의 답을 찾아 정책현장으로!! - 외국인 유학생 및 자원봉사 결혼이민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255	11. 22.	한걸음 한걸음 마을변호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56	11. 22.	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257	11. 22.	"소멸시효 걱정 없이 전자거래 분쟁 조정" - 분쟁 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규정 신설
258	11. 25.	재소자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꿈꾼다 - 경제적 회생기회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
259	11. 27.	『역외탈세, 검찰이 나서다』- 세미나 개최
260	11. 27.	군산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261	11. 29.	국내 로스쿨생 19명, 글로벌 로펌이 집약된 홍콩에 진출! - 법무부,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변호사협회간 긴밀한 협력의 성과 -
262	12. 4.	검찰 간부 인사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263	12. 6.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표창
264	12. 10.	미국에 이어 홍콩까지! -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가능 -
265	12. 11.	'인권의 날 기념(12월 10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266	12. 11.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개시 -
267	12. 11.	'인권의 날 기념(12월 10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268	12. 13.	원정·폭력시위를 극복해야 선진 법치국가로 진입 가능 - [법무연수원 세미나 개최] -
269	12. 13.	제12회 법조봉사대상(法曹奉仕大賞) 시상
270	12. 17.	법무부,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71	12. 18.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오락가락 진술, 이제는 없다! - 법무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272	12. 18.	2013. 소년원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및 학생 문화예술제 개최!
273	12. 19.	법무부,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인터넷을 통해 안내
274	12. 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75	12. 20.	2014년도, 중국동포 8만명에게 방문취업제로 모국 방문기회 부여
276	12. 20.	"해외 도피 범죄인 끝까지 추적한다" - 중국 도피 거액 금융사기범 변인호 14년만에 국내 송환 -
277	12. 24.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278	12. 2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9	12. 24.	- '2013년 법질서 유공 포상 및 제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
280	12. 26.	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 서비스업체에도 발급 - ABTC 카드 소지자 APEC 18개 회원국 무비자 입국 가능 -

연번	월 일	주 요 내 용
281	12. 26.	담장 안에 가득 찬 '인문학의 향기' - 수용자의 인성변화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
282	12. 27.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새해 달라지는 법무행정 - 2013년 정책 성과 및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제 -
283	12. 31.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 대폭 강화

제 2 절 법 무 업 무

제 1 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2013년 법무부는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여론조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법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법률시장 개방 및 변호사 급증에 따라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법무 및 통일 대비법무 업무의 전문화, 실질화를 도모하고,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선진 상사법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국민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법령 정비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일환으로 여행계약 취소권 신설 등 여행자 보호, 보증계약 서면화 등 보증인 보호 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 등 아동 및 가족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공정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특히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법령 제도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계약서 자체로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의 중요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된 법령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배정방법, 상가건물 업종제한 기준 등 입주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 표준규약 모델을 제정·배포하였다. 나아가,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민법 개정안과 신속한 경매진행을 위하여 최저매각가격을 하향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행정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자문과 법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정부의 업무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실무자를 위한 법령 제정·개정 실무, 2013년 개정민법 해설,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등 총 11권을 발간, 배포하는 등 법령자문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3.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입양허가제·성년후견제 등 개정 민법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 심판절차 관련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성년후견등기 제도를 신설하는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다.

나아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채무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과징금 분납 등 과징금 납부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법률시장 개방'으로 거대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로 신규 법조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법조윤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법률시장 근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 비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에 의한 면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변호사등록거부사유 중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삭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선서인증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고, 집행증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5.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한-미 FTA 협상을 비롯,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민·상사규범의 통일화 작업에 기하여, 법무부는 국제법무업무의 효율적 대응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투자자 보호는 물론 정부의 규제권한 확보를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국제통상분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법무부에 설치된 '국제통상법률지원단' 등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내실화함으로써 국제협약, 조약, 통상관련 법률 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아울러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ISD 실무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공기업 등을 상대로 현장순회 법률자문 및 분쟁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공세가 점점 거세짐에 따라

기존의 국제투자법률자문단을 '국제투자·지식재산권법률자문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우리 기업 및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2. 1. 10.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개소하는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는 바,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 및 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등의 변화에 발맞춰 선진 법무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 등 국내이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2013. 2. 개정안 국회제출, 2013. 6. 법사위 소위 회부)함으로써 국가소송 등의 수행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헌법소송 수행체계를 새로 규정하여 국가 송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 하였고,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2013. 3. 입법예고)을 통하여 행정소송 활성화 및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법치행정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송무 법령의 정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고, 5개 고검·9개 지검 및 소송수행청 등 송무수행 기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대법원 전자행정소송 전면시행(2013. 1.)에 대비하여 단일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국가송무수행 시스템인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유지·보수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 강화를 도모,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헌법재판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 수행 및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의 자문에 적극 조언 및 지원을 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의견서 작성의 내실화와 능동적 변론 전개로 헌법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정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매년 헌법재판사건 의견서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고 헌법재판 결정례 분석 및 외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에 힘쓰는 등 헌법재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7. 남북교류협력 법적 지원 및 통일 대비 법무업무 실질화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미 현실화된 이산가족간 분쟁을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2012. 2. 10. 공포, 5. 11. 시행)하고 통일법무과에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를 설치하였다.

3대 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통일구상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정비에 대한 법적 지원, 방북승인 등 대북교류에 대한 법적 의견 제시 등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적 지원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한편,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도 병행하였다.

또한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현안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독일, 키프로스, 중국 등 해외 체제전환국의 교류협력 및 통일 사례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하여 통일대비 법무역량을 강화하면서 다각적인 통일 관련 법무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대비에 철저를 기해 왔다.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신탁법 개정안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시행됨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13. 4.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아울러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을 추진하여 2013. 2. 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2012. 개정 상법에 따라 도입된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을 규정한 상업등기법 개정안 또한 2013. 9.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9. 법조인력 양성제도 연구 및 발전도모

2013. 1. 4.부터 1. 8.까지 제2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다. 심도 깊은 문제유형 연구 작업을 거쳐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일구어 낸 제1회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제2회 시험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2013. 1. 15.부터 1. 17.까지 시행된 가채점 회의에서는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위원별 채점편차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4분할 채점제의 도입을 통해 채점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험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법무부는 2013. 4. 2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1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당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한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위와 같이 공표한 합격률에 근접하면서도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차례의 변호사시험 시행 경험과 함께 1, 2회 응시생 및 합격자 분포 등 시험 관련

자료가 축적됨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운영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변호사시험 문제 유형 및 난이도 개발을 위하여 합숙 기간 중 설문조사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민의 법조인 윤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요청도 법조윤리 시험에 고려되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업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3년도에는 2,430명의 응시생 중 1,858명이 합격하여 76%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도까지의 감축인원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법시험의 경우 2013. 11. 14. 55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306명을 선발하였다. 한편,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에 관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 등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한 해 이었는바, 법조인력과에서는 사회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였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의 법조양성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로스쿨 제도나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법조양성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외에 시험위원에 대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 확정회의를 통하여 문제오류를 방지하고 시험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및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통계 등의 공개를 통하여 시험행정서비스를 고양하는 데에 노력을 계속하였다.

제 2 항 국민행복 증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1. 개 요

법무부는 변화된 경제 · 사회적 여건에 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3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총 59건의 법령을 제 · 개정하고, 민법 등 중요 법률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2.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주요 법령 정비

가. 민법 등 정비

여론조사,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여 2013. 7.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등기부동산의 유치권을 폐지하고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유치권 대신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여 경매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사전해제권을 명시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며, 부모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행위에 대하여 친권을 제한하는 친권 제한 · 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하였다.

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정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범위를 확대하고 전월세 전환 상한율을 하향하는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임대차에 관한 법적 권리와 수선비 주체 등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다. 집합건물법 제도 정비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2013. 6.)에 맞추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시공회사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표준규약을 보급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주차장 배정 방법, 상가건물 업종제한기준 등 입주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 표준규약 모델을 제정·배포하였다.

라. 성년후견 관련법령 정비

성년후견 사항의 공시를 위해 후견등기부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년후견등기제도를 신설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고 (2013. 7.), 위 성년후견제도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해 성년 후견 심판절차와 관련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정비하였다.

성년후견 관련법령을 통해 성년후견제가 원활히 시행되면, 기존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지적장애인의 행위를 금지하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적 후견제도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기타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3. 12.)

제 3 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1. 개 요

법무부는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자문과 법령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정책과 관련한 현안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차원에서의 연구·분석자료인 기본법인 민법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시안과 관련된 저서 4권을 발간하였고, 실무자의 법령 제·개정 절차와 관련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자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실무를 발간, 법무부 소속 실·국·본부에 배포하여 법무자문기능을 활성화 하였다.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5,096건의 법령자문, 10건의 유권해석을 하는 등 법무자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정부의 법령 제정·개정 작업과 법령 관련 업무수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2.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2013년도에 수행한 법령자문과 유권해석의 실적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법령자문 질의 내용은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국토교통, 금융 등 관계 법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1〉 연도별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89	1,358	1,840	2,047	2,349	3,154	3,368	4,083	3,740	5,106
법령자문	988	1,347	1,826	2,044	2,346	3,152	3,365	4,072	3,732	5,096
유권해석	1	11	14	3	3	2	3	11	8	10

3. 주요법률문제 검토

전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국내외 주요 사건 및 법률문제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 그 주요한 사례로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검토,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 '정부입법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검토 등이 있다.

4. 법무자료 발간

2013년도에는 통일법 전문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을 연 4회 발간하였고,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V」, 「남북법령연구」 등 2종 8권의 법무자료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 각급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발간된 법무자료 중 「통일과 법률」은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률문제와 정책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기고한 연구논문 4~5편과 저명인사의 특별기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제연구V」는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및 통일법무지원단이 2012~2013년도에 개최한 학술회의 자료 및 녹취록을 담은 책이다.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는 역량 있는 지식인층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북한연구지원단이 주축이 되어 북한의 대외경제를 포함한 경제상황, 북한 과학기술 현황, 정치·행정시스템 등을 심층 연구한 책이다.

「남북법령연구(종래 '북한법령연구')」는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공법, 사법, 경제 소위가 1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남북경협관련 쟁점, 남북합의서, 북한

산업자원법제 및 채권법제를 분석한 책이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 2012년 연례보고서」는 헌법적 지원, 정의, 선거문제라는 세 분야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의 2012년도 활동 내용에 대한 연례보고서이다.

〈표 2〉 2013년 발간 법무자료 목록

자료집 호수	자 료 명	발간일	비고
-	통일과 법률(통권 제13호)	2013. 2.	통일법무과
-	통일과 법률(통권 제14호)	2013. 5.	〃
-	통일과 법률(통권 제15호)	2013. 8.	〃
-	통일과 법률(통권 제16호)	2013. 11.	〃
제307집	남북교류협력법제연구(Ⅴ)	2013. 9.	〃
제308집	2013 북한실태연구보고	2013. 12.	〃
제309집	남북법령연구	2013. 12.	〃
제310집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12년 연례보고서	2013. 12.	〃

5.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그동안 법무부 소관 각종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

2007년 법무자문위원회규정과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과거 법무부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조계 최고 원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민법·상법·경제법 등 3개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 9. 21. 여성정책연구원장인 최금숙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8개 로스쿨과 법대 교수 13명, 변호사 2명을 위원으로 16명의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이후 2013. 12. 13. 법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고령자 복지 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배우자 상속분 조정 방안 등 법무부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법무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 중에 있다.

한편 법무자문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성년후견제, 입양허가제, 친권제한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유치권 제도 개선 등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개선과 불법 재산형성 방지 및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몰수,

추징 집행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는 6개 전문 소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며 분야별 북한법령의 실태와 남북법률 통합 방안 마련에 대해 심층연구하고 있다.

제 4 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1. 개 요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결격사유 추가 및 등록거부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공증인과 보조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부실공증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증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공증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였다. 또한, 로스쿨 수료자 신규 배출로 공익법무관 임용대상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 수요를 충족하는 공익법무관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무가 가능하게 하였다.

2.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령정비

가.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매년 2,500여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되고,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 가속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조 각 직역으로 구성된 변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7회의 분과회의와 2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사무소 직원에 관한 규율, 법무법인의 책임 제한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결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가 재직 중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 활동함에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 12.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제도의 온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 국내 주요 로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나. 공증서비스의 적정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적발된 공증인에 대한 엄격한 징계로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으며, 공증제도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증홍보 블로그 및 SNS와 연동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였다.

한편, 공증제도에 의한 예방사법 기능 강화 및 선진법률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 확대,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2013. 12. 31. 현재 등록 변호사는 16,547명이고, 그중 개업 변호사는 14,242명으로 개업 변호사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1,710명 증가하였다. 또한 법무법인의 증가 현상도 뚜렷하여 2013. 12. 31. 현재 전국의 법무법인 숫자는 756개에 이르렀고, 구성원 가입·탈퇴 등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등 관련 업무도 증가되었다.

2013년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소속 변호사 49명에 대하여 징계 결정을 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징계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9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 결정을 하였다.

〈표 3〉 지역별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인원 현황

(2013. 12. 31. 현재)

구분 \ 변호사회	계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록	16,547	12,321	288	434	755	125	153	404	473	581	148	261	349	189	66
개 업	14,242	10,474	261	396	677	111	133	367	436	502	139	229	297	168	52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2013. 12. 31. 현재 전국에 370개소(공증사무 대행청 12개소 포함)의 공증사무소가 있으며, 공증사건수는 4,030,468건에 달하였다.

법무부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 122개 공증사무소 및 11개 재외공관에 대한 공증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공증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가. 공증 현황

공증사무소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증사무소가 없는 13개 지역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증 처리 실적은 총 4,030,468건이며, 내용별로 보면 공정증서 작성 494,745건, 정관 인증 4,697건, 법인의사록 인증 394,639건, 사서증서 인증 827,699건, 확정일자 부여 2,180,046건, 기타 128,642건으로 전국 370개 공증사무소의 연 평균 처리건수는 10,893건이었다.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나. 공증사무 지도 감독

국내 공증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2013. 1. 23. 부터 12. 13.까지 직원 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전국 122개 공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으며, 재외공관 공증업무 처리실태를 파악·지도하기 위하여 법무과 검사 등 18명이 5회에 걸쳐서 주 일본대사관 등 11개 재외공관에 출장하여 공증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공증인(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 147건(정직 22, 과태료 73, 견책 6, 주의촉구 46)의 징계를 하는 한편, 경미한 과오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였다.

〈표 4〉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

(2013. 12. 31. 현재)

구분 / 지역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대행청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계	
계	86	59	190	268	31	299	12
서 울	25	18	103	132	11	142	-
의 정 부	3	3	6	12	-	12	-
인 천	6	-	9	19	1	20	-
수 원	10	10	17	34	-	34	-
강 원	3	3	2	2	1	3	1
충 북	3	2	3	7	-	7	1
대 전	5	4	8	8	-	8	2
대 구	7	5	9	14	5	19	3
부 산	7	3	11	11	6	17	-
울 산	3	2	2	7	-	7	-
경 남	4	4	5	8	-	8	2
광 주	6	3	9	10	4	14	2
전 북	3	1	4	3	2	5	1
제 주	1	1	2	1	1	2	-

다. 재외공관 공증 업무 지원

해외유학 및 국제거래의 증가로 재외공관 공증에 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6. 7. 법무부 홈페이지에 '재외공관 공증마당'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공증 관련 질의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하고 있고, 2007. 1. 재외공관 공증

담당 영사관의 업무지침서인「재외공관 공증업무 편람」을 발행하여 전 세계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통일적인 공증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두바이·아랍에미레이트·말레이시아·도쿄·시카고·뉴욕·보스턴·베를린·프랑크푸르트·마드리드·파리 소재의 대사관 및 영사관 11개소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감사를 실시하여 공증업무를 지도·감독하였다.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2013년에는 제16기 공익법무관 72명이 전역하는 대신 20·21기 공익법무관 165명이 임용되어 공익법무관 전체 인원은 전년대비 93명이 증가한 387명이 되었다. 이들 공익법무관 중 176명은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는 송무업무에 배치되고 211명은 법률구조 업무에 배치되었다.

〈표 5〉 연도별 공익법무관 인원

구분 \ 연도	2005 (11기)	2006 (12기)	2007 (13기)	2008 (14기)	2009 (15기)	2010 (16기)	2011 (17기)	2012 (18기)	2012 (19기)	2013 (20기)	2013 (21기)
임 용	55	73	74	93	66	72	73	84	66	104	62
총 원	204	188	202	240	233	231	211	228	294	325	387

제 5 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1. 국제법무교류 지원

가. 국제회의 및 협상 참가

법무부는 국제법 및 국제통상 분야의 최신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각종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FTA와 BIT 협상,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 총 51회 참가하였다.(세부 내역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나. 타부처 법률지원 수행

법무부는 국제조약 협상 및 체결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타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바, 2013년도에는 총 40건의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표 6〉 2013년도 법률자문 현황(40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검사
1	1. 7.	한-인니 CEPA 지재권 챕터 협정문 초안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김종우 검사
2	1.10.	한-인니 CEPA 투자 협정문 초안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김종우 검사
3	1.14.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검토의견 회신	외교부	나욱진 검사
4	1.23.	녹색기후기금(GCF)본부협정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조아라 검사
5	1.30.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종우 검사
6	1.31.	통상절차법 개정안(김기준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외교부	나욱진 검사
7	2. 1.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종우 검사
8	2.1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의견조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조아라 검사
9	2.15.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외교통상부	조아라 검사
10	2.28.	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조약안 검토요청	기획재정부	조아라 검사
11	3.18.	제5차 한중 영사협정 실무협상 의견제출	외교부	조아라 검사
12	3.18.	한-베트남 민사사법공조조약 제2차 문안협상 개최 추진 관련 의견 회신	외교부	김종우 검사
13	3.21.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조아라 검사
14	3.27.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에 대한 의견회신	법원행정처	황우진 검사
15	3.29.	미등록 외국변호사의 '자격 표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서울지방 변호사회	황우진 검사
16	4.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아라 검사
17	4.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조아라 검사
18	5.20.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아라 검사
19	5.2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률안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법무부 기획재정 담당관실	나욱진 검사
20	5.23.	EU의 IUU 어업 통제법의 국제법(WTO, FTA) 위배 여부 검토요청	해양수산부	조아라 검사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검사
21	5.27.	법정형 정비 사업 관련 검토 의견 회신	법무부 형사법제과	황우진 검사
22	6. 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률안 검토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법무부 기획재정 담당관실	나욱진 검사
23	6.12.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조아라 검사
24	7. 9.	한-인니CEPA 제4차 협상 대비 지재권분야 통합 협정문(안)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산업통상 자원부	김종우 검사
25	7.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아라 검사
26	7.12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문안 검토 회신	외교부	나욱진 검사
27	7.17.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6월협상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산업통상 자원부	황우진 검사
28	7.19.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2차실무회담 관련 검토 요청 회신	외교부	나욱진 검사
29	7.29.	투자보장협정상 개정 UNCITRAL 투명성 규칙 적용 검토 회신	외교부	나욱진 검사
30	7.2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조아라 검사
31	8. 1.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협정(초안) 협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조아라 검사
32	8. 6.	한-터키 FTA 투자 분야 협정문(안)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산업통상 자원부	김종우 검사
33	8.13.	한-인니 CEPA 제5차 협상 대비 투자 부분 협정(안) 검토의견 송부	산업통상 자원부	김종우 검사
34	9.2.	한-케냐 투자보장협정 국문 번역본 관련 관계부처 의견 조회 회신	외교부	나욱진 검사
35	10.7.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종우 검사
36	10.2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환경부	조아라 검사
37	11.1.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산업통상 자원부	조아라 검사
38	11.14.	한-중 FTA 협정문 초안 검토의견 회신	산업통상 자원부	조아라 검사
39	11.27.	국회 법사위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군현 의원) 의견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종우 검사
40	12.10.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3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환경부	김종우 검사

다. 국제교류의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법무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무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법조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예방 차원은 물론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의 체결과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교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3년 법무부를 방문한 해외 주요인사의 현황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아울러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선진 법무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2013. 5.에는 법무부차관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법률포럼에 참석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의의 및 평가'에 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라. 법률문화 교류사업 추진

법률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선진 법률체제를 소개하고 설명하여 그들의 입법작업을 지원하는 '법률문화 교류사업'이 2013년도에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당해 국가 진출시 유리한 통상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11년도부터 한국거래소(KRX)와 공동으로, 증권거래소를 새로 개장하거나 법률체계의 선진화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권거래법 개선 지원 작업을 추진하였던 바, 2012년도에 라오스 및 벨라루스를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해당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의 경우 위 자문내용이 반영된 증권법이 새롭게 마련되어 2012. 12. 라오스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 1. 17. 공포되어 2013. 3. 17.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법무부 '개도국 법제정비 사업'의 성공적 기여로, 해당국에 선진화된 법률이 제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협력하여 2005년부터 꾸준히 베트남, 몽골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대학에서 한국법 특강을 실시해왔는데, 2011년도부터는 더 나아가 단발성 특강에 그치지 않고 해외 현지에서 한국법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법제의 지속적인 홍보·전파를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외 한국법 센터 개설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2011년 중국 연변대에 첫 한국법센터를 개설하고 한국법 특강을 진행하였고, 2012년에는 한국법센터 유치의사를 먼저 밝혀온 태국 출라롱콘대 및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에 한국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국·영문 도서 100여권을 무상 지원하고, 해당국의 법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의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한국법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013. 8.에는 캄보디아에, 2013. 9.에는 몽골에 각각 한국법 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무부는 한국이 아시아의 법률 선도국가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마. ISD 대응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발효된 87개 BIT 및 한-미

FTA 협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효과적인 ISD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 12. 부터 7개 정부 관련부처와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12. 31.까지 총 7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자 유치로 인한 국제투자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업·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국제투자법률자문단을'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총 106명의 자문위원들이 국제투자분쟁은 물론 국제지식재산권분쟁 사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변호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 4명의 국제법 전문연구위원을 신규 선발하여 세계 각국의 ISD 대응체제 분석, 주요 분쟁 사례 연구, 세계 주요 중재인의 정보수집 및 국제중재전문가 양성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2년 11월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를 제기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론스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2012. 5. 구성)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2012. 6.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바. 지자체 · 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론스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ISD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처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 대응방안 교육, ISD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였고, 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2009. 10.부터 2013. 12.까지 총 71여회에 걸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사 등을 대상으로 ISD 순회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9. 12.부터 2013. 12.까지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 29개 도시에서 ISD 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 제도 구축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 법률시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법」이 제·개정되었으며, 동 법의 제정(2009. 9. 26. 시행)으로 법률시장 1단계 개방, 개정((2011. 4. 30. 시행)으로 2단계 개방사항의 법제화가 완료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 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와 접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 12. 현재 자격

승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81명이고, 외국로펌은 20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63명(미국법자문사 51명, 영국법자문사 12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18개(미국로펌 14개, 영국로펌 4개)이다.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제도 관련 논문, 관련 법령, 각종 FTA 협정문 등을 정리하여 2013. 3. '외국법자문사법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여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2010. 1.에 외국법자문사들에 대한 징계 등을 담당할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국내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제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에는 중국 상해에서, 그리고 2012. 12.에는 홍콩에서 각각 국내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로스쿨 졸업생에게 로펌과 KOTRA 해외지사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인턴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에 46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자. 통상전문 학술지 '통상법률' 발간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격월로 발간해오고 있는 바, 장관급 고위인사의 시론 및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통상법률'은 2006. 12. 정부부처 발간 학술지로는 최초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이는 국제통상법 분야 국내 학술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 국제통상법 분야 정보교환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1호부터 2011년에 1호부터 100호까지 게재되었던 논문의 총목록을 정리한 통권 100호를 거쳐 2013. 12. 현재 114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상사중재 및 각국의 통상·환율정책, 국제 환경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룸으로써 한국의 국제통상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차.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1. 5.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전문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본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2013. 12. 현재 총 5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가. 국제회의 참석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규범의 적시 가입이 필요하고, 국내법제 선진화를 위해서도 국제통일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안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2013년도에는 관련 회의에 14회 참가하였다.

나.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및 활동 강화 방안 시행

법무부는 2002. 2. 로펌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연구단'을 발족, 활동을 개시하여 매매 분과회의 등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조문별 검토를 완료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인 '국제거래법연구단'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와 발간도서 등을 게시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06. 10. 국제회의 참가활동 개선 및 강화를 위하여 '국제거래법연구단 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위 활동 강화방안은 주요 국제회의의 중요도 및 2006년 상반기까지 각 국제회의에 법무부 대표로 참가해온 연구단의 활동을 분석한 다음, 개선이 필요한 일부 회의에는 법무부 대표단을 교체하고, 중요성이 높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집중하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 회의에는 선별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활동 강화방안의 시행을 통하여 국제회의 참가보고서의 평가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국제회의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제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2009년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의 오수근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UNCITRAL 제42차 본회의 의장직을 수임한 데 이어, 2010년에는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하기도 하였다.

다.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 개소

2011. 7. 7.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치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 1. 10. 인천 송도에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가 개소

되었고, 개소식에는 UN 법무담당 사무차장, UNCITRAL 사무국장, 인천광역시장, 10여 개국의 대사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 개소는 법무부를 비롯한 외교부 등 각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인천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조화롭게 성공한 사례로써 국제 법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민·상사법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아·태 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법무부와 UNCITRAL 아·태사무소는 모두 2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먼저, 2013. 10. 14.~15.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부,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및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이크로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3. 11. 11.~12.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부,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및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국제중재'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이행법률 제정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발맞춰 (2012. 2.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적으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을 선임하고, 그 밖에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 이행법률은 2011. 12. 30.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 후 재추진된 법안으로, 관계부처 협의(2012. 7. 13.~7. 23.), 입법예고(2012. 8. 2.~8. 13.), 성별영향분석평가(2012. 8. 10.~8. 13.), 부패영향평가(2012. 7. 25.~8. 24.), 법제처 심사(2012. 9. 12.~9. 17.),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2. 10. 24.) 되었으며, 20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 부칙 제1조는 협약 가입일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2. 12. 외교통상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는 2013. 3. 1.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법률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 6 항 송무수행의 효율성 향상

1. 개 요

2013년 국가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9.2% 증가, 패소율은 1.0% 감소하였고,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1.1% 감소, 패소율은 1.5% 증가하였다.

2. 소송수행 역량 제고

가. 소송지휘권의 적극적 행사

과거사 관련 국가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소송 등 대형·중요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검찰청 및 행정 각부를 상대로 업무처리 지시 및 법률검토 회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왔다.

나. 송무지도점검의 내실화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 수원지검(3월), 광주고검(5월), 울산지검(6월), 춘천지검(7월), 청주지검(10월), 창원고검(11월), 대전고검(12월) 등 7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송무지도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가송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피지도점검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국가송무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다. '국가송무현황' 등 발간 배포

2012년도 국가송무 관련 통계 및 송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등을 수록한 '국가송무현황'과 2013년도 주요 행정소송 패소사례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013. 5. 23.~5. 24. 전국 검찰청 근무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등 100여명이 모여 송무업무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임별 토론 및 발표를 함으로써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밖에 전국 송무운영 현황 파악 및 법무부와 일선 송무수행청간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기준및절차에관한지침(2011. 5. 3.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송수행 유공자 35명, 관리업무 유공자 31명 등 총 66명에 대하여 3,0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바.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및 감사 실시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 국가시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 증가 등 국가송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8. 2. 15.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은 그동안 법무부와 공단의 홍보노력 결과 정부부처 등의 공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수임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 4. 8.~ 4. 9. 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2011~2012년도 업무수행성과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방안을 진단하는 등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충실한 공공법률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단이 우수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홍보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를 할 수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그 결과 공단이 평균 승소율 75% 이상을 보이는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3. 송무업무 실적

가. 국가소송

국가소송사건은 총 접수건수(구수+신수)가 2008년까지 장기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과 2010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11,891건이 접수되었다.

패소율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구축·운영, 국가송무현황 발간·배포, 법무연수원 국가송무 과정 교육 및 소송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에 대한 송무지도를 통한 송무역량강화 등으로 내실있는 송무수행 결과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15.5%의 패소율을 보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1-12>와 같다.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16,444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14.2%의 패소율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1-16>과 같다.

다. 국가배상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지위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50.0% 증가한 4,517건을 접수하여 그 중 1,767건을 인용(인용율 53.6%로 전년대비 3.6% 증가)하고, 1,424건을 기각 하는 등 총 3,299건을 처리하였다.

라. 행정심판

2013년에 123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접수하여 13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인용 2건, 기각 83건, 각하 23건, 취하 21건, 이송 2건이었다.

제 7 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1. 개 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 및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 헌법재판 수행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2013헌가9)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체의견 제출은 총 36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13년에는 총 22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14건, 위헌 7건, 헌법불합치 1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친일재산 소급적 국가귀속 규정) 등 위헌제청 (2013. 7. 25. 2012헌가1) : 합헌

나.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불허 규정) 위헌제청 (2013. 9. 26. 2011헌가42) : 합헌

4.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3년에는 총 1,558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등 357건, 각하 1,099건, 위헌 등 102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 계획(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계획) 위헌 확인 등 (2013. 5. 30. 2009헌마514) : 기각

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 위헌소원 등 (2013. 10. 24. 2011헌바79) : 합헌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규정) 위헌소원 (2013. 10. 24. 2011헌바106, 107) : 합헌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목적, 일시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처벌) 위헌소원 (2013. 12. 26. 2013헌바24) : 합헌

제 8 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1. 개 요

2006. 7. 13.부터 2010. 7. 12.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및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였다. 2010. 7.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소송업무를 법무부에서 승계하면서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송무팀이 신설되었다. 친일재산송무팀은 2012. 12. 31. 활동기간 종료로 해산되었고, 잔여 소송업무는 법무부 국가송무과가 수행중이다.

2. 주요 업무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친일재산송무팀의 잔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헌법소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각종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여론조사 업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관련 소송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3. 소송수행 실적

친일재산송무팀이 위원회의 소송을 승계한 2010. 7. 13. 이후 총 95건의 소송(행정소송 71건, 국가소송 15건, 헌법소송 9건)을 수행하였고 그 중 90건이 종결되었는데(2013. 12. 기준), 국가소송과 헌법소송은 100% 승소하였고 행정소송은 95.5% 승소하여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였다

가. 전체소송 현황

2010. 7.~2013. 12.(진행건수/종결건수)

사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95 (5/90)	71(4/67)	15(1/14)	9(0/9)

나. 승소 현황

2010. 7.~2013. 12.(승소건수/패소건수)

종결 사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90 (87/3)	67(64/3)	14(14/0)	9(9/0)

제 9 항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1. 개 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거의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행정현실도 급변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하면서 다양한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 11. 15. 학계와 실무계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실적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익구제를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민이 잘못 제소하는 경우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의 도과로 인해 권익구제 조차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및 이송을 널리 허용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학계 및 실무계로 구성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0여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쟁점별 파급효과, 정책효과 등을 고려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계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직접 청취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육부, 공정위, 보건복지부,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부처 입장 반영과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고, 2013. 3.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향후 계획

향후 의견수렴의 다양화 및 개정안의 적극적 검토를 실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 10 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 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 · 운영

1. 개 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소송,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신행정수도 헌법재판 등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 5. 민사소송에 있어 전자재판이 도입되었고, 2013. 1.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구축 및 중앙행정기관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내용

2011년 12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송 유관기관과 사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범사례·패소사례 및 훈령·예규·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송무 지식포털을 구축하였고, 2012년 12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전면 시행하였다.

수작업 업무 폐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주요내용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서 발송, 지휘요청, 지휘, 승인 등 송무 수행을 전자적으로 처리 ○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로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제공

또한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문서 작성·승인·관리체계와 사건관리, 전자결재 기안문 연계 등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였고, 2013년 1월 전자행정소송 시행에 대비하여 모든 행정기관에서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였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 강화로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였다.

3. 기대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 및 의견조회를 통해 시스템 상의 오류와 기타 문제점들을 분석, 즉각적인 개선 작업으로 시스템 사용자의 사용도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송무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제 11 항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및 통일을 대비한 법적 준비

1. 개 요

2008. 7.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3. 1. 13.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2013. 4. 8. 북측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중단된 개성공단은 근 100일 만인 2013. 9. 16.에야 비로소 재가동되었다. 2013. 9.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었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었으나, 다행히 2014. 2.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이 현재 다시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3. 12. 12.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재판을 거쳐 사실상의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을 처형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통일 준비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에는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실현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북한 법령은 물론 통일 독일 등 해외의 체제전환국가와 개혁개방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법률문제들을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통일법무DB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통일법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통일을 대비한 법무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개성공단의 정상화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따라 구성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의 출입체류분과위원회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남북간 합의서 체결 과정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접견권·수진권의 구체화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남측위원장에 통일법무과장이 선정된 이후로 중재인 명부 구성, 중재규정 마련 등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가동을 본격 준비 중에 있다.

이외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비롯하여 통일부 등 유관부처의 회의에 참여하여 남북관계 발전 계획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련된 방북 승인 결정에 참여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협 관련 합의서 개선방안 검토, 북한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모델 정비 등 경협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성과를 모아 「남북교류협력법제연구Ⅴ」를 발간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2013년 말을 기준으로 2만 6,000명이 넘어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 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2곳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검사가 매월 방문하여 준법의식 고취 교육 및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및 보호변경, 정착금 조정 등 심의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재입북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실태를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므로 지식인층 북한이탈주민들을 위주로 북한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하부단위 정치시스템의 분석 등 북한연구지원단이 201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는 「2013 북한실태연구보고」라는 책자로 발간되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이 포함된 내용의 북한인권법안 5건이 발의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통일 이후 피해자 복권, 공직자 심사 등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 2013. 3. UN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가 구성되었고, 2013. 8. 국내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비롯한 조사결과를 2014. 3.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4.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법적 준비

독일 통일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1992년 통일법무과를 창설한 이래로 법무부는 북한 법령과 다양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통일과정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한 지역에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남북주민간의 실질적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통합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법무부 자문위원회인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6개의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로 개편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채권법과 산업자원 법제를 분석하고, 통일 이후 형사분야의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3. 8.「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한독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연구성과들은 조만간 「남북법령연구」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과정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해외 사례 조사도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독일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의 역할, 러시아의 토지법제,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 2013년 개정된 베트남의 토지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제전환국의 민주주의 법질서 정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5. 통일법무DB 홈페이지,「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개설 등 통일 대비 법무 인프라 확충

법률 분야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연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우선, 법무부는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와 연구한 성과들을 유관기관은 물론 국민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법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unilaw.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통일법제 전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분류체계 및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 3.0 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대비 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민관합동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온라인 민원 처리기능과 북한이탈주민 및 경협기업에 대한 법률상담코너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도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통일법제 전문가를 교육하고 나아가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1.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통일법제 전문가 강의(10강)와 하나원 및 판문점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 제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는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통일을 대비한 충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기초반과 심화반 과정으로 2기씩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 12 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1. 개 요

법무부는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선진 상사법제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기업법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한 상사법의 체계적 개선작업으로 추진된 전면 개정 신탁법이 2012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3년 그 후속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등 3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상법 보험편, 상업등기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

2. 상사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제3장 주요법령정비 참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6. 4. 시행된 이후 제정 3년째에 접어들면서 시행 이전보다 개인회생·파산 및 기업회생·파산 사건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의 물리적 통합에 그쳐 화학적 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경제부처로부터 채무자 재산의 일실을 방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도산법의 원칙을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산절차를

마련하여 투자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도산법제 선진화를 위한 비교법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2008. 12. 그 결과를 제출받았고, 2009. 2. 23. 도산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교수, 변호사 및 전·현직 판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 교수)'를 구성하여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도산절차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등을 성안하여 2011. 3.부터 2011. 10.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1. 11. 4.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여 2012. 9. 4.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3년에는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법안 설명을 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상업등기법 개정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업등기법 개정을 추진하여, '13. 1. 입법예고, '13. 1.~'13. 9. 법제처 심사를 거쳐, '13. 9. 26.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 공익신탁법 제정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2010. 3. 25.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7. 6.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2011. 4. 20.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1. 10. 27. 차관회의 및 2011. 11. 1.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여 2012. 7. 24.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법안을 설명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경제주체들이 일선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현재는 검사 1명,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4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고, 2009. 3. 12.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현 79명)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484건을 처리(자문단에 49건 의뢰), 2010년 549건을 처리(자문단에 39건 의뢰), 2011년 406건을 처리(자문단에 68건 의뢰), 2012년 702건을 처리(자문단에 98건 의뢰)하였고, 특히 2013년에는 1,171건을 처리하고 91건에 대하여는 자문단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든든한 법률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3년에는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 1.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시작하여 2010년 18회, 2011년 49회, 2012년 68회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71회의 현장강연을 실시하여 그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 13 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1. 사법시험 실시

가. 시험개요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에는 모두 10,089명이 출원하였다.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은 2013. 2. 2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시 17개 시험장에서 6,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2차시험은 6. 26.~29. 고려대 등 서울시내 4개 시험장에서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3차시험은 11. 6.~8. 사법연수원에서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6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지속적 시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사항의 도입보다는 이미 도입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였다.

먼저, 문제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2007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1차시험 8지선다형 문제 출제 및 문제별 배점 다양화(2, 3, 4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출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제오류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합숙출제에 들어가기 전 미리 출제·검토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차 시험 실시 후 공개된 정답 가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렴하여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답확정 회의를 거친 결과 복수정답 없이 정답가안 대로 확정하였다.

또한, 1차시험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편차 및 그에 따른 수험생들의 특정과목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2008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선택과목 점수조정제는 시행 6년차가 됨에 따라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응시자간 형평성 및 시험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였다.

2차시험에서는 이론에 치우친 문제, 실력

검정과 무관한 판례 등을 지양하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 사례에 대한 적응 능력 검정이 가능한 판례 등 문제를 출제하였고, 제3차시험(면접시험)에서는 심층면접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러 시험위원에게 응시자 성적 등을 제공하지 않고 면접결과로만 탈락자를 선정(블라인드 면접)하는 방법으로 시험위원들이 1차 일반면접을 실시한 후 합격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면접이 필요한 응시자를 추출하여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개의 심층면접조에서 집중적인 2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11명의 응시자가 심층면접에 회부되었고 그 중 최종적으로 2명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

가. 제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제2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12. 12. 22. 부터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출제오류방지와 자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 118명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최적의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시험위원을 비롯한 시험관리인원 등 총 166명이 합숙출제에 참여하였다.

나. 시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제2회 변호사시험은 2013. 1. 4.부터 1. 8.까지 시행되었다. 시험에는 2,095명이 출원하고 2,046명이 응시하였다.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연인원 1,342명의 관리인원이 투입되었다.

그 후 이어진 채점절차에서는 채점위원들의 채점훈련 강화, 4분할 채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2013. 4. 26. 합격자 1,538명을 발표하였다.

다. 법조윤리시시험 전국 6대권역 실시

제4회 법조윤리시험은 2013. 8. 10. 전국 6대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 시험에는 총 2,464명이 출원하여 그 중 2,430명이 응시(응시율 98.62%)한 결과, 1,858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76.46%)이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였다.

※ 2012년 제3회 법조윤리시험 : 3,182명 응시, 3,107명 합격(합격률 97.64%)

제 3 절 검 찰 업 무

제 1 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2013년 법무·검찰은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법무부의 비전인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따뜻한 법치의 실질적 구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 국가·사회기강 확립

2013년 법무·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현역 국회의원이 총책인 지하혁명조직을 적발하여 7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활동 중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요 간부 6명을 구속기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탈북 가족 3명 등 5명을 납북시킨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등 탈북자 간첩 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아울러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된 밀입북자 6명을 구속기소하였고, 재입북을 시도한 탈북자 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인터넷·SNS 이용 사이버 이적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경찰청·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북 성향 사이트 등 현황과 실태 분석, 관련 정보 및 수사기법의 공유 등을 통하여 사이버 이적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2013년 9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홈페이지 메뉴 중 이적성이 뚜렷한 '메뉴' 2개를 삭제조치하는 등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2013. 6. 19. 완료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소속 정당이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19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32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2013. 4. 24.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3. 10. 30.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각 실시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특별 근무체제를 운영하면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을 중점 단속하여 공명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

노사분규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되,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엄정하게 처리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평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없는 불법 정치파업과 외부 세력이 개입한 집단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하에 합법 절차에 따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였고,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의한 피해와 관련, 피해자의 민사적 대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계속 추진하였다.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0. 4. 15.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추어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을 제·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2007. 8.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입법화하였고, 2007. 6.에는 '성·가정·아동폭력 연구검사'를 지정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09. 10.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였고, 2010. 5.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72명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아동·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지속적으로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엄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부터 모두 1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2008. 10. 완공되었는바,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84㎡ 규모에 국제회의장과 3개 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8. 6. 부산고검, 2009. 9. 대구고검, 2010. 4. 광주고검, 2010. 12. 대전고검 등 전국 고검 단위에 디지털수사팀 설치를 완료하고, 2011. 5. 인천지검, 2012. 6. 수원지검 등 일선 거점청에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함으로써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통하여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 6.에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4. 6. 1. 부터 전국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설치하기 시작한 영상녹화시설을 2012. 12. 771개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시비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구속 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범'의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기준을 예시한 '범죄 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후 대검찰청은 2008. 6.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2012. 9.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03. 7.부터 일선 검찰청 관내 시민 20여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모니터제를 도입하여 검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찰의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관내 시민 1~3명을 검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 민원인으로부터 사건처리 등에 관한 불만의 청취, 기관장 등 간부 면담 및 시정요구 등 검찰운영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등 5개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의사, 비법학교수, 변리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간부 등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항고심사회 운영에 활용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 또는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사전에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2010. 8. 전국 41개 검찰청에 구성한 이후 2012. 2.까지 전국 58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

제 2 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 개 요

2013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갈등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우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를 활동목표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 내란음모 사건,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반발하며 '국가정보원 해체,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보 위해세력이 깊게 뿌리 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빈발하여 흑색선전 사범의 양형기준 개정을 통한 엄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노동계는 철도노조 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해고자복직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노정 및 노사갈등이 지속되었고, 노량진 수몰사건, 삼성전자 불산누출 등 대형 산업재해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등 정부 정책 시행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또한 계속되었다.

이에 법무·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공정한 법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3년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은 <표 1>과 같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그동안 법무·검찰은 국내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적극적 수사 활동으로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공작 및 친북세력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적활동 등은 여전히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북한 보위부 공작원 위장탈북 사건 등과 관련하여 4명을 간첩,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입건, 구속한 것을 비롯, 총 129명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38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적활동 폐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경찰,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이버 이적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제18대 대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 6. 19.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대선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전국적으로 19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총 432명을 기소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관련자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총 6명(구속자의 31.6%)을 구속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엄단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는바, 정권교체 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로 여야간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거과열이 우려되었으나, 검찰이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를 실시하는 등 단속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노조 등 단체의 불법후원금 기부사건, 민노당·진보신당 후원금 불법모집 사건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나 연구자료가 거의 전무하여 2013. 4.에 「정치자금법 벌칙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고,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때 발생한

흑색선전사범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존의 「흑색선전사범 주요쟁점」책자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2013년에도 노사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존중하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의 불법파업, 공장점거·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22일간의 장기간 불법정치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7명을 구속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죽봉을 휘두르고, 철제펜스를 손괴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엄단하였다.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체 대표이사와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였다.

이와 더불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노량진 상수관 수몰 사건 등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통해 노사간 균형 있는 법집행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양형기준을 재정비하여 불구속 구공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법 연구회,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하여 노동사건 수사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일관된 법집행 기조를 견지하였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도록 하여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관철하였다.

위와 같은 기조 하에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업무방해 사건, 쌍용차 범대위 대한문 앞 불법집회 사건 등 불법집단행동 사범 총 384명을 입건하여 그 중 7명을 구속하여 엄정 대처하였고,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31건을 수집하여, 그 중 21건의 불법집단행동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방안을 상담해 주는 등 불법집단행동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지원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표 1〉

주요사건	주 요 사 건	비 고
대공사범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원지검
	○ 이적단체 '재시대 교육운동' 사건	중앙지검
	○ 밀입북자 6명 판문점 송환 사건	중앙지검
	○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주요 간부 사건	중앙지검 등

주요사건	주 요 사 건	비 고
선거사범	○ 인터넷 뉴스 발행인의 박근혜 후보 명예훼손 사건	중앙지검
	○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 손괴 사건	천안지청
	○ 윤정훈 목사 유사기관 설치 사건	남부지검
노동사범	○ 철도노조 불법파업 사건	서부지검
	○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	중앙지검
	○ 노량진 수몰 사건	중앙지검
	○ 현대차 원정시위대 폭력시위 사건	울산지검
기타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중앙지검
	○ 쌍용차 범대위 대한문 앞 집회 관련 사건	중앙지검
	○ 밀양 송전선로 공사방해 관련 사건	밀양지청

제 3 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 개 요

법무·검찰은 2013. 4.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2013. 11. 대검 반부패부를 신설하여 일선청 특별수사를 체계적으로 총괄 지휘·지원하게 하고, 권력형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착된 지역토착비리와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통하여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조직폭력사범, 사회취약계층 상대 생계 침해형 부조리 사범, 재개발·재건축비리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2004. 8. 대검찰청에 설치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본부」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설치・운영하면서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사기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전개하였고 2005. 3.부터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6. 5. 이후부터는 4대 폭력에 '성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포함한 '5대 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조직화되어가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9. 7. 금융위원회 등과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고, 2010. 11. 의료법 등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에 맞추어 2011. 4. 보건복지부 등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출범시켰으며, 2011. 9. 전국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고, 2012. 4.에는 불법 사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3. 5. 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역량을 결집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원전비리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가. 부정부패 척결 지속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노력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이 개선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OECD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아직도 우리사회의 투명성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부는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1999. 9. 설치된 '반부패 특별수사부(반)'를 중심으로 2004. 9.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 이른바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전개하였고, 2009. 9.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였고, 2011. 1.에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부패', 돈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키는 '금융비리',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숨은 비리' 등 3대 비리에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한 결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원전비리 사건 수사 등에서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는 수사를 하여 과거 비리를 처벌함에서 나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3. 5. 증권범죄합수단, 원전비리수사단을 통해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여 국민의 불안 해소에 적극 기여하였다.

2013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에서 <표 4>와 같다.

〈표 2〉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2013. 1.~12.)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52(25)	22(17)
건축	42(10)	10(5)
토지	24(5)	3(1)
공사	183(16)	35(7)
보건·환경	17(4)	3(3)
교통	24(5)	6(3)
소방	0(0)	0(0)
노동	13(6)	6(5)
수사	22(17)	10(9)
세무	26(10)	13(8)
교육	85(10)	22(3)
병무	0(0)	0(0)
금융	686(9)	120(3)
법조주변	192(24)	51(8)
납품	198(13)	73(12)
사이비언론	11(0)	5(0)
기타	900(88)	214(39)
합계	2,475(242)	593(123)

( )는 공무원

〈표 3〉 선출직공무원 단속현황 (2013. 1.~12.)

구분	단속인원
선출직공무원	19(1)
광역의회의원	13(0)
기초의회의원	25(0)
계	57(1)

( )는 구속인원

〈표 4〉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2013. 1.~12.)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직권남용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8(6)	1(1)	0(0)	2(1)	11(8)
4급 이하	154(80)	23(3)	28(5)	87(28)	292(116)
합 계	162(86)	24(4)	28(5)	89(29)	303(124)

( ) 구속인원

나.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15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 수사(2013. 1. 24.)
○ 자동차부품업체 H사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2013. 3. 21.)
○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수사(2013. 3. 28.)
○ 토지개발허가 관련 비리 사건 수사(2013. 4. 5.)
○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초등학교 신축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사건 (2013. 4. 18.)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인터넷 불법채권추심업자 단속 사건(2013. 6. 17.)
○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비리 사건 수사(2013. 7. 2.)
○ CJ그룹 횡령·배임·조세포탈 사건 수사(2013. 7. 18.)
○ 원료 제조 회사 등 940억 원 상당 가짜 석유 제조·유통사업 등 수사(2013. 7. 22.)
○ 축구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사건(2013. 7. 25.)
○ KTX부품 납품비리 사건(2013. 10. 15.)
○ 의료기기 납품 대가 리베이트 사건(2013. 11. 21.)
○ 아파트 건설 하도급 비리 수사(2013. 12. 11.)
○ 안산 풍도 골재채취허가 비리 사건(2013. 12. 11.)
○ 1조 원대 거액 자료상 조직 적발 사건(2013. 12. 19.)
[2013. 12. 31. 현재 15건]

다. 불법수익 환수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 5. 11.에는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고, 2010. 7.에 「범죄수익환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9.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여,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과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한 환수 노력을 강화하여, 2013년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건수 1,591건, 범죄수익 환수 보전조치 금액 7,398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2010. 1. 대검 국제협력단에 「국제자금추적팀」을 신설하였고, 2011. 1. 중국 공안부, 같은 해 6. 최고인민검찰원과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채널을 확보하는 등 세계 주요국 법집행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범죄수익 환수 체계도 구축하였다. 이에 2011. 8. 몽골검찰과 공조하여 48억 원 상당의 해외유출 범죄수익으로 건축된 몽골 소재 R호텔에 대한 압류조치를 완료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사건 및 금액, 자금세탁 기소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가. 5대 폭력 특별단속

2005. 3.부터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2006. 5.부터는 4대 폭력에 '성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포함한 '5대 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에 2007. 12. 까지 설치된 「5대 폭력 및 부조리 대책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직폭력의 기업화·합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 11. 전국강력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조직폭력 수사방향을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로 전환하고, 조직과 수사시스템을 '강력금조부'로 전환하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 폭력서클의 배후에 성인 폭력조직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2012. 3. 「성인 폭력조직과 학교 폭력서클의 연계 차단을 위한 단속 지시」를 통해 이들 간 연계를 차단, 학생들을 폭력조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성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을 불량식품과 함께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나. 민생침해사범 엄단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2008. 12.에는 유래없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으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2010년 민생침해사범 단속 관련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3. 3.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단속하였다. 2013. 1. 1.부터 12. 31.까지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실적 (2013. 1.~12.)

구 분 / 사범별	단속인원	구속인원
계	118,176	2,892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26,470	926
취업 사기 사범	1,541	31
기업형 위장·갈취 사범	53,945	1,362
유통질서 교란사범	1,410	34
사행성 도박사범	7,181	394
교육관련 불법행위 사범	839	1
국민건강 위해사범	22,407	137
부동산거래 교란사범	4,383	7

다.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집중 단속

2005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해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 양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2005. 10.부터 2007. 4.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

수사에 적극 매진하여 2,039명을 단속하여 66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등 9,814대를 압수하고, 187건 2,081억 9,362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이 휴·폐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09년부터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2012. 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간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확대하여 정보교류 및 수사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한편 검찰에서는 게임물제작·유통업자, 운영자, 환전업자 등 사행행위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지시하여 위 사행행위사범은 물론 조직폭력배 및 단속공무원까지 개입된 사례까지 적발, 2013년도 한해동안 758명 단속, 323명 구속, 범죄수익 5,256억 상당을 추징 보전 청구하였다.

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적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적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6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지재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단속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2년 연중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84,001명을 입건(953명 구속)하는 단속실적을 거두었고, 2013년에는 연중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70,396명을 입건(751명 구속)하는 단속실적을 거두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현황은 <표 6>과 같다.

한편,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선진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홍보하였고, 미국 및 EU 무역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와 다자간 지재권 보호협약인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 12. 19.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표 6〉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07	8,880 (195)	25,355 (5)	5,751 (10)	6,191 (285)	2,432 (3)	48,609 (498)
2008	10,398 (213)	91,840 (24)	5,855 (2)	46,415 (1,925)	2,285 (-)	156,793 (2,164)
2009	10,251 (220)	89,684 (9)	3,874 (3)	54,642 (2,315)	2,436 (-)	160,887 (2,547)
2010	8,192 (192)	29,644 (12)	123 (-)	41,655 (1,242)	2,240 (-)	81,854 (1,446)
2011	6,293 (188)	37,082 (8)	38 (-)	38,106 (1,137)	1,447 (1)	82,966 (1,334)
2012	6,003 (106)	46,707 (1)	15 (-)	29,550 (845)	1,726 (1)	84,001 (953)
2013	6,316 (106)	37,182 (4)	3 (-)	25,068 (641)	1,827 (-)	70,396 (751)

( )은 구속

마. 인신매매 사범 단속

(1) 개 요

법무부에서는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국가신인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2013. 4. 법무부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를 신설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3. 5.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성범죄에 대하여 구속 또는 정식재판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검찰 구형과 항소 기준을 강화하여 일선 검사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등 개정 형법에 근거한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조사, 기소 및 처벌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2년 7월 한·미 양국 회담, 2013년 1월과 12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1년 미국이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1등급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인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걸맞는 인권개선 상황에 관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강력한 수사 활동

2004. 10.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알선 등 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성매매 여성의 국외 송출 또는 국내 수입 조직 등 국제 성매매 알선 조직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를 엄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검찰청에 피해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국 55개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형사소송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 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 1. 대검찰청에 피해자 인권과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적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2010. 10.

부터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현지 문화, 관습 및 결혼 사증 발급절차 등을 안내·지원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장 결혼 등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신매매 관련사범에 대한 기소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인신매매관련사범 기소현황

(단위 : 명)

유형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6(26)	33(26)	55(44)	78(44)	59(38)	66(34)	73(46)	41(30)
영리약취·유인	34(24)	32(26)	55(44)	78(44)	59(38)	63(34)	73(46)	35(26)
부녀매매	2(2)	1	-	-	-	3(-)	-	-
국외이송·약취	-	-	-	-	-	-	-	1(1)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변경·신설							3(3)
인신매매								2(-)

※ 산출죄명 : 영리등을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영리약취, 영리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위반

( )는 구속기소

(3) 해외 아동 성매매 방지 및 법 집행 노력 강화

우리 정부는 해외 파견 법무협력관, 영사를 통한 정보 수집, ASEAN 국가와의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 6.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아세안+3(한·중·일) 고위급 회의(SOMTC)'에 참가하였고, 2013. 9.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아세안+3 장관급 회의(AMMTC)'에 참가하는 등 정기적으로 아세안+3회의 참가하고 있다.

특히, 2013. 7. 우리 정부는 ASEAN 10개국, 일본 등 총 11개국 국제공조 담당자 24명을 초청하여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형사협력과 관련된 실무와 현안을 논의하였고, 실무자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였다.

4. 국제형사협력강화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국제형사협력강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였고, 2011. 12. 29. 위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기존 26개국에서 78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기존 20개국에서 74개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 위 협약에 가입하였던바, 그 결과 우리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및 2개 비회원국, 즉 49개국과 일거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1991년 최초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고 1993년 최초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2배에 이르는 국가들과 일거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형사협력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평의회 협약 가입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지역의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 8. 28.에는 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었으며, 2013. 7. 26.에는 한-아르헨티나에, 2013. 9. 26.에는 한-말레이시아에 각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되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 중 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4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3년 한해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이후 최다 인원을 송환하였다. 특히 2007년 우리와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홍콩으로부터 최초로 마약사범을 송환하였으며, 최근 주요 해외도피처로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서 24명의 범죄인을 송환하였다.

범죄인 송환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수	15명	11명	9명	26명	24명	41명

유럽평의회 협약 발효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1:1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피 범죄인의 본격적인 송환에 착수하는 한편, 유럽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인 스위스, 영국 등과는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중 미국 등에 총 109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8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또한 2005. 11.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6. 10.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대상자 15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7명, 국외이송 신청자 4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함으로써 국제수형자이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2. 6. 18. 한-인도 수형자 이송조약,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이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6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국내이송	국외이송
2009	8명	2명
2010	1명	1명
2011	10명	0명
2012	15명	1명
2013	5명	4명

나.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서,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 입법예고, 같은 해 6.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국제조직범죄협약' 이행입법 및 비준 추진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이 2003. 9.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이주자불법수송방지 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불법거래방지 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현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데 법무부는 2007. 9. 이행입법 Task Force를 구성하고 2008. 12.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이주자 불법수송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3)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및 비준 추진

'UN반부패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 하였고 2006. 10.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다.

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 업정처리

(1) SOFA 협상 및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1966. 7. 체결되어 1967. 2.부터 시행되어 왔는 바, 1991. 2. 합의 양해사항 중 일부를 개정한 이후, 2000. 8. 서울에서 SOFA 재개정 협상을 시작하고, 2000. 12. 28.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개정된 협정은 2001. 2. 28. 국회 동의를 거쳐 2001. 4. 2.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주요 개정 내용은 강간, 살인범에 대한 현행범이나,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기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미군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군인, 군속의 대물교통사고 대부분을 형사 불입건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1년 7.8%, 2002년 6.9%, 2003년 30.9%, 2004년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2%, 2009년 49.3%, 2010년 60.7%, 2011년 65.9%, 2012년 72.2%, 2013년 74.8%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사건 중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폭력사건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사건 처리현황은 검찰업무통계 <제6장 통계 : 표 2-13>과 같다.

5. 형집행 지휘·감독

가. 벌과금 집행

(1) 집행실적

2013년의 벌과금 집행예산액(세입)은 1조 8,281억 1백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80.90%인 1조 4,788억 48백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4.8%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26조 373억4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0.47% 감소되었다.

2013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2-20>과 같다.

(2)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13.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2013년도 집행유공 표창기관 현황

○ 집행률 최우수청

(단위 : 건수)

구 분	실조정건수	집행건수	집행률 (%)
서울중앙	78,978	55,137	69.81
서울서부	30,302	23,138	76.36
순천지청	19,974	15,863	79.42
강릉지청	7,439	6,139	82.52
안동지청	5,873	4,692	79.89
의성지청	2,157	1,868	86.60

나. 사형확정과 관리

2013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8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다.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연중 형집행정지자 373명 중 149명에 대하여 잔형을 집행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622명 중 569명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등을 하였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4,173명 중 158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전원 구속집행하였다.

제 4 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 개 요

사회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85. 6. 14.「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법 개정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2007. 6.에는 형법 전면 개정 및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2011. 3.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 3.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형소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2011. 7. 선진형사사법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2.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법안 개정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9. 5. 6. 인권신장,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었고, 동 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종전의 사법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검토를 진행하였고, 1999년 12월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대통령께 최종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 1. 17. 법제처에 송부하였고, 2003. 10.경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4. 12. 15.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재정신청 전면확대, 국선변호 확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 확립,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송부한 결과 양 개정안이 통합(총 182개 조문)되어 2005. 12. 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사법개혁법안 중 국선변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06.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 7. 19. 공포되어 2006. 8. 20.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2006. 12.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특히,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 수사과정 영상녹화 제도, 재정신청 전면 확대, 재판기록공개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사법개혁법안도 2007.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도들은 5년여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를 정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2013. 3.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논의하였고, 법무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편하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09. 3. 발족한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3.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고, 2012. 9. 26.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한편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 6.「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전반적인 형법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위원회 현황은 <표 9>와 같다.

아울러, 2008. 8. 6.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각 2008. 12. 26. 공포・시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확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 중 설치근거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민영화되거나 명칭 등이 변경된 기업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2008. 7. 9.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법무부 주도하에 360여개에 이르는 형사법상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2008. 11. 28.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산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진석 등 18명 위원 명의로 양벌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통일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세계주의 규정 신설, 정상감경 사유 구체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몰수・추징 시효 확대, 형의 종류 축소 등 정비, 보안처분 제도 형법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0. 8. 25. 공청회, 각 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형법총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11. 3. 25.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개정 재추진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12. 8. 13.에는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정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3. 3. 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이는 1995. 12. 형법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신설 이후 17여년 만에 신종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인신매매죄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12. 10. ~ 12.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대안을 마련하여 2012. 12.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 대응 요구에 부응하는 형사법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표 9〉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2013. 12. 현재)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거법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0214호. 2007. 8. 6. 일부개정)
설치목적	형사법 개정 자문
현재구성	위원장 1인, 위원 22인
위원임기	2013. 6. 11.~2014. 6. 10.

성 명	연령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김일수	68	고려대 교수	- 고려대, 독일 뮌헨대 박사, 사시 12회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원장
이영란	66	숙명여대 교수	- 서울대, 서울대 박사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여)
허일태	63	동아대 교수	- 국민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박사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위 원
신동운	62	서울대 교수	- 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 - 미국 워싱턴주립대 방문교수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심희기	58	연세대 교수	- 서울대, 서울대 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방문교수 -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위 원
김성돈	52	성균관대 교수	- 경북대, 성균관대 박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연수 -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위 원
배종대	62	고려대 교수	- 고려대, 고려대 박사, 독일 프랑크프르트 암마인대 박사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성 명	연령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박상기	62	연세대 교수	- 연세대, 독일 괴팅겐대 박사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손동권	62	건국대 교수	- 고려대, 독일 본대 박사 -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장영민	62	이화여대 교수	- 서울대, 서울대 박사 -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정영일	62	경희대 교수	- 서울대, 서울대 박사 -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위 원
이용식	59	서울대 교수	- 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 -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위 원
오영근	58	한양대 교수	- 서울대, 서울대 박사 -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위 원
노명선	55	성균관대 교수	- 성균관대, 성균관대 박사 - 사시28회,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위 원
정현미	55	이화여대 교수	- 이화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 - (현)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위 원 (여)
이진만	50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대, 사시28회 - 인천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양형위원회 위원	위 원
홍승면	50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서울대, 사시28회 - 청주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원
황철규	50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대, 사시 29회 -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위 원
김진모	4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서울대, 사시 29회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광주고검 차장검사	위 원

성 명	연령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김선철	53	변호사	- 서울대, 사시 33회 - 서울지검 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위 원
임한흠	60	변호사	- 서울대, 사시23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 수원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광수	53	변호사	- 서울대, 사시27회 -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대 법대 교수	위 원
최경원	62	변호사	- 성균관대, 사시29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대한변협 회원이사 겸 회원위원회 위원장	위 원

제 5 항 검찰역량의 강화

1. 직제 개편

2013. 11. 2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1부·1관·3과, 수사기획관·중수1·2과·첨단범죄수사과)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반부패부(1부·2과, 수사지휘과·수사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제4부를 신설하는 등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하였다.

2. 검찰인력의 변동

가. 검 사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개정(2013. 4. 18. 개정, 시행)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등 4개 직위에 검사장 임용을 제외하였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개정(2013. 11. 29. 개정, 시행)에 따라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를 폐지하여 중앙수사부장, 수사기획관, 중앙수사1과장, 중앙수사2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5개 직위를 폐지하고,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반부패부를 신설하여 반부패부장,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등 3개 직위를 신설하였다. 또한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제4부를 신설하였다.

나. 검사 외의 검찰청 공무원

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2013. 3. 2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4411호)하여 공통·지원부서 정원 9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3명)을 감축하였다.

또한, 안전행정부 소요정원 협의결과에 따라 2013. 7. 2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4674호)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형사조정 업무 및 기록물 관리 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기록연구사 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수사전문성 및 수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 등 10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8급 61명, 9급 40명을 감축하는 대신 4·5급 1명, 6급 50명, 7급 51명 증원)하였다.

2013. 11. 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4886호)하여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이 2013. 12. 12. 공포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2,025명과 별정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통합정원 76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7명, 8급 12명,

9급 3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였다.

3.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가. 검찰인사

2013년도 검사인사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승진·전보, 법무관 전역자(사연 39기)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사연 42기) 등 신규임용, 장기 근속자의 정례교류 등 차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1,27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3년 검사장급 승진에 있어서 검사 임관 이후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인 자료 및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사들 중 사법연수원 19기 7명, 20기 8명을 발탁하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에 보임하였고, 그 동안 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되던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보직을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하였다.

검사장급 승진 심의를 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는 대상 기수인 19, 20기 전원(57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업무실적, 세평,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있어서 4대 사회악 범죄나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할 주무부장에 수사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최초로 일선 부장 보직을 부여받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복무평가,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부장승진심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사들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였다.

또한 외부파견 감축 방침에 따라 검사의 외부파견 16석을 감축하였고, 아울러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하였다.

2013년도 일반검사 인사시 복무평가, 올해의 검사·모범검사 수상 등 업무유공, 사건평정 등을 종합·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무죄사건 평정, 징계·감찰 결과 등을 엄정히 반영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요 보직 발탁과 관련하여 일선 기관장의 인사추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무부·대검 부서별 추천 등 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하였다. 또한 증대되는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하여 법무부 2명, 대검 1명, 서울중앙지검 5명 등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 검사를 발탁하였다.

검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법적 사고력, 언어적 표현능력 뿐만 아니라, 국가관·공직관·청렴성·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 면접을 실시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학업 성적 외에도 검찰실무실습(3주)과 실무기록 평가, 4단계 역량평가 및 심층 인성 면접 등 총 6일간의 평가를 통해 검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 8명의 외부위원과 평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한 3명의 내부위원 총 11명의 위원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차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어 신규임용, 전보 등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였고 결정된 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였다. 2013년도 검찰인사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10> 및 <표 11>과 같다.

〈표 10〉 2013년도 검사 인사내역

(단위 : 명)

구분 / 직위	계	신규임용	승 진	전 보	퇴 직
계	1,353	116	123	1,035	79
검 찰 총 장	3	-	2	-	1
고 등 검 사 장	26	-	10	9	7
검 사 장	82	-	15	58	9
고 검 검 사 급	559	3	96	429	31
일 반 검 사	683	113	-	539	31

〈표 11〉 2013년도 검찰사무직 (5급 이상) 인사내역

(단위 : 명)

구분 / 직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퇴 직
계	413(10)	105(2)	250(7)	6(1)-	50(1)
고위공무원단	24	8	9	-	7
3 급	18	9	4	-	3
4 급	152(3)	35(2)	82	-	35(1)
5 급	219(7)	53	155(7)	6	5

( )은 마약직

다. 검사적격심사제도 운영

2013년 검사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장 등 5명의 외부위원과 4명의 내부위원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직연수 7년, 14년, 21년, 28년인 검사 총 225명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대상 검사 전원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검사를 집중검토 예비 대상으로 분류한 후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 전원을 적격으로 의결하였다.

4.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가. 국내 교육제도 혁신

2013년도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검찰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검사 교육과정은 검사 전문연수과정인 '특별수사전문가', '첨단범죄 수사전문가', '보건수사전문가' 등 집합교육 29개 과정, 49회, 1,031명, 사이버교육 195개 과정, 2,145회, 1,92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검찰직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인 '사무국장역량강화' 등 집합교육 27개 과정, 38회, 1,047명, 사이버교육 171개 과정, 1,846회, 21,7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나. 국외훈련 기회·대상 국가 확대

(1) 검 사

검사의 국외훈련은 초기의 미국 위주에서 탈피하여 연수 대상국을 영국·독일·일본·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네덜란드·중국·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연수기관을 정부기관, 일반대학, 국립전문교육기관, 연구소 및 기타 형사사법 관련기관으로 다양화하였다.

한편, 6월 미만의 단기연수과정도 꾸준히 확대하여 2013년까지 검사의 장·단기 국외훈련 인원은 1,960명에 이르고 있으며, 검사 장기국외훈련현황은 검찰업무통계 <표 2-24>와 같다.

(2) 검사 외의 검찰공무원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1984년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설치한 이래 FBI 수사과정, 콜롬비아대학의 전산전문연수과정, 일본 국립과학경찰연구소의 문서감정과정, 미국 폴리그래프스쿨 과정 등에 꾸준히 파견하였다.

2013년도 외국에 파견한 검사 외 검찰공무원 국외훈련 인원은 16명이며, 이중 장기국외훈련 현황은 검찰업무통계 <표 2-25>와 같다.

5.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가. 감독보고제도 실시

1976. 1. 29.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관내 상황보고제(법무예규 검일 213-12)가 실시된 후 그 명칭을 감독보고로 변경하고, 검사장뿐만 아니라 지청장도 감독보고를 하도록 확대하여, 분기 1회씩 관내 동향과 청 운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동호회 활동 활성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및 구성원의 단결을 위하여 각청 동호회 활동을 독려하고, 대검과

일선청 교류를 위하여 전국 검찰 동호인 대회(테니스, 야구)를 개최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며, 특히 2013. 10. 12. 제9회 중앙행정기관 족구 동호인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회 활동을 통한 타 행정기관과의 교류에 노력하였다.

다. 벽없는 검찰문화 창조

(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추진

대검찰청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확한 욕구 파악 및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의견 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일선청의 제안자와 대검찰청의 검토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의견개진 및 수렴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 처리부서 및 담당자의 실명을 게시하고 제안등록일자로부터 미제기간을 명시하여 신속한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안자와 대검 처리 담당자간 상호 대화창구를 개설하여 제안자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시스템으로 2006. 2. 고객요구사항 조사를 시작하여 2007. 1. 1.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이후 활발한 의견 교환 및 상호간 이해증진에 따라 제안 안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성원들의 만족감 향상과 사기 앙양에 기여하고 있다.

2009. 12.에는 '검찰 변모 전략'의 일환으로 대검과 지방검찰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찰청 회의문화를 성공적으로 변모시켰다. 그동안의 대면 회의 개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검과 일선청간 실시간 쌍방향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검찰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검 및 지검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차치지청 및 부치지청까지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창원지검 마산지청 개청에 따라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43곳에 설치하였다.

6.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가. 검찰예산 개요

2013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은 벌과금 등 세입이 1조 8,281억 100만원으로서 2012년보다 1.3% 증액되었고, 세출은 총 7,835억 729만원으로 2012년보다 4.8% 증액되었다.

나. 주요예산 집행상황

2013년도 일반회계 중 벌과금 등 세입은 총 1조 4,788억 48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 목표액의 80.9%를 달성하였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7,835억 729만원에 예비비 474억 4,200만원, 이·전용 1억 1,281만원 감액 등 예산현액 8,314억 3,791만원 중 8,180억 6,656만원을 집행하고, 126억 6,03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

다. 2013년도 검찰예산 편성

2013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은 벌과금 등 세입이 1조 8,281억 100만원으로서 2012년보다 1.3% 증액되었고, 세출은 총 7,835억 729만원으로 2012년보다 4.8% 증액되었는바 세항별 내역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2013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 현황(편성)

(단위 : 만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증감액	(%)
계		7,478억 111	7,835억 729	357억 618	4.8
인 건 비		5,221억 1,915	5,465억 3,829	350억 6,925	4.7
기	소 계	404억 2,551	399억 8,500	4억 4,051	1.1
본	검 찰 국	5억 2,687	5억 3,800	1,113	2.1
경	검 찰 청	385억 2,244	381억	△4억 2,244	△1.1
비	공익요원	13억 7,620	13억 4,700	△2,920	△2.1
세 부 사 업		1,852억 5,646	1,969억 8,400	117억 2,754	6.3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 예산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등 4개 청의 청사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489억 8,200만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등 4개 청의 청사부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155억 9,000만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37억 300만원 등 합계 682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다.

2013년도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 예산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2013년도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 예산	편 성 현 황	비 고
계	68,275,000		
설 계 비	1,986,000	· 검찰특수기록관 · 대전지검 천안지청	
토 지 매 입 비	15,590,000	· 창원지검 진주지청 · 전주지검 · 수원지검 · 대전지검 천안지청	
시 설 비	48,982,000	· 검찰특수기록관 · 창원지검 진주지청 · 울산지검 · 대전지검 공주지청	
감 리 비	1,551,000	· 창원지검 진주지청 · 울산지검 · 대전지검 공주지청	
시 설 부 대 비	116,000	· 검찰특수기록관 · 창원지검 진주지청 · 울산지검 · 대전지검 공주지청	
자 산 취 득 비	50,000	· 검찰관사 교환 취득	

7. 검찰시설의 개선

가. 청사 신축

2013년 대전지검 공주지청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고, 검찰특수기록관, 창원지검 진주지청 등 6개청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바, 구체적인 신축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2013년도 검찰청사 등 신축현황

청 별	규 모		총사업비	추진일정	비고
	대 지(㎡)	건 물(㎡)			
검찰 특수기록관	6,610	9,420	197억원	'16년 완공	
창원지검 진주지청	16,529	14,943	334억원	'14년 완공	
전주지검	32,974	31,405	940억원	'18년 완공	
울산지검	38,273	34,124	659억원	'14년 완공	
대전지검 공주지청	16,529	7,760	280억원	'13년 완공	
수원지검	33,924	42,969	1,206억원	'17년 완공	
대전지검 천안지청	23,100	16,510	522억원	'16년 완공	

나. 검찰관사 확보

2013년에 신규 확보한 관사로는 대구고검 관사 1채를 추가 임차·배정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0채의 검찰관사를 추가 확보하였다.

제 6 항 국민의 권익 보호

1. 개 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인권보호 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 법무부 훈령으로「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개정된「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 8.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위원장 : 박원순 변호사, 위원 : 조국 교수, 조균석 변호사, 김종훈 인권국장)를 구성하였고, 2007년 상·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향상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확대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활용,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등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6.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영상녹화제를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술취득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단계에서의 인신구속남용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1,439명 중 18%에 해당하는 5,655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모두 3,005회에 걸쳐 구속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형사보상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13년도 형사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피고인 보상금은 한 해 동안 총 41,365건에 832억 6,898만원이 청구되었고, 지급된 내역은 29,937건에 545억 5,999만원인 바, 현황은 <표 15>와 같고, 피의자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16>과 같다.

〈표 15〉 피고인 보상금 지급현황(2013. 1.~12.)

(단위 : 천원)

구 분	청 구		지 급
	신 수	계	
건 수	38,121	41,365	29,937
금 액	79,201,467	83,268,983	54,559,995

〈표 16〉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2013. 1.~12.)

(단위 : 천원)

구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신 수	계	인 용	기 각	계		
건수	21	21	19	2	21	-	14
금액	59,037	59,037	36,322	10,000	46,322	-	31,469

제 7 항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1.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오늘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컴퓨터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광역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1984. 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설치하고,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 7. 26.부터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신설되었고,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개편되었다.

2008. 10. 31.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완공하여,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 기획관실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입주함으로써 대한민국 과학수사 메카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한편, 2011. 4.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검찰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마약·DNA·문서감정 분야는 2007. 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을 받은 이래로 2011.10.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갱신하는 등 고도의 품질관리 유지를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DNA정량 검출장비, 고감도액체크로마토그래피-탄템질량분석기, 행동분석 NLE시스템, 포렌식영상분석시스템, 음성복원 및 개선장비 등 감정 장비와 수사 지원장비 등 과학수사장비 총 1,141점을 새롭게 구매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25,733점, DNA감식 23,160점(현장감정물 5,483점, DNA DB시료 17,677점), 심리분석 5,063명(전국), 문서감정 10,547점, 음성분석 731점, 영상분석 1,190점 등으로 2012년 대비 5.8%가 감소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 디스크분석 도구 CFT10을 2010. 8. DB Log분석 도구를 2010. 11. 통화추적수사프로그램 Tracer, 계좌추적수사프로그램 Acora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휴대폰 및 스마트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2008년도에 디지털압수수색 현장지원 건수 364건, 분석의뢰 건수 554건을, 2009년도에 현장지원건수 386건, 분석의뢰 건수 1,160건을, 2010년도에 현장수사지원 건수 741건, 분석의뢰 건수 2,107건을, 2011년도에 현장수사 지원건수 896건, 분석의뢰 건수 3,023건, 2012년도에는 현장수사지원 건수 1,188건, 분석의뢰 건수 4,773건을, 2013년도에는 현장수사지원 건수 1,229건, 분석의뢰 건수 5,277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0. 7. 26.부터 시행된「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 범죄자에 대한 DNA-DB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3년 프로젝트인 DNA 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DNA-DB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3. 9. 부터는 인간 DNA감식 외 동·식물 등에 대한 법생물학 감식을 개시하였다.

2011. 10.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1. 11., 2012. 9., 2013. 6 전국 58개청 과학수사책임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각급청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과학수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조서작성과 달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CD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1부는 원본으로 검찰청에 보관하고, 1부는 부본으로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4.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 시범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5.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3회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3. 11. 속기사 운영준칙(대검예규 639호)를 제정·시행하였다.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으며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대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13.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773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조사실 설치현황 (2004년~2013년)

종류 / 연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5	-	24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계	813	21	62	581	77	72

※ 전국 수사검사(953명, 2013. 12. 31. 현재) 대비 81% 설치
※ 설치 누계는 813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773실 활용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간하여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법에 의해 지정된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말 기준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 DB에 69,404명을 등록하였고, 그 중 65,717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DB에 등록하였으며, DNA대조를 통해 살인, 성폭력범, 강도범 등 총 1,266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 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연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연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고 있다. 산출되는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경제적인 DNA 감식시스템을 확립하고 DNA감식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등 첨단기술을 통한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2017년 국제법유전학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른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06. 11.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수사업무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칙,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지원요청 절차 등 4장 2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규정」(대검예규 제410호)을 제정하여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이 컴퓨터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책에 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후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2012. 11. 6. 디지털포렌식팀 지원요청 급증에 따른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의 변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 고검단위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대검 예규 616호)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에 이어 2009년도에는 대구고검에, 2010년도에는 광주고검, 대전고검, 2011년도에는 인천지검, 2012년도에는 수원지검에 디지털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특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06. 3.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규모로 착공을 한 후, 공사비 143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2008. 10. 31. 준공을 하였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화된 증거를 수집·복구 분석하는 능력이 곧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종래 대형사건에 한정된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지원 활동이 선거사범수사, 고소사건 등 검찰 직접 수사뿐 아니라 송치사건에 대한 사안 재검토까지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디지털수사지원 요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디지털수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었다.

완공된 디지털포렌식센터에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분야의 디지털증거 분석실, 분석 인력 및 전문 수사 인력 교육시설 등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마약 감정실을 제외한 대검의 5개 분야 감정·감식실을 전부 이전하여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2. 11.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 8.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내에「디지털 포렌식 연구소」개소하였다.

6. 과학수사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가.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포엠인포텍(주)과 수사장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 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추진하였다.

최근 법원이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 비례의 원칙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현장에서 디지털저장매체를 직접 검색·수집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저장장치의 대용량화 추세로 현장에서 24시간 이상 상주하며 기업 DB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의 원본성·무결성을 보장한 상태로 데이터를 신속히 검색·수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즉각 하드디스크 복제와 분석이 가능한 이동식 포렌식 랩인 차량을 2007. 6.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여 차량설계, 제작 등 개발기간이 약 1년간이 소요되었고, 2008. 5.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 성공리에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차량 내부는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실과 분석실, 장비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분석실은 하드디스크 10개를 동시에 복제할 수 있는 이미징시스템과 2대의 현장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 분석시스템, 광통신시스템, 영상녹화시스템, 무정전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본 차량은 가솔린 발전기를 탑재하여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8시간 이상 가동이 가능하고, LEVEL JACK SYSTEM을 도입하여 분석실 내부의 진동을 제어하여 안정적인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에어쿠션과 차량내부에서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채증 및 감시용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다. 본 차량은 기업수사 등 대규모 데이터 압수수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고, 저장장치의 원본 압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차량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선청에 대한 효율적인 디지털수사 지원을 위하여 지원요청 전용전화(3838)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중요사건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이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수사를 책임지는 '디지털수사책임관제'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증거의 폭발적인 증가 등 최근 정보화추세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말부터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대검 및 각 거점별 디지털수사팀(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과 일선 수사팀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적인 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 Ⅱ)」,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및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인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 수사팀간의 분석 협업을 위한 「통합/협업 디지털 증거 분석환경」,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 시스템」, 가상환경에서 디지털증거 분석이 가능한 「가상화 디지털증거 분석시스템」, 위 시스템들의 체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수사망 인프라시스템」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완공하였으며, 2013년에는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를 위하여 「디지털증거 송치체계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다.

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7. 검찰업무 정보화

가.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 2.에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0. 7.부터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7. 12.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공판지원시스템과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전화통화녹음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10.에는 정보보안을 위해 대검 및 서울고·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를 추진하였고, 2009. 12.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지식검색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정책자료 및 수사 사례·기법 등 핵심지식을 손쉽게 등록·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0. 11.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 생산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 10.에는 '사용자별 맞춤형 바로가기 기능' 및 '부재중 메시지 설정 기능' 추가 등 메신저의 주요기능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하였고, 전자결재와 메신저간 연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서공유자와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재 시 소통이 증대되고 충실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 12.에는 기존 메일용량(200MB)을 대폭 증설(15배)하여 3GB로 저장공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장기간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해졌고, 인사이동 시 업무 관련 자료 이관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012. 1.에는 해킹방지 및 신뢰성 보장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2. 7.에는 망분리청(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전후 2주간 메일

시스템 대용량 첨부파일 제한 용량을 확대 적용(500MB ⇒ 3GB)하여 인사이동 대상자들의 업무편의성이 향상되었다.

2012. 10.에는 e-PROS 통합검색 시 최적의 검색결과가 전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을 재구성하였고, 메신저 시스템의 메모리를 증설하여 메신저 자원부족현상 해소 및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2. 11.에는 e-PROS 초기화면의 청별 소식을 삭제하고 경조사, 검찰뉴스, 우리청 소식 등 3개 항목으로 재개편, 각 항목당 전시되는 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제목만으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2. 12.에는 구글 크롬 및 파이어폭스의 IE Tab(부가기능)을 이용하여 검찰 인터넷 메일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교체하여 I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검찰 인터넷 메일 기능을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3. 3.에는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결재관련 메뉴에 '접수지연목록'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2013. 7.에는 e-PROS 통합검색 결과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로 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3. 10.에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메신저 알림 문구 최상단에 결재 진행 상태를 표시하였다.

2013. 12.에는 윈도우 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 적용, 디자인·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검찰 메신저II 구축사업의 추진 및 e-PROS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등록 불편함 해소,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게시판 및 전자결재 검색시 본문검색을 제공하여 보다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검사전문화 관련하여 변시 기수 관리 등 법학전문대학 출신 e-PROS 검사계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였고, 공인 전문검사 인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e-PROS 시스템을 보안이 강화된 윈도우7 및 익스플로러 9에 최적화하여 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는 1996. 3.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2. 2.에는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이버민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고, 2005. 2.에는 사건진행상황 검색서비스 확대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 12.에는 검찰 홈페이지에서 벌과금 납부조회와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정보소외계층이 검찰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 위주의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내·외부의 의사소통 채널 및 검찰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 9.에 검찰 영상방송국(SPBS)을 설립하고 검찰 영상뉴스인 '검찰포커스'를 제작하여 내부 통신망에 방송하였으며, 2007. 10.부터는 검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http://tv.spo.go.kr)를 개설하고 '검찰 포커스', '사건 속으로' 등 자체 제작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2008. 10.에는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고품질의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홈페이지의 서버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무중단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 홈페이지의 접속 통계를 활용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통합되고 보강된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제공하는 한편, 주요 위치에 팝업존을 배치하고 검찰의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2011. 3. 25.에 오픈하였다.

2011. 12.에는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http://m.spo.go.kr)를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검찰 홈페이지와 검찰방송 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검찰청 찾기', '검찰발표자료' 등 검찰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찰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2012. 11.에는 급변하는 IT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최신 웹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3. 10.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 제공을 위해 DB서버 이중화 구성을 실시하여 24시간 무중단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3. 11.에는 지속적인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웹접근성 인증마크(제2013-1289호)를 부여받았으며, 안전행정부 주관 웹 호환성 수준 진단 실시(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등 대상)결과 검찰청 홈페이지는 "매우우수"로 진단되었다.

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 처리진행 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에는 형통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에는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 및 고소·고발지침 개정 등 법·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사건검색 시스템의 전·후 화면이동 기능 구현 등 일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서버 메모리 증설 및 연계 서버 이중화 구축 등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2011. 12.에는 일선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 및 공판카드 업무 간소화, 판결문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하였고, 불필요한 알림창 제거로 클릭수를 최소화하였고, 창 크기 조절 기능을 도입하여 멀티태스킹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능 개선과 함께 향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화면의 이동 없이 조서작성이 가능하도록 입력절차를 개선하고, 경찰과의 처분미상전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공문서로 통보하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형사사법 서비스 고도화에 한층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검찰사용자와 IT운영자로 구성된 고도화TF를 구성하여 시스템 개선과제 도출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검사실 업무 경감 방안으로 미제사건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담당자 지정,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 통합, 수사지휘목록 개선, 관련사건 검색 기능 확대, 결정문 조회·검색, 판결문검색, 소속직원의 일정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일선 결재자들이 검사별·부별 수사 실적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배당·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찰

조사과·수사과 사용자들을 위해 사경과는 차별화된 검찰업무 절차에 부합하고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한편, DB접근제어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Windows 7 운영체제 도입에 대비 각종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에 노력하여 형사사법 정보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다.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에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 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체계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으며,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과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보안교육 지원, 각 청 정보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안전교육 실시 등 검찰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사용자 정보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PC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대응하여 각종 정보보호 규정 보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8. 화재수사팀 신설 및 정착

화재 및 폭발사건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은 물론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 또는 이미 실행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화재수사팀」을 신설하고 일선청의 화재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현장감식뿐만 아니라 수사자문, 실물 재현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 10. 중앙소방학교와 '화재수사를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감정장비 및 정보공유를 통해 10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기에 의한 실화로 판단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통하여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 살인임을 입증한 사건, 인천 유류운반선 폭발사건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 현장감식 및 재연실험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조력하였다.

또한, 화재역학의 기초와 국내외 화재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화재사건 수사지휘 메뉴얼'을 제작·배포하였고, 2년여간 일선청에서 의뢰한 사건 중 그 유형에 따라 '화재사건 수사사례집1,2'를 발간하여 일선청에서 수사지휘, 조사, 기소, 재판 등 각 단계별로 화재사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화재수사팀은 화재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화재감식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점진적으로 정밀분석 장비 등을

보강하여 화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9.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3.20, 6.25 등 금융기관, 언론사,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및 피싱, 파밍, 스미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SNS 서비스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Stuxnet과 같이 주요 산업시설을 노리는 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지휘권을 확립하며,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맞는 첨단 수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창단하였다(대검찰청 훈령 제168호,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 업무와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의 사이버범죄 수사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기하였고, 첨단범죄수사과 및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소속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테러형 사이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안전문가, 화이트해커를 특별채용하고, 내부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며, 우수 인력을 IT 전문 수사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모든 수사 영역에 있어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경향에 따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선진 디지털 수사 역량을 사이버범죄 수사단에 결합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기법·도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일선 청 각 분야에 대한 수사지원 기능 또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범죄는 해외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이 보편화되어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수사단은 국가 간 사이버범죄의 실시간 공조체계로 미국, 일본 등 63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G8 24/7 국제공조 네트워크'의 한국 내 공식 접촉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조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주관 사이버범죄 협력회의 참석과 G8 24/7 네트워크 회원국 수사기관 등에 방문하여 국제공조 수사의 실효성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최된 3차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안건을 발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사이버 분야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초의 사이버공간에 관한 의미있는 결과물인 '서울 프레임 워크 및 공약'이 도출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G8 24/7 국제공조 네트워크 수사기관인 프랑스 정보기술 및 통신범죄 중앙수사부(OCLCTIC),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 네덜란드 국립과학수사연구소(NFI) 등을 방문하여 조직구성, 운영 및 양국간 협력사항 논의 등 국제공조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또한, 태국 검찰청과 중앙법과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수사사례 교류, 수사지원 및 향후 실질적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전산망 침해의 주요 경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와는 별도의 양자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유관기관 협의회(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KT, 네이버 등 40여개 기관 참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를 통해 사이버범죄정보 공유, 협력강화, 정책입안,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걸쳐 기관 및 업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 18일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악성코드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10.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기획관실은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 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학수사담당관실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02.)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 경로 특정 불순물(2013. 01) 등 7건의 첨단 분석기술을 공무원직무발명특허로 등록하였고, 문서감정 분야는 문서에서의 인주 및 서명 위조 감식을 위한 MICRO ATR-FTIR 분광법 응법기법을 특허 등록(2010. 12.),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를 특허 등록하였고, 영상녹화 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를 디자인 등록하고, 2011. 10. 영상녹화 조사 시스템을 특허 등록하였다.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2. 12.)'를 특허 등록하였다.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암호분석 분야에서 2012. 12.에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 2013. 3.에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 2013. 7.에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 2013. 11.에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디엔에이수사담당관실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과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을 특허 등록하였으며 또한, RNA를 이용하여 체액흔의 종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술인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이 특허 등록되었다.(2012. 12.)

제 4 절 범죄예방업무

제 1 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교화 및 관리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13년 범죄예방정책국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연이은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및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신상정보공개제도 개선, 성충동약물치료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성폭력·강력사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집행 내실화, 맞춤형 출소자 지원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하였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소년원 교육 내실화, 직업훈련 강화 등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역량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사회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법질서운동을 전개하여 민주 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최근 형사정책의 추세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선도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 이혼율 증가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비행소년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로 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 비행청소년 및 출소자 등 범법자를 보호·선도할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청되어 법사랑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죄예방 활동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추진하였다.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법교육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5. 3.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 3.까지 총 7차 회의에 걸쳐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최종 연구

보고서를 채택 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법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법조계의 지원 방안 및 평생교육·시민교육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법교육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6. 7. 법교육연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법교육 역량을 총결집한 실무추진기구 성격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법교육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6. 10.부터 초등·청소년·시민 등 각 분야별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교육 발전방안 자문을 위해 법교육 자문위원 간담회를 반기에 1회 개최하였다. 2008. 3.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관 법교육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9년부터 반기에 1회씩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임시회 포함 총 11회 개의되었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와 '청소년 법교육사업', 서울시립대학교와 '시민법교육 사업',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 법교육사업',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 법교육 사업', 2009년에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초등학생 법교육사업', 고려대와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추진', 2010년에는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와 2011년에는 제주대, 경북대, 한양대와 2012년에는 충남대와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추진' 등 법학전문대학원 13개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법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3. 감호제도의 개선

형벌만으로 교화·교정이 불가능한 상습범과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1980. 12. 18. 사회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고, 고질적 상습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 8. 4. 치료감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2008. 6. 13.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였다.

4.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16개 광역 지자체·민간단체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시민법률콘서트', '시민로스쿨', '어린이로스쿨' 및 다양한 법질서 캠페인 전개 등 민간중심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법사랑 서포터즈'를 발족하여 16개 광역지자체 MOU 체결 중점추진과제를 주제로 UCC,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법질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포털·방송·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익광고 제작·송출,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오픈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법질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 내실 있고 체계적인 보호관찰활동 전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형법개정을 통해 1997. 1.에는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초기 소년범에 대한 지도·상담위주의 선도정책에서 재범방지와 위험범죄자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보호관찰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집중 보호관찰 확대 실시, 외출제한명령제도 도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등 위험범죄자 관리를 위한 선진 보호관찰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근접접촉위주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도피중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하여 구인·유치를 적극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복귀 조력을 위해 지역사회의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방식 선택에 있어서 경험칙이나 단순 자료에 의존하던 관행으로부터 탈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경력, 경제상태, 성장배경, 심리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기초로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방법을 선택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 주요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다. 대상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감독기법의 차별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범죄유형별 수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등 새로운 보호관찰기법을 도입·시행하여 보호관찰 제도의 선진화·과학화를 기하였고, 직렬통합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및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보호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사이버 보호관찰 집행시스템인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집행센터(원격집행지원시스템)를 구축하여 명령 집행의 편리성과 엄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으며, 보호관찰정보화시스템 간 상호 연계강화, 유형별 디지털 교육자원 구축, 통계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하였다. 향후 보호관찰DB 구축, 무인전자보고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방식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6. 갱생보호사업의 효과성 제고

범죄인 관리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관찰과 더불어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범죄로

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갱생보호 사업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공단은,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에서 '갱생'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9. 3. 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갱생보호사업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갱생보호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7. 청소년비행예방 역량 강화

최근 학교폭력 등 저연령 소년에 의한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2007. 7.부산·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립·운영하였고, 2012. 2.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2. 6.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이듬해 2013. 11.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총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 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대안교육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였다.

2013년에는 긍정적 기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생·보호자 등 교육 수요자,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및 장학사·일반교사 등 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명칭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3. 11월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검사의 기소유예자 및 학교장이 의뢰한 부적응 학생, 판사의 보호처분 등에 대한 대안교육, 판사가 의뢰한 상담조사 및 검사가 의뢰한 결정전조사 외에 청소년 비행관련 연구·개발, 청소년 법교육 및 다양한 1일체험,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위기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 등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특별교육, 가족캠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예방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되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절도예방, 성비행 예방 등 비행 유형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고도화하는 등 프로그램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에서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3년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명)

총계	가해학생 대안교육	보호자 의무교육	주말캠프	교원 직무연수	찾아가는 예방교육	학교폭력 가족캠프	자체직원 전문연수
122,922	2,643	770	858	185	117,652	752	62

제 2 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역량결집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제고,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 실적 체계적 관리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였다.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범죄예방위원 공개모집, 신임 및 전문화교육 실시, 청소년 선도·각종 봉사활동별 마일리지제도 개선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의 평균 마일리지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포상기준 재정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인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에서도 '정기총회 및 임원간담회', '전국 범죄예방위원 임원 워크숍',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2013년도 주요 사업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 요

2013년도에 펼쳐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관련 주요 활동으로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지도 및 취업알선·재정지원 등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주도, 장학사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선도활동, 문신제거시술 등 의료시혜 지원 및 법교육 출장강연 등을 전개하여 선도유예자 및 보호관찰 위탁 청소년 7,832명을 선도하고 범죄예방위원 9,881명이 참여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사회봉사 집행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였고, 갱생보호대상자 3,137명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44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3,582명의 학생들에게 26억 1,000만원의 장학금 지원 및 범죄취약아동 등 5,494명과 결연, 상담·지원 등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연인원 91,315명이 참여하여 범죄취약지역 초등학교 주변 등 하교시간대 순찰 및 법질서 캠페인 활동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범국민적 운동에 대한 이해 확산과 저변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2. 범죄예방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가.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범죄예방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결집 및 사기

진작,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법질서 바로세우기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 10. 11.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법무부장관, YTN사장, 중앙일보 대표이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자들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및 범죄예방자원봉사상 및 우수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하였다.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의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정부포상 27명(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9), 범죄예방자원봉사상 11명(대상 1, 본상 5, 특별상 5), 우수단체표창 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나.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대상자 표창

2013년도 범죄예방위원 등 범죄예방 관련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유공 자원봉사자 141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가.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구축

범국민적 역량결집을 통한 선진국 진입 및 사회 안정,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008. 6. 30. 중앙 및 전국 56개 지역 본부가 발족하였으며, 2009. 4. 23. 안양, 2011. 9. 1. 마산지역본부가 추가 발족함으로써 전국 58개 지역에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체제를 구축, 2013년에도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3대 중점 사업을 선정, 법질서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업

3대 중점 사업으로 「준법의식 높이기」,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생활운동으로 정착하도록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 법무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며 지자체, 교육청(학교),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질서 준수 우수학교 선정, 표창 및 장학금 지원, 법사랑교실 및 생활법 강좌, 법질서 체험학습, 범죄취약지역 등·하교 집중 순찰활동 및 범죄방지용 호루라기 제작·배포 등 범죄예방활동 전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지원을 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확립 운동(광주),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순회공연(울산), 아동지킴이 CCTV설치 및 아동 보호 순찰차량 운행(창원), 한마음봉사단 장애인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경주), 청소년 孝 한마음 축제(청주) 등 1지역 1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함으로써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 국민의 생활운동으로 승화시켰다.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가. 범죄예방위원 공개모집 등

실무형 전문가 등 범죄예방위원 신규위촉 인원의 1/3 이상을 인터넷, 지역방송 등을 통해 공개모집(2013년도 42.2%)함으로써 지역 명망가가 아닌 실무형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하고,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 활동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와 범죄

예방위원을 직접 결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 범죄예방위원 전문화교육

청소년 선도·보호, 학교폭력예방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선도예방 전문화교육을,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전문화교육을, 신규로 위촉된 범죄예방위원들은 신임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서울남부 등 범죄예방위원 1,610명에 대한 선도예방, 보호관찰전문화교육 및 신임교육을 각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리 부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교육 강사요원 양성교육을 1박 2일씩 3회에 걸쳐 58개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148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5.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2005. 9. 1.부터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개정 마일리지제도에 의한 실적 등을 평가하고, 지역협의회 조직·운영 현황 관리 등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범방위원 전국연합회(http://pr.bumbang.or.kr) 홈페이지를 구축, 범죄예방 지도 및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일리지제도 및 포상기준 재정비에 맞춰 메인화면 구성 및 활용상의 문제점 등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다.

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범죄예방위원 공개모집 및 활동 홍보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공개모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위원 관리 사이트를 구축, 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봉사활동 마일리지 실적 등을 점수로 관리하면서 재위촉 및 각종 포상 대상자 선정시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 심사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상황을 소개하기도 하고, 수범사례를 게재하는 등 봉사활동의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다.

6.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주요활동

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2013. 5. 3.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지역협의회장 등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승인, 전국연합회장 연임 승인의 건 상정, 범죄예방위원 선도 미담사례 동영상 시청 등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업무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다양화, 조직화,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로 인하여 편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출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소외되고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숭고한 봉사정신과 지혜를 바탕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지원,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지원 등 범죄예방위원의 기본적 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치하하였다.

나. 법교육 강사 요원 양성 워크숍 개최

2013. 11. 4.부터 12. 3.까지 1박 2일씩 3회에 걸쳐 법무연수원 등에서 법무부 법질서선진화 과장,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전국 범죄예방위원 지역·지구회장 등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전문 연수를 통하여 법무부의 학생자치법정, 학교출장강연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최근 빈번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위원 별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을 갖추게 하고, 강력범죄 피해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 양성 필요에 의하여 범죄예방위원 대상 법교육 강사 요원 양성 워크숍을 법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제 3 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 개 요

법교육은 미국의 Law-Related Education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는 달리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법적 자질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처럼 법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법과 규칙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나 사법제도의 의의·기능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력 중심, 참여위주의 교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가. 자율적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의 법의식 선진화 필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건전한 시민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실용적 법교육을 통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예방

기본적인 법적 소양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법에 대한 경시 및 불신풍조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은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실용적인 계약문화와 긍정적인 국민 법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현재까지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합리적 사고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여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절실하다.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가.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법교육의 체계적인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2005. 3.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05. 3. 제1차 회의에서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 3.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법교육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방안

나. 민·관 법교육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교육과 관련된 정부기관·사법기관·정부산하기관·민간기관 등 인사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06. 7.부터 반기별 1회, 총 5회를 개최하였고, 2007. 6.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추가하여 20인으로 확대하였다.

다. 법교육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초등(3명), 청소년(5명), 시민(5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2006. 10.부터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7. 11.에는 초등 법교육 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 하였으며, 2008. 6.까지 총 4회 운영하였고, 법교육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였다.

라. 법교육지원법 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법교육지원법이 시행(2008. 6.) 되었고, 법률 시행에 따라 법교육 추진과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기관 및 학계, 교육계 등 민·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2009. 2.)를 시작하였다. 2009. 11. 법교육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 법교육사업 추진경과, 솔로몬 로파크 운영결과,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010. 3. 법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법교육 사업 운영방향 및 예산심의와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0. 12. 법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2010년 법교육 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

시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1. 2. 제5차 회의에서는 법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0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11. 5. 법교육위원회 임시회의는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여 헌법광장 개관식 참석과 솔로몬로파크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2. 12. 제6차 회의에서는 2011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질서선진화과 출범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2. 3. 제7차 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교육 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2. 12. 제8차 회의에서는 2012년 사업결과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3. 2. 제9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2013. 12. 제10차 회의에서는 2013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2014. 2. 제11차 회의에서는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안을 심의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헌법가치 및 법질서준수 교육안 개발을 심화하였다.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가. 대학생·시민용 교재

계약서 작성 등 일반시민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법률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2005. 12.)을 발간하였고,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2007. 2.)을 발간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대처방법, 개인 파산·회생 방법 등 불경기 극복을 위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2009. 2.),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쉽게 범하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자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2009. 4.)를 발간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생활법률 지식을 담은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2010. 6.) 책자를 발간하였고,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2011. 3.)을 발간하였다. 2010년 대한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원 스포츠 폭력과 승부조작 및 비리근절 교육을 대한축구협회 소속 각급 지도자·심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축구인을 위한 법교육 교재 '축구 잘하는 법(法)'(2011. 12.)을 발간하였다.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법적 지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노인들의 올바른 재산상속 및 보이스 피싱·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2012. 8.)을 발간하였다.

장애인의 법의식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 회망을 만드는 법,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 점자 및 음성도서를 발간(2013. 9.)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 보급하였다.

나. 중·고생용 교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2005. 9.)을 발간하였고, 최근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 (2009. 2.)을

발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의 소중함과 헌법정신・이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2009. 7.)를 발간・보급하였다.

학생들이 법과 관련한 사회과 수업에서 토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과 사회에 대해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2010. 2.)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2011. 3.)을 발간하였다.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청소년 축구인의 승부조작 등 비리근절을 위한 법교육 책자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2012. 10.)을 발간하였다. 강력범죄예방교재 '장난과 범죄사이'를 발간하였다(2013).

다. 어린이용 교재

법에 대한 궁금증을 만화로 하나하나 풀어보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2006. 4.),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마법천자문의 '손오공'과 '소라', '여의필' 등의 캐릭터와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진 법교육 만화 '손오공 무법소탕기 Ⅰ・Ⅱ'(2006. 9.)・Ⅲ(2011. 6.)를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험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이야기'(2007. 11.)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과 질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초등학생용 만화교재 '법에게 물어봐' (2008. 4.),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춘 만화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2009. 1.)을 개발・보급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유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구름빵을 활용한 워크북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 (2012. 11.)를 발간하였고, 강력범죄피해 예방 교재인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2013. 3.)과 헌법정신과 가치교육을 위한 '헌법아! 놀자 Ⅰ・Ⅱ'(2013. 9. 12.)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법교육 만화인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2013. 11.)를 개발하여 시리즈를 이었고, '나는야! 법짱'(2013. 12.)을 헌법가치 부분을 강화하여 개정・발간하였다.

라. 여성용 교재

2007. 3.에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과 생활법률, 직장과 생활법률, 성문제와 생활법률, 부동산과 소비생활로 구성된 여성용 법교육 교재 '여성과 생활법률'(2007. 3.)을 발간・보급하였으며,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한 '엄마는 보디가드'(2009. 5.)를 발간하였다.

마. 다문화가정・새터민용 교재

결혼, 취업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률 및 권리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정착 및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Fun Fun 대한민국의 법'(2012. 3.)을 발간하였으며,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질서의 종류 및 차이점에 대한 인지를 통해 환경변화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 및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우리법 바로알기'(2012. 6.)를 발간하였다.

바. 법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006. 1. 개발된 '법은 내 친구'는 모의국회, 역할극 같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판례분석, 쟁점토론 등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프로그램 해설서로 개발되었다. 또한 '모의재판·청소년 법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2008. 5.)을 개정·발간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2008. 3.), 학교폭력 OUT(2009. 12.)을 발간하였다.

사. 법교육 수업용 강의안

테마별 법교육 강의 자료인 'Law Educator Ⅰ·Ⅱ'는 중·고교생이 알아 두어야 할 법률 지식을 20개의 테마로 나누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들어 해설집을 수록하였다. 또한 각 테마별로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수업자료 및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개발하여 CD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법교육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수록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 기초질서 지키기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2012. 11.)을 발간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을 대상별로 개발(2012. 6.)하여 보급하였으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사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강의안 개발(2013. 3.)하여 보급하였고, 강력범죄 가해 방지 강의안을 추가 개발(2013. 10.)하여 보급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강력범죄 예방, 일반 생활법,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소개 등 (헌)법교육 콘텐츠를 총망라한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를 개발(2013. 10.) 보급하였다.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3년까지 총 62회에 걸쳐 2,692명이 수료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직 검사, 대학교수 등 법교육 전문 강사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와 대검찰청, 대법원, 보호기관 등 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나. 소년원 학생 등 비행청소년 및 새터민 법교육 실시

2006. 3. 법무부 소속 안양소년원을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주 1회, 2시간씩 '법과 함께 놀자'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권리의식, 책임의식 및 법의식 향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함에 따라 2007년에는 소년보호기관 뿐 아니라 보호관찰소까지 법교육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 그 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2006. 5. 한겨레 중·고등학교 탈북 청소년 학생 및 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바로알기' 견학을 2007년 총 4회, 2008년에는 총 33회, 2009년에는 총 44회, 2010년에는 총 63회(999명 참석), 2011년에는 총 67회(1,227명 참석), 2012년에는 총 82회(1,480명), 2013년에는 총 116회(1,351명) 실시하였다.

다. 법교육 출장강연제도(Law Educator) 실시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인, 법대교수, 관료, 유명인사 등 법교육 강연에 적합한 법교육 강사진을 구축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출장강연제를 시행하여 2006년 총 267회 11만여명, 2007년 총 607회 19만여명, 2008년에는 16만여명에게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사례중심의 법률 강좌를 실시하였다. 2006년 서울·경기지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운영을 통해 2012년 현재 총 1,934명의 법교육 전문강사를 확보하였다. 2009년에 총 865회 운영으로 165,34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에는 828회 운영하여 146,131명이 참여하였고, 2011년에는 1,560회 운영하여 475,913명이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1,811회 운영하여 455,847명이 참여하는 등 총 1,701,607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2,290회 574,034명이 참여 하는 등 총 2,275,641명이 참여하였다.

라.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2006년 의정부 광동고, 전주 상산고 등 5개 시범학교에서 총 15회 운영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2007년 전국 15개교에서 36회 실시, 2008년 전국 23개교, 2009년 전국 34개교, 2010년 전국 49개교, 2011년 전국 388개교, 2012년 전국 660개교, 2013년 전국 1,045개교로 확대 운영되었다. 교칙을 위반한 동료 학생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와 판결까지 학생들 스스로 내리는 대표적인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 및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인터넷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직무연수가 가진 공간적 한계를 극복, 단기간에 많은 수의 법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를 개발하여 2006. 6. 부터 2013년까지 총 150회 24,989명의 교사들이 수료하였다. 현재 「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학생활동지도를 위한 법교육(사례중심)」,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 등 3개 과정이 운영 중이다.

바.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전국 319(민사 118, 형사 201) 고교 팀이 대본심사에 참가하였다. 이중 5개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 6팀 총 30팀이 예선에 진출하였다. KINTEX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본선대회에서는 지역대회를 통과한 형사부 6개팀, 민사부 6개팀 등 총 12개팀이 경연을 벌인 가운데 형사부문에서는 경기 진성고등학교, 민사부문에서는 경남 진주중앙고등학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 제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개최

2013. 7. 전국 19개 고사장에서 고교 학생 2,645명이 제9회 생활법 경시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사고력과 생활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가치와 책임감 및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솔로몬로파크에서 1박2일간 '생활법 캠프'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토론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개인부문 대상 안유진 학생(법무부장관상) 등 15명과 단체부문 대상 인천하늘고등학교 등 11개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교사부문 수상자는 인천하늘고등학교 조기성 교사 등 3명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대회로 진행,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질서 의식 및 헌법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대회로, 개인 및 단체전으로 참가하여 온라인 예선, 7개지역 예선(※ 2014년부터 8개 권역으로 확대), 2박3일간의 법사랑캠프를 거쳐 최종 성적을 가리고, 매년 법무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제4회 대회까지 총 1,546개교, 12,607명이 참여하였다.

자.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13년 처음 개설된 대회로, 생활속에서의 헌법정신과 가치에 관한 소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쓴 산문 형식의 원고를 각 학교별로 접수, 1·2·3차에 걸친 전문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첫 대회에는 총 3,275명이 지원, 최종 16명이 법무부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였다

차. 법교육 공모전 개최

UCC를 통해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2007. 5. 15.부터 7. 10.까지 진행되었던 제1회 법교육 '법아 놀자' UCC 공모전에는 총 110개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서울 수암초등학교 학생들의 '폭력없는 학교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2회 'It's LAW' 법질서 UCC공모전은 2008. 4. 10.부터 6. 10.까지 개최하였고, 총 128개 작품 중에서 'Help Mind'라는 주제로 동명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대상을 받는 등 총 9개팀이 수상하였다. 또한 2008. 10. 10.부터 11. 19.까지 개최된 법질서 포스터·사진·만화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414개, 사진 162개, 만화 141개 총 717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2009년 '우리들이 만드는 Law story'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408개, 사진 354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2010년에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울 수 있는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8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2011년에는 법질서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 활용을 위해 '법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10. 15.부터 11. 30.까지 개최하였으며, 게임시나리오(38개), 만화(90개), 포스터(213개), UCC(61개) 등 총 402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3개 우수작품을 시상하였다.

카. 스포츠선수 대상 법교육 실시

2011. 12. K리그 15개 구단 신인선수 122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2 K리그 신인선수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제주유나이티드 등 프로축구단과 배구연맹 선수 및 감독 등 155명을 대상으로 비리방지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KBO와 연계하여 프로야구 1군 7개 구단 및 2군 5개 구단 등을 360여명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심판매수 등 비리 근절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축구 선수를 위한 법교육 강사 요원 양성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최근 승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스포츠계에 불어닥친 비리를 근절하고, 프로축구 신인선수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6. 사이버 법교육 시스템 활성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생활법률을 배울 수 있는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 go.kr)는 검찰청, 법원 등 주요 사법기관에 대한 가상 견학시스템, 플래시로 보는 피해구제절차, 만화로 보는 생활법률 등 다양한 형식의 법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2006.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15만여명이 이용하였고, 2008년에는 17만여명, 2009년에는 19만여명, 2010년에는 17만여명, 2011년에는 3만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사이버이벤트 법률퀴즈에는 누적 150여 만명이 응모하였다.

2012년도에는 법질서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법질서 캠페인, 공익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7.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가. 유관기관과 MOU 체결

2006. 3.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MOU를 체결하였고, 시민 법교육의 방향성 정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와 MOU를 체결하였다.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법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캠페인을 통한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법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법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2011년에는 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과 2012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법교육 활성화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교육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제2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2010. 4.)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저작권 퀴즈대회와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게임 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MOU를 체결(2010. 6.)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학교 법교육 등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법교육학회 등 민간 연구활동 지원

법교육의 학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부분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또한 법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과 '한국법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8. 민간 법교육 지원

법교육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역량 있는 법교육 민간기관을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개 기관에 대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2012. 12.)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안산·대전·부산·창원·광주·청주·대구청소년비행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인력양성 등 법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9. 법체험기관 솔로몬 로파크 설립·운영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법교육 연수·체험 전문시설인 '솔로몬 로파크'를 설립하였다.(2008. 1.)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어린이 법탐험 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프로그램과 교사·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8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7명, 2008년에는 2,964명, 2009년에는 3,849명, 2010년에는 3,048명, 2011년에는 4,730명, 2012년에는 5,755명, 2013년에는 5,83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모의법정, 모의국회, 어린이 법짱마을 등 법과 법제도를 체험하는 '법체험관'을 개관(2009. 3.)하여 운영 중이며, 2009년 151,864명이 방문하였고, 2010년에는 209,416명, 2011년에는 219,290명, 2012년에는

259,033명, 2013년에는 271,242명이 방문하였으며, 부산에 제2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다.

10.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헌법학, 법학, 교육학 교수, 교사 등으로 추진단 구성(2013. 5.)하여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헌법교육 강화 방안 논의(2013. 5. 6. 7. 총 3차 회의 개최)하였고, 제4차 회의를 개최(2013. 2.)하여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한 논의하였다.

제 4 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1. 개 요

법질서 운동은 우리 생활 속의 작은 질서와 원칙부터 스스로 지켜나가는 실천운동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16개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 속 기초질서를 지키고 실천하는 민간중심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시민로스쿨', '어린이로스쿨' 운영 ▲가정헌법 만들기 캠페인 및 법사랑 서포터즈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전개'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인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 민간중심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법무부는 전국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활 속 기초질서를 지키고 실천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08. 4. 강원도를 시작으로 충북(2011. 7.)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법질서 확립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 교통·관광질서 확립,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현장 중심의 법질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법질서 운동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검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였고, 법질서 캠페인 로고·로고송·슬로건·홍보 동영상,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간 중심의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2010. 3.)하여 '스쿨존 지키기' 등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선진 축구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2010. 5.) 체결 후,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전광판에

'법질서 국가대표' 동영상을 상영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관람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국격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손해보험협회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 등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는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을 공동 전개하여 전국 140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국민 생활 속에 법질서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문화공연과 법률강연을 함께 하는 '시민법률콘서트'와 기초생활법률 강의, 준법교육 등으로 진행되는 '시민로스쿨', '어린이로스쿨'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시민법률콘서트 개최현황

- '07년~'13년 대전, 울산 등 총 41회 (19,000여명 참여)

※ 2012년도 시민·어린이로스쿨 개최현황

- 평촌도서관 어린이 로스쿨(2012. 9.)
- 안양시 드림스타트 센터 어린이 로스쿨 (2012. 10.)
- 대전 시민 로스쿨 운영(2012. 11.)
- 아산 시민 로스쿨 운영(2012. 11.)

※ 2013년도 시민·어린이로스쿨 개최현황

- 강원도 인제군청 등 22개 기관 (620명 참여)
- 지자체 어린이로스쿨 : 홍성 초등학교 등 17개기관 22회(669명 참여)
- 지역아동센터어린이로스쿨 : 서울·경기·인천 100개 기관(1634명 참여)

법질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실천대회(2012. 7.), 한국자유총연맹과 연계한 국민생활질서운동 캠페인(2012. 7.), 바르게살기운동본부와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 법교육(2012. 9.) 등 민간단체와 법질서 캠페인 전개하였다.

2013년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농협과 함께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조성한 법사랑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법교육 서비스를 확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수도권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로스쿨'(약100개소 2,000명)을 운영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확대하고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농협 '농촌사랑 지도자연수원'과 연계하여 '이민자 생활법률 특강'(90개 기관, 약 2,500명)을 운영하였으며, 농협과 함께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97개팀, 730명)를 개최하였다.

3. 국민과 함께하는 법질서 운동 전개

법무부는 2011년 한 해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 '법사랑 서포터즈'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가정헌법 만들기'는 가족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할 약속・규칙을 가정헌법에 담아 실천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과 법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법질서 운동을 가정 속으로 파급시키는 운동으로,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이정현 국회의원, 매일경제신문, 농협,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진행(2011. 3.~5.),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총 684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특히 학급헌법 참여는 2회 공모전에 비해 약 2.5배인 188개 학급이 참여하였다. 시상식은 2011. 5. 24.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대상, 우수상 등 총 27개 작품(가정헌법 17, 학급헌법 10)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유치원생, 초등생을 대상으로 법사랑 사이버랜드 및 가정헌법 만들기 콘텐츠를 활용하여 법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게임, 영상 등 다양한 법질서 관련 자료를 교육현장에 제공하여 온라인・오프라인상의 법질서 교육확대를 위해 총 40개의 법사랑 시범학교(유치원 22, 초등학교 18)를 운영하였다. 일반가정 및 시범학교를 포함해서 2011년 총 2,384개 가정 및 학급이 가정(학급)헌법 만들기에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우리헌법 만들기' 이벤트를 개최하여 약속, 공감, 소통, 배려 등의 가치를 배우는 실천적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 및 학급에서부터 실천하는 법질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274건이 접수(가정헌법 160개, 학급헌법 114개) 되었으며, 우수작 60개(가정헌법 30, 학급헌법 30)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가정・학급헌법 만들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직장헌법' 부문을 추가하여 '우리헌법 만들기'로 확대하고 '제4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2013. 2.~5.)하였다. 제4회 공모전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모든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 나가는 실천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국회(김회선 의원)와 함께 하였으며, 이밖에 매일경제미디어그룹, 농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언론과 민간단체가 함께 하여 가정헌법 594편, 학급헌법 246편, 직장헌법 50편 등 총 890편이 참여했다. 시상식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2013. 5. 30.)하였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김회선 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생활 속 법질서 현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42개 대학 40개 팀 187명 대학생으로 구성된 명예시민기자단 '제4기 법사랑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으며(활동기간 : 2011. 7. ~ 2012. 2.), 2011. 12.까지 총 400건의 법질서 관련 기사를 발굴, 블로그에 게재하고,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수기사 모음집('우리들의 법이야기')을 발간하였다.

2012년도에는 57개팀 25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를 발족하여(활동기간 : 2012. 6.~ 2013. 2.) 16개 광역지자체 MOU 체결 중점추진과제를 주제로 2012. 12.까지 총 578건의 UCC,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및 SNS에 게재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질서 캠페인 콘텐츠 활용 확대를 위해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법사랑 만화・포스터, 게임시나리오, UCC 등 총 402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대상・우수상 등 총 13개 우수작을 시상하였으며, 우수작은 '법사랑 사이버랜드' 탑재 및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처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Good-bye 학교폭력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760작품이 참여하였으며, 대상, 최우수상 등 11개 수상작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Good-bye 학교폭력 공감콘서트'(2012. 6.)를 개최하여 초중고생 및 교사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CC공모전 우수작 상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공감 토크 등 학교폭력 근절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하였다.

4.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온라인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로 국민 누구나・언제・어디서든 즐기면서 시민적 규범의식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준법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였다.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① '캐릭터 동화'(디보, 코코몽, 구름빵), 유아용 '플래시 게임', 실험을 통해 법의 원리를 배우는 '법사랑 스핀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운전 체험' 등 재미있고, 독창적인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게임랜드', ② '캐릭터 동화'(디보, 코코몽, 구름빵), 검찰, 법원, 국회 등 법을 다루는 기관을 탐방하는 '기관 탐방'과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며 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법정체험', '우리헌법 만들기', '배틀 법정' 등으로 구성된 '체험 법세상', ③ 웹툰, 법질서 소식지 등을 읽을 수 있는 '도서 열람실' 및 공익광고, 바이럴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실'로 구성된 '법사랑 도서관', ④ 유아 및 초등 저학년용 '구름빵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와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용 '조선과학수사대-학교폭력을 막아라', 마음 다스리기 대작전, 언어왕 프로젝트,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약속의 나무 '행복나무 프로그램',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음원 및 뮤직비디오)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로 구성된 '굿바이 학교폭력', 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법률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법률내용과 사례들이 담겨있는 '참여게시판' 등 총 5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폭력 및 법질서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행복나무'(2013. 5.)와 학교폭력 예방 수업지도안 '웃어라 교실아 꿈꿔라 학교야'(2013. 9.)를 출품하여 학교폭력분야 우수 인성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았으며 두산동아, 미래엔의 중학교 도덕 및 사회 검정교과서에 법정체험,

법질서 캠페인 송 등 법질서 콘텐츠를 수록하여 학과수업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홍보

법무부는 법질서 캠페인 집중 홍보를 위하여 파급력이 큰 방송·언론·인터넷 매체 및 새롭게 급부상 중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전국적인 케이블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인 CMB와 연중 공동캠페인을 전개해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질서,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관련 공익광고를 전국 케이블방송사, MBC드라마넷, YTN 등에 총 3,000회 이상 송출하였으며, SBS와 법질서 바로세우기 공동캠페인으로 기초질서, 학교폭력, 사이버 질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2011. 9.~10.에 총 63회 송출하는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법률비타민, 동화 속 법률퀴즈, 스쿨존을 지켜라 등 법질서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폰용 앱 '법아! 놀자!'를 출시하여 2011.12.까지 약 22만건 다운로드, 이어 법아! 시리즈 2탄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앱으로 만들어 2011. 2. 8. 출시하였으며, 2011. 12.까지 약 15만건 다운로드 하는 등 법률문제 해결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법질서 지수를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의 LQ 테스트' 웹서비스를 만들어 2011. 2. 28.부터 시범기간을 걸쳐 4. 1.부터 법질서홈페이지(www.lawnorder.go.kr)를 통해 정식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 12.까지 약 1만2천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기초질서를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한 카툰북 '법아! 카툰과 놀자'를 발간하였고, 옥외 전광판, 지하철,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법질서 공익광고를 방영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서울·수도권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한 법질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인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및 뮤직비디오 등 문화 콘텐츠를 제작(2012. 6.)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리캠페인을 통한 CD 배포 등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 선진화과편' 방송(2012. 7.)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 및 법교육 프로그램 등 법무부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법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라디오 공익광고인 언어순화(2012. 11.),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2012. 11.), TV공익광고인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2012. 11.), 학교폭력 예방 뮤직비디오(2012. 11.), 학교폭력 예방-거품편(2012. 12.) 등 다양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지하철, 영화관을 비롯한 TV, 라디오,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및

캠페인 송을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악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법질서 준수 수준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을 통해 홍보(2013. 9.~12.)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하였다.(2013. 9.~12.)

또한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5 항 감호제도의 개선

1. 개 요

1980. 12. 18.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고질적 상습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상습범에 대하여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및 천안교도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소에서 각각 체계적으로 수용·관리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제도 폐지 입법 정신을 존중, 가출소를 확대하여 2006년 167명, 2007년 66명이 가출소 하였으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2008년 28명, 2009년 15명, 2010년 17명, 2011년 19명, 2012년 15명, 2013년 37명이 가출소를 하였으며, 2013. 12. 31. 현재 119명의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법안으로 치료감호법을 동일자로 제정·공포·시행함으로써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였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관리와 사회복귀훈련을 강화하고 출소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정신질환 사범과 약물중독 사범 및 정신성적 장애자 등의 특성을 고려, 분리수용하고 약물중독사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치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진력하는 한편,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감호의 엄정 집행

가. 보호감호 집행현황

2005. 8. 4.자 보호감호 폐지의 입법정신을 존중하여 가출소를 확대함에 따라 경북북부

제3교도소, 천안교도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는 2013. 12. 31.현재 119명에 이르고 있다.

피보호감호자 수용인원은 <제6장 통계 : 표 3-5에서 표 3-10>과 같고, 피보호감호자의 집행인원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집행인원	370	257	139	63	39	34	36	45	31	24

나.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2013년 피치료감호자 집행인원은 2004년에 비하여 31.4%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의 증가와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른 정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대상자 추가가 가장 큰 증가 이유로 분석되었다.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는 2013. 12. 31. 현재 1,122명이다.

피치료감호자 수용인원은 <제6장 통계 : 표 3-11에서 표 3-16>과 같고, 피치료감호자의 집행인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치료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집행인원	283	268	287	343	316	389	332	288	320	372

다.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1)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 실시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013년도에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13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7, 표 3-18>과 같다.

(2) 피보호감호자 학과교육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내에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피보호감호자 중 희망자를 상대로 학과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004년도에 26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나, 2009년 부터는 2012년 1명을 제외하고는 합격자가 없다. 피보호감호자의 검정고시 합격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현황

(단위 : 명)

연도 / 자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6	18	1	2	4	-	-	-	1	-
중입자격	2	3	-	-	-	-	-	-	-	-
고입자격	13	5	-	2	3	-	-	-	-	-
고졸자격	11	10	1	-	1	-	-	-	1	-

(3)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 실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촉진하고 출소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990. 5. 1. 치료감호소내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013년에는 226명에 대하여 조적, 도배, 타일,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8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컴퓨터 종목의 훈련을 활성화하였다.

2013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13년도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계	조 적	도 배	타 일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세탁
226	8	15	5	56	19	25	81	17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 대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사항 등을 심사·결정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9, 표 3-20>과 같다.

나. 가출소제도의 탄력적 운영

가출소인원은 사회보호법 시행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1,05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보호감호제도의 존폐 및 개선 논의과정에서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2003. 7. 부터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범죄유형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05. 8. 4.자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재산범, 폭력범의 대부분이 가출소된 후 2008년부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강도, 성폭력범 등에 대한 가출소 허가율이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15명, 2010년도에는 17명, 2011년도에는 19명, 2012년도에는 15명, 2013년도에는 37명이 가출소하여 12월 말 현재 수용인원은 119명에 이르고 있다.

다. 집행면제심사의 적정 운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1년 이상 보호관찰을 받은 가출소자로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등 관찰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 집행면제를 결정하여 주고 있다.

그동안 집행면제 인원은 2004년 44명, 2005년 182명, 2006년 160명, 2007년 17명, 2008년 2명, 2009년 부터는 2011년 13명을 제외하고는 집행면제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2007년도부터 급격한 감소는 그동안 가출소 확대 조치에 따른 수용인원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라.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심사의 적정 운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경과, 범죄경력,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징역형기와 상관없이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가 하고 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보호시설 연계 방안을 수립·시행하였고, 판사·검사·변호사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 없이는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종료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가. 개 요

치료감호소는 1987. 11. 3. 개청한 이후 정신질환자, 약물남용자, 정신성적 장애자 등을 치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방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13년도 법원·검찰·경찰로부터 722명의 정신질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663명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통보하여 재판, 사건조사 등에 협력하여 명실 공히 법정신의학 분야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치료감호소에서는 진료체제를 정비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치료감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나. 치료감호소 업무능력 제고

2013. 12. 31. 현재 전공의 8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전문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자체교육 매주 4회, 외부강사 초빙교육 5회 5명, 유관의료기관 파견 4회 4명을 실시하는 등 수련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1997. 11. 10. 부터 '국립감호정신병원'으로 기관 명칭을 병행 사용하다가 2006. 7. 11. '국립법무병원'으로 병원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외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신질환 치료병원으로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11. 12. 27.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및 사법정신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2013. 1. 30.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센터·중독브레인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감호소·교도소 출소자에 대한 전문 중독치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치료감호의 효율적 집행

치료감호소에서는 피치료감호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신규 입소자를 검사병동에 수용하여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행한 후,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각 병동에 분리수용하고,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치료경과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적응훈련과 예술요법, 작업요법, 사이코드라마와 같은 집단요법 등 정신재활기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3년도에는 피치료감호자에게 정신건강교육 주1회 228명, 단주교육 주2회 128명, 가족교육 12회 433명 등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적, 도배, 타일,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8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화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취업이 용이한 컴퓨터 종목의 훈련과 선호도가 높은 제과제빵반을 활성화하여 8개 직업훈련 직종에서 226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59명이 기능사 및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케 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질환치료와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그 속성상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치료감호 가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수적이나 치료감호 가종료 후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재발과 이에 따른 재범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치료감호 가종료 후에도 무료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899명을 시작으로 2005년 2,028명, 2012년 1,593명, 2013년 1,547명 등 매년 무상 외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퇴소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시행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2008. 12. 14.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장 15년까지 전문 치료시설에서 선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게 되며, 2011. 9. 총 3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가 개설되어 2013. 12. 31. 현재 198명을 수용・치료중이다.

그리고 2011. 2.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2012. 3. 정신성적 장애자 핵심심리치료 프로그램(공통), 2013. 3. 정신성적 장애자 확장심리치료 프로그램(심화)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 3.부터는 대상자가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체험 환경을 심리체험의 장으로 유도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다중감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마. 치료・관리 강화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

완치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자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및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3. 7. 30. 살인범죄자 중 완치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연장(현재 최장 15년 → 21년),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14. 1. 31. 시행),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 간 정보 공유・상호협조 등 공조체제 구축('14. 7. 31. 시행), 지역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15. 1. 31. 시행) 운영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 하였다.

제 6 항 보호관찰 내실화・선진화 추진

1. 개 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범죄인의 죄질, 연령, 성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재범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자 각자에 맞는 차별적인 처우기법을 적용할 때 재범방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양한 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그 적용 범위와 집행방식을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가. 보호관찰 강화정책 추진

보호관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범고위험군 밀착감독 강화, 소재불명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 확대, 출소자 자립지원 강화 및 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보호관찰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 6. 22.「소년법」개정으로 다양해진 보호처분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소년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분류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인용율 제고 등을 통해 엄정・충실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고, 갱생보호시설의 숙식제공 기간 연장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을 강화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11. 29. 시행)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률화 되었다. 이는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직·인력의 확충 등 보호관찰 내실화 기반조성을 추진하면서 소년전담보호관찰 제도실시, 성폭력, 마약 등 범죄유형에 따른 전담직원제 실시,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원인 분석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개발 및 재범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처우계획 수립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엄정·충실한 법집행

보호관찰의 재범통제 및 사회방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호관찰기관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석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 평택, 대구서부, 2007년 서산, 여주, 통영, 경주, 논산, 정읍, 속초 등 보호관찰기관을 증설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안양, 영월, 제천, 공주, 상주, 거창, 해남 등 7개, 2009년 하반기 영덕, 밀양, 남원 등 3개, 2010년 하반기 인천서부, 영동 등 2개 보호관찰기관을 증설하여 전국 법원·검찰청 설치 지역 중 장흥, 의성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보호관찰활동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고의로 회피하는 미신고자, 무단 거주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제도를 통해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도에는 2,498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재추적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 일반대상자에게 보다 내실 있는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6. 10.에는 소재불명 가출소자의 조기검거와 재범방지를 위해 가출소자, 가정폭력사범 등에 대한 지명수배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명수배는 위반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제재조치로 제도의 실효성과 엄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가형벌권을 더욱 내실있게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다. 위치추적 전자발찌제도의 안정적 시행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전자발찌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자, 2010. 7. 살인범죄자 확대 및 성폭력범죄자 소급 적용, 2014. 6. 강도범으로 확대(예정)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2008. 9. 1.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인원은 2013. 12. 31.까지 3,428명(성폭력 2,166, 살인 1,258, 미성년자유괴 4)이며, 이들 중 성폭력 동종 재범자는 70명(재범률 1.5%)으로써,

제도 도입 전 4년간('04.~'08.)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와 비교시 1/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재범률 감소는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라 대상자의 행적이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재범하면 반드시 발각, 체포될 것이라는 압박감과 함께 월 최소 4회 이상의 대면접촉과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점검,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보호관찰 활동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대상자 스스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재범하지 않는 사유로 전체 설문 대상자의 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응답하는 등 전자발찌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8. 9. 1.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절단하였거나 절단 후 도주한 사람은 총 40명이나, 예외 없이 전원 검거하였고, 징역형 등 엄정한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전자발찌에 내장된 센서가 미세한 훼손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은 물론 훼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부착명령 대상 범죄의 확대 및 2012. 12. 27.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명령 합헌 결정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 6. 19.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사범 추가로 대상자의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용량 증설, Wi-Fi 등 최신 통신기술 도입 및 강화스테인레스판이 적용된 5세대 전자장치를 개발 완료하여 기술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범죄수법, 죄질 등 위험성을 구분하여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월 중 대면접촉 상향 조정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리치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의식 개선과 정상적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체계적 처우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통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와 공동으로 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무직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 응시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성매매사범 전문수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매매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프로그램 전문화, 전문강사 Pool 구성 및 기관 간 공유, 교육 실시기관 확대 등 성구매자의 건전한 성의식 개선을 통한 성구매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마. 보호관찰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적인 연구 기획력 강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은 실증적 자료와 이에 기초한 연구 기획물을 토대로 입안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시행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건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선진화와 체계화의 향상을 위해 현직 보호직 공무원 중 보호관찰 실무, 연구기획력 등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 '보호관찰비전연구팀'을 구성하여 7년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하였다. 재범자특성자료 분석, 판결전조사 분석서 발간,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등 보호관찰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 지원 연구에도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활발한 연구를 통해 수강명령 표준메뉴얼 제작, 수강명령 효과성 측정지표 분석, 보호관찰 인력 운영 및 조직 개편의 합리적 방안 연구, 보호관찰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 제시 등 각종 보호관찰집행결과에 대한 효과성 판단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기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성폭력범 중에는 과도한 성적 충동으로 범죄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형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10. 7. 2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되고 있다.

약물치료제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함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제도이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함께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는 함께 선고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다음에 치료명령을 집행하게 되는데, 약물투여를 위한 검사 및 약물투여의 효과 또는 부작용 등 확인을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2010. 7. 법률 통과 직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준비 T/F를 구성하고, 선진외국의 운용실태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하였으며, 학계, 실무계 등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1. 7.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진단・감정, 치료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의뢰 매뉴얼을 만들어 대검찰청 및 일선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서울대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감정기관(8개) 및 치료기관(10개)을 지정하였다.

2012. 12. 18. 법률 일부개정(2013. 3. 19. 시행)으로 피해자 연령제한이 폐지('16세 미만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2013. 12.

31. 기준)으로 가출소자 2명, 가종료자 1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2013. 12. 31. 현재 87명에 대하여 검사가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중 31명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를 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정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 자료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국민 및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하여 성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당초 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점차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아동·청소년대상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발생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요건이 정교화되는 등 제도의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확대로 법무부는 2011. 4. 16.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여 2013. 12. 31. 기준으로 등록 13,628명, 공개 969명, 고지 956명(우편고지서 발송 4,513,857세대)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하였다.

2013. 6. 19.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등록 일원화와 더불어 신상공개 대상범죄의 확대,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및 관리강화 등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지제도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사무소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 송부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인접 읍·면·동 포함)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고지되는 정보는 공개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다만, 실제 거주지는 신상정보 공개와 달리 상세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향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한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제도의 정비로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이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가. 보호관찰 활용 확대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용처우와 더불어 형사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 9. 23.

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성매매사범에까지 확대되는 등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되어 2013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존스쿨 교육 등 175,318건의 실시사건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범죄인에 대한 시설내처우시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 범죄수법 전수, 사회적응력 약화로 인한 재범 반복 등 문제점을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처우실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하에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재범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직·비진학대상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529명을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고 251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였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성과는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사회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연도별 직업훈련 등 원호 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원 호 실 적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호	소 계	8,339	8,608	8,817	8,336	10,062	11,246	11,630	14,851	15,664	17,996
	숙소알선	215	194	216	177	243	229	190	167	256	247
	취업알선	93	70	50	44	104	152	67	75	136	251
	직업훈련	846	642	472	498	585	714	498	405	481	529
	복학주선	299	218	304	243	505	657	1,612	1,661	2,357	2,579
	경제구호	6,422	7,129	7,276	6,973	8,292	9,181	8,679	11,970	11,959	13,680
	문신제거	464	355	499	401	333	313	584	573	475	710
응급구호(의료)		12	40	30	22	25	20	119	134	232	760

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가. 구축배경

1989년 소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성인까지 전면 실시된 후 가정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살인 및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2012년 178,199건으로 21배 증가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판결전조사, 기소전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결정전·청구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 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관찰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여 직원 1인당 대상자 수가 122건에 이르고, 이는 선진국(미국 46건, 일본 33건, 영국 25건, 호주 17건)과 비교하여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보호관찰 역량의 배분이 필요하다. 즉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보호관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율적 통제로 사회적응을 도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다.

나. 시스템 내용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은 저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IT장비(PC, 스마트폰 등)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혁신 시스템과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을 통한 원격 집행감독,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현장 정보 검색 등 업무처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세서 혁신 시스템으로 나뉜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과 보호관찰 현장업무지원시스템」 등의 활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접촉을 강화하여 대상자 행동통제에 기여하였으며, 화상전화·음성분석 등의 IT 기술을 통한 집행감독 강화, PDA폰·GPS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효율성 제고로, 재범억제를 통한 보호관찰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원격감독시스템」으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감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출퇴근시간의 자의적 기록 및 명령이행시간 계산오류를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감독함에 따라, 대리출석·무단이탈 등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감독 체계 구축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이버 보호관찰소」를 통해

시 스 템		내 용	적용 대상자
•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보호관찰대상자의 상황 및 동태정보를 기록하고 열람하는 보호관찰 메인시스템	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통합시스템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보호자교육 등의 집행업무와 조사업무, 통계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카드 DB시스템(PACS)		'07~'10까지 4년 간 종료된 보호관찰대상자의 카드를(판결문, 신고서, 집행상황부 등)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	보호관찰 종료자
• 보호관찰무인정보시스템		연간 150만 건 이상의 종이 서류를 생산하는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무인디지털 단말기를 통하여 생활보고서·신고서 접수, 집행감독 등 친환경 보호관찰 IT환경 구축	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 시스템 (MOPIS)		출장현장에서 PDA폰(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상자 정보검색·입력, 지리정보 활용으로 현장 처리능력 획기적 개선	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 전송 서비스(P-SMS)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교육일정, 출석일정 등 보호관찰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전송	全 보호관찰대상자
• 사이버보호관찰소(CPO)		대상자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준수사항 확인, 야간 정기 생활보고 등이 가능하게 구현된 Web상의 보호관찰소(휴일·야간 보호관찰 업무 공백 최소화 효과)	재범 저위험 보호관찰대상자
• 사회봉사·수강명령 사이버감독	1세대 화상전화 감독 시스템 (DPS)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간에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통해 집행감독 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2세대 원격감독 시스템 (COEMS)	협력기관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개시·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상으로 전송, 기타 문서 자동송출, 집행상황부의 전자적 처리 가능	
•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시스템 (CVS)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여부를 감독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외출제한명령대상자

재범저위험 대상자 스스로 보호관찰관이 On-line 상에서 지시한 과제를 수행하여 컴퓨터 등으로 보고하고, 범죄예방위원은 경과통보서 등을 On-line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관찰정보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로 대상자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9,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행정안전부 행정DB사업에 보호관찰카드 DB 구축사업(3단계)이 선정되어 보호관찰카드 약 41만건(1,370만명)을 디지털화 하였고, 2010년부터 보호관찰무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를 없애고, 업무프로세스를 전자화하는 등 유비쿼터스 보호관찰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의 실시로 재범저위험 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격하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재범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재범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아지는 보호관찰 대상자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가. 판결전조사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서는 양형의 적정화 및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판결전조사는 2008. 12. 26.「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법원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가 형사사건 선고 전에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제도인 반면 법원결정전조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같이 보호사건에 한정된 각종 피의자의 범죄원인,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 의뢰한 법원에 회보하는 것이다.

법원결정전조사는 그동안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에 준하여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해 의뢰함에 따라 실시해 오다가 2007. 8. 3. 공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 2007. 12. 21. 공포・개정된「소년법」제12조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 등에서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조사하는 '법원결정전조사'제도를 규정,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검사결정전조사

2007. 12. 21. 소년법 제49조의2의 신설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선고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조사 영역도 확대되었다.

라. 청구전조사

청구전조사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한 조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형집행종료후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조사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보호관찰관이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이다. 성충동약물치료 명령 청구전조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검사의 요청으로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특정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개발하여 청구전조사시 재범위험성 평가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마. 소급청구전조사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성폭력범죄로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출소자·출소예정자·출소임박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검사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피조사자의 범죄의 동기,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제도이다.

바. 환경조사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하여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여 교정 교육자료, 가석방·가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이용된다.

연도별 판결전조사 등 조사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조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판결전조사	4,107	4,167	3,071	3,631	4,273	3,597	1,598	1,526	2,385	2,159
법원결정전조사	553	797	1,128	3,186	3,311	4,234	6,398	9,242	12,719	12,141
검사결정전 조사	-	-	-	-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청구전조사	-	-	-	-	92	304	1,376	1,933	1,696	2,497
환경조사	3,201	2,015	1,849	1,861	1,862	2,009	1,738	1,581	1,715	1,701
소급청구전조사	-	-	-	-	-	-	2,251	772	354	247

6.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제도 도입 당시 121명에 불과했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1997년 사회봉사명령을 성인범에까지 확대하면서 명령부과 인원이 급증하여 30,551명에 이르렀고 해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6,179명에 달하는 등 보호관찰과 함께 주요 사회내처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2009. 9. 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13년까지 총 31,916명을 집행하였다.

가.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2010. 4.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농촌일손돕기를 전국 단위로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2013년도에 연인원 110,243명을 투입하여 농번기 일손돕기, 영세농가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재해피해복구 등의 농촌지원을 실시하였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여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395,790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원활동을 펼쳤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262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95,790명 × 66,431원(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용농업 노동임금 기준)

또한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 5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기존의 관(官) 주도로 진행되던 사회봉사 제도에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2013년 한 해 총 511건에 8,106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투입되어 소외계층지원,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공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아울러 2013. 7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소 별로 각 지역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봉사 분야를 발굴하여 집행하는 「1所 1色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중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소외계층을 위한 쾌적한 방 만들기', 제주보호관찰소의 '제주 올레 가꿈이', 전주보호관찰소의 '전주 한옥마을 지킴이', 부산보호관찰소의 '맑고 푸른 태종대 가꾸美'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채로운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해피해복구지원,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연탄배달', '김장담그기', '장애우 나들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봉사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집행 분야를 발굴하여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집행프로그램 실시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아져 강제적 명령에 의한 집행완료 이후에도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에 미담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이 피해를 입힌 지역사회에 배상할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엄정·투명한 사회봉사 집행감독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에 대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협력기관 평가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협력기관에 설치한 화상전화기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인 원격감독 시스템을 2008년에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격감독 시스템은 컴퓨터를 통하여 사회봉사대상자 출·퇴근 시간을 자동 입력하고, 명령 처리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대리출석, 집행장소 이탈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전국의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설치됨으로써 집행의 엄정성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다양한 집행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집행개시 전, 현장감독 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발생 후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7.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가. 수강명령 분야별 전문화로 집행효과성 제고

수강명령은 성폭력·가정폭력·약물·교통사범 등 범죄인의 의식개선을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 한해 21,217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인지적 재구조화 및 행동수정을 유도하는 치료적 기법을 시도하고, 범죄원인 등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범죄인의 인식 및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수강명령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성인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최초 개발한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실무에 맞게 보완·업데이트 하여 2011년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가정폭력예방, 약물중독치료, 소년심리치료 등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수강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무부 자체 개발 T/F를 통해 2010. 2. 전문프로그램과 표준매뉴얼을 개발한 뒤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정비하고 있다. 또한 2011. 8.에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전문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첫째, 모듈식 구성으로 집단의 특성 및 진행자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가 가능하고, 둘째 10명 내외 소집단 구성 및 1개월 이상 장기 집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셋째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나. 수강명령담당자 전문성 향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단계에서 전문 인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수강명령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교수,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상설·상시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공무원 교육과정에 MBTI(성격유형검사)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시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강명령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전문교육 수료인원이 190여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9년 이후 성폭력치료, 가정폭력치료, 소년심리치료, 약물중독치료, 준법운전 수강명령 등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사내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명령 집행 담당 보호관찰공무원 3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수강명령 담당자 집행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 노하우의 공유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강명령 관련 외부 전문가의 특채도 이루어져 2006년과 2007년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정신보건임상

심리사1급 자격증 소지자 등 각 7명을 6급과 7급으로 채용하였고, 2010년과 2012년 각 10명, 2013년 25명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여 일선 기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서울 등 7개 광역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 전문 프로그램을 사내강사가 집행함으로써 외부강사 의존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강명령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수강명령 분야별 사내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전문교육기관 등의 약물치료, 상담전공 과정 등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 범죄인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

보호관찰기관은 수강명령 집행 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수강명령 대상자와 전문 사회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을 중심으로 범죄인 치료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라. 기소유예처분 성구매자 교육 (John-School) 실시

2005. 7.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사범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존스쿨 집행기관도 2006년에는 22개, 2007년에는 29개, 2009년에는 39개, 2010년부터 4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성구매 남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 인식과 태도를 교정하고, 양성평등적·인본주의적 대안사고와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구매 남성의 인지재구조화와 행동수정을 통해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2005. 8.~12.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총 3,210명의 존스쿨 대상자를 접수하여 2,2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12,541명 접수, 11,217명 집행, 2007년에는 17,127명 접수, 15,124명 집행, 2008년에는 19,433명 접수, 17,956명 집행, 2009년에는 37,679명 접수, 34,762명 집행, 2010년에는 13,471명 접수, 14,283명 집행, 2011년에는 8,936명 접수, 7,409명 집행, 2012년에는 5,954명 접수, 4,518명 집행, 2013년에는 3,997명 접수, 3,214명 집행 등 2009년까지 매년 집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존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구매 남성들의 의식 변화로 존스쿨 집행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는데 현행 1일 8시간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T/F를 구성하여 존스쿨

표준프로그램을 전면 수정·보완하는데 착수하였고 12차례 회의와 연구 끝에 2일 16시간의 성구매자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2. 3. 1. 성구매자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마. 음란물 사범(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 등) 재범방지 교육실시

2012. 10. 대검찰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범 등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청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교육 개발 프로그램 개발 경험자를 주축으로 음란물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1일 5시간으로, 교육내용은 음란물 중독에 대한 이해, 음란물의 유해성,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부터 전국 14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바. 가정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실시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 사범의 보호관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논의를 거쳐 2013. 5.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으로,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분노 관리,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가족간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및 서로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8월부터 전국 37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제 7 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1. 개 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 생계곤란자 등에 대하여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선진형 형사정책사업으로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내처우의 대표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숙식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주거지원, 긴급원호, 사회성향상교육, 사전상담, 가정복원,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특수공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사회적 요구에 비해 지원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며, 출소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지 않아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개선, 조직개편, 재정건전화 등 공단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사업과 창업지원사업,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같이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가.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및 제도연구

갱생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및 주거·창업지원 등 신규 서비스가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및 재원부족의 한계로 내실 있는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계속된 지적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고 및 인력확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12년 31명에 이어 2013년도에도 정원 10명을 증원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출소자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해 희망제작소에 의뢰하여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2008년)함은 물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갱생보호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단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갱생보호사업의 필요성 입증을 위해 공단에서 국내 최초로 연구용역 의뢰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서울대학교-2009년)」는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밖에 2011. 4. 국회에서 국회의원, 학계 교수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갱생보호사업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내적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학술 이론과 기법 등의 연구를 통해 출소자 지원 사업의 비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2. 12. 14. 법무보호복지학회를 창립하였으며, 2013. 6. 26.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의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와 2013. 10. 11.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학회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갱생보호서비스의 질적 제고

경제난에 따른 취업난과 사회 양극화 현상 그리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전체 범죄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강력사건의 발생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연간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약 5만 4천명에 이르게 됨에 따라 갱생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공단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05년부터 출소자 사회성향상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06년 주거지원(LH공사), 2009년 창업지원(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출소 D-100일 프로젝트(교정본부)등 다양한 서비스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는 출소자와의 가족유대관계 회복 및 강화를 통해 사회복귀 촉진을 목표로 하는 가정복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비(숙식제공), 훈련수당(직업훈련), 취업교통비(취업알선)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갱생보호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다. 갱생보호사업 재원확충 등 지원역량강화

갱생보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익사업 활성화와 사회자원 유치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익용 임대빌딩 매입, 휴면기금,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3. 지원프로그램 내실화 및 다양화

가. 갱생보호사업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무료 숙식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취업알선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 총 57,099명에 대하여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재범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및 멘토링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밖에 가정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주거지원사업, 창업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창업지원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비·직업훈련수당·취업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출소자들에게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해주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분야별 사업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 년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면담	창업 지원	재사 회화	취업 성공 패키지	가정 복원	심리 상담	기타
2004	42,103	2,491	1,280	3,142	-	241	4,668	20,286	-	2,295	-	-	-	7,700
2005	47,574	2,680	1,650	3,373	14	1,641	5,727	20,174	-	2,899	-	-	-	9,416
2006	48,557	2,745	1,533	3,281	133	2,169	6,995	18,313	-	3,337	-	-	-	10,051
2007	54,867	2,779	1,502	3,387	152	2,348	9,239	18,322	-	5,441	-	-	-	11,697
2008	53,469	2,757	1,472	3,335	152	2,557	8,348	19,075	-	4,513	-	-	-	11,260
2009	52,958	2,637	1,465	3,422	152	3,414	9,398	17,044	30	4,475	-	-	-	10,921
2010	49,788	2,398	1,717	3,431	152	3,392	9,086	15,668	27	3,112	-	-	-	10,805
2011	54,183	2,440	1,533	3,615	152	3,507	9,812	15,798	43	3,134	3,440	-	-	10,709
2012	56,201	2,517	1,732	3,736	158	3,795	10,886	15,833	31	3,400	3,975	-	-	10,138
2013	57,099	2,303	1,774	3,871	152	4,710	10,391	15,949	18	3,264	4,303	31	3,573	6,760

※ 주거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수

나. 생활관 개편

무의탁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숙식환경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숙식보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관을 지속 확충하였다.

2006. 4. 광주전남지부 남부지소, 2006. 5. 경남지부 진주지소, 2006. 7. 경기북부지부, 2006. 11. 대구경북지부 구미지소를 순차적으로 신설하였으며, 2010년도에 서울 송파, 경기 삼미·안양지소를 통폐합하여 수도권에 현대식 건물의 여성지원센터를 개관하고, 2011년 복권기금 41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울산 및 인천광역시에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를 건립하고 2012년부터 출소자에게 취업이 용이한 용접 등 기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복권기금 51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출소자 가족복원센터를 건립하고 복권기금 39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영농기술교육센터를 건립 운영할 방침이다.

다. 취업알선 기능의 확대·강화

출소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 취업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공단에서는 지부별로 산재한 취업알선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 6.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1사 1출소자 고용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372개 업체가 참여하여 1,359명에게 취업처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취업알선·직업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 10.부터 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소자의 취업률을 제고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출소자지원에 대한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여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명으로 2011년부터 본격시행을 추진한 결과 2013년까지 11,743명을 참여시키고 2,582명을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8. 7. 직업훈련에서 창업지원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고자 중점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쁨과 희망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2009년도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복지사업자로 선정되어 휴면예금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출소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09. 12. 제1호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 발굴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총 16개 업체를 선정하여 「출소자 HUG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기업체를 발굴할 계획이다.

라. 사전면담 강화

교도소·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면담을 위해 공단에서는 각 지부 직원을 사전면담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 출소 후 자립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교정기관에서 출소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출소예정 100일(3개월)전 상담전문가의 직접 방문을 통해 각 단계에 맞는 개입을 실시하는 심층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출소 D-1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2년도에 강원, 대전충남지부에서 각각 춘천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의 출소예정자 349명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는 강원,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부산지부에서 각각 안양교도소, 부산교도소, 안동교도소,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광주교도소로 확대 시행 추진하였다.

4. 선진 갱생보호 프로그램 도입

가. 갱생보호대상자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시범실시 14호를 거쳐 2013년까지 총 1,217호의 임대주택을 출소자에게 지원하여 1,585명이 수혜를 입었다. 매년 150호 가량씩 2015년까지 총 1,500호가 지원될 주거지원사업은 기존 숙식보호 위주의 갱생보호사업 패러다임을 가정기능 회복과 실질적 자립촉진으로 전환하는 선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주거지원임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갱생보호대상자용 배정 주택을 LH 매입물량의 3%에서 5%로 향상시켜 보다 많은 출소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수형생활로 인한 사회지체(Social Lag)로 고통받는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2005년부터 지역 정신보건센터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문화체험, 직업탐색,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출소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6개를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여성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3개 지소를 통폐합하여 2010. 4. 여성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심리상담사 15명을 채용하여 출소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

사랑의 빨래방은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잘못을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보상토록 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 Program)의 일환으로서, 2005년부터 공단 서울지부 등 총 6개 지부에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의 빨래를 무료로 수거·세탁한 후 가정에 배달하고 기타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이후 2013년까지 총 30,824명의 출소자와 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438,981점을 무료 세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라.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직업훈련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특정 직종 취업으로 숙련기술을 습득한 출소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49명에게 61억 2,635만원을 지원하였다.

창업지원은 출소자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토대를 구축해준다는 의미에서 선진적 프로그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5.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갱생보호활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부별로 갱생보호 회보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한편,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계층별 Man To Man 홍보'를 실시, 국회, 사회지도층 인사, 민간기업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08. 9.에는 서울시 청계천광장 및 백범기념관에서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 위원장, 공단직원, 홍보대사, 후원회원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추방 가두캠페인과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2009. 9.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컨퍼런스'와 '엘로우 리본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2010. 9.에는 서울시 장충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와 Hug콘서트를 개최한 것에 이어 2011. 10. 갱생보호수혜자들의 자립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 10.에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자원봉사자 등 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보호복지 70년과 미래」 상영, 유공자 훈·포장 포상 수여식 등을 거행하였다.

2013. 10.에는 '노란리본의 날개짓이 그리는 안전한 국가·희망의 새시대'란 주제로 장관님과의 출소자 HUG 우수기업 대표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 8 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1. 개 요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제정된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소년원 교과교육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60%를 인성교육과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1942. 4. 20. 개원한 조선교정원의 실과교육으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안양·춘천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운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진영상, 측량, 텔레마케팅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지속한 결과,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12년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고도화", "가해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총 30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전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수용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8. 6. 22.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8호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주·제주소년원을 전담소년원으로 지정하고 개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호처분자의 교육기간은 4주로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폭력·절도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자연친화교육·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가족관계회복·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기초질서 교육·생활예절 등 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집중적인 품행교정이 필요한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책임감 함양 등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0주간의 집중처우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제주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2001년부터 일반학교 학생 등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으로 청소년비행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3. 3.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에 대한 분류심사기간을 학교출석으로 인정함에 따라 명실공히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3. 7.부터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에게 전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 및 조사를 받도록 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소년심판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심사관 참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행정 혁신사례는 국무조정실의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대 정책우수사례' 및 외국의 '역벤치마킹사례'로 선정되었고, 2005. 6.에는 KMA생산성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에서 서울소년창업보육원이 '행정혁신 리더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2005. 12. 5.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2005 한국장애인 인권상 교육실천 부문」에서 대전의료재활소년원이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가. 교육기반 조성

(1) 전문강사 확보 및 교수능력 향상

소년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999. 10.부터 자체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유급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에 임하는 한편, 소년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업이 우수한 출원 학생들을 관련 교육과정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강사 확보 및 자체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도에는 인성교육 전문 소년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컴퓨터교육·교과교육·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유급 및 보조강사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유급 및 보조강사 현황

계	유 급 강 사				보조강사
	교과	컴퓨터	직업훈련	인 성	
116	-	12	14	89	1

(2)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및 환경이 청소년의 태도·정서상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등 전인격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 소년원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 '소년원 학교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0. 9.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은 2009. 2.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부문'에 응모·선정됨으로써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졌다.

이로써 소년원의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시설환경이 소통하고 조화되는 한국형 소년원 학교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제주소년원 생활관과 청주소년원 생활관·교육관 리모델링, 부산·청주·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솔루션캠프장 조성 등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나. 인성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1) 인성교육

소년원학생의 비행성교정과 성행개선을 위하여 1969년 Moreno 심리극을 도입한 이래 꾸준히 감수성훈련, 미술치료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추진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인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이 생활 속 인성교육으로 정착, 소년보호기관 내 모든 구성원의 경어 및 존중어 사용을 통해 교육생은 바른 품성함양, 직원은 품위와 자존감 고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직업선호도 변화, 직업훈련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12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직업능력훈련소년원을 6개(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안양소년원)에서 7개(전주소년원 헤어디자인반 신설)로 확대하는 한편 9호처분자를 대상으로 광주소년원에 건설기계운전반 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직종개편을 통해 CNC선반, 전산응용건축제도 등 경쟁력이 취약한 직종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진영상, 제과제빵, 텔레마케팅 등 유망직종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용접을 자동화용접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모두 10개 직종에서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훈련직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의 최적화,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겸임교수제' 시행 등을 통해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교과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의 소년원 학생들에게도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잡스쿨(Job School)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하고 있고 특히 2010. 10. 퇴원생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MOU를 체결,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42. 4. 20.	'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진영상, 측량, 제과제빵)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47. 1. 18.	'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컴퓨터・검정고시 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45. 11. 21.	'00. 8. 31.	9호 10호	• 전문 인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46. 11. 7.	'00. 9. 6.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소형건설기계조정면허, 건축환경설비) • 컴퓨터・검정고시 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67. 3. 25.	'00. 9. 6.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98. 7. 1.	'02. 3. 4.	7호 8호 9호 10호	• 의료 및 재활교육 (약물중독, 정신 및 발달장애, 신체질환 보호소년의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 • 8호처분자 교육(男)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09. 7. 1.	'10. 5. 4.	8호 9호	• 전문 인성교육 • 8호처분자 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46. 10. 1.	'00. 8. 30.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텔레마케팅, 제과제빵)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63. 9. 9.	'00. 9. 4.	9호 10호	• 전문 인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7. 11. 9.	'00. 8. 30.	8호 9호 10호	• 전문 인성교육 • 집중처우과정 • 8호처분자 교육(제주지역 男)

3. 개방적 인성교육

가. 다양한 봉사활동

소년원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의타적이던 생활습성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전국의 기관별로 「소년원학생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헌혈	복지 시설 방문	농촌 일손 돕기	지역 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2004	3,758	740	435	1,760	254	569	1,069	587	482
2005	3,035	307	-	1,567	242	919	689	208	481
2006	3,471	393	-	1,722	237	1,119	190	-	190
2007	2,679	483	-	1,145	64	987	143	-	143
2008	2,721	378	-	1,671	50	622	170	170	-
2009	2,344	13	-	915	53	1,363	16	-	16
2010	2,759	4	-	935	74	1,746	28	-	28
2011	2,246	7	-	800	71	1,368	8	-	8
2012	2,546	-	-	837	72	1,637	2	-	2
2013	1,220	-	-	511	16	693	-	-	-
계	26,779	2,325	435	11,863	1,133	11,023	2,315	965	1,350

나.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

특성화교육 전환과 함께 그간 기업체 현장 방문 실습, 산업체 통근취업 등 개방적 교육을 실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내에서 이루어지던 폐쇄적 인성교육을 탈피하여 문화·예술공연 관람, 청소년 야영훈련 등 다양한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소년원학생 야영훈련

소년원에서는 학생들이 야영훈련과 자연학습 등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가꾸고 스카우트 이념을 내면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스카우트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1986년에 개설된 소년원학생 전용야영장인 대전청소년수련원(17,491㎡)에는 극기훈련장, 체험학습장, 생활관 및 스카이점프, 원숭이 다리건너기 등 24종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매년 200여명의 학생들이 일상적인 소년원 생활의 틀을 벗어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스카우트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심성순화에 힘쓰고 있다.

2008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솔로몬로파크(대전시 유성구 소재)를 활용하여 야영훈련에 참가한 소년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 야영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년원생들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됐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성순화를 위해 음악회 및 연극 등의 문화공연 관람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사회저명인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 11. 사진작가 조세현이 사진촬영 특별강연을 하였고, 2011. 3.~5.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생의 연극을 지도하였으며, 2011. 9.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댄스교실을 개설하는 등 사회저명인사의 관심과 봉사로 소년원생의 재능계발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였고, 김중만 사진작가, 강병인 캘리그라피 등 유명 문화계 인사를 '소년원 명예교사'로 위촉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2011년 10개에서 2012년 16개, 2013년 15개로 각각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소년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년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정관을 신축·운영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문신제거시술을 통하여 사회적응상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고, 민·관 합동의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2. 10.부터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탁생 등 불우한 환경의 학생에게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랑의 리퀘스트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년비행이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 가정관 운영

비행으로 인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전용면적 16평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가족 간에 단절된 대화를 다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서울소년원 등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13동 26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2004~2013) 가족합숙제 1,809명, 1일 생활제 5,530명, 가정관 면회제 17,122명 등 총 24,461명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나. 문신제거시술

전국의 소년원생 가운데 상당수의 학생이 문신을 지니고 있으며, 한때의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긴 이들 대부분은 문신제거시술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00. 4. 부터 서울소년원에 「레이저시술실」을 설치한 이후 전국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체 의료진에 의한 문신제거시술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나 시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등으로 무료문신제거시술을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2004~2013) 일반인 12,410명을 포함하여 총 32,242명을 시술하였다.

다. 취업 및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강화

(1) 취업지원협의회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회정착지원계와 민·관 합동의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취업 추천, 구인업체 발굴·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출원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취업후견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취업후견인 89명, 취업알선 273명, 산업체 현장실습 442명, 구인업체 방문 94회의 실적을 거두었다.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하여 2001. 5. 기숙사형태의 자립생활시설인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 9.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안양(여자전용)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특히, 2009년,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 1,500만원과 21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기존 기숙사형 자립지원시설의 틀을 벗어나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입주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으며, 2011년, 2012년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원과 6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존 자립생활관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의왕·안양·부산·광주·대구의 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현재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2013년 총 2,260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입주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재단과 협력하여 매월 1~3명의 소년원 학생을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운영위원회에 추천, 이들이 출원 후에도 지속적인 학업수행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1년~2013년까지 학생 234명에게 총 11억 4,43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였다.

(4) 소년원 학생-자원봉사자 1:1멘토링

소년원 학생의 60% 이상이 결손가정인 현실을 감안, 열악한 가정환경에 따른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자원봉사자 1:1 멘토링' 시스템을 2011년 새로이 구축하여, 2011년~2013년 총 5,644명의 학생이 자원봉사자와 멘토링 결연을 맺고 상담, 취업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보호·지원을 받았다.

5. 주요 교육성과

소년원 특성화교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컴퓨터 경시대회' 및 '전국 청소년 영상물 공모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최근 10년간(2004~2013년) 총 296회, 954명의 소년원 학생이 입상하였으며, 2004년 이후 14,540명의 학생이 컴퓨터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1,412명의 소년원생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고, 기능 및 검정고시 자격취득을 위해 스스로 출원일자를 연기한 학생이 664명에 이르렀다.

가. 외부 경시대회 입상

(1) 영어·컴퓨터 경시대회

실용외국어·컴퓨터 교육 등 특성화교육 실시와 더불어 일반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참가하여 2004년 이후 외국어와 컴퓨터분야에 43명이 입상하는 등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거두었다.

(2) 기능경기대회

1984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훈련직종별로 선수를 참가시킨 이래 현재까지 일반인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직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꾸준히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145명(금 39명, 은 39명, 동 34명, 장려 33명)의 학생이 소년원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학생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무엇보다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진학

(1) 자격 취득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교과·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21,276명이 컴퓨터,

외국어,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피부미용 등의 직종에서 5,987명이 전문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총 27,263명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표 11>은 최근 10년간 소년원 학생 자격취득 현황이다.

〈표 11〉 최근 10년간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616	2,794	2,405	2,377	2,950	2,685	2,644	2,980	3,125	2,687
외 국 어	273	290	182	172	222	74	45	41	48	-
컴 퓨 터	1,546	1,600	1,328	1,297	1,478	1,389	1,387	1,642	1,581	1,292
예·체능, 기타	427	446	399	407	650	638	578	627	596	621
직업훈련	370	458	496	501	600	584	634	670	900	774

(2) 취업·진학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13년에 273명이 취업하도록 하는 등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3학년도에는 검정고시 합격 619명(중입 4명, 고입 246명, 고졸 369명), 상급학교 진학 115명(고등학교 70명, 대학교 45명), 중·고교 편입학 203명(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98명), 졸업장 취득 89명(중학교 72명, 고등학교 17명) 등 총 1,026명의 소년원 학생이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표 12>, <표 13>은 각각 최근 10년간 취업현황 및 상급학교 진학 현황이다.

〈표 12〉 최근 10년간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취업인원	548	381	349	277	339	335	328	261	313	273

〈표 13〉 최근 10년간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62	198	159	132	113	166	108	111	137	115
대 학 교	80	97	80	63	49	114	38	22	45	45
고등학교	82	101	79	69	64	52	70	89	92	70

다. 소년원 학생 창업기업

2011. 12. 현재 소년원 학생 창업기업은 NCwiz, 오션베이커리가 있으며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2003. 3. 창업한 'NCwiz'는 출판·인쇄업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카탈로그·광고전단지·홍보책자·현수막 제작 등 전자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제과제빵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실무활용도를 높이고자 2008. 3. 오션베이커리를 추가로 창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소년분류심사원은「소년법」제1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여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자 등에게 사후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권고하고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분류심사 결과를 지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의 주요 내용은 보호소년 상담조사 도입 및 출장상담조사의 시행,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학생·기소유예대상자 대안교육 및 법교육 실시 등이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비행원인 진단 및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를 제외하고는 6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2007. 7.에는 안산·부산·광주·대전·창원·청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여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및 기소유예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비행소년에 대한 상담조사,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법교육 등 위기·비행초기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 및 비행원인진단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다.

2012. 6.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이듬해 2013년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014. 2. 현재 총 1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비행원인진단과 비행예방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담조사 교육 뿐 아니라 대안교육, 청소년심리검사, 보호자교육, 법교육 등 다양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각급 기관과 MOU체결 등 업무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기관의 비행예방교육, 비행원인진단 실적은 아래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 최근 10년간 비행예방교육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안교육	계	60,477	1,333	1,423	1,710	3,974	6,410	7,348	12,862	23,382	30,122	23,013
	일반	50,450	792	788	1,339	3,271	4,683	5,629	11,396	21,280	26,814	19,739
	기소·선도유예	8,269	541	635	371	703	1,516	1,425	1,124	1,191	2,034	2,767
	보호처분	1,758	-	-	-	-	211	294	342	911	1,274	507
청소년심리상담(적성검사)		48,967	3,399	4,260	3,976	4,513	5,481	5,256	6,438	7,973	9,445	9,377
보호자교육	계	23,100	-	-	-	-	3,511	5,465	6,626	7,498	8,101	8,246
	자원	21,810	-	-	-	-	3,452	5,010	6,333	7,015	7,574	7,208
	의무	1,290	-	-	-	-	59	455	293	483	527	1,038
법교육		137,036	-	-	-	-	4,685	37,611	50,651	44,089	41,674	114,298

※ 보호자교육 : 2008년 실시 (의무참가자 2008. 6. 22.부터)
※ 대안교육 : 2001년 시범실시 (2002년도 통계에 포함), 법원명령에 의한 보호처분은 소년법 개정에 따라 운영 (2008. 6. 22. 시행)

〈표 15〉 최근 10년간 비행원인진단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분류심사	계	42,826	5,109	4,281	3,839	4,640	5,198	5,627	5,723	6,007	5,435	6,357
	일반	30,673	-	-	2,539	3,427	3,796	3,729	4,380	4,634	4,008	4,160
	특수	12,153	-	-	1,300	1,213	1,402	1,898	1,343	1,373	1,427	2,197
상담조사	계	42,529	1,882	1,890	3,135	4,437	5,952	5,106	5,301	5,296	5,148	4,382
	일반	32,311	1,360	1,135	2,158	3,754	4,650	4,057	3,843	3,233	3,988	4,133
	출장	10,218	522	755	977	683	1,302	1,049	1,458	2,063	1,160	249
검사결정전조사		1,801	-	8	166	223	579	295	397	126	7	-

가. 분류심사의 과학화 · 전문화

2000년부터 자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특수인성검사'를 실무에 도입,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이 검사를 재표준화하여 2006. 6.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용성을 제고하였고, 2003년에는 서울소년원 연구실에서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 적성검사'를 개발하여 위탁소년 심리검사, 청소년 적성검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07. 7.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류심사관 보임기준을 직급에서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전문분류심사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 8.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직원을 조사관으로 인정하는 '조사관 인증제'를 도입 · 시행하는 등 분류심사 등 비행원인진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소년보호기관의 분류심사관 보임 자격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분류심사 또는 상담을 목적으로 특별채용된 보호직 공무원 둘째,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로 50시간(또는 3과정)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셋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3년 이상 근무한 보호직 공무원 넷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등이다.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 연2회 능력평가 및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류심사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2회 통합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나. 소년심판절차 개선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 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정책협의를 거쳐 2003. 7.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상담조사 제도

2003. 7. 새롭게 도입된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담조사는 1개 소년분류심사원 및 2개 센터 대행소년원, 1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43,147명이 상담조사를 받았다.

(2) 분류심사관 심리 참여 제도

이 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 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로서, 소년에 대한 보다 적정한 처분을 도모하고

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구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 청소년비행예방 기능강화

(1)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내실화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법교육을 전담하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제외한 5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대구·전주·대전·춘천·제주 등 5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2. 6.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에 4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듬해 2013. 11.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 13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의뢰한 대안교육은 비행유형별 비행예방교육,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지능, 적성, 성격 등 심리검사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사후지도도 실시하여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안교육 실적은 96,576명에 달한다.

(2) 기소유예, 선도유예자 대상자 대안교육 실시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비행성 조기개선과 아울러 재비행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기소유예 등의 대상자에 대한 대안교육은 3~5일 과정의 통학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비행유형별 비행예방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장애체험, 심리치료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서울북부, 부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등 교육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실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운영실적은 12,829명에 이른다.

(3) 청소년심리상담 운영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일반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적성검사 및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 및 대안교육 대상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비행예방

및 원만한 학교적응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년심리상담 운영실적은 64,318명에 이른다.

(4) 보호자교육 실시

비행청소년 지도·교육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법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자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자원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가정의 보호력 증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소년보호기관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운영실적은 총 39,447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부터는 부산·청주·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사춘기 부적응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의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의 성과가 참석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소나기 캠프 참여조건부 보호자교육 또는 대안교육' 등을 의뢰하여 가족솔루션 캠프 운영기관이 3개에서 전국센터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3년까지 총 550가족 1,545명이 참가하였다.

(5) 법교육 운영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로파크)에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비행예방센터에서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9. 12. 28. 부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고, 2014. 2. 현재 전국 1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됨으로써 찾아가는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일반청소년은 물론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제 5 절 감찰·감사업무

제 1 항 감찰업무

1. 개 요

깨끗하고 신뢰받는 법무·검찰문화 정립을 위하여 6개 감찰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무부 소속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획감찰을 통해 사전적, 예방적 감찰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한 정례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감찰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였다.

2. 추진상황

가. 감찰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공직윤리 확립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교정질서 문란행위, 체류심사·불법체류사범 단속 관련 비위, 보호관찰 업무 관련 비위 등을 적발하여 엄중조치 함으로써 비위발생에 대한 일반예방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선진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윤리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감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감찰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고 감찰 전담직원의 전문교육 참여율을 제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나. 검찰의 감찰업무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6회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 받음으로써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체제를 강화하였다.

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 10명 중 9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9명의 외부인사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중립성을 강화하였고 2013년에는 감찰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징계 권고 의결을 제시하였다.

라. 직접 감찰활동 적극 수행

사전적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진정·비위사건을 직접 조사하며, 교정, 출입국, 보호 등 법무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비위감시를 강화하는 등 직접 감찰활동을 적극 수행하였다.

제 2 항 감사업무

1. 개 요

2013년에는 「청렴 투명한 법무행정 구현」을

자체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 점검 및 지원 강화, 종합감사와 청렴도 점검을 상호 연계, 민원업무 투명성 제고, 취약분야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기관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서 감사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감사결과 지적된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일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절차를 발굴·개선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다.

한편 감사 주기 및 규모와 대상기관 수를 조정하여 2010년에는 82개 기관, 2011년에는 70개 기관, 2012년에는 83개 기관, 2013년에는 76개 기관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지시사항 추진실태, 회계·인사업무, 기관별 고유업무 점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물론 부패·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도 주력하면서 법무부의 청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민원처리 소홀, 업무태만, 무단이석 및 당직근무 실태 등에 대하여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을지연습 및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하였다.

2. 주요 감사실적

「청렴 투명한 법무행정 구현」이라는 감사 기본방향에 따라 새 정부 주요시책 성과확보를 위한 지원 감사,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 부패 취약시기 상시 감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비상대기소 물품구입 관련 기준마련 권고」등 출입국 분야 2건, 「마약류수용자 수용관리 및 재활교육 운영개선 권고」등 교정관련 2건,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 생활실태 확인 등 개선권고」 보호관찰분야 1건 등 총 5건의 업무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개선조치하도록 권고하였고,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비행예방, 체계적인 수용자 인권보호 시스템 정립,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체류 편의 제공 등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주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적극 지원하였다.

예산낭비요인, 소극적 민원처리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도 힘썼다.

법무부 소속기관, 산하단체 및 법무시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연 21회에 걸쳐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감사업무 실적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은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2013년도 감사 실적

구 분	감 사 횟 수	실시기관수
계	21	240
종 합 감 사	10	60
시설공사현장감사	1	2
특 정 감 사	3	14
공직기강 감사활동	7	164

〈표 2〉 2013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조치결과 / 종 별	신분·행정상 조치건(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제도 개선
	계	징계	경고 등	계	회수	감액 등	
합 계 (21회, 240개 기관)	330(338)	3(6)	327(332)	39(503,469)	32(76,695)	7(426,774)	5
종합감사 (10회, 60개 기관)	278(290)	3(6)	275(284)	32(76,695)	32(76,695)	-	1
법무시설 신축현장감사 (1회, 2개 현장)	-	-	-	7(426,774)	-	7(426,774)	-
특정감사 (3회, 14개 기관)	27(25)	-	27(25)	-	-	-	4
공직기강 감사활동 (7회, 164개 기관)	25(23)	-	25(23)	-	-	-	-

〈표 3〉 업무개선 통보사항

기관 / 계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교도소	출입국관리 사무소	산하단체
5	1	-	-	2	2	-

제 6 절 인 권 업 무

제 1 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법무부 인권국은 2013년 한 해 동안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노력 동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 강화,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성폭력 피해 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확대, 아동학대 범죄자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법률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법률홈닥터 확대, 부내 인권침해 조사·예방 및 인권교육 강화 등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이며, 국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법질서 유지와 함께 법무부의 주요 임무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의하였다. 또한 북한인권법안 등 각 부처의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정부 전체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 작성,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및 참여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북한인권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였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및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활동 지원, 유럽 북한인권포럼 참석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UN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선진 인권국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및 인권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구조의 대상과 영역을 넓히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자율성 및 조직역량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신규로 시행하여 전국 11개 지방자체 단체 및 9개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하여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였다.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6. 5.부터 운영해 온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현장교육을 확대하는 등 강화시켜 왔다. 또한, 2007년부터 검찰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법무행정 및 관련 법령상의 여성·아동인권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부서인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 보호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법무부 소관 법령 중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제도를 시행하고, 2013. 12. 30.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여성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분기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정책협의회 개최, 여성·아동제도 관련 연구용역, 부내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소속기관에 대한 성희롱방지 이행상황 실태 점검, 양성평등 교육(다양성관리) 실시 등 국내·외 여성·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아동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 2 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1. 개 요

법무부 인권국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제도 등 12개 과제를 추가하고 ,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등 32개 과제를 보완하는 수정안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방문 등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2회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여부 등을 심의하여 12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대외적으로 국가 인권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세카가가 5월 한국을 방문조사시 면담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보장체계와 다양한 인권주제에 관해 논의한 한편, 11월 방한한 바레인 인권장관과 우리의 인권보장체계에 관한 경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속적 협력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제23차·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송부하였으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적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나아가 법무부와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내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서울 공청회 지원,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지원, 유럽북한인권포럼 참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선진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3년 10월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과 차별금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나아가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유럽평의회와 국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디어와 인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다.

2013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2012년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12년도 이행상황 점검이 과거의 이행점검과 다른 점은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각 부처가 매년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 왔으나, 국민이 실감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행상황 점검을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외의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13일 개최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이 2013년 3월 28일 발족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2012년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국민점검단의 점검의견은 2012년도 이행상황 점검 책자에

수록하여 각 부처 및 인권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어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32개 과제를 보완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12개 과제를 추가하였다.

3. 차별방지 대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차별 권고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장조사·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권고이행을 유도하였다.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총 12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하였다.

2013. 5. 31. 개최된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6건을 심의하여 6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같은 해 11. 28.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7건을 심의하여 6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1건은 차회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새 정부의 국정인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구축'의 세부과제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 4월에 인권국장을 위원장으로 법조인, 대학교수, 법제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총 12명)을 참여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제정추진단은 2013. 5.~6. 4차례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 사유, 영역, 유형, 예외 등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7년 정부제출 법안, 2010년 특별분과위원회 법안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정추진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에 대해 종교단체 및 NGO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대립이 존재하여 각계 의견,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연구·검토를 실시하였다.

4. 법령,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차별금지법안',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북한인권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인권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안(2개 법안)',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5. 국제 인권 활동 강화

2013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UN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여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2년 개최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송부하였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마가렛 세카갸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5월 29일-6월 7일 한국을 방문하여 유엔인권옹호자선언의 이행에 관한 다양한 인권이슈를 법무부 등과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 외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개인 진정에 대한 답변, UN 인권이사회 참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적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2년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에서 결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과 차별금지'에 관하여 10월 12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법의 이행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12월 12일-13일 양일간 법무부가 주최한 '미디어와 인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피의사실공표, 혐오표현 및 차별적 보도, 자살이나 여성·아동 관련 범죄보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양상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

법무부와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10. 1.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위 심포지엄에는 국회의원, 북한인권 전문가, 교수, 북한인권 시민단체,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부, 통일연구원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북한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인권 회의에 다수 참석하였다. 나아가 2013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서 설립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서울 공청회 증언록을 작성하고 관련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시 인권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UN 등 국제사회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통일연구원 주관 제2차 유럽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7. 법의 날 기념식 개최

2013. 4. 25.(목) 1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50회라는 상징성이 있는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7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기념사,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대통령의 정부포상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직접 전수, 대통령말씀, 문화공연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축사를 통해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준법정신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법치 확립을 역설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회통합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이루기 위한 진정한 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였고, 코시안 합창단, 예쁜 어린이 합창단의 문화공연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제 3 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1. 개 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2012.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10. 8. 15.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을 개정,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 및 구조금 상한을 확대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벌금수납액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여(2011. 시행),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전문적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임시거처 제공을 위하여 치료와 쉼터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일센터를 서울(2010. 7.), 부산(2012. 9.), 인천(2013. 11.), 광주(2013. 11.)에 신설하였고 범죄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7곳을 설립하여 취업지원을 하였으며 직업 훈련 및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등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의 개별적·분산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통합적 범죄피해자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법률구조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의 영역을 형사, 행정, 헌법소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및 국가소송 중 손해배상사건까지 확대하였고, 구조대상자를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아동, 일반과세 소상공인, 모든 등급 장애인, 학교폭력피해 학생 중 월평균 수입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의 자녀 등에까지 대상자를 넓혀 무료법률구조 대상사건을 추가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법률복지 사업'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확대하여 변호사들이 기초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법률적 문제들을 추출하여 소송 이전단계부터 개입하여 문제를 예방, 조기 진단 및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 4.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 중이며, 2008. 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민간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또한, 2010. 12.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설립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총 18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2013년에 피해자 상담 35,427건, 경제·의료 지원 9,962건, 신변보호 1,641건, 기타 3,197건 등 총 50,227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그동안 지역별, 기관별, 개별적으로 분산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범죄피해자가 원스톱 상담만으로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서울북부·성남·원주·군산 4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전남 광주지역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합지원네트워크를 앞으로 58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지급요건과 구조금액 및 지급대상의 제한 등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향 및 구조대상 장해등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2010. 8. 15.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 대하여는 여전히 범죄피해구조금이 늦장 지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조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구조금 신속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 운용 지침"을 제정하여 2013. 10. 1.자 시행하였다. 이 지침은 "구조금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회 개최, 서면의결 활성화, 구상권 적극 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였고(2012년 62억원→2013년 79억원), 지침 시행 전후 구조금 지급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33일에서 51일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총 312건에 대하여 79억 1,227만원이 지급결정되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구 분		계	장해구조	중상해구조	유족구조
결정	건 수	312	32	53	227
	금 액	79억 1,227만원	7억 5,188만원	3억 6,363만원	67억 9,675만원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 연간 1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였다. 이후 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53호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였다(2013. 1. 1. 시행)

2013년도 기금 편성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1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지원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7,796	17,723
	형사조정활성화	1,830	
	범죄피해자구조금	7,358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439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300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전문가 양성 및 배치	800	47,43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5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8,54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293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3,394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800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1,067	1,067
총 계	3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66,220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마. 스마일센터(심리치료기관)의 설치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어서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 장애 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10. 7. 강력범죄피해자의 전문 심리치료 시설인 서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더불어 긴급한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 9.에는 부산지역, 2013. 11.에는 인천, 광주지역에 스마일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지방 거주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였고, 연차적으로 주요 광역도시권에 확대하여 전국적인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13. 12. 말까지 464명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6,275건의 심리치료와 288건의 임시주거 제공 및 상담, 209건의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바. 제6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 개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3. 11. 6.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원봉사자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공동파트너 위촉식을 체결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의 저변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관계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업무 유공 표창을 수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사.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전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0년 5월 제정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규모 및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체계성 강화를 통한 기금운용 성과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체계적 운용을 통한 성과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사업의 목표 설정과 사업목표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성 있는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마련과 이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3년도 연구용역으로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1~6급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재산세비과세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월평균 담배판매수입금액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상공 자영업자(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의 자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퇴직공제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등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7. 1. 동해, 삼척, 태백 등 15개 시·군법원 지역에, 2010. 7. 1. 양구, 인제, 화천 등 15개 지역에, 2011. 7. 1. 평창, 부안, 상주 등 15개 지역에, 2012. 7. 1. 나주, 예산, 함안 등 9개 지역에, 2013년 남양주, 용인, 서귀포 등 9개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4개 지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인권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2008년 373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획소송 실시 이후 2013년까지 1,51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획소송을 실시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관계미등록자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 예방 및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부에서는 2006. 1. 9. 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개인회생·파산 공개강의를 실시하여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6. 5. 3. 인터넷 개인회생·파산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구조 대상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서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고, 누구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341건, 법률상담 건수는 49,180건이고, 2007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848건, 법률상담 건수는 52,723건이며, 2008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4,877건, 법률상담 건수는 58,824건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 1. 21.에는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0. 6.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011. 5. 부산, 2012. 8. 광주, 2013. 7. 대전에 각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23,699건, 법률상담 건수는 150,776건으로 금융소외자들의 경제회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 6. 수원·울산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천 등 지방대도시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지방거주 금융소외 국민들이 건전한 사회경제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부터 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그 구조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7,023건에 비하여 426%가 증가된 36,971건에 이르는 등 급격한 업무증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업무전산화를 도모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해 꾸준히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61,869건, 2010년에는 59,703건, 2011년도에는 59,002건, 2012년에는 64,425건, 2013년에는 66,706건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은 2006년 656회 2,645건, 2007년 631회 2,622건, 2008년 632회 3,001건, 2009년 542회 3,023건, 2010년 468회 2,471건, 2011년 582회 2,439건, 2012년 529회 2,926건, 2013년 507회 1,871건을 실시하였다.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또한 공단은 2010. 7.부터 상담전용버스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이후 364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5,579건, 법률구조 444건, 강연 107회를 실시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공단은 제도와 문화의 차이, 체계적인 법교육의 부재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 필요성을 인식, 2011. 7.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국적취득,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2011년 1,467명, 2012년 2,285명, 2013년 2,676명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 법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 및 준법의식 제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공단은 형사절차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2012. 3.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변호사 선임특례가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2013. 6.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단은 2013. 7.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 법률홈닥터 사업 확대

법무부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한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취약 계층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정식 사업 첫 해인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총 27명의 법률홈닥터를 전국에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등 23,493건의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를 제공하여 전년 대비 약 43% 증가된 실적을 거두었다.

그 외에도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한 법률홈닥터 홍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무료법률상담행사(강릉, 춘천, 김포)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4년 총 40명으로 법률홈닥터를 증원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지소가 없거나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함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계층에 한 층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존 법률구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 등의 복지안전망과의 업무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 4 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1. 개 요

법무부는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자체조사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감찰관실에서 수행하여 오던 검찰인권보호 상황평가업무를 이관받아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인권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가. 자기통제적 인권옹호 시스템 구축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06. 5. 3.부터 인권조사과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이를 위하여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인권침해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이다.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이 교정·출입국관리·보호 관련 사건인 경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미사건의 경우 관련 부서에 자체 조사지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찰 자체의 수사기능을 우선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인권국이 추가 조사 및 직접 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행위의 즉시 중지, 수용장소 변경, 원상회복, 손해배상, 법률구조요청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인권침해사건 신고건수는 2013. 1. 1.~12. 31.까지 총 1,542건(전화신고 55건, 우편 신고 1,040건, 인터넷신고 88건, 인지 62건, 팩스 신고 297건, 방문 0건)으로 이 중 접수전 상담종결이 33건, 사건접수가 1,509건이며 접수된 1,509건의 처리내용은 인용 및 구제 81건, 이첩 642건, 각하 597건, 기각 170건, 기타 19건이다.

한편,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0. 9. 28.부터 신고비용 전면 국가부담 방안을 마련·시행중이다.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통계 : 표 4-4, 표 4-5> 참조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가. 교정, 보호시설 등 구금시설 정기적 감독 및 실태 파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인권실태 점검현황(2013. 1.~12.)

점검기관	교정시설	대용감방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원	계
점검횟수	11	-	11	11	5	38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 구금시설 수용자 직접면담 : 542명
구금시설 수용자 설문조사 : 2,371명

나.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이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각종 제도를 인권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가.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이 바라는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내용 및 교육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청각 자료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한 인권교육의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노력하여 직역별 인권 다큐멘터리, 인권 실무교재를 제작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분야 인권강사단을 각 구성하였고, 2010년 법무공무원에 대한 자체적인 인권감수성 훈련을 담당할 직역별 내부강사 48명을 양성 한 후 2013년 43명을 추가로 양성하였다.

나. 법무행정 각 직역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법무행정 공무원들의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20회,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 35회, 인권조사과 강사진의 인권교육 20회 등 총 75회에 걸쳐 3,07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전 직역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일선기관 방문 교육과 내부 인권강사에 의한 인권감수성 향상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조사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하여「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청에 근무하는 경력검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법무부는 2007. 8.부터「인권보호수사준칙」

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위 업무 성격상 인권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2010. 7. 인권국으로 위 업무를 이관하였고,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검찰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계기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인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2011년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 5 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총괄·조정

1. 개 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의 인권보장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국내 법령 제(개)정 시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분기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안건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조치 이행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교육(다양성관리)을 실시하는 등 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3.16.부터 시행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 첫 해인 2012년도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 2,908명, 2013년에는 8,084명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3.6.19.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이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해 오던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연령에 관계없이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는 학대

피해아동도 법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13.7.1.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한 후 전국 원스톱지원센타 5곳, 법률구조공단 지부 10곳에 배치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지역사회의 성폭력 상담시설, 성폭력 전담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시행

2013.12.19. 전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게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12.19. 양성교육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을 시작하여 이후 시행 초기임에도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신장애 여성 등 성폭력피해자 10명에게 진술조력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반복조사와 진술오염에 의한 무죄 선고율을 낮추고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아동학대 범죄를 유형화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분내용을 다양화하여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적 개입을 체계화하여 가해자 처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서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2012. 9. 4.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야 의원 설득, 언론 인터뷰 및 기고문 게재 등 입법 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여 2013.12. 법안을 제정하였다.

2014.9.29.시행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국제교류를 통한 여성·아동정책 공유 및 지위향상 도모

2012. 3.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근절 및 예방에 대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에 '14년 말 개최되는 정기회의의 기초자료가 될 대한민국 정책보고서를 제출('13. 4.)하여 국제사회 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마. 여성·아동 관련 연구 용역 실시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연구' 등 총 5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여성·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 여성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상정,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관련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여성·아동 인권 관련 UPR(국가별정례인권검토) 추진 경과,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경과,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지위, 법무부의 4대악 근절정책 등 다양한 안건들을 토의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나. 법무부 여성정책협의회 개최

조직 내 여성공무원에게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관점의 다양한 정책·제도 개발을 위해 각 직렬별 여성공무원 대표 9인으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의 교정, 출입국, 보호정책 등 법무정책 관련 제언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법무부 여성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다. 법무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정책결정·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에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대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청소년비행예방',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등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결정·집행 및 평가의 과정에서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가. 여성주간행사 실시

제18회 여성주간(7. 1.~7. 7.)을 맞이하여 7. 11. 에이트스프링스 대표 오종철 강사를 초빙, 정부과천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실시하여 남녀가 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성차별 의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나. 다양성관리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실태 점검

법무·검찰공무원 1,313명을 대상으로 총 26회에 걸쳐 양성평등교육(다양성관리)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인식 제고, 조직내 소통과 협력강화 등을 통한 균형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출입, 교정, 소년, 보호 등)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박2일 과정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2회)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7 절 교 정 업 무

제 1 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013년도 교정본부는 새정부 비전인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해 '국민행복 희망교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 증설 등을 통한 특정범죄군의 범죄성 개선에 노력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증설로 정신질환자 재활치료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간처우제도 확대를 통해 실질적 사회복귀 지원에 진력하였다. 현장수요 위주의 기술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정착과 인터넷 화상접견제도 시행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였고,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 수용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병행하였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수형자 가석방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물의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 가석방 심사기준을 강화한 반면,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준법·사회기여 등 모범수형자의 가석방 심사기준은 완화하였고 장소변경접견제도는 장애인·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배려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현장 중심의 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현장 방문을 내실화 하였고 일선직원과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하여 현실에 조응하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교정역량을 강화하고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공무원 4부제 야간근무방식을 확대 시행하고 재향교정동우회법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영상매체를 통한 교정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교정의 변화상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신축을 통해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수형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성공적인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등에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운영하였고, 출소 전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훈련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2013년에는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처우,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로 이어지는 실질적 사회복귀지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전문숙련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여성・장애인・소년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확대・시행하여 출소 후 외부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촉진에 기여하였다.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010년 각종 교정사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과학적 처우의 자료로 활용하여 교정사고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하여 한국을 알리기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수형자의 수용질서 확립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 2. 수형자 자치제 전담교도소인 영월교도소를 개청하여 관리중심의 수용관리가 아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율중심의 수용관리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동순찰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직무교육 강좌를 운영 중이며, 팀제 보안근무체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한편, 상습규율위반자 등을 별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용관리와 함께 수형자 인성검사를 통해 수형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효율적 수용관리 및 안전한 수용생활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수형자의 사회복귀 의욕 고취 및 교정교화 목적달성을 위해 수형자 특성에 맞는 음악, 미술, 독서, 웃음치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올바른 성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성폭력사범 교정프로그램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12. 12. 군산교도소, '13. 11. 진주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운영하였고, '14년에는 의정부교도소에 개원할 예정이다.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의료처우의 개선과 권리구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인권 옹호'라는 교정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의정부교도소를 비롯한 2개 교정시설에 원격진료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 34,223명의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교정시설 내 혈액투석실을 확대 구축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에 원격화상 조사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청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용자 권리구제의 신속화 및 실질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14년에는 성동구치소 착공, 전주교도소 후보지 주민공모 등 노후 교정시설 이전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공주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수용거실 바닥 온돌 설치 및 서울구치소 등 8개 기관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존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제 2 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가. '국민행복 희망교정' 실현을 위한 인사운영

새 정부 첫 해인 2013년은 '국민행복 희망교정'이라는 교정비전 실현과 교정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교정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 신설 인력으로 4개 지방교정청에 8명을 충원하고,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임상심리사 21명을 채용함으로써, 성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서기관 승진심사 시 역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정관리 역량 증진에 기여하였고, 지방교정청 총무·보안과장에 4급 교정기관장 역임자 8명을 보임함으로써 조직 내 원활한 인사순환을 유도함과 더불어 지방교정청의 위상을 높여 지휘체계 확립에도 기여하였다.

나. 교정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순회점검 및 각 지방교정청별로 불시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조리 예방교육 등 청렴교육 및 수시 직장교육을 통해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특히 순회점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비위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등 컨설팅 방식의 시스템 감사를 지향하였다. 본부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9개반 72명을 순회점검반으로 편성하여 18개 교정기관 직원 복무실태, 교정부조리 근절 방안 중점추진 실태, 수용질서 및 수용자 처우개선 실태, 교육·교화·교도작업 운영실태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순회점검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주의 16건, 현지시정 76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으며 수용자의 부당처우·연고지 이송 등 26건의 청원을 처리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 5개 분야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병원 계호실태에 대한 불시 기동점검 등 지방교정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교정사고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온정주의를 배제한 비리관련자 문책 및 감독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부조리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하였다.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가. 4부제 확대 실시

직원근무 여건 향상을 위하여 2013년부터 기존 3부제 기관을 4부제 기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4년에는 전 기관을 4부제로 운영할 예정이고, 신설예정인 대구청 내 교정심리치료센터에 운영인력 9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나. 국내·외 교육훈련 내실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교정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수용자 처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 전제가 되므로,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문교육, 자체

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국방대학원, 통일교육원 등의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각 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현대적 선진 교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 9. 22.부터 9. 28.까지 인도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에 교정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하여 참가국가간 교정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으며, 2013. 10. 27.부터 11. 1.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교정협회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각종 국제교류협력을 증진시켰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국제적 감각배양을 위해 2013년 총 14개팀 85명의 교정공무원을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에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교정시설 등을 참관케 하였으며, 교정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여 국비장기유학과정에 4명(미국 미네소타 교정국, 일본 동지사대학 등), 단기해외연수과정에 3명(캐나다 존하워드 협회, 호주 오웨니아하우스 등)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정제도를 현지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직원 결속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를 관리하며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 5. 16. 제3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는 16명의 모범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에게 포상과 상금을 시상하였으며 7급 이하 수상 직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하였다. 2013. 10. 28.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6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 및 교정참여인사 85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체력단련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 6. 14.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에서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여 유도·태권도·검도 실력의 자웅을 겨루는 장을 열었으며, 2013. 10. 18. 과천시민회관에서는 2013. 7. 30. 공포·시행된「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교정 선진화 및 공익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창립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제 3 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1. 수용자 지향 수용자 처우

가. 외부교통권 보장을 통한 수용자 사회성 함양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수용자의 구금에서 교정교화로 변화함에 따라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및 사회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교화와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원거리에 거주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문제로 수용자와의 접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격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 여주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처음 도입한 원격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꾸준히 확충하여 현재는 원격화상접견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접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 130건이던 원격화상접견 실시 건수는 2007년 123,425건, 2008년 141,431건, 2009년 163,58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수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접견 건수의 감소로 화상접견도 전년대비 4,441건 감소한 159,144건을 기록하였지만 2011년 163,186건, 2012년 178,76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이후 2013년에는 198,45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5점 만점 기준에 4.15점으로 응답자의 76.5%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여, 화상접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수)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90,329	107,608	123,425	141,431	163,585	159,144	163,186	178,762	198,458

둘째, 수용자와 민원인간 전화를 이용한 외부교통을 통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1998. 10.부터 모든 교정기관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하였고, 2001. 8.「수용자 전화사용 지침」을 개정하여 수신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이후 2010년에는 전화사용 건수가 490,903건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463,23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2년에는 487,228건, 2013년에는 488,15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재해, 경조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민원인들과 급히 연락이 필요할 때는 3·4급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도 소장의 허가를 얻어 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수)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277,352	321,093	349,798	379,124	454,842	490,903	463,230	487,228	488,153

셋째, 접견예약제도와 접견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접견예약제도는 민원인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견을 예약한 후 예약한 일시에 접견을 할 수 있어 수용자 가족 등 민원인이 접견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접견예약제도는 수용자들에게도 사전에 민원인들이 접견 올 날짜와 시간을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 수용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1년 이용건수는 374,780건, 2012년에는 410,980건, 2013년에는 479,4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수)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314,210	335,607	361,280	349,230	345,762	374,780	410,980	479,481

또한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접견신청을 일과 중 모든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접견시간의 확대보장을 도모하고자, 오전 시간대 등 상대적으로 방문인원이 적은 시간대에는 접견시간을 연장해 주는 접견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접견인센티브는 각 교정기관의 실정에 맞게 각 기관별로 시간대별 접견건수 등을 분석하여 적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5. 3.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5점 만점 기준에 4.26점으로 응답자의 85.1%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여, 접견예약 및 접견인센티브 제도가 접견민원서비스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수)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314,210	2,001,705	2,020,018	2,218,193	2,030,847	1,964,389	1,979,015	2,159,672

넷째, 일반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접견 당사자인 수용자 및 민원인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접견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직원의 참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하였다.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은 수용자 접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별로 순차적으로 구축하였으며, 2006년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교정기관을 시작으로 2008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산하 23개 교정기관에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다.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접견대기시간이 5~10분 단축되어 접견시간이 3~5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수형자 가족 중 생업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렵거나 장애 등으로 원거리 이동이 곤란한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형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유대 강화를 위해 2013년에는 인터넷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원인 가정 내 PC와 교정시설 접견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상접견 중계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0일부터 12개 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을 시행하였다. 접견 실적이 8,111건에 이르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은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에는 20개 기관에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구축하고, 2015년에는 나머지 18개 기관의 구축을 완료하여 모든 교정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 회복적·문화적 교화프로그램 확충

2013년 교정행정은 처벌의 단계를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하여 가족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2008. 9.부터는 '다큐멘터리적 교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수형자 가족 등의 사연을 담은 영상물을 교화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하는 '영상편지(가족의 소리)'를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08. 10.부터는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영상편지를 촬영하여 전 교정기관의 수용자에게 방영함으로써 가족의 신뢰회복 및 갈등해소로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였으며,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접견으로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0. 9.부터는 수용자와 가족이 엽서, 편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의 정서순화 및 가족 갈등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여 수용자가 안정된 가운데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율적 심성순화를 위하여 음악·미술·독서·웃음치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수형자 정서순화를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05. 8.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취약계층 문화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16개 단체의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데 이어, 매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시, 시화, 문예창작 등 문화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김천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로 구성된 '드림스케치' 합창단을 구성하고 가수

이승철의 지도를 받아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소년수형자들이 피해자와 가족, 사회에 용서를 구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2. 11. 12. 김천시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수 BMK, 테너 김성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스케치 합창단 공연'을 시행하였고, 2013. 1. 30. 포항교도소에서 청주여주교도소 등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수형자 합창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	비 고
2008	51	535	68,786	
2009	51	503	78,826	
2010	51	457	68,162	
2011	50	401	53,639	
2012	46	362	37,403	
2013	43	335	51,909	

다. 수용자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형자의 고등교육 욕구 증가, 검정고시 합격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과정 졸업자의 정규 대학과정 교육 희망 증가에 따라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신설, 2005년 전주교도소에 추가로 설치한 데 이어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에는 포항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의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가 초·중·고 및 전문대학 과정교육은 물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방송통신대학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11명의 방송통신대학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입 및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571명이 합격하였으며, 순천교도소에서는 청암대학교(순천시 소재) 위탁교육을 통해 18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는 안양교도소 등 17개 기관에서 총 31명의 수형자가 합격하는 등 수용자 교육교화에 내실을 기하였다.

라. 중간처우확대 시행 등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2009. 1. 안양교도소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을 개원하였고, 이어

11월에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씩(춘천·창원·청주여자·순천교도소)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 설치하여 출소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구외공장으로 출·퇴근하는 등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9.에는 천안개방교도소를 기능 전환하여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 출소 후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등 사회복귀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3. 9.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밀양희망센터"를 개관하여 교정시설 내 처우에서,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로 이어지는 실질적 사회복귀지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수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향상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정시설 확충, 노후교정시설 이전 및 수용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교정시설 확충 및 노후교정시설 이전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54%가 25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35년 이상 경과된 시설도 28%에 이르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안팎으로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관내 교정시설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월·밀양·해남에 500명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을 준공하였다. 또한 2014년 초에는 상주교도소를 준공하였고, 2014년 말에는 정읍교도소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속초·거창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신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정시설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도심지역의 발달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도심소재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 교정시설을 신축한 후 현 교정시설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서울남부 교정시설은 구로구와 2007. 11.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건립을 완료, 2011. 10.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부지 교환방식을 통하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성동구치소·창원교도소 2개 기관이며, 법무부 자체 예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8개 기관이다.

나. 수용환경 개선사업

수용거실 재래식 화변기로 인한 거실 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서울구치소 등 8개 기관에 양변기 교체작업을 완료하여 위생환경을 개선하였고, 화재 시 폐쇄형 구조로 인한 대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출입문 자동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개 기관 배식구 상향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복도 방열기(라디에이터)에 의한 간접난방을 채택하는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바닥온돌 직접난방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에는 원주교도소 등 3개 기관을 개선함으로써 동절기 수용자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였고, 공중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추어 기존의 노후된 TV를 벽면밀착이 가능하여 공간활용도가 높은 절전형 LCD TV로 교체하여 교화방송 효과를 증대하였다.

교정시설 증축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2013년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2개 기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수용동을 증축하여 난방효율 증대 등 수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2012년 개선실적 중심의 양적인 측면에서 탈피하여 수용자의 눈높이와 심성순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시설의 구조, 배치, 디자인 개선을 위해 달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정시설 표준형 디자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교정시설에 적용할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여 2013년에는 사용자 설문조사 및 디자인 진흥원 주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전국 기관에 제작 배포하는 등 질적인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 의료환경 개선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처우를 위하여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64명을 배치받아 수용자 진료업무에 활용하고, 교정공무원 중 1급 응급구조사 39명, 2급 응급구조사 276명, 간호조무사 479명을 일선 의료과 등에 배치하여 보건행정 및 의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 자동약품포장기, X-ray기, 심장제세동기 등 최신 의료장비 22종 1,048대를 구입·공급하여 의료장비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를 경감시키고 향상된 수용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2005년부터 외부전문기관과 검진계약을 체결, 직장인 검진 수준의 수용자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05년 20,640명, 2006년 25,045명, 2007년 29,885명, 2008년 30,195명, 2009년 31,609명, 2010년 31,612명, 2011년 32,858명, 2012년 32,125명, 2013년에는 실시원년인 2005년보다 약 65.8% 증가한 34,223명에 대해 30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의심 판정자에 대한 2차 정밀검진 및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였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전문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2008년 안양교도소에 인공신장기, 혈액투석 정수시스템 등의 혈액투석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2011. 12. 이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전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 2. 대전교도소 혈액투석실도 추가 구축·운영하여 2008년 806건, 2009년 2,493건, 2010년 2,980건, 2011년 3,738건, 2012년 4,631건, 2013년 5,055건의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외부병원 진료수요와 외부진료에 따른 진료비 집행예산 증가, 가중되는 계호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의사 초빙진료, 교부허가의약품의 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처우를 개선하고자 7월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9월에는 스포츠닥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및 예산으로 치료가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외부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과목별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2005년부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에 외부병원과의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2008년 4개 기관, 2009년 6개 기관, 2010년 4개 기관, 2011년 4개 기관, 2012년 3개

기관, 2013년 2개 기관 등 총 25개 교정시설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과 등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에 의한 진료 6,864건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2~3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구축하여 수용자의 의료처우와 계호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1월에는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일선기관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및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립하였다.

만성신부전증, 당뇨합병증 등 만성질환 수용자의 안정적 요양치료를 위하여 4개 지방교정청 산하에 의료중점교도소를 지정하여 입원실, 진료실을 민간 병원급 의료시설로 설계하고 30~100병상 규모의 병실과 환자용 침대를 구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통풍·채광을 고려한 쾌적한 진료 및 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9. 9. 대전교도소에 47병상을 설치하였고,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 28개 병상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2015년 광주교도소, 2016년 부산교도소에 의료수용동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 수술환자,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안양교도소 재건축 부지에 국내최초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2010년 설계, 2015년 착공, 2016년 완공)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라. 대용구치시설 수용 미결수용자 처우 개선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은 협소한 공간과 수용시설·의료시설 등의 미비로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었고, 경찰청에서도 미결수용자 인수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4년 충주구치소와 통영구치소를 개청하여 충주경찰서와 통영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였다. 또한 2006년 포항교도소가 개청함에 따라 영덕경찰서 미결수용자를 2007. 3. 포항교도소에서 인수하였고, 같은 해 3월 의성경찰서 미결수용자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인수하였으며, 2008. 3.에는 정읍경찰서 미결수용자를 전주교도소에서 인수하였다. 더불어 영월·해남·밀양경찰서 미결수용자 인수를 위해 2009. 12.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기관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상주·정읍교도소, 2016년에는 속초교도소, 2017년에는 거창구치소를 신설하여 정읍·상주·속초·거창경찰서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예정이다.

제 4 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수용질서를 확립하고자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수용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환자복 내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용자 호송 시 장애인, 중환자, 임산부, 노인, 여성수용자에게는 탄력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입 수용자 신체검사 시 전자영상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를 전 기관에 보급함은 물론 수용자 운동 및 목욕 방법을 개선

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법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장 분위기에 편승, 수용생활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진정·정보공개 청구 등의 남발 사례, 소란·난동·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규율위반 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수용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벌·입건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소란·난동과 같은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한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야간·휴일 기동순찰 활동을 통한 취약시간대 계호력 보강을 위해 기동순찰팀(CRPT)을 창설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적 관규 위반 수용자, 자해·자살 등의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상습 규율위반자, 상습 폭행자 등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정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형기 중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여 적합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도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는 2012년부터 신입분류심사 대상자 및 재심사대상자에게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 Correctional-Recidivism Prediction Index)'를 적용하여 수형자의 재복역 위험등급에 따른 처우를 통해 출소 후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를 통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처우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처우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정재범 예측지표와 수형자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처우는 교정행정의 과학적인 운영과 재범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13년 9월부터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당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였다. 다만, 특별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 수료 등을 통해 성실히 생활

하는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2~10%까지 완화하여 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법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형자에게만 가석방 혜택이 주어지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다회 헌혈, 양로원·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봉사자 등에게는 가석방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준법과 사회기여가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이밖에 가석방심사에 화상면담을 도입하여 수형자의 반성정도, 사회복귀의지, 건강상태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수형자 가석방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10,520	8,590	8,067	8,524	8,392	8,083	7,129	6,500	6,201

제 5 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1. 개 요

현대 교정행정은 교육형주의 이념 아래 수용자를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목표로 다양한 인성함양 및 지적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정위원 등 교정참여인사의 교화활동을 활성화시켜 사회와 연계한 교정교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2013년 인성교육, 학과교육, 예·체능 정서교육, 교정위원에 의한 심성순화 등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내실을 기한 결과 571명의 수형자들이 중졸 및 고입·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31명의 수용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332명의 수용자가 워드프로세스 및 컴퓨터 활용능력, ITQ(정보기술자격 시험) 등에 대한 정보화자격을 취득하는 등 수용자 사회복귀 능력 배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1) 정규교육에 상응한 학과교육

수형자 중에서 학교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중·고등학교 학과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일반학과교육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공인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9년 548명, 2010년 481명, 2011년 514명, 2012년 558명, 2013년 57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

1982.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991. 1. 10. 천안교도소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소년수형자에게 정규 고등학교 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5년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폐지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2009년 6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2010년 천안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은 김천소년교도소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3명, 2011년 10명, 2012년 5명, 2013년 9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3) 전문대학 위탁교육

2001년 청주 주성대학과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 협정을 맺어 청주교도소 내에 전자상거래과(인테리어과로 변경 개설)를 개설한 이래, 2002년 순천교도소 내에 순천청암대학 관광호텔조리과(호텔외식조리과로 명칭 변경)를 개설하여, 2010년 31명의 수형자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1년에는 청암대학에서 17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으며, 2012년에는 청암대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구 주성대학)에서 22명, 2013년에는 청암대학에서 18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참고로 충북보건과학대학은 교육생 감소로 2012년 폐강하였다.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

수용생활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와 고등교육 기회 부여로 출소 후 사회복귀 기반 조성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대전교도소 등 11개 기관에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9개 전공분야의 학사 고시반을 설치하여 2009년 수용자 180명을 대상으로 독학사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학사학위취득을 목표로 1~4단계, 각 단계별 6과목(1단계 5과목)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1996년 3명의 독학사 배출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313명의 독학학위취득자를 배출하였고, 2013년에는 31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5) 방송통신대학교

수형자의 고등교육 욕구가 높아지고 검정고시 합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정규 대학과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신설, 2005년 전주교도소,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 포항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은 CD・테이프 등의 교육매체를 통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 및 강의수업으로 진행되며, 2007년 여주교도소 4명, 2008년 전주교도소 6명, 2009년 여주교도소 4명・청주여자교도소 4명, 2010년 청주여자교도소 2명・포항교도소 8명,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 4명・전주교도소 11명・여주교도소 8명, 2012년 여주교도소 8명・청주여자교도소 4명, 2013년 전주교도소 9명・청주여자교도소 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6) 외국어 전문교육

1999. 10. 의정부교도소에 어학실습실을

설치하고 영어, 일어 전문교육을 실시한 이후 2001년 여주교도소와 2002년 목포교도소, 2011년 영월교도소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각 과정마다 20~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목포교도소의 경우 교육생 부족 등의 사정으로 2012. 12.에 교육과정을 폐지하였다. 2013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한 결과, 영어(TOEIC)에서 최고 990점(만점 990점)·평균 699.5점, 일본어(JPT)에서는 최고 935점(만점 990점)·평균 621점, 중국어(CPT)는 최고 840점(만점 1,000점)·평균 506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나. 수용자 인성교육 도입 및 시행

수형자들의 심성 순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시하던 수형자 일반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형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저조, 정신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2008. 12 18.부터 「수형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지침」으로 개정하여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매회 3일 이상 5일 이내 15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회복, 심리치료, 집단상담, 도덕성회복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였으며, 2010. 8. 1.부터 인성교육과정 편성 시 효행교육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인성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여주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집중인성교육을 시범실시하였다. 집중인성교육은 기존의 인성교육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인적·물적 기반 조성 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2015년 전 교정기관에 시행할 예정이다.

〈표 7〉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시인원	16,849	17,244	13,166	14,040	14,463	9,118	9,245	8,744	6,789	6,202

다. 수형자 특별 활동반 운영

수형자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건전한 정신과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수형자 중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운동, 서예, 회화, 악기 연주, 문예 등의 예·체능교육과 교양지 발간과 같은 정서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굳은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정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넓혀 나가고자 수형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예활동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매년 전국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수형자의 문예작품입상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수형자 문예작품 입상 현황

구 분	계	서 예	한국화	서양화	시 화	공 예
출 품	237	157	59	14	2	5
입 상	108	77	24	7	-	-

(2) 종교활동

종교귀의에 의한 심성순화로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전 수형자들이 종교를 갖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종교에 귀의한 수형자에게 종교의식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수용생활 중 교리지도는 물론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새길」 발간

수형자 교화용 도서인「새길」은 1948년 창간 이후 2013. 12. 제424호를 발간·배포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정서순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 문예란에 작품을 발표케 하여 문예소양을 계발하는 등 문예발표의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 1948. 4. 창간(월간 또는 격월간 발행), 2001년부터 계간 발행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가. 귀 휴

귀휴는 일정기간 복역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일종의 휴가를 허가하는 제도로 석방 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13년 1,282명의 수용자에 대해 귀휴를 실시하였으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귀휴 허가에 필요한 최소 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였고, 일반귀휴 기간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특별귀휴 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핵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였다.

나. 사회견학 및 봉사체험

수형자들에게 보육원·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봉사를 통한 심성순화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케

하기 위해서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4,245명의 수형자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하였다.

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내 정원이나 휴게공간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2013년 11,578명의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라. 가족만남의 집 설치·운영

1999년부터 장기형의 모범수형자 또는 가족과 만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외곽에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와 시설의 「가족만남의 집」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1박 2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수형자 및 가족의 만족도와 교정교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법무부는 자체예산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2013년 말 현재 42개 교정기관에 43세대 「가족만남의 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교정기관 신설 및 이전 건축 시 「가족만남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1,265명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였다.

마.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수형생활로 인해 사회적 편견, 경제적 곤란 등 수용자 가족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1. 10. 법무부·행안부·여가부·복지부·교과부·경찰청·서울대학교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전문가의 진행으로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수형자의 수용생활 초기 가족관계 해체 방지를 위해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교도소, 2013년에는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목포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일반가정 거실과 같은 형태의 가족접견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서울대학생과 청소년 자녀를 연결하여 학습방법, 진로와 적성, 일상적인 생활 등에 대해 정보제공, 조언과 상담 등을 실시하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법무부는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출소예정자 2,819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케 하여 체계적·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출소 후 창업을 원하는 803명의 수형자에 대하여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 5. 전국 51개 교정기관에서 211개 업체, 680명 수형자가 참여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411명이 채용약정을 하였으며, 2013. 12. 전국 51개 교정기관에서 399개 업체, 1,205명 수형자가 참여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641명이 채용약정을

하여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9〉 연도별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70	687	1,165	1,243	1,138	1,298	1,489
취업	670	672	1,107	1,174	1,080	1,238	1,405
창업	-	15	58	69	58	60	84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가. 교정위원 교화활동 활성화 및 사기 진작

1998. 11. 26.「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를 발족하여 전국적인 수형자 교화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0. 9.부터 교정위원을 대폭 늘려 2000. 10.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평소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교정위원 등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제1회 수용자 교정·교화 자원봉사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수형자 교정교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교정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83년부터 교정본부장 주재 하에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교정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창원교도소 등 12개 기관에서 개최하였다. 기타 기관은 해당 기관장 주재로 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화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행정발전 및 수형자 교화선도에 힘쓴 유공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여 격려하였다.

나. 교화위원

1970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을 교화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자 개인상담, 자매결연, 교화공연, 취업알선 등 수용자에 대한 교화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10〉 교화위원 현황

(201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1,915	66	47	66	1,328	36	372

다. 종교위원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지도케 함으로써 심성순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 11〉 종교위원 현황

(201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967	925	656	350	36

라. 교육위원

2000년 교정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수형자 학과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해 온 교정참여인사를 교정위원제도의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수형자 교육, 상담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12〉 교육위원 현황

(201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211	60	22	31	4	94

마. 의료위원

2004년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들을 교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 및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는 등 수용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표 13〉 의료위원 현황

(201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108	92	7	3	3	3

바. 취업위원

2010년 교정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수용자에게 취업 및 창업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14〉 취업위원

(201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32	373	29	59	86	85

제 6 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1. 개 요

가.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도작업제품 품질개선'과 '교도작업 홍보 활동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교도작업담당 직원의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강화시켰으며, 취업수형자의 교도작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신바람 나는 작업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교도작업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1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도작업제품에 대한 국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민간 위탁판매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응급구호조치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2013년 약 5,700여명의 작업 수형자 및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및 이동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립형 교도작업의 완전 정착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위탁업체와의 적정 계약단가 추진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3년도 자립형 작업담당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도작업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형성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제4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시관 내에 교정홍보관을 설치하여 일반국민들이 변화된 교정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켰다.

나. 직업훈련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재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직업훈련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에 용이한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1969년 전국 30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한 이래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출소 후 안정된 직업마련으로 자활능력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고급 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자동차정비 등 14개 직종 4,852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집중직업훈련과 교도작업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직업

훈련을 체험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직업훈련 체험관을 신설하는 등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 교도작업 운영실적

가. 작업운영 형태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정역(定役)으로, 작업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복귀 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도작업은 교도소에서 직접 제품 및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직영작업, 외부업체로부터 기계·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작업, 외부통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작업과 교도소의 자체 시설유지·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원작업이 있다.

나. 작업종목 및 취업인원

작업종목은 목공·철공·인쇄공·봉제공·장류공·식품공 등 19개 직종의 직영작업, 전자부품조립·쇼핑백 제작 등 20개 직종의 위탁작업, 외부통근작업 등의 노무작업, 청소·취사·시설보수·세탁 등의 운영지원작업으로 나누어지며, 1일 평균 2만여 명의 수형자가 제품생산과 기술훈련에 정진하고 있다.

다. 작업규모

2013년도 말 기준 교도작업 규모는 총세입액 618억원(2012년도 이월금 포함), 총세출액 406억원, 이월금 212억원이며,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 국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 작업시설은 1,435억 5,800만원이고, 공작물 등은 42억 1,000만원으로, 1962년 독립회계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그 내역은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별	총세입액	총세출액	다음연도 이월금	비 고
2009	45,713	34,375	11,338	
2010	44,399	31,983	12,416	
2011	51,609	35,652	15,957	
2012	53,941	34,310	19,631	
2013	61,776	40,565	21,211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표 16〉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147,768	143,558	4,210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가.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수형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 28. 부터 11. 3.까지 제4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교도작업제품과 문예작품 총 1,097점을 전시하였다. 특히 종전에는 교도작업제품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교정행정 홍보를 위한 교정홍보관을 설치하여 일반국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교정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켰다.

나. 국화 품평회 개최

수형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다양한 국화를 한 곳에 모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국화품평회를 2013. 10. 25. 과천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서울구치소 등 9개 교정기관에서 다륜대작 등 234점의 국화를 출품하여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농수산대학 화훼학과 교수 등 3명이 심사를 하여 총 9점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행사종료 후 법무부 각 기관 및 유관기관에 국화를 기증하여 가을의 국화향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4. 작업장려금 및 조·위로금

가. 작업장려금

작업장려금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가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작업장려금, 특별작업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일반작업장려금은 모든 취업자에게 작업의 종류, 교정성적에 따른 작업 등급 및 작업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특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교도작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작업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활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표 17>과 같다.

〈표 17〉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업종류	외부통근 (개방지역작업)			집중근로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000	7,000	6,000	2,300	1,800	1,300	1,100	900	800	3,500	3,000	2,500	700	650	600

나. 조위금 및 위로금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로서 조위금, 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수형자가 작업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근 지급실적은 <표 18>과 같다.

〈표 18〉 조위금 및 위로금 연도별 지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위 로 금		
	인 원	지 급 액	1인당 평균지급액
2009	6	42,694	7,116
2010	8	69,627	8,703
2011	6	60,804	10,134
2012	5	73,735 (42,709)	14,747
2013	2	8,251	4,126

※ ( )는 조위금

5. 자립형 교도작업

작업시간 부족, 근로의욕 미흡 등 교도작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수형자의 생활 정착금을 마련하여 안정된 수형생활 유도, 가족관계 회복 증진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자립형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립형교도작업은 장기수형자 대상의 구내작업으로 1일 실제 작업시간 8시간을 확보하고 현재의 집중근로작업을 수량과정으로 실시하여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2~3배 인상된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작업형태로서 2013. 12. 말 현재 34개 기관, 66개 작업장에서 2,0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출소 후 생계기반 조성을 통한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모범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시켜 작업하게 하는 제도이다. 외부통근작업은 2013년 말 현재 전국 27개 교도소에서 1일 평균 1,240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와 가족은 물론 취업기업체 및 여론도 매우 좋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취업수형자 또한 높은 갱생의지를 보이는 등 수형자 교정교화에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2012년도에 서울남부교도소 구외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구외공장을 증설할 방침이며, 취업직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7. 내실있는 직업훈련 실시

가. 산업사회에 유용한 기능인력 양성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공직업훈련 3,585명, 일반직업훈련 1,267명 등 총 4,852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숙련훈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훈련은 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에 대한 기초과정이 필요한 자와 학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수용기관에서 기초적인 기능을 연마시키는 훈련이며, 향상훈련은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사 자격취득자 및 중학교졸업 정도의 학력소지자를 대상으로 수용기관 또는 집체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숙련훈련은 기능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수용기관에서 전문기술을 교육시키는 훈련이다.

집체훈련은 화성·서울남부·청주·청주여자·순천교도소 등의 집체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일반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나누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같고, 고급기술훈련은 기사이상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기사전문과정인가를 받아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원주·청주·대구·진주·대전·청주·전주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일반직업훈련 과정에 단기집중훈련과 교도작업적응훈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실시인원은 <표 19>와 같다.

〈표 19〉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279	3,470	3,537	3,725	3,825	4,129	4,852
공공직업훈련	양성·향상훈련	2,683	2,536	2,783	3,164	3,076	3,386	3,336
	숙련훈련	217	490	430	327	369	350	249
일반직업훈련		379	444	324	234	380	393	1,267

나. 기술자격 취득

법무부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1969년 직업훈련을 개시한 이후 2013. 12. 말 현재 3,581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3,613명이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석사학위 수준의 학력으로 평가받으며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기능장 자격을 2006년도 8명, 2007년도 2명, 2008년 4명(기술사 1명 포함), 2009년 8명, 2011년 2명, 2012년 4명, 2013년 4명이 취득함으로써 2000년부터 14년간 총 44명(기술사 2명 포함)의 기능장을 배출하였다.

〈표 20〉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506	2,693	2,740	2,856	2,803	2,813	2,953
기 술 사	-	1	-	-	-	-	-
기 능 장	2	3	8	-	2	4	4
기 사	5	3	2	4	4	-	11
산업기사	237	269	145	277	288	252	158
기 능 사	2,262	2,417	2,585	2,575	2,509	2,557	2,780

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직업훈련 수료 후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켜 2013년에는 95명이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였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은 <표 21>과 같다.

〈표 21〉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53	121	128	134	83	85	95
지방대회	136	112	118	118	71	72	84
전국대회	17	9	10	16	12	13	11

라. 직업훈련교사 신기술 습득

전국 교정기관의 모든 직업훈련교사들이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직종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훈련교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신지식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매년 2회(하계, 동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입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술과

선진교수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역 폴리텍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사회직업훈련기관을 정기적으로 참관하는 등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다.

제 7 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1. 개 요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은 국내 교정시설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장비의 성능 분석, 교정 환경에 적합한 장비 발굴,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2006년도에는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항교도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시범기관 운용결과 예산절감 등 효과가 탁월,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06. 10. 31. 제48차 국무회의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분 가량 동 안건으로 부처보고를 하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 38개 교정시설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성동구치소, 2011년 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 2012년 원주교도소 등 2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였다.

2. 추진배경

가. 인력에 의존한 교정시설 경비체계 개편

기존의 교정시설 외곽경비는 사람의 오감작용에 의한 인력 의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육안 등 오감에 의한 경비방식은 그 한계가 있어 빈틈없는 경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특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경비는 수용자의 도주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완벽한 경비체계가 요구되었다.

나. 경비교도대의 폐지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방의무를 수행할 군복무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경비교도대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어 2005년도부터 부대간 통·폐합이 진행되어오다 2012년 완전 폐지되어 교정시설 외곽경비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었다.

다. 다양한 첨단 장비의 개발

현대 첨단 과학은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일을 기계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경비체계도 과학 장비가 개발되어 과거 인력에 의한 감시보다 정밀하고 완벽하게 경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된 전자 과학 장비의 교정시설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교정시설은 사형수 등 각종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완벽한 시설보안이 요구된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도주사고 중 주벽을 통한 도주사고는 불과 4건에 불과하지만 다수인원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고, 감시대 근무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주벽에 대한 경계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외곽경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경비시스템은 내부 탈출은 물론 외부 침투 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감지 센서를 중복 설치하고, 정전 등의 장애에도 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센서와 연동되는 CCTV 카메라, 경고방송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중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고, 수용동 또는 공장에서 직원이 비상시에 즉시 중앙통제실에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 송신기를 지급하였다. 새로 설치된 장비들은 이미 소수의 인원으로 엄정한 시설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 교정시설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의 외곽 경비는 물론 각종 기기를 제어·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시스템은 주로 외곽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수용자의 거실에 대한 감시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4. 예산 및 인력절감 효과

본 사업은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교정시설의 경비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선진 교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향후 신축되는 교정시설에서도 감시대가 사라져 더욱 사회 친화적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예산 절감 효과

교정시설 외곽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의 외곽 경비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594명의 신규 교정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해소하였다.

한편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368억원, 운영비 4억 6천만원 등 약 37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경비교도대의 대체인력으로 교정공무원 594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연간 184억원의 경비지출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 내에 전자경비시스템 구축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탁월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 소요 비교

인력에 의한 경비	전자 장비에 의한 경비
• 대체인력(594명) 경비 : 184억원 - 인건비 : 178억원 - 기 타 : 6억원(피복비 등)	• 전자경비시스템 경비 : 373억원 - 시설비 : 368억원 - 운영비 : 4억 6천만원

나. 직원 근무환경 개선

직원 근무회피 장소인 감시대 근무를 전자경비로 대체해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통제구역 접근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중앙에 설치된 67인치 대형 모니터가 영상화면을 제공,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근무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제 8 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 운영

1. 개 요

최근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강화 및 처우의 향상으로 거실 출입횟수가 폭증함에 따라 수용자 동태관찰, 상담 업무와 같은 교도관 본연의 업무보다 입·출실 인원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과 수용처우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성동구치소 등 7개 이전대상기관, 특수기능 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 1개 시설 및 이미 구축된 6개의 신설기관을 제외한 36개 대상기관 중 1단계로 2008년 인천구치소를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한 이래 2013년까지 36개 기관의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창원교도소 등 3개 기관을 2015년까지 구축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2. 추진배경

그동안의 교정관련 정책은 거실·작업장 환경 개선 등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환경은 많이 개선된 반면, 교도관의 근무여건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 수용자의 인권의식이 강화되고 처우가 향상되면서 각종 고충처리, 운동, 접견, 교화활동 등을 위한 수용자의 거실 출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가령 미결수용동 근무자 1인이 통상 20여개 거실에 수십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일 평균 약 120회 가량 거실문을 개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자는 수용자 동태관찰 및 상담 업무와 같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용자의 입·출실 인원 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과 수용처우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출입문에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무자실에서 출입문 원격제어, 근무자실과 수용거실간 인터컴을 통한 통신망 구축 및 거실문 개·폐시 자동 영상확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과학 공법을 교정에 접목시키게 되었다.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가. 구성설비

이 시스템의 구성설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존 거실문에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근무자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제어하는 시스템과 거실 내부에 수용자와 통화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신시스템', 수용동 복도 거실문의 개폐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확인시스템', 근무자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모든 CCTV 카메라의 영상은 근무자실에서 실시간 녹화되며, 정전 등 비상상황 시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작동되어 약 30분간 전원을 공급,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운영방법

수용동 근무 직원은 먼저 보안과에서 거실 카드 Key와 제어반 Key를 가지고 근무자실에서 자기만의 패스워드로 시스템을 부팅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실문의 개방은 평상시 개별 제어를 원칙으로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는 원터치로 부분 또는 모든 거실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근무자실을 떠나 관찰 중 현장에서 거실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실로 다시 돌아와 개방할 필요 없이 지급된 RF카드(Radio Frequency card)방식의 거실 카드 Key를 자동 잠금장치에 가볍게 접촉하여 문을 개방할 수 있다. 감독자와 야간 순찰자 등에게는 모든 수용동의 거실문을 개방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 Key를 지급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예상 효과

이제 수용자들은 자신의 고충사항 등을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시로 인터컴을 통해 근무자와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도 수용자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용거실 출입문과 수용동 출입문도 근무자가 통제할 수 있어 원활하게 수용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무자들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많은 시간을 수용자 상담 및 관찰에 활용할 수 있어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예방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전 교정시설에 완료되면 좀 더 나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인력에 의존한 경비나 계호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현대 교정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8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 1 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13년 UN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3.2%에 이르는 2억 여명이 자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인적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해외관광객과 우수인재 유치, 외국자본 확보 등 이민정책을 통한 국익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13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5만 여명, 세계 170여 국가 국민에 이르는 등 이민자 유형과 국적의 다양화로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제조업 등의 분야에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내의 출산장려와 함께 국익을 고려한 선별적 해외 인력 유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 위주에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이민자의 유형이 다양화 됨에 따라 지원정책도 그간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과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 유형별로 최적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민자와 그 2세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기적응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화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효율적인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내·외국인간 문화차이와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 등 다문화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요구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선진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2013년 성과관리 전략목표를 '안전과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으로 정하고,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과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2대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증 및 체류제도 선진화, 국민이 안전한 외국인 체류관리,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및 국적신청자 등의 처우개선,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강화 등 8개 세부 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2013 인천실내무도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활동과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안내도우미 사업 지속 추진,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허가 본격 시행, MICE 관광객 전담지원팀 운영,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대상 확대및 발급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내 관광경쟁력 확보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이용 대상 확대 및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시행, 사회공헌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출입국우대서비스 시행 등 내·외국인에 대한 고품질의 출입국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의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출입국관리사무소 혼잡도 가중에 따른 민원인 대기시간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국내 생활안내 및 조기 적응 지원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에게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맞춤형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체류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도입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과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3년도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 관광객 일부와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기도래로 인한 불법체류 전락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단속에 대한 고용주와 외국인의 강력한 저항과 방해로 인한 부상사고와 인권침해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환경이 점점 열악해짐에 따라 그 동안의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소규모 불시단속 방식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가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단속체계로 개편하여 단속 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 유도에 중점을 두어 전년도에 비해 자진출국자가 17%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가동하고 허위초청, 신분세탁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사범과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에 기여하였다.

2. 재한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이민자가 보다 쉽게 국내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늘려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3년 8월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한 서울글로벌센터 등 11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278개의 운영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이민자의 교육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총 14,014명에 달하였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5년차를 맞아 외부전문가 등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기초, 초급 1·2, 중급 1·2 등 5종의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과정의 강사용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관계부처 장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과 많은 재한외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5. 20.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 걷기축제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지자체, 경찰청 등의 외국인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신규 결혼이민자 대상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관련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재한외국인의 조기적응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단기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바로잡고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 10. 공포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6일부터 결혼이민 비자 발급심사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사람과 이를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심사를 연계·강화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값지게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에게 무상 기술교육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였다. 귀화신청자의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대규모 귀화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응시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화신청을 접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장소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귀화필기시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화신청 접수와 동시에 시험일자 및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난민법 제정에 따른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난민전담부서(난민과)를 신설하였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19명을 추가 위촉하여 난민 통역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완공하고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제 2 항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제공

1. 환승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본격 시행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과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72시간 동안 그 공항 인접 지역(수도권, 영남권)을 관광할 수 있다.

동 제도는 2012. 10. 29. 부터 2013. 4. 30. 까지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국토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이민재단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3. 5. 1.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시범운영 이후 2013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 관광객은 총 88,126명으로 한국이민재단에서 2013. 7. 22. ~ 7. 31. 동안 환승관광객 2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순수 국내지출비용이 73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관광객 지출비용을 계산하면 약 648억(88,817명 × 73만원)에 이르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였다.

2.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안내도우미 사업 지속 운영

2011. 3.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문화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5개 기관과 '선진 출입국심사체계 구축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협약 이행 일부 내용 중 입국심사장 안내도우미 배치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시범 실시하여 해외 관광객 등의 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 입국자들의 입국신고서 작성을 도와주고 2012. 1. 1.부로 전면 시행된 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사전 안내를 담당하여 입국장 혼잡 완화 및 입국자들의 심사대기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교통·관광정보 등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한국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3년에도 인천공항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외국인 입국자 출입국수속 및 관광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였다

〈그림 1〉 인천공항 안내도우미 사업

3. 한-홍콩 양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프로그램 시행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은 2013.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의 입경사무처장이 홍콩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상호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2013. 12. 12. 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미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대면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한국과 홍콩을 왕래하는 여행객들의 출입국절차가 매우 편리해지게 되었다.

<한-홍콩 자동심사 상호 이용 MOU 체결>

2012. 6. 13.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홍콩간 방문객이 연간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을 통한 양국 공항 혼잡도 해소 및 출입국심사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국민의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등록절차

한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SES) 가입	⇨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e-Channel) 신청	⇨	조건부 승인	⇨	등록 완료 (지문·얼굴 정보 제공)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		홍콩 입경사무처		홍콩 공항

4.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Smart Entry Service)란 일반 국민이 사전에 지문(양손 검지)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줄을 서서 출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이고 출입국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출입국 심사시스템이다.

2008. 6. 26.부터 인천공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이용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3년 말 현재 등록자 157만명, 이용자 2,245만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제주공항 일시 방문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자유 이용 시범운영, 외국인투자·우수인력 유치 촉진과 국민의 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및 전문직 종사 외국인 외에 투자이민자, 항공기 승무원 등도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경우 그 이용 대상이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부모의 동의를 받은 14세 이상의 국민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등록자는 2013년 말 누계 기준으로 1,575,522명이 등록하고 22,451,505명이 이용하였으며, 2013년 일평균 1,296명이 등록하고 19,851명이 이용하였다. 2013년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인원은 724만 명으로 2012년 573만 명 대비 약 26.3%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는 총 출입국자의 약 13.2%(724만명/5,496만명)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11.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효과 등 신속하고 간편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자동 출입국심사대 등록자 및 이용자 추이

(단위 : 명)

연 도	계	2008년 (6.~1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등록자	1,575,522	38,601	89,379	144,555	389,396	440,532	473,059
이용자	22,451,505	834,915	1,943,676	2,637,979	4,054,231	5,734,952	7,245,752

※ 2013년 기준 일평균 등록자 1,296명, 일평균 이용자 19,851명

5.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서비스 8년 연속 세계 1위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1,700여개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사상 처음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세계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었으며, 출입국심사 부문 역시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위업을 달성하게 된 것은 그간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 승객사전정보 분석시스템 도입, 국민 및 등록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신고서 생략,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인 날인생략,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확대, 출입국 밀집시간대 심사대기 시간 증가 해소를 위한 이동 팀제 운영 등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친절한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이다.

국제공항협의회의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는 그 평가 결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년 세계공항 서비스평가(ASQ) 참가 공항이 증가하는 등 국가 간 무한경쟁체제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국 공항 시설과 서비스가 첨단화·현대화되는 등 점차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공항평가 주요 항목 중 출입국심사 부문 3개 항목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공항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심사인력 재배치, 입국심사장 안내도우미 제도 활용 등 해외 관광객의 입국심사 편의 제공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표 3〉 2013년도 출입국심사 부문 공항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평 가 항 목	2012년	2011년
출입국심사 부문 종합	1위 (4.817)	1위 (4.773)
출국심사 대기시간	1위 (4.87)	1위 (4.86)
출국심사 직원 친절도	2위 (4.79)*	1위 (4.74)
입국심사 평가	1위 (4.79)	1위 (4.72)

* 출국심사 직원 친절도 1위 : 싱가폴(4.80)

6. 사회공헌기업 종사자 등 출입국우대 서비스 시행

법무부에서는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회공헌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어 사회공헌자에 대한 법무행정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범죄피해자 지원 기업 등을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간 법무부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해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회공헌자 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 12월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 공로기업, 동반성장 공로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발급 되던 우대카드를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발급대상자 선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사회공헌자로 선정된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출입국시 전국 공항만에서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도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법질서 및 자발적인 사회 공헌 문화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MICE 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공

MICE* 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공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의 세부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위과제의 하나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MICE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만에 출입국편의 지원팀 및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원팀 등 전담지원팀 운영으로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과 체류 지원 등 출입국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 Meeting(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

2013. 5월 시범운영을 거쳐 2013. 10월 본격 시행하여 2013년 말까지 9,306명에게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다.

8.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신체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지적장애인(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속적 스포츠 훈련기회 제공으로 운동능력·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시킬 목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13. 1. 29.부터 2. 5.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7개 종목에 12,100여명이 참가하여 열린 대회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안전대책을 수립(2013. 1.)하고 2013. 1. 25.부터 2. 7.까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인천공항·춘천사무소에 출입국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전용출입국심사대 운영 등 참가자 출입국편의 제공, 대회 참가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절차 간소화,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2013 인천실내무도대회(2013. 6. 29. ~ 7. 6, 인천광역시 일원),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3. 8. 25. ~ 9. 1, 충주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2013. 10. 13. ~ 10. 17. 대구 EXCO), 제6차 국제선거기구회의 및 세계선거기구협회 창립총회(2013. 10. 14. ~ 10. 17. 인천 송도 컨벤시아·아이타워),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2013. 10. 14. ~ 10. 17. 제주 롯데호텔),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2013. 10. 17. ~ 10. 18. 서울 COEX) 등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행사 참가자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9. 출입국자 및 위변조여권 적발 현황

2013년도 출입국자 총 수는 지난 해의 50,322,102명보다 4,644,127명(9.2%) 증가한 54,966,229명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30,352,303명으로 전년도 28,136,628명보다 7.9%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출입국자도 중국인 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입국자를 앞질러 외국인 출입국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전년도 22,185,474명보다 10.9% 증가한 24,613,926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친절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 및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조치로 중국, 미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입국자 총수 가운데 국민과 외국인의 구성 비율은 국민이 30,352,303명(55.2%), 외국인이 24,613,926명(44.8%)으로 전년도의 구성 비율(55.9% : 44.1%)과 비교하면 국민은 0.7%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0.7% 증가했다.

〈그림 2〉 출입국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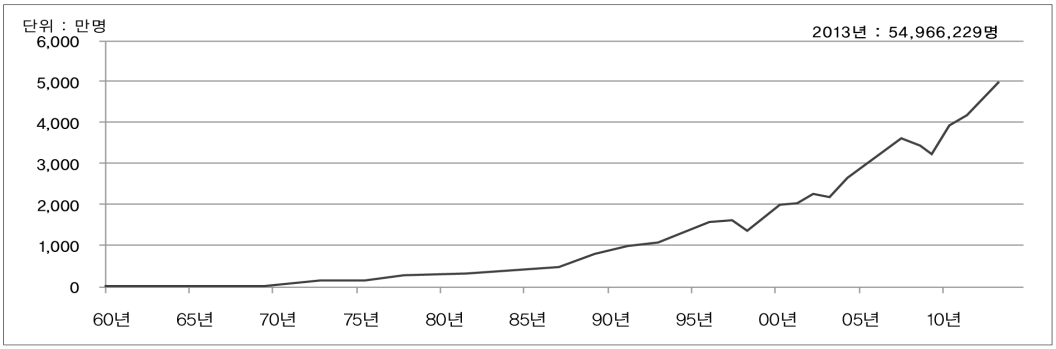

가. 외국인 입국자

2013년도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0,473명으로 전년 11,129,305명에 비해 9.6% 증가하였다.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10,678,334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392만명(36.7%), 일본 271만명(25.4%), 미국 74만명(7.0%), 타이완 56만명(5.3%) 순이다. 특히, 중국인은 2012년에

비해 43.6%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크루즈선 탑승객 관광상륙허가, 제주행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허가, 복수비자 등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조치 등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은 2012년에 비해 43.6% 증가한 반면 일본인은 22.4%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 입국자 12,200,473명(승무원 포함)을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886만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승무원이 152만명(12.5%), 취업은 45만명(4.3%), 재외동포 28만명(2.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민 출국자

내국인 출국자는 15,155,660명으로 2012년 14,065,176명 대비 7.8%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에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출국자는 13,834,472 명으로 2012년에 비해 8.1%(103만명)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5만명, 다음으로 40대(292만명), 50대(249만명) 순으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그림 3〉 주요국가 입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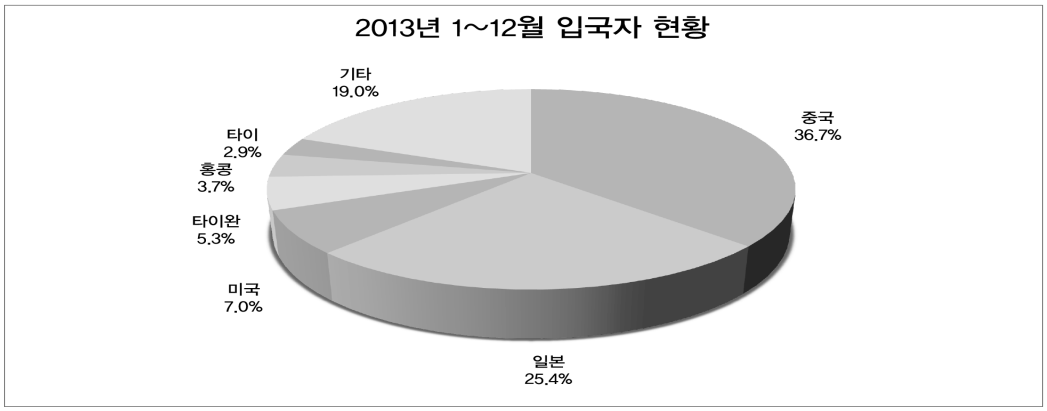

다. 위변조여권 적발 현황

2013년도 위변조여권 적발 건수는 총 4,1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6.7%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위변조 적발 건수는 세계 각국이 전자여권 등 신여권을 발급하면서 위조방지 보안요소를 강화함에 따라 여권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상의 한계가 있고, 출입국심사시스템의 과학화로 사진교체 등의 전통적인 위변조 방식이 쉽게 적발됨으로써 위변조 여권을 행사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10. 9월부터 우범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과거 국내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으로 다시 입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이 타인명의 여권을 행사하여 입국을 기도하는 사례 적발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012년 1월부터 지문 및 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타인명의 여권 적발 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위변조 적발 건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문 및 얼굴정보확인 제도를 통해 적발되던 타인명의 여권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결과이다.

여권의 위변조 유형별로는 타인명의 여권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89.9%), 다음으로 타인 여권, 위조제작, 사진교체 순으로 적발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날로 지능화·정교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여권 위변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신속·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파함은 물론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탑승자 분석, 각국 이민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표 4〉 여권 위변조 유형별 적발 현황

유형 / 연도	총 계	타 인 명 의	타 인 여 권	사 진 교 체	위 조 제 작	기 재 변조 등	기 타
2009	2,523	1,892	217	158	104	24	128
2010	3,289	2,720	147	125	107	29	161
2011	3,520	2,968	240	106	81	18	107
2012	5,703	5,152	226	48	143	34	100
2013	4,179	3,759	172	61	110	13	64

※ 타인명의 여권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국의 여권발급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의미함

제 3 항 해외 우수 인재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사증 체류 제도 선진화

1.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가.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도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휴넷코리아(HuNet Korea) 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 3월부터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의 전문인력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기존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대신 피초청자를 대리하여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의 비자

심사가 완료되면 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해당 외국인은 이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및 대학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어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2013. 9월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발급하는 동반(F-3) 자격까지 전자비자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2013. 12월까지 177명이 전자비자를 발급 받았다.

전자비자는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표적 비자간소화정책으로 향후 중소기업에도 우수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산업부 고용추천서(골드카드, 사이언스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 성실납세 외국인에 대한 거주(F-2) 자격 변경 우대

2010. 2월부터 외국인의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 5월부터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있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 전공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해당 평가항목 배점 시 우대를 하고 있다.

다.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체류편의 제공

(1) 외국인 유학생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2012. 3월부터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 관련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의 신청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전자민원의 대상 확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생활편익 증진 및 사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유학생 관련 각종 허가 및 신청 등의 대상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전자민원의 신청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유학생변동신고와 시간제취업관련 전자민원 신청 건수는 총 48,760건으로 2012년 대비 5.4%가 증가하였다.

유학생 전체 체류인원이 2013년 81,847명으로 2011년 대비 7.4%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학생 관련 전자민원의 증가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를 통한 전자민원 확대

2013. 8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서류 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사증 등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 인증을 받은 대학은 4년제 대학 42개, 전문대학 7개로 총 49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의 실시는 전자민원의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다수의 제출서류로 인해 전자민원 신청이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사증·체류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 활성화

가. 중국, 동남아 복수비자 대상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수년 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0. 8월부터 2012. 8월까지 중국 및 최근 신흥 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사증발급 대상 확대 및 간소화 조치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3. 7. 17. VIP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시 보고한 "중국 및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확대" 과제를 지침에 반영하고 중국관광객 수준의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국국민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지역 호구자, 211공정대학 졸업생에서 재학생으로 확대 등을 추가하였고, 동남아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연간소득 미화 1만불 이상에서 미화 8천불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3년 복수사증 발급 경험자에게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복수사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로 인한 불법취업 악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은 30일로 축소하여 복수사증 발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위한 단체사증발급 및 출입국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014.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민 중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및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단이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폭적인 사증발급 제도 개선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중국인 관광객 연도별 입국자수

(단위 : 명)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입국자수(명)	729,306	1,066,469	1,230,625	2,113,367	2,498,480
증가율(%)	↑25	↑46	↑15	↑71	↑18

나.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증제도 간소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9. 5. 1.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가능하도록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관광 사증의 발급 및 체류관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3. 9. 우수유치기관 13개를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3. 10. 의료관광 건전화를 위한 재외공관 모객업체 등록제를 중국, 베트남, 몽골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랍권의 간병인 입국 편의를 위하여 직계가족 외에 간병인의 입국을 허용하여 환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가족관계증빙서류의 경우에 주한대사관에서 발행한 문서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의료관광 및 양국간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러시아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여 2014. 1. 1.부터 러시아 국민의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 사증 발급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6〉 의료관광객 연도별 사증발급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료관광 사증발급(건)	1,552	3,469	8,509	15,229	25,839
증가율(%)	-	↑124	↑145	↑79	↑169

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1) '부동산투자 이민제' 기준금액 조정, 투자대상 확대 추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0. 2. 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 지역에 도입하였다.

이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지구(2011. 2. 14.), 전남 여수 경도지역 (2011. 8. 19.), 인천 영종지구 일부지역(2011. 11. 1.), 인천 송도 및 청라지구(2013. 5. 1.), 부산해운대 리조트 및 동부산광광단지(2013. 5. 20.)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도입 이후, 2013. 12. 현재 제주도 지역에 총 1,011건 6,783억원의 외자가 유치되었고, 인천 영종지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4천 5백억원의 휴양시설 개발 투자 관련 MOU를 체결하였고,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중국에서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1위 중국 건설사 SCCEC가 101층 리조트 착공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예치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지이민제'를 2013. 5. 27.부터 도입하여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3. 12월말 기준 총 3건에 13억원이 공익사업투자이민으로 투자되었다.

3. 정부 3.0 시대 고객중심형 체류관리방식으로 최적의 체류환경 조성

가. 다문화가족지원 맞춤형상담서비스 제공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08. 3. 국내체류 외국인에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20개 언어로 매년 300만콜 이상을 상담해 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출입국법령 관련 민원절차 등 안내기능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지원을 위해 2013. 5. 고객중심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내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몽골, 중국, 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출신 결혼이민자 상담원을 선발하여, 결혼초기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 전화를 직접 걸어 기초생활 안내부터 가정폭력 상담, 한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3. 12.까지 4,487건을 상담하였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해결하기 힘든 내용은 이주여성긴급전화,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나. 창업비자제도 도입

투자금은 없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 10. 창업비자를 도입하였다.

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에게 부여한다.

법무부는 창업 희망 외국인의 비자발급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신성장동력 분야에 해외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산된다.

다. 온라인 체류민원 신청시 수수료 인하

2013. 1. 1.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시스템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방문신청 시 민원수수료보다 10%를 감액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온라인 전자민원 수수료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민원을 활성화하여 민원창구 혼잡도 해소 및 서류업무 간소화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확대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자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취업 등에 대한 체류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신분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G-1) 체류관리지침 제정 시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1년 부여)하고, 구제절차 종료 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항 법과 원칙에 따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2013년은 새정부 출범 원년으로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과 지속적인 개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노력이 더욱 요구되었다.

2008. 8월말 22만2천여명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말 17만7천여명으로 3만9천여명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 등 개방확대와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으로 2012년부터 다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 환경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의 저항과 방해로 인한 부상사고와 인권침해 시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졌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단속 전담직원 증원 등 단속 인프라의 확충 없이 지금까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소규모 불시단속 방식을 유지할 경우, 단속과정 중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시비 등이 계속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2013년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참여하는 광역단속 방식으로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속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허위초청, 신분세탁, 위장결혼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관련 범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범죄 발생 예방에도 노력하였다.

2012. 9. 17.부터 11. 30.까지 실시한 바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과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등을 위해 2013. 7. 22. 부터 12. 31.까지 2차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 전락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불법체류 감소 정책추진 성과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8,763명과 불법고용주 5,495명 등 총 24,258명을 적발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계도 및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여 28,17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였으며, 허위초청, 신분세탁, 위장결혼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3,999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시킴으로써 당초 2013년 말 불법체류 외국인이 19만명선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3년말 183,106명으로 전년도 177,854명 대비 5,252명(3%) 증가에 그쳤다.

2. 불법고용 방지 계도활동 강화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프라 및 환경을 감안할 때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단속 패러다임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및 광역단속 방식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여 불법고용 수요를 감축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2013년 3월 단속체계 개편 이후 단속직원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관계인을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총 7,390회의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였고, 각 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를 위해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1개국 16명의 영사 및 노무관이 참석하는 「주한공관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기도래자의 자진출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당시 시행중이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에 해당국가 국민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관 홈페이지에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다각적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을 시행한 결과, 28,17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24,026명 대비 4,149명(17.3%)이 증가하였고, 고용허가제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단속체계 개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단속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사전계도 및 광역단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불법 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와 감소정책 추진은 법무부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하반기에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대책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은 5. 6.부터 6. 30.까지 2개월간 총 253명, 하반기에는 10. 7.부터 11. 30.까지 총 252명이 참여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사전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078명, 불법고용주 등 1,916명 총 8,9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8〉 정부합동단속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간	· 4.13.~ 6.12. ·10.12.~12.11.	·6. 7.~ 7. 6. ·8.23.~10.22.	11.1.~11.30.	5. 7.~6.30.	· 5. 6.~ 6.30. ·10. 7.~11.30.
참여인원	352	500	250	276	505
불법체류자	11,428	6,383	1,874	4,076	7,078
불법고용주	2,739	1,772	562	1,219	1,916

4.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지속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취업 등의 목적으로 불법입국 등의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허위초청, 불법입국 알선자 등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불법체류 감소 방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조사 전담반 구성, 이민조사관제도 확대운영, 기획조사 기법연구 등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13년도 기획조사 추진 실적은 허위초청 알선자 등 668건에 3,999명을 적발하여 그 중 16명 구속, 22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641명을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전년도 적발 인원 2,428명 비해 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획조사의 활성화에 따른 장비의 과학화와 기획조사 기법 연구 등으로 기획조사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신원불일치

위변조 사범과 유흥업소 불법취업 외국인, 허위초청 및 위장결혼 브로커 등 기획조사 전반에 걸쳐 실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획조사 활동으로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확인시스템으로 확인된 신원불일치 혐의자 188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141명을 적발, 강제퇴거조치 하였고, 유흥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퇴폐행위 마사지 업소 등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여성 239명과 고용주 96명 총 335명을 적발, 강제퇴거하거나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무자격 외국어강사의 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하계 방학기간 동안 성행하는 외국어 캠프 등을 집중단속하여 불법 외국어강사 68명, 고용주 등 19명을 적발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동향조사 기법연구 발표회, 권역별 동향조사요원 정례 회합을 통해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썼다.

주요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이민특수조사대는 테러단체가입 활동혐의 외국인, 신분세탁 살인범 등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인 우범외국인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 함으로써 국민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하였다.

〈표 9〉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위변조 여권	위장결혼	불법취업	기 타
2012년	569	143	81	81	264
2013년	668	119	90	122	337
전년대비(%)	117.4	83.2	111.1	150.6	127.6

5.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강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소규모의 단속직원으로 불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단속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사고와 인권침해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2013년에는 고용주와 외국인의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체계를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및 광역단속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초에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점검·단속과정·사후조치 등의 단계별로 세부적 유의사항을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에

명시하여 시달하는 등 단속업무 수행 중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보호외국인을 위하여 보호시설에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를 확충하고, 외국인 보호 전문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4개 기관에서는 전통문화체험, 건강관리 교육, 정서순화활동의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호외국인의 여가활동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보호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등 인권기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점검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고, 보호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호일시해제 청구가 있을 때 최종 확정판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도록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보호장기화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별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양성 위탁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매년 10명씩 국군의무사령부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보호실의 출입문을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한 자동개폐 방식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외국인보호소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체불임금 2,928건(약 52억원), 의료구호 1,109건,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910건, 기타 5,355건 등 보호인원의 절반에 이르는 총 10,302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6.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2013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01,760명이고, 이 중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7,698명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4,961명(5.1%)과 3,434명(14.2%)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식 전환에 따라 자진출국 불법체류자가 전년도에 비해 4,961(17.3%)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확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신원불일치 등록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어 출국하지 않는 등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2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거와 현재 국내 체류시 여권상 인적사항이 불일치한 사람들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였는 바, 이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위하여 2013. 7. 22.부터 12. 31.까지 2차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626명을 추가로 접수받아 출국명령하고 출국 후 6개월이 지나 자국에서 신원을 재확인 받아 입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출입국사범에 대한 엄정하면서도 인권친화적인 처리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구현과 개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10〉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천)		건	금액(천)	
2012	96,799	18,248	3,340	2,676	24,279	30,740,620	819	13,796	1,955,220	33,641
2013	101,760	18,268	5,655	3,775	25,148	31,614,430	1,234	10,189	1,391,510	37,491

※ 기타 : 처분면제 등

제 5 항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1.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추가 지정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사회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가 좀 더 쉽게 사회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늘려달라는 이민자 및 이민자 관련 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여가부와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2013년 8월 전국 공모를 통해 서울글로벌센터 등 11개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78개로 확대되어 이민자의 교육 접근성이 제고되었다.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추가 지정 등의 노력에 따라 참여인원도 증가하였다.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전년도 참여인원 12,444명에 비하여 12.6%가 증가한 총 14,014명에 달하였다.

체류자격별 참여인원을 보면, 전체 14,014명 중 결혼이민자는 8,572명으로 61.2%를 차지하였고, 일반이민자는 5,442명으로 38.8%를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전년보다 4%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 외국적동포 등 일반이민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적취득자에게 맞춰져 있는

교육과정도 영주권자용, 외국적동포용 등 이민자의 국내 정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1〉 연도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기관(개)	20	77	150	271	278
참여인원(명)	1,331	4,429	6,519	12,444	14,014

〈표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연도별·체류자격별)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8,737	1,331	4,429	6,519	12,444	14,014
결혼이민(F-6)	25,893 (67.7%)	846 (63.6%)	3,266 (73.7%)	4,971 (76.3%)	8,238 (66.2%)	8,572 (61.2%)
방문동거(F-1)	2,809	246	558	534	878	593
방문취업(H-2)	774	83	130	111	238	212
영 주(F-5)	431	90	125	33	66	117
유 학(D-2)	1,012	14	64	154	388	392
기업투자(D-8)	835	11	89	159	248	328
비전문취업(E-9)	2,839	19	44	148	1,356	1,272
기 타	4,144	22	153	409	1,032	2,528

〈그림 4〉 법무부장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방문 및 간담회

다. 이민자 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지정 추진과 함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이민자의 실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임신·출산, 장애, 격오지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강사와 이민자가 1:4로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2013년에 총 161명(2012년 97명)이 화상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회화강사 등 주간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야간반, 주말반 등 특수반을 추가로 개설함으로써 이민자의 편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교육과정 개편 및 한국어강사 역량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5년차를 맞아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에 마련한 한국어과정 교과과정 개편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 연구를 통해 한국어 기초, 초급1·2, 중급1·2 등 총 5종의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정 강사용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2년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국립국어원장이 체결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연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공동연수회를 개최하여 한국어강사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강의 역량강화를 꾀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한국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84.7%에 달하였다. 이는 2012년도 만족도 81.3%에 비해 1.8% 상승한 수치로,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대상의 확대와 이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기존의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귀화심사 대기시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시 가점부여, 일반 영주자격(F-5-1)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제출 면제,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외국인 자녀의 영주자격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외에 일반귀화대상자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2. 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가.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확대 실시

법무부는 2009년 7월부터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90일 이내) 시 한국생활 기초정보, 체류기간 연장·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절차, 상대방 국가 문화이해 교육 등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입국 초기 정착과정에서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최초 외국인등록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14:00~17:00)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산, 천안, 구미출장소에서도 참여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월 1회씩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교육시간을 기존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검찰,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이 우수하고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선배 결혼이민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낯선 환경에서의 말벗역할과 가정에서의 갈등 등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는 2009년 1,435명, 2010년 3,362명, 2011년 4,720명, 2012년 4,335명, 2013년 6,4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272명이 참여하였다.

나.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확대

네트워크를 통한 이민자간 인적교류와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고, 유대강화 및 자조 모임 활성화를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하였다.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등 일반이민자로 확대하고, 이민자 지원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교양아카데미 개설, 문화교류, 어울림행사 추진을 통해 2013년도에 총 7,221명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국가별로 결혼이민자 대표자 총 332명을 지정하고 국내 정착에 성공한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116명을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결혼이민자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사랑방 등에 결혼이민자 연간 10,703명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통역 및 민원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초청, 국적, 체류 등 총 15,680건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였다.

다.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 걷기축제

2013. 10. 13. 오전 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제3회 한마음 걷기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서 24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도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법무부와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약 3,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고충상담·건강검진·치과진료 등에 대한 상담을 함께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호응이 컸다.

또한, 고충상담과 함께 실시된 한마음 걷기 축제에는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고국에 편지보내기, 내외국인 줄다리기, 타악공연 등의 행사도 마련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표 13〉 2013년도 정부합동고충상담 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계(건)	고충상담	건강캠프	기타
인원	3,799	124	375	3,300

〈그림 5〉 정부합동상담 및 제3회 한마음 걷기축제

3.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다문화 사회 인식 함양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민정책 이해과정은 법무연수원에서 3박 4일, 28시간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나라 이민제도, 이민정책 동향 및 다문화사회 이해, 출입국관련 법령, 재한외국인 체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는 연 2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공무원, 경찰청 외사공무원 등 총 5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76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이민자 대상 생활법률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총 2,396명의 이민자가 참여하였다.

나. 제6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2013. 5. 20.(월) 10:30~12:00 과천시 소재 '과천시민회관'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대사 8명, 총영사 1명, 영사 20명), 재한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악플사례를 접하고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우리사회의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결혼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대표와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7명, 법무장관 표창 7명 등 총 16명이 사회통합 유공표창을 수상 하였다. 또한, 법무부·안전행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상 3명 등 총 24명이 수상을 하였다.

세계인 주간(5. 20. ~ 5. 26.)에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는 6개 권역별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마련하고, 4개 권역별로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7회에 걸쳐 "릴레이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세계인의 날은 2007. 5. 17.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지정된 국가기념일로서,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5. 20.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호주의 '하모니 데이'(3. 21.), 캐나다의 '다문화의 날'(6. 27.) 행사 등 유사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림 6〉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4.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지원

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법무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2013년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자는 전년도 이수자 14,127명보다 17.1% 감소한 11,706명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4,923명(42.1%), 비수도권 6,783명(57.9%)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339명(54.2%)으로 가장 많고, 30대 2,655명(22.7%), 50대 1,978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50대 비율이 감소하고 30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309명(45.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영업자 2,182명(18.6%), 전문직 899명(7.7%)로 나타났으며, 농업종사자는 835명(7.1%)에 불과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용직·무직·파산자는 2,027명(17.3%)으로 나타났다.

나. 결혼이민 사증 심사기준 개선

단기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 10. 10. 공포하였다.

강화된 사증발급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하고,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고,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하고,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4. 1. 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 불법 결혼중개업체 근절을 위한 결혼이민 사증 심사 강화

2013. 8. 2.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되어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 11. 6.부터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심사를 연계·강화하고 사증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더라도 결혼이민사증을 받기 위해 교제경위를 조작하는 등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는 사증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알선한 결혼중개업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취소, 향후 3년간 중개업체 운영이나 종사가 금지된다.

〈표 14〉 2013년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1,706	246	2,655	6,339	1,978	436	52
	2.1%	22.7%	54.2%	16.9%	3.7%	0.4%

□ **사무소별**

(단위 : 명)

합계	서울	인천	수원	양주	부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울산
11,706	2,357	929	1,237	400	852	236	1,227	769	287	909	675	363	503	663	299
	수도권 4,923 (42.1%)				기타 6,783 (57.9%)										

제 6 항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1.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현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157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재외동포가 약 38%인 60만 명에 이르고 재외동포 중에서도 중국 동포가 약 85%인 51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4만 5천여 명, 캐나다가 1만 3천여 명, 기타 국가 순이다. 이와 같이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국적 동포의 비중이 1/3을 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재외동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 3.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그간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동포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자유왕래와 단순 노무분야 등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국동포의 국내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2008. 1.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을 중국 및 구소련권 동포들로 확대함에 따라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보장에 기여하였다.

〈표 15〉 국적별 재외동포 체류현황

(2013. 12. 단위 : 명)

합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호 주	기 타
602,226	512,120	45,253	13,586	3,955	27,312

재외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24만 여명, 재외동포(F-4) 자격은 23만 5천여 명, 영주(F-5) 자격은 6만 5천여 명, 방문동거(F-1)자격은 1만 7천여 명 등 총 60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체류자 중 방문취업 자격 소지 동포가 약 40%, 재외동포 자격 소지 동포가 3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체류자격별 재외동포 체류현황

(2013. 12. 단위 : 명)

합 계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 타
601,959	240,178	235,953	65,699	17,011	43,118

2. 방문취업(H-2) 제도의 안정적 관리

세계경제의 불황 여파로 인해 국내 고용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보다는 내국인 일자리 안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면서 외국인력 도입 인원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인원은 2012년에는 비전문취업(E-9) 57,000명, 2013년에는 일반외국인(E-9) 53,000명을 도입하였으나,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30만 3천 명 내에 체류인원 총량제로 관리하도록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에서 결정하였다.

〈표 1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인원 결정 내역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합 계	34,000	34,000	48,000	57,000	53,000
비전문취업(E-9)	17,000	34,000	48,000	57,000	53,000
방문취업(H-2)	17,000	-	-	-	-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문취업제로 입국하고자 한국어 시험에 합격 후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무연고 외국국적 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포사회에서 불만이 점증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일환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취업 전 숙련공으로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 귀국 시 선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를 마련하여 2010. 7. 12. 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교육 기간이 장기간이고 비용과다 및 우회적 취업이라는 일부 부처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1. 6.부터 2개월간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2011. 8. 1.부터 기술교육 기간을 9개월 주말교육을 6개월 주말교육으로 개선하였고, 2012년부터는 동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6주 주중교육으로 기술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 대리응시, 비용과다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 간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취업 체류인원 총량규모(30만 3천명)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국동포의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 신규입국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 방문취업·기술교육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누구나 인터넷(www.hikorea.go.kr)을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 6. 20.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3만명 및 방문취업대상자 4만명을 선발하였으며, 2013. 12. 20.에는 2014년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0,000명,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0,000명을 선발,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방문취업 제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가.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2011. 8.부터 인력부족률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동 분야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함으로써 2011년 말 기준 약 75,777여 명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는 등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출입국 편의와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2. 4. 16.부터는 제조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못한 동포들 중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건설업 제외)을 취득자, 2013. 9. 1.부터는 만 60세 이상의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말 현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국가의 동포수가 16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국적신청 편중현상의 합리적 분산, 동포 자본 유치 및 기타 동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고액 투자자·교역실적 우수자 및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 2010년 19,405명에 불과한 영주자격 소지자가 2011년 말 기준 36,162명, 2012년 말에는 49,920명, 2013년 말에는 65,699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동포들의 체류편의 및 법적지위 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18〉 재외동포(F-4) 자격 중국·CIS 국적 동포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5,143	33,391	75,777	123,431	168,036
중 국	4,949	32,222	72,870	116,988	159,324
CIS	194	1,169	2,907	6,443	8,712

제 7 항 국적 및 난민업무 개선

1. 복수국적자의 증가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국적법 효과 가시화

법무부는 2010. 5. 4. 외국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영주귀국 고령동포 등 일정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적법'을 공포하였다. 이는 종전의 경직된 단일국적주의에서 탈피하여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이로써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우수인재 유치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함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게 되었다.

가. 복수국적자의 증가

개정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외에 해외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해외 입양인, 65세 이상 고령동포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의 영향으로 2013. 12월말 현재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17,446명, 혼인귀화자가 16,301명, 고령동포 3,660명 등 복수국적자가 40,442명에 이르러 2012. 12월 말 26,846명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및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단일 국적주의는 국민 인구 역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우수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국적자동상실제를 폐지하고 국외에서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10,391명으로 우리국적을 선택한 1,342명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2011년부터 2013년 동안은 국적이탈자 2,824명 대비 국적선택자가 3,886명으로 역전되었고 우리 국적 선택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2013. 12월 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28명, 체육분야 8명, 첨단기술분야 4명, 경영・무역분야 2명, 문화・예술분야 4명 등 총 46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공상정'선수(쇼트트랙)와 '브락 라던스키, 브라이언 영, 마이클 스위프트'선수(아이스하키)는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해외 우수인재의 국적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정 국적법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2. 국적업무 제도개선

가. 복수국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010. 5. 4. 국적법 개정으로 우수인재, 65세 이상 고령동포 등에 대한 복수국적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인재 확보 및 국민 순유출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미국 등지의 동포사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하향, 우수인재 허용기준의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회의의 결과를 수렴하여 고령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해외동포에게 문호를 확대, 미래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여 동포에 대해서는 현행 우수인재 기준의 1/2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동포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 귀화필기시험 실시 장소 확대

귀화필기시험 대상자들의 심사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2008. 9월부터 매년 수도권 학교시설 1개소를 임차하여 년 3~4회 대규모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필기시험 대기기간을 2009년 24개월에서 2012년 9개월로 단축하였으나, 시험일정 예측 가능성 부재로 인한 결시자 속출, 지방 거주 응시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 등 귀화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귀화필기시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는 귀화신청 접수와 동시에 시험장소와 시험일자를 확정·고지하고 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17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귀화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귀화신청자에 대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시행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본국에서 죄를 범한 자가 형벌권 회피 수단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귀화신청자의 기존 우리사회 구성원·질서와의 조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양질의 국민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 12. 2.부터 귀화신청자에 대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신청서류 외에 본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 등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3. 국적업무 처리현황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3년만인 2011. 1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3년 말까지 총 135,814명에 이른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336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5,844명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귀화허가 유형별로 살펴 보면 2013년 전체 귀화자 중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한 혼인귀화가 80%에 해당하는 9,021명이며,

특별귀화자가 16.2%에 해당하는 1,822명이다. 특히 2013년도에는 개정 국적법에 신설된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7명이었다.

또한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필기시험을 매 회당 3천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하였으며, 시험대상자 9,701명 중 65.9%에 해당하는 6,389명이 응시하였고, 응시자 중 68.4% (4,370명)가 합격하였다.

국적회복자는 2008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2011년부터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의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1년 2,265명, 2012년 1,987명, 2013년 2,686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한편, 그동안 복수국적자로서 우리국적을 이탈하는 사람이 우리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국적 선택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비율이 역전되어 우리 국적 이탈 대비 선택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9〉 국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 계	귀 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이탈	기 타
2009년	49,820	25,044	1,712	21,136	170	886	872
2010년	41,797	16,312	1,011	22,131	766	734	843
2011년	44,089	16,090	2,265	21,473	1,538	1,324	1,399
2012년	33,214	10,541	1,987	17,642	1,218	823	1,003
2013년	35,733	11,270	2,686	19,413	1,130	677	557

〈표 20〉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 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혼인귀화	기 타	
2009년	25,044	56	17,141	407	7,440
2010년	16,312	154	10,271	181	5,706
2011년	16,090	130	10,733	388	4,839
2012년	10,541	103	7,733	184	2,521
2013년	11,270	133	9,021	294	1,822

〈표 21〉 2013년 대규모 귀화시험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차	일 자	대상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율	합격률
1	2013. 5. 25	3,418	2,484	1,889	72.7%	76%
2	2013. 7. 13	3,136	2,262	1,648	72.1%	72.9%
3	2013. 8. 31	3,147	1,643	833	52.2%	50.7%
합계	-	9,701	6,389	4,370	65.9%	68.4%

4. 난민법 제정에 따른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가.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되지 않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인정절차의 선진화 및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2009. 5. 25. 황우여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2009. 11.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심의를 거쳐 2011. 6. 12. 심의 및 재심의 의결하여 2011. 12. 29. 국회 본회의에서 '난민법'으로 수정·의결되어 2012. 2. 10. 제정·

공포되었으며, 난민법 시행일은 조직과 예산 확보, 시설 확충 등을 위해 2013. 7. 1.로 정해졌다.

난민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난민, 난민신청자, 재정착 희망난민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였다. 특히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체류 보장 및 생계지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면접의 녹음·녹화제도, 변호인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역지원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난민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민이의신청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난민조사관제를 운영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난민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등 난민협약상의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난민신청자에게는 취업허가, 생계비, 주거시설,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난민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난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학계, 유엔난민기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민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에 난민전담 부서(난민과) 분리·신설(2013. 6. 12.), 난민심사관 지정,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2013. 11. 1. 개청)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한 난민심사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나.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 구축

2013. 7. 1.부터 시행된 난민법 상 난민면접 과정 등에 통역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특수언어에 대한 통역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난민신청자의 국적 및 사유가 복잡·다양화되고 있고 신청인의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정확한 통역 및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통역지원서비스가 절실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UNHCR, 재단법인 동천과 통역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난민전문통역인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중점추진정책과제로 선정하여 2012년 2월 난민전문통역제도 운영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2012. 2. 29.부터 3. 8.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5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여 3. 12. 20개 언어권 총 80명을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그후, 면접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4. 20.~ 21.과 27.~ 28. 2차례에 걸쳐 유엔난민기구,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난민인정절차, 법률용어, 통역실습, 통역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국어와 영어로 실시하여 최종 18개 언어 구사능력자 총 64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2013. 7. 1. 난민법 시행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게 되어 지방사무소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수요가 늘었으며, 이에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과 우르드어, 네팔어 등 특수언어 가능자 18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2013. 12. 27. 추가 위촉하였다.

향후,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통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통역의 기술, 질, 정확도, 완성도, 한국어능력 등을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림 7〉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및 위촉식 행사

〈표 22〉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현황

○ 언어별 인원(총 82명)
- 영어 19, 중국어 9, 프랑스어 6, 러시아어 4, 벵골어 4, 우르두어 8, 미얀마어 3, 스와힐리어 3, 친어 3, 우즈베크어 2, 키르기스어 2, 싱할라어 2, 네팔어 6, 타밀어 1, 풀라어 1, 아랍어 및 쿠르드어 5, 이란어 1, 소말리아어 1, 암할릭어 1, 캄보디아어 1

○ 국적별 인원 (총 15개 국적)
- 한국 54(귀화 15), 미얀마 4, 파키스탄 4, 중국 4, 키르기스스탄 2, 스리랑카 2, 우즈베키스탄 1, 방글라데시 1, 인도 1, 네팔 4, 감비아 1, 시리아 1, 소말리아 1, 미국 1, 에티오피아 1

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설립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심사기간이 보통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이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우리사회에 정착해야 할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 지원체계가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난민심사 중인 난민신청자에게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예정인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어·컴퓨터 교육, 직업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난민지원시설은 2009. 12. 접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수단인 공항철도가 인근에 있고,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서게 될 영종도 정부기관단지 내 부지(인천시 중구 운북동 933-22번지)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1. 3.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건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해 6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3. 8. 8. 준공하였다. 2013. 8. 14.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2013. 8. 2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준공보고서를 제출, 서울지방항공청의 준공확인 실태점검을 거쳐 2013. 9. 6.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받고, 2013. 9. 10. 인천시 중구청 건축물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건축 관련 절차를 마쳤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본관·교육관·생활관 등 3개동으로 이루어지고 적정인원 82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건립으로 난민신청자는 생계 등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난민인정자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취업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한 노력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소통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2013. 7. 18.) 및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2013. 8. 13.)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3. 9. 11.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실무협의를 거쳐 2013. 10. 31.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 12. 24.까지 4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소통 방안의 일환으로, 청사관리원, 방호원, 운전원, 전기원, 영양사, 조리원 등 총 14명의 기간제 직원과 청소원 3명 등 총 17명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리인력으로 우선 채용하였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생필품 등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 변호사 특채 사무관, 공익법무관의 재능기부로 영종 소재 초등학생 대상 30여명을 대상으로 2013. 10. 22.부터 2013. 11. 19.까지 '영종 국제 어린이 로스쿨'을 운영하였다.

향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어린이 토요 운동교실'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치안불안 우려 및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관할 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그림 8〉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조감도

마. 난민업무 처리 현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말까지 총 6,643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377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177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난민신청자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3~4년간 난민신청자는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 2013년 1,574명으로 난민신청 1,000명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난민인정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난민인정자는 276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 377명의 73%에 이르렀다.

2013년 한 해 난민신청자는 총 1,574명으로, 이를 국적별로 보면 시리아 295명, 파키스탄 275명, 나이지리아 207명, 기타 797명 순이다.

2013년에는 난민신청자 중 917명에 대한 심사결정을 완료하여 5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자국 내 인권상황 등을 고려하여 6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2013년 말 현재 난민신청자 1,990명에 대한 난민심사가 진행중이다.

〈표 23〉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미얀마	방글라데 시	콩 고 민주(공)	에 티 오피아	이 란	파키스탄	카메룬	기 타
2013년	57	19	10	1	3	-	9	2	13
누 계*	377	149	75	28	22	13	11	10	69

*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말까지 난민지위 부여자 투계

〈표 24〉 연도별 난민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합계	'94~'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난민 신청	6,643	251	148	410	278	717	364	324	423	1,011	1,143	1,574
난민 인정	377	14	18	9	11	13	36	70	47	42	60	57
인도적 체류허가	177	13	1	13	13	9	14	22	35	20	31	6

제 8 항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발급 시에도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사실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3년 10월 10일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대하여도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개정 법령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고엽제 휴유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앞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무료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약 81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외국인등록증 직접 배송체계 시범 운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받은 관할사무소는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택배를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배송받을 수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하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에 따른 시간낭비와 다단계 배송에 따른 발급

기간 지연으로 국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민간택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외국인등록증 분실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민간 배송업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배송하던 것을, 한국조폐공사에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경유함이 없이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개선하여 2013년 7월 2일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외국인등록증 배송체계 구축으로 배송기간이 단축되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신원확인이 불편했던 등록외국인에게 국내 체류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간택배를 이용하는 대신에 우체국의 등기우편을 이용함으로써 출입국행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향상되었다.

또한,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등록증 수령만을 위한 민원인의 방문이 필요없게 되어 민원실 혼잡도가 완화됨으로써 다른 용무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세심한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2014년 전국 주요사무소 실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지속하여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새로운 배송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9〉 외국인등록증 배송체계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 배송단계 : 2단계 배송 조폐공사 ⇨ 관할 사무소 ⇨ 신청인 ▪ 배송수단 : 민간 배송업체 이용	▪ 배송단계 : one step 배송 조폐공사 ⇨ 신청인 ▪ 배송수단 : 우체국 등기우편 이용

3.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무부와 외교부 간 사증업무시스템 이원화로 발생하는 사증 발급 지연 등 각종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사증발급을 위한 사증정보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2011년 감사원의 재외공관 특별감사에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의 사증업무시스템의 통합을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 간 사증업무시스템 통합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3년에 외교부 영사민원시스템 중 사증업무 부분과 법무부의 사증업무를 통합한 사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신청자 여권정보 확인을 위해 주요 재외공관에 전자여권판독기 100대를 시범 보급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2014년에 사증관련 대외서비스를 강화하고 재외공관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온라인 사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재외공관에 전자여권판독기 20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내용의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온라인 사증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사증업무 부담이 완화되어 사증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증 신청을 위한 민원인의 재외공관 방문 회수를 최소화하여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온라인 사증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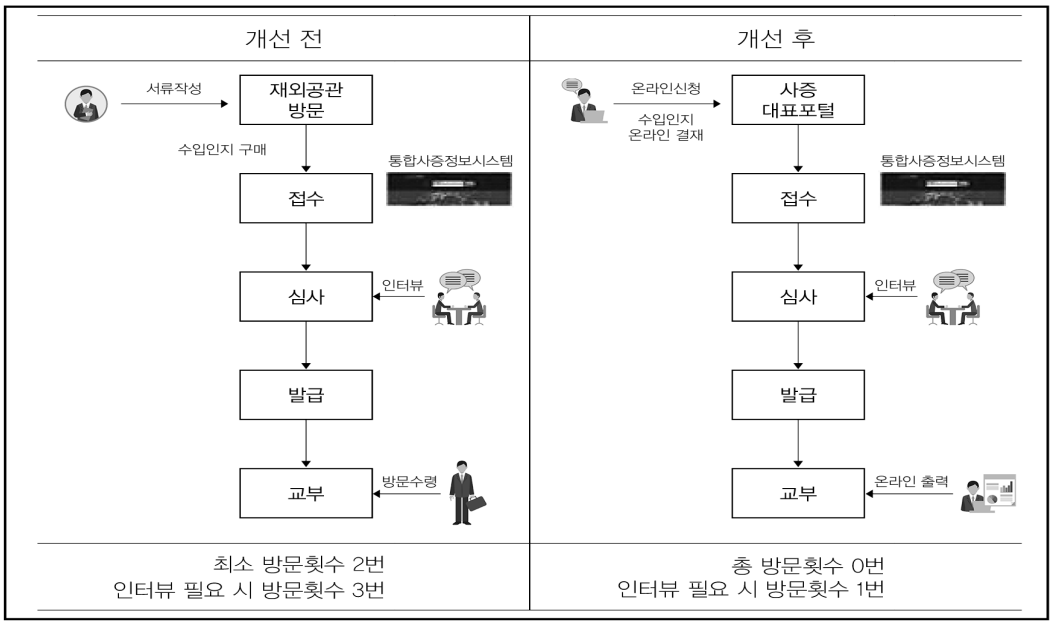

제 9 항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1.「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2013년은「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시행한 첫 해로서, 동 기본계획에 따른「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여 2013. 5. 24.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또한,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에서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및 투자이민 제도 확대 시행 등을 9대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은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를 신설하는 등 신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중앙부처 194개 과제(예산 4,983억원)와 지방자치단체 948개 과제(예산 2,919억원)로 총 1,142개 과제(예산 7,902억원)로 구성되었다. 또한, 2012년도에 비해 100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대폭 발굴하였다.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은 핵심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 크루즈관광·의료관광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관광 유치 확대를 강화하고,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중된 정부시책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5대 정책목표별 추진과제로서는 ①[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 편의 제공, 온라인 비자발급, 채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등 150개 과제(3,901억원)를 설정하였다.

②[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회통합기금 설치,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설치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등 570개 과제(1,542억원)를 설정하였다.

③[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등 325개 과제(615억원)를 설정하였다.

④[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문제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홍보,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고용이 어려운 환경 조성 등 49개(136억원) 과제를 설정하였다.

⑤[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훈련 및 구직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을 통한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 지원,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운영 및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추진 등 48개 과제(1,706억원)를 설정하였다.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경우 5대 정책목표별로 추진과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추진과제의 절반이상이 '통합'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자체의 사회통합 과제 비율이 80%에서 2013년에는 55%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자체 시행계획 과제가 정책목표 '통합'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민자 지원시책 중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혜대상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방적인 시혜적 사업보다는 이민자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이민정책의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국제협력강화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 되어 2013년 기준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5천 4백만 명을 넘었고, 2013년 말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도 약 157만 명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해 이민당국간 국제이민 협력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아시아·유럽 이민국장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등 관련 그룹회의에 실무직원을 파견하여 불법 입국 기도자 예방 및 위조여권 행사자 입국차단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UN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불법이민방지에 관한 워킹그룹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지역간 다자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등 주요 인접국가 이민 당국과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양자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였으며, 또한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국제이민협력을 통한 밀입국·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제 동향파악을 위해 다자간 국제회의체에 적극 참여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 다양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해외 이민당국의 초국가적 범죄대처방안 등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3. 1월부터 12월까지 ①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② 제37차 OECD 이주작업반 회의 ③ 제64차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④ 제2차 UN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불법이민방지에 관한 워킹 그룹 회의 ⑤ 제21회 국제국경관리회의 ⑥ 제103차 국제이주기구(IOM) 회의 ⑦ 제12차 ASEM 이민국장회의 등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2013. 10. 3.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 이민과 개발관련 국제회의에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 ① 1960-70년대 전형적인 이민송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민유입국으로 전환된 한국 이민의 특수성 소개 ② 2007년「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정 및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이민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해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이주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2013년에는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우리 교민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과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고위급 양자 회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2. 4. 21.부터 4. 27. 기간 동안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20개국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0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 다자협력체계 구축,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결정사항 및 긴급한 협력사항이 즉시 각국 실무진들에게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즉각 반응체계(IRS : Instant Response System)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특히 이민정책전문가회의의 경우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홍콩, 네델란드, 이탈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일본, 필리핀, 영국, 덴마크, 독일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

2013년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에서 개최된 양자간 주요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 의제와 내용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 홍콩 고위급회의(2013. 3. 19. 서울)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Eric Chan 홍콩 입경사무처장을 초청, 한·홍콩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한-홍콩 양국 국민의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간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환승 범죄 등 초국경범죄 방지를 위해 양국 주요 공항에 이민연락관 상호파견 문제를 논의하였고, 양국 직원 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직원 교환연수 확대시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 한-중 고위급회의(2013. 9. 2. 서울)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중국 공안부 출입경관리국 Zhang Wei Hang 정치위원을 초청하여 한-중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 내에서 취업을 희망해도 출입경에서 '경력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와 같이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을 원할 경우 별도의 경력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장위항 정치위원으로부터 한국정부에서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는 취업 요건에 준하여 중국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한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중국 국민의 입국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중국 역시 이번 복수비자 발급확대 정책에 준하여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장위항 정치위원은 호혜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도 중국 입국시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확대정책을 관계부서인 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3) 한-러 고위급회의(2013. 9. 9. 서울)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러시아 이민청장 Romodanovskiy Konstantin를 초청하여 한-러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러 단기사증발급 간소화 협정(2010. 1. 9. 발효) 내용 중「제3국 이동 중 기상악화 등 사유로 러시아에 비상착륙시 최대 72시간 무사증체류 허용」등 세부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간소화 협정 내용 이행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러시아 이민청장으로부터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한·러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이민 당국간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한-러 출입국 관리공무원 상호직원 교환연수 등 상호교류 활성화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4) 한-몽 고위급회의(2013. 11. 22. 서울)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몽골 외국인관리청장 Bukhchuluun Purevdorj를 초청하여 한-몽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를 가졌다. 동 회의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국내투자 외국인에 대해 투자금액과 국민 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장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기업인의 경우 체류기간을 1년씩만 부여하여 사업상 장기 체류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매년 체류기간을 갱신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몽골 외국인 관리청장으로부터 "한국측 입장을 존중하여 몽골 체류 한국 기업인들이 최장 3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2014년 3월부터 시행하겠으며, 추후 5년까지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법 률
제 3 절 대 통 령 령
제 4 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제 1 절 개 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법률
2004	42	11	3	4	4	31	7	11	13	-
2005	44	7	2	3	2	37	12	8	17	-
2006	46	8	2	3	3	38	6	13	19	-
2007	68	13	7	5	1	55	18	18	19	-
2008	88	16	3	7	6	61	15	22	24	11
2009	73	15	6	6	3	56	15	19	22	2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제 2 절 법 률

제 1 항 제정 법률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 제정배경

○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각 권한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또는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년후견 등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경 과

2012. 10. 23. 국회제출
2013. 3. 5. 국회통과
2013. 4. 5. 법률 제11732호로 공포
2013.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후견등기의 관할(안 제4조)
- 후견등기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견의 개시, 후견인 선임·해임 등 후견에 관한 심판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후견심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후견등기 사무까지 관할하도록 함

○ 후견등기사무의 처리(안 제8조)
-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후견등기관 등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등기사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식별부호를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신분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를 통해 후견등기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후견등기부(안 제11조)
-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각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도록 함
- 등기부 편성의 기본단위에 관한 원칙으로 후견등기부를 사람별로 작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등록

번호 부여 등 실무상의 필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거래 안전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등과 그 배우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되, 발급청구권자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와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생활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함

○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안 제25조 및 제26조)

- 개정 「민법」은 법원이 성년후견인 등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등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본인과 성년후견인 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는 사항과 같이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후견제도에 따른 공시의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함
-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하여 후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보호와 거래 안전의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함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안 제41조)

-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벌칙(안 제42조)

-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제공받은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

제 2 항 개정 법률

1. 가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訴訟救助)와 같이 가사비송 절차에서도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절차구조(簡次救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2. 10. 23. 국회제출
2013. 3. 5. 국회통과
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공포
2013.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개정「민법」의 내용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 사건 대신 성년후견 등의 각 심판 사건을 가사비송(家事非訟)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정「민법」에서 폐지된 친족회 관련 사건을 가사비송 사건에서 삭제함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이를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절차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 절차구조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절차비용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독거노인 등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성년후견 등 사건의 관할(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 후견 개시 심판 시 정신상태의 감정(안 제45조의2 신설)
-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행위능력과 재산관리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후견 관련 각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의견 청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 후견 관련 각 심판별로 법관이 진술이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정하고, 특히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행위능력 및 재산관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후견 개시와 종료의 심판 시에는 법관이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직접 심문하도록 함
- 후견 관련 각 심판에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후견사무의 감독(안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 신설)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조사관 등에게 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가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하고 입양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4. 16. 국회제출

2013. 6. 27. 국회통과

2013. 7. 30. 법률 제11949호로 공포

2013. 7.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개정 「민법」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심판 사건을 가사비송(家事非訟)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규정함

○ 입양허가의 절차 등(안 제45조의8 신설)

-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의 동기와 그 밖의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양허가 심판에서 절차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審理)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양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 제도를 도입하고, 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의 창설허가 재판 등의 심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4. 16. 국회제출
2013. 6. 27. 국회통과
2013. 7. 30. 법률 제11950호로 공포
2013. 7.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출생·혼인 등의 신고 시 무능력자의 명확화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혼인 등의 각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 입양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62조 등)
-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안 제79조제2항)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그 지정·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의무 도입(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 신설)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 제도 중 미성년후견을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후견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후견 관련 신고를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로 개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개시·경질·종료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재판 등을 위한 심리 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96조제6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4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2항 신설)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공증인법

가. 추진배경

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 추진

나. 추진경과

2013. 4. 29. 국회 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결
2013. 4. 30.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2013. 5. 28. 법률 제11823호로 공포
2013. 11. 29. 시행

다. 주요내용

강제집행 권원이 되는 집행증서의 대상을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청구로 확대하고,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집행문을 부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선서인증 시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5. 부동산등기법

가. 추진배경

'10. 2.「신탁법」전면개정안 국회제출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2013. 4. 30. 국회 의결

2013. 5. 28. 법률 제11826호로 공포

2013. 8. 29. 시행

다. 주요내용

○ 신탁등기의 신청시 편의성 증대

- 현행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등기를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토록 변경
-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신탁법」에 따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신탁등기"는 권리이전 등 효과와 무관한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진정성을 해할 우려 적음

○ 신탁등기 사항을 신탁법 개정안에 맞게 추가

-「신탁법」개정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등기하여 공시할 필요

- 신탁등기 기재사항에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설정된 사실을 추가

○ 신탁내용을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신탁등기를 변경토록 규정

- 현행은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 선·해임 재판을 한 경우에만 법원이 신탁등기 변경을 촉탁하도록 규정
- 개정「신탁법」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신탁내용 변경 재판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원이 촉탁으로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동등기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사안별로 명확화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동등기에서는 수탁자가 등기권리자, 위탁자가 등기의무자라는 원칙을 분명히 함
- 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 수익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익상반행위 등으로 인한 권리변동등기는 수탁자 단독의 행위여서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수탁자 단독으로 등기신청토록 함
- 수탁자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하는 권리변동등기는 전임 수탁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토록 함

○ 담보권신탁 시 등기사항 등 구체화

-「신탁법」개정에 따라 담보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등기절차를 규정함

-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 신탁 등기에서는 피담보채권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6. 비송사건절차법

가. 추진배경

'10. 2.「신탁법」전면개정안 국회제출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2013. 4. 30. 국회 의결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재판관할 규정 정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견청취절차, 불복여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 부여여부 등을 차등적으로 규정함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규정 준용
○ 유한책임회사 사건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신설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가. 추진배경

'10. 2.「신탁법」전면개정안 국회제출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2013. 4. 30. 국회 의결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재판관할 규정 정비
○ 신탁행위의 부인권 행사에 관해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 파산신청권자를 명확화
○ 보전처분, 설명의무 등 파산절차 규정 신설
○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고, 파산재단의 범위를 명확화
○ 파산관재인이 신탁법상 재산보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명확화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신탁채권자, 수익자 등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신탁채권이 수익채권에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 간에 채권순위에 관해 후순위 약정이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하도록 함
○ 처벌규정
-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고 유한책임신탁 재산에 대한 파산에서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가 적용되도록 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추진배경

○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차임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요청권을 신설하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국회제출
2013. 7. 2. 국회통과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대항력 등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7항·제8항 및 제9항 신설)

○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 추진배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세분화하는 한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국회제출
2013. 7. 2. 국회통과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1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소년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나. 추진경과

2012. 3. 6. 입법예고
2012. 8. 14. 국회 제출
2013. 6. 27. 국회 통과
2013. 7. 30. 법률 제11953호로 공포
2014. 1. 31. 시행

다. 주요내용

○「소년법」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우 명확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 명확화

○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절차 명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명확화

○ 전화통화 허가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외출 허가 관련 절차 규정 정비

○ 대안교육과정 확대 운영

11. 형법

가. 추진배경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 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2. 8. 13. 국회제출
2013. 3. 5. 국회통과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목적 단체 조직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범죄단체조직죄 개선(제114조)

○ 도박죄의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하도록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개장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선(제246조부터 제249조)

○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약취와 유인의 죄 개선(제287조부터 제292조,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제296조, 제296조의2)

12. 치료감호법

가. 추진배경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완치되지 않은 특정위험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을 폐지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하여 치료감호소 수용 과밀화 해소 및 지역사회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근거 마련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 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여 피치료감호자 및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2. 10. 4. 권성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2013. 6. 19. 법사위 제1소위 대안의결
2013. 6. 27. 국회 본회의 의결
2013. 7. 30. 법률 제1195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완치되지 않은 살인 범죄자는 2년씩 3회 치료감호기간 연장 가능

※ 현행법상 감호기간 상한은 15년

○ 지역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

○ 치료감호 출소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보호관찰소 간 협조체제 구축
○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근거 마련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및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3. 4. 국회 소관위 심사 가결
2013. 3. 5. 국회 본회의 심사 가결
2013. 4. 5. 법률 제11726호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각각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중 연기군을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범죄단체 조직, 뇌물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28. 법률 제11824호로 공포
2013. 5. 28. 시행

다.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형법」에 따른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행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제 3 절 대 통 령 령

제 1 항 제 정 령

1.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난민법」이 제정(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자료 등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의 요건과 절차,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

나. 추진경과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공포
2013.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제3조 ~ 제5조)
○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제6조 ~ 제7조)
○ 통역인의 자격(제8조)
○ 난민위원회 심의절차(제10조 및 제11조)
○ 재정착희망난민 수용(제12조)
○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제13조 ~ 제16조)
○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제17조 ~ 제22조)
○ 난민지원시설 이용 및 운영(제23조)

제 2 항 개 정 령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수용자 서신의 미봉함 제출 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게 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이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

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서신을 제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제65조 제1항)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등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를 명확히 규정(제6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최저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2. 13. 대통령령 제243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함

○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인상수준을 반영하여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대구·부산 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및 대전·광주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4개 직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4. 18. 대통령령 제24501호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구·부산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제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대상자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2호로 공포
2013. 5. 10. 시행

다. 주요내용

○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만 과태료 감경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 약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손(祖孫)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추가함(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 현재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고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조제1항)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확대 등(안 제14조제1항제3호, 안 제14조제5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4299호, 2013. 1. 9. 공포・시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00호, 2013. 1. 9.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2.8퍼센트 인상)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조정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22. 대통령령 제24535호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2)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3.29퍼센트 인상함.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조정(안 제10조)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로 조정

○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일부 변경(안 제11조의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및 퇴직자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구입산식이 변경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

○ 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 환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3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육아

휴직을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육아휴직 수당 환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규정에 포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전자장치 수신자료 열람·조회에 대한 영장제도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전자장치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절차,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의 범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 연장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피부착자에 대한 출국허가 제한사유 구체화

-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출국을 허가할 때에 출국목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허가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출국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전자장치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절차 마련

- 검사가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하려는 경우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긴급 열람·조회 요청서와 신분 표시 증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시하도록 하되,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는 등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절차를 정함

○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의 범위

-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전자장치 부착기간 등으로 정함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절차 마련

- 보호관찰소의 장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를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과 소명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보관 방법,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성범죄자 등록정보 내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위한 자료 송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0호로 공포
2013. 6. 19. 시행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구체화
- 신상정보 접수기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6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진 촬영 방법 및 사진 파일의 저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내용의 구체화
-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하는 죄명, 선고 형량 등 성범죄 경력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과 횟수 등 성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 등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위한 자료의 송부 절차 마련
-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및 변경정보 등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미리 등록한 얼굴정보 등을 이용한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대상을 추가하고,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서류 보존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제3호, 안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 대한민국 국민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은 17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대한민국과 양해각서·협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만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단기 체류관광객이나 제주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도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안 제11조의2 신설)

-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업무 효율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외국인의 체류자격 요건 및 활동범위 (안 별표 1 제26호, 제27호 및 제28호의3 등)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성년 도달 시 그 체류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는 그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가. 추진배경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고, 관리단집회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공포
2013. 6. 19. 시행

다.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전유부분의 인도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고, 그 인도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건물의 구조상·안전상 하자에 대해서는 5년으로, 건물의 기능상·미관상 하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자의 발견·보수가 용이한 하자에 대해서는 2년으로 세분화함(안 제5조)

○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구별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등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6호로 공포
2013. 6. 19. 시행

다.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공공장소'의 범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외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로 함

1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국내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법인의 임원 등까지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10.10. 대통령령 제247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업투자 체류자격 확대 등(별표 1 제17호다목, 제18호의2나목 및 제28호의3거목 신설)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구직(D-10)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가진 법인 창업자로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거주 체류자격 확대(별표 1 제27호차목)

- 부동산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만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법인의 임원, 주주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2. 공증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 대상에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1823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정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추진경과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0호로 공포
2013. 11. 29. 시행

다.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된 특정동산의 범위를 「민법」상 동산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등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이 공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기간 등을 정하는 등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4푼에서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제10조 및 제11조)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2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정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제2조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5푼에서 연 1할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1천500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제6조 및 제7조)

제 3 항 폐지령

1. 사면법 시행령 (폐지)

가. 추진배경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가 「사면법」에 규정(법률 제10862호, 2011. 7.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사면법 시행령 폐지

제 4 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1 항 제정 규칙

1.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난민법」이 제정(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난민위원회 운영 등 「난민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난민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나. 추진경과

2013. 6. 28. 법무부령 제795호로 공포
2013.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신청과정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통역인의 활용 등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제2조)

○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및 게시는 2개 이상 언어로 작성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실시함(제4조)

○ 자료 등의 열람·복사 시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되,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난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난민인정자에 대한 교육비·직업훈련 등 지원절차,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절차, 난민지원시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13조 ~ 제17조)

○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함

제 2 항 개정 규칙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사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 1. 법무부령 제78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안 제8조의2 신설)

-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함.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인상(안 제72조)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

○ 별지 서식의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등)

- 민원인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개 서식을 개선함.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무실무원(9급) 28명 → 일반직(7급 4명, 8급 17명, 9급 7명)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 16. 법무부령 제78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안 제4장제2절 신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

하고, 지정된 신청인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안 별표 2 신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중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을 규정함.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법무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지원부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3. 23. 법무부령 제78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정원 6명 감축(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가. 추진배경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3. 3. 26. 법무부령 제78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별지 제3호의 2 서식 및 제3호의 3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

6.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가. 추진배경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3. 3. 26. 법무부령 제78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가. 추진배경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3. 3. 26. 법무부령 제78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별지 제3호의 2 서식 및 제3호의 3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

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범죄피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91호, 2012.6.29., 일부개정) 제7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호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법무부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보호시설 운영 위탁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나. 추진경과

2013. 4. 1. 개정안 입법예고

2013. 5. 26. 법무부령 제7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의 '서식' 관련 규정을 마련(규칙 제14조, 별지24호 서식 신설)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교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수용자 생활용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간 화상접견 제도를 신설하며, 조직폭력수용자 및 마약류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개선하고, 징벌 실효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여부 및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교화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경우 종전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과거의 전력만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개선

○ 징벌 중 금치처분의 경우 기간이 같아도 근거규정에 따라 실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치기간별로 징벌의 실효기간을 규정

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전자장치 수신자료 열람·조회에 대한 영장제도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49호, 2013. 5. 3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법무부령 제79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피부착자의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을 위한 절차와 서식 마련
○ 전자장치 수신자료 열람, 조회 허가 신청, 청구 서식 마련
○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연장 신청 등 서식 마련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50호, 2013. 5. 31.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법무부령 제792호로 공포
2013. 6. 19. 시행

다.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 양성이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심의위원회 설치
○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성범죄자 공개·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마련

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을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5. 31. 법무부령 제79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등록 스티커 부착 근거 마련(안 제1조의2 및 제19조의2)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신청·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 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 기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입국금지 권한 일부 위임(안 제78조제2항 신설)

-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에 따른 입국금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함.

13.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던 국가의 법률적 조력 제도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취소 절차,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6. 3. 법무부령 제790호로 공포
2013. 6. 19. 시행

다. 주요내용

○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 또는 '법률조력인'의 명칭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해촉, 보수, 보고의무 및 업무중지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난민법」이 제정(법률 제11298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난민 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고, 법무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감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법무부 본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서울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성폭력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24537호, 2013. 5.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6. 12. 법무부령 제79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 국적과, 난민과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함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1명, 신탁법 개정에 따른 업무 담당 인력 1명, 통일법무자료 DB 구축 인력 1명, 여성아동인권 업무 인력 2명, 감사 인력 5명, 난민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5명, 보호관찰 인력 112명, 기록물 전문요원 2명,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인력 및 공항만 심사 인력 등 11명 증원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7. 15. 법무부령 제796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1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7. 15. 법무부령 제797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17. 외국인보호규칙

가. 추진배경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현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3. 9. 4. 법무부령 제79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송금인이 불명확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고,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1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정부3.0 추진, 협업과제 수행 및 성폭력 예방・재범방지 내실화 등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인력을 증원 및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732호, 2013. 9.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0. 1. 법무부령 제80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인력 1명, 협업과제 추진 인력 2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인력 1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9명, 성폭력사범 이수명령 집행 인력 7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인력 6명, 크루즈선박 심사 인력 12명 증원

○ 안전행정부로 정원 이체 1명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 목적의 사증 발급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0. 10. 법무부령 제799호로 공포・시행.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 4. 1. 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 발급 심사 기준의 개선(안 제9조의5제1항)

- 결혼이민사증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초청 외국인의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능력, 초청인의 주거 및 소득 관련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심사 기준의 개선(안 제17조의3제2항)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가 일정한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의 면제 근거 마련(안 제74조제1항제6호 신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상주교도소 및 정읍교도소를 신설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를 공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829호, 2013. 11.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직렬과 직무가 불일치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며, 개방형직위를 변경·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1. 13. 법무부령 제80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142명, 경비교도 대체 인력 115명 증원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949호, 2013. 12.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종전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종전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인력 및 국정과제·협업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12. 법무부령 제80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능직·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등 전환
○ 홍보담당인력 1명 증원
○ 통합정원 95명 감축

22.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 규칙

가. 추진배경

형집행정지자에게 주거지를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치료 목적을 넘어 형집행면탈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형집행정지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17. 법무부령 제80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형집행정지자에게 조건 부과 규정 신설(안 제29조제3항)
·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집행정지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
○ 조건 준수여부 관찰·보고(안 제32조 제1항)
· 형집행정지자 관찰시 형집행정지 사유 존속 여부 외에 조건 준수여부도 관찰·보고
○ 별지 제21호부터 제24호 서식 및 제25호, 제26호 서식에 '조건'란 및 '정지기간'란 추가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건'란 추가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정비

23.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 규칙

가. 추진배경

생계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로 추가 확대하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로 하여금 노역장유치 집행을 최소화하여 재산형의 본질적인 취지에 충실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17. 법무부령 제80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일부납부'를 '분할납부'로 용어 변경 (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

○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 확대 (안 제12조제1항)

○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기한 연장 (안 제12조제3항)

○ 즉결심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죄명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24. 검찰보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부패범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척결하고, 대한민국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한 OECD의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17. 법무부령 제80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내란·외환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기록을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토록 한 예외규정에 부패범죄를 추가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정비

25.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수입인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17. 법무부령 제8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5항)

2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 및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별 인상 동결 기간, 그 동안의 국내 물가상승분 및 외국의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23. 법무부령 제803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 및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안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의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각각 미화 10불씩 인상하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별 인상 동결 기간, 인상 필요성, 국내 물가 상승률 및 외국의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폭(20~300%) 인상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시기의 조정(안 제84조의2)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맞추어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3. 12. 23. 법무부령 제804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의 인상(안 제12조제1항)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1통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의 면제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신설)

-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주택·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는 수수료 금액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3. 12. 31. 법무부령 제805호로 공포
2014. 1. 1. 시행

다. 주요내용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제 4 장

국 회 업 무

제 4 장 국회업무

2013년도에는 총 9회(313회~321회)에 걸친 국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상생과 통합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국민이 원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등 우리 부 주요정책 추진사항과 관련한 중점 추진 법안인 형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 법안 심사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예·결산 관련 안건의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여 제320회 정기회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되었으며, 제321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되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현안 및 과제,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다.

3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먹거리 안전 확보, 보호관찰소 이전 대책, 주요 정책 및 핵심 법안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회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다.

회차별 국회활동 및 당정협의·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13회	'13. 2. 4. ~ 3. 5. (30일간)	【본회의】 ◦ 총 6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3. 2. 5.)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통합당, '13. 2. 7.) ◦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3. 2. 14.) ◦ 통과법안('13. 3. 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정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총 7차례 개의(전체회의 5, 제1소위 1, 제2소위 1) ◦ 현안보고('13. 2. 19.) - 현안과제 보고 · 대선사범 신속·엄정 처리 · 국정원 직원 인터넷 여론조사 의혹 사건 · 前 헌재소장 후보자 고발사건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 2013. 1. 31.자 특별사면 · 검찰개혁 추진 계획 · 최근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 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회('13. 2. 28.)
제314회	'13. 3. 8. ~ 3. 22. (15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의(전체회의 3) ◦ 검찰총장후보자(채동욱) 인사청문회('13. 4. 2.)
제315회	'13. 4. 8. ~ 5. 7. (30일간)	【본회의】 ◦ 총 6차례 개의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3. 4. 25.) ◦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3. 4. 26.) ◦ 통과법안('13. 4. 3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14차례 개의(전체회의 10, 제1소위 2, 제2소위 2) ◦ 업무현황 보고('13. 4. 17.) - 주요정책 추진상황 :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강화, 상생과 통합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국민이 원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 현안과제 보고 ・대선사범 신속·엄정 처리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대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개선 ・론스타 중재 제기 관련 대응 - 입법추진계획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상법(보험),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상법(항공 운송편, 총칙), 행정소송법, 교도관 직무 집행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총 4차례 개의(전체회의 4) ◦ 검찰 업무현황 보고('13. 4. 24.) - 중점 추진사항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헌법 수호와 법질서 확립, 사회지도층 범죄 및 구조적 비리 근절,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과학수사 역량 고도화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검찰개혁 추진경과 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특별수사기능의 재설계 ・시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 강화 ・상설특검 도입
제316회	'13. 6. 3. ~ 7. 2. (30일간)	【본회의】 ◦ 총 10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3. 6. 4.)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13. 6. 5.)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3. 6. 10.)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3. 6. 13.) ◦ 통과법안('13. 6. 27.)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통과법안('13. 7. 2.) -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총 12차례 개의(전체회의 6, 제1소위 4, 제2소위 2) ◦ 현안보고('13. 6. 17.) - 현안과제 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등 ・전두환 前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현황 ・검찰개혁 추진 경과 ・대선사범 처리 현황 ・원전 비리 관련 사건 ・경제 관련 주요 수사 사건 ・협업수사체제 강화 현황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 방안 ・재외동포 복수국적 관련 현황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총 2차례 개의(전체회의 2)
제317회	'13. 7. 8. ~ 8. 6. (30일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총 2차례 개의(전체회의 1, 반부패 등 제도개혁심사소위 1)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총 8차례 개의 ◦ 국정조사 기관보고('13. 7. 24.) -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 등 수사상황
제318회	'13. 8. 12. (1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제319회	'13. 8. 19. ~ 8. 31. (13일간)	【법제사법위원회】 ◦ 총 1차례 개의(전체회의 1)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총 2차례 개의(반부패 등 제도개혁심사소위 2)
제320회 (정기회)	'13. 9. 2. ~ 12. 10. (100일간)	【본회의】 ◦ 총 17차례 개의 ◦ 정기회 개회식('13. 9. 2.)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청이유 설명('13. 9. 4.) ◦ 긴급현안 질문('13. 10. 1.) ◦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3. 10. 7.)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13. 10. 8.)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3. 11. 18.)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3. 11. 19.)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3. 11. 25.) ◦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13. 11. 28.) 【법제사법위원회】 ◦ 총 11차례 개의(전체회의 10, 예산결산심사소위 1) ◦ 국정감사('13. 10. 14.~11. 2.) - 법무부('13. 10. 17.), 대검찰청('13. 10. 31.), 종합감사('13. 11. 1.) 실시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13. 10. 17.) - 주요정책 추진상황 :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강화, 상생과 통합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국민이 원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현장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 법무행정 구현 - 현안과제 보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출 등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등 ・원전비리 수사 ・전두환 前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주요 경제 사건 공판 진행 상황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관련 대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개청 추진 ・수용·보호시설구조 현대화 사업 추진 - 입법추진계획 보고 ・공익신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보험),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검사징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인신보호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정책 기본법, 민법(채권, 가족)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 201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13. 11. 7.) ◦ 검찰총장후보자(김진태) 인사청문회('13. 11. 13.)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총 4차례 개의(전체회의 2, 반부패 등 제도개혁심사소위 2)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13. 9.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총 19차례 개의(전체회의 14, 결산심사소위 4, 예산안등조정소위 1) ◦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정책 질의('13. 11. 4. ~ 11. 5.) ◦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별심사('13. 11. 7.) ◦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13. 11. 26.)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 질의('13. 12. 4 ~ 12. 5, 12. 8)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3. 12. 7.)
제321회	'13. 12. 11. ~ '14. 1. 3. (24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14. 1. 1.) ◦ 통과법안('13. 12. 19.)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통과법안('13. 12. 3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15차례 개의(전체회의 7, 제1소위 4, 제2소위 2, 예산결산심사소위 2) ◦ 201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예산결산심사소위('13. 12. 12.), 전체회의('13.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총 12차례 개의(전체회의 1, 예산안등조정소위 11)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13. 12. 31.)

〈표 2〉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13. 6. 3.	◦ 먹거리 안전 확보 관련	◦ 새누리당 측 - 정책위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보건복지위 간사, 위원 등 ◦ 정부 측 - 검찰국장 등
당정 간담회	’13. 8. 29.	◦ 정기국회 대비 주요 쟁점 현안 및 법안 토의	◦ 새누리당 측 - 당 법사위원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등
당정 협의	’13. 9. 9.	◦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재검토 등 관련	◦ 새누리당 측 - 대표, 제1정조위원장, 대변인 등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제 5 장

법 무 연 표

제 5 장 법 무 연 표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1.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781호)
1. 1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783호)
1.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11623호, 2014. 3. 1. 시행,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 3. 1. 시행, 일부 개정)
1. 30.	제1회 수형자 합창 콘테스트 - 행사명 :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는 하모니' - 참가 : 포항(교), 대구(구), 안동(교), 청주여(교), 김천소년(교)
1. 30.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 포항교도소
1. 30.	법무부·을지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치료감호소·교도소 출소자에 대한 전문 중독치료 등 - 범죄예방정책국장, 을지대 총장,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등 참석
2. 4.	'13년 건전한 졸업 문화 형성을 위한 출장 강연 실시 - 2. 4~15., 전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폭력적 졸업식 뒷풀이 방지 등 폭력예방 교육, 건전한 졸업식 유도 캠페인 전개
2. 4. ~5.	전국 소년원학생 스키캠프 - 대명리조트 등 전국 9개 스키장 - 소년원학생, 교사 등 9개 기관 270명
2.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4352호)
2. 25.	제4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 2. 25.~4. 28.
2. 28.	신임검사(사법연수원 제42기) 임관식
3. 1.	전문우수인력(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3. 6.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재체결 - '10. 4.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 이후 시행중인 농촌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재체결 - 보호관찰과장, 농협
3. 6. ~ 12. 20.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관리교육 실시 - 집합교육, 찾아가는 맞춤교육,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3. 11.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
3. 11.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
3. 15.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변호사교육문화관(서초동) - 시행성과 평가, 제도 발전 방향 논의
3. 2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4411호, 일부개정)
3. 28.	인권정책자문단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 위촉장 수여 및 국가인권정책 점검방안 토론
3. 29.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변인, 여성가족부 과장,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 참석
4. 1.	신임검사(법무관 제39기) 임관식
4. 2.	'13년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개최 - 4. 2.~19, 법무연수원등 - 전국 교육청 약 254 개교 교사 및 학생 1,016여명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4.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법률 제11726호)	4. 30.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지침 개정 - 결혼이민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일반이민자로 확대
4. 5.	형법(법률 제11731호) 개정안 시행 - 인신매매죄 신설	5. 1.	성실납세 외국인에 대한 거주(F-2) 자격 변경 우대 -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해 소득세 납세실적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4. 5.	헌법교육 게임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기념식 - 4. 5.(금) 16:3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장관, 국장님, 대변인, NHN 대표이사 등 - 경과보고, 시범학교학생 법체험 활동	5. 1.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 단계별 안내화면을 단순화시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비스 제공 - 신규신청자와 기존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구분, 사용자 편의성 향상
4. 8.	'13년 지자체 법질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4. 8.~9., 대전 유성호텔 - 16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별 법질서 업무 담당자 약 200명 - 법질서 확립 활성화 방안 및 특사경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의. 우수사례 발표 등	5. 1.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제도 본격 시행 ※ '12.10.29.~'13.4.30.간 시범운영
4. 10.	인터넷 화상접견제도 시행 - 영월교도소 등 12개 기관 - 시범 운영 : 1. 2.~4. 9.	5. 2.	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5. 2., 1동 대강당 - 장관, 차관, 범정국장, 서포터즈 약 310명 - 제5기 서포터즈 활동 우수팀 장관상 수여 및 우수 활동 사례 발표, 제6기 서포터즈 선서
4. 12.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 대강당 - 법무부장·차관, 실국본부장, 전국 교정기관장 등 참석	5. 2.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 안산외국인주민센터 및 다문화특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관계자, 참여 이민자 등 격려 및 간담회
4. 18.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4501호, 일부개정)	5. 3.	'13년 범방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 5. 3., 서울팔래스 호텔 - 장관, 범방저나국연합회장, 범정국장 등 79명 - '12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13년도 사업계획 승인,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4. 19.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민간갱생보호법인 담안선교회 - 현황 점검 및 생활관·카트리지 공장 참관, 관계자 격려 등	5. 6.	신임검사(변호사시험 2회) 임관식
4. 24.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5. 8.	장관님 사회봉사 농촌지원 정책현장 방문 - 여주군 능서군 광대리 넓은들마을 - 장관님, 농협중앙회장 등 80여명 참석 - 고구마 순 심기 봉사활동 및 농촌지원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등
4. 29.	인권침해 외국인 등 체류외국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 시행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5. 9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소년원, 위치추적대 전관제센터, 솔로몬로파크, 치료감호소	5. 24.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5. 27.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5. 13.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5. 13.~ 5. 15, 전국 51개 교정기관 - 수형자 680명, 업체 211개 참여 - 채용약정 411명	5. 28.	부동산등기법 공포 (법률 제11826호, 8. 29 시행) 비송사건절차법 공포·시행 (법률 제11827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법률 제11828호)
5. 16.	제31회 교정대상 시상식 - 서울신문 프레스센터 - 모범교도관 등 16명 시상		
5. 20.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장관, 안행부 차관, 주한외국공관원, 일반국민, 재한외국인 등 1,000여명 참석	5. 29.	보호관찰 사례집 '흔들리며 피는 꽃' 발간 -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및 사회봉사 특기 집행 사례를 수집, 대국민 홍보 - 소년부 판사, 검찰청 검사, 범죄예방위원 등 17,000명에게 송부
5. 20.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 확대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기준금액 7억) - 동부산관광단지(기준금액 5억)	5. 30.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 청주교도소
5. 21.	준법·사회기여 수형자 가석방 기준 완화 적용 - 국가유공자, 노부모봉양, 헌혈 등 준법·사회기여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5. 30.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5. 30.(목) 15:00~16:00 - 국회 헌정기념관 당당(2층) - 장관, 법사위원장, 김회선 의원, 수상가족 등 150여명
5. 2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문화가족지원 맞춤형상담서비스」 시행		
5. 2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4535호, 일부개정)	5. 31.	사면법 시행령 폐지 (대통령령 제24552호, 2013. 5. 31 시행)
5. 23.	멘토와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서울소년원 운동장 - 장관, 대한축구협회부회장, 소년보호위원, 소년원학생, 교사 등 750명 - 축구, 계주, 족구, 줄넘기 등	5. 3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2455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법무부령 제793호)
5. 24.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1차 회의 - 5. 24., 법무부 대회의실 - 헌법교육 실효성 확방안 및 추진단 운영 방향 논의 등	6. 2. ~ 6.	기업환경법제지원(EoDB) 사업 추진 - 브루나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및 현지세미나 개최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6. 5.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3개 기관(대한변협·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협약 체결 -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대회의실 -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등	6. 19.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시행 -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실시
6. 14.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1차 공청회 -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 단계적 도입 - 진행 : 정찬형 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정경영 교수, 천경훈 교수	6. 20.	'13년 상반기 기술교육·방문취업 중국동포 대상 전산추첨 - 기술교육대상자 선발 : 3만명 - 방문취업대상자 선발 : 4만명
6. 14.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 법무연수원 - 태권도, 유도, 검도	6. 20.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 6. 20(목), 16:00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 - 법질서과장, 정재황 교수, 교육부 박제윤 과장등 18명 - 초·중·고 분과별 교과서 내용 논의 등
6. 14	전국 검찰청 소년전담건사 워크숍 개최 - 6. 14., 법무연수원 - 범정국장, 소년전담검사 등 60여명 -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범죄예방위원의 사기진작 방안 토론 등	6. 25.	범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범방 지역회장단 간담회 개최 - 6. 25.(화) 15:00, 대검찰청 소회의실 - 범정국장, 대검형사부장, 범방 전국연합회장 등 27명 -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등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등	7. 1.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및 배치 - 원스톱센터 5곳(보라매, 인천, 인천 북부, 경기, 대구) -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동부, 의정부, 대전, 청주, 울산, 부산)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공공장소 구체화	7. 3.	교정본부·대한신경정신학회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 대회의실
6. 19.	형법(법률 제11574호) 개정안 시행 -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유사강간죄 신설 등	7. 3.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무부·서울대 업무협약 체결 - 수용자 대상 인문학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약
6. 19.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법무부훈령 제899호)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7. 10.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 법률홈닥터와 함께 하는 일일무료법률상담회 - 강원도 춘천 지역주민에게 일일무료상담 실시	8. 5.	'13학년도 하계 초·중고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8. 5.~9. 전국 초·중등교사 115명 - 학교폭력예방, 법이식과 법교육 등
7. 13.	소년원학생「수상스포츠교실」개강 - 미사리조정경기장, 서울소년원 등 5개 소년원60명 참가 - 카약, 수상스키, 래프팅 등	8. 7.	헌법교육 강화 추진을 위한 교육부 업무협의 - 8. 6.,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와 헌법교육 강화 협의체구성, 헌법교육 강화 내용 교과서 반영,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 및 반영 협조 등
7.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8. 8.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보고회 개최 - 8. 8., 국제회의실 - 법사랑 서포터즈 17개팀 등 80여명 - 3개월간 실시한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악 근절 관련 팀별 활동보고, 상호평가 및 토론 실시
7. 1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7. 15.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 외국인투자·우수인력 유치 촉진과 국민의 여행 편의 제고	8. 13.	법원조직법 공포(법률 제12041호, 2014. 1. 1. 시행, 일부개정)
7. 22. ~ 12. 3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 추가 운영 - '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 인도적 배려 대상자, 국적 취득자	8. 13.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장관, 유공자 후손 17명 등 -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증서 수여 및 무상 기술교육과 장학금 지급
7. 23.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 7. 23., 법무부 대회의실 -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위원 18명 - 교과과정 내 헌법교육 반영을 위한 세부주제 토론	8. 21.	법무부장관 '을지연습 교정기관 실제훈련' 참관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7. 2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4674호, 일부개정)	8. 2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요정책포럼 100회 기념 특별초청강연 실시
7. 30	치료감호법 개정법률안 공포 (법률 제119545호, 일부 '15. 1. 31. 시행) - 국립정신병원의 치료감호시설 지정,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 근거 마련 등	8. 29.	전국 사회복귀과장 워크숍 개최 -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소속기관 사회복귀과장 등 65명 - 과천청사 3동 지하 대회의실
7. 30.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MOU 체결 - 홍콩 IFC(국제금융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 입경사무처장간 서명	8. 30.	가석방제도 개선 - 사회물의사범에 대한 가석방제도 엄격 운용 -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혜택 확대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9. 1.	외국인관광객 및 의료관광 유치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시행	9. 11.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보호관찰소장,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13명
9. 2.	교정본부·스포츠닥터스 수용자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법무부 대회의실	9. 16.	'헌법아 놀자!' 소년조선일보 연재기사 모음집 책자 발간 및 정책홍보 - 발간된 책자 12,000부를 유관기관 및 전국 5,880 개 초등학교에 배부
9. 2.~30.	소년원학생 인문학 교육지원 등을 위한 사랑의 도서 기증행사 개최 - 기간 : 9. 2.~ 30. - 대상 : 전국 법무·검찰 직원 - 수집도서 : 32,748권	9. 22.	제3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참석 - 9. 22.~9. 28, 인도 - 교정본부장 등 5명
9. 4.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법무부령 제798호)		
9. 9.	법조기자단 보호기관 정책현장 참관 - 치료감호소,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 국민일보 법조기자 등 11명	9. 28.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
		9. 30.	2013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참가 - 9. 30. ~ 10. 7, 도자기공예 등 16개 직종, 37명 - 7명 입상(금 1, 동 2, 장려 4)
9. 10.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 개최 - 내용 : 상업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학계, 경제계 및 시민단체 참여 토론회	10. 1.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 논의
9. 10.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본선대회 개최 - 9. 10., 농협NH아트홀 - 장관, 농협회장, 범정국장, 합창대회 참여자·가족 등 400여명 - 합창대회 본선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시상식 등	10.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시행
		10. 7.	민간교육포털과 함께하는 '한급헌법 만들기' 이벤트 실시 - 10.7.~28., 총 26일 - 한교폭력예방을 주제로 민간교육포털인 '아이스크림'의 법체험 인성교육 코너에 학급헌법만들기 이벤트 개최
9. 11.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 '밀양희망센터' 개관 - 밀양교도소		
9. 11.	2013년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참가 - 9. 11.~9. 12, 목공예 등 2개 직종, 2명 - 2명 입상(금 1, 동상 1)	10. 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2478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법무부령 제799호)
9. 11.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민간갱생보호법인 빠스카교화복지회 - 현황 점검 및 생활관·두부공장 참관, 관계자 격려 등	10. 10.	우수 기술력 보유 외국인에 대한 창업비자(D-8-4) 발급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10. 10.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신설	10. 28.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등 참석
10. 10.	제2기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장관, 위원(내부 1, 외부 11명) 참석	10. 28.	전국 교정기관장 간담회 - 서울구치소 회의실 - 교정본부장, 전국 51개 교정기관장 등
10. 11.	2013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 10.11.(금), 과천시민회관 대극당 - 장관, 중앙일보대표이사, 전국범죄예방위원 등 1,000여명 참석 - 시상식 개최, 범죄예방활동 영상 상영 및 정부포상 수여자 수여 등	10. 28.	제4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10. 28.~11. 3,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등 참석 - 총1,097점(교도작업제품 823점, 문예작품 274점) 전시
10. 13.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제3회 한마음 걷기 축제 개최 - 서울상암월드컵공원 - 5개 부처 및 민간단체 참여 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 걷기축제(재한외국인, 국민 등 3,500여 명 참석)	10. 29.	소년원 출원 성공인사 '푸르미서포터즈 특별강사 위촉 및 발대식 개최 - 장소 : 법무부 대회의실 - 대상 : 출원 성공인사 31명 - 활동 : 기관별 특별강사 활동
10. 15.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10.15.(화), 한국교총 외솔홀 - 대상 2명 등 17명 시상	10. 31.	보호공단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 안양아트센터 - 장관, 국장,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매일경제 대표, 자원봉사자 등 900여명 참석
10. 16.	장관님 사회봉사 농촌지원 정책현장 방문 - 여주시 능서군 광대리 넓은들마을 - 장관님, 농협중앙회장 등 80여명 참석 - 고구마 수확 봉사활동 및 농촌지원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등	11. 1.	교정기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실시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 우승 : 김천소년교도소
10. 17.	MICE 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공 ※ MICE :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11. 5.	'13년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협회(ACGA) 연례 국제 컨퍼런스 - 주 제 : 북아시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 투자 - 참석자 : 미국 등 18개국 기관투자자, 기업자, 법률가 등 참가
10.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지 시찰 - 치료감호소, 솔로몬로파크 - 박영선 위원장 등 법사위원 6명,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30여명	11. 5.	수용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위한 '교정본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체결 - 수용자 대상 국민행복기금 설명회 개최 및 상담 실시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11. 6.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 과청청사 대강당 - 장관, 인권국장,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등 500여명 참석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홍보 및 관련 종사자 유공 표창	11. 22.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민간갱생보호법인 양지뜸 - 현황 점검 및 생활관 참관, 관계자 격려 등
11. 6.	불법 결혼중개업체 근절을 위한 결혼이민 사증 심사 강화 -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 심사 연계 강화 -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자 및 알선자 처벌 등	11. 22.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민간갱생보호법인 양지뜸 - 현황 점검 및 생활관 참관, 관계자 격려 등
11. 13.	제36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무도대회 개최 - 11. 13.(법무연수원), 11. 15.(대전교도소) - 유도, 검도	11. 27.	광주스마일센터(심리치료시설) 개소식 - 광주 동구 충장로 - 광주지검장, 국회의원 박주선, 인권국장 등 참석 - 지역사회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됨
11. 13.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11. 13.(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관, 범정국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연 참가자 및 가족 등 300여명 - 부문별(헌법·형사·민사) 본선 경연 및 시상식 개최 등	11. 28.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 군산교도소
11. 14.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책현장 방문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11. 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4886호, 제2조제4항부터 6항까지, 제3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 12. 12. 시행, 일부개정)
11. 19.	진주교도소 정신보건센터 개원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11. 29.	원격의료시스템 개통 - 개통기관 : 의정부교도소, 논산지소 - 2005년부터 안양교도소 등 25개 기관 운영 중
11. 20.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개최 - 11. 20., 법무부 대회의실 - 장관, 범정국장, 동아일보 관계자, 수상자 및 가족 등 60여명 - 생활법 퀴즈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자 시상식 개최 등	12. 2.	제40대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12. 9.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 법무부 대회의실 - 법무부장관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우수 인권공무원 14명에 대한 포상 수여
		12. 9.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12. 9.~12. 20, 전국 51개 교정기관 - 수형자 1,205명, 업체 399개 참여 - 채용약정 641명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일자	법 무 부 주 요 사 항
12. 12.	미디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 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12. 20.	'13년 하반기 기술교육·방문취업 중국동포 대상 전산추첨 - 기술교육대상자 선발 : 3만명 - 방문취업대상자 선발 : 4만명
		12. 20.	외국인 고용·취업가능 여부 조회서비스 개시
12. 12.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시행	12. 20.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 - 제6기 블로그 기자(74명) 위촉
12. 12.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안) 보고회 개최 - 12. 12.(목), 대회의실 - 법무정보화 현황 및 새로운 5년을 위한 비전, 목표, 주요 정보화 이행과제 등	12. 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법무부령 제803호, 2014.1.1.시행)
12. 17.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06호, 일부개정)	12.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법무부령 제804호, 2014.1.1.시행)
12. 17.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07호, 일부개정)	12. 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법무부령 제803호, 2014.1.1.시행)
12. 17.	검찰보존사무규칙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08호, 일부개정)	12. 23.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수상 - 12. 23., 한국교총회관 - 전북·제주·경북교육청과 협업하여 시범학교 운영 및 교육부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등록 전국 초등 학교로 확대 보급·활용
12. 17.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09호, 일부개정)		
12. 19.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12. 19.	제7회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및 소년원 학생 문화예술제 개최 - 서울소년원 대강당 - 장관님, 뮤지컬배우 길성원, 양준모, (주)현대캐피코 공장장, 소년원학생, 자원봉사자 등400명	12. 26.	법질서 유공 포상 및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 12. 26., 법무부 대회의실 - 장관, 범정국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수상자 등 50여명 - 법질서확립 유공자 포상,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 시상 등
12. 20.	'13년 하반기 기술교육·방문취업 중국동포 대상 전산추첨 - 기술교육대상자 선발 : 3만명 - 방문취업대상자 선발 : 4만명	12. 27.	APEC 경제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및 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 제조업 외에 서비스, 무체물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 등으로 발급대상 확대, 발급 인원 확대 등
12. 20.	외국인 고용·취업가능 여부 조회서비스 개시	12. 27.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법무부훈령 제922호, 12.30.시행)
		12. 30.	통합사증정보시스템(IVIS) 구축 완료

제 6 장

통 계

제 1 절 법무업무 통계
제 2 절 검찰업무 통계
제 3 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 4 절 인권업무 통계
제 5 절 교정업무 통계
제 6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 6 장 통 계

제 1 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법령자문 〈표 1-1〉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88	1,347	1,947	2,012	2,825	3,530	3,365	4,072	3,740	5,096
기획재정부	85	61	84	102	107	107	109	136	122	149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107
교육부	-	-	-	-	-	-	-	-	-	185
*교육과학기술부	42	44	92	101	166	197	216	280	289	41
*과학기술부	21	22	23	32	-	-	-	-	-	-
외교부	2	7	13	14	4	16	28	27	38	27
통일부	3	1	25	7	-	-	35	11	10	153
법무부	137	181	258	277	525	501	452	398	330	480
국방부	22	49	51	58	61	95	93	104	99	121
안전행정부	104	90	127	158	293	247	291	444	410	625
문화체육관광부	36	28	56	86	98	123	78	133	152	192
농림축산식품부	33	24	67	105	123	201	187	338	280	281
산업통상자원부	57	51	66	107	246	110	99	300	111	316
보건복지부	72	65	180	212	303	527	424	422	356	432
환경부	33	48	100	128	93	201	136	149	174	210
고용노동부	30	43	82	108	115	145	127	141	114	194
여성가족부	-	-	-	-	-	-	72	96	84	118
국토교통부	105	102	201	208	363	533	392	472	418	553
해양수산부	28	58	79	86	-	-	-	-	-	120
방송통신위원회	40	30	76	62	30	75	71	66	62	38
국무조정실	4	19	12	10	9	13	22	9	18	25
공정거래위원회	8	7	13	-	30	63	56	62	46	51
금융위원회	-	-	-	-	68	96	66	123	99	192
국민권익위원회	-	-	-	-	3	16	12	12	9	14
법제처	4	5	4	1	4	5	10	8	14	15
국가보훈처	14	24	48	1	55	45	69	49	46	64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	-	91
기타	108	388	290	149	129	214	320	292	459	302

○ 법령해석 〈표 1-2〉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	29	19	3	6	2	3	11	14	10
기획재정부	1	2	-	-	-		-	1	-	1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	-	-	-	-	-	1	-	-
외교부	-	-	-	-	-	-	-	-	-	-
통일부	-	-	8	-	-	-	-	-	-	-
법무부	-	5	-	-	2	-	-	-	-	1
국방부	-	-	-	-	-	-	-	-	-	-
안전행정부	-	1	3	1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1	-	-	1	-	1	-	2	2
보건복지부	-	-	-	-	-	-	-	-	-	1
환경부	-	-	-	-	-	-	-	2	-	-
고용노동부	-	-	1	1	-	-	-	1	1	-
여성가족부	-	-	-	-	-	-	-	-	-	-
국토교통부	-	1	-	-	1	-	-	1	1	-
해양수산부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1	-	-
금융위원회	-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1	-	-	-	-	-
법제처	-	-	-	-	-	-	-	-	-	-
국가보훈처	-	-	3	1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	-	-
기타	-	19	4	-	1	2	2	4	10	3

○ 법령 제정·개정 〈표 1-3〉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2	44	46	68	88	73	72	66	61	59
제정	소 계	11	7	8	13	16	15	16	8	7	4
	법 률	3	2	2	7	3	6	9	-	2	1
	대통령령	4	3	3	5	7	6	4	3	3	1
	부 령	4	2	3	1	6	3	3	5	2	2
개정	소 계	31	37	38	55	61	56	56	58	51	54
	법 률	7	12	6	18	15	15	19	11	10	13
	대통령령	11	8	13	18	22	19	12	21	24	14
	부 령	13	17	19	19	24	22	25	26	17	27
폐지	법 령	-	-	-	-	11	2	-	-	3	1

○ 법무자료 발간 〈표 1-4〉

(단위 : 건)

연 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발간횟수	66	7	9	5	6	4	4	9	4	10	8

2. 국제법무활동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표 1-5〉

(단위 : 건)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횟 수	29	45	63	78	86	79	75	43	38	40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표 1-6〉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횟 수	21	23	11	7	5	3	2	7	11	5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표 1-7〉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횟 수	27	44	38	38	34	32	28	30	26	39
인 원	27	44	54	55	40	46	35	44	34	73

3. 변호사 · 공증

○ 변호사 인원 〈표 1-8〉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등록인원	6,891	7.693	8,429	9,280	10,187	11,016	11,802	12,607	14,534	16,547
개 업	6,299	6,997	7,603	8,143	8,895	9,612	10,263	10,976	12,532	14,242
비 개 업	592	696	826	1,137	1,292	1,404	1,539	1,631	2,002	2,305

○ 공증인 인원 〈표 1-9〉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임명공증인		24	29	30	30	33	33	38	42	48	59
법 무 법 인	사무소	223	242	256	282	295	309	307	291	280	268
	구성원	1,389	1,546	1,722	1,917	2,089	2,209	1,420	1,322	1,211	1,183
합 동 법 률 사무소	사무소	72	70	68	67	64	62	52	46	36	31
	구성원	297	312	298	288	273	260	215	188	127	121
대 행 청		14	14	14	13	13	13	14	14	13	12

○ 공증사무 처리 건수 〈표 1-10〉

(단위 : 건)

연도 \ 구분	사건처리건수	가 액
2004	3,637,051	70,206,071,853,069
2005	3,654,058	61,117,672,922,344
2006	3,620,631	78,991,376,920,882
2007	4,046,816	70,418,852,024,266
2008	4,258,090	59,563,370,695,375
2009	3,698,260	51,431,095,953,031
2010	3,872,079	54,138,827,021,658
2011	4,802,467	45,122,981,413,573
2012	4,027,514	47,911,345,357,891
2013	4,030,468	51,669,105,779,697

4. 국가소송

○ 전체 국가소송 사건 〈표 1-11〉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8,396	9,715	10,027	11,148	11,659	10,624	9,929	10,086	10,887	11,891
	구 수	4,319	5,141	5,568	6,421	6,749	6,035	5,548	5,786	6,018	7,171
	신 수	4,077	4,574	4,459	4,727	4,910	4,589	4,381	4,300	4,869	4,720
처리	계	3,233	3,871	3,660	4,017	5,474	4,994	4,138	3,637	3,120	3,373
	승 소	1,147	1,347	1,328	1,408	1,897	1,813	1,534	1,440	1,360	1,477
	패 소	592	738	726	838	1,026	910	634	565	514	522
	기 타	1,494	1,786	1,606	1,771	2,551	2,271	1,970	1,632	1,246	1,374
미 제		5,163	5,844	6,367	7,131	6,185	5,630	5,791	6,449	7,767	8,518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12〉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04	8,396 (4,077)	3,233	1,147	592	1,494	5,163
2005	9,715 (4,574)	3,871	1,347	738	1,786	5,844
2006	10,027 (4,459)	3,660	1,328	726	1,606	6,367
2007	11,148 (4,727)	4,017	1,408	838	1,771	7,131
2008	11,659 (4,910)	5,474	1,897	1,026	2,551	6,185
2009	10,624 (4,589)	4,994	1,813	910	2,271	5,630
2010	9,929 (4,381)	4,138	1,534	634	1,970	5,791
2011	10,086 (4,300)	3,637	1,440	565	1,632	6,449
2012	10,887 (4,869)	3,120	1,360	514	1,246	7,767
2013	11,891 (4,720)	3,373	1,477	522	1,374	8,518

* 접수란 중 ( )는 신수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표 1-13〉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8,396	9,715	10,027	11,148	11,659	10,624	9,929	10,074	10,875	11,879
국가원고	계	1,234	1,516	1,510	1,669	1,760	1,391	1,335	1,413	1,469	1,663
	부동산	130	179	181	198	335	249	271	316	346	351
	손해배상	49	46	47	63	59	32	15	24	26	26
	기 타	1,055	1,291	1,282	1,408	1,366	1,110	1,049	1,073	1,097	1,286
국가피고	계	7,162	8,199	8,517	9,479	9,899	9,233	8,594	8,661	9,406	10,216
	부동산	3,279	3,923	4,157	4,703	4,980	4,391	3,644	3,179	2,986	2,942
	손해배상	1,739	1,957	1,979	2,031	2,114	2,136	2,127	2,342	2,980	3,668
	기 타	2,144	2,319	2,381	2,745	2,805	2,706	2,823	3,140	3,440	3,606

○ 민사신청 사건 〈표 1-14〉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1,274	1,596	1,590	1,697	710	1,866	2,692	3,207	3,753	4,231
	구 수	609	670	693	675	44	414	1,048	1,552	2,206	2,111
	신 수	665	926	897	1,022	666	1,452	1,644	1,655	1,547	2,120
처리	계	622	906	923	1,057	362	820	1,105	998	1,398	1,543
	종 결	579	829	735	930	324	631	870	805	1,220	1,318
	본안이송	31	40	90	58	3	92	118	87	77	95
	취 하	5	33	45	33	29	69	96	62	66	87
	기 각	7	4	51	28	-	3	8	10	17	14
	기 타	-	-	2	8	6	25	13	34	18	29
미 제		652	690	667	640	362	1,046	1,587	2,209	2,355	2,688

5. 행정소송

○ 전체 행정소송 사건 〈표 1-15〉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24,275	26,643	26,925	28,866	30,890	32,088	33,424	34,847	36,854	36,444
	구 수	12,599	13,728	14,003	14,900	16,821	16,608	16,920	19,400	21,346	20,289
	신 수	11,676	12,915	12,922	13,966	14,069	15,480	16,504	15,447	15,508	16,155
처리	계	10,503	12,576	12,058	11,919	14,080	15,055	13,875	13,118	16,071	13,091
	승 소	4,431	5,662	5,711	5,702	6,859	7,640	6,692	6,635	7,867	6,371
	패 소	1,404	1,548	1,444	1,463	1,644	1,514	1,607	1,601	2,047	1,865
	취하등	4,668	5,366	4,903	4,754	5,577	5,901	5,576	4,882	6,157	4,855
미 제		13,772	14,067	14,867	16,947	16,810	17,033	19,549	21,729	20,783	23,353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16〉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04	24,275 (11,676)	10,503	4,431	1,404	4,668	13,772
2005	26,643 (12,915)	12,576	5,662	1,548	5,366	14,067
2006	26,925 (12,922)	12,058	5,711	1,444	4,903	14,867
2007	28,866 (13,966)	11,919	5,702	1,463	4,754	16,947
2008	30,890 (14,069)	14,080	6,859	1,644	5,577	16,810
2009	32,088 (15,480)	15,055	7,640	1,514	5,901	17,033
2010	33,424 (16,504)	13,875	6,692	1,607	5,576	19,549
2011	34,847 (15,447)	13,118	6,635	1,601	4,882	21,729
2012	36,854 (15,508)	16,071	7,867	2,047	6,157	20,783
2013	36,444(16,155)	13,091	6,371	1,865	4,855	23,353

* 접수란 중 ( )는 신수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표 1-17〉

(단위 : 건)

유형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4,275	26,643	26,925	28,866	30,890	32,088	33,424	34,847	36,854	36,444
조 세 관 계	3,883	4,125	4,401	4,921	5,266	4,490	4,206	4,698	4,810	5,644
공 무 원 신 분	1,104	1,537	1,663	1,529	3,731	2,264	1,742	1,611	1,623	1,681
국 토 도 시 계 획	652	721	768	914	2,641	3,208	3,916	3,625	3,473	3,129
영업허가취소·정지	2,957	2,898	3,067	2,941	2,212	3,132	3,271	2,828	3,190	3,534
자격·면허·등록·인가	4,189	4,223	2,897	2,863	2,470	2,876	2,919	3,116	2,754	2,678
토 지 수 용	1,145	1,516	1,656	1,883	-	-	-	-	-	-
공 과 금	871	999	1,137	1,170	-	-	-	-	-	-
기 타	9,474	10,624	11,336	12,645	14,570	16,118	17,370	18,969	21,004	19,778

6. 국가배상

○ 전체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 〈표 1-18〉

(단위 : 건)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844	838	831	914	1,020	1,075	1,590	2,983	3,011	4,517
	구 수	295	207	204	258	193	267	229	443	938	885
	신 수	549	631	627	656	827	808	1,361	2,540	2,073	3,632
처리	계	637	634	573	721	752	927	1,162	2,058	2,127	3,299
	인 용	416	401	316	392	456	635	637	736	1,063	1,767
	기 각	199	183	211	295	249	236	426	1,222	944	1,424
	기 타	22	50	46	34	47	56	99	100	120	108
미 제		207	204	258	193	268	148	428	925	884	1,218

○ 국가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포함) 〈표 1-19〉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04	844 (549)	637	416	199	22	207
2005	838 (631)	634	401	183	50	204
2006	831 (627)	573	316	211	46	258
2007	914 (656)	721	392	295	34	193
2008	1,020 (827)	752	456	249	47	268
2009	1,075 (808)	927	635	236	56	148
2010	1,590 (1,361)	1,162	637	426	99	428
2011	2,983 (2,540)	2,058	736	1,222	100	925
2012	3,011 (2,073)	2,127	1,063	944	120	884
2013	4,517 (3,632)	3,299	1,767	1,424	108	1,218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사건 〈표 1-20〉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441	369	289	265	198	178	139	177	190	167
	구 수	188	94	89	130	59	70	40	57	61	53
	신 수	253	275	200	135	139	108	99	120	129	114
처리	계	347	280	159	206	127	144	78	114	137	111
	인 용	303	231	120	109	92	125	67	93	116	91
	기 각	33	27	25	83	28	11	6	15	16	19
	기 타	11	22	14	14	7	8	5	6	5	1
미 제		94	89	130	59	71	34	61	63	53	56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21〉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04	441 (253)	347	303	33	11	94
2005	369 (275)	280	231	27	22	89
2006	289 (200)	159	120	25	14	130
2007	265 (135)	206	109	83	14	59
2008	198 (139)	127	92	28	7	71
2009	178 (108)	144	125	11	8	34
2010	139 (99)	78	67	6	5	61
2011	177 (120)	114	93	15	6	63
2012	190 (129)	137	116	16	5	53
2013	167 (114)	111	91	19	1	56

* 접수란 중 ( )는 신수

○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표 1-22〉

(단위 : 건/천 원)

구분 / 연도	신 청 액	지 급 액		
		소 계	배상결정	판 결
2004	500 7,545,151	500 7,545,151	290 930,607	210 6,614,544
2005	410 20,592,073	410 20,592,073	231 1,052,515	179 19,539,558
2006	291 14,697,441	291 14,697,441	136 366,067	155 14,331,374
2007	377 76,171,534	377 76,171,534	198 3,406,443	179 72,765,091
2008	274 9,037,921	274 9,037,921	104 161,212	170 8,876,709
2009	450 63,374,994	450 63,374,994	281 1,438,035	169 61,936,959
2010	316 18,989,019	316 18,989,019	139 283,734	177 18,705,285
2011	468 80,764,951	468 80,764,951	140 433,565	328 80,331,386
2012	658 133,868,655	658 133,868,655	119 398,033	539 133,470,622
2013	421 57,388,717	421 57,388,717	119 272,736	302 57,115,981

7. 헌법재판 현황 〈표 1-23〉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05	계	2,069	1,330	46	16	-	12	18	591	78	-	513	693	739
	위헌법률	71	33	23	12	-	11	-	9	9	-	-	1	38
	헌법소원	1,982	1,295	23	4	-	1	18	581	69	-	512	691	687
	권한쟁의	16	2	-	-	-	-	-	1	-	-	1	1	14
2006	계	2,444	1,557	45	19	-	5	21	700	83	-	617	812	887
	위헌법률	55	33	10	9	-	1	-	11	11	-	-	12	22
	헌법소원	2,368	1,517	33	10	-	4	19	688	72	-	616	796	851
	권한쟁의	21	7	2	-	-	-	2	1	-	-	1	4	14
2007	계	2,658	1,731	47	8	-	11	28	727	62	-	665	957	727
	위헌법률	46	15	7	6	-	1	-	6	6	-	-	2	31
	헌법소원	2,593	1,712	40	2	-	10	28	721	56	-	665	951	881
	권한쟁의	19	4	-	-	-	-	-	-	-	-	-	4	15
2008	계	2,059	1,391	49	13	3	11	22	1,342	90	-	486	766	668
	위헌법률	59	23	9	7	-	2	-	14	14	-	-	-	36
	헌법소원	1,977	1,359	39	6	3	9	21	1,320	76	-	483	761	618
	권한쟁의	23	9	1	-	-	-	1	8	-	-	3	5	14
2009	계	2,155	1,545	61	28	1	11	21	329	117	-	212	1,155	610
	위헌법률	72	23	17	11	-	6	-	6	6	-	-	-	49
	헌법소원	2,057	1,511	39	17	1	5	16	323	111	-	212	1,149	546
	권한쟁의	26	11	5	-	-	-	5	-	-	-	-	6	15
2010	계	2,330	1,670	101	69	-	7	25	267	135	-	132	1,302	660
	위헌법률	148	113	67	62	-	5	-	14	14	-	-	32	35
	헌법소원	2,161	1,545	30	7	-	2	21	251	121	-	130	1,264	616
	권한쟁의	21	12	4	-	-	-	4	2	-	-	2	6	9
2011	계	2,226	1,428	68	29	7	5	27	283	168	-	115	1,077	798
	위헌법률	77	46	24	22	-	2	-	15	15	-	-	7	31
	헌법소원	2,137	1,375	43	7	7	3	26	265	153	-	112	1,067	762
	권한쟁의	12	7	1	-	-	-	1	3	-	-	3	3	5
2012	계	2,509	1,661	74	15	7	5	47	337	140	-	197	1,250	848
	위헌법률	53	21	9	9	-	-	-	7	7	-	-	5	32
	헌법소원	2,447	1,637	65	6	7	5	47	328	133	-	195	1,244	810
	권한쟁의	9	3	-	-	-	-	-	2	-	-	2	1	6
2013	계	2,328	1,585	71	25	-	3	43	372	147	-	225	1,142	743
	위헌법률	60	22	8	7	-	1	-	14	14	-	-	-	38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5	-	-	-	-	-	1	-	-	1	4	4
	헌법소원	2,258	1,558	63	18		2	43	357	133		224	1,138	700

* 2010년도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위헌 선고된 62건 중 14건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선고임.

8. 제55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총괄 현황 〈표 1-24〉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제1차시험 응시출원자	제1차시험 면제자	제1·2차시험 면제자
2013	사법시험	10,089	9,232	854	3
2012	사법시험	14,035	12,766	1,262	7
2011	사법시험	19,536	17,498	2,030	8
2010	사법시험	23,244	20,907	2,315	22
2009	사법시험	23,430	21,156	2,264	10
2008	사법시험	23,656	21,082	2,563	11
2007	사법시험	23,444	21,032	2,398	14
2006	사법시험	21,210	18,635	2,575	-
2005	사법시험	21,585	19,190	2,395	-
	군법시험	116	-	113	3
2004	사법시험	18,894	16,318	2,576	-
	군법시험[1)]	6,330	6,222[2)]	107	1

주 1) 군법시험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말함, 이하 같음.
2) 5,834명이 사법시험에도 동시 출원함.

○ 성별 출원 현황 〈표 1-25〉

(단위 : 명)

성별 /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사 법 시 험 (비율)	10,089	6,809 (67.49%)	3,280 (32.51%)

○ 연령별 출원 현황 〈표 1-26〉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사법시험 (비율)	4 (0.04%)	1,166 (11.56%)	3,419 (33.89%)	2,749 (27.25%)	1,429 (14.16%)	818 (8.11%)	309 (3.06%)	195 (1.21%)

○ 학력별 출원 현황 〈표 1-27〉

(단위 : 명)

학 력 / 시험구분	총 계	대학원 재학 이상	대학졸업	대학재학·중퇴	전문대 졸업·재학 등	고졸 이하
사법시험 (비율)	10,089	953 (9.45%)	5,681 (56.31%)	3,350 (33.20%)	24 (0.24%)	81 (0.80%)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표 1-28〉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사 법 시 험 (비 율)	10,089	8,050 (79.79%)	2,039 (20.21%)

나. 합격자 현황

○ 연도별 합격자 및 합격점 현황 〈표 1-29〉

(단위 : 명)

연도	시험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2013	사법시험	6,862	665	289.62	1,456	305	379.17	308	306
2012	사법시험	10,306	1,001	273.36	2,164	502	369.84	509	506
2011	사법시험	14,449	1,447	273.89	3,313	706	385.80	714	707
2010	사법시험	17,028	1,963	262.00	4,104	800	340.22	822	814
2009	사법시험	17,972	2,584	262.52	4,399	1,009	358.70	1,019	997
2008	사법시험	17,829	2,511	252.02	4,877	1,005	353.74	1,015	1,005
2007	사법시험	18,114	2,808	256.00	5,024	1,008	355.00	1,022	1,011
2006	사법시험	17,290	2,665	278.50	5,007	1,002	350.64	1,002	994
2005	사법시험	17,642	2,884	301.00	5,038	1,001	341.22	1,001	1,001
	군법시험	-	-	-	67	11	347.78	12	12
2004	사법시험	15,446	2,692	83.00	5,028	1,009	47.36	1,009	1,009
	군법시험	5,961[1)]	1,231	82.29	167	15	48.86	13	13

※ 합격점은 2004년 이전은 평균, 2005년 이후는 총점으로 표기

주) 1) 5,628명이 사법시험에도 동시 응시함.

○ 성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0〉

(단위 : 명)

성 별 /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사 법 시 험 (비율)	306	183 (59.80)	123 (40.20%)

○ 연령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1〉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사법시험 (비율)	45 (14.71%)	151 (49.35%)	83 (27.12%)	21 (6.86%)	6 (1.96%)	0 (0.00%)	0 (0.00%)

○ 학력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2〉

(단위 : 명)

학 력 / 시험구분	총 계	대학원 재학 이상	대학졸업	대학 재학·중퇴	전문대 졸업·재학 등	고졸 이하
사법시험 (비율)	306	26 (8.50%)	147 (48.04%)	133 (43.46%)	0	0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3〉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사 법 시 험 (비율)	306	248 (81.05%)	58 (18.95%)

○ 출신대학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4〉

(단위 : 명)

출 신 교	합격자수	출 신 교	합격자수
서 울 대 학 교	76	서 강 대 학 교	3
연 세 대 학 교	43	경 북 대 학 교	2
고 려 대 학 교	41	건 국 대 학 교	2
성 균 관 대 학 교	21	동 아 대 학 교	2
한 양 대 학 교	21	동 의 대 학 교	2
중 앙 대 학 교	16	전 북 대 학 교	1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5	충 남 대 학 교	1
부 산 대 학 교	13	광 운 대 학 교	1
동 국 대 학 교	9	국 민 대 학 교	1
경 희 대 학 교	7	단 국 대 학 교	1
경 찰 대 학 교	7	명 지 대 학 교	1
숙 명 여 자 대 학 교	6	숭 실 대 학 교	1
전 남 대 학 교	4	한 국 과 학 기 술 대 학	1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4	기 타 4 년 제 대 학	1
서 울 시 립 대 학 교	3	총 계	306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응시원서 기재 기준임.

제 2 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표 2-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2,656,611	2,439,002	2,467,522	2,612,622	2,797,436	2,891,156	2,464,629	2,333,951	2,401,107	2,474,033
	구수		49,893	54,389	65,985	64,612	64,251	61,599	71,012	65,803	74,547	84,196
	신수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2,733,185	2,829,557	2,393,617	2,268,148	2,326,560	2,389,837
처리	계		2,602,171	2,373,846	2,402,972	2,548,883	2,736,064	2,820,395	2,398,903	2,259,500	2,316,969	2,389,660
	기소	소계	1,370,339	1,145,597	1,094,113	1,217,284	1,316,987	1,196,776	1,014,753	917,335	902,552	910,158
		구공판	155,609	128,338	137,790	155,704	166,641	172,353	160,318	182,436	196,484	182,322
		구약식	1,214,730	1,017,259	956,323	1,061,580	1,150,346	1,024,423	854,435	734,899	706,068	727,836
	불기소	소계	1,158,195	1,152,298	1,226,617	1,224,947	1,303,386	1,478,448	1,253,218	1,203,587	1,257,938	1,297,033
		무혐의	270,926	272,689	286,209	269,918	275,399	316,341	288,360	280,482	304,120	315,513
		기소유예	292,386	291,484	322,056	331,456	370,031	471,680	374,422	359,305	357,854	338,628
		기소중지	195,746	164,500	175,754	159,493	161,525	159,481	129,818	123,232	147,858	185,052
		참고인중지	32,436	29,455	33,856	26,120	23,071	22,698	18,576	17,740	17,710	17,582
		각하	65,141	59,501	65,924	61,164	70,044	86,126	71,665	67,423	83,974	87,987
		기타	301,560	334,669	342,818	376,796	403,316	422,122	370,377	355,405	346,422	352,271
	이송	소년보호	16,315	16,896	18,227	27,004	29,653	33,951	32,274	33,233	37,253	29,992
		가정보호	5,224	4,476	4,201	4,738	4,837	4,585	3,222	3,039	3,753	6,414
		타관	52,041	54,274	59,430	74,509	80,795	106,032	95,189	102,087	115,214	145,830
		성매매보호	57	305	384	401	406	603	247	219	259	233
미제			54,440	65,156	64,550	63,739	61,372	70,761	65,726	74,451	84,138	84,373

나. 청별 사건 <표 2-2>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2,733,185	2,829,557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서울중앙	197,226	199,091	210,729	223,277	219,631	243,434	199,361	190,118	184,574	183,105
서울동부	92,390	88,091	86,820	86,367	90,153	103,420	82,924	75,844	77,063	78,169
서울남부	103,923	100,824	109,375	112,672	120,316	126,277	102,752	103,816	103,313	100,572
서울북부	100,825	97,340	94,688	97,763	102,151	107,823	89,070	87,418	80,196	86,491
서울서부	74,271	71,746	76,695	75,619	79,185	86,776	67,893	65,026	64,295	69,321
의정부	82,023	76,612	78,362	79,267	98,746	103,047	83,470	77,549	82,393	87,021
고양	45,311	45,497	45,684	55,642	67,576	65,131	51,317	49,437	52,782	56,961
인천	150,110	143,333	152,030	152,873	157,700	165,670	137,107	123,444	133,871	139,475
부천	46,381	49,834	49,510	52,618	63,999	61,919	50,931	49,460	52,915	53,972
수원	143,635	124,997	128,070	133,116	180,536	148,537	107,479	106,624	114,135	119,807
성남	59,303	53,291	54,408	61,826	74,718	73,512	56,297	53,956	56,576	60,269
여주	20,406	17,035	17,724	18,962	21,351	22,747	19,553	17,497	17,600	19,137
평택	28,190	25,180	26,040	29,336	30,651	32,577	29,541	30,922	30,888	31,973
안산	67,490	66,052	69,102	75,336	85,432	82,611	66,551	68,829	67,886	70,573
안양	-	-	-	-	41,122	41,122	37,494	38,528	40,836	41,395
춘천	20,572	20,050	19,500	20,147	19,035	21,721	19,643	19,264	19,895	22,126
강릉	26,624	20,781	20,955	23,514	22,402	22,740	19,620	17,384	17,794	17,736
원주	18,745	18,675	18,948	20,797	19,891	19,860	18,781	18,604	20,927	19,976
속초	10,064	9,303	9,638	8,692	8,113	7,908	7,312	6,778	7,308	7,518
영월	10,677	10,570	9,573	9,130	10,273	9,367	8,017	8,289	9,010	8,299
대전	81,197	74,502	68,754	73,372	75,574	77,299	73,220	62,516	64,623	67,572
홍성	22,396	20,399	17,052	16,175	17,797	17,200	15,894	13,074	12,971	13,773
공주	7,611	7,112	6,043	6,474	7,084	6,410	6,001	5,222	5,456	5,772
논산	12,135	11,543	10,672	10,399	10,003	9,476	8,383	7,836	7,971	8,728
서산	19,067	16,365	13,836	16,029	15,548	17,926	17,264	14,443	16,433	17,688
천안	35,186	34,920	35,911	37,600	38,069	38,269	33,532	34,386	36,999	38,163
청주	50,522	43,834	45,232	47,866	50,620	49,035	43,014	36,870	39,015	40,919
충주	15,493	12,737	12,992	14,077	14,933	16,626	15,256	13,100	14,128	13,489
제천	8,967	7,675	7,426	8,174	8,532	8,629	7,796	7,466	6,886	7,691
영동	4,828	5,219	4,513	4,265	4,487	4,032	3,595	3,220	3,414	3,316

검찰청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 구	182,948	158,282	151,274	119,727	111,830	117,099	100,286	100,006	101,075	94,367
안 동	16,197	13,690	13,710	14,348	15,598	14,794	13,298	12,044	13,404	12,745
경 주	16,537	14,031	13,108	15,042	14,697	14,934	12,700	12,201	13,256	14,377
포 항	32,736	24,865	24,024	26,434	28,130	27,872	29,027	22,593	23,231	25,424
김 천	29,299	24,575	25,017	25,470	25,608	25,315	26,007	24,177	25,732	27,104
상 주	10,982	7,918	8,137	8,318	8,852	8,638	7,826	7,686	7,634	7,724
의 성	6,259	4,483	3,929	4,413	4,209	5,036	4,756	3,897	3,796	4,056
영 덕	6,859	5,261	4,520	4,701	4,666	4,651	4,071	3,307	3,726	3,913
대 구 서 부	-	-	-	49,821	60,982	58,867	51,043	47,390	47,703	47,116
부 산	155,429	136,488	141,139	155,177	165,563	170,938	133,659	122,481	133,132	135,847
동 부	48,651	39,647	42,036	49,209	55,840	53,642	41,329	40,509	43,464	44,037
울 산	76,836	62,178	63,529	65,892	68,524	71,193	63,233	58,498	60,683	67,016
창 원	81,087	75,611	73,730	85,191	95,867	92,414	80,675	71,063	48,574	54,548
진 주	29,007	23,222	23,583	27,058	28,112	30,482	26,566	24,216	22,829	22,730
통 영	22,168	19,627	19,920	22,194	23,408	25,522	23,874	21,727	22,008	22,604
밀 양	7,889	6,402	6,727	7,086	7,001	7,241	6,608	6,583	6,782	6,341
거 창	6,392	5,385	5,218	5,722	5,859	6,637	5,322	4,915	5,091	5,046
마 산	-	-	-	-	-	-	-	9,394	19,111	19,963
광 주	105,932	94,530	88,170	92,148	92,814	95,628	91,213	90,173	94,790	97,246
목 포	25,927	24,171	24,604	26,430	27,242	28,537	26,106	23,022	23,895	25,656
장 흥	3,729	3,573	3,079	3,849	3,728	3,680	3,516	3,529	3,187	3,233
순 천	46,580	44,468	42,833	44,851	43,869	46,214	42,613	39,803	40,558	39,768
해 남	7,822	6,731	6,987	7,996	7,606	8,017	7,014	6,884	6,879	7,263
전 주	44,680	39,601	41,664	40,681	40,409	42,197	38,626	35,704	40,733	37,598
군 산	33,297	29,162	28,910	29,635	29,456	32,348	30,284	28,424	30,632	27,495
정 읍	11,138	10,980	10,431	9,751	9,706	9,658	9,223	8,868	8,632	8,624
남 원	6,782	5,402	5,198	5,901	5,855	5,391	5,221	4,832	5,077	4,643
제 주	35,987	31,902	29,778	29,580	33,248	31,511	30,549	27,302	28,793	32,346

다. 고소·고발 사건 <표 2-3>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899,308	840,666	850,634	789,885	808,718	843,993	711,513	664,971	724,116	758,785
	구수		34,251	38,255	45,104	41,484	40,942	36,754	43,031	41,621	47,077	58,920
	신수		865,057	802,411	805,530	748,401	767,776	807,239	668,482	623,350	677,039	699,865
처리	계		861,063	796,415	809,234	749,492	772,169	801,239	670,158	618,034	665,687	699,795
	기소	소계	257,844	216,882	217,016	213,897	209,894	198,025	169,257	140,388	149,723	158,071
		구공판	45,474	37,188	38,145	38,718	40,107	42,613	39,089	36,428	38,088	43,723
		구약식	212,370	179,694	178,871	175,179	169,787	155,412	130,168	103,960	111,635	114,348
	불기소	소계	562,546	537,742	550,122	489,700	514,758	544,881	445,577	418,441	449,344	461,758
		무혐의	213,354	207,570	216,939	186,666	178,429	191,184	170,879	161,287	167,592	167,470
		기소유예	36,175	39,722	40,296	38,169	53,918	72,981	50,770	40,195	44,070	41,160
		기소중지	144,428	107,705	104,800	82,960	77,602	74,009	62,639	64,215	73,812	84,669
		기타	139,839	157,287	188,087	181,905	204,809	206,707	161,289	152,744	163,870	168,459
	이송	소년보호	1,054	842	1,107	1,641	1,808	1,788	1,991	2,232	2,199	1,573
		가정보호	607	542	615	684	624	644	574	503	549	626
		타관	39,012	40,402	40,374	43,566	45,082	55,901	52,758	56,470	63,872	77,767
		성매매보호	-	5	-	4	3	-	1	-	-	-
미제			38,245	44,251	41,400	40,393	36,549	42,754	41,355	46,937	58,429	58,990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병역사범 〈표 2-4〉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53,727	44,891	40,158	37,676	31,633	30,496	24,989	23,426	26,034	33,626
	구수		229	253	348	150	249	152	210	58	81	155
	신수		53,498	44,638	39,810	37,526	31,384	30,344	24,779	23,368	25,953	33,471
처리	계		53,473	44,548	40,007	37,429	31,481	30,292	24,882	23,345	25,888	33,461
	기소	소계	31,554	25,599	21,962	21,554	18,512	17,855	14,441	13,781	15,764	20,003
		구공판	3,067	2,732	2,329	2,140	1,652	1,741	1,633	1,675	1,627	1,834
		구약식	28,487	22,867	19,633	19,414	16,860	16,114	12,808	12,106	14,137	18,169
	불기소	소계	20,964	25,599	17,223	14,936	11,769	11,297	9,588	8,789	9,129	11,973
		무혐의	1,018	740	584	511	454	408	692	383	367	405
		기소유예	1,578	1,443	1,166	1,079	923	1,115	1,204	1,096	1,309	1,493
		기소중지	16,319	11,794	11,386	9,141	7,965	7,454	6,277	6,596	6,968	6,823
		기타	2,049	3,801	4,087	4,205	2,427	2,320	1,415	714	485	3,252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관	955	1,171	822	939	1,200	1,140	853	775	995	1,485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제			254	343	151	247	152	204	107	81	146	165

○ 경제사범 〈표 2-5〉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162,418	148,873	165,868	131,248	188,229	191,296	117,265	116,642	129,450	124,139
	구수		6,564	7,772	9,558	8,392	7,011	7,008	8,068	6,117	9,117	11,246
	신수		155,854	141,101	156,310	122,856	181,218	184,288	109,197	110,525	120,333	112,893
처리	계		155,390	140,436	158,203	124,785	181,216	183,779	110,300	108,529	119,048	114,372
	기소	소계	74,580	57,082	62,269	38,341	38,626	36,536	31,558	28,269	27,697	26,896
		구공판	14,764	12,040	13,692	12,059	11,026	10,844	9,581	9,090	8,277	8,479
		구약식	59,816	45,042	48,577	26,282	27,600	25,692	21,977	19,179	19,420	18,417
	불기소	소계	72,989	74,925	86,917	77,398	133,326	135,661	68,121	68,975	77,534	72,154
		무혐의	17,972	20,659	24,041	17,981	17,314	20,470	17,879	15,370	16,788	17,072
		기소유예	7,802	7,390	11,671	9,568	23,872	33,553	13,292	13,808	16,240	15,578
		기소중지	13,461	11,500	12,198	9,080	8,663	9,110	6,433	6,531	7,787	7,834
		기타	33,754	35,376	39,007	40,769	83,477	72,528	30,517	33,266	36,719	31,670
	이송	소년보호	136	121	136	284	455	492	558	808	759	833
		가정보호	-	-	2	-	-	-	-	-	-	-
		타관	7,685	8,308	8,879	8,762	8,809	11,090	10,063	10,477	13,058	14,489
		성매매	-	-	-	-	-	-	-	-	-	-
미제			7,028	8,437	7,665	6,463	7,013	7,517	6,965	8,113	10,402	9,767

○ 폭력사범 〈표 2-6〉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486,805	473,440	452,837	469,775	466,857	466,893	412,888	408,396	427,029	407,284
	구수		8,529	7,855	9,323	8,519	8,775	7,805	8,622	8,408	8,811	8,963
	신수		478,276	465,585	443,514	461,256	458,082	459,088	404,266	399,988	418,218	398,321
처리	계		479,495	464,547	444,652	461,171	459,244	458,671	404,573	400,235	418,265	399,869
	기소	소계	183,027	169,145	156,210	156,310	150,904	144,890	126,628	123,839	125,433	114,961
		구공판	24,317	18,940	18,096	22,049	23,279	23,360	20,677	19,726	22,496	25,799
		구약식	158,710	150,205	138,114	134,270	127,625	121,530	105,951	104,113	102,937	89162
	불기소	소계	281,258	281,539	274,528	286,485	289,118	293,347	260,498	257,627	269,504	263,823
		무혐의	32,768	33,023	33,942	33,914	34,386	35,686	33,835	32,836	35,343	34,033
		기소유예	146,498	141,827	127,216	120,745	114,669	111,749	91,686	83,729	83,948	70,644
		기소중지	7,810	6,534	6,210	5,977	5,652	5,897	5,285	5,528	10,401	20,157
		기타	94,182	100,155	107,160	125,849	134,411	140,015	129,692	135,534	139,812	138,989
	이송	소년보호	6,109	6,001	6,225	9,567	10,737	10,974	9,569	10,150	12,473	7,593
		가정보호	5,173	4,424	4,027	4,498	4,617	4,384	3,067	2,897	3,605	6,170
		타관	3,928	3,438	3,662	4,302	3,868	5,074	4,811	5,722	7,250	7,322
		성매매	-	-	-	-	-	-	-	-	-	-
미제			7,310	8,893	8,185	8,604	7,613	8,222	8,315	8,161	8,764	7,415

○ 흉악사범 〈표 2-7〉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18,081	15,926	17,430	16,831	17,529	19,822	16,071	15,079	19,798	18,855
	구수		577	694	632	811	591	747	828	653	1,010	993
	신수		17,504	15,232	16,798	16,020	16,938	19,075	15,248	14,426	18,788	17,862
처리	계		17,356	15,305	16,606	16,199	16,675	18,899	15,336	14,433	18,789	17,391
	기소	소계	7,977	6,908	6,961	6,207	6,631	6,905	5,337	4,745	7,178	6,681
		구공판	7,930	6,852	6,868	6,140	6,559	6,860	5,319	4,739	6,926	6,403
		구약식	47	56	93	67	72	45	18	6	252	278
	불기소	소계	7,772	7,109	8,011	8,309	8,303	9,391	8,114	8,041	9,199	8,714
		무혐의	2,589	2,496	2,615	2,705	2,569	3,664	3,044	2,359	3,347	3,482
		기소유예	928	928	953	909	853	1,069	763	720	1,006	936
		기소중지	842	734	664	614	619	760	509	532	819	962
		기타	3,413	2,951	3,779	4,081	4,262	3,898	3,925	4,430	4,027	3,334
	이송	소년보호	977	760	1,031	956	1,032	1,152	683	574	1,145	673
		가정보호	9	6	7	10	12	14	8	5	22	24
		타관	621	522	596	717	697	1,437	1,067	1,068	1,245	1,299
		성매매	-	-	-	-	-	-	-	-	-	-
미제			725	621	824	632	854	923	735	646	1,009	1,464

○ 교통사범 〈표 2-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1,030,045	869,426	788,805	899,438	988,763	848,990	745,161	629,998	650,966	654,364
	구수		2,713	1,947	2,286	2,224	2,360	2,210	2,606	1,281	2,689	1,960
	신수		1,027,332	867,479	786,519	897,214	986,403	846,780	742,555	628,717	648,277	652,404
처리	계		1,028,135	867,187	786,550	897,109	986,554	846,383	742,704	627,311	648,985	652,063
	기소	소계	776,462	615,667	542,107	639,714	723,371	553,305	477,521	407,817	394,315	388,961
		구공판	34,970	28,043	27,055	33,204	37,054	36,260	42,565	69,436	82,244	51,890
		구약식	741,492	587,624	515,052	606,510	686,317	517,045	434,956	338,381	312,071	337,071
	불기소	소계	244,881	24,421	236,948	245,962	251,711	281,683	254,676	208,819	243,731	253,597
		무혐의	25,523	27,192	24,237	26,151	31,694	39,045	31,683	19,386	44,250	53,248
		기소유예	47,090	49,954	49,926	56,410	60,598	74,004	64,894	42,239	54,666	55,688
		기소중지	25,696	26,211	24,798	22,279	20,085	15,718	11,126	8,511	9,992	11,857
		기타	146,572	141,064	137,987	141,122	139,334	152,916	146,973	138,683	134,823	132,804
	이송	소년보호	4,341	4,942	5,566	8,694	8,339	8,046	7,622	7,130	7,258	5,813
		가정보호	4	1	2	5	1	2	-	1	3	-
		타관	2,447	2,156	1,927	2,734	3,132	3,347	2,885	3,544	3,678	3,692
		성매매	-	-	-	-	-	-	-	-	-	-
미제			1,910	2,239	2,255	2,329	2,209	2,607	2,457	2,687	1,981	2,301

마. 주요신분별 사건

○ 소년사범 〈표 2-9〉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93,963	86,968	93,746	117,098	134,246	135,081	106,096	105,225	120,191	102,117
	구 수			987	954	1,103	963	1,174	926	1,063	1,117	1,069	1,282
	신 수			92,976	86,014	92,643	116,135	133,072	134,155	105,033	104,108	119,122	100,835
처리	계			93,052	85,904	92,789	115,990	133,320	134,053	104,998	104,201	118,714	101,148
	기소	소 계		21,125	15,197	13,290	13,853	11,232	7,936	6,855	7,262	8,475	8,084
		구 공 판		5,473	4,252	3,875	4,506	4,449	4,295	3,572	4,150	5,315	5,195
		구 약 식		15,652	10,945	9,415	9,347	6,783	3,641	3,283	3,112	3,160	2,889
	불기소	소 계		54,499	52,666	59,624	71,958	89,275	88,343	61,948	59,317	66,766	55,271
		무 혐 의		3,503	3,233	3,313	4,075	4,288	4,522	5,060	4,865	6,174	5,699
		기소유예		41,619	41,076	47,435	57,041	60,994	57,951	45,313	41,720	44,349	34,866
		기소중지		3,199	2,310	2,475	2,114	2,021	1,564	1,562	1,816	2,537	5,350
		기 타		6,178	6,047	6,401	8,728	21,972	24,306	10,013	10,916	13,706	9,356
	이송	소년보호		16,160	16,814	18,157	26,950	29,561	33,871	32,227	33,186	37,193	29,936
		가정보호		38	16	32	29	20	32	10	14	19	36
		타 관		1,230	1,194	1,668	3,148	3,189	3,855	3,948	4,412	6,257	7,820
		성 매 매		8	17	18	52	43	16	10	10	4	1
미 제				311	1,064	957	1,108	926	1,028	1,098	1,024	1,477	969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 (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학생사범 〈표 2-10〉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64,227	58,545	59,214	70,188	77,288	82,680	39,811	1,142	2,194	5,515
	구 수			549	565	751	716	673	647	652	35	26	123
	신 수			63,678	57,980	58,463	69,472	76,615	82,033	39,159	1,107	2,168	5,392
처리	계			63,688	57,837	58,523	69,522	76,642	82,060	39,776	1,118	2,077	5,454
	기소	소 계		15,550	11,329	8,648	8,995	8,205	7,305	5,012	69	152	215
		구 공 판		1,688	1,342	1,135	1,390	1,362	1,418	825	13	69	147
		구 약 식		13,862	9,987	7,513	7,605	6,843	5,887	4,187	56	83	68
	불기소	소 계		39,008	37,252	40,225	46,507	54,754	58,853	26,382	736	1,307	3,429
		무 혐 의		2,540	2,422	2,506	2,946	3,362	3,479	2,315	45	142	344
		기소유예		30,916	30,027	32,915	37,639	39,828	40,271	19,487	580	841	2,425
		기소중지		152	134	174	170	219	262	160	8	71	125
		기 타		5,400	4,669	4,630	5,752	11,345	14,841	4,420	103	253	535
	이송	소년보호		8,621	8,817	9,019	12,911	12,502	14,284	7,463	279	529	1,473
		가정보호		19	12	23	23	16	18	4	-	-	2
		타 관		490	423	606	1,081	1,158	1,597	914	34	89	335
		성 매 매		1	4	2	5	7	3	1	-	-	-
미 제				539	708	691	666	646	620	35	24	117	61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표 2-1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4,639	5,828	5,701	7,612	6,662	8,126	9,873	6,669	6,636	8,968
	구수		566	585	666	575	660	527	736	870	720	827
	신수		4,073	5,243	5,035	7,037	6,002	7,599	9,137	5,799	5,916	8,141
처리	계		4,238	5,398	5,304	7,229	6,307	7,685	9,249	6,140	6,148	8,269
	기소	소계	523	516	359	388	389	525	781	528	423	337
		구공판	450	339	282	327	331	402	588	392	375	285
		구약식	73	177	77	61	58	123	193	136	48	52
	불기소	소계	3,397	4,600	4,741	6,495	5,615	6,835	8,044	5,310	5,376	7,500
		무혐의	1,706	1,890	2,029	2,023	2,121	2,052	2,405	2,128	2,349	2,553
		기소유예	226	302	176	236	147	175	978	394	165	133
		기소중지	4	7	7	18	11	28	35	12	24	53
		기타	1,461	2,401	2,529	4,218	3,336	4,580	4,626	2,776	2,838	4,761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318	282	204	346	303	325	424	302	349	432
		성매매	-	-	-	-	-	-	-	-	-	-
미제			401	430	397	383	355	441	624	529	488	699

○ 외국인 사건 〈표 2-12〉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13,045	13,836	17,790	23,641	34,962	39,871	34,635	37,143	33,121	35,281
	구수		224	252	411	290	854	885	1,049	690	757	821
	신수		12,821	13,584	17,379	23,351	34,108	38,986	33,586	36,453	32,364	34,460
처리	계		12,830	13,449	17,535	22,846	34,078	38,870	33,976	36,436	32,365	34,561
	기소	소계	5,534	5,547	5,166	8,749	13,263	14,495	11,846	13,999	12,584	13,965
		구공판	2,050	2,317	1,736	2,796	3,429	3,353	2,066	2,160	2,208	2,451
		구약식	3,484	3,230	3,430	5,953	9,834	11,142	9,780	11,839	10,376	11,514
	불기소	소계	7,013	7,667	11,849	12,793	18,656	22,464	20,583	20,895	18,441	19,093
		무혐의	838	795	1,008	1,554	3,043	3,053	2,823	3,003	3,040	3,410
		기소유예	3,944	4,081	6,142	6,416	8,434	12,339	8,848	10,035	7,950	7,227
		기소중지	1,034	1,456	1,697	2,861	4,295	3,210	4,721	3,163	3,026	3,405
		기타	1,197	1,335	3,002	1,962	2,884	3,862	4,191	4,694	4,425	5,051
	이송	소년보호	3	4	9	15	17	10	21	25	29	38
		가정보호	3	9	10	29	39	50	22	41	39	96
		타관	277	220	501	1,254	2,097	1,838	1,499	1,471	1,266	1,366
		성매매	-	2	-	6	6	13	5	5	6	3
미제			215	387	255	795	884	1,001	659	707	756	720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표 2-13〉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 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08	건	339	314	234	25	40	169	105	78(46.1%)	183
	명	375	350	261	25	44	192	114	85(44.3%)	199
'09	건	364	336	258	28	82	148	106	73(49.3%)	179
	명	455	427	325	28	103	194	130	79(40.7%)	209
'10	건	419	393	316	20	131	165	103	102(61.8%)	205
	명	491	465	380	20	148	212	111	111(52.4%)	222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2. 구속영장 발부 등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표 2-14〉

(단위 : 명)

연도 \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04	계	119,985	19,335	14,960	85,633	879	83,259	79,258	77,421	1,837	2,343	4,001	610	9	243	3,139
	검사	8,181	-	1,093	7,097	-	6,730	6,690	6,676	14	5	40	25	1	1	13
	사경	111,804	19,335	13,867	78,536	879	76,529	72,568	70,745	1,823	2,338	3,961	585	8	242	3,126
'05	계	85,671	12,076	9,726	63,869	777	62,768	59,674	58,520	1,154	1,632	1,462	623	4	270	565
	검사	6,736	-	940	5,796	-	5,392	5,316	5,303	13	6	70	64	1	2	3
	사경	78,935	12,076	8,786	58,073	777	57,376	54,358	53,217	1,141	1,626	1,392	559	3	268	562
'06	계	71,408	9,643	10,214	51,482	506	49,953	47,943	47,361	582	1,031	979	357	13	175	434
	검사	6,664	-	1,150	5,497	-	5,080	4,999	4,987	12	2	79	61	4	4	10
	사경	64,744	9,643	9,064	45,985	506	44,873	42,944	42,374	570	1,029	900	296	9	171	424
'07	계	67,801	8,890	12,891	46,062	795	45,001	43,332	42,963	369	949	672	239	8	157	268
	검사	5,901	-	1,270	4,653	-	4,266	4,218	4,209	9	3	41	34	-	1	6
	사경	61,900	8,890	11,621	41,409	795	40,735	39,114	38,754	360	946	631	205	8	156	262
'08	계	64,534	7,648	13,785	43,032	263	41,557	40,293	40,049	244	763	462	135	3	119	205
	검사	6,526	-	1,496	4,996	-	4,590	4,556	4,551	5	2	31	24	1	1	5
	사경	58,008	7,648	12,289	38,036	263	36,967	35,737	35,498	239	761	431	111	2	118	200
'09	계	65,903	8,835	14,159	42,727	49	42,181	40,895	40,675	220	728	514	112	14	155	233
	검사	6,573	-	1,521	5,014	-	4,686	4,657	4,651	6	6	20	11	2	1	6
	사경	59,330	8,835	12,638	37,713	49	37,495	36,238	36,024	214	722	494	101	12	154	227
'10	계	50,396	7,032	10,332	32,516	13	31,078	30,093	29,941	152	560	425	66	19	137	203
	검사	6,670	-	1,610	4,728	-	4,539	4,506	4,498	8	8	25	6	5	6	8
	사경	43,726	7,032	8,722	27,788	13	26,539	25,587	25,443	144	552	400	60	14	131	195
'11	계	44,125	5,562	8,970	28,814	-	28,831	28,134	28,016	118	313	384	40	27	90	227
	검사	6,944	-	1,693	4,505	-	4,413	4,373	4,362	11	3	37	11	8	3	15
	사경	37,181	5,562	7,277	24,309	-	24,418	23,761	23,654	107	310	347	29	19	87	212
'12	계	41,270	6,202	7,195	27,327	-	27,948	27,429	27,333	96	258	261	38	31	87	105
	검사	6,873	-	1,711	4,618	-	4,421	4,398	4,381	17	1	22	4	14	1	3
	사경	34,397	6,202	5,484	22,709	-	23,527	23,031	22,952	79	257	239	34	17	86	102
'13	계	38,766	5,655	5,914	26,716	-	28,298	28,040	27,953	87	118	140	33	42	65	82
	검사	7,327	-	1,769	5,075	-	5,476	5,440	5,424	16	-	36	1	32	3	5
	사경	31,439	5,655	4,145	21,641	-	22,822	22,600	22,529	71	118	104	32	10	62	77

3. 구속적부심사 〈표 2-15〉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8,374	5,730	4,520	3,943	3,663	3,469	2,643	2,293	2,052	1,746
	구 수	1	-	-	-	-	-	-	-	-	-
	신 수	8,373	5,730	4,520	3,943	3,663	3,469	2,643	2,293	2,052	1,746
처리	계	8,374	5,730	4,520	3,943	3,663	3,469	2,643	2,293	2,052	1,717
	석 방	4,116	2,676	2,015	1,727	1,417	1,230	831	609	439	304
	기 각	4,004	2,941	2,436	2,174	2,189	2,192	1,778	1,652	1,573	1,379
	취 하	254	113	69	42	57	47	34	32	40	34
심 사 중		-	-	-	-	-	-	-	-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 고 〈표 2-16〉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25,009	29,057	36,262	36,400	33,970	37,693	41,505	39,890	45,933	48,642
	구 수	1,738	1,866	3,038	2,768	2,067	2,463	3,312	3,419	3,327	3,447
	신 수	23,271	27,191	33,224	33,632	31,903	35,230	38,193	36,471	42,606	45,195
처리	계	23,138	26,036	33,499	34,410	31,507	34,024	38,094	36,554	42,487	45,312
	기 소 명 령	138	46	38	58	33	20	74	98	348	176
	재기수사명령	2,732	2,481	2,985	2,988	3,390	3,211	2,562	2,671	2,781	3,060
	주문변경명령	75	57	28	38	40	32	65	96	177	103
	항 고 기 각	17,367	20,058	25,535	26,527	23,100	25,989	31,713	30,284	36,265	37,736
	각 하	2,826	3,394	4,913	4,799	4,944	4,772	3,680	3,405	2,916	4,237
미 제		1,871	3,021	2,763	1,990	2,463	3,669	3,411	3,336	3,446	3,330

○ 재항고 〈표 2-17〉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계	11,042	12,694	16,989	17,336	5,835	5,415	4,828	4,867	5,818	2,650
	구 수	1,663	1,423	1,990	1,896	547	1,126	1,499	1,062	1,683	1,109
	신 수	9,379	11,271	14,999	15,440	5,288	4,289	3,329	3,805	4,135	1,541
처리	계	9,627	10,717	15,093	16,789	4,709	3,916	3,766	3,184	4,705	1,732
	기 소 명 령	1	-	6	1	-	1	-	-	-	-
	재기수사명령	242	314	465	570	187	137	120	161	262	72
	주문변경명령	1	-	4	1	-	-	-	-	-	-
	항 고 기 각	8,885	9,772	12,666	14,808	1,990	525	742	703	828	928
	각 하	498	631	1,952	1,409	2,532	3,253	2,904	2,320	3,615	732
미 제		1,415	1,977	1,896	547	1,126	1,499	1,062	1,683	507	918

○ 재정신청 〈표 2-1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심 사 중		659	621	673	831	2,433	4,076	5,061	7,168	386	14,688
접수	계	1,199	843	914	754	11,567	12,146	14,861	14,129	15,829	18,884
	공소제기명령	-	-	1	-	-	-	4	-	-	-
	고 법 송 부	1,199	843	903	754	11,565	12,142	14,854	14,129	15,828	18,884
	신 청 취 소	-	-	10	-	2	4	3	-	1	-
처리	계	1,034	881	850	596	9,132	10,499	13,843	12,048	12,773	14,419
	신 청 기 각	1,027	876	838	585	8,898	10,293	13,507	11,810	12,511	14,231
	공소제기결정	1	-	5	-	119	116	216	133	140	118
	신 청 취 소	6	5	7	11	115	90	120	105	122	70

5. 형의 집행

○ 사형집행 〈표 2-19〉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집행인원	23	23	-	-	-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9	-	2	5	2	-	4	-	6	-	-	-	-	-

○ 벌과금 집행 〈표 2-20〉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 분 금 액				집행미제액
		현금수입	유치집행	기타처분금액	계	
2004	4,066,401,547	1,442,144,989	562,439,768	269,614,271	2,274,199,028	1,792,202,519
2005	27,232,129,465	1,363,424,727	546,413,530	288,907,155	2,198,745,412	25,033,384,053
2006	45,359,938,203	1,230,203,739	545,421,776	18,279,156,740	20,054,782,255	25,305,155,948
2007	28,700,168,159	1,360,820,099	1,155,739,342	252,755,118	2,769,314,559	25,930,853,600
2008	30,976,405,243	1,560,488,715	3,083,700,280	586,861,144	5,231,050,139	25,745,355,104
2009	31,246,323,901	1,565,687,001	3,522,154,830	285,767,272	5,373,609,103	25,872,714,798
2010	31,517,871,678	1,407,365,718	3,766,487,989	343,010,741	5,516,864,448	26,001,007,230
2011	31,073,582,198	1,361,572,755	3,368,067,506	224,503,974	4,954,099,235	26,119,482,963
2012	30,812,230,452	1,411,087,487	2,942,151,763	298,592,708	4,651,831,958	26,160,398,494
2013	30,255,449,022	1,478,847,909	2,506,116,854	241,993,274	4,226,958,037	26,028,490,987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유치집행금액은 유치(사회봉사)집행액과 유치(사회봉사)집행중인 금액의 합계액
※ 기타 처분금액은 집행불능 결정, 집행정지,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표 2-21〉

(단위 : 명)

구분 / 실시일자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감형	특별감형	일반복권	특별복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비 고
'81. 1. 23.	-	-	-	12 (12)	-	-	-	
'81. 1. 31.	대통령령 10194호	-	-	-	-	-	-	징계공무원
'81. 3. 3.	-	2,417 (898)	-	646 (214)	-	167 (167)	-	12대 대통령취임
'81. 4. 3.	-	58 (58)	-	23 (214)	-	2 (2)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81. 5. 11.	-	60 (60)	-	-	-	5 (5)	-	석가탄신일
'81. 8. 15.	-	62 (22)	-	4	-	-	-	8·15 광복절
'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3대 대통령취임 1주년
'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90. 4. 12.	-	1	-	-	-	-	-	김현희
'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91. 5. 25.	-	-	-	30 (9)	-	-	-	
'91. 12. 24.	-	1	-	-	-	1	-	
'92. 12. 24.	-	9	-	1	-	12	2	

구분 / 실시일자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감형	특별감형	일반복권	특별복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비 고
'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 공무원
'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96. 8. 15.	-	-	-	-	-	5	6	광복51주년 경축
'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50주년 경축
'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등감면 4,810,000명
'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 8. 15.	-	46	-	19	-	27	50	광복61년경축(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08. 1. 1.	-	8	-	14	-	18	35	
'08. 6. 4.	-	119	-	31	-	-	-	새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명)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09. 8. 15.	-	1,947	-	375	-	7,145	-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09. 12. 31.	-	1	-	-	-	-	-	
'10. 8. 15.	-	2,431	-	15	-	2,406	-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 1. 12.	-	595	-	185	-	165	-	
'13. 1. 31.	-	34	-	3	-	18	-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표 2-22〉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640,500	1,969,848	2,169,848	2,367,112	2,367,112	4,213,780	3,961,348	4,080,000	7,972,000	11,000,000
보상인원	326	243	291	259	285	342	5,155	15,116	39,519	29,015
지급금액	3,109,306	2,390,000	2,448,000	2,323,000	6,082,103	10,610,675	17,362,009	22,565,518	53,178,959	57,671,711

8. 마약보상금 지급 〈표 2-23〉

(단위 : 천원)

종류 \ 구분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보상금	계
예 산 액	200,000	180,388	380,338
2013	154,500(46)	225,888(1,083)	380,388(1,129)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표 2-24>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2004	28	14	1	2	1	2	2	1	1	1	1	1	-	1	-	-	-	-	-	-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행안부 등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표 2-25>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2003	4	1	1	-	-	1	1	-	-	-	-	-	-
2004	3	1	1	-	1	-	-	-	-	-	-	-	-
2005	4	1	1	-	-	-	-	-	-	1	1	-	-
2006	4	1	-	-	-	-	1	2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2008	7	3	-	-	-	1	1	1	-	1	-	-	-
2009	5	2	1	-	-	-	1	1	-	-	-	-	-
2010	6	3	-	-	-	1	1	1	-	-	-	-	-
2011	6	3	1	-	-	-	1	-	-	-	-	1	-
2012	5	3	-	-	-	-	1	1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행안부 등 타부처 주관 포함

제 3 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비행소년 선도

가. 선도유예

○ 검찰청별 선도유예인원 〈표 3-1〉

연도 / 검찰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977	5,511	5,626	6,610	5,886	7,104	2,967	1,363	5,694	4,548
서울중앙	232	111	49	120	173	72	35	15	254	179
서울동부	216	110	222	271	189	141	31	20	375	134
서울남부	223	321	173	754	734	500	186	114	164	141
서울북부	336	244	160	497	546	1,224	328	119	161	204
서울서부	119	86	95	239	115	116	28	-	113	87
의정부	256	214	325	311	462	354	194	26	135	503
인천	411	388	383	343	209	210	336	44	571	243
수원	589	553	944	971	714	932	360	451	899	583
춘천	201	358	262	375	382	382	57	17	92	269
청주	142	338	193	215	180	332	59	94	362	155
대전	460	438	492	380	450	359	158	32	286	332
대구	375	346	504	420	420	504	304	204	551	344
부산	277	535	400	472	219	205	76	52	552	138
울산	177	162	273	30	64	49	53	-	444	484
창원	272	261	384	440	399	712	100	22	198	284
광주	347	864	395	332	350	685	577	120	267	387
전주	244	234	315	384	242	282	59	33	225	70
제주	100	58	57	56	38	45	26	-	45	11

○ 죄명별, 연령별, 직업별 선도유예인원 〈표 3-2〉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977	5,511	5,626	6,610	5,886	7,104	2,967	1,363	5,694	4,548
죄명	폭력행위 등	1,673	1,666	1,537	1,629	1,751	1,774	763	364	1,649	1,015
	절 도	2,414	2,713	2,947	3,370	2,379	3,438	1,319	603	2,228	2,068
	강 도	68	68	21	35	64	45	4	7	25	12
	강 간	16	17	38	40	45	31	13	7	31	32
	교 통	-	616	691	929	1,023	860	289	196	560	424
	재 산	-	150	133	129	317	217	194	66	269	345
	기 타	806	281	259	487	307	739	385	120	932	652
연령	14세	562	609	791	961	830	833	352	176	765	649
	15세	1,233	1,247	1,429	1,638	1,640	1,788	675	297	1,272	928
	16세	1,322	1,436	1,520	1,737	1,626	1,893	755	353	1,351	1,122
	17세	1,099	1,284	1,206	1,332	1,050	1,573	629	267	1,220	1,081
	18세	588	703	528	640	498	743	390	185	696	607
	19세 이상	173	232	152	302	242	274	166	85	390	161
직업	학 생	4,376	4,887	5,105	5,669	5,056	5,447	2,521	1,133	4,349	3,557
	공원 및 종업원	109	67	62	146	58	290	24	20	72	51
	무 직	455	472	418	706	695	1,087	354	206	579	535
	기 타	37	85	41	89	77	280	68	4	694	405

※ 죄명별 선도유예인원 '기타'항목을 2005년부터 교통, 재산, 기타로 구분하여 산출

2. 감호처분

가. 감호청구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표 3-3〉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66	292	304	322	304	389	332	290	244	254
보호감호	111	8	-	-	-	-	-	-	-	-
치료감호	255	284	304	322	304	389	332	290	244	254

○ 죄명별 청구인원 〈표 3-4〉

죄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111	255	8	284	-	311	-	322	-	304	-	389	-	332	-	290	-	244	-	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4	9	6	13	-	15	-	12	-	13	-	23	-	27	-	1	-	7	-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31	-	33	-	32	-	30	-	37	-	34	-	76	-	36	-	42	-	36
절 도	2	15	-	10	-	8	-	11	-	15	-	11	-	9	-	30	-	14	-	7
강 도	13	11	1	13	-	13	-	12	-	14	-	22	-	6	-	8	-	4	-	5
살 인	1	33	-	36	-	44	-	44	-	41	-	68	-	47	-	10	-	27	-	40
강 간	5	19	1	22	-	7	-	18	-	12	-	47	-	42	-	12	-	16	-	13
사 기	4	5	-	3	-	8	-	10	-	28	-	10	-	5	-	40	-	10	-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	-	-	-	-	-	1	-	-	-	1	-	1	-	-	-	-	-	-
상해·폭행	-	12	-	10	-	10	-	23	-	12	-	9	-	6	-	11	-	16	-	14
방화·실화	-	19	-	21	-	12	-	22	-	7	-	14	-	17	-	23	-	10	-	14
상해(폭행)치사	-	1	-	2	-	4	-	1	-	5	-	4	-	6	-	2	-	-	-	-
무 고	1	2	-	2	-	-	-	-	-	1	-	-	-	-	-	2	-	-	-	-
기 타	1	98	-	119	-	158	-	138	-	119	-	146	-	90	-	115	-	98	-	110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죄명별 수용인원 〈표 3-5〉

연도 / 죄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39	89	63	58	66	84	101	120	135	119
강 도	124	26	32	25	33	37	52	43	43	33
절 도	60	42	14	5	5	5	17	18	23	23
폭 력	29	5	4	3	1	2	5	5	4	4
성폭력	2	-	-	-	-	-	-	53	64	59
기 타	24	16	13	25	27	40	27	1	1	-

○ 전과별 수용인원 〈표 3-6〉

연도 / 전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39	89	63	58	66	84	101	120	135	119
초 범	8	1	2	1	10	9	7	10	8	7
2 ~ 3범	24	8	7	6	14	18	22	27	32	28
4 ~ 5범	82	30	19	19	20	30	38	41	47	39
6 ~ 7범	71	28	22	21	15	14	18	30	34	33
8 ~ 9범	33	15	9	5	4	6	9	7	8	7
10범 이상	21	7	4	6	3	7	7	5	6	5

○ 동기별 수용인원 〈표 3-7〉

연도 / 동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39	89	63	58	66	84	101	120	135	119
이욕(생활비, 유흥비, 허영)	166	66	57	55	47	80	90	108	120	105
원한·분노	11	1	-	-	3	2	-	-	-	-
취 중	22	6	4	1	7	1	2	1	2	4
우 연	16	5	2	1	1	-	-	-	-	-
기 타	24	11	-	1	8	1	9	11	13	10

○ 학력별 수용인원 〈표 3-8〉

학력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39	89	63	58	66	84	101	120	135	119
무 학	20	2	6	3	5	6	2	2	2	9
국 졸	84	14	23	21	19	28	23	27	34	40
중 졸	89	46	24	18	17	20	34	42	45	21
고 졸	44	27	10	16	24	26	39	47	52	47
대 졸	2	-	-	-	1	4	3	2	2	2

○ 직업별 수용인원 〈표 3-9〉

직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39	89	63	58	66	84	101	120	135	119
노 동	33	11	8	7	6	13	29	38	45	22
종업원	9	7	10	6	19	8	40	42	53	32
농 업	4	1	1	1	3	2	3	3	3	1
상 업	22	9	9	2	18	9	25	29	27	13
기 타	171	61	35	42	20	52	4	8	7	51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표 3-10〉

집행기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39	89	63	58	66	84	101	120	135	119
1년 미만	99	77	51	32	20	16	18	25	17	10
1년 이상~ 2년 미만	34	-	5	17	30	22	17	24	28	20
2년 이상~ 3년 미만	54	1	-	1	6	21	22	22	30	30
3년 이상~ 4년 미만	26	2	1	1	2	8	25	20	18	27
4년 이상	26	9	6	7	8	17	19	29	42	32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죄명별 수용인원 〈표 3-11〉

죄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8	595	629	686	723	824	887	948	1,021	1,122
살 인	235	229	229	252	266	289	297	297	318	334
상해(폭행)치사	47	37	34	33	31	38	37	33	35	37
폭 력	77	94	95	123	117	117	127	149	163	180
절 도	35	41	43	56	58	70	80	70	66	64
방 화	43	43	43	41	49	51	54	62	62	63
강 도	25	27	32	35	39	55	53	50	40	45
성 폭 력	54	57	64	77	76	100	131	170	209	247
기 타	62	67	89	69	87	104	108	117	128	152

○ 전과별 수용인원 〈표 3-12〉

전과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8	595	629	686	723	824	887	948	1,021	1,122
초 범	402	385	403	448	467	537	566	596	664	721
2 범	73	87	77	77	76	80	93	95	112	130
3 범	27	27	34	34	35	44	46	58	63	63
4 범	15	13	33	33	37	40	45	41	38	44
5범 이상	61	83	82	94	108	123	137	158	144	164

○ 병명별 수용인원 〈표 3-13〉

병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8	595	629	686	723	824	887	948	1,021	1,122
정 신 분 열 증	319	335	361	394	395	428	355	382	450	480
정 신 지 체	36	30	36	51	56	72	100	82	86	89
조 울 증	64	60	52	60	67	58	64	42	54	57
성격(인격)장애	5	17	13	13	14	17	52	33	38	44
간 질	15	11	12	8	14	12	25	25	28	26
약 물 중 독	40	53	66	47	51	56	68	50	71	85
기 타	99	89	89	113	126	181	223	334	294	341

○ 학력별 수용인원 〈표 3-14〉

학력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8	595	629	686	723	824	887	948	1,021	1,122
무 학	25	30	39	41	39	38	42	55	59	42
국 졸	94	94	101	108	116	128	130	131	129	138
중 졸	124	121	123	133	137	165	194	212	202	222
고 졸	242	260	267	296	316	347	377	389	444	497
대 졸	93	90	99	108	115	146	144	161	187	223

○ 직업별 수용인원 〈표 3-15〉

직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8	595	629	686	723	824	887	948	1,021	1,122
노 동	50	48	48	54	52	55	81	83	89	103
종 업 원	24	13	17	14	22	32	33	26	35	43
농 업	25	24	29	32	35	30	37	33	32	29
상 업	9	10	32	11	10	13	9	7	11	10
무 직	369	405	436	475	485	547	589	629	669	732
기 타	101	95	30	100	119	147	138	170	185	205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표 3-16〉

집행기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8	595	629	686	723	824	887	948	1,021	1,122
1년 미만	196	184	199	233	237	313	313	320	293	434
1년 이상~ 2년 미만	150	153	146	129	173	172	198	195	225	188
2년 이상~ 3년 미만	72	96	91	106	87	106	107	129	135	126
3년 이상~ 4년 미만	54	53	63	73	65	58	81	81	104	110
4년 이상	106	109	130	145	161	175	188	223	264	264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교육훈련 인원 〈표 3-17〉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5	87	24	11	11	4	9	11	11	17
학과교육	소계	47	20	2	2	9	-	-	-	2	4
	초등반	8	4	-	-	-	-	-	-	-	-
	중등반	14	5	-	2	3	-	-	-	-	-
	고등반	13	7	1	-	1	-	-	-	1	-
	학사고시반	12	4	1	-	5	-	-	-	1	4
직업훈련	소계	18	67	-	9	2	4	9	11	9	13
	목공	-	1	-	-	-	-	-	-	-	-
	미(도)장	1	-	-	-	-	-	-	-	-	-
	조적	-	-	-	-	-	-	-	-	-	-
	타일	-	-	-	-	-	-	-	-	-	-
	배관	-	-	-	-	-	-	-	-	-	-
	전기	4	-	-	-	-	-	-	-	-	-
	보일러시공	-	10	-	-	-	-	-	-	-	12
	이·미용	-	-	-	-	-	-	-	-	-	-
	원예	-	-	-	-	-	-	-	-	-	-
	양재	-	-	-	-	-	-	-	-	-	-
	정비	6	16	-	-	-	-	-	-	-	1
	정보기기	7	30	-	-	1	2	-	-	-	-
	기타	-	10	22	9	1	2	9	11	9	-

○ 기능자격취득 인원 〈표 3-18〉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0	11	7	2	1	-	9	11	9	13
천안 교도소	소 계	9	-	-	-	-	-	-	-	-	-
	1·2기능사	9	-	-	-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경북북부 제3교도소	소 계	21	11	7	2	1	4	9	11	9	13
	1·2기능사	21	11	7	2	1	4	9	11	9	13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표 3-19〉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119	605	363	122	56	42	24	39	25	38
가 출 소	1,052	407	167	66	29	15	17	19	17	37
가출소취소	23	16	35	39	25	27	7	7	8	1
집 행 면 제	44	182	160	17	2	-	-	13	-	-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표 3-20〉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01	238	254	284	282	52	269	288	270	268
종 료	170	73	35	7	-	3	3	-	-	2
가 종 료	231	165	216	277	274	32	260	275	255	247
가종료취소 (기간만료)	-	- (9)	3	-	8	17	6	13	15	19

바. 보호감호 가출소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표 3-21〉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52	407	167	66	28	15	17	19	15	37
3년 미만	895	311	144	51	24	15	5	3	1	5
3년 이상~ 4년 미만	86	45	4	-	-	-	3	8	4	6
4년 이상~ 5년 미만	28	20	9	1	-	-	1	2	4	3
5년 이상	43	31	10	14	4	-	8	6	6	2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표 3-22〉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52	407	167	66	28	15	17	19	15	37
절 도	880	206	113	32	7	2	2	4	3	7
강 도	73	109	29	25	11	10	10	8	7	13
폭력행위 등	33	38	8	1	2	-	-	2	3	3
성 폭 력	29	5	2	1	-	-	-	5	2	14
기 타	37	49	15	7	7	3	5	-	-	-

○ 전과별 가출소 인원 〈표 3-23〉

전과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52	407	167	66	28	15	17	19	15	37
초 범	10	9	1	3	4	4	2	-	3	2
2 ~ 3 범	101	38	15	10	2	4	5	2	3	6
4 ~ 5 범	318	126	49	16	9	4	4	7	3	14
6 ~ 7 범	368	136	57	23	9	2	4	6	3	11
8 ~ 9 범	153	56	28	12	2	1	1	4	1	1
10범 이상	102	42	17	2	2	-	1	-	2	3

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표 3-24〉

기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70	231	73	165	73	165	7	277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1년 미만	8	126	18	91	18	91	3	151	-	111	-	117	3	60	-	55	-	48	-	47
1년 이상 2년 미만	41	46	21	42	21	42	1	54	-	58	-	67	-	108	-	126	-	107	1	94
2년 이상 3년 미만	28	22	7	10	7	10	1	21	-	40	1	40	-	40	-	39	-	47	1	43
3년 이상	93	37	27	22	27	22	2	51	-	65	2	59	-	52	-	55	-	53	-	63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표 3-25〉

죄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70	231	73	165	35	216	7	277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살 인	51	32	13	23	13	28	-	36	-	36	-	32	1	19	-	23	-	33	-	33
상 해 (폭 행) 치 사	16	4	10	3	2	4	-	8	-	9	1	25	1	7	-	3	-	2	-	3
폭 력 행위등	40	29	10	15	3	28	1	15	-	37	-	31	1	28	-	28	-	39	-	48
강 간	9	7	4	8	5	14	3	10	-	18	-	20	-	5	-	3	-	7	1	9
강 도	9	5	4	5	1	6	-	10	-	11	-	12	-	16	-	12	-	21	-	9
절 도	21	18	9	8	5	14	-	13	-	19	2	21	-	27	-	38	-	26	-	23
방 화, 실 화	14	5	5	7	4	15	-	14	-	13	-	18	-	19	-	15	-	18	1	17
기 타	10	131	18	96	2	107	3	171	-	131	-	124	-	139	-	153	-	109	-	105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표 3-26〉

전과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70	231	73	165	35	216	7	277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초 범	119	63	35	44	19	72	3	88	-	106	-	100	1	122	-	120	-	90	-	102
2 범	20	21	7	13	5	27	2	21	-	28	1	42	1	30	-	33	-	28	1	29
3 범	6	14	6	14	1	12	1	20	-	15	-	13	1	10	-	14	-	14	-	16
4 범	5	11	7	14	2	8	-	19	-	19	-	15	-	14	-	16	-	16	-	14
5범 이상	20	122	18	80	8	97	1	129	-	106	2	113	-	84	-	92	-	107	1	86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표 3-27〉

병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70	231	73	165	36	216	7	277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정신분열증	108	44	29	33	15	53	1	81	-	88	-	35	3	42	-	52	-	66	-	71
정신지체	8	11	5	7	3	5	2	8	-	13	1	47	-	44	-	25	-	17	1	17
조울증	16	19	10	16	4	22	-	3	-	14	-	12	-	16	-	29	-	13	-	14
성격(인격)장애	4	2	-	3	2	3	-	6	-	4	2	21	-	27	-	22	-	8	-	8
간질	1	2	1	2	-	2	-	3	-	2	-	4	-	11	-	3	-	3	-	4
약물중독	1	121	16	84	8	116	4	152	-	108	-	133	-	81	-	82	-	76	1	107
기 타	32	32	12	20	4	15	-	24	-	45	-	31	-	39	-	62	-	72	-	26

3.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표 3-28>

(2013년)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대 구	부 산	광 주	대 전
계	11,283	5,410	1,093	1,374	1,619	1,787
가 석 방	64	7	42	2	5	8
임 시 퇴 원	2,082	991	279	218	481	113
기 타 (임시해제, 전자발찌부착 및 가해제, 각종 취소 등)	9,137	4,412	772	1,154	1,133	1,666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표 3-29>

(2013년)

구분 \ 대상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신 수		
계	175,318	62,440	112,878	112,922	62,396
선 고 유 예	32	16	16	18	14
집 행 유 예	87,701	32,887	54,814	54,682	33,019
보 호 처 분	55,001	21,389	33,612	36,283	18,718
가 석 방	6,040	1,371	4,669	4,715	1,325
임 시 퇴 원	2,091	771	1,320	1,413	678
가 출 소	97	36	61	39	58
가 종 료	1,048	599	449	468	580
감호가석방	-	-	-	-	-
가 정 보 호	3,915	739	3,176	2,476	1,439
성 매 매	396	61	335	309	87
선 도 위 탁	8,245	2,346	5,899	4,796	3,449
성구매자 교육	3,997	939	3,058	3,432	565
형 기 종 료	1,573	577	996	304	1,269
벌 금 대 체	4,668	609	4,059	3,621	1,047
이 수 명 령	514	100	414	366	148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표 3-30>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7,024	92,523	94,949	115,132	131,236	161,877	132,429	121,188	116,860	112,878
형법	소계	66,787	60,274	55,262	65,243	71,059	68,592	61,021	56,395	56,437	57,485
	선고유예	8	13	19	15	12	10	7	15	17	13
	집행유예	63,597	55,808	49,189	59,689	65,394	62,218	54,984	50,911	51,677	52,803
	가석방	3,182	4,453	6,054	5,539	5,653	6,364	6,030	5,469	4,743	4,669
소년법	소계	22,354	22,042	19,831	24,987	31,433	41,295	39,858	41,253	41,440	34,932
	단기보호관찰	9,141	9,726	9,431	13,031	17,559	21,976	19,907	21,252	20,599	16,010
	장기보호관찰	12,485	12,000	10,237	11,524	11,669	12,930	12,916	12,948	13,018	13,692
	단독명령	-	-	-	-	1,260	5,233	5,858	5,964	6,400	3,910
	임시퇴원	728	316	163	432	945	1,156	1,177	1,089	1,423	1,320
사회보호법	소계	1,982	959	706	542	438	466	506	535	482	510
	가출소	1,689	723	406	169	61	34	39	45	22	61
	감호가석방	4	-	2	-	-	-	-	-	-	-
	가종료	289	236	298	373	377	432	467	490	460	449
성폭력특별법	소계	621	704	654	807	880	989	915	1,114	1,132	716
	선고유예	-	-	-	-	-	1	-	-	-	3
	집행유예	621	704	654	807	880	988	915	1,114	1,132	713
가정폭력특별법	소계	3,198	2,549	2,938	2,787	3,408	3,115	2,380	1,708	1,995	3,176
	보호처분	3,198	2,549	2,938	2,787	3,408	3,115	2,380	1,708	1,995	3,176
성매매처벌법	소계	48	572	630	846	1,132	1,303	1,090	572	646	760
	보호처분	14	333	414	472	674	665	531	215	273	335
	집행유예	34	239	216	374	458	638	559	357	373	425
선도위탁(기소유예)	소계	2,034	2,213	2,386	2,793	3,453	3,770	4,885	5,002	5,090	5,899
	1급	90	74	94	56	65	123	124	277	130	199
	2급	1,944	2,139	2,292	2,737	3,388	3,647	4,761	4,725	4,960	5,700
성구매자교육	소계	-	3,210	12,542	17,127	19,433	37,679	13,413	8,366	4,807	3,058
	기소유예	-	3,210	12,542	17,127	19,433	37,679	13,413	8,366	4,807	3,058
형기종료	소계	-	-	-	-	-	1	226	468	311	996
	형기종료	-	-	-	-	-	1	226	468	311	996
벌금대체사회봉사	소계	-	-	-	-	-	4,667	7,971	4,856	3,465	4,059
	벌금대체	-	-	-	-	-	4,667	7,971	4,856	3,465	4,059
아동청소년법	소계	-	-	-	-	-	-	164	919	1,055	1,287
	벌금(이수명령)	-	-	-	-	-	-	13	129	274	414
	집행유예	-	-	-	-	-	-	151	790	781	873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표 3-31>

기관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7,024	92,523	94,946	115,132	131,236	161,877	132,429	121,188	116,860	112,878
서울	8,932	5,448	6,311	7,130	7,503	10,790	8,300	6,223	5,766	5,924
서울동부	-	3,859	3,229	3,641	3,746	4,475	3,676	2,764	3,065	3,167
서울남부	2,931	3,974	3,866	3,820	4,553	6,691	5,247	4,292	4,169	4,099
의정부	3,108	2,941	3,568	4,473	5,236	5,014	5,252	4,554	4,962	4,527
인천	4,677	5,633	5,687	6,003	7,216	11,963	7,354	5,729	4,640	4,414
수원	7,815	7,888	5,704	5,934	7,846	6,598	5,251	4,391	5,421	5,799
춘천	1,116	868	920	1,062	1,183	1,110	1,280	1,383	1,642	1,353
대전	4,623	4,084	3,726	4,745	5,690	6,272	4,651	4,461	4,322	4,382
청주	2,436	2,001	2,510	3,794	2,962	3,610	2,842	2,736	2,200	2,151
대구	6,680	7,481	4,865	5,377	6,343	5,921	4,809	4,518	4,612	4,164
부산	4,598	3,406	3,745	5,040	5,942	7,246	7,501	6,063	5,144	4,866
울산	3,447	2,030	2,006	2,360	3,342	3,944	3,616	4,096	3,234	2,961
창원	3,549	3,329	2,990	5,781	4,949	5,553	3,709	4,076	4,043	3,333
광주	3,531	3,166	3,071	4,483	5,017	5,184	4,352	4,925	5,504	5,270
전주	2,849	2,464	2,380	2,581	3,092	2,159	2,282	2,487	2,141	1,747
제주	2,026	1,433	1,229	1,763	1,760	1,709	1,464	1,475	1,451	1,528
서울서부	2,363	2,267	2,558	3,267	2,985	4,446	3,432	2,593	2,491	2,276
서울북부	-	2,734	2,389	2,424	3,108	4,331	3,187	2,606	2,364	2,439
고양	1,967	1,878	1,903	2,424	3,176	4,250	2,961	2,926	2,816	2,810
부천	1,707	2,113	1,910	2,204	2,405	3,608	2,759	2,663	2,358	2,619
성남	2,344	1,620	2,294	3,510	3,267	3,544	3,515	2,572	2,877	2,899
여주	-	-	-	709	779	832	1,260	1,345	1,507	1,277
안산	3,029	2,450	4,871	3,661	6,034	8,244	4,655	4,453	3,652	4,375
평택	-	-	1,719	1,680	1,955	1,960	1,636	1,437	1,669	1,679
안양	-	-	-	-	-	3,319	2,263	2,227	2,028	1,653
강릉	1,136	1,311	1,079	1,284	1,310	1,148	959	1,056	811	887
원주	1,714	1,076	913	1,309	1,615	1,180	883	958	1,583	1,194
속초	-	-	-	377	671	590	576	437	437	548
영월	-	-	-	-	-	785	524	482	534	438
홍성	2,070	1,621	1,780	1,356	1,665	1,142	932	1,020	856	914
공주	-	-	-	-	-	723	421	454	431	376
논산	-	-	-	613	757	903	626	651	608	769
서산	-	-	-	745	688	1,245	963	916	813	914
천안	2,056	1,488	1,976	2,438	2,030	2,831	2,167	2,149	2,288	2,007
충주	1,341	1,063	943	1,407	1,432	1,423	908	1,244	912	1,042
제천	-	-	-	-	-	586	446	497	559	557
대구서부	-	-	3,477	2,207	2,697	3,816	3,179	2,862	2,568	2,422
안동	1,525	1,353	1,018	1,218	1,347	1,240	1,198	1,028	1,304	863
경주	-	-	-	583	523	605	587	573	521	556
포항	2,231	2,203	1,580	1,284	1,125	1,790	1,230	1,425	923	1,039
구미	1,076	1,560	1,238	1,304	2,076	2,211	1,673	1,462	1,555	1,545
상주	-	-	-	-	-	826	563	667	536	533
영덕	-	-	-	-	-	251	312	385	353	260
부산동부	2,043	1,558	1,772	1,757	2,431	3,372	4,183	3,080	2,943	2,524
진주	2,573	1,890	1,919	2,134	2,067	1,714	1,437	1,317	966	1,006
통영	-	-	-	1,008	1,280	1,767	1,724	1,549	1,615	1,294
밀양	-	-	-	-	-	474	343	362	335	418
거창	-	-	-	-	-	537	385	310	331	335
목포	1,866	1,410	1,065	1,364	1,765	1,754	1,408	1,218	1,567	1,560
순천	1,829	1,622	1,614	2,469	2,942	2,770	2,476	2,176	1,761	1,974
해남	-	-	-	-	-	772	596	627	683	654
군산	1,836	1,301	1,121	1,630	1,953	1,682	1,582	1,416	1,409	1,379
정읍	-	-	-	779	773	698	809	825	865	691
남원	-	-	-	-	-	269	431	410	407	351
인천서부	-	-	-	-	-	-	1,489	2,185	1,882	1,847
영동	-	-	-	-	-	-	165	452	426	269

마.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표 3-32>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218,049	196,233	179,767	178,199	175,318
소년	계			66,789	71,105	70,549	71,760	65,815
	형 법	소 계		3,604	3,336	1,723	1,417	1,119
		선고유예		5	5	-	1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142	2,998	1,628	1,308	1,014
			단독명령	338	261	51	57	59
		가 석 방		119	72	44	51	45
	소년법	소 계		58,340	61,447	61,766	63,859	57,815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28,597	31,020	31,100	31,821	26,331
			장기보호관찰	22,639	22,360	22,433	22,794	24,038
			단독명령	5,464	4,399	6,583	7,235	5,355
		임시퇴원		1,640	1,696	1,650	2,009	2,091
	성폭력법	소 계		339	330	236	193	153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16	325	224	177	125
			단독명령	23	5	12	16	28
	가정폭력법	소 계		10	6	3	10	13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7	5	3	8	9
			단독명령	3	1	-	2	4
	성매매법	소 계		37	22	11	1	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5	21	11	1	-
			단독명령	2	1	-	-	1
		소 계		4	5	3	4	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	2	3	4	2
			단독명령	3	3	-	-	-
	선도위탁	소 계		4,419	5,852	6,694	6,172	6,585
		기소유예		4,419	5,852	6,694	6,172	6,585
	성구매자교육	소 계		36	10	9	9	10
		기소유예		36	10	9	9	10
	벌금대체	소 계		-	86	50	34	50
		벌금대체		-	86	50	34	50
	아동청소년법	소 계		-	13	54	61	67
		집행유예		-	6	41	49	53
		단독명령		-	5	7	8	11
		이수명령		-	2	6	4	3
성인	계			151,260	125,128	109,218	106,439	109,503
	형 법	소 계		97,445	89,032	85,059	86,294	87,562
		선고유예		15	10	22	31	2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4,426	52,123	50,923	51,113	51,783
			단독명령	35,172	29,478	27,114	28,739	29,756
		가 석 방		7,832	7,421	7,000	6,411	5,995
	사회보호법	소 계		1,136	1,170	1,179	1,156	1,145
		가 출 소		152	88	87	62	97
		감호가석방		-	-	-	-	-
		가 종 료		984	1,082	1,092	1,094	1,048
	성폭력법	소 계		1,314	1,327	1,591	1,788	2,189
		선고유예		1	1	-	-	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035	1,052	1,161	1,266	1,443
			단독명령	278	274	430	522	743
	가정폭력법	소 계		4,249	3,261	2,409	2,579	3,90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476	2,697	2,008	2,071	3,010
			단독명령	773	564	401	508	892
	성매매법	소 계		742	751	311	345	395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630	647	271	291	287
			단독명령	112	104	40	54	108
		소 계		882	870	683	668	72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16	583	515	537	566
			단독명령	366	287	168	131	162
	선도위탁	소 계		1,229	899	1,244	1,344	1,649
		기소유예		1,229	899	1,244	1,344	1,649
	성구매자교육	소 계		44,262	15,566	8,927	5,945	3,987
		기소유예		44,262	15,566	8,927	5,945	3,987
	형기종료	소 계		1	227	597	708	1,573
		형기종료		1	227	597	708	1,573
	벌금대체	소 계		-	11,872	6,291	4,248	4,618
		벌금대체		-	11,872	6,291	4,248	4,618
	아동청소년법	소 계		-	151	927	1,364	1,755
		보호관찰부		-	63	381	576	690
		단독명령		-	59	324	419	554
		이수명령		-	29	222	369	511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표 3-33>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218,049	196,233	179,767	178,199	175,318
보호관찰	계			98,961	101,924	98,063	97,886	96,574
	형 법	소 계		50,727	49,105	45,929	44,769	44,256
		선고유예		20	15	22	32	29
		집행유예		42,756	41,597	38,863	38,275	38,187
		가 석 방		7,951	7,493	7,044	6,462	6,040
	소년법	소 계		37,119	40,700	39,044	40,140	38,689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8,605	21,788	20,542	21,089	18,448
			장기보호관찰	16,874	17,216	16,852	17,042	18,150
		임 시 퇴 원		1,640	1,696	1,650	2,009	2,091
	치료감호법	소 계		1,136	1,170	1,179	1,156	1,145
		가 출 소		152	88	87	62	97
		감호가석방		-	-	-	-	-
		가 종 료		984	1,082	1,092	1,094	1,048
	성폭력법	소 계		980	1,070	1,008	997	1,058
		선고유예		1	1	-	-	3
		집행유예		979	1,069	1,008	997	1,055
	가정폭력법	소 계		2,577	1,973	1,537	1,609	2,277
		보호처분		2,577	1,973	1,537	1,609	2,277
	성매매법	소 계		773	901	624	627	636
		보호처분		396	454	201	205	183
		집행유예		377	447	423	422	453
	선도위탁	소 계		5,648	6,751	7,938	7,516	6,457
		기소유예		5,648	6,751	7,938	7,516	6,457
	형기종료	소 계		1	227	597	708	1,573
		형기종료		1	227	597	708	1,573
	아청법	소 계		-	27	207	364	483
		집행유예		-	27	207	364	483
사회봉사명령	계			48,902	42,469	41,317	41,560	41,511
	형 법	소 계		38,406	32,542	30,517	30,515	29,953
		보호관찰부		10,457	9,766	10,025	9,839	9,731
		단독명령		27,949	22,776	20,492	20,676	20,222
	소년법	소 계		9,012	8,698	9,881	10,051	9,089
		단기보호관찰		3,784	3,684	4,270	4,063	3,340
		장기보호관찰		3,230	2,820	2,986	3,176	3,422
		단독명령		1,998	2,194	2,625	2,812	2,327
	성폭력법	소 계		374	284	258	285	315
		보호관찰부		187	129	126	149	146
		단독명령		187	155	132	136	169
	가정폭력법	소 계		542	439	275	283	324
		보호관찰부		263	228	153	138	166
		단독명령		279	211	122	145	158
	성매매법	소 계		568	474	261	274	280
		보호관찰부		181	178	100	132	127
		단독명령		387	296	161	142	153
	선도위탁	소 계		-	-	-	-	1,346
		기소유예		-	-	-	-	1,346
	아청법	소 계		-	32	125	152	204
		보호관찰부		-	19	58	72	79
		단독명령		-	13	67	80	125
수강명령	계			25,888	24,275	24,882	28,144	28,054
	형 법	소 계		11,916	10,721	10,336	12,427	14,472
		보호관찰부		4,355	3,758	3,663	4,307	4,879
		단독명령		7,561	6,963	6,673	8,120	9,593
	소년법	소 계		12,209	12,049	12,841	13,668	10,037
		단기보호관찰		6,208	5,548	6,288	6,669	4,543
		장기보호관찰		2,535	2,324	2,595	2,576	2,466
		단독명령		3,466	4,177	3,958	4,423	3,028
	성폭력법	소 계		299	303	561	699	969
		보호관찰부		185	179	251	297	367
		단독명령		114	124	310	402	602
	가정폭력법	소 계		1,140	855	600	697	1,314
		보호관찰부		643	501	321	332	576
		단독명령		497	354	279	365	738
	성매매법	소 계		324	273	123	117	210
		보호관찰부		228	174	76	74	92
		단독명령		96	99	47	43	118
	선도위탁	소 계		-	-	-	-	431
		기소유예		-	-	-	-	431
	아청법	소 계		-	74	421	536	621
		보호관찰부		-	23	157	189	181
		단독명령		-	51	264	347	440
성구매자교육	계			39,631	15,576	8,936	5,954	3,997
	기 소 유 예			39,631	15,576	8,936	5,954	3,997
벌금대체사회봉사	계			4,667	11,958	6,341	4,282	4,668
	벌금대체사회봉사			4,667	11,958	6,341	4,282	4,668
이수명령	계			-	31	228	373	514
	이수명령			-	31	228	373	514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표 3-34>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09	1,503	1,503	-	-	-	-
2010	588	588	-	-	-	-
2011	1,823	1,818	-	1	1	3
2012	2,570	2,560	-	-	-	10
2013	2,324	2,315	1	3	-	5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표 3-35>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관찰 정지	가정보호 등 취소
2009	2,617	109	2,609	30,156	650	1,703	161	48	50	83	18
2010	2,775	71	2,729	32,532	652	2,055	184	52	45	99	5
2011	2,562	62	2,471	33,400	536	1,903	145	47	86	133	34
2012	2,279	60	2,120	38,910	550	1,762	155	35	112	113	19
2013	2,431	67	2,287	46,981	635	1,960	149	26	80	107	22

자.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표 3-36>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율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09	109	8	3,529	19	3,506	2,617	2.1	923	86	15	13	2,610	2,609	16	701	1,690	1	156
2010	71	14	4,045	24	4,023	2,775	2.2	1,131	93	11	13	2,729	2,729	10	591	1,964	6	178
2011	62	33	3,877	33	3,847	2,562	2.2	1,224	105	8	15	2,484	2,471	5	355	1,890	2	168
2012	60	34	3,556	19	3,534	2,279	1.9	1,245	174	8	11	2,124	2,124	1	329	1,585	5	166
2013	67	43	3,604	13	3,591	2,431	2.1	1,197	155	3	7	2,333	2,333	4	310	1,748	4	168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표 3-37>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09	48,902	43,426	40,792	418	1,533	683
2010	42,469	36,872	33,967	404	1,828	673
2011	41,317	35,528	33,009	546	1,335	638
2012	41,560	34,807	32,398	468	1,347	594
2013	41,511	35,220	32,607	592	1,372	649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표 3-38>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성매매법		선도위탁		아동청소년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09	48,902	42,857	38,406	33,657	9,012	7,881	374	301	542	501	568	517	-	-	-	-
2010	42,469	36,993	32,542	28,269	8,698	7,697	284	229	439	381	474	385	-	-	32	32
2011	41,317	36,071	30,517	26,452	9,881	8,815	258	230	275	229	261	231	-	-	125	114
2012	41,560	35,602	30,515	25,992	10,051	8,744	285	237	283	253	274	244	-	-	152	132
2013	41,511	34,794	29,953	25,041	9,089	7,511	315	252	324	298	280	245	1,346	1,260	204	177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표 3-39>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09	39,890	11,088	28,802	1,051	738	313	38,839	10,350	28,489
2010	33,771	10,320	23,451	932	703	229	32,839	9,617	23,222
2011	31,436	10,462	20,974	300	255	45	31,136	10,207	20,929
2012	41,560	17,569	23,991	10,347	7,482	2,865	31,213	10,087	21,126
2013	41,511	17,388	24,123	10,606	7,291	3,315	30,905	10,097	20,808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표 3-40>

구분 / 연도	총 계	자체 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9	41,210	9,113	32,097	30	30,803	723	223	318
2010	34,371	8,747	25,624	3	24,407	511	625	78
2011	33,555	7,566	25,989	251	24,157	650	565	366
2012	32,866	8,102	24,764	47	22,909	813	700	295
2013	33,199	8,994	24,205	18	22,211	605	1,016	355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표 3-41>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09	25,888	23,254	21,640	301	795	518
2010	24,275	21,276	19,474	293	917	592
2011	24,882	20,993	19,452	265	713	563
2012	28,144	23,054	21,367	230	789	668
2013	28,054	22,757	20,899	318	883	657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표 3-42>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성매매법		선도위탁		아동청소년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09	25,888	23,374	11,916	10,644	12,209	11,175	299	252	1,140	1,007	324	296	-	-	-	-
2010	24,275	21,641	10,721	9,593	12,049	10,798	303	261	855	706	273	209	-	-	74	74
2011	24,882	21,986	10,336	9,132	12,841	11,352	561	509	600	479	123	106	-	-	421	408
2012	28,144	24,265	12,427	10,977	13,668	11,588	699	559	697	626	117	99	-	-	536	416
2013	28,054	23,013	14,472	12,181	10,037	7,750	969	797	1,314	1,152	210	198	431	430	621	505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표 3-43>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09	13,679	5,411	8,268	226	170	56	13,453	5,241	8,212
2010	12,226	4,635	7,591	193	146	47	12,033	4,489	7,544
2011	12,041	4,468	7,573	139	114	25	11,902	4,354	7,548
2012	28,144	14,444	13,700	13,792	9,339	4,453	14,352	5,105	9,247
2013	28,054	13,107	14,947	10,176	7,088	3,088	17,878	6,019	11,859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표 3-44>

구분 / 연도	총 계	자체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9	21,941	20,959	982	149	51	10	170	107	495
2010	19,767	18,735	1,032	97	30	79	148	130	548
2011	19,717	18,485	1,232	106	11	278	199	156	482
2012	21,597	20,364	1,233	66	22	152	185	175	633
2013	21,217	20,233	984	38	9	240	174	135	388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표 3-45>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환경조사	소 계	3,201	2,015	1,849	1,861	1,862	2,009	1,738	1,581	1,715	1,701
	소 년 원	2,085	1,618	1,584	1,614	1,477	1,668	1,454	1,380	1,500	1,555
	교 도 소	402	298	239	206	304	274	224	173	146	43
	감 호 소	714	99	26	41	61	67	60	28	69	103
환 경 개 선		-	-	-	-	-	-	4	35	25	-

머. 조사 <표 3-46>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판 결 전 조 사	4,107	4,167	3,071	3,631	4,273	3,597	1,598	1,526	2,385	2,159
결 정 전 조 사	53	797	1,128	3,186	3,311	4,234	6,398	9,242	12,719	12,141
검사결정전조사	-	-	-	-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청 구 전 조 사	-	-	-	-	92	304	1,376	1,933	1,696	2,497
소급청구전조사	-	-	-	-	-	-	2,251	772	354	247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표 3-47>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09	3,908	2,991	2,392	599	2,176	1,779	1,582	197	1,732	1,212	810	402
2010	4,517	3,469	2,608	861	2,790	2,289	1,889	400	1,727	1,180	719	461
2011	4,505	3,388	2,523	865	2,833	2,292	1,863	429	1,672	1,096	660	436
2012	4,174	3,085	2,228	857	2,636	2,095	1,680	415	1,538	990	548	442
2013	4,199	3,203	2,365	838	2,658	2,172	1,754	418	1,541	1,031	611	420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표 3-48>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11,864	11,103	9,754	8,892	8,629	9,393	8,705	6,766	6,144	6,658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표 3-49>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 수	11,242	10,528	8,586	8,053	8,396	8,257	8,093	7,068	6,502	6,150
필 요	2,646	3,999	5,665	5,068	5,233	5,459	5,493	4,779	4,246	4,174
불 요	8,596	6,529	2,921	2,985	3,163	2,798	2,600	2,288	2,256	1,976
허 가	8,596	6,528	2,921	2,985	3,163	2,798	2,600	2,288	2,256	1,976

4. 갱생보호

가. 갱생보호 실적 〈표 3-50〉

구분	총계	숙식제공	재사회화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긴급원호	사후관리	사전면담	창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심리상담	기타자립지원
인원	72,716	2,892	6,449	2,186	3,988	152	4,833	11,493	21,368	20	4,303	6,693	8,339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표 3-51〉

구분	총계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긴급원호	사후관리	사전면담	창업지원	재사회화	취업성공패키지	심리상담	기타자립지원
인원	57,099	2,303	1,774	3,871	152	4,710	10,391	15,949	18	3,264	4,303	3,573	6,791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표 3-52〉

구분	총계	숙식제공	재사회화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긴급원호	사후관리	사전면담	창업지원	심리상담	기타자립지원
인원	15,617	589	3,185	412	117	-	123	1,102	5,419	2	3,120	1,548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입·출원 인원 〈표 3-53〉

입·출원			성별	2004	입·출원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원	계		남	4,309	계		남	2,755	2,511	2,407	2,415	3,257	3,491	3,848	4,314	3,863
			여	285			여	243	312	375	461	641	984	706	665	572
	이월인원		남	1,555	전년도 이월		남	1,359	1,200	1,081	999	920	2,404	1,217	1,202	1,197
			여	114			여	96	98	135	145	203	103	224	195	201
	송치		남	1,634	송치		남	1,366	1,288	1,274	1,386	2,249	-	2,534	2,995	2,548
			여	68			여	147	211	240	305	398	439	426	435	341
	전입인원		남	1,084	임시퇴원 취소		남	29	23	52	30	88	735	97	117	118
			여	98			여	1	3	-	11	40	31	56	35	30
	복원	소계	남	36	이탈학생 재수용		남	1	-	-	-	-	-	-	-	-
			여	5			여	-	-	-	-	-	-	-	-	-
		가퇴원 취소	남	36												
			여	5												
		이탈자 복원	남	-												
			여	-												
출원	계		남	2,950	계		남	1,556	1,401	1,380	1,518	2,291	2,381	2,360	2,954	2,685
			여	189			여	147	147	211	261	438	439	401	446	401
	퇴원		남	1,299	퇴원		남	1,290	1,240	1,012	764	1,495	1,595	1,555	1,873	1,676
			여	153			여	132	140	152	107	227	226	235	278	243
	가퇴원		남	455	임시퇴원		남	217	111	328	709	753	735	768	1,036	941
			여	8			여	6	1	49	148	197	199	158	159	145
	처분변경		남	94	처분변경 ·취소		남	42	45	35	34	35	31	25	29	48
			여	1			여	8	6	9	7	12	13	8	9	12
	이탈		남	-	사망		남	1	-	-	-	-	-	-	-	-
			여	-			여	-	-	-	-	-	-	-	-	1
	사망		남	-	이탈		남	1	-	-	-	-	-	-	1	-
			여	-			여	-	-	-	-	-	-	-	-	-
	이송		남	1,091												
			여	26												
	기타		남	11	기타		남	5	5	5	11	8	20	12	15	20
			여	1			여	1	-	1	-	2	1	-	-	-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구,6호) 및 10호(구,7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보호처분 취소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3-54〉

기관 \ 연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계	남	1,460	1,352	1,118	1,064	982	972	962	계	남	1,063	1,188	1,207
	여	103	112	121	150	179	219	200		여	201	202	173
서 울	남	207	193	186	220	194	222	208	서 울	남	254	270	295
	여	-	-	-	-	-	-	-		여	-	-	-
부 산	남	129	135	118	136	186	123	127	부 산	남	140	161	175
	여	-	-	-	-	-	1	1		여	-	1	1
대 구	남	96	111	94	105	88	111	130	대 구	남	127	143	128
	여	-	-	-	-	-	1	-		여	-	-	-
광 주	남	174	140	135	166	139	110	99	광 주	남	142	165	161
	여	-	-	-	-	-	-	-		여	-	-	-
전 주	남	111	99	76	138	123	118	112	전 주	남	110	126	128
	여	-	1	-	-	-	-	-		여	-	-	-
대 덕	남	89	66	32	76	154	140	142	대 전	남	146	165	139
	여	-	-	-	4	-	9	9		여	16	14	9
청 주	남	95	88	77	23	-	-	-	청 주	남	-	-	-
	여	-	-	-	-	-	18	54		여	48	60	54
안 양	남	-	-	-	-	-	-	-	안 양	남	-	-	-
	여	86	93	111	144	179	201	136		여	137	127	109
춘 천	남	73	86	104	95	69	99	106	춘 천	남	112	128	151
	여	-	-	-	-	-	-	-		여	-	-	-
제 주	남	41	27	32	41	29	38	39	제 주	남	32	30	30
	여	-	-	-	-	-	-	-		여	-	-	-
대 전	남	144	129	95	25	'07. 7. 23. 기관폐지							
	여	-	-	-	-								
창 원	남	106	109	77	16								
	여	-	-	-	-								
안 산	남	60	79	51	6								
	여	13	14	5	-								
대 전 의 료	남	46	46	41	19								
	여	4	4	5	2								
충 주	남	89	44	'05. 8. 15. 기관폐지									
	여	-	-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기관별 신수용 인원 〈표 3-55〉

기관 \ 연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계	남	1,661	1,395	1,284	1,293	1,416	2,337	2,404	계	남	2,534	2,994	2,666
	여	143	148	184	218	316	438	418		여	426	435	371
서 울	남	145	148	187	145	241	278	344	서 울	남	521	552	635
	여	-	-	-	-	-	-	-		여	-	-	-
부 산	남	158	95	80	169	227	287	381	부 산	남	322	337	351
	여	-	-	-	-	5	11	60		여	31	46	44
대 구	남	213	268	205	261	153	212	174	대 구	남	138	129	88
	여	-	-	-	-	2	7	38		여	25	16	21
광 주	남	105	73	139	102	108	94	79	광 주	남	97	116	146
	여	-	-	-	-	1	1	17		여	27	19	40
전 주	남	167	160	157	181	115	81	48	전 주	남	69	109	69
	여	-	1	1	2	7	1	12		여	22	15	3
대 덕	남	53	30	4	154	440	1,228	1,285	대 전	남	1279	1,540	1,242
	여	-	-	-	8	6	12	21		여	22	10	9
청 주	남	75	94	116	2	-	-	-	청 주	남	-	-	-
	여	-	1	2	2	-	27	168		여	181	228	137
안 양	남	-	-	-	-	-	-	-	안 양	남	-	-	-
	여	128	132	176	206	295	379	90		여	105	90	113
춘 천	남	166	256	224	222	112	130	54	춘 천	남	74	146	90
	여	-	-	-	-	-	-	4		여	4	3	-
제 주	남	35	36	33	55	20	27	39	제 주	남	34	65	45
	여	-	-			-	-	8		여	9	8	4
대 전	남	109	81	36	-	'07. 7. 23. 기관폐지							
	여	-	-	-	-								
창 원	남	106	74	52	2								
	여	-	-	-	-								
안 산	남	60	40	12	12								
	여	13	9	-	-								
대 전 의 료	남	44	36	39	-								
	여	2	5	5	-								
충 주	남	225	4	'05. 8. 15. 기관폐지									
	여	-	-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수용기간별 인원 〈표 3-56〉

연도 / 기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915	1,645	1,216	1,541	1,728	2,672	2,755	2,716	3,399	3,005
1월 미만	-	-	-	-	161	1,221	1,356	1,370	1,680	1,348
3월 미만	-	-	-	7	132	98	86	76	125	96
6월 미만	1,010	784	643	853	588	590	653	649	796	894
6월 이상	10	18	42	27	128	110	100	76	115	149
7월 이상	9	4	51	2	11	14	5	4	16	20
8월 이상	7	-	46	-	1	16	15	14	28	15
9월 이상	25	14	69	2	33	34	20	32	26	26
10월 이상	26	7	32	20	90	43	24	23	14	11
11월 이상	42	26	65	34	48	45	13	11	10	11
12월 이상	54	63	36	83	46	100	86	32	39	25
13월 이상	35	9	37	15	67	177	156	91	139	81
14월 이상	218	31	67	35	59	107	134	161	181	114
15월 이상	277	114	40	56	68	79	69	117	138	82
16월 이상	24	44	27	27	79	25	31	38	53	72
17월 이상	68	89	25	108	103	4	4	14	23	30
18월 이상	100	364	28	219	101	8	1	3	8	21
19월 이상	7	69	8	47	8	-	-	4	4	7
20월 이상	3	9	-	6	5	1	2	1	4	3
평균수용기간(월)	9.2	10.2	9.10	9.12	7.9	5.71	4.61	4.66	4.66	4.9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처우과정 분류인원 〈표 3-57〉

기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관계법령 개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804	1,543	1,468	1,511	계		1,732	2,775	2,822	2,960	3,429	3,037
(7호)	소계	825	729	821	968	7호	소계	28	66	51	104	111	94
	교과	217	230	160	215		기타	28	66	51	104	111	94
	직업	32	52	89	185								
	특성화	447	404	435	452								
	기타	129	43	137	120								
(8호)	소계	102	85	140	193	8호	소계	294	1,268	1,334	1,328	1,680	1,296
	교과	37	21	51	45		기타	294	1,268	1,334	1,328	1,680	1,296
	직업	32	35	49	127								
	특성화	21	24	23	13								
	기타	12	5	17	8								
(9호)	소계	195	165	95	161	9호	소계	657	793	782	780	975	960
	교과	71	68	38	53		교과	131	80	54	57	132	111
	직업	43	33	26	81		직업	68	62	-	-	-	77
	특성화	43	33	22	17		특성화	154	53	189	178	244	188
	기타	24	9	9	10		기타	304	598	539	545	599	584
(10호)	소계	504	387	411	189	10호	소계	753	647	655	748	663	687
	교과	198	147	105	67		교과	95	110	118	227	174	196
	직업	92	121	152	98		직업	366	328	297	244	295	279
	특성화	72	33	80	10		특성화	177	57	47	62	50	36
	기타	72	33	74	14		기타	115	152	193	215	144	176
미분류		178	177	1	-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교과교육 수료인원 〈표 3-58〉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59	896	586	433	414	384	286	287	389	228
초등학교	-	4	-	-	-	-	-	-	-	-
중 학 교	503	424	328	241	263	266	206	198	210	101
고등학교	356	468	258	192	151	118	80	89	179	127

○ 검정고시 합격인원 〈표 3-59〉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80	620	525	536	478	425	394	497	688	619
중입자격	11	5	7	7	7	2	4	5	3	4
고입자격	282	292	269	258	246	207	228	254	283	246
고졸학력	387	323	249	271	225	216	162	238	402	369

○ 직업훈련 수료인원 〈표 3-60〉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85	329	346	414	472	449	386	374	523	472
양성훈련	205	139	164	199	305	189	199	260	336	405
향상훈련	180	190	182	215	167	260	187	114	187	67

○ 기능자격 취득 인원 〈표 3-61〉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616	2,794	2,794	2,377	2,950	2,685	2,644	2,980	3,125	2,687
일 반 기 능	370	458	496	501	600	584	634	670	900	774
컴퓨터관련	1,546	1,600	1,328	1,297	1,478	1,389	1,387	1,642	1,581	1,292
외국어관련	659	290	182	172	222	74	45	41	48	-
기 타	41	446	378	407	650	627	578	627	596	621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입·출원 인원 〈표 3-62〉

구분		연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원	계	남	5,578	4,688	4,182	4,684	4,807	5,343	5,486	5,691	5,746	5,888
		여	715	629	675	838	1,113	1,220	1,277	1,445	1,307	1,228
	이월인원	남	334	289	221	241	248	388	387	366	392	336
		여	34	40	24	36	52	110	81	88	77	69
	신수용인원	남	5,244	4,399	3,961	4,443	4,558	4,955	5,099	5,325	5,354	5,552
		여	681	589	651	802	1,062	1,110	1,196	1,357	1,230	1,159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5,352	4,546	3,941	4,293	4,015	4,975	5,309	5,359	5,351	5,547
		여	684	608	639	740	1,034	1,138	1,255	1,348	1,240	1,153
	보호자위탁	남	55	77	79	85	24	15	22	13	14	8
		여	17	25	49	15	4	11	15	8	6	9
	보호시설위탁	남	296	277	252	273	367	450	460	435	440	492
		여	34	33	34	33	30	97	145	195	189	197
	소년원송치	남	1,554	1,304	1,187	1,135	949	1,882	1,797	2,049	2,243	2,090
		여	133	137	165	201	228	388	340	321	312	301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881	2,371	1,872	2,283	2,272	2,354	2,321	2,483	2,262	2,603
		여	390	329	289	430	627	585	592	697	599	555
	위탁변경	남	272	213	218	265	247	135	130	107	111	112
		여	42	26	14	35	67	25	12	24	40	26
	심리불개시	남	6	2	-	1	3	1	-	-	1	-
		여	-	-	-	-	-	-	1	-	-	-
	불처분	남	9	31	26	20	22	12	20	5	15	16
		여	2	1	2	3	6	2	2	-	-	2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79	271	307	231	131	126	192	267	265	226
		여	66	57	86	23	72	30	78	103	94	63
연말현재인원		남	289	221	241	248	292	272	371	337	336	341
		여	40	24	36	52	80	52	70	79	69	75

○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3-63〉

기관 \ 연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계	남	328	271	233	244	278	399	342	계	남	367	379	391
	여	39	35	36	45	63	72	77		여	89	85	80
부 산 (부산심)	남	47	50	34	38	55	54	63	부 산 (부산심)	남	83	78	74
	여	7	7	6	6	9	10	12		여	17	17	11
대 구 (대구심)	남	29	26	23	19	23	29	27	대 구 (대구심)	남	27	25	28
	여	3	3	3	2	3	7	8		여	7	5	7
광 주 (광주심)	남	41	30	21	26	23	32	40	광 주 (광주심)	남	34	35	41
	여	5	4	4	4	4	6	9		여	8	8	8
전 주	남	11	8	14	12	11	9	15	전 주	남	14	11	7
	여	1	2	3	3	2	3	4		여	4	2	2
대 덕 (대전의료)	남	33	18	15	23	30	39	36	대 전 (대전의료)	남	28	20	24
	여	3	3	2	4	8	8	6		여	6	4	5
청 주	남	17	15	14	7	-	-	-	청 주	남	-	-	-
	여	1	1	2	2	-	-	-		여	-	-	-
춘 천	남	12	6	10	4	5	6	10	춘 천	남	12	14	11
	여	1	1	1	1	1	2	4		여	4	4	2
제 주	남	4	2	1	3	2	2	2	제 주	남	1	1	3
	여	1	0	-	-	1	-	1		여	-	-	1
서울심	남	117	102	94	108	129	156	148	서울심	남	168	195	203
	여	13	12	15	23	33	36	33		여	43	45	44
창 원	남	-	17	14	7	4	'07. 7. 23. 기관폐지						
	여	-	4	2	-	-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기관별 위탁 인원 〈표 3-64〉

기관 \ 연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계	남	5,244	4,480	3,961	4,470	4,559	4,955	5,099	계	남	5,325	5,352	5,552
	여	681	592	651	805	1,061	1,110	1,196		여	1,357	1,230	1,159
부 산 (부산심)	남	1,069	984	754	824	1,018	861	966	부 산 (부산심)	남	1,257	1,208	1,074
	여	166	137	130	112	183	160	207		여	271	250	167
대 구 (대구심)	남	459	417	323	295	280	344	363	대 구 (대구심)	남	342	327	336
	여	45	44	40	35	56	96	113		여	103	66	89
광 주 (광주심)	남	631	534	422	633	393	488	559	광 주 (광주심)	남	426	422	495
	여	86	63	71	92	79	94	124		여	110	99	105
전 주	남	178	116	181	170	167	133	170	전 주	남	181	144	111
	여	20	25	40	49	45	41	49		여	50	32	28
대 덕 (대전의료)	남	464	304	299	508	540	671	620	대 전 (대전의료)	남	454	299	355
	여	50	62	45	80	142	126	114		여	101	56	75
청 주	남	157	157	187	102	-	-		청 주	남	-	-	-
	여	22	17	34	29	-	-			여	-	-	-
춘 천	남	166	82	109	68	80	114	135	춘 천	남	176	207	161
	여	7	16	15	12	12	35	54		여	61	54	33
제 주	남	51	44	40	65	32	36	50	제 주	남	22	30	38
	여	11	13	11	17	18	5	16		여	15	8	14
서울심	남	1,772	1,629	1,515	1,734	2,049	2,307	2,236	서울심	남	2,467	2,715	2,982
	여	217	195	259	369	526	553	519		여	646	665	648
창 원	남	-	297	213	131	71	'07. 7. 23. 기관폐지						
	여	-	57	20	6	10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위탁기간별 인원 〈표 3-65〉

연 도 / 기 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출원 인 원	6,036	5,154	4,580	5,253	5,549	6,113	6,164	6,707	6,589	6,700
계	5,362 (674)	4,553 (601)	3,927 (653)	4,464	5,155	6,113	6,164	6,707	6,589	6,700
10일 미만	223	128	85	205	89	137	164	159	158	124
10~20일	2,015	1,433	1,534	1,904	1,915	1,651	1,491	1,182	1,053	949
21~30일	2,046	2,114	1,629	1,672	2,297	3,424	3,578	4,367	4,200	4,392
31~40일	804	612	518	498	689	727	784	851	916	1,026
41~50일	186	209	85	119	139	154	113	128	198	145
51~60일	88	57	76	66	26	20	34	20	64	64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표 3-66〉

연 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991	6,179	7,140	9,300	11,729	11,028	11,421	11,429	10,590	10,739
분류심사	5,109	4,281	3,839	4,640	5,198	5,627	5,723	6,007	5,435	6,357
상담조사	1,882	1,890	3,135	4,437	5,952	5,106	5,301	5,296	5,148	4,382
검사결정전조사	-	8	166	223	579	295	397	126	7	-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표 3-67〉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732	5,683	5,686	8,487	15,402	18,069	25,926	38,853	47,668	40,636
대안교육	소 계	1,333	1,423	1,710	3,974	6,410	7,348	12,862	23,382	30,122	23,013
	일반학생	792	779	1,339	3,271	4,683	5,629	11,396	21,280	26,814	19,739
	기·선유예	541	644	371	703	1,516	1,425	1,124	1,191	2,034	2,767
	보호처분	-	-	-	-	211	294	342	911	1,274	507
청소년적성검사		3,399	4,260	3,976	4,513	5,481	5,256	6,438	7,973	9,445	9,377
보호자교육		-	-	-	-	3,511	5,465	6,626	7,498	8,101	8,246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표 3-68〉

판정 \ 연도	2004	2005	2006	2007	판정 ('07. 12. 21. 개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371	4,192	3,877	4,487	계	4,934	6,113	6,164	6,707	6,591	6,700
1호	72	98	140	100	1호	111	26	37	21	20	17
					2호	11	19	39	54	47	59
					3호	23	24	34	50	35	65
2호	751	478	398	567	4호	610	1,035	1,214	1,287	1,088	1,132
3호	2,520	2,101	1,678	2,146	5호	2,146	1,919	1,663	1,893	1,773	2,026
4호	330	264	235	306	6호	340	547	605	643	650	689
5호			2	9	7호	18	50	50	79	87	69
					8호(1개월)	374	876	941	1,035	1,164	860
6호(단기)	867	650	587	776	9호(단기)	619	669	621	618	754	837
7호(장기)	820	551	526	560	10호(장기)	385	537	525	638	627	622
기 타	11	50	311	23	기타	28	411	435	389	346	324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 4 절 인권업무 통계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표 4-1〉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04	49,339	743	48,596	20,153	996,255
2005	58,980	453	58,527	17,078	1,002,908
2006	75,976	377	75,599	17,304	1,035,714
2007	77,653	271	77,382	22,494	1,085,712
2008	99,043	190	98,853	25,952	1,194,603
2009	108,654	120	108,534	24,619	1,260,401
2010	113,092	115	112,977	19,579	1,281,792
2011	122,057	133	121,924	13,888	1,242,783
2012	126,898	123	126,775	13,612	1,409,916
2013	136,747	116	136,631	16,257	1,482,762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표 4-2〉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형사조정	기 타
2009	47,590	23,296	5,122	288	16,201	2,683
2010	32,150	22,259	6,115	329	-	3,447
2011	39,268	26,414	8,692	555	-	3,607
2012	43,467	29,169	9,461	1,193	-	3,644
2013	50,227	35,427	9,962	1,641	-	3,197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표 4-3〉

(단위 : 천원, 명)

구분 \ 예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750,000	536,000	1,937,000	2,109,000	1,878,000	2,246,220	3,268,220	9,305,000	9,584,000	7,929,000
보상인원	74	118	117	169	155	205	209	287	291	312
지급금액	648,400	1,065,133	1,063,000	1,607,000	1,411,000	2,204,833	3,416,782	5,410,033	6,250,686	7,912,273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표 4-4〉

연도 \ 구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0	1,023	75	728	87	23	110
2011	1,080	47	738	62	84	149
2012	1,374	45	932	66	169	162
2013	1,509	63	1,115	87	85	159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표 4-5〉

연도 \ 구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 · 구제 (인용 · 구제율)	조사중지
2010	1,023	489	355	86	92(9.0%)	1
2011	1,080	608	282	99	82(7.6%)	-
2012	1,374	743	391	139	81(5.9%)	1
2013	1,509	609	644	179	81(5.4%)	1

※ 2013. 12. 31. 기준 미제 18건

제 5 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5-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용정원			46,150	46,090	47,390	43,100	43,100	44,430	45,930	45,690	45,690	45,690
1일평균수용인원			57,184	52,403	46,721	46,313	46,684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6,546	35,110	31,905	31,086	32,316	33,179	32,652	31,644	31,302	32,278
		수형자	34,609	32,933	29,923	29,289	30,280	30,749	30,607	29,820	29,448	30,181
		노역수	1,937	2,177	1,982	1,797	2,036	2,430	2,045	1,824	1,854	2,097
	미결구금자	소 계	20,638	17,293	14,816	15,227	14,368	16,288	14,819	14,201	14,186	15,646
		피의자	1,723	1,341	1,114	996	937	1,008	786	724	703	712
		피고인	18,915	15,952	13,702	14,231	13,431	15,280	14,033	13,477	13,483	14,934

○ 인구대비 수용인원 〈표 5-2〉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04	48,039,415	57,184	0.119	12,802	4.5
2005	48,138,077	52,403	0.109	12,856	4.1
2006	48,297,184	46,721	0.097	13,854	3.4
2007	48,456,369	46,313	0.095	14,296	3.2
2008	48,606,787	46,684	0.096	14,413	3.2
2009	48,746,693	49,467	0.101	14,521	3.4
2010	48,874,539	47,471	0.097	15,221	3.1
2011	49,779,000	45,845	0.092	15,478	3.0
2012	50,004,441	45,488	0.091	15,757	2.9
2013	51,141,463	47,924	0.094	15,476	3.1

○ 수용자 성별 인원 〈표 5-3〉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4,796	47,311	45,651	45,647	47,966	48,228	45,681	45,038	46,708	48,824
수형자	소 계	35,627	32,969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남	33,813	31,442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29,863	30,525
	여	1,814	1,527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1,571	1,612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5.1	4.6	4.4	4.5	4.6	4.8	4.5	4.8	5.0	5.0
미결수용자	소 계	19,169	14,342	15,506	14,169	15,769	15,931	13,700	13,840	15,274	16,687
	남	17,529	13,280	14,507	13,178	14,709	14,866	12,772	12,915	14,263	15,376
	여	1,640	1,062	999	991	1,060	1,065	928	925	1,011	1,311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8.6	7.4	6.4	7.0	6.7	6.7	6.7	6.7	6.6	7.9

○ 수형자 연령별 인원 〈표 5-4〉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5,627	32,969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16세 미만	2	-	1	1	5	2	1	2	16	6
18세 미만	32	29	22	36	60	73	46	49	70	55
20세 미만	324	201	156	214	228	273	304	231	251	280
25세 미만	4,637	3,770	3,086	2,519	2,189	2,471	2,457	2,153	2,147	2,327
25세 이상	4,868	4,376	3,877	3,867	3,898	3,697	3,295	2,899	2,539	2,366
30세 이상	11,581	10,423	9,262	9,348	8,998	8,733	8,436	8,018	7,681	7,677
40세 이상	9,909	9,471	9,045	9,849	10,381	10,166	9,925	9,708	9,714	9,714
50세 이상	3,339	3,667	3,653	4,375	5,032	5,387	5,876	6,344	6,866	7,362
60세 이상	935	1,032	1,043	1,269	1,406	1,495	1,641	1,794	2,150	2,350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표 5-5〉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21	698	621	976	1,407	1,611	1,250	1,198	1132	1,222
소계	기 결	313	392	348	562	821	1,155	911	848	769	773
	미 결	308	306	273	414	586	456	339	350	363	449
중국	기 결	139	171	177	283	491	761	510	488	482	488
	미 결	154	209	131	236	386	217	169	206	223	269
일본	기 결	4	6	8	4	9	14	17	14	4	3
	미 결	6	-	1	4	11	5	-	2	2	1
미국	기 결	24	14	13	18	23	23	22	24	30	30
	미 결	15	11	10	19	22	12	19	12	20	20
기타	기 결	146	201	150	257	298	357	362	322	253	252
	미 결	133	86	131	155	167	222	151	130	118	159

○ 수형자 죄명별 인원 〈표 5-6〉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5,627	32,969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절 도	5,539	5,497	4,991	5,393	5,610	5,805	5,898	5,315	4,752	4,650
폭행 및 상해	809	770	882	988	1,090	914	848	854	854	889
사기 및 횡령	3,784	3,306	3,001	3,545	3,772	4,076	3,897	3,951	4,150	5,024
과 실 범	2,053	1,628	1,429	1,400	1,635	1,294	1,175	1,123	1,257	1,315
강 도	5,343	4,784	4,496	4,121	3,855	3,909	3,882	3,623	3,506	3,276
살 인	3,849	3,838	3,900	3,957	3,851	3,769	3,785	3,729	3,711	3,675
폭력행위등 처벌법	3,316	2,819	1,871	1,838	1,746	1,711	1,582	1,489	1,542	1,693
기 타	10,934	10,327	9,575	10,236	10,638	10,819	10,914	11,114	11,662	11,615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표 5-7〉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5,627	32,969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징역	소 계	34,467	31,865	29,009	30,313	30,982	31,070	30,683	29,889	30,082	30,796
	1년 미만	7,266	6,343	5,346	6,269	7,298	6,379	5,430	5,421	5,322	5,078
	1년 이상	13,073	11,938	10,212	10,599	10,219	10,861	10,673	9,666	9,829	10,344
	3년 이상	5,648	5,378	5,180	5,316	5,503	5,980	6,458	6,610	6,493	6,613
	5년 이상	4,541	4,250	4,186	4,052	3,943	3,953	4,197	4,335	4,601	4,912
	10년 이상	3,313	3,281	3,415	3,438	3,419	3,347	3,396	3,344	3,317	3,299
	20년 이상	626	675	670	639	600	550	529	513	520	550
금고	소 계	101	91	69	60	70	47	72	45	84	53
	6월 미만	1	2	4	5	5	2	4	2	2	1
	6월 이상	55	55	41	35	41	23	35	23	51	32
	1년 이상	35	30	22	19	22	18	29	15	26	16
	3년 이상	10	4	2	1	2	4	4	5	5	4
무기징역		1,059	1,013	1,067	1,105	1,145	1,180	1,226	1,264	1,268	1,288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표 5-8〉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5,627	32,969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무경험자		16,603	15,630	14,645	15,301	15,304	15,456	15,384	15,225	16,676	17,483
유경력자	소 계	19,024	17,339	15,500	16,177	16,893	16,841	16,597	15,973	14,758	14,654
	1 회	8,177	7,103	5,986	5,947	6,176	5,955	5,835	5,373	5,308	5,292
	2 회	3,783	3,380	2,976	2,978	3,034	2,947	2,850	2,622	2,540	2,515
	3 회	2,437	2,181	2,008	2,133	2,203	2,138	2,066	1,993	1,889	1,833
	4회이상	4,627	4,675	4,530	5,119	5,480	5,801	5,846	5,985	5,021	5,014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표 5-9〉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소자	계	69,384	67,951	61,018	64,606	66,464	73,073	62,862	55,046	53,689	55,479
	신 입 소	34,824	35,700	33,944	33,938	35,286	41,236	32,817	27,253	26,145	27,333
	형 확 정	30,639	27,458	22,733	26,439	26,539	26,704	25,380	23,163	22,931	23,267
	기 타	3,921	4,793	4,341	4,229	4,639	5,133	4,665	4,630	4,613	4,879
출소자	계	69,914	70,418	63,842	62,792	65,315	72,510	63,228	55,436	53,202	54,297
	형기종료	20,074	18,649	16,293	16,649	17,561	17,607	17,468	16,551	15,742	16,374
	가 석 방	11,218	10,520	8,590	8,067	8,524	8,392	8,083	7,129	6,500	6,201
	사 면	-	1,042	31	19	583	625	12	-	374	13
	형집행정지	587	458	295	438	404	484	424	533	381	330
	기 타	26,937	25,033	22,757	22,253	21,950	25,815	20,681	16,834	16,476	17,171
	노역종료	11,098	14,716	15,876	15,366	16,293	19,587	16,560	14,389	13,729	14,208
연도말 인원		35,627	32,969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나. 미결구금자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표 5-1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8,945	69,670	58,727	56,870	57,107	58,076	48,335	44,300	43,152	44,274
신 입 소	85,335	65,916	55,078	52,999	53,372	54,013	44,276	40,084	39,029	39,604
기 타 (보석취소 등)	3,610	3,754	3,649	3,871	3,735	4,063	4,059	4,216	4,123	4,670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표 5-1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2,182	85,729	67,118	67,754	65,155	70,008	61,815	43,987	41,433	42,651
구속취소	4,159	3,827	2,311	1,882	1,308	1,888	1,893	1,465	1,355	1,400
벌 금	3,598	3,104	2,107	1,881	1,988	2,156	1,574	1,235	947	1,078
집행유예	31,292	24,953	17,736	16,924	15,951	17,052	13,074	11,030	9,941	10,100
보 석	11,387	7,963	6,561	5,415	4,672	4,709	3,885	3,376	2,662	2,882
형 확 정	30,205	26,967	22,623	25,535	25,626	25,804	24,351	21,955	21,660	22,017
기 타	21,541	18,915	15,780	16,117	15,610	18,399	17,038	4,926	4,868	5,174
연도말인원	19,169	14,342	15,506	14,169	15,769	15,931	13,700	13,840	15,274	16,687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표 5-12〉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71	773	648	657	156	169	146	114	170	152
절 도	222	147	137	156	73	62	45	26	42	43
사기·횡령	11	10	8	15	1	3	3	-	2	1
폭력·상해	95	13	11	10	9	3	1	5	17	17
강 간 등	182	143	111	116	24	44	32	33	54	46
강 도 등	344	245	203	192	24	32	33	18	24	16
살 인	131	104	91	88	9	6	11	10	11	7
과 실 범	30	18	12	15	5	2	3	1	2	-
기 타	56	93	75	65	11	17	18	21	18	22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표 5-13〉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71	773	648	657	156	169	146	114	170	152
징역형	무 기	21	16	16	16	-	-	-	-	-	-
	20년 이상	37	27	22	20	-	-	-	1	2	4
	10년 이상	182	153	142	122	3	3	5	4	5	4
	5년 이상	141	111	92	89	14	15	15	12	13	10
	3년 이상	210	130	91	108	27	42	45	38	44	39
	1년 이상	363	249	203	233	87	89	58	48	94	87
	1년 미만	90	67	66	52	24	19	23	10	12	8
	6월 미만	25	19	16	15	1	1	-	1	-	-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2	1	-	2	-	-	-	-	-	-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표 5-14〉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81	1,110	766	673	317	101	114	69	86	101
가 석 방	370	314	211	152	58	17	21	10	17	10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만 기 석 방	623	457	310	326	164	59	75	45	45	68
기 타	388	339	245	195	95	25	18	14	24	23

라. 출소자 재복역률

○ 2009년 출소자의 재복역률 〈표 5-15〉

재복역 기간	'09년 출소자의 재복역률 (출소자 25,725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744	2.9%
6월 이내	1,679	6.5%
1년 이내	2,981	11.6%
2년 이내	4,664	18.1%
3년 이내	5,699	22.2%

※ 조사대상인원 : 25,725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09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

○ 출소사유별 · 재복역기간별 · 성별 재복역률 〈표 5-16〉

출소사유	총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5,725	1,695	5,699	172	744	21	935	20	1,302	30	1,683	65	1,035	36
형기종료	16,859	899	4,714	136	672	19	821	19	1,100	25	1,319	50	802	23
가석방	8,228	690	946	33	68	2	107	1	192	5	351	14	228	11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14	-	5	-	-	-	2	-	1	-	2	-	-	-
사 면	624	106	34	3	4	-	5	-	9	-	11	1	5	2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형기종료 28.0%, 가석방 11.5%,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35.7%, 사면 5.4%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3월 미만 2.9%, 6월 미만 6.5%, 1년 미만 11.6%, 2년 미만 18.1%, 3년 이내 22.2%

※ 재복역기간별 인원

3월 미만 744명(13.1%), 3월 이상 6월 미만 935명(16.4%), 6월 이상 1년 미만 1,302명(22.8%), 1년 이상 2년 미만 1,683명(29.5%), 2년 이상 3년 미만 1,035명(18.2%)

※ 성별 재복역률

남자 23.0%, 여자 10.2%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표 5-17〉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5,725	13,017	5,087	2,332	1,556	3,733
	재복역인원	5,699	1,174	1,190	816	635	1,884
	재복역률	22.2	9.0	23.4	35.0	40.8	50.5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59	6,337	3,078	2,208	1,520	3,716
	재복역인원	4,714	754	809	755	599	1,797
	재복역률	28.0	11.9	26.3	34.2	39.4	48.4
가석방	출소인원	8,228	6,056	2,006	121	32	13
	재복역인원	946	461	442	32	7	4
	재복역률	11.5	7.6	22.0	26.4	21.9	30.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재복역률	0.0	0.0	0.0	0.0	0.0	0.0
가출소	출소인원	14	4	2	2	3	3
	재복역인원	5	1	0	1	1	2
	재복역률	35.7	25.0	0.0	50.0	33.3	66.7
사면	출소인원	624	620	1	1	1	1
	재복역인원	34	33	0	0	1	0
	재복역률	5.4	5.3	0.0	0.0	100	0.0

※ 범수별 재복역률
초범 9.0%, 2범 23.4%, 3범 35.0%, 4범 40.8%, 5범 이상 50.5%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5범이 48.4%, 가석방은 5범이 30.8%로 재복역률이 가장 높음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표 5-18〉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5,725	186	4,575	6,675	8,588	4,515	1,186
	재복역인원	5,699	71	1,235	1,632	1,868	764	129
	재복역률	22.2	38.2	27.0	24.4	21.8	16.9	10.9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59	120	2,706	4,577	5,821	2,921	714
	재복역인원	4,714	51	942	1,386	1,584	645	106
	재복역률	28.0	42.5	34.8	30.3	27.2	22.1	14.8
가석방	출소인원	8,228	54	1,748	1,930	2,577	1,469	450
	재복역인원	946	20	304	231	256	112	23
	재복역률	11.5	37.0	17.4	12.0	9.9	7.6	5.1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재복역률	0.0	0.0	0.0	0.0	0.0	0.0	0.0
가출소	출소인원	14	0	0	2	8	3	1
	재복역인원	5	0	0	1	3	1	0
	재복역률	35.7	0.0	0.0	50.0	37.5	33.3	0.0
사면	출소인원	624	12	121	166	182	122	21
	재복역인원	34	2	16	5	10	1	0
	재복역률	5.4	16.7	13.2	3.0	5.5	0.8	0.0

※ 연령별 재복역률
20세미만 38.2%, 20대 27.0%, 30대 24.4%, 40대 21.8%, 50대 16.9%, 60대 이상 10.9%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형기종료(42.5%)·가석방(37.0%)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고, 가출소는 30대(50.0%)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표 5-19〉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5,725	764	994	1,135	2,830	4,910	7,759	1,921	2,262	3,150
	재복역인원	5,699	66	256	207	681	2,024	1,058	781	310	316
	재복역률	22.2	8.6	25.8	18.2	24.1	41.2	13.6	40.7	13.7	10.0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59	139	512	833	2,175	3,966	4,394	1,911	1,296	1,633
	재복역인원	4,714	27	170	168	591	1,688	856	775	212	227
	재복역률	28.0	19.4	33.2	20.2	27.2	42.6	19.5	40.6	16.4	13.9
가석방	출소인원	8,228	624	472	300	642	888	2,902	10	931	1,459
	재복역인원	946	38	84	38	90	327	182	6	96	85
	재복역률	11.5	6.1	17.8	12.7	14.0	36.8	6.3	60.0	10.3	5.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출소	출소인원	14	1	10	2	0	1	0	0	0	0
	재복역인원	5	1	2	1	0	1	0	0	0	0
	재복역률	35.7	100.0	20.0	50.0	0.0	100.0	0.0	0.0	0.0	0.0
사면	출소인원	624	0	0	0	13	55	463	0	35	58
	재복역인원	34	0	0	0	0	8	20	0	2	4
	재복역률	5.4	0.0	0.0	0.0	0.0	14.5	4.3	0.0	5.7	6.9

※ 죄명별 재복역률
살인(8.6%), 강도(25.8%), 성폭력(18.2%), 폭력(24.1%), 절도(41.2%), 사기·횡령(13.6%), 마약류(40.7%), 과실범(13.7%)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절도가 42.6%로, 가석방은 마약류가 60.0%, 가출소는 살인·절도가 100%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표 5-20〉

출소사유	구 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5,725	1,606	9,540	11,092	2,143	588	323	287	75	71
	재복역인원	5,699	316	1,915	2,726	547	99	49	31	8	8
	재복역률	22.2	19.7	20.1	24.6	25.5	16.8	15.2	10.8	10.7	11.3
형기종료	출소인원	16,859	1,553	7,081	6,388	1,275	319	160	61	16	6
	재복역인원	4,714	299	1,689	2,151	445	77	36	13	4	0
	재복역률	28.0	19.3	23.9	33.7	34.9	24.1	22.5	21.3	25.0	0.0
가석방	출소인원	8,228	45	2,270	4,329	818	268	162	215	56	65
	재복역인원	946	3	180	591	102	24	15	18	3	10
	재복역률	11.5	6.7	7.9	13.7	12.5	9.0	9.3	8.4	5.4	15.4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출소	출소인원	14	0	0	0	0	0	0	11	3	0
	재복역인원	5	0	0	0	0	0	0	4	1	0
	재복역률	35.7	0.0	0.0	0.0	0.0	0.0	0.0	36.4	33.3	0.0
사 면	출소인원	624	8	189	375	50	1	1	0	0	0
	재복역인원	34	0	12	20	2	0	0	0	0	0
	재복역률	5.4	0.0	6.3	5.3	4.0	0.0	0.0	0.0	0.0	0.0

※ 형기별 재복역률
6월 미만(19.7%), 6월 이상 1년 미만(20.1%), 1년 이상 3년 미만(24.6%), 3년 이상 5년 미만(25.5%), 5년 이상 7년 미만(16.8%), 7년 이상 10년 미만(15.2%), 10년 이상 15년 미만(10.8), 15년 이상 20년 미만(10.7%), 20년 이상(11.3%)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3년 이상 5년 미만이 34.9%, 가석방은 20년 이상이 15.4%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 일반학과 교육인원 〈표 5-21〉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500	1,500	1,320	900	1,070	890	871	869	832	832
초등과	150	150	425	90	108	120	101	100	97	97
중등과	500	500	325	295	339	305	309	305	278	278
고등과	850	850	570	515	623	465	461	464	457	457

○ 검정고시 합격인원 〈표 5-22〉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132	927	766	702	597	572	481	514	558	571
고 졸	693	569	478	415	355	330	291	325	390	370
고 입	376	315	233	246	209	205	169	162	130	187
중 입	63	43	55	41	33	37	21	27	38	14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표 5-23〉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교육인원	255	90	90	50	21	40	40	40	30	30
	졸업인원	37	18	8	10	8	6	13	10	5	9
천안	교육인원	135	90	90	50	21	폐지	-	-	-	
	졸업인원	23	18	8	10	8	-	-	-	-	
김천	교육인원	120	폐지	-	-	-	40	40	40	30	30
	졸업인원	14	-	-	-	-	6	13	10	5	9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귀휴 인원 〈표 5-24〉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1,070	1,123	1,122	1,123	1,084	1,000	1,157	1,165	1,209	1,282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표 5-25〉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4,265	4,106	3,851	4,315	4,386	2,994	5,108	4,323	4,099	4,245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표 5-26〉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9,973	10,082	10,128	11,601	11,503	6,807	11,078	11,566	11,681	11,578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표 5-27〉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373	373	337	453	782	795	1,223	1,120	1,177	1,265

다. 교정위원 활동

○ 교정위원 현황 〈표 5-2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532	4,557	4,621	4,682	4,656	4,574	5,220	5,069	4,915	4,833
교화위원	2,221	2,252	2,298	2,304	2,313	2,255	2,232	2,070	1,971	1,915
종교위원	1,918	1,881	1,866	1,921	1,910	1,925	1,963	1,962	1,942	1,967
교육위원	261	274	265	269	263	241	248	225	218	211
의료위원	132	150	192	188	170	153	140	123	112	108
취업위원	-	-	-	-	-	-	637	689	672	632

○ 교화위원 활동실적 〈표 5-29〉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담(명)	4,870	4,118	3,921	2,591	2,317	1,896	1,454	1,728	1,615	1,591
교화강연(회)	360	336	343	101	99	61	15	13	6	3
자매결연(명)	504	450	413	421	661	549	778	719	186	363
수용생활 지원(명)	4,042	3,401	4,567	4,377	3,114	4,439	4,747	4,739	4,440	4,619

○ 종교위원 활동실적 〈표 5-30〉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리지도(명)	64,649	58,789	50,940	44,239	48,150	38,201	44,678	37,072	39,667	41,207
자매결연(명)	5,297	3,657	2,597	6,605	6,962	13,428	12,466	9,652	2,920	3,989
수용생활 지원(명)	25,251	24,169	26,076	24,535	24,939	25,309	24,891	26,093	27,305	24,780
교화도서 기증(권)	3,975	3,989	2,909	2,908	994	9,028	3,429	2,361	1,782	401

○ 교육위원 활동실적 〈표 5-31〉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육훈련 지도(명)	37,784	42,539	22,857	14,769	20,213	12,905	8,777	8,783	7,665	6,761
자매결연(명)	14	58	39	72	30	5	6	7	4	8
수용생활 지원(명)	87	94	29	20	161	720	400	110	1	-
교화도서 기증(권)	0	747	0	85	97	514	97	89	276	-

○ 의료위원 활동실적 〈표 5-32〉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지원(명)	-	11,769	13,864	12,095	8,787	6,757	2,754	6,029	4,970	4,762
자매결연(명)	-	7	1	3	-	2	1	-	3	2
수용생활 지원(명)	-	290	220	80	45	33	29	38	19	-
교화도서 기증(권)	-	-	-	30	-	-	-	33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취업 인원 〈표 5-33〉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형자 총인원		35,436	33,040	30,361	31,083	31,506	32,575	31,975	31,032	31,620	32,076
취업 불가능인원		8,723	8,480	6,850	7,091	7,577	8,562	8,575	8,469	9,053	9,140
취업가능인원	계	26,713	24,560	23,511	23,992	23,929	24,013	23,400	22,563	22,567	22,936
	취업 인원	22,977	21,510	19,598	19,665	19,471	19,441	18,892	19,379	18,826	18,991
	비율 (%)	86	88	83	82	81	81	79	86	83	83
	불취업 인원	3,736	3,050	3,913	4,327	4,458	4,572	4,508	3,184	3,741	3,945

※ 감호작업은 제외

○ 생산실적 〈표 5-34〉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획	33,500	34,700	35,100	33,048	33,351	31,600	31,800	32,000	32,913	33,789
실 적	34,441	33,750	30,473	34,334	31,399	33,713	33,053	39,220	38,038	42,099
실적/계획(%)	102	97	87	103.9	94.1	106.7	103.9	122.6	115.6	124.6
실적 증가율	△0.6	△2	△9.8	12.7	△8.5	7.4	△2	18.7	△3.0	10.7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표 5-35〉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실 적	34,441	33,750	30,473	34,334	31,399	33,713	33,053	39,220	38,038	42,099
	구성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직영작업	실 적	23,926	22,796	19,480	23,363	19,938	23,187	21,284	26,496	22,951	22,873
	구성비 (%)	69.5	67.5	64	68	63	68.7	64.4	67.6	60.3	54.3
위탁작업	실 적	3,983	4,367	4,457	4,615	4,957	4,811	5,455	6,170	7,907	11,548
	구성비 (%)	11.7	12.9	14.6	13.4	16	14.3	16.5	15.7	20.8	27.4
노무작업	실 적	6,415	6,234	6,347	6,017	5,933	5,560	6,154	6,256	7,004	7,020
	구성비 (%)	18.6	18.5	20.8	17.6	19	16.5	18.6	16.0	18.4	16.7
잡수입	실 적	117	353	189	339	571	155	160	298	176	658
	구성비 (%)	0.3	1.1	0.6	1	2	0.5	0.5	0.8	0.5	1.6

○ 연도별 관수용품 공급실적 〈표 5-36〉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총액		34,441	33,750	30,473	34,334	31,399	33,713	33,053	39,220	38,038	42,099
관수용품	계	19,574	19,350	16,536	20,267	17,645	21,287	19,146	23,857	20,320	19,354
	교 도 소	17,164	18,360	15,516	19,301	16,663	19,960	18,492	23,081	19,513	18,757
	법무부산하	1,615	265	210	336	366	367	145	153	346	296
	부 외 처	795	725	810	630	616	960	509	623	461	301
일반시중		14,867	14,400	13,937	14,067	13,754	12,426	13,907	15,363	17,718	22,745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표 5-37〉

(단위 : 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급액(천원)	10,304,010	10,567,091	10,986,521	11,036,115	11,111,119	10,800,307	10,174,852	10,550,869	11,966,506	14,901,986
지 급 연인원	6,698,723	6,057,528	5,361,135	5,200,699	5,125,320	5,168,684	4,745,771	4,958,200	4,965,893	5,022,670
1인당 1일평균	1,538	1,744	2,049	2,122	2,168	2,090	2,144	2,128	2,410	2,967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표 5-38〉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급인원	5	6 (1)	3	7 (1)	5 (1)	6	8	6	5	2
지 급 액	9,320	55,384 (49,600)	20,269	65,817 (30,506)	46,768 (30,506)	42,694	69,627	60,804	73,735 (42,709)	8,251

※ ( )는 조위금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표 5-39〉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 급 액	1,137,390	449,000	155,698	196,793	250,211	329,100	423,956	549,227	599,907	700,846
지급인원	236	85	49	53	67	80	90	97	122	117
1인당 평균 지급액(원)	4,819,449	5,282,353	3,177,510	3,713,075	3,734,493	4,113,750	4,710,622	5,662,134	4,917,270	5,990,137

○ 피보호감호자 위로금 지급실적 〈표 5-40〉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급인원	-	1	-	-	-	-	-	-	-	-
지 급 액	-	1,395	-	-	-	-	-	-	-	-

나. 직업훈련

○ 직업훈련 수료인원 〈표 5-4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818	3,556	3,273	3,279	3,470	3,537	3,725	3,825	4,129	4,852
양성·향상 훈 련	3,223	2,990	2,740	2,683	2,536	2,783	3,164	3,076	3,386	3,336
숙련훈련	-	-	-	217	490	430	327	369	350	249
일반훈련	595	566	533	379	444	324	234	380	393	1,267

○ 기능자격 취득인원 〈표 5-42〉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651	3,448	2,870	2,506	2,693	2,740	2,856	2,803	2,813	2,953
산업기사 이 상	318	251	293	244	276	255	281	204	256	173
기 능 사	3,333	3,197	2,577	2,262	2,417	2,485	2,575	2,599	2,557	2,780

제 6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표 6-1〉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계	29,609,460	32,638,035	35,851,121	39,833,724	38,203,620
	승 객	26,343,930	29,257,175	32,155,083	35,918,348	34,326,585
	승무원	3,265,530	3,380,860	3,696,038	3,915,376	3,877,035
국민	소 계	18,177,433	20,638,159	23,538,250	27,174,375	24,677,484
	승 객	16,537,304	18,897,065	21,647,674	25,084,645	22,608,575
	승무원	1,640,129	1,741,094	1,890,576	2,089,730	2,068,909
외국인	소 계	11,432,027	11,999,876	12,312,871	12,659,349	13,526,136
	승 객	9,806,626	10,360,110	10,507,409	10,833,703	11,718,010
	승무원	1,625,401	1,639,766	1,805,462	1,825,646	1,808,126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계	35,206,504	42,988,101	45,422,910	50,322,102	54,966,229
	승 객	31,431,486	38,863,373	40,976,012	45,744,545	48,888,699
	승무원	3,775,018	4,124,728	4,446,898	4,577,557	6,077,530
국민	소 계	19,586,995	25,585,627	26,064,463	28,136,628	30,352,303
	승 객	17,576,130	23,419,302	23,759,315	25,557,744	27,646,533
	승무원	2,010,865	2,166,325	2,305,148	2,578,884	2,705,770
외국인	소 계	15,619,509	17,402,474	19,358,447	22,185,474	24,613,926
	승 객	13,855,356	15,444,071	17,216,697	20,186,801	21,242,166
	승무원	1,764,153	1,958,403	2,141,750	1,998,673	3,371,760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표 6-2〉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계	4,929,517	5,179,848	5,321,593	5,491,128	5,897,517
일 본	2,426,837	2,421,406	2,319,874	2,215,611	2,358,333
중 국	472,639	585,569	780,239	920,250	1,015,699
미 국	578,566	586,519	603,741	627,172	644,012
타 이 완	338,003	385,079	368,964	370,071	352,071
홍 콩	146,091	157,867	134,520	131,482	150,423
타 이	71,641	81,518	89,752	100,850	118,877
말 레 이 시 아	75,577	82,068	74,467	65,872	67,326
오스트레일리아	54,484	60,474	65,491	76,980	91,801
필 리 핀	52,825	59,023	67,941	73,122	79,266
캐 나 다	70,473	79,198	85,612	90,202	95,993
싱 가 포 르	67,482	64,856	71,018	75,383	77,074
베 트 남	24,276	35,175	41,791	55,638	72,020
영 국	61,223	67,761	70,192	74,760	82,093
러 시 아	65,786	61,805	62,559	65,263	68,079
인 도 네 시 아	36,018	39,234	36,152	39,118	49,768
독 일	58,620	64,419	65,740	71,819	76,686
프 랑 스	35,536	38,690	41,021	47,084	52,577
인 도	34,321	34,761	37,065	41,292	43,140
몽 골	19,500	24,740	32,580	39,860	43,113
우 즈 베 키 스 탄	10,116	8,608	11,512	16,032	22,165
뉴 질 랜 드	15,559	16,035	17,119	20,578	23,809
기 타	213,944	225,043	244,243	272,689	313,192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6,942,183	7,774,645	8,666,503	10,121,950	10,678,334
일 본	3,032,376	3,004,066	3,270,290	3,497,525	2,715,451
중 국	1,212,305	1,723,849	2,045,380	2,731,121	3,923,190
미 국	647,566	693,892	694,990	733,984	743,017
타 이 완	411,591	438,041	457,680	570,442	566,200
홍 콩	206,918	221,121	272,600	352,019	391,340
타 이	156,167	219,231	262,703	334,502	313,347
말 레 이 시 아	66,148	98,807	136,531	161,970	187,322
오스트레일리아	94,262	105,304	114,844	121,795	114,106
필 리 핀	86,477	94,897	113,552	126,566	133,595
캐 나 다	102,145	112,496	112,417	119,943	122,330
싱 가 포 르	84,351	100,526	110,610	138,813	157,696
베 트 남	76,537	92,810	106,360	110,250	114,357
영 국	84,213	90,331	97,817	104,724	106,783
러 시 아	65,180	77,024	86,129	104,273	119,691
인 도 네 시 아	48,891	61,592	85,351	110,209	119,179
독 일	80,525	81,396	80,142	86,327	86,759
프 랑 스	53,721	58,531	60,209	63,555	67,836
인 도	40,877	49,762	52,009	56,329	60,675
몽 골	38,192	41,889	48,632	61,771	65,446
우즈베키스탄	15,763	22,385	29,910	42,133	44,326
뉴 질 랜 드	23,074	25,792	25,504	28,239	27,065
기 타	314,904	360,903	402,843	465,460	498,623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표 6-3〉

항구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계	4,929,517	5,179,848	5,321,593	5,491,128	5,897,517
인 천 공 항	3,787,246	3,899,431	3,866,921	3,950,686	4,231,876
부 산	242,537	218,879	190,849	179,589	206,208
인 천	77,726	115,380	177,076	164,660	191,630
김 해	361,339	351,591	331,965	356,163	405,783
제 주	154,171	191,958	257,840	317,566	278,252
대 구	12,957	16,298	18,544	14,733	13,932
여 수	2,113	2,159	1,915	3,379	3,721
김 포 공 항	196,504	303,017	403,419	423,804	474,293
창 원	1,340	1,203	1,365	1,404	1,065
청 주	12,045	9,109	12,442	10,774	10,014
울 산	4,629	5,978	6,748	6,940	7,984
감 천	8,260	8,190	8,005	7,632	7,347
평 택	8,240	7,646	12,601	18,347	21,878
오 산	38,621	25,283	7,431	6,901	7,914
서 산	650	760	873	1,291	1,534
광 양	993	1,274	1,250	1,325	1,726
군 산	1,525	2,575	3,791	3,957	9,571
동 해	940	1,215	753	984	983
속 초	10,537	10,335	11,709	9,019	6,682
무 안 공 항	-	-	-	414	3,425
양 양 공 항	2,366	1,828	188	267	679
기 타	4,778	5,739	5,908	11,293	11,020

연도 / 항구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6,942,183	7,774,645	8,666,503	10,121,950	10,678,334
인 천 공 항	4,874,647	5,360,400	5,810,937	6,694,670	6,791,570
부 산	217,310	250,111	236,334	259,977	244,125
인 천	218,857	296,826	364,524	364,662	416,320
김 해	442,303	462,688	578,389	706,527	768,412
제 주	325,048	372,620	374,352	610,609	1,035,720
대 구	9,455	8,700	12,039	9,962	11,961
여 수	3,933	4,388	4,774	12,376	10,809
김 포 공 항	747,496	867,397	1,097,356	1,200,431	1,080,350
창 원	1,300	1,319	1,879	1,658	1,659
청 주	7,829	23,292	20,577	37,470	70,967
울 산	6,717	6,772	8,120	7,928	8,593
감 천	7,246	7,509	7,327	9,384	9,800
평 택	28,444	42,008	71,655	113,328	96,698
오 산	8,171	17,037	21,388	26,380	24,943
서 산	1,751	2,153	2,309	2,216	2,186
광 양	1,606	2,164	3,431	2,452	9,651
군 산	22,479	24,889	28,568	28,877	30,859
동 해	3,952	7,581	11,017	9,962	8,329
속 초	6,015	4,138	56	526	7,452
무 안 공 항	2,771	3,490	4,135	4,591	23,639
양 양 공 항	0	2,437	2,253	11,320	19,231
기 타	4,853	6,726	5,083	6,644	5,060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표 6-4〉

연도 / 체류자격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계	4,929,517	5,179,848	5,321,593	5,491,128	5,897,517
사증면제(B-1)	461,823	496,356	517,526	560,716	610,756
관광통과(B-2)	3,328,269	3,404,923	3,344,602	3,321,271	3,526,403
단기상용(C-2)	184,667	214,621	258,844	262,145	264,715
단기종합(C-3)	393,763	444,926	501,559	505,429	503,599
유 학(D-2)	18,934	25,635	35,979	52,253	64,930
산업연수(D-3)	38,150	41,365	48,203	8,881	3,080
일반연수(D-4)	8,501	10,257	16,496	28,248	34,023
종 교(D-6)	1,857	2,086	2,225	2,492	2,485
주 재(D-7)	8,508	8,369	8,126	8,673	8,225
기업투자(D-8)	31,764	35,712	36,302	42,023	41,924
무역경영(D-9)	4,126	5,917	8,099	8,672	10,545
교 수(E-1)	2,853	3,204	3,500	3,993	4,819
회화지도(E-2)	23,134	25,014	29,263	35,457	38,822
연 구(E-3)	4,725	5,406	5,838	6,766	6,519
예술흥행(E-6)	3,943	4,759	4,518	4,185	4,845
특정활동(E-7)	12,092	13,514	14,927	18,918	21,222
비전문취업(E-9)	51,283	38,244	38,713	61,818	101,272
선원취업(E-10)	93	1,910	1,842	4,304	5,144
방문동거(F-1)	35,637	74,479	120,190	61,806	29,391
거 주(F-2)	76,396	88,391	93,759	109,777	113,643
동 반(F-3)	18,825	20,741	21,243	23,814	24,356
재외동포(F-4)	38,276	43,224	49,005	62,429	70,030
영 주(F-5)	20,282	23,004	23,732	27,763	28,294
기 타	161,616	147,791	137,102	269,295	378,475

연도 / 체류자격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6,942,183	7,774,645	8,666,503	10,121,950	10,678,334
사증면제(B-1)	657,800	803,617	909,930	1,066,334	1,090,907
관광통과(B-2)	4,409,336	4,601,828	4,969,884	5,524,120	5,040,354
단기상용(C-2)	226,416	224,574	182,404	22	-
단기방문(C-3)	617,044	959,374	1,324,640	2,102,656	2,728,573
유 학(D-2)	85,439	106,961	112,291	111,219	114,818
산업연수(D-3)	1,371	2,274	2,274	1,951	1,806
일반연수(D-4)	37,573	30,938	37,432	34,413	37,282
종 교(D-6)	2,254	2,346	2,190	4,083	2,362
주 재(D-7)	7,537	7,930	8,469	8,908	9,234
기업투자(D-8)	36,471	37,966	38,102	39,584	39,859
무역경영(D-9)	11,729	16,848	18,191	17,456	32,326
교 수(E-1)	6,184	7,454	7,824	8,181	8,186
회화지도(E-2)	45,006	47,405	44,108	40,848	38,572
연 구(E-3)	6,456	7,829	8,023	8,525	9,223
예술흥행(E-6)	4,577	4,183	3,655	4,162	4,368
특정활동(E-7)	21,022	24,525	29,143	35,907	36,904
비전문취업(E-9)	85,654	82,099	106,442	99,140	105,738
선원취업(E-10)	5,947	7,084	8,900	7,173	8,281
방문동거(F-1)	29,787	34,595	29,597	38,883	41,740
거 주(F-2)	114,463	122,063	117,377	19,099	24,948
동 반(F-3)	25,082	26,459	27,671	31,704	36,544
재외동포(F-4)	77,948	129,142	190,212	222,836	280,130
영 주(F-5)	29,257	41,561	58,805	70,890	87,497
기 타	397,830	445,590	428,939	618,856	898,682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5〉

국가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중 국	555,082	608,881	677,954	698,444	778,113
미 국	122,659	127,140	132,133	130,562	134,711
베 트 남	90,931	103,306	116,219	120,254	120,069
일 본	47,718	48,905	58,169	57,174	56,081
필 리 핀	45,913	47,241	47,542	42,219	47,514
타 이	44,701	44,250	45,634	45,945	55,110
인 도 네 시 아	29,859	31,728	36,971	38,018	41,599
우 즈 베 키 스 탄	21,249	25,895	29,742	34,688	38,515
몽 골	30,674	29,920	28,634	26,461	24,175
타 이 완	27,062	24,760	26,316	30,413	27,698
캐 나 다	19,393	20,435	21,812	23,051	23,655
스 리 랑 카	15,506	18,377	21,554	22,354	23,383
캄 보 디 아	9,204	12,192	17,320	24,610	31,986
방 글 라 데 시	10,863	12,605	13,465	13,584	13,600
네 팔	8,164	9,834	13,256	18,908	22,015
러 시 아	9,622	9,767	10,547	11,361	12,804
파 키 스 탄	9,820	10,319	10,341	10,027	10,423
호 주	7,446	8,469	9,711	10,093	12,203
인 도	6,364	7,117	7,500	8,317	9,174
미 얀 마	4,555	4,565	6,479	9,218	12,678
영 국	5,024	5,458	6,382	6,814	7,998
기 타	46,668	50,251	57,396	62,588	72,530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6〉

체류자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사증면제(B-1)	31,118	32,365	36,639	41,934	47,890
관광통과(B-2)	69,325	71,490	88,976	91,324	87,908
단기상용(C-2)	31,076	26,795	19,377	-	-
단기방문(C-3)	59,088	64,150	68,104	123,630	131,951
유 학(D-2)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산업연수(D-3)	13,325	5,350	4,324	3,854	3,648
일반연수(D-4)	19,923	37,809	36,819	22,195	23,005
종 교(D-6)	1,651	1,571	1,592	1,557	1,770
주 재(D-7)	1,492	1,530	1,646	1,563	1,659
기업투자(D-8)	7,907	7,557	7,405	7,122	6,053
무역경영(D-9)	3,282	4,477	4,472	4,854	8,272
교 수(E-1)	2,056	2,266	2,474	2,631	2,637
회화지도(E-2)	22,642	23,317	22,541	21,603	20,030
연 구(E-3)	2,066	2,324	2,606	2,820	2,997
예술흥행(E-6)	4,305	4,162	4,246	4,528	4,940
특정활동(E-7)	8,896	10,712	14,397	17,451	18,213
연수취업(E-8)	11,307	-	-	-	-
비전문취업(E-9)	188,363	220,319	234,295	230,237	246,695
선원취업(E-10)	5,207	6,716	9,661	10,424	12,163
방문동거(F-1)	45,632	42,212	45,092	52,674	60,927
거 주(F-2)	132,329	138,669	138,418	63,362	39,704
동 반(F-3)	14,652	15,409	17,607	18,795	20,150
재외동포(F-4)	50,664	84,912	136,702	189,508	235,953
영 주(F-5)	22,446	45,475	64,979	84,140	100,171
방문취업(H-2)	306,283	286,586	303,368	238,765	240,178
기 타	50,991	55,642	61,298	146,102	198,654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7〉

사무소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870,636	918,917	982,461	932,983	985,923
서 울	226,574	234,414	251,109	221,420	105,767
부 산	48,715	51,526	56,948	56,041	58,069
인 천	124,628	95,307	79,438	74,997	80,807
수 원	107,606	116,665	122,720	115,903	126,717
제 주	5,250	5,932	7,128	8,736	10,864
대 구	49,915	51,991	44,450	38,016	40,554
대 전	46,011	27,532	28,794	28,605	29,396
여 수	3,730	3,965	4,392	4,651	4,876
양 주	52,546	54,055	33,286	31,660	32,815
광 주	18,668	20,315	21,505	22,109	23,579
창 원	21,951	24,261	27,838	26,907	28,189
춘 천	8,470	9,317	9,094	8,656	9,059
청 주	21,485	23,292	24,479	23,637	26,214
전 주	16,512	16,587	17,557	17,609	18,416
세종로(출)	58,468	58,260	59,649	54,537	53,931
울 산(출)	14,961	16,044	18,422	25,819	29,637
안 산(출)	-	-	64,484	64,425	75,301
구 미(출)	-	-	11,530	11,470	12,612
포 항(출)	4,842	5,305	6,014	5,931	6,425
천 안(출)	-	-	26,536	26,397	29,109
서 산(출)	7,305	8,240	9,058	9,263	9,959
고 양(출)	-	-	20,689	19,229	19,811
목 포(출)	9,770	9,883	10,568	9,947	10,272
거 제(출)	8,067	8,080	8,924	9,028	11,272
군 산(출)	3,407	3,565	4,294	4,421	4,651
기 타	11,755	74,381	13,555	13,569	127,621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8〉

지역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870,636	918,917	982,461	932,983	985,923
서 울	255,749	262,902	279,220	247,108	244,410
부 산	31,310	32,471	35,116	35,049	35,943
경 기	266,808	285,262	302,447	288,251	314,715
강 원	12,672	13,737	13,332	12,901	13,409
충 북	22,648	24,453	25,730	24,830	27,481
충 남	37,667	42,753	48,091	48,501	52,399
전 북	19,919	20,152	21,851	22,030	23,067
전 남	21,149	21,970	23,797	23,602	24,544
경 북	35,350	36,895	39,984	40,067	43,499
경 남	53,222	57,718	65,960	64,371	69,126
제 주	5,250	5,932	7,128	8,736	10,864
울 산	14,961	16,043	18,421	19,247	22,427
대 구	19,406	20,401	22,014	21,922	23,302
인 천	47,852	49,992	50,217	47,305	50,382
광 주	12,188	13,360	14,106	14,492	15,557
대 전	14,485	14,876	15,047	14,571	14,798

9.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표 6-9〉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유 학(D-2)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한국어연수(D-41)	18,534	17,880	20,429	20,681	21,381
증감률(전년대비, %)	(13.2%)	(8.0%)	(1.1%)	(-4.2%)	(-3.4%)

국가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중 국	63,209	66,635	65,271	57,798	54,235
베 트 남	2,870	3,033	3,100	3,261	3,760
몽 골	3,691	4,405	4,958	4,952	4,166
일 본	1,626	1,745	2,083	2,334	2,184
미 국	982	966	933	956	1,001
우즈베키스탄	752	738	701	702	771
인 도	638	695	753	772	870
말레이시아	553	597	581	633	714
러 시 아	462	543	503	479	583
방글라데시	529	578	593	562	570
네 팔	416	430	467	562	581
필 리 핀	401	464	530	511	583
타 이 완	357	512	570	602	733
파 키 스 탄	348	386	513	695	879
인도네시아	394	526	615	782	962
기 타	3,757	5,227	6,297	9,110	9,255

10.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표 6-10〉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증감률 (전년대비, %)	(2.1%)	(13.2%)	(2.1%)	(2.6%)	(1.6%)

국가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중 국	65,992	66,687	64,173	63,035	62,400
베 트 남	30,173	35,355	37,516	39,352	39,854
필 리 핀	6,321	7,476	8,367	9,611	10,383
일 본	5,074	10,451	11,162	11,746	12,220
캄 보 디 아	3,230	4,195	4,583	4,541	4,650
몽 골	2,292	2,421	2,393	2,395	2,368
타 이	2,029	2,533	2,603	2,618	2,643
미 국	1,638	2,177	2,410	2,653	2,845
우 즈 베 키 스 탄	1,437	1,725	1,840	2,017	2,141
캐 나 다	839	1,076	1,158	1,240	1,268
러 시 아	928	1,280	1,319	1,179	1,311
파 키 스 탄	642	654	720	787	847
네 팔	590	706	840	1,027	1,112
방 글 라 데 시	417	412	397	367	353
인 도 네 시 아	397	461	507	525	555
영 국	344	481	558	625	698
타 이 완	325	462	520	573	645
기 타	2,419	3,102	3,615	4,207	4,572

11.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표 6-11〉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귀화	25,044	16,312	16,090	10,541	11,270
	회복	1,712	1,011	2,265	1,987	2,686
중국	귀화	19,432	11,876	10,946	6,182	5,380
	회복	1,268	448	653	101	421
베트남	귀화	3,762	2,997	3,091	2,964	3,952
	회복	33	83	178	47	82
필리핀	귀화	815	450	496	332	524
	회복	17	11	21	7	8
몽골	귀화	179	181	158	106	112
	회복	5	16	17	4	11
우즈베키스탄	귀화	101	48	72	70	90
	회복	17	41	30	5	20
일본	귀화	39	19	46	24	40
	회복	52	35	39	33	44
타이	귀화	95	38	44	59	79
	회복	16	31	23	13	12
파키스탄	귀화	44	68	37	17	33
	회복	-	-	-	-	-
기타	귀화	577	635	1,200	787	1,060
	회복	304	346	1,304	1,777	2,088

1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표 6-12〉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430,104	477,029	550,931	541,783	602,226
중 국	377,560	415,004	477,163	457,208	512,120
미 국	31,903	35,822	40,786	44,567	45,253
캐 나 다	8,019	9,502	11,351	12,988	13,586
우 즈 베 키 스 탄	3,980	6,368	9,093	11,954	14,385
러 시 아	2,539	2,992	3,596	4,247	5,051
오 스 트 레 일 리 아	2,444	2,779	3,251	3,726	3,955
뉴 질 랜 드	979	1,148	1,439	1,753	1,972
카 자 흐 스 탄	369	643	950	1,292	1,494
독 일	624	725	814	889	875
일 본	441	510	655	772	816
기 타	1,246	1,536	1,833	2,387	2,719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표 6-13〉

연도 \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총 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4~2005	809	41	27	136	77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14	79	109
2009	324	70	22	994	203
2010	423	47	35	168	62
2011	1,011	42	20	277	90
2012	1,143	60	31	558	187
2013	1,574	57	6	523	331

※ 심사대기 1,990명

14.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표 6-14〉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77,955	168,515	167,780	177,854	183,106
중 국	82,484	76,566	67,034	69,792	69,243
베 트 남	14,664	15,440	18,876	25,665	27,240
타 이	12,383	12,408	14,095	17,591	20,665
몽 골	12,270	10,883	9,668	8,680	7,747
필 리 핀	11,834	11,256	11,863	13,616	13,029
우즈베키스탄	7,091	5,729	5,028	4,629	4,970
방글라데시	6,345	5,507	4,979	4,624	4,525
인도네시아	4,955	4,746	5,718	6,197	6,723
미 국	4,057	4,843	7,476	3,337	3,142
파 키 스 탄	2,990	2,979	3,373	3,218	3,180
스 리 랑 카	2,092	1,940	2,615	3,539	4,336
네 팔	1,989	1,805	1,759	1,888	2,158
인 도	1,547	1,349	1,201	987	970
미 얀 마	1,372	1,284	1,186	1,280	1,285
러 시 아	1,393	1,254	1,078	895	1,017
키르기스스탄	1,068	919	742	637	597
캄 보 디 아	975	1,091	1,314	1,698	2,330
타 이 완	891	840	950	914	938
이 란	855	821	760	687	681
카자흐스탄	706	569	465	412	385
나이지리아	625	627	654	649	642
기 타	5,369	5,659	6,946	6,919	7,303

15.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현황 〈표 6-15〉

연도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2004년	67,734	19,307	1,511	2,259	20,444	22,747,620	780	7,245	1,354,830	16,188
2005년	105,212	38,019	2,523	3,152	19,123	31,985,462	1,595	8,327	1,498,020	32,473
2006년	69,674	18,574	901	2,509	22,468	20,173,221	1,438	6,231	957,645	17,553
2007년	72,712	18,462	948	2,458	26,212	28,724,790	1,437	6,959	1,002,700	16,236
2008년	105,941	30,576	1,240	3,689	26,325	34,486,326	2,186	11,200	1,421,543	30,725
2009년	100,337	29,043	1,180	2,401	23,851	31,989,135	2,470	11,434	1,546,146	29,958
2010년	94,232	13,474	1,472	2,781	33,109	43,505,440	1,171	11,987	1,700,448	30,238
2011년	92,970	18,034	2,250	2,862	31,417	44,874,390	928	10,435	1,520,690	27,044
2012년	96,799	18,248	3,340	2,676	24,279	30,740,620	819	13,796	1,955,220	33,641
2013년	101,760	18,268	5,655	3,775	25,148	31,614,430	1,234	10,189	1,391,510	37,491
지난해 대비 (%)	5.1%	0.1%	69.3%	41.1%	3.6%	2.8%	50.7%	-26.1%	-28.8%	11.4%

자 료

Ⅰ. 직 제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Ⅲ. 장관 연설문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Ⅵ. 인 사
Ⅶ. 국외훈련·출장
Ⅷ. 국제교류 현황
Ⅸ. 상 훈
Ⅹ. 위원회 현황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목 차

Ⅰ. **직 제** ····· 495

1. 직제 연혁 ····· 495
2. 조직도 ····· 524
3. 정원 변동표 ····· 525

Ⅱ. **훈령 · 예규 및 주요지시** ····· 528

1. 훈　　령 ····· 528
2. 예　　규 ····· 533
3. 주요지시 ····· 537

Ⅲ. **장관 연설문** ····· 551

Ⅳ. **역대 법무 · 검찰 간부 명단** ····· 598

1. 법무부장관 ····· 598
2. 검찰총장 ····· 600
3. 법무부차관 ····· 601
4. 대검찰청 차장검사 ····· 603
5.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 604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 611

1. 본　　부 ····· 611
2. 법무연수원 ····· 615
3. 검찰청 ····· 616
4. 보호관찰 · 소년보호기관 ····· 647

5.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 650
6.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 653

Ⅵ. **인 사** ····· 654

Ⅶ. **국외훈련 · 출장** ····· 655

Ⅷ. **국제교류 현황** ····· 656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 656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 658

Ⅸ. **상 훈** ····· 668

1. 총 괄 ····· 668
2. 훈장 · 포장 · 표창자 명단 ····· 669

Ⅹ. **위원회 현황** ····· 677

1. 총 괄 ····· 677
2. 위원회 개요 ····· 677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683

Ⅰ. 직 제

1. 직제 연혁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 및 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 (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 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 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3과 신설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 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법무부령 제 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2001. 4.24.	법무부령 제 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 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2001.10.10.	법무부령 제 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2002. 3.30.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2002. 6. 8.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4급)
70	2002. 7.10.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2002. 8. 9.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 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 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 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 (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 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 (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 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2. 조직도

본부	2실 3국 2본부	
산하기관	검찰청	64
	연수원	1
	보호관찰기관	63
	치료감호기관	2
	소년보호기관	24
	교정기관	56
	출입국관리기관	43
계	253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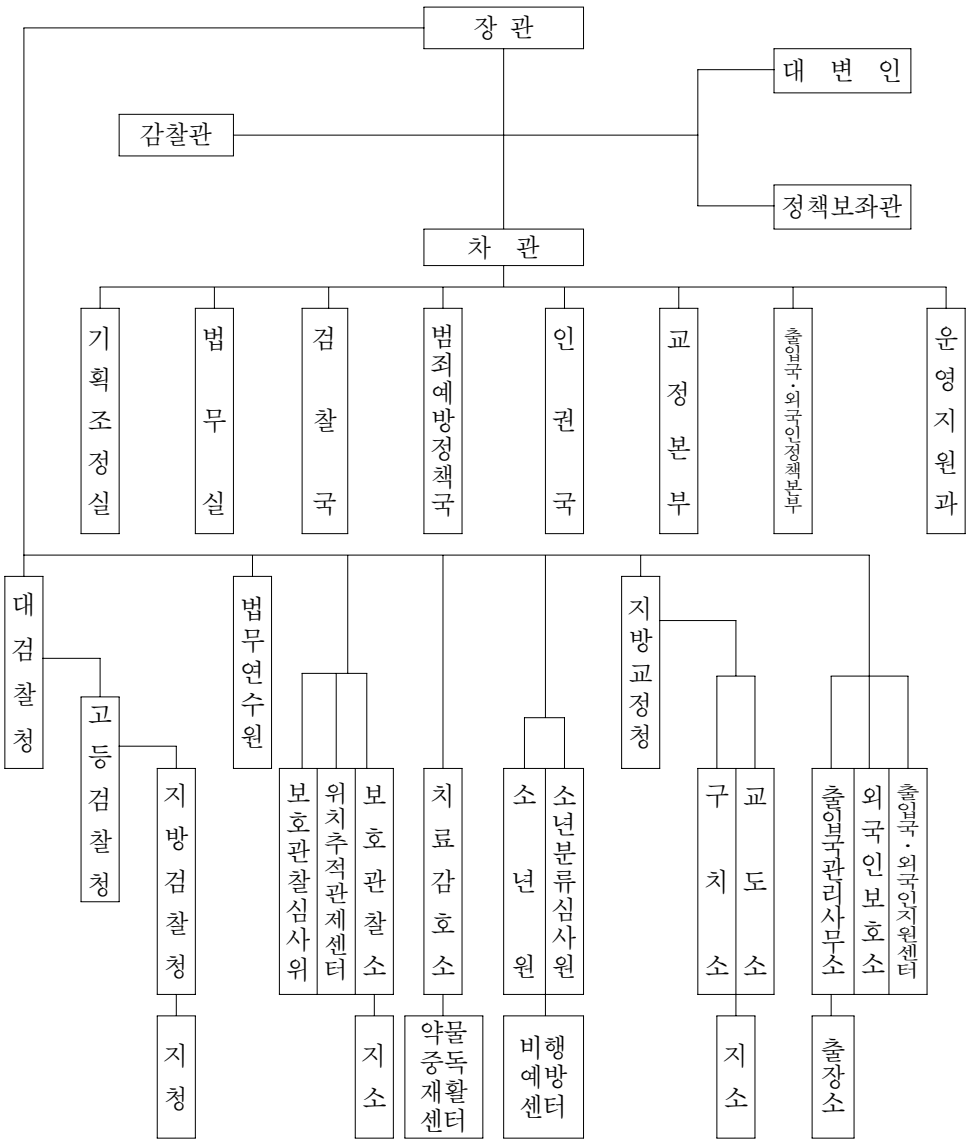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573	4,621 (+148)				4,556 (-65)		4,526 (-30)	4,553 (-27)	4,080 (-473)	3,859 (-221)		3,952 (+93)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855 (+178)
본 부		148				83 (-65)		53 (-30)		68 (+15)				170 (+102)	177 (+7)	199 (+22)	189 (-10)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 검 사	163								190 (+27)						220 (+30)		243 (+23)		300 (+57)			
검찰 일반직등 청	586												58 (+3)	904 (+135)	903 (-3)	996 (+93)	1,089 (+93)			1,273 (+184)	1,338 (+65)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형 무 소			2,914 (-458)	2,790 (-124)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229 (+140)		3,979 (+750)	4,066 (+87)	4,216 (+150)
출입국관리 사 무 소	126									96 (-30)			136 (+40)	164 (+28)		181 (+17)		250 (+69)		363 (+113)	397 (+34)	
출입국관리 사 무 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7 (-2)	59 (+12)	116 (+57)	118 (+1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126		조선형무관학교							형 무 관 학 교	129 (-97)			138 (+9)				교 도 관 학 교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총 계	6,975 (+120)	7,568 (+59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29)	9,589 (+1,033)	9,938 (+349)	10,628 (+690)	10,959 (+331)	11,502 (+543)	13,210 (+1,708)	13,431 (+221)	13,820 (+130)	13,820 (+259)	13,967 (+147)	14,216 (+147)	15,216 (+961)	16,708 (+492)	19,126 (+2,418)	19,126 (+1,082)	21,211 (+1,003)
본 부	332 (+120)	256 (−67)	245 (−10)	248 (+3)	210 (−38)	291 (+81)	295 (+4)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44 (+15)				459 (+15)	467 (+8)
검찰청 검 사		343 (+43)		360 (+17)	377 (+17)		417 (+40)		473 (+20)			467 (+30)	497 (+30)	527 (+30)	557 (+30)	587 (+30)		667 (+80)	707 (+40)	747 (+40)	787 (+40)	827 (+40)
검찰청 일반직등		1,457 (+119)		1,473 (+16)	1,539 (+66)	1,565 (+26)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2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5,288 (+402)	5,823 (+535)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4 (−2)	8,092 (+18)			8,447 (+355)	8,574 (+127)	10,780 (+2,006)	11,254 (+474)	11,515 (+261)
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427 (+30)	425 (−2)		484 (+59)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749 (+54)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1,047 (+49)	1,185 (+138)	1,278 (+93)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8)	166 (−10)	202 (+36)	218 (+16)		279 (+61)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81 (+50)	621 (+40)	783 (+162)	795 (+62)	870 (+62)	
법무연수원		137 (−1)			67 (−70)	75 (+8)		76 (+1)			80 (+4)	86 (+6)		90 (+4)			135 (+45)			148 (+13)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구분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21,795 (+40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2,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본 부	498 (+1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611 (+6)	623 (+12)	630 (+7)	647 (+17)
검찰청 검 사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1,942 (+95)	1,942	1,942	1,942
검찰청 일반직등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930 (+60)	929 (-1)	937 (-2)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법무연수원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105	105	105	105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884	2013. 1. 15.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특성화교과 컴퓨터·인성교육의 시간 배정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개정, 인성교육 강화 ○ 교육과정의 단계별 시행 시점에 따른 '시간배당 기준' 단서 삭제	소 년 과
885	2013. 2. 6.	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규정	○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심사·결정토록 규정 ○ 신원보증인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	이민조사과
886	2013. 2. 8.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시 연령 규제조항 폐지 ○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변경	창조행정담당관실
887	2013. 2. 19.	교도관 예절규정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경비교도 규정 삭제 ○ 탈모구역 확대 ○ 대상·범위가 모호한 용어의 재정비 등	교정기획과
888	2013. 2. 25.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규정된 중복사항 삭제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과정 중급(3, 4단계) 도입, 한국사회이해과정 개편 및 지정교재 변경 등	이민통합과
889	2013. 3. 13.	보호소년 처우지침	○ 광주소년원 9호처분자 대상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수용근거 마련 ○ 춘천소년원의 9호처분자 중 인성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체 수용대상자 명확화	소 년 과
890	2013. 3. 26.	법무부 인권정책 자문단 운영지침	○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위원의 상한 규정을 30인으로 상향 ○ 인권정책자문단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실질화	인권정책과
891	2013. 5. 10.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규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보호법제과
892	2013. 5. 10.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보호법제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893	2013. 5. 10.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규칙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보호법제과
894	2013. 5. 14.	소년선도 보호지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	법 질 서 선 진 화 과
895	2013. 6. 5.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13. 3. 23.)에 따라 정보팀을 이민정보과로 변경 ○ 외국인등록용 등 표준사진 규격 및 품질 규정, 접속기록 보관 규정 등 신설	이민정보과
896	2013. 6. 13.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체류관리과
897	2013. 6. 18.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 책임점수 완전소각자의 처우기준을 신설하고, 감호자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피보호감호자 처우를 개선·보완	분류심사과
898	2013. 6.18.	법무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규정	○ 통합계정관리 및 기관관리자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등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정 보 화 담 당 관 실
899	2013. 6. 19	인권보호상황평가 및포상에관한지침	○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상황 정책 및 제도등을 점검·평가하고 인권우수기관의 포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목적	인권조사과
900	2013. 6. 26.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법무부 공무원이 외부강의·강연 시 받는 대가의 기준금액을 정하는 제8조 제3항을 신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의 이익 범주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1조 제1항의 알선·청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이익'으로 확대하도록 제9조의3에 신설	감사담당관실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의 징계양정기준을 제12조의2에 신설 ○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 시 청렴교육 의무이수 시간 규정 (제14조 제2항)	
901	2013. 6. 26.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난민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운영 ○ 난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난민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 제고	난 민 과
902	2013. 6. 21.	교정기 규정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및 일몰제 제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삭제	교정기획과
903	2013. 7. 11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일부 개정 ○ 피의자에 대한 예외적 촬영 및 정보공개 요건에 관한 준칙 제23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부분을 “제25조 제1항”으로 변경	형사기획과
904	2013. 7. 16.	보호소년 처우지침	○ 10호처분자에 대한 임시퇴원 기준을 일반·고위험 강력범죄로 분류, 비행에 따라 임시퇴원 기준 교정종합점수 차등 적용 ○ 법무부 주관 경시대회 참가로 인한 자격취득의 경우 교육성과 가점은 대회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소 년 과
905	2013. 7. 16.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의한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 개정	교정기획과
906	2013. 7. 16.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보호법제과
907	2013. 8. 22.	체류외국인동향조사지침(대외비)	○ 동향조사요원을 지휘요원, 본부요원, 현장요원, 내근요원으로 구분 ○ 본부 각 과별 본부요원의 구체적 임무 부여	이민조사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908	2013. 10. 10.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및 성과고객팀 폐지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창조행정 담당관실
909	2013. 10. 15.	교도관 예절규정	○ 상급자의 교정기관 방문 시 송영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및 문장·단어를 간결하게 정비	교정기획과
910	2013. 10. 23.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규정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기능, 이용대상자, 이용의 제한·중단, 교육·의료지원,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협력, 제제 및 퇴소 등을 규정	난 민 과
911	2013. 10. 28.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전·공사상 심사기준 등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비교도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 안 과
912	2013. 10. 30.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마련	감 사 담당관실
913	2013. 11. 6.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법무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창조행정 담당관실
914	2013. 11. 21.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13.10.01.)에 따라 신설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포함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을 기존 “대안교육센터”에서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 ○ 법무부 훈령의 격식에 맞게 지침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	소 년 과
915	2013. 12. 12.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 국가공무원법 시행(‘13. 12. 12.)으로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른 직종명칭 등 변경 사항 반영 ○ 직제개정 등에 따른 부서·직렬 명칭 변경 사항 등 반영	창조행정 담당관실
916	2013. 12. 12.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	○ 국가공무원법 시행(‘13. 12. 12.)으로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 사항 반영	창조행정 담당관실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규칙	○ 일부 기술직,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 대한 임용권 위임 범위 설정 등	
917	2013. 12. 16.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체류관리과
918	2013. 12. 17.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 제조업 외에 서비스, 무체물 관련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의 위해 APEC 경제인 여행 카드(ABTC) 발급대상 및 인원 확대	출 입 국 심 사 과
919	2013. 12. 24.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외국인등록증 등 제출 사진 규정 명확화 ○『부동산등기법』 개정사항 반영	이민정보과
920	2013. 12. 26.	법무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법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관련 업무 정의 ○ 법무부개인정보보호지침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정보화 업무환경 변화 반영	정 보 화 담 당 관 실
921	2013. 12. 27.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이중임무부여 금지의 예외 및 모성보호 규정 마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보호법제과
922	2013. 12. 27.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 보호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 치소소송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 최종확정판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허가	이민조사과
923	2013. 12. 30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훈령발령의 근거 조문 변경	법무심의관실
924	2013. 12. 30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훈령발령의 근거 조문 변경 ○ 개정「민법」 시행에 따라 결격사유 조항 정비	법무심의관실
925	2013. 12. 30	확정일자부를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 조직 지정 규정 폐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개정('14. 1. 1. 시행) 으로 이와 중복하는 내용의 동 훈령 폐지	법무심의관실

2. 예 규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15	2013. 1. 2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 제7조 재검토기한 변경 및 부칙 제1조 시행일자 개정	인권구조과
1016	2013. 3. 21.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관리 규정 (비공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사항 삭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추가, 한국사회이해과정 영역 개편에 따른 평가항목의 영역 표기 변경 등	이민통합과
1017	2013. 4. 22.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 임용 예규	○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에서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로 개정하여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 ○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제4조) ○ 8급 상당 채용요건 규정	직업훈련과
1018	2013. 5. 10.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보호법제과
1019	2013. 6. 3.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 「정부조직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전달을 위해 발령 기관을 정비	비상기획관실
1020	2013. 6. 26.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지침	○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임무에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추가 ○ 신원보증보험 조항 삭제 ○ 취업·창업 교육대상을 희망자로 설정	직업훈련과
1021	2013. 7. 1.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 공무원 등 경력에 따라 공익법무관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공익법무관에 대한 직무교육실시 근거 등 마련 ○ 근무상황평가표 서식 정비	법무과
1022	2013. 7. 9.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 지원 지침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의한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 개정	교정기획과
1023	2013. 7. 16.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의한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 개정	교정기획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24	2013. 7. 16.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의한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 개정	교 정 기 획 과
1025	2013. 7. 16.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의한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 개정	교 정 기 획 과
1026	2013. 8. 31.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지침	○ 예규 제명을 간략하게 함 ○ 후원명칭 등 사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 보고 사항 중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외 ○ 재검토 기한 조정 및 일부 미비점 보완	창조행정 담당관실
1027	2013. 9. 24.	수용관리 업무지침(비공개)	○ 장소변경접견 허가사유를 추가·변경하고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자를 확대	보 안 과
1028	2013. 9. 16.	국적업무처리지침	○ 귀화 면접심사 시 피면접자가 올바른 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의(바른 옷차림새 등) 및 태도(인격적 성숙도)'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 - 별지 3호 서식(면접심사 결과보고서) 개정	국 적 과
1029	2013. 9. 17.	가석방업무지침	○ 가석방 신청기준을 '범수와 경비처우급'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과 경비처우급'으로 변경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	분 류 심 사 과
1030	2013. 10. 15.	현황작성 및 보고 요령 지침	○ 「교도관 예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급자의 교정기관 방문 시 송영 및 신고 절차의 통일성 도모	교 정 기 획 과
1031	2013. 10. 16.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 수용자 1인당 러닝셔츠·팬티·양말의 연간 지급량을 4매에서 6매로 상향조정 ○ 수용자 피복 호수별 적정한 제작을 위해 호수별 제작비율 삭제 ○ '런닝'을 '러닝셔츠'로 하는 등 외래어 용어 정비	복 지 과
1032	2013. 11. 1.	법무부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 예규 명칭 변경 ○ 국외출장 심사위원 제척사유 규정 ○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규정 신설	창조행정 담당관실
1033	2013. 11. 1.	법무부 공무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명칭 변경 ○ 심사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달리하는 규정 신설	창조행정 담당관실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34	2013. 11. 8.	교도작업 운영지침	○ 자립형 교도작업 신설 ○ 취업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다양화 등 교도작업 활성화 방안 및 기타 현실에 부적합한 규정 정비	직 업 훈 련 과
1035	2013. 12. 2.	교정위원 운영지침	○ 사회공헌 우수자 교정위원 위촉 시 우대 ○ 교정위원 신분을 이용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구속되어 해촉된 경우 재위촉 제한	사 회 복 귀 과
1036	2013. 12. 5.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른 재설정 ○ 검수의 원칙 명시, 주·부식 재고 현황 기록, 급식시설 소독의 근거 및 실시 횟수 준용 규정 현행화 등 보완사항 조치	소 년 과
1037	2013. 12. 5.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 19세 미만자, 계호상 독거자, 6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2회 차 건강검진을 의무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AIDS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있는 경우 분리수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안 수용 ○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 ○ 자비구매의약품 발주를 의료과에서 하도록 개정	의 료 과
1038	2013. 12.10.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1류, 2류 작업 구분을 폐지하여 일반생산작업으로 통합 ○ 특별작업장려금 지급 신청대상자 조정 ○ 수량과정 작업등급 폐지, 자립형 교도작업 책임생산량 조정	직 업 훈 련 과
1039	2013. 12. 20.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전 교정기관 정보화교육 폐지에 따라 정보화교육 관련 규정 삭제 ○ 교화방송센터 기능에 법무정책 홍보기능 추가	사 회 복 귀 과
1040	2013. 12. 30.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요건 및 이송절차를 신설하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문제행동 프로그램 운영의 의무화 및 프로그램 참여, 인성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른 단계적 상향 처우를 규정하는 등 경비등급별 수용·처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분 류 심 사 과
1041	2013. 12. 30.	분류처우 업무지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성검사 특이자, 자치생활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심사를 분류처우	분 류 심 사 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수형자 분류 및 처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1042	2013. 12. 12.	법무부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규정 폐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기능직 폐지, 통합된 직렬, 폐지된 직류 등을 반영한 결과, 본 예규에서 자격증 지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 폐지	창조행정담당관실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 8.	민원인 교정기관 구매물 구입한도액 조정 지시	○ 민원인 구매물 1일 구입 한도금액을 미결, 기결수용자 공통 5만원으로 조정 지시	무	교정기획과
1. 11.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사증발급 및 출입국 지원계획 시달	○ 2013. 1. 29.(화)~2. 5.(화)까지 8일간 개최되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2013 평창 스페셜올림픽 사증발급 및 출입국지원계획」 소속기관 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1. 15.	SES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한-미 자동심사지침 변경 알림	○ 홈페이지, 신청자격, 여권형태, 미국인 신청자의 수수료 결제, 미국인 신청자의 인터뷰 예약 연장기간, SES 등록센터 등 변경사항(시행일자 : 2013. 1. 15.)	기	출입국심사과
1. 23.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교정본부장 특별 지시	○ 설 명절 선물수수 및 인사이동 시 전별금 수수행위 근절 지시	무	교정기획과
1. 30.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강사 직무교육 참여 및 준비 지시	○ 구술시험관 및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에 소속 구술시험관 등의 참여 독려 및 교육준비 철저 지시	기	이민통합과
2. 4.	음주운전 근절 지시	○ 설 명절 전후 소속직원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지시	무	교정기획과
2. 6.	위탁작업 단가계약 실태점검 등 지시	○ 위탁작업 계약 시 관례적인 단가계약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단가를 최대한 인상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교정청은 위탁작업 단가계약 실태점검 및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
2. 6.	중증수용자 병원 입원 시 외부간병인 활용실적 파악 지시	○ 중증수용자의 간병인 서비스를 통한 계호인력 절감 및 교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간병인 사용을 장려코자 지시	무	의료과
2. 6.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관리 철저 지시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지시	무	의료과
2. 13.	수용자 자비구매 음식물 관리 철저 지시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중 음식물에 대한 장기간 냉장보관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지시	무	교정기획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2. 13.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 관련 업무지시	○ “동포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방문취업 기술교육생 대상으로 우선 시행함에 따라 제도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 자체교육강사료 예산을 활용하는 등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시	기	체류관리과
2. 14.	2013년도 불법체류자 감소 계획 시달(기획조사 포함)	○ 2013년도 불법체류자 감소 기본방향 및 세부시행 계획, 사무소별 단속실적 및 평가기준 시달	기	이민조사과
2. 14.	선원취업(E-10) 기록 정리 지시	○ 등록표 상에 과거체류자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자를 확인하여 수정 ○ 기록상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기록정리 요령에 따라 정리 지시	기	이민정보과
2. 21.	성폭력사범교육 전담직원 복장 착용 관련 지시	○ 교정심리치료센터 등 성폭력사범교육 담당 직원에 대하여 평상 근무 시에는 사복정장 위주의 단정한 복장을, 행사참석 등 의전 시에는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함	무	사회복귀과
3. 5.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 관련 유의사항 시달	○ 수용자 교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여 민간인의 기부 등을 통한 수용자 교화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무	사회복귀과
3. 8.	신입수용자 방사선촬영 확대 실시 계획	○ 신입수용자 방사선촬영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의 교정기관 내 전염을 사전에 차단	무	의료과
3. 14.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지시	○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및 직영 복지관 등의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지시	기	이민통합과
3. 20.	사이버테러 철저대비 및 전산장비 등 긴급점검 지시	○ ’13.3.20. 주요언론사와 일부 통신사 전산망을 일시에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사건 발생, ’13.3.19. 김포공항 출국장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과열현상 발생에 따른 사이버테러 대비 및 전산망 점검 지시	기	이민정보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3. 20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재지정을 위한 실태파악 지시	○ 기 지정된 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재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태파악 지시	기	이민통합과
3. 2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업무 지시	○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접수 시 발생되는 문제 예방을 위한 입증서류 등 확인사항 및 외국국적 포기자의 처리 절차 등 지시	기	국적난민과
3. 2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스티커 발급 시행 지시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방식을 고객 만족도 향상 및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해 보안요소가 강화된 고무인날인 방식에서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변경 시행	기	출입국심사과
3. 27.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 및 중요 문서의 유출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요령 시달	갑, 병, 정, 무, 기	정보화담당관실
4. 4.	교정시설 환절기 환자 관리 철저 지시	○ 환절기 감염병이 교정기관 내 창궐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자 관리 철저 지시	무	의료과
4. 9.	인터넷 화상접견 정상운영 지시	○「인터넷을 통한 가정용 화상접견 제도 시행 계획」에 따라 12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인터넷 화상접견'의 정상 운영을 지시	무, 소망교도소	보안과
4. 11.	교화방송 봄개편 및 유의사항 시달	○ TV뉴스 생방송 실시(녹화방송 ⇒ 생방송) ○ 수용자용 영화 증편(주 1회 ⇒ 2회) ○ 외국어교육의 방송 편성 ○ 라디오 방송「추억 다방」,「내 인생의 책」,「북 마스터의 추천도서」코너 신설	무	사회복귀과
4. 16.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등 실시 지시	○ 화재 및 긴급상황 대비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및 자체 시설안전 관리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 지시	기	이민조사과
4. 17.	상륙허가서 개정양식 시행 알림	○ 상륙허가서에 소지자의 사진정보 추가 및 상륙허가 정보를 포함한 바코드가 인쇄된 방식으로 양식을 변경함으로써 상륙허가서 소지자의 보안구역 출입 시 신원확인 용이성 등 보안성 강화	기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4. 18.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연락담당자 지정 및 핫라인 현행화 지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전화를 소속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소속기관 담당자 지정 및 현행 핫라인 현행화 지시	기	체 류 관리과
4. 23.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허가 제도 시행 시달	○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해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허가 제도를 시범운영('12. 10. 29. ~ '13. 4. 30.)을 거쳐 '13. 5. 1.부터 시행 ○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과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비자입국 허용	기	출입국 심사과
4.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완료자 대상 설문조사 지시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제도개선 희망사항 파악 등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4. 25.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증원 관련 업무 지시	○ 연근해업계의 선원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어선원 도입규모 증원(1,600명)에 따른 소속기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지시	기	체 류 관리과
4. 26.	종교집회 시간 변경 지시	○ 「동작시간 변경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교도작업 활성화방안 시달」에 따른 종교집회 미 참여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용자 종교집회 시간을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15:00 이후로 변경	무	사 회 복귀과
5. 3.	2013 제4회 인천 실내무도대회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안전대책 시달	○ 2013. 6. 29.(토)~ 7. 6.(일)까지 8일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 제4회 인천 실내무도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안전대책 시달	기	출입국 심사과
5. 3.	사이버테러 대비 출입국 전산장비 점검 강화 지시	○ 국가정보원 테러경부 “주의” 단계 연장 및 VIP 방미 등에 대비한 출입국전산장비 점검 강화 지시	기	이 민 정보과
5. 3.	불법체류자 기록정리 지시	○ 19세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록정리 및 결과 보고 지시	기	이 민 정보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5. 9.	제주 입국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범 운영 알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자동출입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17세 이상의 단기체류외국인으로서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시행 일자 : 2013. 5. 13.)	기	출입국심사과
5. 21.	유관단체(기관)초청 간담회 및 권역별 동향조사요원회합 개최 지시	○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지침에 근거하여 유관기관 초청간담회와 권역별 동향조사요원 회합을 통해 출입국관련 제도, 정책 등에 대해 협조, 홍보 및 정보공유	기	이 민 조사과
5. 27.	청주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식 계획	○ 국정과제「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화 필요에 따라 청주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확대 개원	무	사 회 복귀과
5. 27.	국가보안시설 관리 강화 지시	○ 국가보안시설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외항선박에 승선한 사건과 관련, 구내·외 방호시설물 및 전자경비시스템 점검 강화, 중앙통제실 근무 철저, 폭우 및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보완 등 국가보안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무, 소망교도소	보안과
6. 5.	하절기 보호외국인 위생 등 안전관리 철저 지시	○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질병 등 보호외국인 위생·급식 및 장마철 대비 보호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 지시	기	이 민 조사과
6. 7.	친절한 민원업무 수행 지시	○ 민원업무 수행시 부적절한 언행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교육 등 지시 ○ 지시내용 : 민원인 응대 시 반말 등 부적절한 언행 금지, 친절한 전화응대,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금지	기	체 류 관리과
6. 7.	귀화허가 신청자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계획 시달	○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계획에 따른 제출대상, 제출서류, 확인사항 등 세부 내용 시달	기	국 적 난민과
6. 24.	한글 미해독 수용자 한글교육 활성화 방안 시달	○ 각 기관별 한글 미해독자 대상 '한글 교육반'을 편성하여 자원봉사자, 교정위원 또는 교육전담직원이 교육 실시	무	사 회 복귀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6. 24.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시행	○ 국민의 출입국 편의 제공과 외국인 투자 및 우수인력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 확대(시행일자 : 2013. 7. 15.)	기	출입국심사과
6. 24.	귀화신청자 대상 이민귀화 적격시험 시범실시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와 비이수자간의 기본소양을 비교 측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자료로 활용 및 국적부여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민귀화적격시험 시범실시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6. 26.	소송중인 난민신청자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지시	○ 행정소송(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이 진행중인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보호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시	기	이 민 조사과
7. 2.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협조 지시	○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지원 사업(레인보우스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리플렛,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협조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7. 4.	하계 휴가철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	○ 하계 휴가기간 중 음주운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획과
7.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무부·서울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해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각 일선기관에서도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적극 발굴	무	사 회 복귀과
7.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간점검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집행상황, 학적관리 및 강사 운영현황, 정기 또는 수시보고 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7. 11.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운영준비 철저 지시	○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으로 추가 선정된 대구·여주(교)의 하반기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실시 철저 준비	무	사 회 복귀과
7. 12.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	○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안내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각 기관에서 출소자 교육 및 출소 시 교부 등 적극 활용	무	사 회 복귀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7. 17.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관련 업무 지시	○ 2013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지침 개정안을 숙지하여 업무처리 토록 지시	기	이민통합과
7. 19.	지문 및 얼굴 정보 수집 강화 지시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동법 제38조에 따라 수집된 바이오정보 중 기준 품질에 미달하여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사범결정 등 업무처리 시 바이오 정보가 적정기준 범위 내에서 수집될 수 있도록 지시	기	이민정보과
7. 25.	자율출퇴근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범 운영 계획 시달	○ 밀양구치소에서 (주)한국카본에 가석방이 가능한 수형자 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범 운영	무	사회복귀과
7. 25.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업무 지시	○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러시아연방 내무부 훈령에 따라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허용 지시	기	체류관리과
8. 1.	전자수용기록카드 열람권한 제한 관련 자체 세부계획 수립 지시	○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오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장은 전자수용기록카드 열람권한 설정 기준 등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열람권한 현황을 보고할 것	무, 소망교도소	보안과
8. 5.	사회공헌 인센티브 제공 추진에 따른 교정 자원봉사 실적관리 체계화 방안 시달	○ 사회공헌 인센티브 제공 추진에 따라 교정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연계하여 관리	무	사회복귀과
8. 9.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개선계획 시달	○ 전담교육 시 범수별로 교정시설과 거실 구분 수용 ○ 마약류사범 교육전담인력 양성 및 확보 ○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재활교육 ○ 재활교육 우수 수료자에 대한 치료조건부 가석방 확대 ○ 일반교정시설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활성화	무	사회복귀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8. 13.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안전대책 시달	○ '13. 8. 25.(일) ~ 9. 1.(일)까지 8일간 충주에서 개최되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안전대책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8. 14.	복무기강 확립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철저 지시	○ 직원복무 기강 확립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획과
8. 16.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인문학교육 활성화 방안 시달	○ 각급 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대학·학술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인문학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	무	사 회 복귀과
8. 16.	방문취업(H-2)자격자 취업 신고 안내 강화 지시	○ 방문취업(H-2)자격자가 취업 시 취업개시나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취업신고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 실질 취업자 확인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방문취업(H-2)자격자의 취업신고 안내 강화를 지시 ○ 지시 사항 : 방문취업업(H-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체류허가 신청 시 취업신고 설명 및 안내문 배포 등	기	체 류 관리과
8. 19.	전국 사회복귀과장 워크숍 개최 계획 시달	○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일선 사회복귀과장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 정책 수행을 위해 전국 사회복귀과장 워크숍을 개최	무	사 회 복귀과
8. 19.	추석기간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이동출입국 운영관련 지시	○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생계를 보살필 수 있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 중소기업 고용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무소 실정에 맞도록 운영일정을 추석 직전으로 조정하여 이동출입국을 운영하도록 지시	기	체 류 관리과
8. 22.	귀휴제도 개선방안 시달	○ 귀휴심사 및 허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귀휴심사 예비회의제 도입 ○ 귀휴기간 중 매일 2회 이상 수형자의 보호관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 ○ 보호자 동행 교육 강화 ○ 장기수형자 중심 귀휴 시행으로 실질적 사회복귀 지원	무	사 회 복귀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8. 26.	교정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시달	○ 기관별 자원봉사 활용 분야 발굴 및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 ○ 교정위원과 수형자의 1:1 멘토링 등 실질적 교화활동 참여 확대 ○ 수형자 교정·교화 우수 사례집 발간	무	사 회 복귀과
8. 27.	교정위원에게 교정교화 비품 구입비용 등 부담 행위 금지 지시	○ 수용자 교정교화 용품 등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교정위원에게 비자발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무	사 회 복귀과
8. 27.	성폭력사범 교육 전담직원 배치 관련 재강조 지시	○ 성폭력사범 교육은 성폭력사범 교육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한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타 업무와 병행 금지	무	사 회 복귀과
8. 27.	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강화 독려 지시	○ 결혼이민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등 일반이민자로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적극 추진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8. 30.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달	○ 입국금지 권한 지방사무소 위임, 사증발급 규제를 입국금지로 일원화, 입국금지 기간 조정, 금지기간 종료시 자동해제 등 주요 내용을 개정 시달(시행일자 : 2013. 9. 1.)	기	출입국 심사과
9. 4.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	○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감독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획과
9. 6.	직업훈련교사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	○ 각 기관장 등은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해 휴대전화 및 비인가 USB 등이 보안구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	무	직 업 훈련과
9. 17.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적극 시행 지시	무	교 정 기획과
9. 23.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시달	○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동포에게는 현행 우수인재 기준을 1/2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사항 시달	기	국적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9. 24.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안전대책 시달	○ '13. 10. 13.(일)~ 18.(금)까지 서울, 인천, 제주 및 대구에서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제6차 국제선거기구회의」,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및 「세계에너지총회」가 개최 관련, 각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리 간소화 및 안전대책」 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9. 26.	결혼이민(F-6)자격 심사 철저 지시	○ 결혼이민자격 체류업무 수행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 및 부적절한 민원응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 ○ 결혼이민 관련 실태조사 시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관계인 증언이나 정황,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등 객관성 있고 충실한 조사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9. 30.	형기종료 등 출소예정자 교육 계획 시달	○ 형기종료 1개월 내외의 자(가석방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3일(1일 5시간 총 15시간)간 취업·창업 및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교육	무	사 회 복귀과
10. 4.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알림	○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행 철저 지시	기	이 민 정보과
10. 7.	한국자산관리공사 MOU 체결관련 업무협조 지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위한 안내방송과 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 기관의 적극 협조 지시	무	사 회 복귀과
10. 16.	외국인등록 등 접수 시 본인여부 확인 철저 시달	○ 불법체류자가 동명이인 합법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본인여부 확인 철저 지시	기	이 민 정보과
10. 17.	MICE 관광객 출입국 편의 지원 전담지원팀 시행 알림	○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의 세부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위과제의 하나로 "MICE 관광객 출입국 편의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팀 편성 운영	기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0. 18.	결혼이민(F-6)자격 관련 업무 지시	○ 베트남의 가족과 혼인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혼인신고 및 혼인증명서 발급절차가 변경된 사실을 소속기관에게 안내하고, 이를 잘 숙지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 처리 지시	기	이민통합과
10. 25.	출입국심사우대서비스 개선방안 및 관련 지침 시달	○ 준법·사회공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 지침 개정안 시달 (시행일자 : 2013. 12. 23.)	기	출입국심사과
10. 31.	초청자의 가족부양능력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지시	○ 개정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중 초청자의 가족부양능력 심사기준 마련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지시	기	이민통합과
10. 31.	허위사실 기재 사증신청에 대한 처벌 관련 지시	○ 결혼이민사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교제경위서에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초청자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94조에 따라 처리토록 업무 지시	기	이민통합과
11. 7.	관광상륙허가제 시행지침 개정(안) 알림	○ 관광상륙허가제 시행('12.5.27.) 중 발생한 문제점 보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미귀선자 발생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정비 등(시행일자 : 2013. 11. 11.)	기	출입국심사과
11. 7.	MICE 관광객 체류지원 창구 운영 홍보 지시	○ MICE 관광객이 지방 사무소 방문 시 편리하게 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운영 홍보용 폿말을 제작·설치 지시	기	출입국심사과
11. 20.	광주청(군산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식 계획	○ 국정과제「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화 필요에 따라 군산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확대 개원	무	사회복귀과
11. 25.	임시직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사용자권한 일제정비 지시	○ 공익요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임시직원의 출입구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권한 정비방안』에 따른 사용자권한 일제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 실시 지시	기	이민정보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1. 25.	귀화필기시험 세부 운영기준 시달	○ 귀화필기시험 지방사무소 실시에 따른 시험대상자 기준, 시험장 관리, 합격자 발표 등 명확하고 통일된 업무절차 기준 시달	기	국적과
11.29.	보호외국인 출국 항공권 구매 관련 지시	○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을 위한 보호외국인의 출국 항공권 구매 대행 시 절차적 투명성 확보 관련 지시	기	이 민 조사과
12. 4.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준비 철저 지시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시 많은 수형자와 구인업체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지시	무	직 업 훈련과
12. 5.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 관련 지시	○ 현재 초·중학교 재학 아동에 대하여 수행 중인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을 고등학생 재학생에 대해서도 적용	기	이 민 조사과
12. 6.	201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및 지정심사 지시	○ 관내 지자체, 유관기관 및 이민자 지원기관 등이 201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실태조사 및 자문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12. 9.	형기계산 등 수용기록 업무 철저 지시	○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오류에 따른 조기 출소 사례가 발생한 바, 각 기관장은 철저한 직원교육 및 업무감독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무, 소망교도소	보안과
12.12.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실시 관련 업무지침 시달	○ 한국과 홍콩의 여행객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국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침 시달	기	출입국 심사과
12.17.	연말연시 근무기강 확립 지시	○ 연말연시 선물수수 금지 등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획과
12.17.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지시	○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의 사증발급 및 체류편의 지시	기	체 류 관리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2.18.	보호외국인 관리 및 계호 업무 강화 지시	○ 연말연시에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관리강화 등 지시	기	이민조사과
12.18.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된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처리 관련 지시	○ 재외국민 거소신고 접수 처리 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입력사항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타국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출입국정보화센터에 처리하도록 지시	기	이민정보과
12.23.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확인 관련 업무 지시	○ 해외에서 흡입한 마약으로 인해 양성반응 결과가 나타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기 위함. ○ 1차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2차 검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1차 검사 양성반응 결과에 대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마약흡입으로 인한 결과임을 자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범처리 후 출국조치 등	기	체류관리과
12.23.	등록외국인 지문정보 미채취자 보완 지시	○ 등록외국인의 바이오정보 수집현황 점검 결과, 누락자에 대한 지문정보 보완 지시	기	이민정보과

연설문 목록

○ 2013년 법무부 신년사
○ 제63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기념식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태평양 변호사협회 제23차 정기총회 축사
○ 제50회 법의 날 기념사
○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 세계인의 날 기념식
○ 멘토와 함께하는 2013.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 법무부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시상식
○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 및 위촉식
○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대회사
○ 제1회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회의 및 제4회 자체평가위원회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2013년도 을지연습 교정기관 실제훈련 참관 격려사
○ 전국 사회복귀과장 워크숍
○ 제5기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 밀양희망센터 개관식 축사
○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기념식 축사
○ 국제법률포럼 심포지엄
○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사
○ 제3회 APEC 국제 컨퍼런스
○ 2013 허그(HUG) 후원의 날
○ UNCITRAL 중재 컨퍼런스 개회사
○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시상식 격려사
○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격려사
○ 인천스마일센터 개소식 격려사
○ 법률신문 창간 63주년 축사
○ 정책블로그 기자단 포상식 및 위촉식

Ⅲ. 장관 연설문

○ 2013년 법무부 신년사

법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 계사(癸巳)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서로를 격려하고 열의를 다지면서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있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경사가 참 많았습니다.

런던올림픽의 쾌거, 녹색기후기금(GCF) 국내 유치, 세계 무역 G8 진입에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했습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 세계박람회와 제주 세계자연보전 총회에서는 발전된 우리의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보람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양대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저축은행, 원전, 의약품 거래 등에 구조적으로 숨어 있던 대형 비리들을 척결하였고, 서민을 울린 불법사금융을 엄단했습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흉악범죄와 성범죄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고, 성범죄 친고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새로 도입하고, 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수형자에게도 사회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가족사랑캠프와 콘서트처럼 감동 주는 교정행정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출입국 시스템이 전 세계 국경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서비스평가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사회적 동의하에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은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기틀도 성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계약분쟁법제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인천 송도에 UN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법무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법무가족 여러분의 값진 노고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Ⅱ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만, 반성과 성찰의 시간마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잇달아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비행은 검찰이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이기를 바라는 국민들께 너무나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검찰에 무엇을 바라는지, 검찰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법집행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생각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 더욱 자세를 낮추고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하며 매사에 삼가고 절제하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희망찬 새해 첫날, 법무가족 여러분께 크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흔들림 없이 계속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이 때,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사범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불편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중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믿음의 사회를 위해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찾아 끊어내는 노력 또한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법집행은 인권이 최상의 가치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그늘진 곳과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성년후견제, 입양허가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들도 이제는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떳떳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를 바꾸어 나갑시다.

외국인정책은 이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과 외국인의 문화와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와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가치의 균형도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가족, 친지의

참가를 확대하는 등 선진 교정정책의 개발과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주역(周易)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할 수 있고 통하면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시인 구상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큰 믿음을 얻는다면 그 희망찬 미래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자신을 가지고 힘을 모아 알차게 2013년을 채워 나갑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3. 1. 2.

법무부장관 권 재 진

○ 제63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사

Ⅰ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여러분 곁을 떠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법무·검찰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그 어떤 새로운 시작 때보다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에 법무부의 오늘이 있습니다.

최고의 경륜과 리더십으로 그동안 법무부를 이끌어 오신 권재진 법무부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오랜 경기 침체와 심화되는 사회갈등, 빈발하는 강력범죄 등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딛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점에, 법무·검찰은 오히려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법무·검찰이 선진 신뢰사회의 기반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동안 우리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국민은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따뜻하게 약자를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검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바람과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분석하여 그 간극을 끊임없이 좁혀 나가야 합니다.

말과 구호가 아닌 실천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당히 보여주고 위기만 넘겨보려는 진실성 없는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개혁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무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수립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천될 것입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약속하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려 합니다.

첫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합시다.

헌법 수호와 법질서의 확립은 범국가적으로 안전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법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잘 되는 길이라는 신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질서를 확보해 나갑시다.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 걱정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안한 생활을 지키는 법집행 분야에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평하고 균형 있는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과 법집행은 항상 국민의 눈으로 보아 공평하고 균형감이 있는지를 살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때까지 부단히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공평과 균형은 형식적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들이

실질적으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히 다듬고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들이 더 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따뜻한 법집행을 이루어 나갑시다.

인권 보호가 법무·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법무·검찰이 인권 옹호의 최후보루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법집행의 목표와 기준을 인권에 맞추어야 합니다.

수사를 비롯한 모든 법집행 과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늘 살피고 적법절차를 지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강자든 약자든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므로, 언제나 당당하지만 절제와 품격을 갖추어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검찰권 행사, 범죄피해자 보호, 교정, 이민정책 등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따뜻한 법의 온정을 더욱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 꿈을 펼치는 법무행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기업 등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상생과 통합의 경제 법제부터 완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법무행정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켜서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일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준법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법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Ⅳ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각자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무행정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여러분이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근무환경, 보람을 느끼는 일터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

법무가족 여러분을 다시 만나 반가운 이 순간에도 한편으론 법무부와 검찰이 당면한 현실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어(論語)의 가르침인 '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즉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는 말도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가 소나무의 푸름을 가슴에 품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열정으로 빛나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일치단결하여 보람찬 미래를 만들어 가면서 즐겁고 소중한 추억도 쌓아 나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신 변호사님들께 축하와 함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3월 16일부터 3,400여명의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멘토가 되어 그들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미력하나마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선 변호사 제도는 세계 형사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느끼며 경험하셨던 여러분 한분 한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심포지엄 참석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로 심한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국가 안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부 뿐 아니라 국회도 여·야가 일심동체가 되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고, 신상공개·성충동 약물치료·전자발찌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지원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여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 인력과 예산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배려하며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대구·부산·대전·광주 등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성폭력 사건 수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법정형 상향에 따른 구형 및 항소기준도 재정립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더 힘쓰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변협과 함께 '지원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전문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보도나 형사절차에서의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 관계자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파트너쉽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관심과 배려라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 내 듯, 국선변호사들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 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보다 더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5.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기념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지더니 이제는 곳곳에 봄기운이 넘쳐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과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오늘 오픈하는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상헌 NHN 대표이사님,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님,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픈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법무부에 방문해준 법사랑 시범학교 교사 및 학생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Ⅱ

법무부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 2006년부터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강력범죄예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강연을 하고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2011년에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출범 1년여 만에 방문객수 37만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법교육의 획기적인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통한 헌법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Ⅲ

오늘 오픈하는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는 법이 없는 무질서한 원숭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법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는 법교육 게임입니다.

학생들은 법에 따른 여러 국가기관을 직접 건설하면서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와 국가권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것입니다.

준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배우는 헌법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민주시민의식 교육은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최초 여성 대법관인 오코너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민주주의 실습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이씨빅스(iCivics)게임입니다.

저는 우리 몽키랜드도 미국의 아이씨빅스

(iCivics)와 같은 국민적 헌법교육 게임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법무부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원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Ⅳ

올해 법무부는 그동안 제작한 다양한 온라인 법교육 콘텐츠들이 일선 학교에서 활발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법사랑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교사지도서를 개발·보급하며, 법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Ⅴ

여러분!

'과일이 제 맛을 지니고 있듯이, 삶은 행복이란 맛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햇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으로 비춰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5.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교정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 입문 초기부터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새 정부 출범이후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다지는 첫 교정기관장회의에서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친애하는 교정기관장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오랜 경제침체에 이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빈발하는 강력범죄 등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중심의 통합형?소통형 정부 운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1일 취임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이루고자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법무행정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정조직은 엄정한 법집행과 수형자 교정교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 우리는 오랜 관행에 익숙해져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정본부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따라'국민행복 희망교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정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교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정기관장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자 교정교화는 교정의 기본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수용자 모두에게, 심지어 사회에서 포기한 흉악범까지도 교화의 손길은 닿아야 할 것입니다.

교정교화의 영향력이 모든 수용자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자발적인 헌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위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든 수용자에게 재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자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교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수용자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행정의 성패는 결국 '재범률'에 의해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정정책들이 재범방지라는 목표에 효과적인지 재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입소 비율이 높은 수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용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 인권보장의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용자를 처우함에 있어 구금 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수용거실과 작업장 등의 환경을 인권친화적

으로 개선하여 수용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보건센터 증설과 교정병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환자인 수용자가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의 추진 기반은 신뢰받는 정부입니다.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국의 교정공무원 모두가 청렴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교정의 주체인 교정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합니다.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으로서 여러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12.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태평양 변호사협회 제23차 정기총회 축사

바쁘신 가운데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번 총회에 참석해 주신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라리트 바신(Lalit Bhasin) 회장님, 신영무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환태평양 변호사협회는 1991년에 설립된 이래 아·태 지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률서비스 수준을 제고(提高)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아울러, 아·태 지역을 비롯한 세계 법조(法曹)간 활발한 소통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아시아, 법과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하는 이번 총회를 통해 협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21세기는 환태평양을 주축으로 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교류의 증가로, 지역에서 국제적 안목을 갖춘 법률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2년 무역 규모가 1조 675억 달러로 세계 8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영·미계 로펌 17곳에 대해 사무소 설립인가를 하는 등 역량이 검증된 외국 로펌의 우리 법률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힘을 합쳐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구들이 집약된 서울 국제중재센터(Seoul IDRC)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동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첨단 IT 기술의 발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국제화 등을 바탕으로 환태평양 지역의 국제중재 서비스의 허브로 도약할 것을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그밖에도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증권법, 중재법 등의 법제도 정비를 도우며,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경제 발전의 성공적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법률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법률가들도 국가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 서울 국제중재센터 설립을 통한 국제중재 서비스의 글로벌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노력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법무부는 환태평양 변호사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성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해 5천 년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에서부터 K-POP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따운 봄꽃으로 물든 서울에서 행복한 추억을 한 아름 담아 가십시오.

환태평양 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서울총회의 큰 성과 및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18.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50회 법의 날 기념사

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이 반세기를 지나 50돌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의 날'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에는 대통령님께서 국정수행으로 바쁘신 중에도 친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Ⅱ

법은 우리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법을 무섭고, 딱딱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피해가야 할 걸림돌도 아닙니다. 법은 법조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선 법이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조 3륜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상같이 엄정하면서도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을 적용해 나갑시다.

법무·검찰 먼저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Ⅲ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에서 법은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부터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의료지원과 경제지원을 통해서 범죄로 새겨진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따뜻한 법집행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국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고쳐 나가겠습니다.

Ⅳ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일구어 냈고, 법은 그 토대와 기초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맞아 사회 구석구석이 안전해지는 대한민국, 법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포장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자랑스러운 법치의 전통을 세우고,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25.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Ⅰ

법사랑 서포터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발하고,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계절 5월입니다.

젊음과 열정의 향기가 가득한 법사랑 서포터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봄의 기운이 더욱 샘솟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9개월간 법질서 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5기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으로 금일 상을 받게 된 서포터즈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6기 서포터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Ⅱ

5기 서포터즈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성폭력 예방,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 등 법질서 우수사례를 취재하여 전파하였고,

대학생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웹툰, UCC 등 국민들에게 친근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법질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로맨스팀’, ‘미래의 아이들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손을 흔들며) 반갑습니다. 작년 9월 부산역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법이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 “법은 친구처럼 편안하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플래시몹(flashmob,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이벤트)

Ⅲ

오늘 새로 출발하는 6기 서포터즈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범죄발생의 위험’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협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6기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4대악 척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4대악 근절을 위한 현장 취재, 콘텐츠 제작, 어린이 법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그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Ⅳ

법사랑 서포터즈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사회 곳곳에서 기본이 지켜지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서포터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서포터즈 활동 경험을 토대로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세계인의 날 기념식

Ⅰ

존경하는 국민, 재한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세계인의 날」입니다.

제6회째를 맞아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지닌 여러분 앞에서 함께 세계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Ⅱ

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1천만명이 넘고 국내 체류외국인은 150만명에 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Ⅲ

최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악플의 사례를 접하고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편견'이 없었는지를 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정 등 재한외국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친구같은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이민자를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4월 일선검찰청에 배치한 바 있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을 수립하여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사건 처리 절차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분에 반영하고, 초동수사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를 '도움터'로 지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체류와 국적 등에 관한 어려움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방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조기에 배울 수 있도록 입국하기 전부터 기초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도서지역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분들에게 온라인 화상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 정착하도록 돕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역사가들은 로마가 융성한 요인을 개방성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다인종, 다문화를 용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로마가 크게 발전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종과 국적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합해 나갈 때 우리사회는 문화적으로 더욱 융성해지고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행복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같이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Ⅴ

대한민국에는 200개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인의 날 행사 주제어처럼 "여러분들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멘토와 함께하는 2013.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이 곳 고봉중·고등학교에서 '멘토와 함께 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우리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각 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한 직원, 학생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서른세 번째를 맞는 한마음체육대회는, 스승과 제자, 멘토, 부모님이 하나되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어울림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수학생 여러분!

오늘 경기를 치루면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지는 아쉬움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페어플레이를 통해 지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길목에는 평탄한 곳보다 험난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녕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넘어진 채로, 일어날 줄 모르는 그 마음입니다.

독일에는 "넘어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수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두 번 넘어진 것에 좌절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입니다.

살아가는 길목에서 실패나 좌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숱한 패배와 슬럼프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한결같이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선수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태도와 뛰어난 운동능력을 지닌 학생들로서,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평소 연마한 기량을 한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생 여러분을 위한 잔칫날입니다.

경기의 승패에 집착하기 보다는 경기를 즐기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선수단 여러분의 심신을 단련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있어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자리를 빛내 주신, 대한축구협회 허정무 부회장님, 한국건강관리협회 김성대 사무총장님,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 강이봉 회장님,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중명 협회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고봉중·고등학교 한영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3.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법무부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Ⅰ

직원 기자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법무 가족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 각 직렬에서 골고루 선발되었고, 전국 각지의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의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Ⅱ

'법무부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은 2011. 7. 처음 출범하여 현재 2기('12. 7. ~ '13. 6.)가 활동하고 있고, 법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홍보와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원 기자가 쓴 기사가 포털사이트 Daum에서 베스트 기사로 3회나 선정되는 등 그 성과도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맡은 업무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법무부 직원 기자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정책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기사를 작성하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와 신뢰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실국본부 간, 직렬 간 벽이 높아 업무 협조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 조직 내부의 상하·좌우간 소통과 협력의 폭을 넓혀 주는 첨병 역할도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일선 기관 소속 직원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홍보 네트워크의 지역별, 기관별 거점 역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위대한 기업은 내부 고객인 조직 구성원의 만족을 통해 외부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 고객들에게도 자신의 열정을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무엇보다 여러분을 비롯한 법무 가족 모두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워크숍 일정을 보니,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유하면서, 기자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늘 강조해 온 것이,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하자는 것과, 정책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전국 각지의 법무 정책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업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기자로서 새로운 과제나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책 수립 부서에 전달하는 일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 너무 매몰되어 지내다 보면 매너리즘이나 고정관념에 빠져 창의성을 잃기 쉬우니, 틈틈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시고, 담당 분야에 관한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해서 전문성을 배양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2013. 5. 29.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시상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헌법과 국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곳 헌정기념관에서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영선 법사위원장님, 김회선 법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김세현 매경미디어그룹 전무님,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님,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님, 고선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헌법만들기는 가족·학급·직장 구성원들간에 서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 목표와 약속을 헌법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처음 가정헌법만들기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학급, 직장헌법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총 13,000여 가정, 학급, 직장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모전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원 주봉초등학교 5학년 1반의 학급헌법은 학급 분위기와 학생들의 관계를 자신감, 약속, 사과, 존중으로 풀어감으로써 학급에는 행복을, 학생들에게는 꿈을 찾아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현정 가족에게 가정헌법은 아버지의 건강악화라는 위기를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이렇듯,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가정과 학급의 소중하고 따뜻한 약속인 것처럼, '법'도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소중하고 따뜻한 약속'입니다.

이번 공모전이 이런 법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귀빈과 수상자 여러분!

최근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대화와 소통의 부족이 구성원간의 갈등을 낳고 따돌림이나 폭력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학급, 직장의 약속인 헌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 나눈 많은 대화와 헌법의 가치인 존중, 사랑, 배려, 신뢰 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을 한단계 올려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3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 및 위촉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제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변촌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줄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마을변호사 제도를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신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구조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 주신 이재후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장님,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대한변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법적 고충을 해결하는 법률조력자로서 노력해왔습니다.

법무부도 법률구조공단 설립을 통한 법률구조, 지역 사회복지망과 연계한 법률홈닥터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변호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쉽게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을변호사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손쉽게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Ⅲ

오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첫 걸음을 내딛으시는 414분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마을변호사를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섯 분의 마을변호사님이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마을변호사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Ⅳ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안전행정부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5.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대회사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각 경기단체 관계자와 교정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무도를 연마해 온 선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불굴의 상무정신과 희생정신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화합과 단결을 통해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교정문화의 밑바탕을 이루어 왔습니다.

나아가 문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이같은 훌륭한 교정문화를 공유하고 교정발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동안 교정행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 교정기관에서는 보안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유중심의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과 가족관계 유지·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화상접견과 교정공무원과 수용자가 함께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활발히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교정행정에 대해 더 큰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교정행정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흉악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까지도 교화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교정교화사업의 실질화를 구현하기 위해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행복, 희망교정' 추진의 원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매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 대회를

지원해 주시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4.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1회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회의 및 제4회 자체평가위원회

법무부장관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법무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부나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정과제 국민평가단'을 출범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5개 주관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23개 국정과제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국민들이 성과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과제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3. 7. 25.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I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광복회 박유철회장님,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그리고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일제 치하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후손 열일곱분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즈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그 후손인 여러분들에게 국적 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을 값지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Ⅱ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모두 여러분들의 선조분과 같은 애국지사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불굴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여러분들께 선조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귀화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일류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국적을 취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13.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2013년도 을지연습 교정기관 실제훈련 참관 격려사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금번 을지연습 합동 방호 훈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과 화성시청, 육군 51사단,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소방서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사태라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에 국가중요시설인 교정기관에서 유사시 예상되는 적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교정기관의 안정적인 수용관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합동 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시 비상대비능력의 향상과 국가 안보역량의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희겸 경기도행정부지사님, 장광현 육군 제51사단장님, 채인석 화성시장님 등 여러 유관 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전국 사회복귀과장 워크숍

전국 사회복귀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일선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관 취임 전부터 늘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4월 전국의 교정기관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데 이어, 오늘 전 교정기관의 사회복귀과장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사회복귀과장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이루고자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법무

행정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각 실·국·본부에 『희망의 새 시대』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비전의 수립과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국민행복, 희망교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과 수용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교정의 길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희망교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몇 가지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용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바탕으로 구금 외에 다른 불합리한 불이익이 없는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갖은 불이익과 불편을 재소자에게 줌으로써 고통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장소로 교도소가 인식이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정행정의 목표는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꾸어서 내보내는 것이, 그래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귀과장 여러분들이 주무과장들과 협력해서, 재소자들이, 그렇잖아도 마음이 상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재소자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적절하지 못한 처우나 대접을 받았다.'이런 생각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더 비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구금 외에는 다른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교정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수용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갇혀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도록 교정·교화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동,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이 안에서는 고쳐지고 갱생되는 동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인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귀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 선두에 여러분들이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교정 행정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가두어 두는 교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꿔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부의 지휘 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직원들을 잘 추슬러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재소자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정교화가 사람을 바꾸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우리의 교정교화 노력이 일부에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도소에는 4만 8천명에 가까운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재소자 4만 8천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하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로 사회복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혜택으로 미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재소자가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부만 귀휴되고 일부만 가족과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부만 교육을 받고 일부만 인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재소자의 일부분만이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모든 재소자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의 혜택을 받고 변화되는 체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구상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지, 대학이나 여러 NGO 단체 같은 외부 인력과의 협업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재소자를 사회복귀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재소자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교정본부 또한 인권 친화적으로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본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앞으로 우리 사회복귀 교정교화의 실질화 방향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친애하는 사회복귀과장 여러분!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연간 사회적 비용 추계가 무려 158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출소자의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국민들은 교정교화 사업에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교정본부에 수형자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교정본부는 최근에'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오늘 드디어 그 시행을 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형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형자 내면의 범죄성 개선, 즉 자기 수양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이 교정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로 새롭게 마련된 종합대책은 인성교육의 확대와 교육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교육이력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현장 중심의 검증과 피드백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사회복귀과장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교정교화 종합대책의 성패는 교정행정의 주체인 교정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깨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9.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5기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제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위해 부산·대구·전주·춘천·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은 2009년 출범한 이래 올해 5기가 활동 중인데, 여러분과 선배 기자분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이 포털사이트 Daum에서 3년 연속 우수블로그로 선정되었고, 현재 누적방문자 수 520여 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 2,900여 명에 이르는 인기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저도 틈틈이 블로그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쓰신 기사를 읽어 보는데, 어려운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재로 쉽게 설명해 주니, 독자 입장에서 읽기 편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 많이 배우고 공유하면서 블로그 기자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서울남부교도소'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아는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니, 많이 보고 듣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법무부와 국민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架橋)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 8. 29.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밀양희망센터 개관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로 접어드는 시기에,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밀양희망센터'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조해진 국회의원님, 엄용수 밀양시장님과 박필호 밀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국카본 조문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밀양희망센터' 개관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밀양구치소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밀양은 국내 3대 누각 중 하나인 영남루와 얼음골 계곡, 밀양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영남지역 문화·관광의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명처럼 햇살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이곳 밀양에서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를 개관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밀양희망센터'는 교정시설 밖의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복귀를 앞둔 모범 수형자들에게 마지막 단계의 처우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형자들은 일반 사회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영화 관람,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법무부의 비전으로 정하고, 소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내 각 부서에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교정행정도 단순히 '수형자를 가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낮추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밀양희망센터'의 추진 목적 또한 수형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로운 교정처우제도로 출발하는 밀양희망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음 주로 다가 왔습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한해의 결실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밀양희망센터'와 법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1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201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Ⅰ

존경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수년 혹은 수십년간 꾸준히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빛내주신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님, YTN 배석규 사장님,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최삼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범죄예방 자원봉사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 그간의 노력을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크게 한 번 쳤으면 합니다.

Ⅱ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9,000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 7,100여명에게 총 26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3,800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범죄예방위원님들 참 고생하신다. 이분들이 하시는 봉사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방안이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지혜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Ⅲ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이제 세계 어느 선진국과도 견줄만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경제침체, 취업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를 유지하면 매년 1%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질서준수는 우리사회 상호간 신뢰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 신뢰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도자이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중추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법은 지키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Ⅳ

자원봉사자 여러분!

옛말에 '세답족백(洗踏足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빨래를 하였더니 제 발이 희어진다'는 말로써, 남을 위하여 한 일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도움이란 바로 '보람과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조직에 몸을 담고 계시며, 진정 가치 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 하나 모여 큰 힘이 되고, 그 힘이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항상 함께 하며 작은 힘이라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1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기념식 축사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창립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도읍 의원님과, 하근수 교정동우회 초대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정동우회 회원 여러분은 30여년 이상 교정시설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간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충정과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Ⅱ

저는 공직을 시작한 젊은 시절부터 범죄인의 때 묻은 손길을 씻어주며 희망을 심어주는 교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법률이 인정하는 특수법인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광복 직후 19개 교정시설에서 3천여 명에 불과한 직원으로 2만여 명의 범죄인을 수용하기 급급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정행정은 50개 시설에서 1만 6천여 명의 교정공무원이 4만 8천여 명의 수용자에게 선진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새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교정교화프로그램은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는 물론 멕시코,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에서까지 관심을 보일 정도로 괄목상대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애써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시고 법안의 대표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도읍 의원님을 비롯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교정동우회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점검하고, 법집행의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의 특수법인으로 첫 걸음을 하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이러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그간의 교정경험과 지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유·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에도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Ⅳ

존경하는 동우회원 여러분!

'두 개의 연못이 맞닿아 서로 물을 댄다'라는 뜻의 '이택상주(麗澤相注)'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두 연못이 이어져 있으면 어느 한 쪽만 마르는 일이 없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정본부와 교정동우회도 두 개의 연못이 이어진 것처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교정행정이 국민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선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정의 선진화와 공익실현을 위해 역사적인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18.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국제법률포럼 심포지엄

Ⅰ

존경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님, 전국 법원장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게 될 오늘의 뜻 깊은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제법률심포지엄은 국·내외 법조인들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소송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Ⅱ

우리나라는 일찍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1998. 3. 1. 아시아에서 최초로 특허법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과 전문기술심리관이 매년 1,000여건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특허법원은 질적, 양적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원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었고,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서 지식과 기술이 찬란히 꽃 피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Ⅲ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고, 이 자산을 활용하여 다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무부도 창조경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권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식재산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Ⅳ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노동과 자본이 중심이 된 산업 경제에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지식창조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도 지식과 기술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국제법률심포지엄은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귀중한 지혜를 배우고,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법무부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한 규칙을 통해 지식재산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23.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사

Ⅰ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945년 10월 28일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교정업무를 시작한 지 6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정은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조국 발전의 역사에 묵묵히 기여하여 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정정책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정도의 발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정에서도 수용자와 면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 불편을 줄여 주었고, 모범수용자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기 위해 밀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거점별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증설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의 인성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교정교화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서까지 높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발전한 우리 교정의 자랑스러운 오늘 모습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해 주신 교정원로 및 교정공무원 여러분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수용자를 선도하여 오신 교정위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4대 사회악 일소와 원전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형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바로 잡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법무부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Ⅳ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미국의 저명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두 갈래 길을 앞두고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한 시인은 훗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번민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제68주년 교정의 날을 경축하는 자리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쉽게 가지 않는 이 길을 택하여 번민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수용자 교정교화의 새 길을 개척해서 "국민행복, 희망교정"을 활짝 꽃피워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숭고한 교정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28.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3회 APEC 국제 컨퍼런스

Ⅰ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아름다운 이 시기에, 제3회 『계약분쟁 해결절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베트남의 중앙경제관리연구소 응웬 딘꿍(Nguyen Dinh Cung) 부소장님, 브루나이 총리실의 야야 하지 이드리스(Yahya Haji Idris) 법무·복지 담당 차관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브라힘 빈 압둘라 알 마트로디(Ibrahim Bin Abdullah Al Matroudi) 리야드 행정법원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 법제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주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님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님을 비롯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2009년 싱가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등 5개 분야에 관한 회원국의 기업환경을, 2015년까지 25% 정도 개선하기로 공동 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와 페루, 2012년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금년에는 베트남, 브루나이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계약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법제 개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은 2007년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2%에 이르고, 한국과의 교역량도 2012년 2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나 증가하여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수출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많은 량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2012년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체 수출액의 10%가 한국에 수출되는 등 양국간의 교류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중심 국가들과 한국의, 정부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세 국가의 기업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Ⅲ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미국, EU, ASEAN 등 10개의 국가 또는 국가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고, 중국・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보장협정에 관해서도, 1967년 독일과의 협정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88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간 투자를 촉진하고,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개방과 병행하여, 국내적으로도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법제 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 신속처리 절차, 전자소송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사분쟁 해결절차에서의 효율성도 높혀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은행(World Bank)은 각국의 기업환경 평가를 위하여 해마다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은행 평가순위가 2008년 이후 16단계 상승한 것(23→7위)은,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업 부문은 2008년 세계 126위에서 2011년 24위로 도약하였고, 투자자 보호 부문은 회사법 개정으로 2011년 79위에서 2012년 49위로 대폭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이번 회의는, 서로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Ⅳ

내외 귀빈 여러분,

여기 모인 국가들은 역사・문화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기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환경의 개선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보편적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참가국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각국의 기업법제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와 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3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2013 허그(HUG) 후원의 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우윤근 국회의원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소자에 대한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하신 신철범 보호위원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출소자 후원의 날」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동안 법무부와 공단에서는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취업알선과 주거지원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이 일반 출소자의 1/8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창업자금 지원, 허그 인증업체 확대, 가정복원 및 기능처우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출소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동안 출소자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이 결국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수많은 출소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준 출소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파되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노란 물결로 더욱 아름답게 물들여 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출소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윤용병 전국보호위원연합회장님, 진성기 전국취업위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안용석 전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정영숙님을 비롯한 공단 홍보대사 여러분과 이사님,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충호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3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UNCITRAL 중재 컨퍼런스 개회사

Ⅰ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풍요와 수확의 계절인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림스키 위안 홍콩 법무부장관님, 르노 소리엘 운시트랄(UNCITRAL) 사무총장님, 클라이드 크로프트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관님, 그리고, 게리 본 미국 국제법학회 부회장님,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국에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Ⅱ

현재 세계는 에프티에이(FTA), 알셉(RCEP), 티피피(TPP) 등과 같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제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촉진하고, 거래 규범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전세계시장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입니다.

다만, 국제거래의 활성화는 국제분쟁의 증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분쟁해결은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통적 분쟁해결 수단인 '소송'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에서 장점을 지닌 '중재'를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간 무역이 활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중재를 통한 원활한 분쟁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태 지역 중재 제도의 개선과 중재산업의 발전을 향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이, 이 지역 경제주체들을 동반자적 번영으로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Ⅲ

법무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그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창조경제의 주역인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신뢰가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이루는 중재제도는 올바른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중재 모델법 등 국제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인 운시트랄(UNCITRAL) 아·태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고, 아·태 지역 중재제도의 공동발전을 위해 몽골, 미얀마 등의 중재법 개정 작업을 운시트랄(UNCITRAL)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재산업의 기초가 되는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이점과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에 접목하여, 한국이 아시아에서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IV

'중재'를 뜻하는 아비트레이션(Arbitration)이라는 영단어는 '의지, 결정'을 뜻하는 라틴어 아르비트라투스(Arbitratus)에서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사회의 도덕적, 경제적 규범에 부합하겠다는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상호존중과 지속적 신뢰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중재의 이념에 충실하게, 중재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중재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중재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귀중한 지혜를 배우고,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을 만끽하시고, 중재분야 발전을 위한 지혜의 열매뿐만 아니라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시상식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오늘, 고등학생들의

법률경연 한마당인 '제8회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환한 웃음과 함께 치러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에서, 본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 주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님,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님, 매경미디어그룹 박재현 상무님,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최삼규 회장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오주언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

법무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법의 소중함을 알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절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민사, 형사 재판 외에도 헌법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도록 헌법토론대회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본선대회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한 팀들이 참가한 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경연을 펼쳤고, 심사위원들께서 수상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 수상자 여러분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역사에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는 법질서 확립이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여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법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지키면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법을 지킬 때 행복한 신뢰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시대를 넘어 제도, 신뢰, 규범, 올바른 가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회가 학생들의 '법문화 축제의 장'이자 신뢰사회의 주역을 담당할 여러분들에게 '배움의 장'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배움에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3.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을 지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 정부과천청사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학생, 선생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각 언론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범죄예방전국연합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단체에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47%, 중학생 33%, 초등학생 16%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우선시하고 법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법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이며, '지키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져 행복한 학교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중학생 퀴즈대회'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 청소년의 문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연극으로, 동영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협동과 배려, 참여의식,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과 리더십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와 법질서 존중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경험한 소중한 법 체험은 우리나라의 헌법가치와 법질서 수호의 자산으로 남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학생지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끝으로 전국 각지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과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인천스마일센터 개소식 격려사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관문인 이곳 인천에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개소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범죄피해자지원에 많은 관심과 큰 힘을 보태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인해 웃음을 잃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치유, 임시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웃음을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2010년 7월 신설된 서울 센터와 지난 해 문을 연 부산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만 1,700여 건의 심리치유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스마일센터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 속에서 공포심과 분노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꿈과 희망을 심어드렸습니다.

이제 인천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께서도 가까운 스마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수년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편안하고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인천 스마일센터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Ⅲ

여러분, 피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인천 스마일센터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스마일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2017년까지 전국에 설치될 12개 센터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Ⅳ

오늘 센터 개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범죄피해로 홀로 고통받는 분들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2.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법률신문 창간 63주년 축사

법률신문의 창간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인 1950년에 창간된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전문지로서 그 동안 사회 전반에 '법의 지배' 원리가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이영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가들도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찾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4대 사회악, 원전 비리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왔고, 법 중에 으뜸이 되는 법인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바로 세워 헌법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구현될 때 우리나라의 체제와 질서가 바로 서고 행복사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었고 최근에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법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조인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의 창간 63주년을 축하드리고,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정책블로그 기자단 포상식 및 위촉식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5기 우수 블로그 기자 분들께 포상을 하는 자리이자, 내년에 법무부 블로그를 이끌어 갈 6기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으로 구성된 국민들께서 블로그 기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 겪게 되는 법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는 기사와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자단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법무부 블로그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다음에서 우수 블로그로 선정되었고, 2013. 12. 현재, 누적방문자 수가 5백 7십만여 명에 이르는 인기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기자단 여러분의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법무부 블로그가 국민들께 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법질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겠습니다. 올 해 5기 기자단이 활동하셨고, 내년에는 벌써 6기가 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활약하셔서, 법무부 블로그가 '명품 블로그'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합니다.

5기 기자로서 우수한 활동을 해 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6기 기자로 위촉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무부의 소통 메신저'로서 법무부가 국민들께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2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2013. 12. 31. 현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熙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喜)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임기제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1988~)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晙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정무차관 사무차관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2005. 5. 2.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기획조정실로 개편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1948. 11. 4.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1967. 4. 10. 법무실로 개편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晙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喜)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7. 3. 5.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신설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 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계약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방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개방직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일반직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신설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24. ~	검사장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2013. 12. 31. 기준)

1. 본 부(5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黃敎安	2013. 3. 11.	비상안전기획관	金庚煥	2008. 6. 30.
차 관	金賢雄	2013. 12. 24.	행정사무관	李康采	2013. 7. 29.
장관비서관	方善培	2013. 4. 9.	기획재정담당관	崔珽錫	2013. 7. 29.
장관정책보좌관	權善英	2013. 4. 23.	서기관	李天載	2013. 7. 29.
〃	蔡珍換	2013. 6. 14.	행정사무관	玄相洙	2013. 7. 29.
감찰관	安章根	2010. 9. 1.	〃	朴鍾權	2013. 2. 22.
감찰담당관	柳一準	2013. 4. 23.	〃	金珍燮	2013. 12. 4.
검사	裵鐘赫	2012. 7. 26.	창조행정담당관	高昌憲	2013. 7. 29..
〃	朴廣培	2013. 4. 23	서기관	姜義坤	2013. 1. 1.
검찰사무관	朴在云	2012. 1. 2.	행정사무관	金政福	2011. 12. 24.
〃	崔鍾必	2013. 7. 29.	〃	金景洙	2012. 7. 2.
교정관	吳光云	2012. 1. 1.	〃	李東勳	2012. 1. 1.
감사담당관	吳完燮	2013. 7. 29.	시설담당관	南鉉重	2007. 12. 31.
서기관	金洙澈	2013. 4. 1.	〃	金洪郁	2012. 7. 2.
〃	崔相嶽	2013. 7. 29.	〃	李錫宰	2012. 10. 15.
행정사무관	許泰九	2012. 1. 1.	〃	千暎昊	2012. 1. 16.
〃	林成勳	2013. 7. 29.	〃	鄭秉澤	2011. 4. 20.
〃	趙誠周	2013. 7. 29.	〃	金永採	2013. 12. 04.
〃	洪璡熙	2013. 7. 29.	공업사무관	梁榮煥	2012. 10. 15.
〃	朴宗來	2012. 5. 30.	〃	金治圭	2012. 10. 15.
시설사무관	吳信圭	2009. 7. 1.	정보화담당관	洪亨乭	2012. 5. 7.
운영지원과장	文權点	2013. 7. 29.	전산사무관	金鐘協	2009. 6. 30.
서기관	金鍾官	2013. 4. 1.	〃	曺龍贊	2011. 7. 1.
행정사무관	趙商民	2013. 7. 29.	〃	金熙成	2012. 5. 7.
〃	辛漢憲	2012. 7. 2.	〃	陳琦錫	2012. 12. 17.
〃	洪周伶	2013. 10. 10.	〃	辛秉默	2013. 12. 17.
시설사무관	裵成龍	2012. 4. 12.	정책성과관리팀장	金尙權	2013. 4. 1.
대변인	趙商喆	2013. 4. 23.	행정사무관	鄭東桓	2009. 7. 1.
홍보담당관	韓正珍	2013. 9. 1.	〃	趙五行	2012. 7. 29.
홍보전문관	李昇峨	2013. 10. 21.	행복민원센터장	柳志重	2013. 10. 21.
행정사무관	金承權	2012. 7. 2.	시설사무관	曺錄煥	2013. 4. 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宋세리아	2010. 9. 29.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金峰石	2013. 4. 23.
기획조정실장	安兌根	2013. 12. 24.	검사	鄭守辰	2012. 2. 20.
정책기획관	權寧範	2013. 7. 29.	전산사무관	金玩烈	2010. 12. 22.
검사	金 愚	2012. 2. 20.	〃	尹美淑	2010. 12. 22.
검사	河詹美	2013. 2. 28.	보호사무관	鄭姬淑	2013.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법 무 실 장	鄭仁昌	2013. 12. 24.	검 사	安炳洙	2012. 7. 26.
법 무 심 의 관	張榮燮	2013. 4. 23.	〃	崔任烈	2013. 2. 28.
검 사	金香連	2012. 2. 20.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姜慧貞	2012. 8. 17.
〃	丁龍煥	2012. 2. 20.	〃	李奎哲	2013. 9. 25.
〃	秦東均	2013. 2. 28.	전 문 임 기 제 나 급	黃鉉英	2013. 2. 6.
〃	張俊浩	2013. 2. 28.	〃	박준하	2013. 2. 6.
〃	李峻東	2013. 8. 26.	법 조 인 력 과 장	安權燮	2012. 7. 26.
검 찰 사 무 관	盧漢烈	2013. 7. 29.	검 사	潘宗郁	2013. 2. 28.
전 문 임 기 제 나 급	張유미	2012. 3. 26.	검 찰 사 무 관	朴熙相	2013. 7. 29.
법 무 과 장	鄭承冕	2013. 4. 23.	〃	朴相植	2012. 7. 2.
검 사	朴赫洙	2012. 2. 20.	행 정 사 무 관	金弘俊	2011. 7. 29.
〃	金洛賢	2013. 2. 28.	〃	金에오	2011. 10 .17.
검 찰 수 사 서 기 관	盧熙東	2013. 7. 29.	〃	柳炅南	2013. 7. 29.
검 찰 사 무 관	鄭安鎭	2013. 7. 29.	검 찰 국 장	金周賢	2013. 4. 10.
국 제 법 무 과 장	全承秀	2013. 4. 23.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李健周	2013. 12. 24.
검 사	黃宇璡	2011. 2. 14.	검 찰 과 장	鄭銖峯	2013. 4. 23.
〃	羅旭晋	2011. 2. 14.	검 사	朴世鉉	2013. 4. 23.
〃	金鍾佑	2012. 2. 20.	〃	高泌亨	2011. 2. 14.
〃	曺娥羅	2012. 7. 26.	〃	朴柱誠	2011. 9. 5.
검 찰 사 무 관	蔡義洙	2013. 7. 29.	〃	申東原	2013. 2. 28.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卞熙璟	2010. 3. 22.	검 찰 수 사 서 기 관	崔相煥	2011. 8. 24.
〃	金加娟	2012. 2. 22.	〃	李甲洙	2012. 7. 2.
〃	李나래	2013. 12. 11.	검 찰 사 무 관	辛戊承	2012. 1. 2.
국 가 송 무 과 장	李泰承	2013. 4. 23.	형 사 기 획 과 장	沈雨廷	2013. 4. 23.
검 사	申大炅	2011. 2. 14.	〃	金南勳	2013. 2. 28.
〃	李蕙恩	2013. 2. 28.	〃	朴勝煥	2012. 7. 26.
검 찰 수 사 서 기 관	金正浩	2012. 7. 2.	검 찰 수 사 서 기 관	文炳大	2012. 7. 2.
검 찰 사 무 관	朴永範	2011. 8. 24.	검 찰 사 무 관	裵吉文	2012. 1. 2.
〃	蘇 雄	2011. 2. 7.	검 찰 사 무 관	朴武烈	2012. 7. 2.
통 일 법 무 과 장	崔基植	2013. 4. 23.	공 안 기 획 과 장	白宰明	2013. 4. 23.
검 사	張少英	2012. 2. 20.	검 사	朴台顥	2012. 7. 26.
〃	朴順培	2013. 8. 26.	〃	金鍾弦	2012. 2. 20.
〃	金政煥	2012. 2. 20.	검 찰 사 무 관	朴大均	2012. 7. 2.
〃	崔大健	2013. 2. 28.	〃	李國熙	2012. 1. 2.
검 찰 사 무 관	文海植	2011. 8. 24.	국 제 형 사 과 장	李善旭	2013. 4. 23.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李恩英	2012. 7. 4.	검 사	金昌珍	2011. 2. 14.
상 사 법 무 과 장	徐奉揆	2012. 7. 26.	〃	趙柱衍	2012. 2. 20.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 찰 사 무 관	李洪龍	2010. 2. 16.
〃	吳萬玉	2012. 1. 2.
형 사 법 제 과 장	文泓性	2012. 7. 26.
검 사	柳泰碩	2012. 2. 20.
〃	權尙大	2013. 2. 28.
검 찰 사 무 관	梁又德	2009. 7. 6.
〃	李仁柱	2012. 1. 2.
범죄예방정책국장	文武一	2013. 4. 10.
범죄예방기획과과장	趙鍾泰	2013. 4. 23.
검 사	金炯錫	2012. 2. 20.
〃	李芳炫	2013. 2. 28.
보 호 사 무 관	李容浩	2013. 1. 28.
〃	李承旭	2013. 10. 1.
〃	朴鍾國	2012. 7. 9.
〃	金大要	2013. 1. 28.
법질서선진화과과장	梁要安	2013. 4. 23.
검 사	朴在億	2012. 7. 26.
〃	梁善順	2013. 8. 26.
보 호 사 무 관	權台鎬	2012. 7. 9.
검 찰 사 무 관	宋蘭和	2013. 7. 29.
행 정 사 무 관	李賢貞	2013. 12. 4.
보호법제과과장	李喆熙	2012. 7. 26.
검 사	孔鳳娘	2013. 2. 28.
서 기 관	李政旻	2013. 8. 12.
보 호 사 무 관	金基善	2012. 7. 9.
〃	曺喆鉉	2013. 8. 12.
검 찰 사 무 관	羅成薰	2013. 7. 29.
소 년 과 과 장	李東煥	2012. 7. 9.
서 기 관	李榮鎬	2013. 8. 12.
보 호 사 무 관	申源植	2011. 8. 1.
〃	尹龍範	2012. 1. 30.
〃	張宰源	2012. 1. 30.
행 정 사 무 관	權泰成	2012. 7. 2.
보호관찰과과장	孫外哲	2013. 8. 12.
서 기 관	黃振圭	2011. 10. 17.
보 호 사 무 관	盧一錫	2012 7. 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호 사 무 관	金已煥	2013. 1. 28.
〃	沈善玉	2013. 8. 12.
〃	辛容逸	2013. 1. 28.
〃	文喜甲	2010. 7. 26.
인 권 국 장(겸무)	安兌根	2013. 4. 23.
인 권 정 책 과 장	李周炯	2013. 4. 23.
서 기 관	金貞烈	2013. 2. 22.
행 정 사 무 관	李漢植	2013. 7. 29.
검 찰 사 무 관	金聖凡	2013. 7. 29.
행 정 사 무 관	李明哲	2010. 9. 1.
〃	車裕眞	2011. 6. 10.
사 무 관	吳侑珍	2012. 2. 13.
인 권 구 조 과 장	安範鎭	2013. 4. 23.
검 사	李侑宣	2012. 2. 20.
검 찰 사 무 관	李殷默	2012. 1. 2.
행 정 사 무 관	韓帝迓	2012. 7. 2.
인 권 조 사 과 장	朴昭瑛	2013. 4. 23.
검 사	李坤胡	2013. 8. 26.
검 찰 사 무 관	李東鎭	2013. 7. 29.
〃	趙炫坤	2013. 7. 29.
여성아동인권과장	洪終姬	2013. 4. 23.
행 정 사 무 관	趙始衡	2012. 1. 1.
검 찰 사 무 관	崔振鎬	2013. 7. 29.
검 찰 사 무 관	李相穆	2012. 10. 8.
교 정 본 부 장	金兌勳	2012. 7. 1.
교 정 정 책 단 장	鄭有哲	2012. 7. 23.
보 안 정 책 단 장	鄭明哲	2013. 6. 3.
교 정 기 획 과 장	愼鏞海	2013. 6. 3.
서 기 관	鄭東圭	2013. 7. 1.
교 정 관	洪性千	2010. 8. 2.
〃	朴三才	2013. 2. 4.
〃	金鉉祐	2013. 7. 1.
〃	韓泰煥	2013. 7. 1.
〃	南俊洛	2013. 2. 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업훈련과장	洪南寔	2012. 1. 1.	출입국관리사무관	李相達	2012. 7. 23.
교 정 관	尹吉鉉	2012. 7. 23.	출입국심사과장	金聖吉	2013. 3. 4.
〃	金南周	2013. 7. 1.	서 기 관	李晋坤	2013. 7. 29.
〃	崔圭澈	2013. 2. 4.	출입국관리사무관	金斗洛	2013. 8. 28.
행정사무관	黃圭成	2013. 7. 29.	〃	尹相龍	2012. 1. 20.
사회복귀과장	朴炳龍	2013. 6. 3.	체류관리과장	李圭哄	2011. 8. 26.
교 정 관	梁元東	2013. 2. 4.	출입국관리사무관	朴相旭	2012. 3. 1.
〃	姜郡五	2012. 7. 23.	〃	姜性煥	2013. 1. 28.
〃	張宗善	2013. 2. 4.	〃	張熙定	2011. 7. 4.
〃	李泓沇	2013. 10. 1.	〃	李文漢	2013. 7. 29.
복지과장	金承萬	2012. 7. 23.	〃	丁南燮	2013. 11. 1.
교 정 관	南相伍	2013. 7. 1.	이민조사과장	李世潤	2013. 7. 29.
행정사무관	崔永萬	2012. 7. 2.	출입국관리사무관	金東郁	2010. 9. 1.
시설사무관	李明洙	2009. 7. 1.	〃	林辰澤	2012. 9. 1.
보안과장	金安植	2013. 6. 3.	〃	金才楠	2012. 7. 23.
교 정 관	閔洛基	2013. 2. 4.	이민정보과장	黃澤煥	2013. 6. 12.
〃	崔鍾季	2013. 7. 1.	출입국관리사무관	朴東哲	2012. 7. 23.
〃	徐 珉	2013. 7. 1.	〃	林焌植	2012. 7. 23.
분류심사과장	金東昡	2013. 7. 1.	외국인정책과장	金鍾敏	2012. 2. 29.
서 기 관	鄭英珍	2013. 2. 4.	서 기 관	金鉉彩	2013. 7. 29.
교 정 관	朴鍾寬	2012. 7. 23.	출입국관리사무관	成在新	2013. 7. 29.
〃	朴振悅	2009. 1. 1.	〃	具本俊	2013. 1. 28.
〃	金鶴奉	2013. 7. 1.	〃	柳晟午	2013. 7. 29.
의료과장	崔帝榮	2013. 6. 3.	국적과장	李在兪	2012. 2. 29.
교 정 관	河映薰	2010. 8. 2.	출입국관리사무관	李基欽	2012. 1. 20.
〃	韓天龍	2013. 2. 4.	〃	金鎭成	2013. 7. 29.
고위공무원(국방대학교)	兪炳喆	2013. 2. 1.	〃	金基永	2013. 7. 29.
서기관(통일교육원)	尹在興	2013. 2. 1.	이민통합과장	車勇昊	2013. 2. 25.
교정관(국가인권위원회)	金在述	2012. 1. 1.	출입국관리사무관	吉康默	2013. 7. 2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韓武根	2013. 12. 24.	〃	羅賢雄	2012. 1. 20.
출입국정책단장	禹基鵬	2010. 3. 1.	〃	金世珍	2013. 7. 29.
국적·통합정책단장	金昌石	2013. 7. 29.	〃	崔男一	2012. 9. 1.
출입국기획과장	張世根	2013. 2. 7.	난민과장	宋素瑛	2013. 6. 12
서 기 관	金守男	2013. 2. 6.	출입국관리사무관	李在炯	2013. 7. 29.
출입국관리사무관	河勇國	2013. 7. 29.	〃	金泰守	2013. 7. 29.
〃	李德龍	2012. 1. 20.	부서기관(국립외교원)	孫弘基	2013. 2. 1.
〃	潘在烈	2011. 7. 4.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 장	검 사	李 得 洪	2013. 12. 24.
기 획 부 장	검 사	鄭 点 植	2013. 12. 24.
교정연수부장	고 위 공 무 원	金 琪 鉉	2013. 6. 3.
연 구 위 원	검 사	鄭 炳 斗	2013. 12. 24.
		金 鍾 律	2010. 2. 8.
		鄭 祥 煥	2013. 4. 23.
		閔 泳 善	2013. 4. 23.
		李 廷 萬	2013. 4. 23.
		李 重 霽	2013. 4. 23.
대외협력단장	검 사	高 基 榮	2013. 4. 23.
기 획 과 장	검 사	金 起 賢	2013. 4. 23.
교 수	검 사	金 鈺 釬	2013. 4. 23.
		林 錫 弼	2013. 4. 23.
		李 承 漢	2013. 4. 23.
		姜 蟹 暈	2013. 4. 23.
		安 承 振	2012. 7. 26.
		鄭 鎭 宇	2012. 7. 26.
		具 滋 賢	2013. 4. 23.
		李 昶 葐	2013. 4. 23.
		劉 賢 貞	2012. 2. 20.
총 무 과 장	서 기 관	李 相 洵	2013. 2. 1.
연구개발팀장	검찰수사서기관	林 宰 聖	2013. 7. 29.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鄭 東 晋	2012. 7. 2.
운 영 과 장	서 기 관	千 政 熏	2013. 7. 29.
교정연수과장	서 기 관	尹 在 權	2013. 2. 4.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 찰 총 장	金鎭太	2013.12.02
차 장 검 사	任正赫	2013.12.05
대 변 인	具本善	2013.04.23
범죄정보기획관	金暎鐘	2013.04.23
범죄정보1담당관	金官正	2013.04.23
범죄정보2담당관	朱映奐	2013.04.23
과학수사기획관	金榮大	2013.04.23
과학수사담당관	金範起	2013.04.23
디지털수사담당관	金榮基	2013.04.23
디엔에이수사담당관	裵鏞元	2013.04.23
기획조정부장	金鎭模	2013.12.24
정책기획과장	韓東勳	2013.04.23
정보통신과장	李正洙	2013.04.23
반부패부장	姜燦佑	2013.12.24
수사지휘과장	李枓奉	2013.12.05
수사지원과장	曺尙駿	2013.12.05
형 사 부 장	趙垠奭	2013.12.24
형 사 1 과 장	裵在德	2013.04.23
형 사 2 과 장	姜智植	2013.04.23
강 력 부 장	尹甲根	2013.12.24
조직범죄과장	柳 爀	2013.04.23
마 약 과 장	李喆熙	2013.04.23
피해자인권과장	沈載哲	2013.04.23
공 안 부 장	吳世寅	2013.12.24
공 안 기 획 관	金昌熙	2013.04.23
공 안 1 과 장	宋奎鍾	2013.04.23
공 안 2 과 장	金 信	2013.04.23
공 안 3 과 장	李文漢	2013.04.23
공판송무부장	姜景弼	2013.12.24
공판송무과장	李頑植	2013.04.23
감 찰 부 장	李俊虎	2012.09.01
감 찰 2 과 장	曺基龍	2013.04.23
검 찰 연 구 관	李東烈	2013.12.05
〃	朴殷載	2013.04.23
〃	朴順哲	2013.04.23
〃	申子容	2011.09.05
〃	姜亨旻	2013.02.28
〃	金裕喆	2013.02.28
〃	崔龍圭	2013.04.23
〃	鄭在旭	2013.04.23
〃	周容完	2013.04.23
〃	宋庚鎬	2013.04.23
〃	朴相鎭	2013.02.28
〃	金泰權	2013.02.28
〃	金度均	2013.04.23
〃	安孝禎	2013.02.28
〃	宋 岡	2013.04.23
〃	孫準晟	2013.04.23
〃	金亨根	2013.02.28
〃	李朱亨	2013.02.28
〃	張東喆	2013.02.28
〃	趙大豪	2012.02.20
〃	成尙憲	2012.02.20
〃	金晟柱	2012.07.26
〃	許 正	2013.02.28
〃	朴性玟	2013.02.28
〃	嚴熙竣	2012.02.20
〃	李仁杰	2012.02.20
〃	宋持鏞	2012.07.26
〃	朴奎炯	2013.02.28
〃	車帆濬	2013.02.28
사 무 국 장	崔昌植	2012.12.18.
운영지원과장	辛泰善	2013.07.29
집 행 과 장	朴惟洙	2013.07.29
검 찰 총 장 실	全炳烈	2013.12.02

직 위	성명	발령일
범죄정보기획관실	曺成鉉	2013.07.29
운 영 지 원 과	李甲洙	2013.07.29
관 리 과 장	金泰源	2013.07.29
디지털수사담당관실	郭明圭	2011.08.24.
수 사 기 획 관 실	宋兌源	2012.07.02.
검 찰 연 구 관 실	權寧俊	2013.12.02
감 찰 2 과	申淳求	2013.07.29
비 상 계 획 담 당 관	柳春烈	2012.03.28
정 보 통 신 서 기 관	鄭千永	2011.08.24
(서울고등검찰청)		
검 사 장	鞠敏秀	2013.12.24
차 장 검 사	趙嬉珍	2013.12.24
형 사 부 장	金오洙	2013.12.24
검 사	具本盛	2013.04.23
〃	申培植	2012.07.26
〃	金基正	2013.04.23
〃	崔永權	2012.07.26
〃	李學成	2012.07.26
〃	金鎬榮	2013.04.23
〃	朴民鎬	2012.07.26
〃	吳圭珍	2012.07.26
〃	白欑河	2012.07.26
〃	李承永	2013.04.23
〃	魏聖雲	2013.04.23
〃	朴吉龍	2013.04.23
〃	徐晶植	2013.04.23
〃	金永泰	2013.04.23
〃	金進洙	2012.07.26
〃	李靈蔓	2013.04.23
〃	朴銀錫	2013.04.23
〃	權桃郁	2013.04.23
〃	姜呂贊	2012.07.26
〃	姜吉柱	2012.07.26
〃	許相九	2012.07.26
〃	房峰爀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學奭	2013.04.23
〃	金鎭院	2012.07.26
〃	金 勳	2013.04.23
〃	李在德	2013.04.23
〃	崔昌鎬	2012.07.26
〃	白邦埈	2013.04.23
〃	李溶民	2012.07.26
〃	張鎬仲	2013.04.05
〃	李錫煥	2013.04.23
〃	金成日	2012.07.26
〃	白種宇	2013.04.23
〃	金辰淑	2013.04.23
〃	李鍾根	2012.07.26
〃	權五成	2013.04.23
〃	朴鎔浩	2013.04.23
〃	李洸敏	2013.04.23
〃	河忠憲	2012.07.26
〃	高秉民	2013.04.23
〃	朴桂賢	2013.04.23
〃	李盛潤	2013.04.23
〃	金成烈	2013.04.23
〃	崔鉉奇	2013.04.23
〃	金載勳	2013.05.08
〃	柳斗烈	2013.04.23
〃	朴在映	2013.04.23
〃	崔盈禕	2013.04.23
〃	高敬順	2013.04.23
〃	邊哲亨	2013.04.23
〃	金鉉善	2013.04.23
〃	金朱洗	2012.07.26
사 무 국 장	洪性煥	2013.07.29
총 무 과 장	劉承俊	2013.07.29
사 건 과 장	金天寬	2013.07.29
관 리 과 장	金鵬會	2013.07.29
소송사무제2과장	金泳憲	2012.07.02

직 위	성명	발령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秀南	2013.12.24
제 1 차 장 검 사	申裕澈	2013.12.24
제 2 차 장 검 사	李鎭漢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權政勳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全亨根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張瑛洙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尹章碩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權純範	2013.04.23
형사제6부장검사	郭圭澤	2013.04.23
형사제7부장검사	金炯烈	2013.04.23
형사제8부장검사	金泰喆	2013.04.23
조 사 부 장 검 사	梁鎬山	2013.04.23
여성·아동조사부장검사	金鴻昌	2013.04.23
총 무 부 장 검 사	金東柱	2013.04.23
공안제1부장검사	崔聖男	2013.04.23
공안제2부장검사	金廣洙	2013.04.23
공공형사부장검사	朴炯哲	2013.04.23
외 사 부 장 검 사	金濬俊	2013.04.23
공판제1부장검사	朴章佑	2013.04.23
공판제2부장검사	魯禎妍	2013.04.23
공판제3부장검사	李魯公	2013.04.23
특별수사제1부장검사	呂煥燮	2013.04.23
특별수사제2부장검사	尹大鎭	2013.04.23
특별수사제3부장검사	朴璨浩	2013.04.23
강 력 부 장 검 사	尹載弼	2013.04.23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검사	金榮文	2013.04.23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	曺宰涓	2013.04.23
금융조세조사제1부장검사	姜南一	2013.04.23
금융조세조사제2부장검사	李源坤	2013.04.23
금융조세조사제3부장검사	黃義守	2013.04.23
부 장 검 사	邊昶勳	2013.04.23
〃	文燦晳	2013.04.23
〃	李鍾具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裵成孝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부 장) 검 사	全映俊	2013.02.28
〃	李文聖	2013.04.23
〃	吳賢哲	2013.04.23
〃	楊重鉁	2013.04.23
〃	金洋洙	2013.04.23
〃	丁珍雄	2013.04.23
〃	鄭玉子	2013.04.23
〃	李俊燁	2013.04.23
〃	申奉洙	2013.04.23
〃	崔浩永	2013.04.23
〃	趙在彬	2013.04.23
〃	都尙範	2013.04.23
〃	李喆鎬	2013.02.28
〃	韓廷和	2013.02.28
〃	柳志悅	2013.04.23
〃	崔盛椀	2013.04.23
〃	李榮祥	2013.02.28
〃	金鍾根	2013.04.23
〃	朱祥鎔	2013.02.28
〃	朴志英	2013.04.23
〃	金澤均	2013.04.23
〃	朴倫錫	2013.04.23
검 사	李丞浩	2011.02.14
〃	金鍾五	2010.02.08
〃	金仙花	2013.02.28
〃	朴贊祿	2010.02.08
〃	李昶薑	2011.09.05
〃	朴賢濬	2013.02.28
〃	李桂漢	2011.02.14
〃	丘尙燁	2012.02.20
〃	宋吉大	2010.02.08
〃	趙勇漢	2011.02.14
〃	丁元赫	2010.08.02
〃	李炳昊	2012.02.20
〃	安鍾五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閔基泓	2011.09.05
〃	姜正錫	2010.02.08
〃	陳載仙	2012.02.20
〃	金成勳	2010.02.08
〃	安喜俊	2010.02.08
〃	鄭孝三	2010.02.08
〃	李殷彊	2012.02.20
〃	金東柱	2012.02.20
〃	朴仁羽	2013.02.28
〃	李宣赫	2012.02.20
〃	李健領	2012.02.20
〃	李桓基	2013.02.28
〃	文映權	2011.02.14
〃	田武坤	2012.02.20
〃	姜範求	2013.02.28
〃	李基榮	2012.07.26
〃	陳哲珉	2013.02.28
〃	朴柱鉉	2012.02.20
〃	徐政湜	2013.02.28
〃	朴夏英	2012.02.20
〃	崔智錫	2011.02.14
〃	徐楨旼	2013.08.26
〃	張準熙	2013.02.28
〃	金星東	2013.02.28
〃	金世漢	2012.02.20
〃	鄭景塡	2012.02.20
〃	任乘徹	2011.02.14
〃	金潤泳	2012.07.26
〃	趙南喆	2012.02.20
〃	金善規	2011.02.14
〃	崔仁相	2013.02.28
〃	安炯完	2013.02.28
〃	成祥旭	2013.02.28
〃	曺廣煥	2012.02.20
〃	李禎燮	2012.07.26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義秀	2012.02.20
〃	李卜鉉	2013.02.28
〃	段成翰	2012.02.20
〃	金池蓮	2013.02.28
〃	尹炳竣	2011.09.05
〃	裵文基	2012.02.20
〃	周慜철	2012.02.20
〃	金俊燮	2012.02.20
〃	劉相旼	2013.02.28
〃	李成植	2013.08.26
〃	李東彦	2013.02.28
〃	李坤炯	2012.02.20
〃	金台運	2012.02.20
〃	金潤候	2012.02.20
〃	柳道潤	2010.02.08
〃	金知完	2012.02.20
〃	元智愛	2012.02.20
〃	金廷憲	2012.02.20
〃	鄭文植	2013.02.28
〃	鄭日均	2011.09.05
〃	金相顯	2010.02.08
〃	李英彰	2012.02.20
〃	金秀珉	2012.02.20
〃	權裕植	2012.02.20
〃	元炯文	2010.02.08
〃	崔佑榮	2012.07.26
〃	金昌洙	2010.02.08
〃	金京槿	2013.02.28
〃	李長雨	2010.02.08
〃	李光石	2012.02.20
〃	金承彦	2013.02.28
〃	韓基植	2012.02.20
〃	崔 赫	2012.07.26
〃	李相賢	2012.02.20
〃	高鎭源	2010.02.0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昇鎬	2011.02.14
〃	申惠軫	2010.02.08
〃	崔明奎	2013.02.28
〃	崔倖寬	2013.02.28
〃	洪碩基	2011.02.14
〃	柳光烈	2011.02.14
〃	郭英煥	2012.02.20
〃	柳陳承	2012.02.20
〃	閔庚鎬	2013.08.26
〃	李 春	2012.02.20
〃	李政烈	2012.02.20
〃	兪禎澔	2013.02.28
〃	姜百信	2011.02.14
〃	鄭源斗	2011.02.14
〃	崔埈豪	2011.02.14
〃	馬秀烈	2011.02.14
〃	權昡有	2013.02.28
〃	李勝亨	2013.02.28
〃	金敏娥	2011.02.14
〃	李燦揆	2013.02.28
〃	丁光洙	2011.02.14
〃	許修眞	2011.02.14
〃	曺旻佑	2013.02.28
〃	曺碩奎	2013.02.28
〃	安晟熙	2012.07.26
〃	張允瑛	2011.09.05
〃	朴慧永	2012.02.20
〃	權性熙	2011.02.14
〃	李一揆	2013.02.28
〃	金姸實	2011.02.14
〃	李晟範	2011.02.14
〃	鄭知所	2011.02.14
〃	朴性昱	2012.02.20
〃	李俊昊	2012.02.20
〃	安東建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朱慧珍	2013.02.28
〃	徐榮培	2012.02.20
〃	崔娜瑛	2012.07.26
〃	朴恩惠	2012.02.20
〃	崔淳鎬	2012.02.20
〃	李羲燦	2013.02.28
〃	金玲美	2012.02.20
〃	宋明燮	2012.02.20
〃	李順玉	2013.02.28
〃	徐京源	2012.07.26
〃	金秀湲	2013.02.28
〃	洪丞賢	2011.02.14
〃	李林杓	2013.02.28
〃	張永一	2013.02.28
〃	李京植	2013.02.28
〃	金正勳	2013.02.28
〃	文智碩	2013.02.28
〃	鄭現姓	2013.08.26
〃	金한민	2012.04.01
〃	朴庠勇	2012.04.01
〃	李建杓	2012.04.01
〃	崔宰賢	2013.04.01
〃	金辰雨	2013.04.01
〃	金慶年	2012.02.20
〃	丁桐鉉	2012.02.20
〃	李桃熙	2012.02.20
〃	徐知元	2012.02.20
〃	南炅佑	2013.02.28
〃	林相圭	2013.02.28
〃	朴贊榮	2013.02.28
〃	李昇柱	2013.02.28
〃	羅相敦	2013.02.28
〃	洪海淑	2013.02.28
〃	崔芝叡	2013.02.28
〃	林秀玟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賢玉	2011.09.05
〃	金起杓	2011.02.14
〃	韓承憲	2010.02.08
사 무 국 장	沈 淳	2013.07.29
총 무 과 장	田溶學	2013.07.29
사 건 과 장	文炫喆	2013.07.29
집 행 제 1 과 장	張仁	2013.07.29
집 행 제 2 과 장	白雲起	2013.07.29
피해자지원과장	金根模	2012.07.02
수 사 제 1 과 장	卜斗奎	2013.07.29
범 죄 정 보 과 장	梁熙天	2012.07.02
수 사 제 2 과 장	朴東默	2013.07.29
조 사 과 장	崔峻鎔	2012.07.02
조직범죄수사과장	金昇奎	2012.01.02
마 약 수 사 과 장	裵敬煥	2013.07.29
공 판 과 장	張珍健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金峰奭	2010.07.26
〃	趙東奎	2012.01.02
〃	李恩相	2013.07.29
〃	金在燮	2012.07.0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宋讚燁	2013.12.24
차 장 검 사	盧承權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裵城範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許哲豪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金明熙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金忠宇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李炫哲	2013.04.23
형사제6부장검사	李善鳳	2013.04.23
공 판 부 장 검 사	柳炳斗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孫錫仟	2013.04.23
〃	金完圭	2013.04.23
검 사	鄭鍾和	2011.02.14
〃	金明石	2010.02.08
〃	金潤燮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申銀善	2010.02.08
〃	朴起東	2013.02.28
〃	崔在珉	2010.02.08
〃	全桂廣	2013.02.28
〃	黃聖然	2013.02.28
〃	黃金千	2010.02.08
〃	李榮男	2013.02.28
〃	孫英恩	2011.02.14
〃	徐唱元	2012.02.20
〃	卞秀良	2013.02.28
〃	文炫喆	2012.02.20
〃	金亨柱	2013.02.28
〃	吳宰絃	2013.02.28
〃	崔宰鳳	2010.02.08
〃	黃正賢	2010.02.08
〃	金秀桓	2012.02.20
〃	李侑眞	2010.02.08
〃	金永男	2011.02.14
〃	金泳周	2013.02.28
〃	鄭有利	2010.02.08
〃	朴鍾敏	2012.02.20
〃	南桂植	2013.02.28
〃	張惠永	2010.08.02
〃	李貞旼	2010.02.08
〃	宋永仁	2013.02.28
〃	金希映	2013.08.26
〃	孫尙希	2012.02.20
〃	鄭迦珍	2012.02.20
〃	尹나라	2011.09.05
〃	金知泳	2011.02.14
〃	金鎭晧	2011.02.14
〃	李鮮和	2013.02.28
〃	郭錦禧	2012.02.20
〃	朴修民	2012.02.20
〃	金錫君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榮伸	2013.02.28
〃	李한울	2012.04.01
〃	李允煥	2013.04.01
〃	李宣和	2012.02.20
〃	禹在勳	2012.02.20
〃	金甫賢	2012.02.20
〃	李宗珉	2013.02.28
〃	張埈赫	2013.02.28
〃	金銀吾	2013.02.28
〃	李恩雨	2013.02.28
〃	李少玄	2013.02.28
사무국장	李榮鎬	2013.01.01
총무과장	權泰均	2013.07.29
사건과장	金亨洙	2013.07.29
집행과장	金東石	2012.07.02
공판과장	鄭甲龍	2012.07.02
조사과장	金成道	2013.07.29
수사과장	崔完植	2012.07.02
검사직무대리	白種東	2012.07.02
〃	金容郁	2013.07.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李永烈	2013.12.24
차장검사	朴均澤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李興洛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金會宗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金 薰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金炯吉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徐榮敏	2013.04.23
형사제6부장검사	黃鉉德	2013.04.23
공판부장검사	尹春九	2013.04.23
(부부장)검사	劉一錫	2013.04.23
〃	金石載	2013.04.23
〃	金 雄	2013.04.23
검 사	金度亨	2010.02.08
〃	卞弼建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尹喆玟	2012.02.20
〃	姜仁圭	2013.02.28
〃	朴賢珠	2011.02.14
〃	朴晟燻	2013.02.28
〃	金亨郁	2012.07.26
〃	柳國樑	2010.02.08
〃	李炫娅	2012.02.20
〃	姜南守	2012.02.20
〃	羅昌洙	2012.02.20
〃	李泳揆	2012.02.20
〃	金楨珍	2011.09.05
〃	金容子	2009.02.09
〃	裵盛訓	2011.02.14
〃	金元湜	2012.02.20
〃	崔昌玟	2013.02.28
〃	曺弘用	2013.02.28
〃	姜錫喆	2013.02.28
〃	文相植	2013.02.28
〃	金恩美	2013.02.28
〃	金杞胤	2012.02.20
〃	李靜雨	2013.02.28
〃	金鎭浩	2013.02.28
〃	趙祉殷	2013.02.28
〃	崔宇均	2012.02.20
〃	元新惠	2010.02.08
〃	朴貞暖	2010.02.08
〃	金鍾必	2012.02.20
〃	申承熙	2012.02.20
〃	宋娅恩	2012.02.20
〃	孔浚赫	2013.02.28
〃	權乃建	2013.02.28
〃	嚴宰祥	2012.02.20
〃	金昌熙	2013.02.28
〃	趙은수	2013.02.28
〃	宋濬求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姜聖基	2012.02.20
〃	高銀煐	2012.02.20
〃	崔昭延	2012.02.20
〃	趙晟允	2013.02.28
〃	李銀閏	2013.02.28
〃	辛相祐	2013.02.28
〃	尹碩煥	2012.04.01
〃	兪炳國	2013.04.01
〃	李承泌	2012.02.20
〃	李娜璟	2012.02.20
〃	李姓淵	2012.02.20
〃	朴棟圭	2013.02.28
〃	張榮俊	2013.02.28
〃	安智英	2013.02.28
〃	邊埈奭	2013.02.28
〃	張智煐	2013.02.28
〃	許齒臨	2010.02.08
사 무 국 장	具滋翊	2013.07.29
총 무 과 장	李聖範	2013.01.01
사 건 과 장	咸泳輝	2013.01.01
집 행 과 장	崔正煥	2013.07.29
조 사 과 장	任元柱	2012.07.02
수 사 과 장	金承賢	2013.07.29
공 판 과 장	尹在淳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趙顯哲	2012.07.02
〃	李 憲	2013.07.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海洙	2013.12.24
차 장 검 사	崔鍾元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安永圭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全康鎭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金在龜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房基泰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徐暎受	2013.04.23
형사제6부장검사	申成植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공 판 부 장 검 사	金鍾亨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姜蟹暈	2013.04.23
〃	金大龍	2012.07.26
〃	申鉉成	2013.04.23
검 사	張成哲	2010.02.08
〃	金秀炫	2011.02.14
〃	梁在赫	2011.02.14
〃	洪甫佳	2012.02.20
〃	高泂坤	2012.07.26
〃	尹中鉉	2013.02.28
〃	徐仁善	2012.02.20
〃	金希京	2013.02.28
〃	金甫炫	2012.02.20
〃	鄭光壹	2010.02.08
〃	尹大永	2011.02.14
〃	金鍾徹	2013.02.28
〃	李昌原	2012.02.20
〃	蔡洙亮	2012.02.20
〃	韓台和	2008.08.01
〃	金善文	2011.02.14
〃	全倫慶	2013.02.28
〃	梁東偶	2013.02.28
〃	尹재슬	2012.02.20
〃	金奉俊	2013.02.28
〃	李完熙	2012.02.20
〃	崔在雅	2013.02.28
〃	朴起煥	2013.02.28
〃	黃賢娥	2012.02.20
〃	李承惠	2012.02.20
〃	金海中	2012.02.20
〃	金尙俊	2013.02.28
〃	許成奎	2013.02.28
〃	尹素賢	2011.02.14
〃	金明玉	2013.02.28
〃	李智娟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徐成牧	2012.02.20
〃	金다래	2013.02.28
〃	車昊東	2012.04.01
〃	成大雄	2013.04.01
〃	金慧林	2012.02.20
〃	黃壽熙	2012.02.20
〃	權炯煜	2012.02.20
〃	李昇雨	2013.02.28
〃	黃瑱先	2013.02.28
〃	林讚美	2013.02.28
〃	李洪錫	2013.02.28
〃	金벼리	2013.02.28
사 무 국 장	金鎭宇	2013.07.29
총 무 과 장	吳壽男	2013.07.29
사 건 과 장	李院炯	2013.01.01
집 행 과 장	徐昌源	2013.07.29
조 사 과 장	千榮秀	2013.07.29
공 판 과 장	姜求吉	2013.07.29
검사직무대리	李相男	2013.07.29
〃	柳秉奎	2013.07.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文武一	2013.12.24
차 장 검 사	尹雄傑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韓東榮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金漢洙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全錫洙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金炳炫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金錫佑	2013.04.23
공판부장검사	金弘泰	2013.04.23
(부부장)검사	盧萬錫	2013.04.23
〃	李明信	2013.04.23
검 사	金泰勳	2013.02.28
〃	全美花	2012.02.20
〃	朴賢哲	2012.02.20
〃	千寬英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具承模	2012.07.26
〃	鄭在勳	2013.08.26
〃	洪容浚	2012.02.20
〃	林一秀	2012.02.20
〃	申宗坤	2013.02.28
〃	辛昇祐	2013.02.28
〃	白承周	2013.02.28
〃	金海敬	2009.02.09
〃	李効眞	2012.02.20
〃	張惠榮	2013.02.28
〃	金炳文	2012.02.20
〃	鄭普泳	2012.02.20
〃	金亨元	2012.02.20
〃	朴晳鏞	2012.02.20
〃	徐賢旭	2012.02.20
〃	金倫廷	2012.02.20
〃	鄭赫濬	2013.02.28
〃	金恩美	2013.02.28
〃	李裕賢	2013.02.28
〃	呂京珍	2011.02.14
〃	全秀珍	2012.02.20
〃	金恩正	2013.02.28
〃	李朱喜	2013.02.28
〃	申承昊	2012.04.01
〃	秋螢澐	2013.04.01
〃	趙度俊	2012.02.20
〃	金秀姬	2012.02.20
〃	尹效貞	2012.02.20
〃	琴明媛	2013.02.28
〃	徐康源	2013.02.28
〃	權佳姬	2013.02.28
〃	金賢智	2013.02.28
사 무 국 장	高晩相	2013.07.29
총 무 과 장	尹振雄	2013.07.29
사 건 과 장	姜甲晋	2012.01.02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朴尙熙	2012.07.02
조 사 과 장	柳在晟	2013.07.29
수 사 과 장	表先億	2013.07.29
공 판 과 장	李道榮	2012.07.02
검 사 직 무 대 리	兪正玟	2011.08.2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明宰	2013.12.24
차 장 검 사	陳炅準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宋三鉉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崔吉秀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金伶奎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李永基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鄭淳信	2013.04.23
공판송무부장검사	朴榮洙	2013.04.23
(부부장)검사	徐聖昊	2013.02.28
〃	朴炳奎	2013.04.23
검 사	禹南準	2010.02.08
〃	李星一	2013.02.28
〃	李喜東	2013.02.28
〃	金公珠	2010.02.08
〃	林歲虎	2012.02.20
〃	崔賢喆	2013.02.28
〃	金 中	2012.02.20
〃	吳世文	2013.02.28
〃	金成苑	2013.02.28
〃	朴鎭成	2012.02.20
〃	崔馨元	2012.02.20
〃	呂致敬	2012.02.20
〃	朴星啟	2012.02.20
〃	金恩昤	2013.02.28
〃	金喜柱	2013.02.28
〃	盧貞玉	2012.02.20
〃	黃盛玟	2012.02.20
〃	庾晶鉉	2012.02.20
〃	印 勳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文夏卿	2012.02.20
〃	河竣皓	2012.02.20
〃	崔惠璟	2012.02.20
〃	姜銀善	2012.02.20
〃	郭桂姈	2013.02.28
〃	李慈璟	2011.02.14
〃	李槿貞	2013.02.28
〃	朴恩禛	2011.02.14
〃	崔倫炅	2011.02.14
〃	洪楨娟	2013.02.28
〃	韓大雄	2012.04.01
〃	金妍姝	2012.02.20
〃	金泰均	2013.04.01
〃	吳智錫	2013.02.28
〃	安盛民	2012.02.20
〃	安大熙	2012.02.20
〃	金廷衍	2012.02.20
〃	韓承勳	2013.02.28
〃	宋正範	2013.02.28
〃	愼恩廷	2013.02.28
〃	郭重旭	2013.02.28
사 무 국 장	安昌煥	2013.07.29
사 건 과 장	朴舜雨	2013.07.29
집 행 과 장	朴大均	2013.07.29
수 사 과 장	李昌燁	2013.04.09
공 판 송 무 과 장	高錫鎭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高錫鎭	2013.07.29
(고 양 지 청)		
차 장 검 사	崔世勳	2013.04.23
부 장 검 사	金呟采	2013.04.23
부 장 검 사	朴贊日	2013.04.23
부 장 검 사	白龍夏	2013.04.23
(부부장)검사	李丁鏞	2013.02.28
〃	尹席主	2013.04.23
검 사	姜壽山那	2011.02.14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南相寬	2012.02.20
〃	鄭熙道	2013.02.28
〃	李曈憲	2011.02.14
〃	李宗珉	2012.02.20
〃	金洋燮	2013.02.28
〃	金振湳	2013.02.28
〃	魏秀鉉	2013.02.28
〃	李容均	2013.02.28
〃	李正培	2012.02.20
〃	孫正賢	2012.02.20
〃	權純基	2013.02.28
〃	朴晉奭	2012.02.20
〃	李晉鏞	2013.02.28
〃	李在涓	2011.02.14
〃	金志彦	2011.02.14
〃	洪貞蓮	2013.02.28
〃	金志殷	2011.02.14
〃	張世眞	2013.02.28
〃	黃允載	2012.04.01
〃	崔根榮	2013.02.28
〃	金圓進	2012.02.20
〃	林洪圭	2013.04.01
〃	金방글	2013.02.28
〃	黃載東	2012.02.20
〃	金나리	2012.02.20
〃	文旻泳	2013.02.28
〃	文載雄	2013.02.28
〃	李洪烈	2013.02.28
〃	高麗珍	2013.05.06
사 무 국 장	金 鋌	2013.07.29
총 무 과 장	尹憶培	2012.07.02
사 건 과 장	金寧奎	2013.07.29
집 행 과 장	安秉根	2013.04.23
수 사 과 장	鄭熙燮	2013.07.29

직 위	성명	발령일
(인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崔在卿	2013.12.24
제 1 차 장 검 사	李 赫	2013.04.23
제 2 차 장 검 사	權益煥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朴根範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姜信燁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李憲相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崔瓊奎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趙鎬敬	2013.04.23
공판송무부장검사	白尙烈	2013.04.23
공 안 부 장 검 사	朴聖根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申昊澈	2013.04.23
강 력 부 장 검 사	程軫基	2013.04.23
외 사 부 장 검 사	任寬爀	2013.04.23
부 장 검 사	李重霽	2013.04.23
부 장 검 사	李柱壹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白奇峯	2013.04.23
〃	崔容熏	2012.02.20
〃	安承振	2011.09.05
〃	金泰佑	2013.02.28
〃	李貞勳	2013.02.28
〃	朴億洙	2013.02.28
〃	權純汀	2013.02.28
검 사	金龍奎	2013.02.28
〃	朴榮彬	2010.02.08
〃	金兌垠	2012.02.20
〃	金 鉉	2010.02.08
〃	姜大權	2012.07.26
〃	金炯錄	2012.02.20
〃	李宗燦	2013.02.28
〃	鄭宇植	2013.02.28
〃	崔源錫	2013.02.28
〃	朴庭儀	2012.02.20
〃	河信旭	2012.02.20
〃	趙映贊	2011.02.14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朴建昱	2011.02.14
〃	洪完喜	2012.02.20
〃	朴炫奎	2011.02.14
〃	金龍植	2012.02.20
〃	許誠桓	2012.02.20
〃	金尙均	2012.02.20
〃	朴美英	2011.02.14
〃	洪晟準	2013.02.28
〃	朴志容	2011.02.14
〃	李東炫	2012.02.20
〃	金載南	2012.02.20
〃	朴惠蘭	2012.02.20
〃	安匡鉉	2012.02.20
〃	金保成	2012.02.20
〃	金正局	2013.02.28
〃	奇老星	2013.02.28
〃	李允姬	2011.02.14
〃	張仁鎬	2013.02.28
〃	李始佺	2013.02.28
〃	張恩希	2013.02.28
〃	南修娟	2011.02.14
〃	金宰成	2012.02.20
〃	鄭和俊	2012.02.20
〃	吳善姬	2012.07.26
〃	禹成榮	2012.02.20
〃	張旭桓	2012.02.20
〃	柳朱泰	2012.02.20
〃	金民九	2012.02.20
〃	宋圭榮	2012.02.20
〃	宋旼侹	2012.02.20
〃	鞠 眞	2012.02.20
〃	金美守	2012.02.20
〃	潘 智	2012.07.26
〃	洪尙徹	2013.02.28
〃	高永河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徐廷和	2013.02.28
〃	李大憲	2013.02.28
〃	趙常圭	2013.02.28
〃	黃善玉	2013.02.28
〃	段瀞麗	2013.02.28
〃	蘇在煥	2012.04.01
〃	朴成眞	2012.04.01
〃	梁益準	2012.02.20
〃	鄭宇成	2012.02.20
〃	朴 守	2012.02.20
〃	李惠現	2012.02.20
〃	柳京煥	2013.04.01
〃	趙宰徹	2013.04.01
〃	鄭惠丞	2012.07.26
〃	權瑟起	2012.02.20
〃	崔恩美	2012.02.20
〃	辛芝那	2012.02.20
〃	金恩貞	2012.02.20
〃	金淑正	2013.02.28
〃	李鍾光	2013.02.28
〃	鄭暻映	2013.02.28
〃	張有那	2013.02.28
〃	芮相均	2012.02.20
총 무 과 장	元應福	2013.07.29
사 건 과 장	鄭康永	2013.07.29
집 행 과 장	李武中	2013.07.29
조 사 과 장	李正範	2012.07.02
수 사 과 장	許雄	2013.07.29
마약수사과장	郭大奎	2013.07.29
공판송무과장	朴範濬	2012.07.02
검사직무대리	崔大鎭	2013.07.29
〃	朴公雨	2013.07.29
(부 천 지 청)		
지 청 장	黃仁奎	2013.04.23
차 장 검 사	李千世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장 검 사	金已俊	2013.04.23
〃	金贊中	2013.04.23
〃	金俊淵	2013.04.23
(부부장)검사	金永鉉	2013.04.23
〃	沈學鎭	2013.04.23
〃	文成仁	2013.02.28
검 사	金載夏	2013.02.28
〃	姜承熙	2012.02.20
〃	辛建澔	2013.02.28
〃	朴鍾鎬	2012.02.20
〃	金銀河	2013.02.28
〃	崔熙貞	2013.02.28
〃	蘇昶範	2011.02.14
〃	李豪錫	2013.02.28
〃	李圭原	2013.02.28
〃	金貞華	2010.02.08
〃	宋寅豪	2013.02.28
〃	李承勇	2012.02.20
〃	李正浩	2013.02.28
〃	金韶賢	2013.02.28
〃	劉知妍	2013.02.28
〃	金載煥	2012.04.01
〃	崔리지	2012.02.20
〃	姜眞旭	2013.04.01
〃	金珉庭	2013.02.28
〃	金載雨	2012.02.20
〃	朴한나	2012.02.20
〃	金熙東	2013.02.28
〃	許世珍	2013.02.28
〃	孫精賢	2013.02.28
〃	權槿歡	2013.05.06
〃	權寅杓	2013.05.06
〃	金珉我	2013.05.06
〃	安英林	2012.02.20
총 무 과 장	李庸哲	2012.07.02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건 과 장	朴鎬文	2012.04.23
집 행 과 장	李昌埈	2013.07.29
수 사 과 장	金學相	2013.07.29
(수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申勁植	2013.12.24
제 2 차 장 검 사	車京煥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李廷會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魏在千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崔貞淑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李泰炯	2013.04.23
공판송무부장검사	李種根	2013.04.23
공 안 부 장 검 사	崔兌源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金煦坤	2013.04.23
강 력 부 장 검 사	張鳳文	2013.04.23
부 장 검 사	高基榮	2013.04.23
〃	高 興	2013.04.23
(부부장)검사	李英珠	2013.04.23
〃	李秀權	2013.04.23
〃	魏聖國	2013.08.06
〃	朴奉熙	2013.02.28
〃	鄭大正	2013.02.28
〃	安瑩駿	2013.02.28
〃	鄭鎭宇	2013.02.28
〃	黃秉柱	2013.02.28
검 사	許丁穗	2013.02.28
〃	金敬祐	2013.08.26
〃	金南順	2012.02.20
〃	金炯秀	2013.02.28
〃	全俊喆	2012.02.20
〃	金漢祚	2010.02.08
〃	朴泠鎭	2013.02.28
〃	陳正吉	2011.02.14
〃	千奇弘	2012.02.20
〃	金溟雲	2013.02.28
〃	金熏榮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張潤台	2013.08.26
〃	李周泳	2012.02.20
〃	李蔓欽	2012.02.20
〃	韓眞喜	2012.07.26
〃	河東雨	2010.02.08
〃	鄭太元	2013.02.28
〃	鄭永洙	2013.02.28
〃	金琪勳	2011.02.14
〃	朴城民	2012.02.20
〃	崔淸浩	2012.02.20
〃	朴炅燮	2012.02.20
〃	張熒洙	2012.02.20
〃	洪承杓	2013.02.28
〃	洪龍和	2013.02.28
〃	崔在萬	2013.02.28
〃	李在晩	2013.02.28
〃	千大元	2013.02.28
〃	李治炫	2011.02.14
〃	黃正妊	2013.02.28
〃	金周昡	2013.02.28
〃	李承姬	2012.02.20
〃	金姬英	2012.02.20
〃	崔斗憲	2012.02.20
〃	李元模	2012.02.20
〃	車敬子	2013.02.28
〃	李俊憙	2013.02.28
〃	方俊盛	2013.02.28
〃	崔慧卿	2013.02.28
〃	申恩植	2013.02.28
〃	嚴永旭	2012.04.01
〃	崔荷淵	2012.02.20
〃	李秀賢	2012.02.20
〃	宣賢淑	2012.02.20
〃	吳振世	2013.04.01
〃	許泰勳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吳寶美	2012.02.20
〃	徐素喜	2012.02.20
〃	羅소라	2012.02.20
〃	洪敏裕	2013.02.28
〃	劉在根	2013.02.28
〃	閔琇洪	2013.02.28
〃	張 鎭	2013.02.28
〃	洪炫埈	2013.02.28
사 무 국 장	魚昉溶	2013.07.29
총 무 과 장	許 燮	2013.07.29
집 행 과 장	韓生一	2013.07.29
조 사 과 장	呂起烈	2013.07.29
수 사 과 장	李學澈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張柄仁	2012.07.02
〃	金正基	2013.07.29
〃	李吉載	2013.07.29
(성 남 지 청)		
지 청 장	具本鎭	2013.04.23
차 장 검 사	金宇鉉	2013.04.23
부 장 검 사	崔成眞	2013.04.23
〃	鄭智泳	2013.04.23
〃	金昊耿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吳永信	2011.09.05
〃	李炅洙	2013.04.23
검 사	姜炅來	2013.02.28
〃	朴基鍾	2013.02.28
〃	柳東昊	2012.02.20
〃	權宰煥	2011.02.14
〃	金鐘鎬	2013.02.28
〃	盧珍英	2013.02.28
〃	李光佑	2013.02.28
〃	閔永炫	2010.02.08
〃	金基龍	2013.02.28
〃	吳宗烈	2012.02.20
〃	朴允姬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孔壹規	2013.02.28
〃	鄭芝泳	2012.02.20
〃	李周玹	2012.07.26
〃	李炅珉	2013.02.28
〃	尹孝善	2013.02.28
〃	兪宗建	2012.04.01
〃	金玟貞	2012.02.20
〃	李鍾赫	2012.02.20
〃	李賢珠	2012.02.20
〃	朴相宣	2013.04.01
〃	金旻晶	2013.02.28
〃	鄭熙龍	2012.02.20
〃	白尙埈	2012.02.20
〃	韓銀智	2013.02.28
〃	朴智元	2013.02.28
〃	康馨允	2013.02.28
〃	金世顯	2013.05.06
〃	金炫坤	2013.05.06
〃	金슬아	2013.05.06
사 무 국 장	金鍾福	2013.07.29
총 무 과 장	文正洙	2012.07.02
사 건 과 장	孫東燮	2012.04.23
집 행 과 장	李厚錫	2013.07.29
수 사 과 장	李煥圭	2013.07.29
검사직무대리	張晶皓	2013.07.29
(여 주 지 청)		
지 청 장	尹錫悅	2013.04.23
부 장	洪承郁	2012.07.26
검 사	徐志賢	2011.02.14
〃	閔丙權	2010.02.08
〃	崔洙逢	2012.02.20
〃	申東桓	2013.02.28
〃	金政煥	2013.02.28
〃	鄭侊炳	2013.02.28
〃	朴芝英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尹慧玲	2013.02.28
〃	金琫暻	2013.02.28
〃	金賢雄	2013.05.06
사 무 과 장	李海根	2012.07.02
수 사 과 장	金昌洙	2013.07.29
(평 택 지 청)		
지 청 장	朴景春	2013.04.23
부 장 검 사	金孝鵬	2013.04.23
〃	李起玉	2012.07.26
검 사	崔宰熏	2010.02.08
〃	姜尙默	2010.02.08
〃	金瑛俊	2012.02.20
〃	申都旭	2012.02.20
〃	朴慶澤	2012.02.20
〃	鄭大熙	2013.02.28
〃	崔成洙	2013.02.28
〃	李智慧	2012.02.20
〃	鄭効玟	2012.02.20
〃	姜逸民	2013.02.28
〃	李建雄	2013.02.28
〃	崔恩英	2013.02.28
〃	李姿英	2013.02.28
〃	申妃那	2013.02.28
〃	宋姝旼	2013.02.28
사 무 과 장	孫祥彩	2013.07.29
수 사 과 장	朴來勝	2013.07.29
(안 산 지 청)		
지 청 장	金會在	2013.04.23
차 장 검 사	安秉翼	2013.04.23
부 장 검 사	朴奎殷	2013.04.23
〃	李相奎	2013.04.23
〃	李宗煥	2013.04.23
〃	黃銀永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裵唱大	2013.02.28
검 사	尹振容	2011.02.14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田炳珠	2013.02.28
〃	梁盛弼	2013.02.28
〃	丁芝榮	2012.02.20
〃	兪芝衍	2013.02.28
〃	具美玉	2012.02.20
〃	申元容	2012.02.20
〃	金賢洙	2013.02.28
〃	崔鍾必	2011.02.14
〃	姜兌勳	2013.02.28
〃	成秉奎	2012.02.20
〃	李尙勳	2012.02.20
〃	金起昡	2013.02.28
〃	金永哲	2013.02.28
〃	金昌燮	2012.02.20
〃	崔鏞普	2012.02.20
〃	申美良	2012.07.26
〃	朴先民	2012.02.20
〃	金智淑	2012.02.20
〃	孫明枳	2012.02.20
〃	王善珠	2013.02.28
〃	李柱勳	2013.02.28
〃	金承禹	2012.02.20
〃	孫秀珍	2012.02.20
〃	金泰希	2013.02.28
〃	李在涓	2013.02.28
〃	安美賢	2012.02.20
〃	李承哲	2012.02.20
〃	李宰杓	2013.02.28
〃	李虎宰	2013.02.28
〃	朴之英	2013.02.28
〃	具世熹	2013.02.28
〃	朴奎南	2013.05.06
〃	閔恩植	2013.05.06
〃	朴慶世	2013.05.06
〃	金亨哲	2013.05.06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金貞玉	2012.07.02
총 무 과 장	柳貞羽	2012.07.02
사 건 과 장	金泰縣	2012.04.23
집 행 과 장	李一男	2012.07.02
수 사 과 장	張鍾喆	2013.07.29
검사직무대리	朴明奎	2011.08.24
(안 양 지 청)		
지 청 장	韓璨湜	2013.04.23
차 장 검 사	金敬泰	2013.04.23
부 장 검 사	趙南寬	2013.04.23
〃	朴斗淳	2013.04.23
〃	朴龍基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朴在億	2013.02.28
검 사	朴惠敬	2013.02.28
〃	徐正植	2013.02.28
〃	李載昇	2012.02.20
〃	朴勝大	2010.02.08
〃	曺斗鉉	2013.02.28
〃	金泫我	2012.02.20
〃	尹棟煥	2012.02.20
〃	趙萬來	2013.02.28
〃	李相旼	2012.07.26
〃	許 準	2011.02.14
〃	林演珍	2011.02.14
〃	金相文	2012.02.20
〃	朴祥姬	2012.02.20
〃	張麗美	2013.02.28
〃	孫雅智	2012.02.20
〃	申起容	2013.04.01
〃	宋惠淑	2013.02.28
〃	李素娟	2012.02.20
〃	黃湖釋	2012.02.20
〃	李政桓	2013.02.28
〃	張在貞	2013.02.28
〃	裵奭熙	2013.05.06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徐아람	2013.05.06
〃	朴敏熙	2013.05.06
사 무 과 장	李世揆	2012.07.02
집 행 과 장	玄東臨	2013.07.29
수 사 과 장	鄭勳求	2013.07.29
(춘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孔相勳	2013.12.24
차 장 검 사	崔運植	2013.04.23
부 장 검 사	安晟秀	2013.04.23
〃	朴勝煥	2013.04.23
(부부장)검사	朴恩貞	2013.04.23
〃	具滋賢	2013.02.28
검 사	韓濟熙	2012.02.20
〃	姜旼廷	2013.02.28
〃	沈玟廷	2013.02.28
〃	朴鍾宣	2013.02.28
〃	田承澈	2012.02.20
〃	成斗慶	2012.04.01
〃	金銀貞	2012.02.20
〃	金昊炫	2013.04.01
〃	宋새봄	2013.02.28
〃	趙正福	2011.02.14
〃	金正勳	2012.02.20
〃	李善美	2013.02.28
사 무 국 장	李吉亨	2013.07.29
총 무 과 장	金浩珉	2013.07.29
집 행 과 장	魏在洪	2013.07.29
수 사 과 장	梁文鎬	2012.07.02
(강릉지청)		
지 청 장	吳自誠	2013.04.23
부 장 검 사	金志憲	2012.07.26
검 사	趙庸祐	2011.02.14
〃	金丞杰	2011.02.14
〃	韓文赫	2012.02.20
〃	姜容默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治勳	2012.02.20
〃	丁貞旭	2012.02.20
〃	任銀晶	2012.02.20
〃	金成炫	2012.07.26
〃	劉宣景	2013.02.28
〃	孫有彬	2013.05.06
사 무 과 장	崔炳烹	2013.07.29
수 사 과 장	金東完	2013.07.29
(원주지청)		
지 청 장	朴東辰	2013.04.23
부 장 검 사	韓奭履	2012.07.26
검 사	金亨遠	2012.02.20
〃	羅熙錫	2013.02.28
〃	李先基	2012.02.20
〃	金智潤	2012.02.20
〃	洪志睿	2013.02.28
〃	金珉奭	2013.02.28
〃	洪性基	2013.02.28
〃	李鎭熙	2013.02.28
〃	金鉉書	2013.02.28
사 무 과 장	丁奎琇	2012.07.02.
수 사 과 장	徐榮鍾	2012.07.02.
(속초지청)		
지 청 장	田盛元	2013.04.23
검 사	南大主	2013.02.28
〃	朴榮植	2012.02.20
〃	李裁源	2012.02.20
사 무 과 장	金泰鎰	2013.07.29
(영월지청)		
지 청 장	李시원	2013.04.23
검 사	金虎庚	2012.02.20
〃	全榮雨	2012.02.20
〃	盧泳屛	2013.02.28
〃	金美慧	2013.02.28
사 무 과 장	金勝虎	2013.07.29

직 위	성명	발령일
(대전고등검찰청)		
검 사 장	金熙官	2013.12.24
차 장 검 사	李今魯	2013.12.24
검 사	元聖竣	2012.07.26
〃	河宗鐵	2013.04.23
〃	金鍾律	2012.07.26
〃	林武永	2012.07.26
〃	郭圭洪	2013.04.23
〃	金洪宇	2012.07.26
〃	李在九	2011.09.05
〃	李善勳	2012.07.26
〃	金泰光	2012.07.26
〃	趙仁衡	2013.04.23
사 무 국 장	鄭亨永	2013.07.29
총 무 과 장	尹得榮	2013.07.29
사 건 과 장	吳榮南	2012.07.02
(대전지방검찰청)		
검 사 장	朴珉豹	2013.12.24
차 장 검 사	全賢竣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朴成鎭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柳源根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安美英	2013.04.23
공 안 부 장 검 사	李晟圭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李廷鎬	2013.04.23
공 판 부 장 검 사	羅炳勳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權純哲	2012.07.26
〃	李沅석	2013.04.23
〃	蔡錫賢	2013.04.23
〃	申英植	2013.02.28
〃	閔奇鎬	2013.02.28
〃	邢振輝	2013.02.28
검 사	金志妍	2012.02.20
〃	鄭珍溶	2013.08.26
〃	趙奭泳	2013.02.28
〃	李東洙	2013.02.28
검 사	李映林	2012.02.20
〃	姜知聲	2012.02.20
〃	李知玧	2013.02.28
〃	金德坤	2013.02.28
〃	趙相元	2013.02.28
〃	朴天烋	2013.08.26
〃	梁善順	2011.02.14
〃	鄭星賢	2013.02.28
〃	鞠相佑	2013.02.28
〃	申秉宰	2012.02.20
〃	蔡熹滿	2010.02.08
〃	金宰禾	2010.02.08
〃	金泰勳	2013.02.28
〃	金志容	2012.02.20
〃	羅夏那	2011.02.14
〃	崔芝賢	2011.02.14
〃	朴 徹	2013.02.28
〃	金가람	2012.02.20
〃	朴健榮	2012.02.20
〃	張有剛	2012.02.20
〃	尹仁植	2012.04.01
〃	李惠美	2012.02.20
〃	李煥羽	2012.02.20
〃	崔允僖	2012.02.20
〃	許廷銀	2013.02.28
〃	張態亨	2013.04.01
〃	李羲俊	2012.02.20
〃	李宣姈	2012.02.20
〃	金京屹	2013.02.28
〃	金惠敬	2013.02.28
사 무 국 장	林健相	2013.07.29
총 무 과 장	金永昌	2012.07.02
사 건 과 장	張東駿	2012.07.02
집 행 과 장	南宮基云	2012.07.02
조 사 과 장	金鎭泰	2013.04.04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尹普熙	2012.07.02
검사직무대리	李相龍	2011.02.07
(홍 성 지 청)		
지 청 장	廉雄澈	2013.04.23
부 장 검 사	朴鍾根	2012.07.26
검 사	劉敏鍾	2012.02.20
〃	朴智勳	2013.02.28
〃	張송이	2011.02.14
〃	朴培熙	2012.02.20
〃	李正賢	2013.02.28
〃	黃根珠	2013.02.28
〃	宋潤相	2013.05.06
〃	宋佳炯	2013.05.06
사 무 과 장	金仁石	2012.07.02
수 사 과 장	金雲祥	2012.07.02
(공 주 지 청)		
지 청 장	李進東	2013.04.23
검 사	崔玹碩	2012.02.20
〃	徐元一	2013.02.28
〃	李周炫	2013.02.28
사 무 과 장	裵乙燮	2013.07.29
(논 산 지 청)		
지 청 장	金南佑	2013.04.23
검 사	鄭湲錫	2013.02.28
〃	吳相淵	2012.02.20
〃	高明我	2013.02.28
사 무 과 장	李相敦	2013.07.29
(서 산 지 청)		
지 청 장	李完揆	2013.04.23
부 장 검 사	柳政元	2013.04.23
검 사	尹垣基	2010.02.08
〃	金兌炯	2011.02.14
〃	金宗煜	2013.02.28
〃	金敬昊	2013.02.28
〃	李尙美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玄東佶	2013.02.28
〃	徐東暻	2013.02.28
〃	楊鎭善	2013.02.28
사 무 과 장	林上源	2012.07.02
수 사 과 장	李鍾澈	2012.07.02
(천 안 지 청)		
지 청 장	宋寅澤	2013.04.23
부 장 검 사	李奉稷	2013.04.23
〃	韓雄在	2013.04.23
검 사	朱晋佑	2011.02.14
〃	朴俊映	2010.02.08
〃	陳惠媛	2013.08.26
〃	金泰見	2012.02.20
〃	金泰憲	2011.02.14
〃	崔泰銀	2011.02.14
〃	趙宰鐵	2012.02.20
〃	金俸進	2012.02.20
〃	韓尙亨	2012.02.20
〃	宋奉駿	2012.02.20
〃	曺 哲	2013.02.28
〃	金相賢	2013.02.28
〃	任志洙	2012.02.20
〃	宋漢燮	2012.02.20
〃	宋明眞	2012.02.20
〃	劉새롬	2013.02.28
〃	金 珍	2013.02.28
〃	金炫宇	2013.02.28
〃	姜和連	2013.02.28
〃	沈彊賢	2013.05.06
사 무 과 장	姜龍慶	2013.07.29
집 행 과 장	鄭炳産	2013.07.29
수 사 과 장	任昌彬	2013.07.29
(청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康旭	2013.12.24
차 장 검 사	李明淳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장 검 사	韓相鎭	2013.04.23
〃	金種七	2012.07.26
〃	崔盛弼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金載渼	2013.04.23
검 사	金周弼	2012.02.20
〃	申炯湜	2013.02.28
〃	李鎭鎬	2012.02.20
〃	金寧基	2011.02.14
〃	禹基烈	2013.08.26
〃	具兌妍	2013.02.28
〃	鄭在賢	2012.02.20
〃	宋昌珍	2010.02.08
〃	鄭守辰	2012.02.20
〃	金侖宣	2013.02.28
〃	金皓駿	2012.02.20
〃	金志譓	2012.02.20
〃	鞠 元	2013.02.28
〃	鄭秀正	2012.02.20
〃	朴지나	2012.02.20
〃	金仁淑	2013.02.28
〃	金東律	2013.02.28
〃	鄭宇俊	2013.02.28
〃	金勁穆	2012.04.01
〃	金希娟	2012.02.20
〃	金智雅	2012.02.20
〃	金 建	2013.04.01
〃	金寶美	2012.02.20
〃	南昭禎	2013.02.28
〃	鄭 赫	2013.02.28
사 무 국 장	鄭然翼	2013.07.29
총 무 과 장	李相茂	2013.07.29
사 건 과 장	金晶奉	2013.07.29
집 행 과 장	金成植	2013.07.29
수 사 과 장	申潤植	2013.07.29

직 위	성명	발령일
(충 주 지 청)		
지 청 장	鄭弼才	2013.04.23
부 장 검 사	崔憲滿	2012.07.26
검 사	元鍾寓	2009.02.09
〃	朴大煥	2012.02.20
〃	蘇正秀	2012.02.20
〃	李京漢	2012.02.20
〃	任하나	2013.02.28
〃	洪石基	2013.02.28
〃	柳承辰	2013.02.28
사 무 과 장	梁相承	2013.07.29
(제 천 지 청)		
지 청 장	明点植	2013.04.23
검 사	安埈奭	2012.02.20
〃	黃允宣	2013.02.28
〃	林泓錫	2013.02.28
사 무 과 장	洪承謨	2013.07.29
(영 동 지 청)		
지 청 장	李準植	2013.04.23
검 사	趙正鎬	2013.02.28
〃	崔相勳	2012.02.20
사 무 과 장	鄭泰容	2012.07.02
(대구고등검찰청)		
검 사 장	朴性載	2013.12.24
차 장 검 사	金浩徹	2013.12.24
검 사	權泰鎬	2013.04.23
〃	鄭現太	2012.07.26
〃	鄭柄大	2012.07.26
〃	李義景	2012.07.26
〃	林采源	2012.07.26
〃	徐商熙	2009.01.30
〃	金淸鉉	2013.04.23
〃	鄭容秀	2012.07.26
〃	玉善棋	2013.04.23
〃	柳宗完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金 圭	2013.07.29
총 무 과 장	金尙秀	2013.07.29
사 건 과 장	金晟勳	2013.07.29
(대구지방검찰청)		
검 사 장	吳栻洙	2013.12.24
제 2 차 장 검 사	楊富男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李炯澤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朴亨修	2013.05.08
형사제3부장검사	高敏碩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盧相吉	2013.04.23
공 판 부 장 검 사	申明浩	2012.07.26
공 안 부 장 검 사	李定炫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金英翼	2013.04.23
강 력 부 장 검 사	金玉煥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沈在桂	2013.04.23
〃	金宰玉	2012.02.20
〃	尹相皓	2013.02.28
〃	尹源祥	2013.02.28
검 사	李尙璡	2012.02.20
〃	朴振源	2011.02.14
〃	吳政姬	2012.02.20
〃	李濟榮	2013.02.28
〃	崔鍾武	2010.02.08
〃	權起煥	2012.07.26
〃	李相吉	2013.02.28
〃	元姬貞	2013.02.28
〃	閔庚喆	2013.08.26
〃	車淳吉	2012.07.26
〃	金度完	2013.02.28
〃	尹卿元	2012.07.26
〃	崔斗泉	2013.08.26
〃	金美羅	2008.02.29
〃	李知炯	2008.02.29
〃	權邦文	2011.02.14
〃	孫晉郁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林有慶	2013.02.28
〃	崔善瓊	2012.02.20
〃	張日姬	2010.02.08
〃	孫貞淑	2010.02.08
〃	崔美和	2013.02.28
〃	李先女	2012.02.20
〃	魚寅成	2013.02.28
〃	李世喜	2013.02.28
〃	李壽珍	2012.02.20
〃	韓宗武	2013.02.28
〃	朴順愛	2013.02.28
〃	金準先	2012.02.20
〃	鄭仙帝	2012.02.20
〃	鄭美蘭	2013.02.28
〃	金南秀	2013.02.28
〃	金珍用	2013.02.28
〃	崔聖謙	2013.02.28
〃	金俊鎬	2013.02.28
〃	李周炫	2013.02.28
〃	金廷恩	2013.02.28
〃	金孝珍	2013.02.28
〃	李世鍾	2012.04.01
〃	千載仁	2012.02.20
〃	金成勳	2012.02.20
〃	林智妍	2012.02.20
〃	金世稀	2012.02.20
〃	朴採願	2012.02.20
〃	鄭聖憲	2013.04.01
〃	崔正民	2013.02.28
〃	殷宗郁	2012.02.20
〃	許秀珍	2012.02.20
〃	金台浩	2012.02.20
〃	金晳淳	2013.02.28
〃	吳承恩	2013.02.28
〃	李昭娟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石基煥	2013.07.29
총무과장	李元哲	2013.07.29
사건과장	具大元	2013.07.29
수사과장	金東錫	2012.07.02.
공판과장	徐光允	2012.07.02.
검사직무대리	朴天洪	2012.07.02
〃	姜貴馨	2013.07.29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劉相凡	2013.04.23
차장검사	朴潤海	2013.04.23
부장	沈在千	2013.04.23
〃	都鎭浩	2013.04.23
〃	朴興俊	2012.07.26
(부부장)검사	李尙昱	2013.04.23
〃	金容彬	2013.04.23
검사	禹勝倍	2013.02.28
〃	孫佑昌	2013.02.28
〃	朴大範	2012.02.20
〃	孫儹旿	2012.02.20
〃	金載赫	2013.02.28
〃	李承學	2013.02.28
〃	朴建永	2013.02.28
〃	朴鍾善	2011.02.14
〃	李珠熙	2011.02.14
〃	沈亨錫	2012.02.20
〃	金倫廷	2013.02.28
〃	崔修銀	2013.02.28
〃	權寧必	2012.04.01
〃	李承炫	2012.02.20
〃	具本承	2012.02.20
〃	全哲鎬	2012.02.20
〃	張阿糧	2012.02.20
〃	李珍順	2013.02.28
〃	李秀環	2012.02.20
〃	延濟赫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朴宣映	2013.02.28
〃	鄭德採	2013.02.28
〃	金首謙	2013.02.28
〃	嚴庠竣	2013.05.06
〃	梁貴浩	2013.05.06
〃	沈基乎	2013.05.06
사무국장	李在哲	2013.07.29
총무과장	吳東植	2012.07.02
사건과장	朴文圭	2012.04.23
집행과장	李文圭	2013.07.29
수사과장	琴廣植	2013.07.29
(안동지청)		
지청장	裵龍贊	2013.04.23
검사	李東原	2012.02.20
〃	張峻豪	2011.02.14
〃	秋昌賢	2013.02.28
〃	金秉徹	2013.02.28
〃	徐慧善	2012.02.20
〃	金智娟	2013.02.28
사무과장	姜鎭求	2012.07.02
수사과장	柳漢相	2013.07.29
(경주지청)		
지청장	金周原	2013.04.23
부장검사	朴載現	2013.04.23
검사	鄭明媛	2012.02.20
〃	千憲住	2012.02.20
〃	申賢萬	2012.02.20
〃	李垠宙	2012.02.20
〃	李知恩	2013.02.28
〃	成耆釩	2013.02.28
사무과장	河錫模	2013.07.29
수사과장	李相竣	2013.07.29
(포항지청)		
지청장	高範碩	2013.04.23
부장검사	權珖鉉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章赫	2012.02.20
〃	金相玟	2011.02.14
〃	吳昔炫	2012.02.20
〃	裵相玧	2013.02.28
〃	金容帝	2013.02.28
〃	李琪瑛	2011.02.14
〃	徐宰熙	2012.02.20
〃	金芝蓮	2012.02.20
〃	金炫秀	2013.02.28
〃	宋秀淵	2013.02.28
〃	柳柱賢	2013.05.06
〃	廉浩暎	2013.05.06
사 무 과 장	權相日	2012.07.02.
집 행 과 장	韓玄大	2013.07.29
수 사 과 장	李泰彦	2012.07.02
(김 천 지 청)		
지 청 장	金京錫	2013.04.23
부 장	黃鍾根	2012.07.26
검 사	李東根	2013.02.28
〃	羅永旭	2013.02.28
〃	柳時棟	2012.02.20
〃	李智恩	2012.02.20
〃	朴信映	2013.02.28
〃	李承炫	2013.02.28
〃	朴水晶	2013.02.28
〃	朴京花	2013.02.28
〃	李京雅	2013.05.06
〃	李鎔楨	2013.05.06
〃	劉相培	2013.02.28
수 사 과 장	白鍾一	2012.07.02
(상 주 지 청)		
지 청 장	金郁埈	2013.04.23
검 사	李昌熙	2012.02.20
〃	河逸秀	2012.02.20
〃	崔麗蓮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과 장	具英漢	2013.07.29
(의 성 지 청)		
지 청 장	金厚均	2013.04.23
검 사	吳大健	2012.02.20
〃	崔祐赫	2013.02.28
사 무 과 장	李昶雨	2012.07.02.
(영 덕 지 청)		
지 청 장	金志容	2013.04.23
검 사	趙容珝	2010.02.08
〃	房志炯	2013.02.28
사 무 과 장	金宰弘	2013.07.29
(부상고등검찰청)		
검 사 장	金敬洙	2013.12.24
차 장 검 사	朴正植	2013.12.24
검 사	白淳鉉	2013.04.23
〃	宋承燮	2013.04.23
〃	梁普承	2012.07.26
〃	孫淳爀	2012.07.26
〃	鄭義植	2013.04.23
〃	鄭盛允	2012.07.26
〃	崔尙燻	2013.04.23
〃	金容柱	2011.09.05
〃	孫峻鎬	2013.04.23
〃	朴文洙	2013.04.23
〃	李一權	2013.04.23
〃	鄭溶鎭	2013.04.23
〃	金忠瀚	2012.07.26
사 무 국 장	元容仁	2013.07.29
총 무 과 장	朴相郁	2013.07.29
사 건 과 장	李斗榮	2013.07.29
(부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白種琇	2013.12.24
제 2 차 장 검 사	李相虎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金翰秀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林龍奎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崔仁鎬	2013.04.23
형사제4부장검사	李成熙	2013.04.23
형사제5부장검사	李相億	2013.04.23
공판부장검사	南哉豪	2012.07.26
공안부장검사	金大鉉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金鍾必	2013.04.23
강력부장검사	金賢洙	2013.04.23
외사부장검사	羅贊基	2013.04.23
부장검사	金鍾旻	2013.04.23
(부부장)검사	柳長萬	2013.04.23
〃	朴哲雄	2011.09.05
〃	朴吉培	2013.02.28
〃	梁仁哲	2013.02.28
〃	申乘浩	2013.02.28
〃	李定桓	2013.02.28
〃	玉成大	2013.02.28
〃	金成勳	2013.02.28
〃	鄭映學	2013.02.28
검사	李炳錫	2012.02.20
〃	李政峯	2013.02.28
〃	朴光燮	2012.07.26
〃	韓允卿	2009.02.09
〃	鄭惟美	2012.02.20
〃	金明洙	2012.07.26
〃	權奇大	2013.08.26
〃	朴祥振	2013.02.28
〃	張城熏	2011.02.14
〃	全鉉珉	2012.07.26
〃	林昌國	2013.02.28
〃	金恩心	2012.02.20
〃	朴光炫	2012.02.20
〃	林鍾弼	2013.08.26
〃	任大赫	2012.02.20
〃	金泳喆	2013.02.28
〃	李相錄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龍聖鎭	2011.02.14
〃	李應鐵	2011.02.14
〃	李東均	2011.02.14
〃	金度燁	2012.07.26
〃	李俊範	2011.02.14
〃	柳竟弼	2011.02.14
〃	羅懿燁	2013.02.28
〃	丁炫升	2012.07.26
〃	文芝善	2013.02.28
〃	朴成珉	2012.02.20
〃	任世鎭	2012.02.20
〃	林仙和	2012.02.20
〃	陳昊植	2013.02.28
〃	蔡良姬	2012.02.20
〃	秋義晶	2012.02.20
〃	柳孝濟	2010.02.08
〃	盧先均	2010.02.08
〃	吳美鏡	2012.02.20
〃	李秉柱	2013.02.28
〃	申載弘	2013.02.28
〃	許 勳	2013.02.28
〃	徐孝沅	2013.02.28
〃	李相睦	2011.02.14
〃	尹琇楨	2013.02.28
〃	李泰淳	2013.02.28
〃	金鎭赫	2012.02.20
〃	李泰協	2012.02.20
〃	韓演奎	2012.02.20
〃	申基煉	2012.02.20
〃	鄭令西	2012.02.20
〃	李銖暢	2013.02.28
〃	黃珍娥	2013.02.28
〃	吳振姬	2013.02.28
〃	金成泰	2013.02.28
〃	吳珉載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世元	2013.02.28
〃	金賢祐	2013.02.28
〃	崔유리	2013.02.28
〃	崔亨圭	2012.04.01
〃	金珉呈	2012.02.20
〃	崔한나	2012.02.20
〃	李奇弘	2012.02.20
〃	韓康一	2012.02.20
〃	金智恩	2012.02.20
〃	金瞳振	2013.04.01
〃	崔賢珠	2012.02.20
〃	朴금빛	2012.02.20
〃	金熙松	2012.02.20
〃	李穗定	2012.02.20
〃	金惠主	2013.02.28
〃	南志旻	2013.02.28
〃	姜 現	2013.02.28
〃	韓彩映	2013.02.28
총 무 과 장	朴永喆	2013.07.29
사 건 과 장	鄭旬哲	2013.02.25
집 행 과 장	朴圭鍾	2013.07.29
기 록 관 리 과 장	具滋承	2013.07.29
조 사 과 장	尹錫峰	2012.07.02
수 사 과 장	金義坤	2013.07.29
수 사 지 원 과 장	姜八星	2013.07.29
범 죄 정 보 과 장	姜正春	2013.07.29
조직범죄수사과장	金台鎭	2013.07.29
마 약 수 사 과 장	林煥龍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徐正昊	2012.07.02
〃	鄭炳玉	2013.07.29
〃	崔東淳	2013.07.29
(부산동부지청)		
지 청 장	金基東	2013.04.23
차 장 검 사	李起錫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安相勳	2013.05.08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2부장검사	朴哲完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崔誠桓	2013.04.23
(부부장)검사	朴英濬	2013.02.28
검 사	朴철우	2013.02.28
〃	金炯奭	2013.02.28
〃	李德珍	2012.02.20
〃	金源學	2013.02.28
〃	鄭銀惠	2013.02.28
〃	金帝星	2011.02.14
〃	兪沃根	2012.02.20
〃	金益洙	2012.02.20
〃	孫恩英	2013.02.28
〃	李東炫	2012.02.20
〃	張大圭	2012.02.20
〃	金珉廷	2011.02.14
〃	李炅和	2013.02.28
〃	曺洙榮	2012.04.01
〃	曺美敬	2012.02.20
〃	金鎣疋	2012.02.20
〃	陳慶燮	2013.04.01
〃	金美榮	2013.02.28
〃	姜侖辰	2012.02.20
〃	金暎錫	2013.02.28
〃	金大根	2013.02.28
〃	李俊錫	2013.05.06
〃	鄭炅鉉	2013.02.28
사 무 국 장	徐武完	2013.07.29
총 무 과 장	申鉉聖	2013.07.29
사 건 과 장	黃仁宰	2013.04.23
집 행 과 장	辛鍾根	2013.07.29
수 사 과 장	崔錫斗	2013.07.29
(울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奉 旭	2013.12.24
차 장 검 사	李斗植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車孟麒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2부장검사	李基宣	2013.05.08
형사제3부장검사	崔永云	2013.04.23
공안부장검사	李榮載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崔昌鎬	2013.04.23
(부부장)검사	潘成寬	2013.04.23
검 사	金京秀	2013.02.28
〃	李承祐	2012.02.20
〃	孔太究	2013.02.28
〃	李世珍	2013.08.26
〃	陳賢一	2012.02.20
〃	愼之葩	2012.02.20
〃	姜世顯	2013.02.28
〃	朴起完	2012.02.20
〃	宋奎善	2012.02.20
〃	朴良浩	2013.02.28
〃	姜好俊	2013.02.28
〃	朴相洙	2013.02.28
〃	李貞和	2013.02.28
〃	裵哲晟	2013.02.28
〃	韓相潤	2012.02.20
〃	扈丞鎭	2012.02.20
〃	具玟技	2012.02.20
〃	許允僖	2013.02.28
〃	邊晋煥	2013.02.28
〃	朴起兌	2013.02.28
〃	洪熙英	2013.02.28
〃	趙雅羅	2013.02.28
〃	許容準	2012.04.01
〃	黃晟雅	2012.02.20
〃	金有那	2012.02.20
〃	朴榮相	2013.04.01
〃	李受眞	2013.02.28
〃	金味宣	2012.02.20
〃	李定娥	2012.02.20
〃	李志倫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崔鍾卿	2013.02.28
사무국장	崔源植	2013.07.29
총무과장	金泰庚	2013.07.29
사건과장	崔永植	2013.07.29
집행과장	金成洙	2012.07.02
공안과장	全德鎭	2013.07.29
수사과장	金周泰	2013.07.29
검사직무대리	朴元吉	2013.07.2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金英晙	2013.12.24
차장검사	金永眞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盧正煥	2013.08.09
형사제2부장검사	金淵坤	2013.04.23
공안부장검사	朴宰輝	2013.04.23
특별수사부장검사	洪起采	2013.04.23
공판송무부장검사	金度完	2012.07.26
(부부장)검사	權敬日	2013.04.23
〃	梁碩祚	2013.02.28
검 사	林恩貞	2013.02.28
〃	朴正熙	2011.02.14
〃	金允姬	2013.08.26
〃	李榮花	2010.02.08
〃	河在武	2012.02.20
〃	申俊浩	2011.02.14
〃	朴明姬	2012.02.20
〃	皇甫炫希	2009.02.09
〃	林吉燮	2012.02.20
〃	張在完	2012.02.20
〃	任杉彬	2013.02.28
〃	黃壽淵	2012.02.20
〃	李宗益	2013.02.28
〃	李相赫	2013.02.28
〃	徐載殖	2012.02.20
〃	鄭在信	2012.02.20
〃	朴順榮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任斗煥	2012.02.20
〃	林熙成	2012.02.20
〃	崔在洵	2012.02.20
〃	孫智惠	2012.02.20
〃	李政勳	2013.02.28
〃	高아라	2013.02.28
〃	金兌謙	2012.04.01
〃	金美志	2012.02.20
〃	宋燦雨	2013.04.01
〃	李羅英	2012.02.20
〃	金貞宣	2012.02.20
〃	申正秀	2013.02.28
〃	羅敏榮	2013.02.28
사 무 국 장	鄭炳鎬	2013.07.29
총 무 과 장	朴炯碩	2013.07.29
사 건 과 장	朴誠翊	2013.07.29
집 행 과 장	金榮一	2013.07.29
조 사 과 장	柳景喆	2013.07.29
수 사 과 장	尹泰守	2013.07.29
(마 산 지 청)		
지 청 장	池碩培	2013.04.23
부 장 검 사	金炫辰	2012.07.26
검 사	徐源翊	2013.02.28
〃	張眞英	2011.09.01
〃	龍泰昊	2013.02.28
〃	權五承	2013.02.28
〃	金亨燮	2013.02.28
〃	金眞姬	2013.02.28
〃	盧庚垠	2013.02.28
〃	李庚宣	2013.02.28
〃	薛秀晛	2013.02.28
〃	全伶卿	2013.05.06
사 무 과 장	裵鍾闕	2013.07.29
수 사 과 장	安鵬翼	2013.07.29

직 위	성명	발령일
(진 주 지 청)		
지 청 장	皇甫仲	2013.04.23
부 장 검 사	高閏碩	2013.04.23
검 사	秋慧胤	2012.02.20
〃	馬 勳	2011.02.14
〃	金瀛斌	2013.02.28
〃	尹國權	2013.02.28
〃	金禧英	2011.02.14
〃	朴恩惠	2012.02.20
〃	黃景媛	2013.02.28
〃	徐聖光	2013.02.28
〃	朴成煜	2013.02.28
〃	高侑辰	2013.02.28
〃	鄭敏熙	2013.05.06
〃	鄭素英	2013.05.06
〃	趙倫卿	2013.05.06
사 무 과 장	成貞柱	2012.07.02
집 행 과 장	田吉秀	2012.07.02
수 사 과 장	魯幸洙	2013.07.29
(통 영 지 청)		
지 청 장	吳仁瑞	2013.04.23
부 장 검 사	金春洙	2013.04.23
검 사	尹元一	2012.02.20
〃	崔龍洛	2013.02.28
〃	金柱錫	2013.02.28
〃	金炳昱	2012.02.20
〃	姜賢貞	2012.02.20
〃	吳昌洺	2012.02.20
〃	安在昱	2013.02.28
〃	權英周	2013.02.28
〃	黃寶永	2013.02.28
〃	蔡弼圭	2013.05.06
사 무 과 장	金鍾一	2013.07.29
수 사 과 장	金三述	2012.07.02

직 위	성명	발령일
(밀 양 지 청)		
지 청 장	芮世民	2013.04.23
검 사	金度亨	2012.02.20
〃	金成見	2013.02.28
〃	田惠賢	2013.02.28
사 무 과 장	李二得	2013.07.29
(거 창 지 청)		
지 청 장	尹重棋	2013.04.23
검 사	鄭愚錫	2013.02.28
〃	徐東範	2012.02.20
사 무 과 장	金昊成	2012.07.02
(광주고등검찰청)		
검 사 장	曺成旭	2013.12.24
차 장 검 사	安相墩	2013.12.24
검 사	鄭明鎬	2012.07.26
〃	丁滿鎭	2012.07.26
〃	鄭澤和	2013.04.23
〃	李鍾大	2012.07.26
〃	洪孝植	2013.04.23
〃	李濟官	2012.07.26
〃	高錫洪	2013.04.23
〃	李光珍	2012.07.26
〃	朴哲完	2013.04.23
〃	金基文	2012.07.26
〃	宋吉龍	2011.09.05
사 무 국 장	申鉉允	2012.07.02
총 무 과 장	張永寬	2013.07.29
사 건 과 장	金吉成	2013.07.29
(광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邊瓚雨	2013.12.24
차 장 검 사	吳廷敦	2013.04.23
형사제1부장검사	金國一	2013.04.23
형사제2부장검사	金賢哲	2013.04.23
형사제3부장검사	朴錫宰	2013.04.23
공 안 부 장 검 사	李橿洙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특별수사부장검사	辛應碩	2013.04.23
강 력 부 장 검 사	鄭喜元	2013.04.23
공 판 부 장 검 사	鄭圭永	2012.07.26
부 장 검 사	尹喜植	2013.04.23
(부부장검사)검사	金哲秀	2012.07.26
〃	朴官洙	2013.02.28
검 사	申昇熙	2011.02.14
〃	李憲柱	2012.07.26
〃	梁東勳	2012.02.20
〃	李鍾赫	2012.02.20
〃	裵奭已	2013.02.28
〃	尹成賢	2013.02.28
〃	金英逸	2012.02.20
〃	姜成龍	2013.02.28
〃	金石潭	2012.02.20
〃	金玟炯	2011.12.05
〃	柳千烈	2013.08.26
〃	李映準	2013.02.28
〃	朴秦玄	2012.02.20
〃	崔榮娥	2012.02.20
〃	李東源	2011.02.14
〃	金原鋕	2013.02.28
〃	金泳吾	2013.02.28
〃	曺喜英	2012.07.26
〃	權那元	2012.02.20
〃	孫尙煜	2012.02.20
〃	姜善珠	2013.02.28
〃	曺英姬	2012.02.20
〃	許志勳	2012.02.20
〃	鄭 玹	2012.02.20
〃	鄭熙선	2011.02.14
〃	曺永成	2013.02.28
〃	丁英珠	2013.02.28
〃	金炫佑	2013.02.28
〃	金正玉	2011.02.14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美恩	2013.02.28
〃	鄭一權	2012.02.20
〃	申熙英	2012.02.20
〃	韓智嫺	2013.02.28
〃	李志英	2013.02.28
〃	林豊成	2013.02.28
〃	金珍嬉	2013.02.28
〃	徐民錫	2013.02.28
〃	李周龍	2013.02.28
〃	李潤九	2012.04.01
〃	鄭佳媛	2012.02.20
〃	黃那英	2012.02.20
〃	崔勝煥	2013.04.01
〃	金春成	2012.02.20
〃	文宣珠	2012.02.20
〃	金恩慧	2012.02.20
〃	曺圭雄	2013.02.28
〃	孫妊我	2013.02.28
〃	李性樺	2013.02.28
사 무 국 장	全洪燮	2013.07.29
총 무 과 장	魏亨良	2013.07.29
사 건 과 장	全孝洙	2013.05.12
집 행 과 장	李得秀	2013.07.29
조 사 과 장	尹宗植	2013.07.29
수 사 과 장	尹權鎬	2012.01.02.
공 판 과 장	丁平和	2013.07.29
검사직무대리	李洪龍	2013.07.29
(목 포 지 청)		
지 청 장	李秀澈	2013.04.23
부 장	朴鍾一	2013.04.23
검 사	金度延	2010.02.08
〃	朴洪基	2012.02.20
〃	朴香徹	2012.02.20
〃	朴珉喆	2013.02.28
〃	沈學湜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政珉	2012.02.20
〃	林嬰琅	2012.02.20
〃	李栗熙	2013.02.28
〃	朴炯秀	2013.02.28
〃	禹玉英	2013.02.28
〃	文定信	2013.02.28
〃	崔甲鎭	2013.05.06
사무과장	鄭會德	2013.07.29
수사과장	高李柱	2013.07.29
(장 흥 지 청)		
지 청 장	金 萑	2013.04.23
검 사	權載皓	2013.02.28
〃	李大成	2013.02.28
사 무 과 장	魯相來	2013.07.29
(순 천 지 청)		
지 청 장	金 昶	2013.04.23
차 장 검 사	金龍昇	2013.04.23
부 장 검 사	金容正	2013.04.23
〃	宋然奎	2013.04.23
〃	孫榮培	2013.08.26
(부 부 장) 검 사	閔庚天	2013.04.23
검 사	金鳳鉉	2013.02.28
〃	許仁碩	2013.02.28
〃	李承勳	2012.02.20
〃	愼金宰	2012.02.20
〃	安昶柱	2013.02.28
〃	李壽天	2013.02.28
〃	金銀慶	2011.02.14
〃	趙允鐵	2013.02.28
〃	丁維宣	2012.02.20
〃	金炯傑	2012.02.20
〃	全世貞	2013.02.28
〃	金秀珉	2011.02.14
〃	具珍美	2012.02.20
〃	文承泰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美冏	2013.02.28
〃	鞠陽根	2012.02.20
〃	崔辰嫺	2012.04.01
〃	尹信明	2013.02.28
〃	宋旼株	2013.02.28
〃	玄昇錄	2013.05.06
〃	崔智恩	2013.05.06
〃	崔珉俊	2013.05.06
사 무 국 장	辛俊昊	2013.07.29
총 무 과 장	李忠基	2013.07.29
사 건 과 장	申承休	2013.07.29
집 행 과 장	李文學	2013.07.29
수 사 과 장	朴 巖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金永澣	2012.04.23.
〃	金中根	2011.08.24.
(해 남 지 청)		
지 청 장	林 炫	2013.04.23
검 사	金金泖	2013.02.28
〃	李京錫	2012.02.20
〃	金垠亨	2012.02.20
사 무 과 장	林丙澤	2013.07.29
전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昌宰	2013.12.24
차 장 검 사	崔允壽	2013.04.23
부 장 검 사	尹榮晙	2013.04.23
〃	張基錫	2013.04.23
〃	李龍一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姜鍾憲	2013.04.23
검 사	徐奉何	2013.02.28
〃	劉賢貞	2012.02.20
〃	金廷勳	2013.02.28
〃	金桐熙	2012.02.20
〃	吳起燦	2012.02.20
〃	崔在俊	2012.02.20
〃	林藝珍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志榮	2013.02.28
〃	柳南敬	2012.02.20
〃	韓尙勳	2013.02.28
〃	高은별	2011.02.14
〃	鄭輝燕	2012.02.20
〃	崔受京	2013.02.28
〃	朴鍾葉	2013.02.28
〃	柳官模	2012.04.01
〃	崔秀智	2012.02.20
〃	李芙蓉	2012.02.20
〃	金大哲	2013.02.28
〃	金甫徑	2013.02.28
사 무 국 장	全水民	2013.07.29
총 무 과 장	趙然基	2013.07.29
집 행 과 장	朴貴元	2013.07.29
수 사 과 장	趙炳模	2013.07.29
검 사 직 무 대 리	李基鍊	2010.07.26
(군 산 지 청)		
지 청 장	李 龍	2013.04.23
부 장 검 사	金鍾範	2013.04.23
〃	朱鎭撤	2012.07.26
검 사	白秀禎	2011.02.14
〃	崔泰元	2010.02.08
〃	車尙祐	2012.02.20
〃	金潤龍	2012.02.20
〃	朴寅佑	2013.02.28
〃	張鎭成	2013.02.28
〃	徐民珠	2011.02.14
〃	許善珠	2012.02.20
〃	金東奎	2013.02.28
〃	裵志勳	2013.02.28
〃	高銀實	2013.02.28
〃	金知慧	2013.02.28
〃	宋旻霞	2013.02.28
〃	金柚奈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洪銅基	2013.05.06
집 행 과 장	梁憲奎	2013.07.29
수 사 과 장	金榮圭	2013.07.29
(정 읍 지 청)		
지 청 장	崔容碩	2013.04.23
검 사	崔鍾赫	2012.02.20
〃	陳乙宗	2012.02.20
〃	朴賢圭	2012.02.20
〃	梁栽榮	2013.02.28
사 무 과 장	李宗垠	2013.07.29
(남 원 지 청)		
지 청 장	金德吉	2013.04.23
검 사	鄭夢九	2012.02.20
〃	文芝妍	2013.02.28
사 무 과 장	崔翰龍	2013.07.29
(제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秀昶	2013.12.24
차 장 검 사	金熙準	2013.04.23
부 장 검 사	邊昶範	2013.04.23
〃	朴晛謨	2013.04.23
(부 부 장) 검 사	金榮俊	2013.02.28
검 사	李準植	2013.02.28
〃	朴弘奎	2013.02.28
〃	李太日	2012.02.20
〃	朴師儀	2012.02.20
〃	李政雨	2013.02.28
〃	申太勳	2009.02.09
〃	金一權	2013.02.28
〃	姜貞英	2012.02.20
〃	朴相凡	2013.02.28
〃	南哲佑	2013.02.28
〃	車昌模	2013.02.28
〃	禹萬祐	2013.02.28
〃	鄭先熙	2012.02.20
〃	金相天	2013.02.28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沈在鋹	2013.02.28
사 무 국 장	梁承玨	2013.07.29
총 무 과 장	盧奉根	2013.07.29
사 건 과 장	康在成	2013.07.29
집 행 과 장	奇性鎬	2013.07.29
수 사 과 장	洪鉉基	2013.07.29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李健周	2013.12.24
교 수	徐洪紀	2012.07.26
〃	金炳求	2013.04.23
〃	徐鍾赫	2013.04.23
〃	金載浩	2013.04.23
〃	金正浩	2013.02.28
〃	金成文	2013.02.28
〃	鄭淵憲	2013.02.28
〃	申交任	2013.02.28
〃	李炯官	2013.02.28
〃	崔盛國	2012.07.26
〃	河在郁	2013.02.28
〃	梁建洙	2012.07.26
〃	金皓三	2013.02.28
〃	吳世榮	2013.02.28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金滿坤	2013. 1. 1.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李亨燮	2013. 8. 12.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李鎬根	2013. 7. 29.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閔根基	2013. 8. 12.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鄭萬永	2013. 7. 29.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李炯再	2012. 7. 9.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千種凡	2013. 8. 12.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李又權	2013. 1. 28.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金京福	2013. 7. 29.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申龍澈	2012. 1. 30.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金榮洪 金容成 孫世憲	2012. 1. 30. 2013. 1. 28. 2013. 1. 28.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李河聲	2013. 8. 12.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梁奉煥	2013. 8. 12.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姜鎬成 梁顯圭 趙成珉	2013. 8. 12. 2013. 8. 12. 2013. 10 28.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李泰源	2012. 7. 9.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尹光遠	2012. 1. 30.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成雨濟	2013. 8. 12.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崔宇喆	2013. 1. 1.
행정지원과장	權乙植	2013. 1. 28.			
관찰과장	金良坤	2013. 1. 28.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金仁相	2012. 1. 30.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尹太英	2011. 7. 25.
관찰과장	朴在鳳	2013. 8. 12.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金正植	2013. 8. 29.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韓相益	2013. 1. 28.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韓良錫	2013. 1. 28.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裵鍾相	2013. 1. 28.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朴守煥	2012. 1. 30.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李法虎	2013. 8. 12.
관찰과장	盧根成	2013. 8. 24.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張載榮	2013. 1. 28.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李星七	2013. 1. 28.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崔成鶴	2013. 1. 28.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洪丁源	2013. 1. 28.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李泳冕	2013. 8. 12.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金璋燮	2013. 1. 28.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金幸錫	2013. 1. 28.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		
원장	韓榮宣	2013. 5. 6.	원장	吳漢杓	2013. 1. 28.
행정지원과장	吳然鎬	2013. 8. 12.	안양소년원		
교무과장	徐貞柱	2013. 8. 12.	원장	宋花淑	2012. 7. 9.
의무과장	趙泰旭	2012. 5. 16.	의무과장	全振杓	2009. 9. 14.
부산소년원			춘천소년원		
원장	黃啓淵	2013. 8. 12.	원장	鄭澤鉉	2013. 8. 12.
교무과장	李淸業	2013. 1. 28.	의무과장	李熙元	2001. 11. 14.
분류보호과장	朴晙哉	2012. 7. 9.			
의무과장	李炳勳	2008. 9. 1.			
대구소년원			제주소년원		
원장	安炳景	2013. 1. 28.	원장	高二峰	2013. 8. 12.
교무과장	吳昌圭	2013. 8. 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보호과장	廉丁勳	2013. 6. 7.	원장	金喆浩	2013. 7. 19.
의무과장	黃善進	2013. 1. 7.	교무과장	吳英熙	2013. 1. 28.
			분류심사과장	金澤守	2013. 1. 28.
광주소년원			의무과장	朴廷桓	2011. 4. 8.
원장	金賢均	2013. 8. 12.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무과장	李銀漢	2013. 1. 28.	센터장	尹一重	2011. 7. 25.
의무과장	鄭吉永	2001. 2. 28.			
전주소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원장	張寅基	2013. 1. 28.	센터장	金成坤	2013. 8. 12.
교무과장	崔鍾哲	2012. 1. 30.			
의무과장	蘇淳哲	2010. 8. 12.			
대전소년원			치료감호소		
원장	高奉龍	2011. 7. 25.	소장	李在禹	2010. 11. 1.
교무과장	宋中一	2013. 1. 28.	의료부장	柳米京	2012. 7. 9.
의무과장	張栽豪	2012. 11. 1.	행정지원과장	高永鐘	2011. 7. 25.
			감호과장	金一煥	2013. 8. 12.

5.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 장	羅鎭榮	2012. 7. 23.
총 무 과 장	金度亨	2013. 7. 1.
보 안 과 장	禹熙慶	2013. 7. 1.
직업훈련과장	周点淑	2013. 7. 1.
의료분류과장	尹鍾佑	2013. 7. 1.
사회복귀과장	崔秉錄	2013. 7. 1.
대구지방교정청		
청 장	林在杓	2012. 7. 23.
총 무 과 장	韓相晧	2013. 7. 1.
보 안 과 장	鄭昌憲	2013. 7. 1.
직업훈련과장	朴熹秀	2013. 7. 1.
의료분류과장	金載益	2013. 7. 1.
사회복귀과장	尹鍾周	2013. 7. 1.
대전지방교정청		
청 장	尹慶植	2013. 6. 3.
총 무 과 장	朴廣來	2013. 7. 1.
보 안 과 장	金南奎	2013. 1. 1.
직업훈련과장	魯埴準	2013. 2. 4.
의료분류과장	柳在仁	2013. 2. 4.
사회복귀과장	梁七星	2013. 7. 1.
광주지방교정청		
청 장	金善泰	2013. 6. 3.
총 무 과 장	姜達聲	2013. 6. 3.
보 안 과 장	朴炳馹	2013. 6. 3.
직업훈련과장	李鉉哲	2013. 7. 1.
의료분류과장	朴修姸	2013. 6. 3.
사회복귀과장	盧顯泰	2013. 7. 1.
서 울 구 치 소		
소 장	崔 德	2013. 6. 3.
부 소 장		
총 무 과 장	鄭 薰	2013. 6. 3.
보 안 과 장	朴民葫	2012. 7. 23.
의 료 과 장	趙秀鉉	2005. 1. 17.
사회복귀과장	黃佑澤	2013.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 전 교 도 소		
소 장	權奇薰	2013. 6. 3.
총 무 과 장	韓相暾	2013. 7. 1.
사회복귀과장	賓相雄	2013. 2. 4.
의 료 과 장	李俊浩	2009. 2. 17.
사회복귀과장	黃聖煥	2012. 7. 23.
분류심사과장	李鉉哲	2012. 1. 1.
대 구 교 도 소		
소 장	朱京燮	2013. 6. 3.
부 소 장	韓應範	2013. 7. 1.
총 무 과 장	林峰基	2013. 2. 4.
의 료 과 장		
사회복귀과장	黃聖煥	2013. 2. 4.
분류심사과장	朴光採	2013. 1. 1.
광 주 교 도 소		
소 장	崔康柱	2012. 7. 23.
부 소 장	兪泰吾	2013. 7. 1.
의 료 과 장	朴日雄	2006. 8. 16.
사회복귀과장	成秉勳	2013. 7. 1.
안 양 교 도 소		
소 장	景義星	2013. 6. 3.
부 소 장	田承沃	2013. 2. 4.
총 무 과 장	金文泰	2013. 2. 4.
의 료 과 장	崔光燮	2005. 11. 7.
사회복귀과장	徐顯榮	2013. 7. 1.
부 산 구 치 소		
소 장		
부 소 장	金珍求	2013. 7. 1.
의 료 과 장	李熙植	2013.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부산교도소		
소장	柳承晩	2013. 6. 3.	소장	吳弘均	2013. 7. 1.
부소장	金榮俊	2013. 6. 3.	의료과장	尹鍾哲	2007. 1. 2.
의료과장	南石浩	2005. 4. 22.	의정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	金榮植	2013. 2. 4.	소장	金明哲	2013. 7. 1.
성동구치소			의료과장	朱宰虎	2001. 5. 21.
소장	金學成	2013. 6. 3.	창원교도소		
부소장	曺基龍	2013. 7. 1.	소장	張寶翼	2013. 7. 1.
의료과장	金 勳	2005. 11. 7.	의료과장	李承基	2006. 8. 16.
사회복귀과장	任乙化	2012. 7. 23.	순천교도소		
인천구치소			소장	具池書	2013. 1. 1.
소장	韓本愚	2013. 6. 3.	의료과장	朴炅喆	1996. 9. 1.
부소장	林男順	2013. 7. 1.	서울남부교도소		
의료과장	閔亨植	2001. 7. 7.	소장	李敬植	2013. 6. 3.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장	李熙鳳	1998. 12. 14.
소장	朴鍾寬	2013. 6. 3.	포항교도소		
부소장	李石九	2013. 2. 4.	소장	金鍾國	2013. 7. 1.
의료과장	李學龍	2000. 7. 1.	의료과장	徐輔均	2006. 8. 16.
천안개방교도소			진주교도소		
소장	鄭秉憲	2013. 6. 3.	소장	鄭雲善	2013. 7. 1.
의료과장	張在球	2005. 11. 7.	의료과장	李進喆	2007. 12.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목포교도소		
소장	金準謙	2013. 7. 1.	소장	裵甲東	2013. 2. 4.
의료과장	李鍾基	2009. 5. 25.	의료과장	姜 喆	1990.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구치소		
소장	金相斗	2012. 1. 1.	소장	金吉成	2013. 7. 1.
의료과장	韓柱燮	2002. 1. 21.	의료과장	李在洸	2005. 11. 7.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소장	崔孝淑	2013. 7. 1.	소장	金貞善	2013. 7. 1.
의료과장	金學成	2006. 8. 16.	의료과장	張成龍	2006. 4. 17.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		
소장	朴光植	2013. 6. 3.	소장	宋仁燮	2013. 7. 1.
의료과장	金得鍾	2010. 3. 16.	의료과장	李炳賢	2013.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안교도소		
소장	朴性來	2013. 6. 3.
의료과장	宋仁基	2000. 8.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장	姜渭福	2013. 12. 31.
춘천교도소		
소장	朴皓緖	2013. 7. 1.
의료과장	裵俊基	2010. 8. 12.
원주교도소		
소장(직무대리)	金鍾煜	2013. 10. 22.
의료과장	金鎭弘	2008. 6. 9.
안동교도소		
소장	金明坤	2013. 7. 1.
의료과장	文鍾世	2002. 8. 1.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장	柳東白	2013. 2. 4.
의료과장	桂英詵	2002. 7. 16.
청주여자교도소		
소장	辛京又	2013. 6. 3.
의료과장	李暾圭	2009. 9. 17.
김천소년교도소		
소장	李英姬	2013. 7. 1.
의료과장	崔仁煥	2008. 1. 24.
공주교도소		
소장	洪鍾祐	2013. 6. 3.
의료과장	宋惠貞	2011. 7. 11.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장	鄭載洪	2013. 7. 1.
울산구치소		
소장	文炳日	2013. 2. 4.
의료과장	金鍾元	2009. 7. 20.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주교도소		
소장	李炅雨	2013. 6. 3.
의료과장	朴宰弘	1999. 3. 8.
홍성교도소		
소장	李泰植	2013. 2. 4.
의료과장	尹星老	1994. 11. 12.
경주교도소		
소장	成孟煥	2013. 7. 1.
의료과장	趙倫徹	2012. 1. 9.
통영구치소		
소장	金在俊	2013. 7. 1.
의료과장	李榮桓	2013. 7. 1.
밀양구치소		
소장	權玟碩	2013. 2. 4.
의료과장	許一悟	2011. 4. 15.
강릉교도소		
소장	韓慶花	2013. 6. 3.
의료과장	金日煥	2006. 8. 16.
영월교도소		
소장	吳世鴻	2013. 7. 1.
의료과장	扈喜男	2010. 3. 22.
장흥교도소		
소장	李英姬	2012. 7. 23.
의료과장	金喆周	2010. 11. 8.
해남교도소		
소장	金千洙	2013. 2. 4.
의료과장	鄭榮日	2011. 2. 28.
충주구치소		
소장	柳琪鉉	2013. 2. 4.
의료과장	崔永喆	2004. 4. 16.

6.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崔文植	2012. 1. 20.
지원국장	昔太根	2013. 7. 29.
심사국장	金眞瑩	2013. 7. 29.
총무과장	공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鍾昊	2013. 7. 1.
총무과장	安錫奎	2013. 7. 29.
관리과장	金秉祚	2013. 7. 29.
이민특수조사대장	李鎭煥	2013. 7. 29.
출입국정보화센터장	金鍾仁	2012. 5. 7.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李福男	2012. 2. 29.
관리과장	韓相川	2013. 7. 29.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朴璨浩	2013. 7. 2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朴圭凡	2013. 7. 29.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辛泳孝	2013. 7. 1.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光孝	2013. 7. 2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張志標	2012. 9.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判俊	2013. 2. 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朴相勳	2013. 7. 2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垣淑	2012. 6. 4.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楊次順	2013. 7. 29.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兪在虎	2013. 7. 29.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玟洙	2013. 7. 2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張永采	2012. 6. 4.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秀東	2013. 7. 2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田達秀	2013. 7. 29.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李東權	2013. 7. 29.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柾都	2013. 7.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金摻俊	2013. 7. 29.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陸承君	2013. 7. 2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李相朗	2013. 11. 1.

Ⅵ. 인 사

○ **총 괄**

(2013. 1. ~ 12.)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2,248	2,649	8,086	1,079	434
검 사		1,353	123	1,035	116	79
일반직	소 계	10,895	2,526	7,051	963	355
	본 부 (연 수 원)	286 (53)	45 (3)	220 (47)	7 (-)	14 (3)
	검 찰 청	5,681	660	4,644	245	132
	보 호 관 찰 소	699	145	429	97	28
	소 년 원 (치료감호소)	477 (85)	137 (48)	231 (9)	64 (14)	45 (14)
	지 방 교 정 청 (구치소, 교도소)	2,978	1,366	1,066	439	107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774	173	461	111	29

Ⅶ.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13. 1. ~ 12.)

직급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309	54	22	233
검 찰 총 장	-	-	-	-
검 사	309	54	22	233

○ **일반직**

(2013. 1. ~ 12.)

기관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1,347	12	16	1,289
본 부	222	-	1	221
검 찰 청	233	7	9	217
교 도 소	113	1	5	107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33	2	1	30
출입국관리사무소	710	2	-	708
법무연수원	6	-	-	6

Ⅷ.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13. 1. 1~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3. 19.	홍콩	입경사무처장	에릭 찬 (Eric Chan)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3. 28.	터키	법무부 차관보	무스타파 에롤 (Mustafa Erol)	법무행정 정보화 구축현황 시찰	기획 조정실
4. 3.	영국	런던 금융특구시장	로저 기포드	법률시장개방 등 논의	법무실
5. 9.	태국	법무부 차관보	타와짜이 타이꼬 (Tawachai Thaikyo)	법무행정 정보화 구축현황 시찰	기획 조정실
5. 10.	미국	법무부 검사	Kosta S. stojilkovic	한-미 형사사법공조 관련 현안 협의	검찰국
5. 24.	일본	주한 일본대사	벳쇼 코로	한-일본 법무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6. 12.	몽골	주한 몽골대사	간볼드 바상자브	한-몽골 법무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6. 25.	중미 8개국	중미 교정행정 최고책임자	께사다(Lilliana Quesada) 코스타리카 법무부 교정담당 차관 등 8명	한·중미 교정분야 협력방안 논의	교정 본부
7. 9.	미국	미군 법무감	Marian Amrein	SOFA관련 협의	검찰국
7. 11.	필리핀	법무부 차관보	Ricardo V. Paras Ⅲ	필리핀 인질강도사범 국내송환 관련 협의	검찰국
	태국	대검찰청 국제국장	Wanchai Roujanavong		
8. 23.	헤이그	국제형사재판 소(ICC) 소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최근 동향 및 주요현안 등 논의	검찰국
9. 2.	중국	출입경관리국 정치위원	장 위 항 (Zhang Wei Hang)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9. 4.	베트남	법무부 장관	하 흥 끄엉	한-베트남 법무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9. 9.	러시아	이민청장	콘스탄틴 (Romodanovskiy Konstantin)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9. 24.	홍콩	前법무장관 및 변협회장	엘시 렁 앰브로즈 람	우리 로스쿨생 홍콩 인턴쉽 지원 등 논의	법무실
10. 29.	몽골	교정청장	야담돌즈(Yadamdorz Dalaikhan) 등 3명	양국간 우호 증진 및 교류·협력방안 논의	교정 본부
11. 7	일본	법무성 국제과장	세토 외 7명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 실무회의	검찰국
11. 20.	중국	감옥공작협회 부회장	장금상(張金桑) 등 6명	한·중 학술교류 및 교정시설 참관	교정 본부
11. 22	몽골	외국인관리청장	푸레브도르즈 (Bukhchuluun Purevdorj)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11. 26.	바레인	인권장관	압둘라흐만 장관 외 5명	한국의 인권보장체계와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의 이행	인권국
12. 11.	대만	이민서 부서장	장치 등 6명	한-대만간 범죄인 강제추방 관련 협력 강화 논의	검찰국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13. 1. 1~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13. ~1. 22.	오스트리아 (비엔나)	UNCITRAL 소액금융 세미나 참석	오수근 교수	법무실
1. 16 ~1. 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한-말레이시아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식"등 참석	법무부장관 등 5	검찰국
1. 19. ~1. 24.	캐나다 (벤쿠버)	한-캐나다 FTA회기간 회의참석	황우진 검사 외 1	법무실
1. 28 ~2.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28차 APEC 대테러대책반(CTTF) 회의 참가	한제희 검사 외 1	검찰국
1. 29 ~2. 2	미국 워싱턴(D.C)	인신매매방지 한-미 실무 협의회 참가	오만옥 사무관	검찰국
1. 30 ~2.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3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경제위원회(EC) 회의 참석	안병수	법무실
2. 3. ~2. 9.	미국 (뉴욕)	제58차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김종우 검사 외 1	법무실
2. 10. ~2. 15	미국 (워싱턴)	해외뇌물제공 관련 검사 및 법집행기관 담당자 회의 참가	이영상 검사	검찰국
2. 17. ~2. 24	프랑스 (파리)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및 워킹그룹 회의 참가	조주연 검사	검찰국
2. 23. ~3. 2	오스트리아 (빈)	제2차 사이버범죄 포괄적 연구 정부전문가 회의 참가	이덕진 검사	검찰국
2. 24. ~2. 28	일본 (동경)	제18차 아태지역 약물대책 회의 (ADEC) 참가	조재연 과장	검찰국
2. 24. ~2. 28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참가	김창진 검사	검찰국
3. 3. ~3. 7.	인도 (뉴델리)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안병수	법무실
3. 3. ~3. 8.	미국 (뉴욕)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정부대표단 참가	홍승아 외 1	인권국
3. 4. ~3. 9	방글라데시 (다카)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실무자 워크숍 장소 선정을 위한 국외 출장	장우동 외 2	검찰국
3. 5. ~3. 10	스위스 (로잔)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적 대응 국제회의 참가	박준영 검사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3. 7. ~3. 13.	독일 (본,베를린)	녹색기후기금회의참석	조아라 검사	법무실
3. 9. ~3.16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56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참가	심재철 검사 외 1	검찰국
3. 11. ~3. 16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김창진 검사	검찰국
3. 12. ~3. 16.	스위스 (제네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오유진 사무관	인권국
3. 20. ~3. 21	태국 (방콕)	수감중인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협의	김창진 검사	검찰국
3. 22. ~3. 26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한-대만, 한-필리핀 중요 현안 관련 실무협의 참가	조상준 과장 외 1	검찰국
3. 26. ~3. 28	캄보디아 (프놈펜)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실무자 워크숍 참가	조재연 과장 외 8	검찰국
4. 6.~ 4. 14	미국 (보스턴)	아시아지역 조직범죄 및 테러관련 국제회의 참가	김기훈 검사	검찰국
4. 6. ~4. 15.	미국 (뉴욕)	제23차 UNCITRAL 담보 실무작업반 회의	권영준 교수	법무실
4. 13. ~4. 21.	미국 (뉴욕)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분야 실무작업반 제43차 회의 참석	강상묵	법무실
4. 14. ~4. 18.	프랑스 (파리)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안병수	법무실
4. 14. ~4. 21.	미국 (뉴욕)	제43차 UNCITRAL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한 민 교수	법무실
4. 15. ~4. 21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사이버범죄 대응 회의 참석 및 검사파견 협의를 위한 출장	박상진 검사 외 1	검찰국
4. 20. ~4. 27	뉴질랜드 호주	OECD 뇌물방지협약 뉴질랜드 현지실사 및 한-호주 국제공조 실무협의 참가	김창진 검사	검찰국
4. 20. ~4. 28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22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CCPCJ) 참가	김수남 검사장 외 2	검찰국
4. 25. ~4. 28.	중국 (하얼빈)	한-중 FTA 제5차 협상 참석	김나래 사무관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4. 25. ~4. 28	프랑스 (파리)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	황철규 차장검사	검찰국
4. 28. ~5. 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사전회의	오수근 교수	법무실
4. 30. ~5. 4.	오스트리아 (비엔나)	UNCITRAL 공공-민간 부분 파트너쉽에 관한 회의	김종우 검사 외 1	법무실
5. 4. ~5. 12.	캐나다 (몬트리올)	제35차 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참석	강상묵	법무실
5. 5. ~5. 10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협상 참가	조주연 검사	검찰국
5. 10. ~5. 20.	미국 (뉴욕)	제47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정경영 교수	법무실
5. 11. ~5. 18.	오스트리아 (비엔나) 러시아(상트)	국제법률 포럼 및 비엔나 국제중재센터 방문	국민수 차관 외 2	법무실
5. 15. ~5. 19	영국 (아일랜드)	제9차 유럽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연례총회 참가	박상진 검사	검찰국
5. 18. ~5. 26.	미국 (뉴욕)	제27차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실무작업반 회의	오수근 교수	법무실
5. 20. ~5. 26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특별 회의 참가	정희선 검사	검찰국
5. 22. ~5. 27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 마약퇴치 지원사업 착수기념식 참가	이철희 과장 외 2	검찰국
5. 27. ~5. 31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 담당자 정례회의 참가	조주연 검사	검찰국
5. 29. ~6. 1	태국 (방콕)	미 법무부 주최 아시아 지적재산권 범죄수사 네트워크 회의 참가	박상진 검사 외 3	검찰국
6. 3. ~6. 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안병수	법무실
6. 3. ~6. 8	러시아 (모스크바)	제30차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총회 참가	진호진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6. 5. ~6. 9	캐나다 (오타와)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참가	이지형 검사	검찰국
6. 9. ~6. 16.	스위스 (제네바)	제23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박중연 외 1	인권국
6. 10. ~6. 17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 마약차단 프로젝트 워킹그룹 회의 참가	김용권 사무관 외 1	검찰국
6. 10. ~6. 29	베트남 (하노이)	제31회 아시아지역법집행 경영프로그램 참석	정하진	검찰국
6. 11. ~6. 14.	벨기에 (브뤼셀)	제2차 한-EU FTA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회의 참석	김나래 사무관	법무실
6. 18. ~6. 21	베트남 (하노이)	제8차 ASEAN SOMTC+ROK 및 제11차 SOMTC+3 회의 참가	심재철 검사	검찰국
6. 18. ~6. 22.	미국 (뉴욕)	국제아동탈취 및 법률구조기구 및 미국중재협회 방문 등	황우진 검사 외 1	법무실
6. 19. ~6. 22.	스웨덴 (스톡홀름)	투자협정 중재실무 파악을 위한 중재기구 방문	나욱진 검사 외 1	법무실
6. 22. ~6. 25	중국 (지난)	제5차 국제반부패기구협회(IAACA) 세미나 참가	박상진 검사	검찰국
6. 27. ~7. 2.	인도네시아 (메단)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경제위원회(EC) 회의 참석	안병수	법무실
6. 30. ~7. 2	중국 (베이징)	한-중 국제형사협력 업무협의 참석	이선욱 과장 외 1	검찰국
7. 1. ~7. 5	홍콩 마카오	범죄인인도 조약 사법공조조약 협상 및 홍콩 양자협의 회의 참가	조주연 검사	검찰국
7. 6. ~7. 13.	오스트리아 (비엔나)	UNCITRAL 투자자 - 국가간 중재시 투명성 규칙채택회의 참석	이재민 교수	법무실
7. 9. ~7. 13	태국 (방콕)	반부패협약 중 법조영역 관련 아시아지역 법조윤리 전문가 회의 참가	이준호 검사장 외 1	검찰국
7. 11. ~7. 19.	미국 (워싱턴) 일본 (도쿄, 나고야)	개도국법제정비 지원관련, 선진국의 해외 법제정비 지원 사례연구	조아라 검사 외 2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7. 13 ~7. 20.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 회의 참석	강상묵	법무실
7. 14. ~7. 17	미국 (워싱턴)	제2차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 참가	홍용준 검사	검찰국
7. 14. ~7. 20	중국 (상하이)	제16차 APG 총회 참가	최수련 외 1	검찰국
7. 18. ~7. 23.	인도네시아 (발리)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제4차 협상 참석	황우진 검사 외 2	법무실
7. 20. ~7. 27.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파리)	UNCITRAL 본회의 참가및 국제중재센타홍보	강찬우 실장 외 2	법무실
7. 24. ~7. 27.	미얀마 (네피도)	제2차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협상 참석	변희경 사무관	법무실
7. 28. ~8. 3	태국 (방콕)	FEALAC 협력사업 워크숍 (마약법 집행 협력 관련) 참가	안민석	검찰국
7. 29. ~8. 31	필리핀 (만다나오)	APICC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	김용권 사무관 외 1	검찰국
7. 31. ~8. 2	중국 (베이징)	중국 공안부와 실무협의체 구성 준비 회의 참석	박은재 단장 외 1	검찰국
8. 5. ~8. 9.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법센터 개소식 및 한국법 특강	조아라 검사 외2	법무실
8. 11. ~8. 12	싱가폴	공조요청 사안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조상준 검사 외 1	검찰국
8. 26 ~8. 29	싱가포르	국제 경제 범죄 관련 아세안 워크숍 참가	이기영 검사	검찰국
8. 26. ~9. 6	필리핀, 민다나오	필리핀 마약퇴치 지원사업 및 방글라데시 마약퇴치 지원사업 종료식 참가	이철희 과장 외 3	검찰국
8. 27. ~9. 1	오스트리아 (비엔나)	UNODC 자금세탁 방지 자산회복 전문가 회의 참가	조주연 검사	검찰국
9. 1. ~9. 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니 CEPA 서비스 분과 회기간 회의 참석	김나래 사무관	법무실
9. 2. ~9. 6	부탄 (파로)	부탄FIU 법제도 및 기술지원 관련 참가	최성진 검사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9. 6. ~9. 1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 및 연례총회 참가	황철규 차장검사 외 1	검찰국
9. 7. ~9. 11	러시아 (라오스)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참가	박은재 단장 외 1	검찰국
9. 8. ~9. 12.	미국 (워싱턴)	A&P와 전략회의 참석	전승수 과장 외 2	법무실
9. 14. ~9. 22.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59차 중재실무작업반회의	변희경 사무관 외 1	법무실
9. 15. ~9. 19	라오스 (비엔티안)	제6차 ASEAN+3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AMMTC) 참가	김경수 고검장 외 2	검찰국
9. 15. ~9. 21.	스위스 (제네바)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이주형 과장 외 1	인권국
9. 22. ~9. 28.	인도	제3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참가	김태훈 본부장 등 5명	교정본부
9. 23. ~9. 24.	중국 (우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김가연 사무관	법무실
9. 25. ~9. 28.	몽고 (울란바토르)	몽골 중재법개정 지원을 위한 세미나 참석	김종우 검사 외 1	법무실
9. 25. ~9. 28	미얀마 (양곤)	ASOD 회의 참가	이철희 과장 외 1	검찰국
9. 29. ~10. 2.	몽고 (울란바토르)	한국법센터 개소식 및 한국법 특강	조아라 검사 외2	법무실
9. 29. ~10. 7.	스위스 (제네바)	제64차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참석	이재형 사무관 외 1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10. 1. ~10. 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니 CEPA 투자 분과 회기간 회의 참석	김정화 전문위원	법무실
10. 3. ~10. 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니 CEPA 서비스 분과 회기간 회의 참석	김나래 사무관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3. ~10. 7.	미국 (뉴욕)	UN 이주와 개발 관련 고위급 회의 참석	정동민 본부장 외 3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10. 6. ~10. 9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협약 실무 회의 참가	김창진 검사	검찰국
10. 7. ~10. 12.	일본 (도쿄)	제12차 ASEM 이민국장회의 참석	김창석 국적통합단장 외 2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10. 9. ~10. 11.	중국 (북경)	한중일 FTA 지재권분과 회의	김가연 사무관	법무실
10. 13. ~10. 19	프랑스 (파리)	제25기 제1차 FATF 총회 참가	엄희준 검사	검찰국
10. 17. ~11. 26	중국(베이징) 태국(방콕)	중국 공안부 금독국 방문, 금독국장 및 중국 마약법집행 고위관료 접견,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김해수 부장 외 4	검찰국
10. 20. ~11. 2	태국	아세안+3 ATS 및 기타 마약류 물질 대응 법집행기관 훈련 프로그램 연수과정	한태환	검찰국
10. 21. ~10. 25.	노르웨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실무 파악	황우진 검사 외 1	법무실
10. 27. ~11. 1.	미국	제15회 국제교정협회 연례회의 참가	정명철 단장 등 3명	교정본부
10. 28. ~11. 1.	캐나다 (밴쿠버)	한-캐나다 FTA 비공식회의 참석	황우진 검사 외 1	법무실
10. 28. ~11. 1	일본 (도쿄)	2013년 동아시아지역 조직범죄 법집행기관 회의 참가	류혁 과장 외 1	검찰국
10. 28. ~11. 2	스위스 (제네바)	제319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참가	김태견 검사	검찰국
11. 2. ~11. 7.	인도네시아 (발리)	한-인니 CEPA 제6차 협상 참석	김가연 사무관	법무실
11. 2. ~11. 8.	프랑스 (파리)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강혜정	법무실
11. 4. ~11. 6	중국 (칭다오)	제4차 한·중 대테러협의회 참가	한제희 검사 외 1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4. ~11. 9.	스위스 (제네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참석	고영노 전문위원	법무실
11. 6. ~11. 12.	인도네시아(발리) 홍콩	한-인니 CEPA 제6차 협상 참석 및 홍콩사무변호사협회 방문	김나래 사무관	법무실
11. 7. ~11. 14.	프랑스 (파리)	제25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서봉규 외 1	법무실
11. 10. ~11. 16	미국 (워싱턴)	미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 담당자, 국세청 수사국 담당자 양자협의 월드뱅크 방문	조상준 검사 외 1	검찰국
11. 11. ~11. 16	태국 (방콕)	ACCORD 주관 마약사범 치료·재활 워크숍 참가 및 시설기관 견학	손형수 외 1	검찰국
11. 15. ~11. 21.	미국 (워싱턴) 페루(리마)	Arnold & Porter와의 전략회의 개최 및 페루 정부의 ISD 중재재판 시스템 실무 연구	전승수 과장 외 2	법무실
11. 16. ~11. 24	영국, 네덜란드	G8 24/7 국제공조 네트워크 회의 참석	이춘 검사 외 3	검찰국
11. 16. ~11. 25.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28차 UNCITRAL 온라인 분쟁실무작업반 회의	오수근 교수	법무실
11. 16 ~12 .8	미국 (워싱턴)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관련 정책을 위한 출장	오만옥 검찰사무관	검찰국
11. 17. ~11. 21.	스위스 (제네바)	유럽북한인권포럼 참석	차유진 사무관	인권국
11. 17. ~11. 24.	폴란드 (바르샤바)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김가연 사무관	법무실
11. 18. ~11. 27	미국 파나마	제7회 IAACA(국제반부패기구연합) 연례총회 참석	박민표 형사부장 외 1	검찰국
11. 19. ~11. 25	네덜란드 (헤이그)	제12차 국제형사재판소(ICC)당사국 총회 참가	권순철 검사	검찰국
11. 23. ~12. 1	파나마, 미국	제5차 UN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 참가	김재훈 검사 외 2	검찰국
11. 24. ~11. 30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제65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참가	김창진 검사 외 2	검찰국
11. 25. ~12. 1.	스위스 (제네바)	제103차 IOM총회 참석	하용국 사무관 외2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27. ~11. 30.	프랑스 (파리)	ISD 중재로펌과 국제중재관련 회의참가 및 협력방안 논의	나욱진 검사 외 2	법무실
12. 1. ~12. 4.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우즈벡 증권법제 현대화 작업 지원 관련, 국제세미나 참석	박서락 전문위원	법무실
12. 1. ~12. 4.	미국 (뉴욕)	서울국제중재센타 홍보 및 ICC 중재법원 방문	황우진 검사 외 1	법무실
12. 1. ~12. 8	프랑스 (파리)	유럽평의회 주관 사이버범죄 협력회의 참가	김지완 검사 외 2	검찰국
12. 1. ~12. 10.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24차 UNCITRAL 담보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권영준 교수	법무실
12. 4. ~12. 7.	호주 (시드니)	아시아, 태평양 국제중재회의 참석	김종우 검사 외 2	법무실
12. 7. ~12. 14.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야 실무작업반 제48차 회의 참석	최임열	법무실
12. 7. ~12. 20.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48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 회의	정경영 교수 외 2	법무실
12. 8. ~12. 13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참가	조주연 검사 외 2	검찰국
12. 10. ~12. 14.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라오스 (비엔티엔)	개도국법제정비지원 관련 라오스 현지세미나 참석 및 국제환경회의 참석	조아라 검사 외 2	법무실
12. 15. ~12. 19	미국 (뉴욕)	미국 연방영형위원회의 참가	주용완 검사 외 1	검찰국
12. 15. ~12. 22.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44차 UNCITRAL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한 민 교수	법무실
12. 15. ~12. 18.	영국 (런던)	영국변호사협회 방문, 법률시장확대개방제도연구	황우진 검사 외 1	법무실
12. 15. ~12. 21.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법분야 실무작업반 제44차 회의 참석	강상묵	법무실
12. 16. ~12. 21	카자흐스탄 (알마티)	APICC-CAGICC 간 MOU 논의 및 타지키스탄 지원사업을 위한 출장	김용권 사무관 외 2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2. 17. ~12. 20.	베트남	개도국법제정비지원 관련 한국법특강	손승우 교수	법무실
12. 17. ~12. 22.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44차 UNCITRAL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박서락 전문위원	법무실
12. 18. ~12. 21.	스위스 (제네바)	WIPO 제26차 저작권 상설위원회 회의 참석	김종우 검사 외 2	법무실
12. 18. ~12. 21.	네덜란드 (암스텔담)	해외진출기업대상 현지설명회 참석	조아라 검사 외 1	법무실

Ⅸ. 상 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13. 1. ~ 12.)

상훈 \ 직급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1,413	-	86	18	32	39	125	316	586	159	28	24
황조근정훈장	3		3	-	-	-	-	-	-	-	-	-
홍조근정훈장	50	-	7	15	28	-	-	-	-	-	-	-
녹조근정훈장	76	-	-	-	-	22	54	-	-	-	-	-
옥조근정훈장	37	-	-	-	-	-	-	35	1	-	-	1
근정포장	31	-	3	3	2	2	10	7	1	-	-	3
대통령표창	32	-	2	-	1	7	17	5	-	-	-	-
국무총리표창	39	-	2	-	1	6	18	8	2	-	-	2
모범공무원	176	-	-	-	-	-	-	149	23	-	-	4
법무부장관표창	962	-	69	-	-	2	24	111	556	158	28	14
유관기관표창	7	-	-	-	-	-	2	1	3	1	-	-

○ 기 관

(2013. 1. ~ 12.)

상훈 \ 기관	계	법무부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장관표창	74	8	19	12	5	19	11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13. 1. ~ 12.)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법무부/동부지검찰청(인권국)	검사장	황윤성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김현웅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성욱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석우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완목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부산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순주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인현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용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정인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동기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장준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진봉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부이사관	황학모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선시홍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별정직고위공무원	구경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부이사관	이승철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전교도소	일반직고위공무원	지정수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법무부	부이사관	김선녀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부이사관	김승기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부이사관	한영춘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유철	2013.10.28	교정의 날
	법무연수원	검사	조희진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김 창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송인택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김호철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양부남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김기동	2013.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서울소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규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부이사관	송기만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금동선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이사관	이상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무연수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종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구치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곤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고위공무원	성낙승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양동실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송칠용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춘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임상화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석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석영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권태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점근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송동근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울산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손대익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강윤형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오준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형윤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검찰부이사관	박창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전대진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윤도현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의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태은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찰부이사관	김용규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녹조근정훈장	대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이명엽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수자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오광선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사무관	김두봉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별정직4급상당	김용찬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치료감호소	보호사무관	유병옥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치료감호소	보호사무관	임관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안병성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서기관	박성기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김창선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부산보호관찰소	서기관	차철국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소년원	서기관	김임화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전지방교정청	서기관	김영권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강릉교도소	교정관	최지환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정관	이상원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영월교도소	교정관	전기준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부산구치소	시설사무관	김수홍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울산구치소	서기관	배종섭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창원교도소	교정관	조호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박창현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여자교도소	서기관	문태윤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윤달호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김양근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홍성교도소	서기관	이동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천안교도소	교정관	양승우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군산교도소	교정관	김재영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	서기관	임동섭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정관	이은영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영재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배용락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이규홍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별정직4급상당	권순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기관	조윤구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최옥경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전소년원	서기관	고봉용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조성섭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서보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소년원	보호사무관	김영진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전구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의정부교도소	농업사무관	박진서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춘천교도소	교정관	안종배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원주교도소	교정관	한상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정관	박종대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교도소	교정관	김희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관	김성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교도소	교정관	안남석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전주교도소	서기관	최관순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전주교도소	교정관	박종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군산교도소	서기관	지상연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제주교도소	교정관	임용국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전교도소	교정관	유성근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청주교도소	서기관	이경영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구치소	교정관	최우형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강혜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공업사무관	이병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구치소	교정관	김진철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구치소	교정관	정현영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수원구치소	교정관	장인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안양교도소	교정관	길준교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안양교도소	교정관	진해운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장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충주구치소	교정관	오재성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포항교도소	교정관	이상용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의정부보호관찰소	서기관	윤호석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천안교도소	서기관	김병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이영희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이용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관	박동기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안영순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전재희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기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대영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봉희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검찰사무관	장영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최동진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태원	2013.12.31	2013년도 우수공무원
옥조근정훈장	서울소년원	보호주사	전석용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교감	신원휴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교감	김상조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교감	전연찬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수원구치소	교감	홍순철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수원구치소	교감	원종훈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감	강복근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인천구치소	교감	유필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진주교도소	교감	강호석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구구치소	교감	안충근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천안교도소	교감	양경열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천안교도소	교감	문복길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춘천교도소	교감	허만식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원주교도소	교감	신완선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안동교도소	교감	오승희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신세익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박근태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고해종	2013.06.30	상반기 퇴직공무원
	춘천교도소	교감	지영구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춘천교도소	교감	정태화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감	신준기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감	이분도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감	오형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성동구치소	교감	주정찬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광주교도소	교감	김재식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교도소	기능6급	황명숙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교도소	교감	권영서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교도소	교감	박택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대구구치소	교감	진용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목포교도소	교감	김인양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안동교도소	교감	우석하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교감	최성호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구치소	교감	정찬원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안양교도소	교감	김월성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김병철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신소균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강증원	2013.12.31	하반기 퇴직공무원

○ **외부인사 및 단체**

(2013. 1. ~ 12.)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진강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모란장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조교영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고문	최무도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황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교수	윤진수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홍조근정훈장	인하대학교	교수	김민배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동백장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부회장	한용택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순천교도소	교정위원	이용호	2013.10.28	교정의 날
국민훈장목련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범죄예방위원	김원혁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	고문	이만수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	신철범	2013.10.31	갱생보호 지원
국민훈장석류장	범죄예방위원 서울북부지역협의회	고문	하창용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국민포장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황성균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협의회	지구고문	박영선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	부회장	석재민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회장	김병호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홍성지역협의회	회장	최일운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	회장	김무연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소년보호위원 광주소년원협의회	회장	김은수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원주교도소	교정위원	변화자	2013.10.28	교정의 날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이상호	2013.10.28	교정의 날
	교정학회	부회장	이영근	2013.10.28	교정의 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보호위원	양원종	2013.10.31	갱생보호 지원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변태희	2013.11.0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통령표창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류충현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보호위원	조인순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재)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계명대학교	교수	김혜순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협의회	지구총무	김대신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회장	오세광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	지구대표	강연희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대표위원	홍종구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회장	백남홍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부회장	홍창도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김천지역 협의회	운영실장	윤종호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협의회	위원	전충열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조재호	2013.10.28	교정의 날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김택세	2013.10.28	교정의 날
	성동구치소	교정위원	송종현	2013.10.28	교정의 날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이은숙	2013.10.28	교정의 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보호위원	류우현	2013.10.31	갱생보호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북부지소	보호위원	오옥근	2013.10.31	갱생보호 지원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문은수	2013.11.0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윤여웅	2013.11.0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재황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충청북도		(단체)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체)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국무총리표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경래	201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KDB대우증권㈜	전무	류성춘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상명대학교	부교수	조항록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한중사랑교회	목사	서영희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대구사과나무치과	치과의사	최성욱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단체)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단체)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남부대학교		(단체)	2013.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지구회장	홍성목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감사	성하삼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정읍지역협의회	회장	유남영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의성지역협의회	고문	박소영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회장	유인모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	위원	안금주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	지구회장	장영석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춘천지역협의회	위원	권혁주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지구회장	우영택	2013.10.11	범죄예방자원봉사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정종훈	2013.10.28	교정의 날
	창원교도소	교정위원	정영숙	2013.10.28	교정의 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이정훈	2013.10.28	교정의 날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장상만	2013.10.28	교정의 날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이인자	2013.10.28	교정의 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	보호위원	양재윤	2013.10.31	갱생보호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보호위원	홍순태	2013.10.31	갱생보호 지원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지호	2013.11.0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박춘근	2013.11.0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송귀채	2013.11.0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고성혜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주)NHN엔터테인먼트	전무	김현성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제주특별자치도		(단체)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단체)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주)시공미디어		(단체)	2013.12.26	법질서바로세우기

X.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13. 12. 현재)

소 관 별	계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 정책국	감찰관실	교 정 본 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인권국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52	14	10	10	3	1	1	4	5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민원·제도 개선협위, 법무시설 건축협위, 급식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위, 설계자문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84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정갑영	19	정 책 기획단	기획조정실
2	법무부공적심사 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장관이 임명	5~10	창조 행정	
3	법무부보통징계 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차 관	4~7	〃	
4	법무부근무성적 평정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조정	차 관	5~	〃	
5	법무부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장관이 임명	4~6	〃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	법무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	창조행정	기획조정실
7	법무부성과급심사위원회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	〃	
8	법무부지도방문조정심의회	법무부지도방문조정심의회 운영규칙(훈령)	소속기관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기획조정실 장	7	〃	
9	법무부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차 관	5~	〃	
10	법무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839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등에 대한 심사	이동호(변호사)·기획조정실 장	5~	〃	
11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표성수(변호사)	24	〃	
12	법무부예산집행심의회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예산집행심의회규정(훈령 제870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조정실 장	12	기획재정	
13	정책연구관리위원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훈령)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조정실 장	13	〃	
14	법무부직장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동법시행령 제23조의4,법무부방위협의회운영규정	예비군의 육성지원	장 관	12	비상안전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장 관	9	법무과	법무실
16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증인 징계사건심의	차 관	7	〃	
1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장 관	9	국제법무과	
18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차 관	7	국가송무과	
19	법무자문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조, 제2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최금숙(교수)	16	법무심의관실	
20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 심의	차 관	9	〃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안건 준비	법무심의관	6	〃	
2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사법시험법 제14조	사법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장 관	13	법조인력과	
22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 등의 심의	차 관	15	〃	
23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법무부훈령 제816호	상사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법령의 제·개정	교수3명(보험, 운송, 회사)	44	상사법무과	
24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868호)	상사법과 관련된 회계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	심 영(교수)	6	〃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25	검사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장 관	7	검찰과	검찰국
26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1	〃	
27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9	〃	
28	검사직무성과금심의 위원회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차 관	4	〃	
29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부령)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에 관한 심의	검찰국장	5	형 사 기획과	
30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특별사면·감형·복권 상신의 적정성 심사	장 관	9	〃	
31	국가보안유공자심사 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 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국장	7	공 안 기획과	
32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차 관	7	〃	
33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국장	11	〃	
34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국장	5	〃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5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 5개 심사위원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고 검 차장검사	각 9	범 죄 예 방 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
36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효율적 법교육 추진	성낙인 (교수)	15	법질서 선진화과	
37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제37조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차 관	9	보 호 법제과	
38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유원규 (변호사)	9	감찰 관실	감찰관실
39	장애인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심의	차 관	8	인 권 정책과	인권국
40	법무부여성정책 심의위원회	법무부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훈령 제695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이양희 (교수)	13	여성 아동 인권과	
41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심의	장 관	17	인 권 구조과	
	범죄피해자 실무 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차 관	19	〃	
4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차 관	14	〃	
43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구조금 지급 재심신청사건 심의 결정	차 관	7	〃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4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차 관	9	분 류 심사과	교정본부
45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차 관	13	난민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6	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제28조	특별귀화대상자 선정 및 국적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심의	외국인 본부장	20	국적과	
47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815호)	이민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시행 시 자문	이철우 (교수)	15	외국인 정책과	
48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제53조의4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외국인 본부장	12	이 민 통합과	
49	법무부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3조	보안대책수립 및 제규정 제정	차 관	9	운 영 지원과	운영지원과
50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경부 고시 제 2011-154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차 관	7	〃	
51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2조, 행정정보공개지침(예규)	정보공개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기획조정 실 장	6	〃	
52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여부	기획조정 실 장	11	〃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13.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54개 기관	30,883
법 무 부	2실 3국 2본부	647
검 찰 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0	9,812
법 무 연 수 원	법무연수원 1	105
보 호 관 찰 심 사 위 원 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30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38, 위치추적관제센터 2	1,504
치 료 감 호 소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356
소 년 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	790
교 정 기 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8, 지소 3	15,839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19, 외국인보호소 2, 출장소 21, 센터 1	1,800

○ 소속단체

(2013.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900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0, 지소 54, 법문화교육센터 1	6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4, 지소 7, 센터 2	166
정부법무공단	본부 1	92

부 록

◈ 법무부 본부 기구변천표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도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13.12.31)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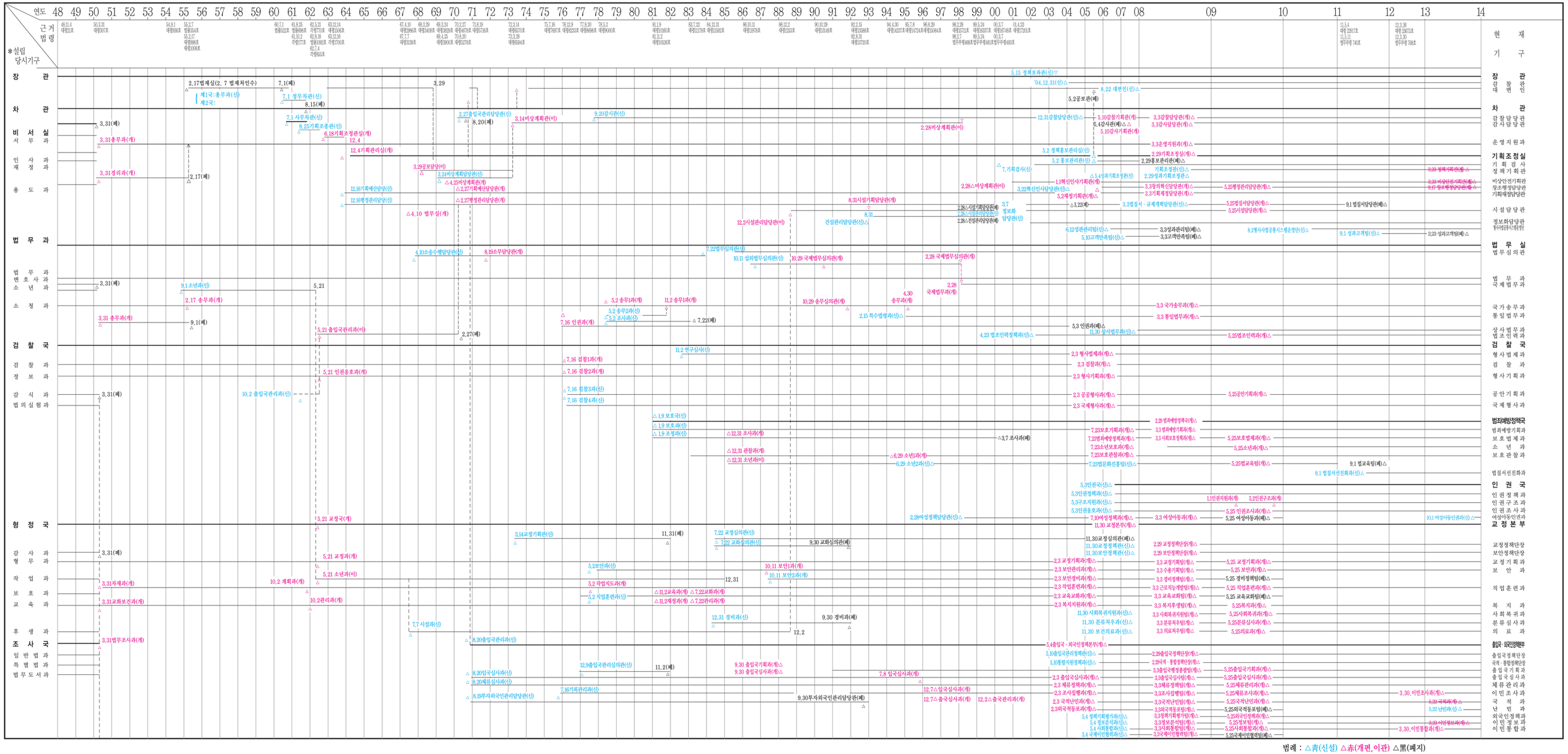

범례 : △青(신설) △赤(개편,이관) △黒(폐지)

법무연감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검 사 장	안 태 근

□ 편집위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최 정 석
기획검사실	검 사	용 성 진
기획검사실	검 사	권 성 희
법무실	검 사	최 청 호
검찰국	검 사	신 동 원
범죄예방정책국	검 사	박 진 성
감찰관실	검 사	윤 희 식
인권국	검 사	안 미 영
교정본부	부이사관	신 용 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김 종 민
대변인실	서기관(일반임기제)	한 정 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문 권 점
법무연수원	검 사	박 성 근

□ 편집실무위원

기획조정실	사 무 관	김 진 섭
법무실	사 무 관	정 안 진
검찰국	사 무 관	신 무 승
범죄예방정책국	사 무 관	조 연 호
감찰관실	사 무 관	박 재 운
인권국	사 무 관	이 한 식
교정본부	사 무 관	한 태 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 무 관	반 재 열
대변인실	사 무 관	김 승 권
운영지원과	사 무 관	조 상 민
법무연수원	사 무 관	고 영 석

法務手鑑

발 행 일 ❙ 2014년 7월

발 행 일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092, 3093
FAX : (02) 503-1641

인 쇄 ❙ **하늘기획**
TEL : (031) 385-8818

〈비매품〉